연구보고 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유민상 · 이경상 · 유성렬 · 이수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보고서 표지 디자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보고서 디자인 콘테스트』의 당선 작품을 카카오톡 이모티콘 작가(작가명 모지)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실사한 것입니다.

***당선작 프롬프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 청소년들을 지지하는 어른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문화, 기후변화, 인공지능, 미디어, 권리"

AI 디자인_	곽진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행정원)
실사 디자인_	변지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저 자 **유민상, 이경상, 유성렬, 이수정**

연 구 진 연구책임자_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
_이수정(공인노무사)
연구보조원_이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요약

■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이행 실태를 양적·질적 방법을 통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연구내용

●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함.
● 인권 지표 프레임워크 중 직접 조사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 국가승인통계인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를 시행하여 직접 실증 데이터를 제공함.
● 심층연구를 통하여 양적·질적 방법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증진 정책을 제언함.

■ 연구방법

●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등을 활용한 혼합방법임.
- 문헌연구: UNCRC 관련 연구 체계적 리뷰, UNCRC 추진내역 및 권고사항 검토,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정책분석(심층분석)
- 양적연구: 「202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시행 및 분석, 사회지표 분석,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인권 지표 간의 관계 시계열 분석(심층분석)
- 질적연구: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침해 관련 청년 회고조사(심층분석)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문헌연구 결과: 체계적 문헌리뷰(스코핑 리뷰) 및 일반논평의 의미와 시사점]

●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연구 동향: 체계적 검토

- 문헌 연구는 체계적 검토 중 하나인 주제 범위검토(scoping review)를 진행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중 어떠한 주제와 조항이 주로 연구되었는지를 파악
- 1990년부터 2022년까지의 299개 논문의 주요 동향과 권리조항별, 전공영역별, 세부대상별 분석함.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연구는 1990년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음. 초기 연구는 아동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일반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중후반부터 현재까지 전문적, 세부적 연구들이 출현하며 학문적인 분화도 이루어진 특징이 있음.
- 향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디지털·기후환경 등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새로운 권리침해 혹은 권리보장 논의가 필요하며, 기존 논의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 문제 등 논의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5호의 의미와 시사점

- 2021년 발표된 일반논평 제25호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주요 권고사항과 지침이 담겨있음.
- 일반논평 제25호는 기존의 보호주의적 접근방식에서 전환하여, 국가와 기업이 아동 권리 관점에서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침 제공
- 아동 권리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처는 디지털 관련 정책 및 기업 활동 전반을 감독·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영향평가 추진 필요
- 2023년 발표된 일반논평 제26호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아동 권리와 환경'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아동·청소년의 인권에의 영향에 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인권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22.4%, 학생인권조례 8.1%, 국가인권위원회 22.9%로 낮게 나타남.
- 생활영역별 인권 존중정도는 가정(96.2%), 학교(94.0%), 우리나라 전체(84.0%), 온라인 공간(82.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인권의식과 태도 중 참여관련 인식은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결정 능력 67.6%, 아동·청소년 사회참여 필요성 83.7%, 자치조직의 의의 85.7%이고, 차별관련 인식은 의견표명권 95.7%, 경제적 이유의 차별금지 97.1%, 양성평등 96.7%, 이주배경주민 교육권 94.2%,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 평등 93.0%로 높게 나타남.
- 인권교육 경험은 50.3%였고, 장소는 학교 교과수업시간 78.5%,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31.8%,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12.7%, 기타 1.7%의 순이었으며, 인권교육 도움정도는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90.9%,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91.1%,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86.3%로 높게 나타남.
- 1년에 한 번 이상 차별 받은 경험은 외모 및 신체조건 14.8%, 학업성적 13.8%, 성별 13.6%, 나이 13.3% 순이었고, 1년에 한 번 이상 차별한 경험도 외모 및 신체조건 9.4%, 학업성적 7.8%, 성별 6.8% 순이었음.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는 선생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 46.8%, 임원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기준 없음 35.4%,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장소, 시간 보장 51.3%,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57.5% 등으로 나타남.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는 참여가능하며 발언권 있음 27.8%, 참여가능하지만 발언권 없음 7.2%, 참여할 수 없음 5.5%이었음.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는 82.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은 71.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참여 방해 요인은 시간 부족 35.5%,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27.1%, 참여활동정보 부족 21.8%,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 12.2%, 부모님 반대 1.9%,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함 1.4% 순이었음.
- 사상, 양심의 자유는 92.6%가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종교의 자유는 가정 내 종교 선택 자유 83.0%, 학교 종교행사 자율 참여 47.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사회문제 관련 참여 활동으로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SNS 활동에 가끔 또는 자주 참여 비율은 13.9%,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가끔 또는 자주 참여 비율은 5.8%였음. 1년에 1회 이상 용모 검사 15.7%, 복장 검사 49.8%, 소지품 검사 8.1%, 수업시간 이외 핸드폰 사용금지 21.9%, 수업시간 이외 핸드폰 압수 14.7%로 나타났음. 개인(민감)정보에 대한 공개 정도는 9.3%, 징계사항에 대한 공개 정도는 13.1%, 개인시험성적에 대한 공개 정도는 14.2%로 나타났음.

● 폭력 및 학대

- 2023년 조사 결과, 부모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은 32.4%, 신체적 벌(체벌) 경험은 26.1%였음.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은 11.2%, 신체적 벌(체벌) 경험은 4.6%였음.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은 욕설 및 모욕 19.4%, 폭행 및 구타 9.1%, 따돌림 6.9%, 돈, 물건 빼앗김 3.1%, 성적인 희롱 및 추행 2.9%, 강제적인 심부름 1.9% 순이었음.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은 욕설 및 모욕 19.4%, 사생활 침해 4.3%, 협박 3.3%, 성희롱(놀림) 2.8%, 따돌림 2.7% 순이었음.
- 2023년 조사결과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은 전체의 3.1%로 나타났음.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받은 사람에 대한 비율은 친구 34.3%, 도움받지 않음 30.8%, 부모님 17.4%, 선생님 9.9%, 선후배 3.1%, 형제자매 1.9%, 경찰 0.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2022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46,103건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96.6%(44,531건), 일반상담 1.9%(861건), 동일신고 1.5%(711건), 해외발생 사례 0건(0.0%) 순이었음. 아동학대 사례 증가율은 2021년까지 계속 증가했다가 2022년에는 25.6% 감소하였음. 2022년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 간의 관계는, 부모가 82.7%, 대리양육자가 10.9%, 친인척이 3.1%였음. 2022년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보면, 정서학대 38.0%, 중복학대 34.9%, 신체학대 17.6%, 방임 7.3%, 성학대 2.2%의 순이었음. 가정 내 방임과 관련하여, 야간시간 방임에 대한 비율은 57.1%, 깨끗하지 않은 옷과 이부자리 방임은 6.8%, 아플 때 방임은 4.3%, 결식방임은 5.0%, 결석방임은 1.4%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2022년 보호대상아동은 2,289명이었는데, 최근 수년간 감소하고 있음. 보호대상아동 발생유형은 빈곤, 실직, 학대로 인한 경우가 85.3%로 가장 많았고, 미혼부모, 혼외자가 11.0%, 유기가 3.2%, 비행, 가출이 0.5%의 순이었음. 보호유형별로는 가정위탁이 48.7%, 시설보호가 48.5%, 입양이 2.8%의 순이었음.
-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 전체의 2.7%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출한 주된 이유로는 부모님과의 문제 52.0%, 학업문제 때문 21.8%,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10.8%,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2.4%, 학교문제 때문 1.4%의 순이었음. 가출 후 이용한 기관으로는 이용해 본적 없다 94.2%, 청소년 쉼터 3.3%, 청소년수련관(센터) 1.2%, 청소년전화 1388 0.8%, 청소년 상담기관 0.6%로 나타났음.

●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에서의 일부 개선과 악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음. 무엇보다 그동안 영아 사망률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미등록 아동의 존재를 감안하면 실제 사망률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청소년과 청년기 자살 사망에 대한 관심과 함께 미등록 영유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 등으로의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는지 확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서비스가 필요함.

- 코로나19 이후 신체적 건강 중 과체중과 비만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은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체적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함.
- 이 연구는 국가승인 통계에서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문항을 조사하였음. 아동·청소년이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9%로 청년기와 유사한 비율을 보여 관심이 필요함.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초등 및 중등교육을 위한 공교육비가 증가하고 교원 1인당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하는 등 교육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사교육에 있어서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교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시설 이용도 코로나19 이후 점차 회복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시설 이용에 있어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관찰됨.

● 특별보호조치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대부분은 국내 출생자이며, 다문화가정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자녀들 가운데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젊은층에서의 포용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시설에 새롭게 수용되는 인원은 2020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소년 수형자 가운데 강간 등의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폭력·상해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여전히 부당한 경험을 하고 있음.
-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음.

[심층분석]

●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인권지표 변화 (시계열 분석)

- 본 연구의 아동·청소년의 권리 지표는 지난 10년간 개선되어 오고 있음. 특히 일상에서의 폭력(가정, 학교, 지역사회)은 큰 폭으로 감소되어 왔음. 하지만 주관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 정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규범적 측면에서 아동권리 지표는 개선되어 왔으나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중요한 요인들의 개선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혹은 일부 개선이 나타난 영역만큼 다른 영역에서의 위험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음. 이 분석은 이러한 경향에 대해 종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아동·청소년의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침해 (면접조사)

-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은 단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중첩되어 나타나며, 다차원적인 인권침해가 나타남. 또한 이러한 중첩된 취약성은 아동·청소년의 성인기 이행까지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침.
- 면접조사를 통해 5인의 생애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생애경험 등의 중첩된 취약성은 한 개인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침. 다만 부정적 생애 경험(ACES)을 완충할 수 있는 지지체계와 이에 상응하는 긍정적 생애경험(PCEs)은 중첩된 취약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막고 긍정적 성장을 이끌 수 있음.

●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분석)

- 아동·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입법 미흡, 정부의 실태조사 범위와 내용의 한계, 근로감독 미흡과 부처별 사업 중복 및 이행 점검 체계 부족 등 미비한 점이 있음.
- 아동·청소년의 총체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관련 법체계 정비 및 정책 이행 체계 확보 필요. 또한, 괜찮은 일자리와 사회·경제적 지원에 대한 권리 등 적극적인 노동권 실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이 연구에서는 정책제언을 위한 비전을 개인의 상태와 사회의 상태, 그리고 변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동·청소년', '권리를 보장해주고 긍정적 성장을 지원해주는 사회'로 설정. 원칙은 UNCRC의 4개 원칙을 차용

● 정책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위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정책제언을 정리. 하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클러스터 중심 정리.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리. 13개 영역 13개 세부과제 도출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 및 세부과제

- 영역 Ⅰ-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과제 Ⅰ-1. 소수자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 영역 Ⅰ-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과제 Ⅰ-2. 보편적 출생등록 시행 및 위기 영유아 가구 지원
- 영역 Ⅰ-3. 폭력 및 학대
  - 과제 Ⅰ-3. 아동학대에 대한 차등적 대응(DR) 강화
- 영역 Ⅰ-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과제 Ⅰ-4.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
- 영역 Ⅰ-5. 장애·기초 보건과 복지
  - 과제 Ⅴ-5. 코로나19이후 신체·정신적 변화 모니터링 및 개입
- 영역 Ⅰ-6.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 과제 Ⅰ-6. 아동·청소년 문화·스포츠 바우처 (청소년문화패스) 도입
- 영역 Ⅰ-7. 특별보호조치
  - 과제 Ⅰ-7.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일할 권리 보장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 및 세부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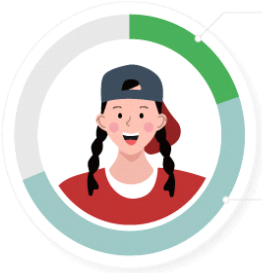
- 영역 Ⅰ-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과제 Ⅱ-1.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
- 영역 Ⅱ-2. 가정
  - 과제 Ⅱ-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예방적 및 회복적 지원
- 영역 Ⅱ-3. 학교
  - 과제 Ⅱ-3. 학교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폭력 예방 및 회복적 지원
- 영역 Ⅱ-4. 지역사회 환경
  - 과제 Ⅱ-4. 지역 간 의료서비스 및 접근성 격차 해소
- 영역 Ⅱ-5. 사회문화적·디지털 환경
  - 과제 Ⅱ-5. 디지털 환경 아동권리 감독·조정 거버넌스 구축
- 영역 Ⅱ-6. 생태적 환경
  - 과제 Ⅱ-6. 기후변화 관련 교육 및 활동 개발

그림 ⅰ-1. 본 과제의 비전, 원칙, 세부과제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인권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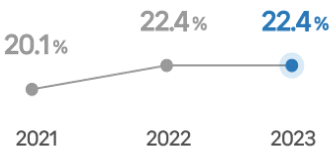
유엔(UN) 아동권리협약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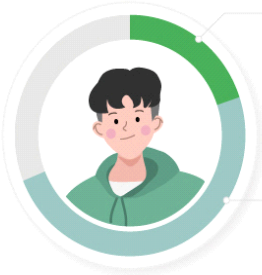
이름만 들어봤다 **48.5%**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이름만 들어봤다
초등학교	19.9%	39.1%
중학교	25.2%	54.8%
고등학교	22.1%	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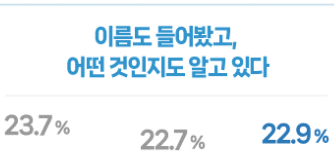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22.9%**

이름만 들어봤다 **54.3%**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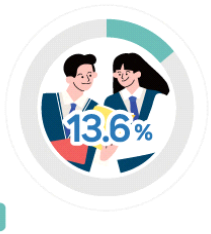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이름만 들어봤다
초등학교	17.5%	52.7%
중학교	23.6%	55.2%
고등학교	27.9%	55.0%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차별 경험

차별 받은 경험

성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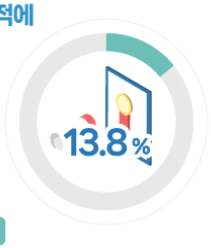


2023

2021 21.6%

2022 21.3%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2023

2021 21.7%

2022 20.6%

연령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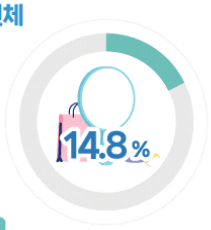


2023

2021 23.0%

2022 21.6%

외모,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



2023

2021 21.0%

2022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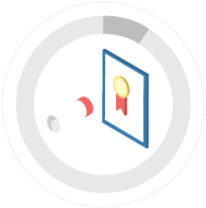
차별 한 경험



성차별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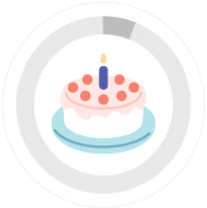
6.8%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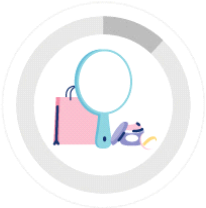
7.8%



연령차별

2023

6.5%



외모,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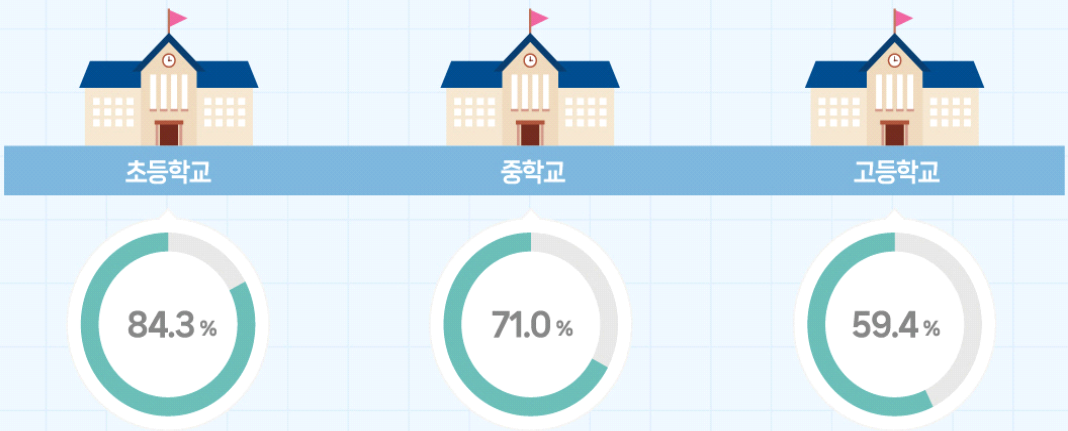
9.4%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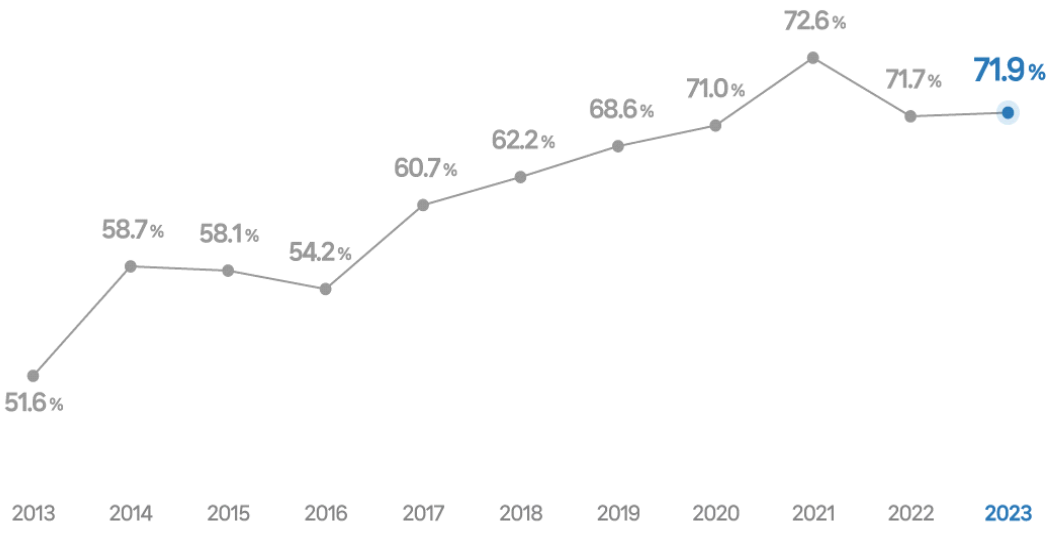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해요! | 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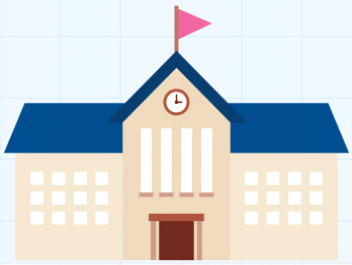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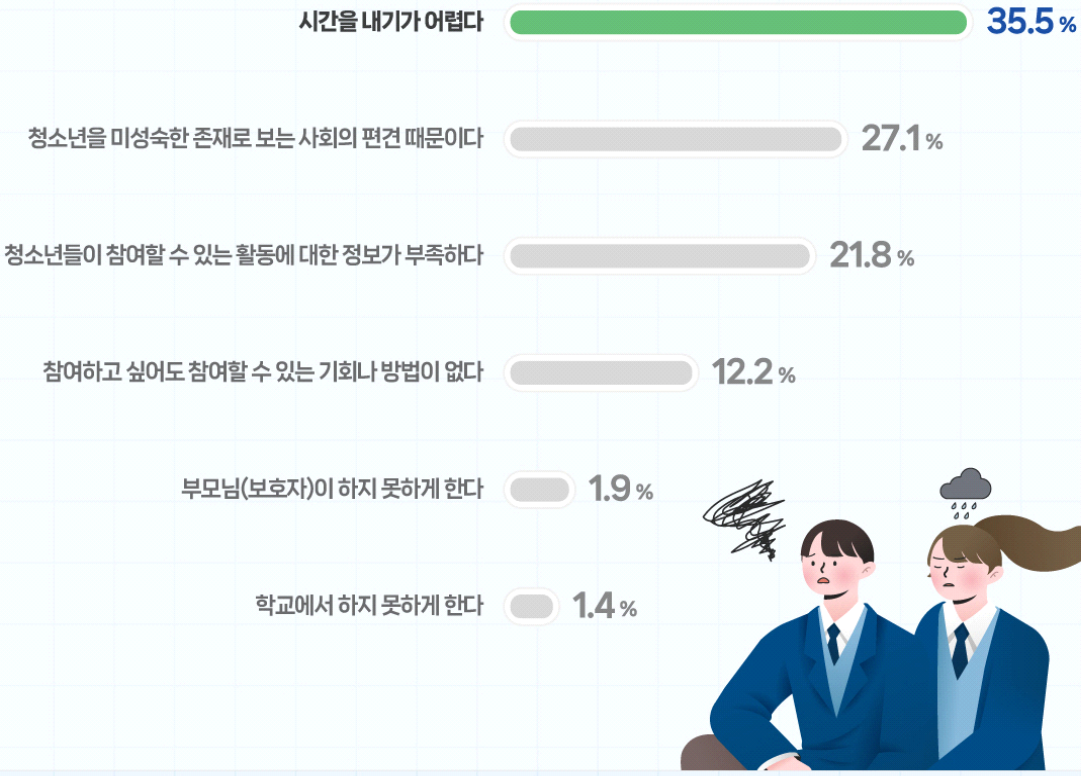
연도별 결과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





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 순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순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37.3%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35.2%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33.8%
2순위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22.8%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30.3%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28.4%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체벌 경험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

1년에 1회 이상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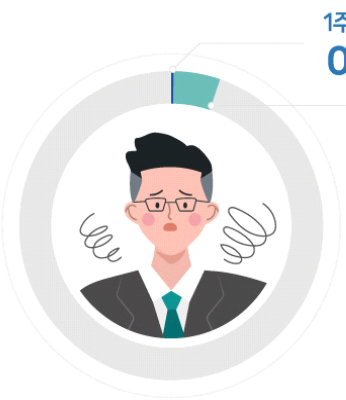


	1년에 1회 이상	1주일에 1-2회 이상
초등학교	41.5%	2.2%
중학교	23.8%	0.9%
고등학교	11.5%	0.4%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1년에 1회 이상 **4.6%**





	1년에 1회 이상	1주일에 1-2회 이상
초등학교	4.2%	0.5%
중학교	5.4%	0.9%
고등학교	4.3%	0.4%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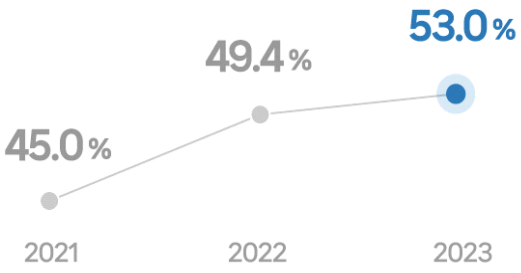
방임경험 연도별 추이

경험 있어요 (1년에 1회 이상)

야간 시간 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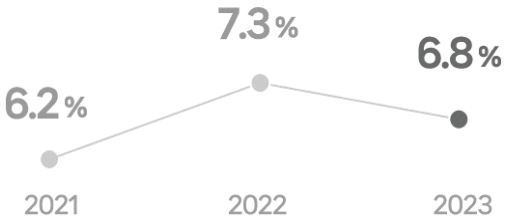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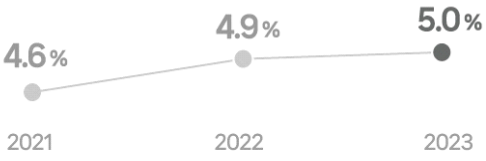
비위생적 의복, 침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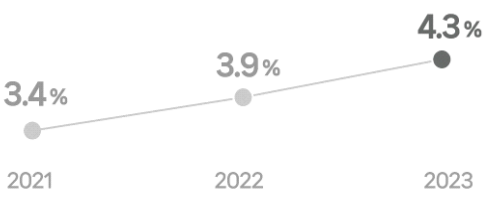
결식 시 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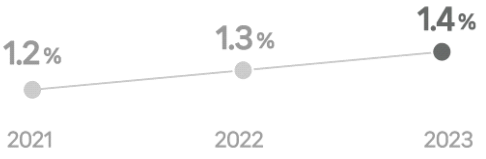
질병 무관심





결석 무관심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성적인 피해 시 도움을 받은 사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남학생
37.0%



30.8%
2023

여학생
23.7%

초등학교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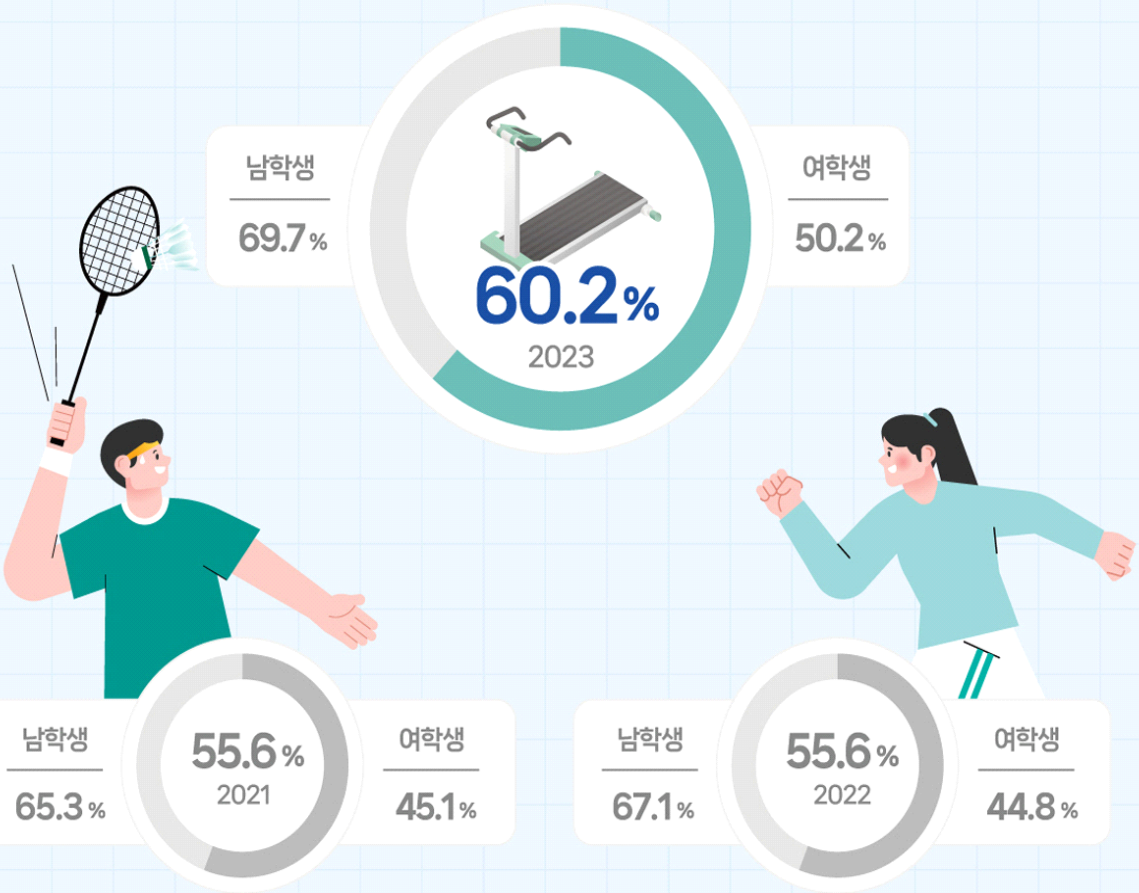
중학교
33.1%

고등학교
49.7%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건강을 위한 운동실천율

운동을 해요 (일주일에 1~2회 이상)



21.2% 운동을 하지 않아요

성별		학교급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6.0%	26.7%	8.3%	22.7%	33.6%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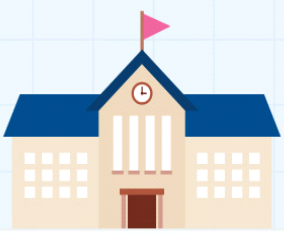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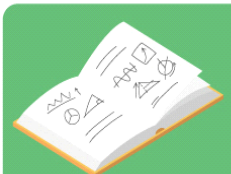
31.2%

남학생 23.3%

여학생 39.5%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학업문제 42.7%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19.8%

가족 간의 갈등 17.9%

6.5%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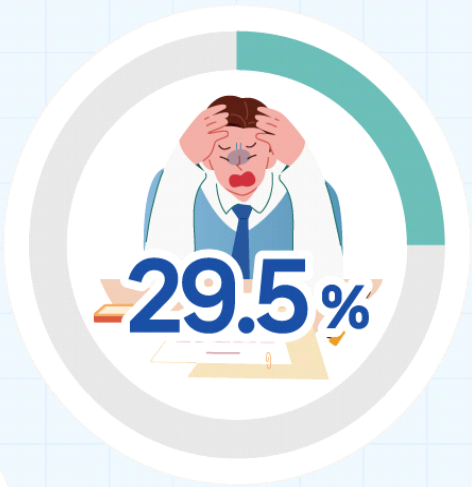
0.9% 경제적인 어려움

기타 12.1%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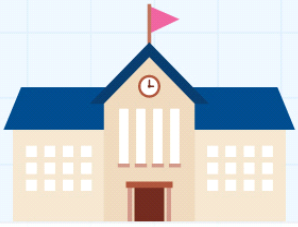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2021
25.3%

2022
28.8%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3년	23.6%	28.2%	37.4%
2022년	21.6%	25.9%	39.2%
2021년	19.2%	22.0%	34.6%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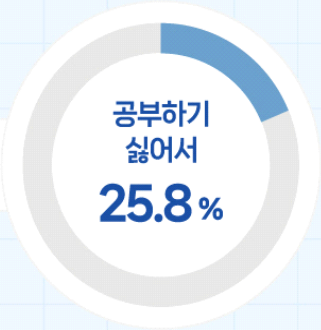
1순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9%	31.2%	25.3%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4.7%	28.4%

2순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9.2%	27.0%	22.4%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4.2%	12.8%

3위 15.8% 기타

4위 12.8% 성적이 좋지 않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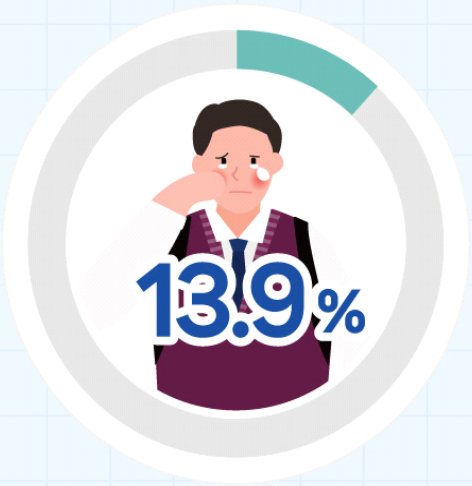
5위 7.2%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6위 5.0% 괴롭힘을 당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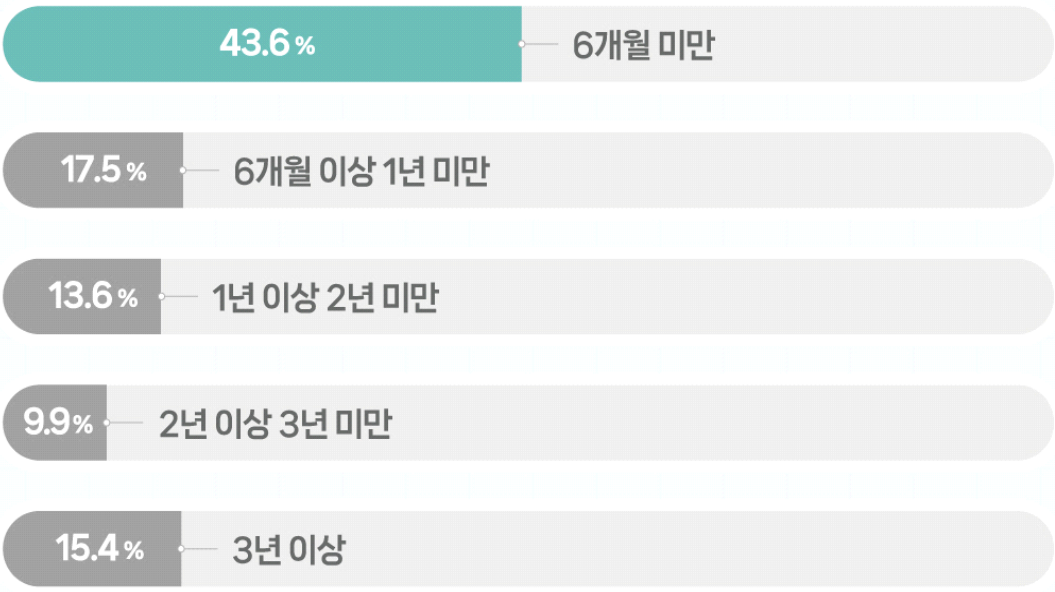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고립되었다는 느낌과 기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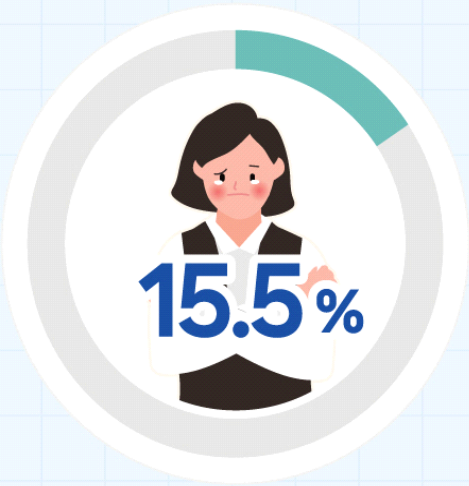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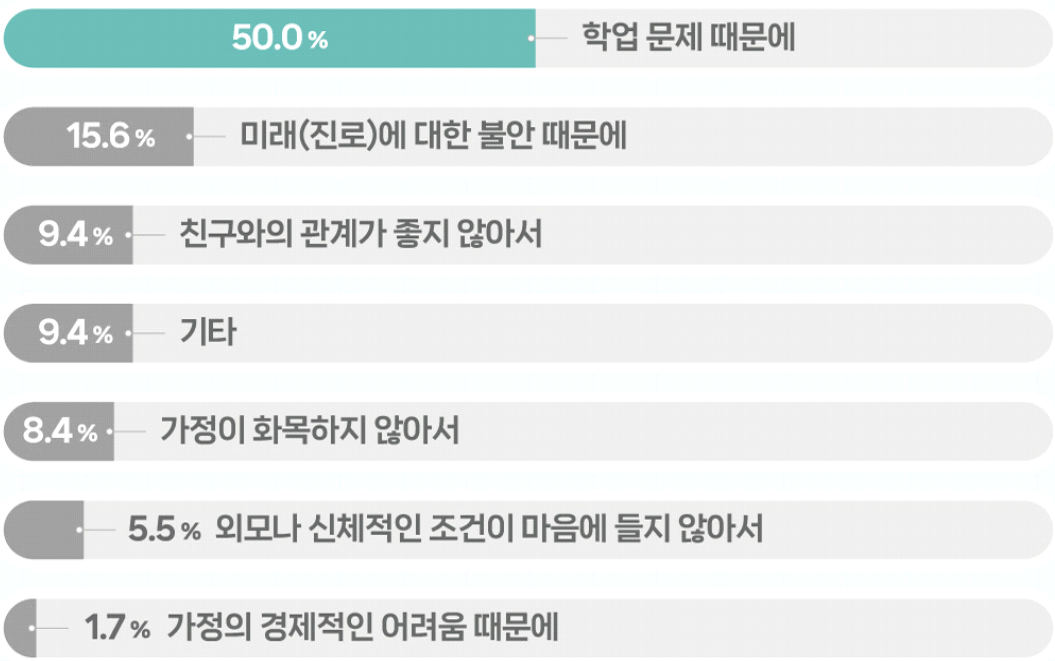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현재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현재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



차 례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23-일반0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주요 연구내용 ····· 5
   1) 지표를 통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분석 ····· 6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및 개선방안 분석 ····· 8
   3)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9
3. 연구방법 ····· 10
   1) 문헌분석 ····· 10
   2) 전문가 자문 ····· 10
   3) 설문조사 ····· 11
   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정책포럼, 콜로키움 개최 ····· 13
4. 보고서의 구성 ····· 16

Ⅱ. 아동·청소년 인권연구 및 정책동향

1. 개요 ····· 19
2.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연구 동향: 체계적 검토 ····· 20
   1) 체계적 검토 개요 ····· 20

2) 체계적 검토 방법 ····· 21
3.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동향: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아동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5호 ····· 33
1) 일반논평 제25호 발표 배경 ····· 33
2) 일반논평 제25호 주요 내용 ····· 37
3) 일반논평 제25호에 관한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 ···· 45
4. 시사점: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 50

Ⅲ.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 측정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1. 개요 ····· 55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 56
3.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 문항 구성 및 수정 내용 ····· 61
1) 개편의 방향 ····· 61
2) 개편 절차 ····· 61
3) 개편 결과 ····· 63
4. 시사점 및 향후 방향 ····· 68

Ⅳ.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1. 조사개요 ····· 73
1) 표본설계 ····· 73
2) 통계청 변경 승인 및 기관 IRB 승인 ····· 75
3) 조사준비 및 조사 ····· 75
4) 최종 데이터 생성 ····· 76
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78
1) 인권일반 ····· 78
2) 일반원칙 ····· 98
3) 소결 ····· 102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 104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 104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16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 118

4) 사생활의 보호 ····· 119
5) 정보접근권 ····· 123
6) 소결 ····· 130
4. 폭력 및 학대 ····· 132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 132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 143
3) 소결 ····· 156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158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 158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 165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 175
4) 소결 ····· 178
6.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 180
1) 장애 ····· 180
2) 생존 및 발달 ····· 183
3) 보건서비스 ····· 192
4)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 200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 231
6) 소결 ····· 236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238
1) 교육에의 권리 ····· 238
2) 교육의 목표 ····· 247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 257
4) 소결 ····· 274
8. 특별보호조치 ····· 278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 278
2) 소년 사법 ····· 287
3) 경제적 착취 ····· 302
4) 성적 착취 ····· 311
5) 소결 ····· 319

Ⅴ.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층분석

1. 개요 ····· 325
2.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수준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시계열적 관계 ····· 326
   1) 배경 및 연구 문제 ····· 326
   2)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수준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시계열적 관계 ····· 327
   3) 시사점 ····· 337
3. 아동·청소년의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 ····· 338
   1) 연구개요 ····· 338
   2) 아동·청소년의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 ····· 339
   3) 연구방법 ····· 340
   4) 면접조사 분석 결과 ····· 344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383
4.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 사각지대 발생 원인과 향후 과제 ····· 385
   1) 문제의 제기 ····· 385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 ····· 387
   3)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노동권 관련 최종견해(1차~6차) ····· 389
   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 392
   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미비의 원인 ····· 404
   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 과제 ····· 415
5. 소결 ····· 421

Ⅵ. 정책제언

1. 제언 도출과정 ····· 425
2.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및 정책 방향 도출 ····· 426
   1) 문헌연구 주요내용 및 시사점 ····· 426
   2)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427

3) 심층분석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431
4) 그 외 전문가 자문 및 콜로키움 개최 등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 ····· 433
3.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 ····· 434
1) 정책의 비전, 원칙 도출 ····· 434
2) 세부정책과제 도출 ····· 436
3) 정책영역별 세부 정책과제 ····· 439

참고문헌 ····· 473

부 록

1.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설문지 (초등용·중등용) ····· 503
2.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변경문항 세부내역 (초등용·중등용) ····· 543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문 및 최종견해(1~6차) ····· 566

국문초록 ····· 623

Abstract ····· 625

표 목차

표 Ⅰ-3-1. 전문가 자문 진행 내용 ····· 10
표 Ⅰ-3-2.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개요 ····· 12
표 Ⅰ-3-3. 정책포럼 및 콜로키움 개최(안) ····· 14
표 Ⅱ-3-1. 아동 의견수렴 워크숍에서 도출된 분야별 주요 의견 ····· 36
표 Ⅲ-2-1. 2023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56
표 Ⅲ-3-1.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 항목 ····· 64
표 Ⅳ-1-1.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학생수) ····· 74
표 Ⅳ-2-1. 아동·청소년 법령 제·개정 현황 ····· 78
표 Ⅳ-2-2.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 (2017~2022년) ····· 81
표 Ⅳ-2-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 82
표 Ⅳ-2-4.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 ····· 85
표 Ⅳ-2-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 ····· 86
표 Ⅳ-2-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 ····· 87
표 Ⅳ-2-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 89
표 Ⅳ-2-8. 인권의식 및 태도_아동·청소년의 참여 관련 인식 ····· 90
표 Ⅳ-2-9. 인권의식 및 태도_차별 관련 인식 ····· 92
표 Ⅳ-2-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 ····· 94
표 Ⅳ-2-11. 인권교육 경험 여부 ····· 95
표 Ⅳ-2-12.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복수응답) ····· 96
표 Ⅳ-2-13.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교급별) ····· 97
표 Ⅳ-2-14.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종합) ····· 99
표 Ⅳ-3-1.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의견 존중 정도) ····· 104
표 Ⅳ-3-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 ····· 106
표 Ⅳ-3-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 108
표 Ⅳ-3-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109

표 Ⅳ-3-5. 2022년 제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 110
표 Ⅳ-3-6.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2014~2022년) ····· 111
표 Ⅳ-3-7.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2011~2022년) ····· 111
표 Ⅳ-3-8.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 112
표 Ⅳ-3-9.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 ····· 113
표 Ⅳ-3-10.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 ····· 114
표 Ⅳ-3-11.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 116
표 Ⅳ-3-12.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 ····· 117
표 Ⅳ-3-13.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 ····· 118
표 Ⅳ-3-14.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 ····· 120
표 Ⅳ-3-15.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 ····· 122
표 Ⅳ-3-16.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2017~2022년) ····· 124
표 Ⅳ-3-17. 인터넷 이용 목적(2017~2022년) ····· 125
표 Ⅳ-3-18.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2017~2022년) ····· 126
표 Ⅳ-3-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및 주이용 콘텐츠(복수응답) ····· 127
표 Ⅳ-3-20.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2012~2021년) ····· 127
표 Ⅳ-3-21. 학생 독서량(2011~2021년) ····· 128
표 Ⅳ-3-22. 디지털 사용 역량 ····· 129
표 Ⅳ-4-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 132
표 Ⅳ-4-2.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 133
표 Ⅳ-4-3.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 135
표 Ⅳ-4-4. 체벌 경험여부_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 136
표 Ⅳ-4-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 ····· 137
표 Ⅳ-4-6.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 ····· 139
표 Ⅳ-4-7.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2017~2021년) ····· 141
표 Ⅳ-4-8.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 141
표 Ⅳ-4-9.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 142
표 Ⅳ-4-10.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2022년) ····· 143
표 Ⅳ-4-11.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례판단 결과(2022년) ····· 143
표 Ⅳ-4-12. 아동학대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2022년) ····· 144
표 Ⅳ-4-13.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증가율 ····· 144
표 Ⅳ-4-14.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145
표 Ⅳ-4-15.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 145
표 Ⅳ-4-16.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 146

표 Ⅳ-4-17.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 146
표 Ⅳ-4-18.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 148
표 Ⅳ-4-19. 방임_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 149
표 Ⅳ-4-20.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 150
표 Ⅳ-4-21.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 152
표 Ⅳ-4-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007~2022년) ····· 153
표 Ⅳ-4-23.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2016~2022년) ····· 153
표 Ⅳ-4-24. 대상별 서비스 제공 실적 ····· 154
표 Ⅳ-4-25.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 피해아동 상황 (2016~2022년) ····· 155
표 Ⅳ-5-1.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2016~2022년) ····· 159
표 Ⅳ-5-2.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6~2022년) ····· 160
표 Ⅳ-5-3.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1)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8~2022년) ····· 161
표 Ⅳ-5-4.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 (2017~2021년) ····· 162
표 Ⅳ-5-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2015~2022년) ····· 163
표 Ⅳ-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2021년) ····· 163
표 Ⅳ-5-7.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현황(2023년 8월 기준) ····· 164
표 Ⅳ-5-8.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 165
표 Ⅳ-5-9.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2016~2022년) ····· 166
표 Ⅳ-5-10.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16~2022년) ····· 167
표 Ⅳ-5-11.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2015~2021년) ····· 168
표 Ⅳ-5-12.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1) 현황(2017~2022년) ····· 168
표 Ⅳ-5-13.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보호아동 수(2015~2021년) ···· 169
표 Ⅳ-5-14. 가출 여부 ····· 169
표 Ⅳ-5-15. 가출한 주된 이유 ····· 170
표 Ⅳ-5-16.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 171

표 Ⅳ-5-17.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2011~2022년) ····· 172
표 Ⅳ-5-18. 가출 후 이용한 기관 ····· 172
표 Ⅳ-5-19.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 174
표 Ⅳ-5-20. 2022년도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 175
표 Ⅳ-5-21.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배점 ····· 177
표 Ⅳ-5-22. 아동생활시설 영역별 평가점수 ····· 177
표 Ⅳ-6-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2013~2023년) ····· 180
표 Ⅳ-6-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2017~2023년) ····· 180
표 Ⅳ-6-3.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현황(2013~2022년) ····· 181
표 Ⅳ-6-4.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2019~2023년) ····· 181
표 Ⅳ-6-5.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2019~2023년) ····· 182
표 Ⅳ-6-6. 연도별 영아사망률(2017~2022년) ····· 183
표 Ⅳ-6-7.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2017~2022년) ····· 184
표 Ⅳ-6-8. 사고 사망률(2017~2022년) ····· 185
표 Ⅳ-6-9.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2018~2022년) ····· 185
표 Ⅳ-6-10.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1)(2018~2022년) ····· 187
표 Ⅳ-6-11.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 189
표 Ⅳ-6-1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 191
표 Ⅳ-6-13. 보건교사 배치현황(2018~2022년) ····· 192
표 Ⅳ-6-14.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율(2016~2022년) ····· 192
표 Ⅳ-6-15.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운영 현황 ····· 194
표 Ⅳ-6-16.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 194
표 Ⅳ-6-17. Wee센터 및 Wee클래스, Wee스쿨 설치 현황 (2018~2022년) ····· 195
표 Ⅳ-6-18.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 195
표 Ⅳ-6-19.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소년 현황(2018~2021년) ····· 196
표 Ⅳ-6-20.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충족의료율(2016~2021년) ····· 197
표 Ⅳ-6-21.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충족의료율(2016~2021년) ····· 198
표 Ⅳ-6-22. 흡연율 추이(2018~2022년) ····· 199
표 Ⅳ-6-23. 음주율 추이(2018~2022년) ····· 199
표 Ⅳ-6-24.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 200

표 Ⅳ-6-25.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 202
표 Ⅳ-6-26. 수면시간 ····· 203
표 Ⅳ-6-27. 수면 부족 여부 ····· 205
표 Ⅳ-6-28.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 206
표 Ⅳ-6-29. 수면이 부족한 이유(복수응답: 1+2순위) ····· 207
표 Ⅳ-6-30.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율(2018~2022년) ····· 209
표 Ⅳ-6-31 자살 생각 여부 ····· 211
표 Ⅳ-6-32. 자살 생각 이유 ····· 212
표 Ⅳ-6-33.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 214
표 Ⅳ-6-34.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 215
표 Ⅳ-6-35.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 216
표 Ⅳ-6-36. 행복한 정도 ····· 217
표 Ⅳ-6-37. 행복하지 않은 이유 ····· 219
표 Ⅳ-6-38. 삶의 만족도 ····· 220
표 Ⅳ-6-39. 주관적 안녕감(CW-CWBS) ····· 222
표 Ⅳ-6-40.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224
표 Ⅳ-6-41.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225
표 Ⅳ-6-42.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 226
표 Ⅳ-6-43. 고민거리 대화상대 ····· 227
표 Ⅳ-6-44. 어려운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는 사람 ····· 228
표 Ⅳ-6-45.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비율 (사회적 지지체계) ····· 229
표 Ⅳ-6-46. 아동빈곤율(2016~2020년) ····· 231
표 Ⅳ-6-4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017~2022년) ····· 232
표 Ⅳ-6-48. 한부모가구 비율(2016~2021년) ····· 233
표 Ⅳ-6-49.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 (2017~2021년) ····· 233
표 Ⅳ-6-50.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예산(2019~2023년) ····· 234
표 Ⅳ-6-51.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현황 및 이용 아동 수 (2017~2021년) ····· 235
표 Ⅳ-6-52. 디딤씨앗통장 저축현황(2017~2021년) ····· 236
표 Ⅳ-7-1.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 238
표 Ⅳ-7-2. 교원 1인당 학생 수(2011~2022년) ····· 240
표 Ⅳ-7-3. 학급당 학생 수(2011~2022년) ····· 240

표 Ⅳ-7-4.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국제비교 ····· 241
표 Ⅳ-7-5.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242
표 Ⅳ-7-6.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 243
표 Ⅳ-7-7.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12~2022년) ····· 244
표 Ⅳ-7-8. 학업중단 생각 경험 ····· 245
표 Ⅳ-7-9. 학업중단 생각 이유 ····· 246
표 Ⅳ-7-10.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 248
표 Ⅳ-7-11.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 249
표 Ⅳ-7-12.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 ····· 251
표 Ⅳ-7-1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 253
표 Ⅳ-7-14. 15~29세 청년 직업교육(훈련) 경험(2018~2023년) ····· 254
표 Ⅳ-7-15.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2017~2022년) ····· 255
표 Ⅳ-7-16. 직업계고 졸업자 졸업 후 상황(2020~2022년) ····· 256
표 Ⅳ-7-17.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257
표 Ⅳ-7-18.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258
표 Ⅳ-7-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2015~2022년) ····· 259
표 Ⅳ-7-20. 전국 공공체육시설 연도별 현황(2010~2021년) ····· 260
표 Ⅳ-7-21.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1) 공공도서관 ····· 261
표 Ⅳ-7-22.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 263
표 Ⅳ-7-23.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 264
표 Ⅳ-7-24.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 266
표 Ⅳ-7-25.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 ····· 268
표 Ⅳ-7-26.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복수응답) ····· 269
표 Ⅳ-7-27.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 270
표 Ⅳ-7-28. 평일 여가시간 ····· 271
표 Ⅳ-7-29. 평일 학습 시간 ····· 273
표 Ⅳ-8-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 278
표 Ⅳ-8-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 279
표 Ⅳ-8-3.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2017~2021년) ····· 280
표 Ⅳ-8-4.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 281
표 Ⅳ-8-5.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2020~2022년) ····· 282

표 Ⅳ-8-6.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2011~2022년) ····· 283
표 Ⅳ-8-7.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2010~2022년) ····· 284
표 Ⅳ-8-8.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2013~2021년) ····· 284
표 Ⅳ-8-9.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2008~2022년) ····· 285
표 Ⅳ-8-10.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차별 경험(2017~2022년) ····· 286
표 Ⅳ-8-11. 이주아동 구금현황(2015~2022년) ····· 287
표 Ⅳ-8-12.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2011~2022년) ····· 288
표 Ⅳ-8-13.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 현황(2012~2021년) ····· 289
표 Ⅳ-8-14.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2015~2021년) ····· 290
표 Ⅳ-8-15.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2016~2022년) ····· 291
표 Ⅳ-8-16. 소년수형자 징역형 형기별 인원 현황(2015~2021년) ····· 292
표 Ⅳ-8-17.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2011~2022년) ····· 293
표 Ⅳ-8-18.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수용 현황(2015~2021년) ····· 293
표 Ⅳ-8-19. 전국 소년원 연도별 수용 현황(2015~2021년) ····· 294
표 Ⅳ-8-20.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2014~2022년) ····· 296
표 Ⅳ-8-21. 소년보호 항고·재항고 사건 수 ····· 296
표 Ⅳ-8-22. 선도프로그램 이수 현황 ····· 297
표 Ⅳ-8-23.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현황(2014~2021년) ····· 298
표 Ⅳ-8-24.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 처분유형별 현황(2013~2021년) ····· 299
표 Ⅳ-8-25.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 형태(2016~2021년) ····· 300
표 Ⅳ-8-26.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2015~2021년) ····· 301
표 Ⅳ-8-27.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2015~2021년) ····· 301
표 Ⅳ-8-28.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2010~2021년) ····· 302
표 Ⅳ-8-29.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2019~2022년) ····· 305
표 Ⅳ-8-30. 청소년 실업률 추이(2000~2022년) ····· 306
표 Ⅳ-8-31.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306
표 Ⅳ-8-32.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 ····· 308
표 Ⅳ-8-3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과 도움정도 ····· 310
표 Ⅳ-8-34.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2012~2021년) ····· 311
표 Ⅳ-8-35. 주요 지검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2015~2022년) ····· 312

표 Ⅳ-8-36. 성폭력·성착취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 314
표 Ⅳ-8-37.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실적(2013~2022년) ····· 315
표 Ⅳ-8-38.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 316
표 Ⅳ-8-39.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황(2015~2022년) ····· 317
표 Ⅳ-8-40.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 (2014~2021년) ····· 318
표 Ⅴ-3-1. 심층면담 개요 ····· 341
표 Ⅴ-3-2. 심층면접의 면접내용 프레임 ····· 342
표 Ⅴ-3-3. 면담 참여자 주요 정보 ····· 343
표 Ⅴ-3-4. 심층면담 분석 결과 ····· 345
표 Ⅴ-3-5.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생애경험 주제의 범주 및 하위범주 ····· 346
표 Ⅴ-3-6. 부정적 경험에 대한 도움과 회복 부재 주제의 범주 및 하위범주 ····· 358
표 Ⅴ-3-7. 중첩된 취약성과 부정적 악순환의 결과 주제의 범주 및 하위범주 ····· 362
표 Ⅴ-3-8. 부정적 경험의 완충재와 회복탄력성 주제의 범주 및 하위범주 ····· 372
표 Ⅴ-3-9. 예방과 회복을 위한 방향 주제의 범주 및 하위범주 ····· 379
표 Ⅴ-4-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노동권 관련 조항 ····· 388
표 Ⅴ-4-2.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견해 정리 ····· 389
표 Ⅴ-4-3. 아동·청소년 노동관련법과 주 내용 ····· 392
표 Ⅴ-4-4. 아동·청소년 노동 관련법 주요 개정 내용 ····· 394
표 Ⅴ-4-5. 아동·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 395
표 Ⅴ-4-6. 아동·청소년 노동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 ····· 396
표 Ⅴ-4-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중 청소년 보호 주요 내용 ····· 398
표 Ⅴ-4-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쿠건법') 주요 내용 ····· 399
표 Ⅴ-4-9. 현장실습 제도 변화와 관련법 개정 내용(2017~2023년) ····· 400
표 Ⅴ-4-10.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 및 조례 현황 ····· 402
표 Ⅴ-4-11. 일·경험제도 참여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 ····· 405
표 Ⅴ-4-12. 아동·청소년 법적 정의 ····· 407
표 Ⅴ-4-13.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 주요 사례 ····· 408
표 Ⅴ-4-14. 아동·청소년 노동권 관련 실태조사 목적과 내용 ····· 410
표 Ⅴ-4-15. 청소년 종합보호대책 중 아동·청소년 노동 주요 대책 ····· 412

표 Ⅴ-4-16. 중앙정부와 민간 단체의 노동인권교육 현황 ····· 414
표 Ⅴ-4-17. ILO 노동입법 가이드라인 ····· 418
표 Ⅵ-2-1. 문헌연구의 주요내용·시사점 및 정책제언 ····· 426
표 Ⅵ-2-2. 인권지표연구 주요 내용·시사점·정책제언 ····· 429
표 Ⅵ-2-3. 심층분석 주요 내용·시사점·정책제언 ····· 432
표 Ⅵ-2-4. 그 외 전문가 자문 및 콜로키움 개최 등 연구과정의 주요내용·시사점·정책제언 ····· 433
표 Ⅵ-3-1. 세부 정책 과제-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 ····· 437
표 Ⅵ-3-2. 세부 정책 과제-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 ····· 438
표 Ⅵ-3-3.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 ····· 439
표 Ⅵ-3-4. 캐나다의 2019 아동·청소년 건강조사(CHSCY) 설문 문항 (15~17세) ····· 440
표 Ⅵ-3-5. 한국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측정 문항(안) ····· 441
표 Ⅵ-3-6. 소수자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과제의 추진사항 ····· 442
표 Ⅵ-3-7.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출생등록 관련 최종견해(권고) ····· 444
표 Ⅵ-3-8.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관련 최종견해 ····· 445
표 Ⅵ-3-9. 보편적 출생등록 시행 및 위기 영유아 가구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 445
표 Ⅵ-3-10.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학대 대응 관련 권고 ····· 447
표 Ⅵ-3-11. 아동학대에 대한 차등적 대응(DR) 강화 과제의 추진사항 ····· 448
표 Ⅵ-3-1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헤이그 협약 비준 관련 권고 ····· 449
표 Ⅵ-3-1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원 입안 내용 비교 ····· 450
표 Ⅵ-3-14.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과제의 추진사항 ····· 451
표 Ⅵ-3-15. 코로나19 이후 신체·정신적 변화 모니터링 및 개입 과제의 추진사항 ····· 453
표 Ⅵ-3-16.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여가 및 문화활동 관련 권고 ····· 454
표 Ⅵ-3-17. 아동·청소년 문화스포츠 바우처 도입 과제의 추진사항 ····· 455
표 Ⅵ-3-18.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관련 권고 ····· 456
표 Ⅵ-3-19.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일할 권리보장 과제의 추진사항 ····· 457

표 Ⅵ-3-20.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 ····· 458
표 Ⅵ-3-21. 행복 저해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 과제의 추진사항 ····· 460
표 Ⅵ-3-2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예방적 및 회복적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 462
표 Ⅵ-3-23.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학교 폭력 및 사이버 괴롭힘 관련 권고 ····· 463
표 Ⅵ-3-24. 학교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폭력 예방 및 회복적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 464
표 Ⅵ-3-25.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공공의료 및 의료격차 해소 관련 권고 ····· 466
표 Ⅵ-3-26. 지역 간 의료서비스 및 접근성 격차 해소 과제의 추진사항 ····· 467
표 Ⅵ-3-27.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보장 감독·조정 거버넌스 구축 과제의 추진사항 ····· 469
표 Ⅵ-3-28. 기후변화 관련 교육 및 활동 개발 과제의 추진사항 ····· 471

그림 목차

그림 Ⅰ-2-1. 이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도식 ····· 5
그림 Ⅰ-2-2.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방법 및 내용 ····· 9
그림 Ⅰ-3-1. 연구 내용 및 방법에 관한 흐름도 ····· 15
그림 Ⅱ-2-1. KCI 등재지 기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목, 초록, 본문에 포함된 299건의 연구 제목 Word Cloud ····· 21
그림 Ⅱ-2-2. KCI 등재지 기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목, 초록, 본문에 포함된 299건의 연구들의 발간 시기별 건수 히스토그램 ····· 22
그림 Ⅱ-2-3. KCI 등재지 기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들어간 저작의 시기별 제목 Word Cloud ····· 23
그림 Ⅱ-2-4. KCI 등재지 기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연대별 언급된 조항 및 논문 수(중복) ····· 29
그림 Ⅱ-2-5. KCI 등재지 기준 '유엔아동권리협약'관련 연구의 전공분야 ····· 30
그림 Ⅱ-2-6. KCI 등재지 기준 '유엔아동권리협약'관련 연구의 세부대상 ····· 31
그림 Ⅲ-4-1. 증거기반 인권 모니터링 과정 개념도(구조, 과정, 결과 활용) ····· 69
그림 Ⅳ-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연도별 추이) ····· 83
그림 Ⅳ-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_전체 영역(연도별 추이) ····· 84
그림 Ⅳ-2-3.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연도별 추이) ····· 85
그림 Ⅳ-2-4.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연도별 추이) ····· 86
그림 Ⅳ-2-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연도별 추이) ····· 87
그림 Ⅳ-2-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 88
그림 Ⅳ-2-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연도별 추이) ····· 89

그림 Ⅳ-2-8. 인권의식 및 태도_아동·청소년의 참여 관련 인식 (연도별 추이) ····· 91
그림 Ⅳ-2-9. 인권의식 및 태도_차별 관련 인식(연도별 추이) ····· 94
그림 Ⅳ-2-10. 인권교육 경험(연도별 추이) ····· 95
그림 Ⅳ-2-11.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연도별 추이) ····· 98
그림 Ⅳ-2-12. 차별 경험(연도별 추이) ····· 101
그림 Ⅳ-3-1.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의견 존중 정도) (연도별 추이) ····· 105
그림 Ⅳ-3-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연도별 추이) ····· 107
그림 Ⅳ-3-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연도별 추이) ····· 108
그림 Ⅳ-3-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연도별 추이) ····· 109
그림 Ⅳ-3-5.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연도별 추이) ····· 113
그림 Ⅳ-3-6.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연도별 추이) ····· 114
그림 Ⅳ-3-7.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연도별 추이) ····· 115
그림 Ⅳ-3-8.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연도별 추이) ····· 116
그림 Ⅳ-3-9.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연도별 추이) ····· 117
그림 Ⅳ-3-10.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연도별 추이) ····· 119
그림 Ⅳ-3-11.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 (연도별 추이) ····· 119
그림 Ⅳ-3-12.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 (연도별 추이) ····· 121
그림 Ⅳ-3-13.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연도별 추이) ····· 123
그림 Ⅳ-4-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연도별 추이) ····· 133
그림 Ⅳ-4-2.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 (연도별 추이) ····· 134
그림 Ⅳ-4-3.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 135
그림 Ⅳ-4-4. 체벌 경험여부_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연도별 추이) ····· 136
그림 Ⅳ-4-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 138
그림 Ⅳ-4-6.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 140
그림 Ⅳ-4-7.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 142
그림 Ⅳ-4-8.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연도별 추이) ····· 147

그림 Ⅳ-4-9.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 148
그림 Ⅳ-4-10. 방임_3)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연도별 추이) ····· 150
그림 Ⅳ-4-11.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 151
그림 Ⅳ-4-12.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 152
그림 Ⅳ-4-13.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 결과 (연도별 추이) ····· 155
그림 Ⅳ-5-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3~19세) 연도별 추이 ····· 158
그림 Ⅳ-5-2. 방과후학교 교급별 만족도(2017~2022년) ····· 161
그림 Ⅳ-5-3.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연도별 추이) ····· 162
그림 Ⅳ-5-4. 다함께돌봄 이용자 만족도 ····· 164
그림 Ⅳ-5-5.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 ····· 165
그림 Ⅳ-5-6.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추이(2013~2022년) ····· 166
그림 Ⅳ-5-7. 가출 여부: 학교급별(연도별 추이) ····· 170
그림 Ⅳ-5-8. 가출 후 이용한 기관: 전체(연도별 추이) ····· 173
그림 Ⅳ-5-9.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연도별 추이) ····· 174
그림 Ⅳ-6-1.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범죄 유형별 건수, 성별 비율) ····· 187
그림 Ⅳ-6-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2013~2023년) ····· 190
그림 Ⅳ-6-3.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2013~2023년) ····· 190
그림 Ⅳ-6-4.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2011~2023년) ····· 201
그림 Ⅳ-6-5.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학교급별) ····· 201
그림 Ⅳ-6-6.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2011~2023년) ····· 202
그림 Ⅳ-6-7. 수면 시간(2011~2023년) ····· 204
그림 Ⅳ-6-8. 수면 부족 여부(2013~2023년) ····· 205
그림 Ⅳ-6-9. 비만도 현황(2018~2022년) ····· 208
그림 Ⅳ-6-10. 인구 십만명 당 10~19세 자살률(2018~2022년) ····· 210
그림 Ⅳ-6-11. 자살 생각 여부(2011~2023년) ····· 211
그림 Ⅳ-6-12. 우울정도 항목별 조사결과 ····· 213
그림 Ⅳ-6-13.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2013~2023년) ····· 214

그림 Ⅳ-6-14.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2013~2023년) ····· 215
그림 Ⅳ-6-15.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2013~2023년) ····· 216
그림 Ⅳ-6-16. 행복한 정도(2013~2023년) ····· 218
그림 Ⅳ-6-17. 학교급별 행복하지 않은 이유 ····· 219
그림 Ⅳ-6-18. 삶의 만족도(2015~2023년) ····· 221
그림 Ⅳ-6-19. 자아존중감 항목별 조사결과 ····· 223
그림 Ⅳ-6-20.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013~2023년) ····· 224
그림 Ⅳ-6-21.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2013~2023년) ····· 225
그림 Ⅳ-6-22.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2013~2023년) ····· 226
그림 Ⅳ-6-23. 사회적 고립감 4개 문항 결과(UCLA 외로움 척도) ····· 230
그림 Ⅳ-6-2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고립된 기간 응답 ····· 230
그림 Ⅳ-7-1. 학업중단 생각 경험(연도별 추이) ····· 245
그림 Ⅳ-7-2.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 248
그림 Ⅳ-7-3.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연도별 추이) ····· 249
그림 Ⅳ-7-4.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연도별 추이) ····· 252
그림 Ⅳ-7-5.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연도별 추이) ····· 254
그림 Ⅳ-7-6.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1) 공공도서관 (연도별 추이) ····· 262
그림 Ⅳ-7-7.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2) 청소년수련시설 (연도별 추이) ····· 262
그림 Ⅳ-7-8.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3) 체육시설(연도별 추이) ····· 265
그림 Ⅳ-7-9.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4) 문화 예술 공간 (연도별 추이) ····· 267
그림 Ⅳ-7-10.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연도별 추이) ····· 268
그림 Ⅳ-7-11. 평일 여가시간(연도별 추이) ····· 272
그림 Ⅳ-7-12. 평일 학습 시간(연도별 추이) ····· 274
그림 Ⅳ-8-1.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 279
그림 Ⅳ-8-2.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2011~2022년) ····· 288
그림 Ⅳ-8-3.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304

그림 Ⅳ-8-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 307
그림 Ⅳ-8-5. 아르바이트시 청소년의 주요 부당처우 경험률 ····· 308
그림 Ⅳ-8-6.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연도별 추이) ····· 310
그림 Ⅴ-2-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지표 변화 추이 ····· 327
그림 Ⅴ-2-2.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 ('그렇다' 비율) 추이 ····· 328
그림 Ⅴ-2-3. 폭력 및 학대 지표 변화 추이(부모, 학교 교사) ····· 329
그림 Ⅴ-2-4. 폭력 및 학대 지표 변화 추이(친구, 선후배, 온라인) ····· 330
그림 Ⅴ-2-5. 가출 여부 추이 ····· 331
그림 Ⅴ-2-6. 자살생각 여부 ····· 332
그림 Ⅴ-2-7. 학업중단 생각 여부 추이 ····· 333
그림 Ⅴ-2-8. 삶의 만족도(평균점수) 추이 ····· 334
그림 Ⅴ-2-9. 학교급별 삶의 만족도 추이 ····· 335
그림 Ⅴ-2-10. 외로움과 우울 관련 지표 변화 추이 ····· 336
그림 Ⅴ-3-1. 면접조사 연구수행과정 ····· 340
그림 Ⅵ-1-1. 제언 도출과정 ····· 425
그림 Ⅵ-3-1. 본 과제의 비전과 원칙 ····· 434
그림 Ⅵ-3-2. 본 과제의 비전, 원칙, 세부과제 ····· 435
그림 Ⅵ-3-3. OECD 국가들의 영아 사망률(2018년 혹은 가장 최근 자료) ····· 443
그림 Ⅵ-3-4. 사회적 고립감 4개 문항 결과(UCLA 외로움 척도) ····· 459
그림 Ⅵ-3-5. 인구 10만명 당 생애주기별 의료자원 수(2021년) ····· 465
그림 Ⅵ-3-6. 지역유형별 의료접근성(2020년) ····· 466
그림 Ⅵ-3-7. 일반논평 26호 관련 아동·청소년 친화적 설명자료 (UN인권조약기구) ····· 470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보고서의 구성

1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행 실태를 양적·질적 방법을 통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①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② 인권 지표 프레임워크 중 직접 조사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 국가승인통계인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를 시행하여 직접 실증 데이터를 제공하며, ③ 심층연구를 통하여 양적·질적 방법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기초연구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증진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제언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이후 네 차례의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상징적인 문서로만 받아들여지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의견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가려져 있던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침해 문제의 개선에 점차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학교 내 체벌 문제, 놀이와 휴식 부족 문제 등 보편적인 문제에서부터 장애 아동의 교육권 문제, 난민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 등 광범위한 인권 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제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서는 대안보고서(alternative report)로서 NGO 보고서 및 아동보고서가 10여 건 제출되기도 하는 등 시민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김영지, 최홍일,

1) 이 장은 유민상 연구위원,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유성렬, 이은주, 2022).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그동안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실증 데이터를 생산하고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기여를 해왔다. 이 연구에서 생산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2009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으며, 여러 정책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청소년통계, 제1차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계,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통계청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 등에서 이 연구의 지표를 활용하여 정책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과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권리를 모니터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인권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제25호), 기후위기 속에서의 아동권리 보호(제26호) 등 기존의 권리보장 프레임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각 국가의 관심과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에 대한 측정은 기존의 틀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과, 기후변화 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현실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새로운 문제 속에서 오래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 문제, 시민적 권리문제에 대한 개선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교정시설 아동·청소년, 수용자 자녀, 미등록 이주아동, 베이비박스 아동, 성 소수자 아동·청소년,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들이 인권 침해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김영지 외, 2022).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함께 오래되었지만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함께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번 연구에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기존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의 성과, 함의, 발전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둘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5호를 분석하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셋째, 지표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행정자료를 통해 각 지표를 취합하여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 백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넷째,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심층분석을 시행한다. 올해는 양적연구로 인권과 행복, 질적연구로 중첩된 취약성과 다중적 인권 침해 경험, 정책분석으로 아동·청소년 노동의 문제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다섯째로, 앞선 분석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지표를 통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분석으로 설문조사 및 행정통계를 활용한 인권 수준 분석이고, 둘째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및 개선방안 분석이다. 셋째는 이 두 가지 분석을 통해 도출한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이다.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축은 지표를 통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분석은 국가승인통계(제402001호)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직접 시행하여 분석하고, 이외의 지표들은 행정자료들을 활용하여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다. 이는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의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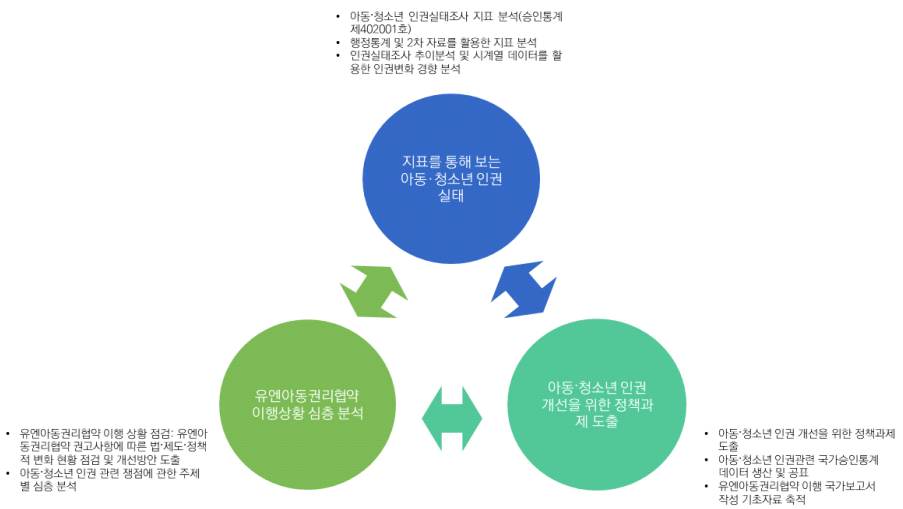


그림 Ⅰ-2-1. 이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도식

다음으로 두 번째 축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및 개선방안 분석으로 인권 관련 법, 제도, 정책 등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최종견해)이 반영되고 있는지,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을 기초로 한 향후 인권개선 과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심층(in-depth) 연구 혹은 주제별 연구의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은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대응해야 할 과제를 도출한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표를 통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분석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개선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기본틀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기준의 인권영역 구분에 기반하고 있다(김영지 외, 2022).[2] 이와 함께 유엔최고대표사무소의 인권지표(Human Rights Indicators, 구조, 과정, 성과 지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지표(SDGs) 등 다른 인권 관련 지표를 반영하여 보완하고 있다(김영지, 유설희,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1: 8).

이번 연구에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측정 프레임워크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연구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올해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표체계를 유지하고 미시적 수정만 진행하였다. 연구진이 기획한 두 가지 차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영역의 반영이다. 연구진은 아동·청소년 인권 환경변화 및 국제적 인권 동향을 반영하여 지표체계를 수정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기준에 맞추어 해당 지표를 추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5호(디지털 환경)와 26호(기후변화) 관련 지표의 생산은 필요하나 지표체계의 특정 영역에 추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구진은 기존 프레임워크를 일부 수정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차년도 과제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프레임으로의 전환이다(유민상 외, 2022). 기존 지표체계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삶의 질 관점을 일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연구 프레임워

2)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CRC/C/58/Rev.3

크와 유사하나, 아동·청소년의 발달 성과(outcome)와 각 생태체계의 인권상황을 프레임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구상하였다. 발달 성과의 결과는 주관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감정, 삶의 의미), 외로움, 고립감 등의 주관적 지표(subjective indicators)이며 환경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과 기후환경 등 거시적 환경을 포괄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상을 담고 차년도에 프레임을 추가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3장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측정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에 정리하였다.

(2) 조사도구 보완 및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생산

앞에서 살펴 본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개선은, 반복횡단지표의 안정적인 생산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되 현재까지의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서 일부를 삭제, 변경,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의 발달성과로서의 사회적 고립, 거시적 환경으로서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등이다.

2022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체계는 7개 대분류, 24개 중분류, 51개 소분류 하에 총 115개 지표로 구성되었다(김영지 외, 2022). 전체 115개 지표 중 행정통계 등 2차 자료를 통해 생산되는 지표는 73개이고,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생산되는 지표는 42개이다(김영지 외, 2022). 2023년 연구에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미생산 지표 등을 삭제하여 조금 더 간명한 지표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행정통계 등 2차 자료를 통해 생산되는 73개 지표는 타 승인통계 자료 및 정부부처의 생산 자료를 바탕으로 지표결과를 생산하였다.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생산되는 42개 지표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통계청 승인통계 제402001호) 자료이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및 개선방안 분석

(1) 선행연구 분석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관련한 국내 연구들을 체계적 문헌연구 방법을 통하여 제시하였고, 연구주제범위 검토를 통해 주요 주제, 항목, 대상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심층분석에서는 청소년 노동과 관련하여 정책분석을 시행하였다.

(2)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25호(General Comment no.25 (2021)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당사국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아직 일반논평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나 권리보장 방안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황이다. 여기서는 일반논평 제25호의 내용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정리하여 이러한 지식 격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3) 심화분석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심화분석 및 협약 이행 분석을 결합하여 심화분석을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첫째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수준과 아동·청소년의 행복 간의 관계 연구로 양적연구를 통해 인권보장이 당사자들에게 주는 이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는 향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불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행복할 권리'에 대한 시사점 제공과 주관적 웰빙을 발달성과로 설정하는 인권 측정 프레임워크 구성에 근거가 될 것이다. 둘째는 아동·청소년이 가진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 간의 관계로 청년에 대한 회고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반복횡단조사로 인권보장에 취약한 대상을 개인의 내적 속성으로 규정짓지만, 개인의 생활에서의 취약성은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누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에게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지금까지의 영향에 대해 질문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인권보장 정책이 개인 중심적, 통합적으로 마련되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는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 사각지대 발생 원인과 향후 과제로 정책분석 방법으로 청소년 노동의 문제와 정책 공백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3)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및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첫째는 우리나라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클러스터 중심 정책방안이다. 제7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및 대안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이행방안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둘째는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방안이다. 인권 모니터링 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함께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정책제언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로 구성된다. 질적연구는 문헌연구, 면접조사가 포함되고, 양적연구는 인권실태조사 설문과 2차 데이터 분석이 포함된다. 2차 데이터 분석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과거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다. 이외에 전문가 자문, 포럼, 콜로키움, 정책연구협의회 등 논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를 도식화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Ⅰ-2-2.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방법 및 내용

3. 연구방법

1) 문헌분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하여 국내외 학술연구 및 법제도 관련 문서를 정리하였다. 이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학술연구에 대한 체계적 리뷰이다. 학술연구에 대한 정리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국내 문헌을 진행하기 위하여 체계적 검토(systematic review)를 진행하였다. 국내에서 1990년대에서부터 시작된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연구 299건(KCI 등재지 기준)을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각종 행정통계에 대한 검토이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각종 행정통계 및 타 분야 통계자료원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아동·청소년 인권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general comment)에 대한 소개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25호(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와 26호(기후환경 변화 속에서의 아동권리) 등 새로운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논평을 발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 일반논평 25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이 과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법, 제도 관련 전문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가, 통계 지표 관련 전문가 등 다학제적인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각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구의 질적인 보완을 진행하고, 향후 정책 개발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 Ⅰ-3-1. 전문가 자문 진행 내용

구분	자문영역	자문진
1	(지표 및 설문 관련 자문) 인권지표체계 및 조사도구 수정·보완 관련 자문	학계 전문가, NGO 전문가, 정부 정책 관계자 등 총 10명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관련 자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관련 자문	
3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자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자문	

3) 설문조사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중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전년도에 이어 전국(세종시, 제주도 포함)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청소년들을 조사모집단으로 삼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를 실시하였다.[3)]

설문지 개편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년도 설문지를 바탕으로 설문지에서 삭제, 변경, 추가할 사항은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전년도 설문지는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7개 영역이었다. 이 문항들을 바탕으로 연구진 검토, 전문가 자문, 아동·청소년 프리테스트를 통해 삭제, 변경, 추가할 문항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특히 문항 추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기후 관련 문항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일부 문항을 추가하였다. 설문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총 2종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초안이 완성된 이후 통계청 행정자료 우선활용 판단 검토(4월 중순), 통계청 통계변경승인(4월 말~5월 초), 기관 연구윤리위원회 심의(4월 말~5월 초)를 거쳐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조사는 전문 리서치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표집은 먼저 2022년 한국교육통계DB를 표집틀로 하고 전국(세종시, 제주도 포함)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청소년들 9,000명을 목표 표본수로 설정하였다. 이후 교급 및 학교유형, 지역을 층화하고, 층화된 섹터에서 크기비례(PPS)방식으로 학교를 추출한 후 추출된 학교에서 1개 학년을 추출하고 추출된 학년에서 1개 학급을 추출한 뒤 추출된 학급의 청소년들을 모두 조사대상으로 하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의 조사협조 거절시에는 같은 층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최종 표본을 선정하여 대체하였다(강현철, 2023).

자료 수집은 2023년 5월 15일~7월 17일 사이에 소정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숙련된 면접원들이 표본으로 추출된 해당 학교의 학급을 약속된 일시에 방문하여 조사대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self-reported)식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코로나의 여파로 현장 방문조사가 힘들 경우 30% 이내에서 일부 우편조사도 병행하

3) 국가승인통계 결과보고를 위한 연구방법, 설문문항별 세부 기초통계 등은 별권으로 발행되는 '기초분석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였다. 이에 따라 총 8,79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에디팅, 검증, 프로그램에 의한 더블 펀칭 과정을 거쳐 데이터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2023년 9월까지 최종 데이터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사된 자료는 익년 1월에 통계청 KOSIS(www.kosis.kr)에 등록되어 지표별 결과가 대중에게 공개되며, 익익년 12월에 본원 NYPI 아카이브센터와 통계청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에 원자료(raw data)가 게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본 조사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사회지표 및 분석 자료로써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추진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도구 수정(4월) → 예비조사 겸 FGI(4월) → 조사도구 확정(4월) → 통계청 행정자료 우선활용 판단 검토(4월) → 통계청 변경승인(4~5월)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및 승인(4~5월) → 설문지 인쇄 및 조사원 교육(5월) → 조사 실시(5~7월) → 데이터클리닝 및 원자료 분석(8~9월) → KOSIS 입력(익년 1월) → 원데이터 공개(익익년 12월, NYPI 아카이브센터, MDIS 홈페이지).

표 Ⅰ-3-2.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비고
조사모집단	전국(세종, 제주 포함)의 초(4~6학년)·중(1~3학년)·고(1~3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표집틀	2022년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DB)	
목표표본수	9,000명	
조사완료수	8,796명	
표집방법	층화다단계집락표집(권역, 학교, 학년)	
조사시기	2023년 5월~7월 (조사주기: 매년 5~7월)	
조사방법	학교 방문 대면조사 및 일부 우편조사 병행	
비고	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1년 주기 생산) 2023년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진행 완료(5년 주기)	

아울러 올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통계청에서 국가 승인통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품질진단을 완료하였다. 2023년 통계청의 정기품질진단은 (1) 2023년 2월 통계정보보고서 초안 및 마이크로데이터 작성 및 업로드 → (2) 3월~4월 통계청

1차진단 후 통계정보보고서 보완 → (3) 4월~7월 통계청 2차진단 후 통계정보보고서 보완 → (4) 6월~9월 간담회 전 일주일간 진단결과 이의제기 → (5) 6월~9월 진단결과 간담회(작성기관/진단연구진/통계청) → (6) 8월~11월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제출, 진단결과 보고서 제공 → (7) 11월~12월 진단결과 기관통보 수령(작성기관/통계청) → (8) 12월~2024년 1월 개선과제 이행계획 수립의 일정대로 진행되었다(통계청, 한국통계진흥원, 2023). 연구진은 정기품질진단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해 수용하여 앞으로 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정책포럼, 콜로키움 개최

연구진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진행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회의 및 포럼을 진행하였다.

먼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는 부처와의 협의를 위하여 통계청 통계개발원과 진행하였으며, 개별 정책방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인권위,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평가본 제출 후 정책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논의 확산 및 공유,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하여 정책포럼 및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포럼은 성북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함께 새로운 지원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고립' 관련한 포럼을 진행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관련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아동·청소년 인권 관점에서의 접근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성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고립과 인권보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1차 콜로키움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학습권과 노동권 보장 실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수정 노무사의 발표와 이승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2차 콜로키움은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 관련 해외학자의 연구결과 및 한국에의 함의를 논의하였다. 특히 인권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관한 심층 연구와 연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Ferran Casas 명예교수(스페인 Girona 대학)와 Robert Rudolf 교수(고려대학교)가 참여하여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관련 국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한국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

였다. 3차 콜로키움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5호와 관련된 콜로키움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와 관련된 논의로 진행하였다. 오연주 책임연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발표로 진행되었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이제 한국사회에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과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시장, 정부 등에서의 접근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4차 콜로키움은 성소수자 청소년의 권리보장 현황 및 과제로 진행하여 현재까지의 인권 사각지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호림 박사(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의 발표로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계자료 생산 등에 대해 추가적 토론을 진행하였다. 5차 콜로키움은 26호 관련 콜로키움으로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기후변화와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포럼과 콜로키움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이 연구의 분석과 정책 방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Ⅰ-3-3. 정책포럼 및 콜로키움 개최(안)

구분	주요내용	발표자	시기
포럼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현황 및 대응방안 ※ 성북구청,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개최	조미형 박사 (협동조합 함께하는 연구) 유민상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3.4.25
1차 콜로키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학습권과 노동권 보장실태	이수정 노무사 이승렬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23.6.12
2차 콜로키움	Measuring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to have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Ferran Casas 명예교수 (스페인 Girona 대학) Robert Rudolf 교수 (고려대학교)	'23.6.16
3차 콜로키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오연주 책임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3.7.27
4차 콜로키움	성소수자 청소년의 현황 및 국가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에서의 성소수자 정체성 측정 필요성	이호림 박사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23.8.4
5차 콜로키움	기후변화와 아동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6호의 의미와 적용	배건이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23.8.10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의 내용, 방법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도식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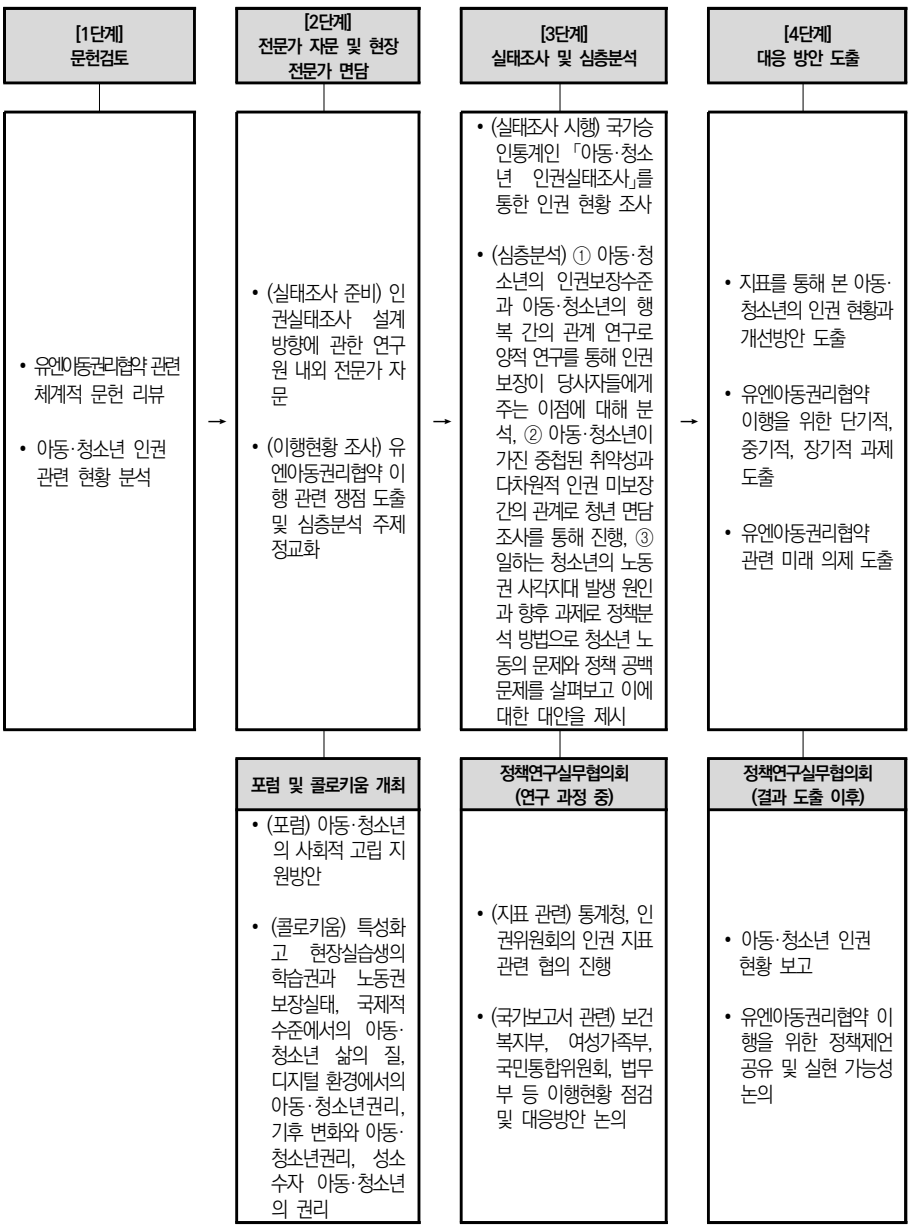


그림 Ⅰ-3-1. 연구 내용 및 방법에 관한 흐름도

4.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을 소개하고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2장은 이론적 배경 부분으로 문헌연구를 토대로 체계적 문헌리뷰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5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연구간 지식격차(knowledge gap)를 연차별 연구 진행 추이, 연차별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 저널의 전문영역, 세부 분석대상 등을 통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5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General Comments No.25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관련 내용은 해당 일반논평의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 정리하고, 정책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3장은 인권지표 프레임워크 및 아동인권실태조사의 측정문항 개요로 이 보고서에서 인권지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떠한 문항을 직접 측정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 장은 원래 4장과 함께 보고되었으나 가독성을 위해 분리하여 설명하였다.

4장은 본 보고서의 핵심적인 파트로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 인권 부분이다. 방대한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현실이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여준다.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순서대로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5장은 심층연구 파트로 단편적 지표를 통해서만 확인하기 어려운 방법들을 활용하여 인권 상황을 진단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행복 지표와 인권 지표와의 시계열적 관계, 아동·청소년의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침해, 그리고 아동·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의 주제로 작성되었다.

6장은 정책제언 파트로 방대한 지표와 분석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제언 하였다. 문헌검토, 지표를 통한 이행 모니터링, 심층 연구, 전문가 자문 및 포럼, UNCRC 최종견해 등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세부정책과제와 추진기간, 관련부처 등을 명시하여 향후 실현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제2장 아동·청소년 인권연구 및 정책동향

1. 개요
2.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연구 동향: 체계적 검토
3.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동향: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아동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5호
4. 시사점: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2 아동·청소년 인권연구 및 정책동향[4)]

1. 개요

이 장의 목적은 아동·청소년 인권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아동·청소년 인권연구가 걸어온 길이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떠한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장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중 제25호의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선행연구 분석은 체계적 리뷰(systematic review) 중 하나인 스코핑 리뷰(scoping review) 방식을 채택하였다. 스코핑 리뷰는 연구범위 검토를 통해 지금까지 연구의 동향과 현재 상황과의 지식격차를 살펴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아동권리협약 관련 연구들의 주제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해 시기별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상황과 연구 간의 지식격차가 어떠한지 조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5호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디지털 기기와 매체중독 혹은 게임중독을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를 다루어왔다. 하지만 일반논평 제25호는 디지털 환경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더 포괄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4) 이 장의 1절 개요, 2절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연구 동향, 4절 시사점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절은 오연주 책임연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부집필진)이 작성하였다.

2.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연구 동향: 체계적 검토

1) 체계적 검토 개요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96개국의 조인과 22개국의 비준(1990년 8월 4일 현재) 절차를 마치고 9월 초에 공식 발효가 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기쁜 마음 누를 길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한 거대한 전진인 동시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윤구, 1990,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국제법 발효에 즈음하여-, 머리말 中)"*

우리나라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 연구 중 최초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다룬 이윤구(1990)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국제법 발효에 즈음하여」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발효를 '인류 역사의 한 거대한 전진인 동시에 획기적인 이정표'로 표현하였다. 33년 전 그가 기대한 세상과 지금의 현실은 얼마나 가까울까? 그는 같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예견하기도 하였다.

> *"국제협약이 아무리 훌륭한 국제법이라고 해도 우리 정부와 국민이 이 법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윤구, 1990,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국제법 발효에 즈음하여-, 국제협약과 한국의 과제 中)"*

이 절은 우리나라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국내 학계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어떻게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학계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어떠한 연구를 해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 학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2) 체계적 검토 방법

문헌 연구는 체계적 검토(systematic review) 중 하나인 스코핑 리뷰(scoping review)를 진행하여 방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중 어떠한 주제와 조항이 주로 연구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스코핑 리뷰는 주제범위 문헌검토로 불리는 방법으로 연구의 주제들을 분석하여 지식 격차(knowledge gap)가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밝히고 향후 해당 분야의 연구에서 지식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Munn, et al., 2018).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면 우리 사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된 영역이 무엇이며 어느 부분이 더 연구가 되어야 하는지 살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가 시행한 스코핑리뷰의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23년 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co.kr)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UNCRC'의 세 단어가 제목, 초록, 본문에 들어간 KCI 등재지기준 연구물들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들어간 연구 334건, '아동권리협약'이 들어간 연구 311건, 'UNCRC'가 들어간 연구 23건을 추출하였다. 이 중에서 중복연구 및 연관성이 적은 연구를 삭제하여 299건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들은 서지정보프로그램인 엔드노트(Endnote)를 통해 모든 문헌의 PDF 파일을 확보하였고, 각 문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림 II-2-1. KCI 등재지 기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목, 초록, 본문에 포함된 299건의 연구 제목 Word Cloud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의 측면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어떠한 조항을 인용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상징적 근거로서만 인용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 근거 조항이 각기 실현되고 발전·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우리나라 KCI 등재 학술지에 실린 연구논문들에 대한 스코핑 리뷰(주제범위 문헌검토) 결과이다.

3) 체계적 검토 분석 결과

(1) 전체 시기(1990~2022년)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299건 가운데 1990년대는 22건, 2000년대는 67건, 2010년대는 162건, 2020년대 초기는 78건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연구들이 양적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연구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패턴도 발견된다. 첫째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및 대안보고서 제출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권고의견) 발표 시기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 10년 시기(1999), 2차 국가보고서 제출 시기(2003), 3·4차 국가보고서 제출 시기(2011), 5·6차 국가보고서 제출 시기(2016) 등에서 관련 연구들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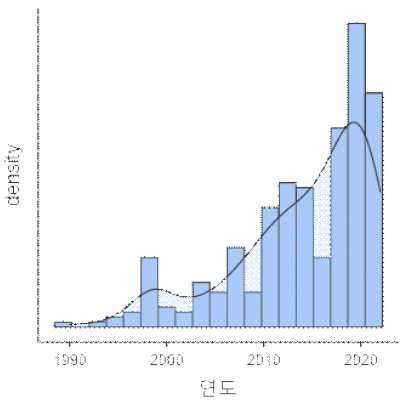


그림 II-2-2. KCI 등재지 기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목, 초록, 본문에 포함된 299건의 연구들의 발간 시기별 건수 히스토그램

둘째는 아동권리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제가 등장한 시기로서 2010년대 초반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시기, 2010년대 중후반의 아동학대 사건의 공론화 시기 등이었다. 이러한 시기적 특성과 함께 아동권리협약을 인용한 연구들은 2020년대까지 확대되어 온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각 시기별 연구들의 주제범위는 어떠한가?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의 흐름을 보면 연구들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초기 일반적인 논의에서 점차 분화된 논의와 전문화된 논의들로 확대되었다.



▲ 1990~1999년 저작 제목 Word Cloud ▲ 2000~2009년 저작 제목 Word Cloud

▲ 2010~2019년 저작 제목 Word Cloud ▲ 2020~2022년 저작 제목 Word Cloud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II-2-3. KCI 등재지 기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들어간 저작의 시기별 제목 Word Cloud

다음은 10년 단위로 연구 결과물을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10년 단위로 연구 결과를 나눈 것은 단순히 분석을 위한 편의상의 구분이다. 1990년대(1990년~1999년), 2000년대(2000년~2009년), 2010년대 (2010년~2019년), 2020년대 초기 (2020년~2022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1990년대(1990년~1999년)

1990년대에는 22건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1990년도에 이윤구가 작성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법 발효에 즈음하여' 연구를 시작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연구들이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1989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해외에서의 규범과 법제가 대한민국의 유엔가입과 함께 국내에 이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별로 볼 때 이 시기 연구들은 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소개를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가보고서 작성이나 협약 이행에 관한 내용들도 정리되어 있다(김현용, 1995; 노혜련, 1995; 이배근, 1997). 이후 소년소녀가장 지원의 대한 법제도적 문제점(문선화, 1998), 가족지원의 필요성(조흥식, 1998) 등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다양한 시각들도 등장하였다. 놀 권리와 멀티미디어(정현숙, 1997) 연구는 TV와 영화뿐만 아니라 전자게임, 컴퓨터 사용 등에 대해 연구한 선제적 연구로 볼 수 있고, 체육특기생의 인권 사각지대 문제(김정명, 1999) 연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체육특기생들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접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용된 조항별로 보면 제3조(아동 최상의 이익), 제5조(부모의 지도), 제18조(부모의 책임), 제27조(적절한 생활수준)는 3회씩 인용되었다. 제20조(가족이 없는 아동 보호), 제26조(사회보장제도) 등은 2회씩 인용되었다.

학술지별로 볼 때 「아동과 권리」,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청소년연구」, 「청소년학연구」 등 아동, 청소년 관련 학술지 등에서 주로 연구가 산출되었고, 법학논총(박균성, 1993), 국제인권법(김태천, 1996) 등 법학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초기에는 국제법적인 성격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상징적 의미로서, 그리고 사회복지적 개입의 근거로서 이해되고 활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2000년대(2000년~2009년)

2000년대에는 44건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2000년 조흥식이 작성한 '국가정책 측면에서의 아동 최선의 이익'과 김인숙이 작성한 'NGO 역할과 아동 최선의 이익'은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생겨났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김인숙, 2000; 조흥식, 2000), 모니터링 하고(이재연, 황옥경, 2004), 정책화할 것인지(하승수, 이혜원, 2007; 허남순, 이혜원, 2006; 황옥경, 2004) 등에 대한 고민이 출현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도 협약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기보다는 협약을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연구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실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언급하기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등 상징적으로 다룬 연구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한계가 나타난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연구의 다양화와 협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등 발전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박주영(2009)은 아동의 의견표명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석광현(2009)은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전문적, 세부적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가장 많이 인용된 조항들은 2조(비차별), 3조(아동 최선의 이익), 12조(아동의 견해존중)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들이었으며, 유보조항 중 하나인 9조(부모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고, 28조 교육에 대한 권리에 대한 언급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학술지별로 볼 때 「아동과 권리」와 같은 아동권리일반 저널에서의 출간된 저작이 가장 많았고, 「한국아동복지학」과 같은 사회복지학, 「법학연구」와 같이 법학에서의 연구도 많이 증가하였다. 과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향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법적, 정책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⑷ 2010년대(2010년~2019년)

2010년대에는 157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학술적 이해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협약이 하나의 상징으로서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조항으로서 인식되기 시작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포괄적 논의뿐만 아니라 다학제적으로 협약의 적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예를 들어, 아동 최선의 이익 법리와 아동보호 법제 간의 간극에 관한 연구(이경은, 2016), 미성년자 최선의 이익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송영민, 2017), 난민아동의 권리 인정을 위해 22조 내용을 분석한 연구(김현옥, 김경호, 2019; 김현옥, 송영지, 김수영, 2019) 등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우리나라 법제나 정책 간의 괴리를 보여주고 개선방안을 도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

2010년대에는 법학에서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이노홍, 2015a),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논의(이충은, 2019),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이 재판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논의(권순민, 2013) 등, 일본/프랑스/핀란드 등 해외의 아동권리 관련 법제 및 현황(김태환, 2019; 송영민, 2019; 안문희, 2013, 2014; 이호행, 2019), 북한의 아동인권 법제 및 현황(이규창, 2017)을 소개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주는 연구도 이어졌다. 아동의 의견표명권(박주영, 2009) 관련 연구를 시작으로 프랑스법상 미성년자의 의견개진권(안문희, 2013), 의견청문권(장민영, 2019), 개인청원제도(이노홍, 2015b)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철학적, 법적 검토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인용된 조항들은 2조(비차별), 3조(아동 최선의 이익), 12조(아동의 견해 존중), 6조(생존발달)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들이었다. 유보조항 중 하나인 9조(부모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으며, 7조(출생등록, 성별, 국적 및 부모에 대해 아는 것), 19조(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28조(교육) 순으로 많이 언급되었다. 이는 2010년대 학교체벌금지 문제와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체벌 문제, 이주아동, 다문화아동, 외국인, 수용자 자녀의 교육권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이은주, 2011; 최경옥, 2012; 이충은, 2019; 최경옥, 이경림, 2019).

(5) 2020년대 초기(2020년~2022년)

2020년~2022년까지는 77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1990년에서 2009년까지 발간된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논문들과 맞먹는 양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사회적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편적 아동인권과 취약한 대상에 대한 아동인권 적용 시도가 확대되고, 절차적 적용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2020년대는 다양한 대상들의 인권상황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범적 기준에 적용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시도들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 교정시설 내 유아양육(강경래, 2020), 중국 내 탈북여성, 아동의 인권(김미주, 김석향, 2020), 보호대상 아동(장영인, 2020), 보호종료아동(제철웅, 2020), 시청각 장애인 등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김철주, 2021; 이한주, 2021), 영유아(김지형, 최수연, 2021), 이주아동(이보연, 2021), 미등록 이주아동(김나루, 2022), 북한이탈주민(임세와, 양옥경, 2022), 혼인외 자녀 출생등록(조은희, 2022), 해외입양아동(민은경, 2021) 등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인권적용 시도가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이들에 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을 분석하는 연구, 한국 내 적용의 타당성을 파악하는 연구,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연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다양한 관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 관한 연구, 독일, 일본, 프랑스의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에 관한 연구는 북한의 법제와 아동권리 실태를 다루는 연구(송인호, 강보선, 2020; 송인호, 임진실, 2020; 조정현, 2021; 박소영, 2022) 등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의 법제의 차이, 아동권리 현황 차이 등을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아동·청소년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과 향후 통일 이후 아동권리체계의 마련 등에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대에는 아동학대, 출생등록 등 이전부터 진행되어왔던 주제들과 함께 온라인과 디지털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근거(김송옥, 2022), 디지털정보의 원격지 압수수색(최용성, 곽대훈, 2022) 등이 특징적이다. 다만,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 차원에서의 논의라기보다는 해당 논의에 대한 근거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용하고 있어 아동권리의 확장에는 제한적인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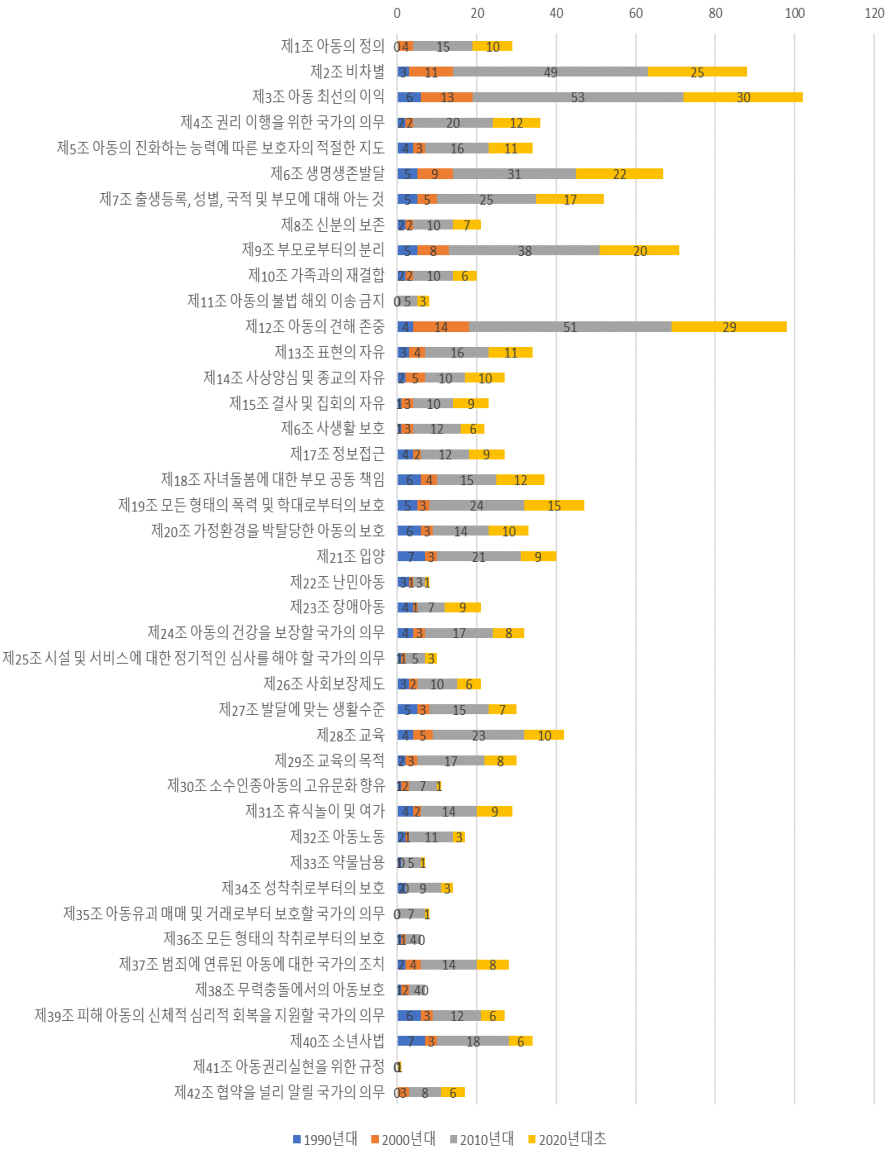
2010년대와 2020년대를 걸쳐 양적인 확대를 이루었지만 내실 있는 접근도 필요하다. 여전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상징적인 의미로만 활용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잘못 이해하고 기재하거나, 조항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소개하거나 다루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정당화 기재로 활용하는 등 연구자들 역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이는 논문들도 다수 존재를 하고 있다. 양적인 확대가 질적인 확대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에 대한 이해, 사회적 논의가 학술적, 정책적 영역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6) 연대별 발간 저널에서 인용된 조항

이 절이 차용하고 있는 주제범위 고찰(scoping review) 방법은 기존의 연구 주제범위를 살펴보면서 각 주제별 지식격차를 파악하는데 장점이 있다. 이 연구는 제목과 본문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언급한 연구들이 실제 어떠한 조항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연구자는 1990년대 초의 협약 소개 형식의 논문들은 이 코딩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실제 조항의 주제를 언급하며 다루는 경우들만 해당시켰다. 한 논문에서 40여개 조항을 모두 다루었던 이행 분석 관련 논문의 사례도 있는 반면, 하나도 다루지 않은 논문도 70여개가 존재하였다.

가장 많이 인용된 조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들은 협약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제12조 아동의 견해 존중, 제2조 비차별, 제4조 생명 및 발달 원칙들이었다. 초기 연구들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예했었던 제9조 부모로부터 분리, 제21조 입양, 제40조 소년사법 에 대한 언급이 높았으나 이후에는 언급이 줄어들었다. 이는 유보가 철회되고 협약의 전반적 설명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연구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이외에 많이 인용된 조항은 제7조 출생등록, 성별, 국적 및 부모에 대해 아는 것, 제19조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제28조 교육, 제18조 자녀돌봄에 대한 부모 공동책임 등이었다. 반면 제11조 아동의 불법 해외 이송 금지, 제38조 무력충돌에서의 아동보호, 제33조 약물남용, 제36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 등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드물었다. 이는 해당 조항들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최근 아동·청소년 마약 및 약물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5호, 제26호와 관련하여 디지털 환경과 기후환경과 아동권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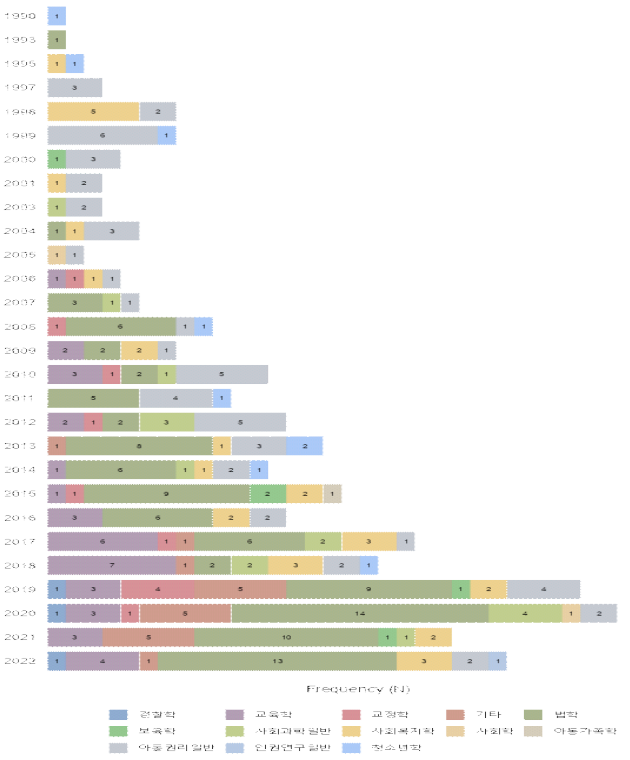


*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II-2-4. KCI 등재지 기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연대별 언급된 조항 및 논문 수(중복)

(7) 연대별 연구의 주요 전문분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언급한 연구들은 초기에는 '청소년연구'나 '아동과 권리' 같은 청소년학과 아동권리 일반에 속하는 저널에서 발간되었다. 이외 다른 학문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으며, 법학에서는 2000년대 중반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관심이 적다가 2007년을 기점으로 관련 연구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학은 이보다 약간 더 늦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2009년 이후로 조금씩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세부적인 연구보다는 전체적인 협약 내용에 대해 다루는 연구들이 많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세부적인 조항이나 분야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면서 학문분야별로 분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II-2-5. KCI 등재지 기준 '유엔아동권리협약'관련 연구의 전공분야

(8) 연대별 연구의 세부 대상(특수한 대상)

전체 연구 중 특수한 대상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우를 취합하여 대상자 특성이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초기에는 당시까지 남아있었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권리성 측면에서 해당 개념이 맞지 않음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비행청소년'에 관한 연구들도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기에 연구가 되었다. 이후에는 대상자들이 매우 분화되었다. 가장 많은 대상은 다문화청소년, 이주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이었다. 장애아동과 입양아동에 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혼인외자녀, 수용자자녀, 범죄피해청소년 등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 범위 및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해외에서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성소수자(LGBTQ+)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발표된 적이 없어서 보다 다양한 대상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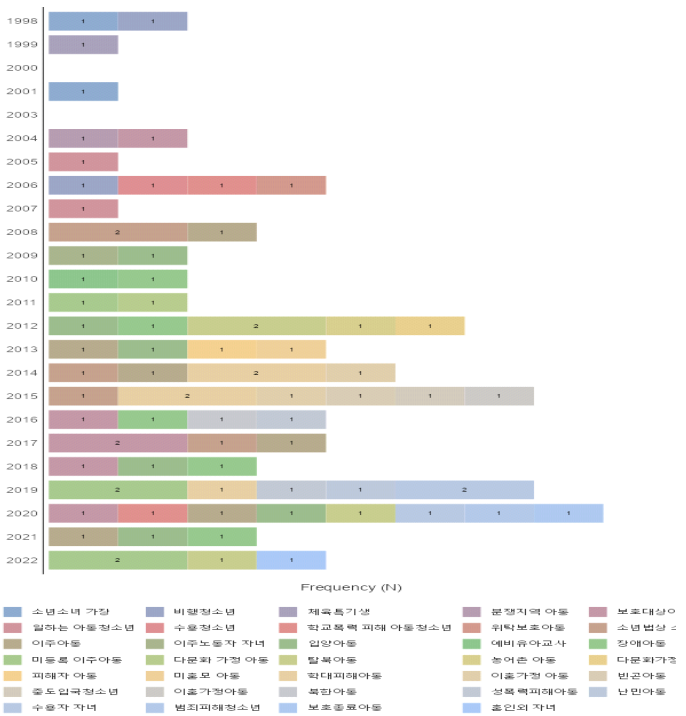


그림 II-2-6. KCI 등재지 기준 '유엔아동권리협약'관련 연구의 세부대상

(9)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연구 동향: 체계적 검토의 함의와 시사점

이 절에서는 국내 KCI급 저널에서 발간된 유엔아동권리협약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상징적 아동권리뿐만 아니라 실제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에 대한 분석 동향 국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연구는 1990년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학술적으로,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방향에서 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다루었으나, 2000년대 들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 상황에 적용하고, 법률을 개선하고, 정책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더 특화되고 분화되어 있는 주제, 대상들이 도출되었고, 세부화되고 전문화된 논의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연구는 아동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다학제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중후반부터의 연구들은 교육학과 법학 등 교육제도와 법제도에 특화된 논의를 주로 진행하였다.

다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거나 상징적인 근거로서 활용하는 연구경향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새로운 권리침해 혹은 권리보장의 논의를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디지털 환경이나 기후변화 같은 새로운 환경이 아동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로 인해 취약해진 대상이나 취약해진 속성들이 있는지에 대한 꾸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입양아동 문제, 아동학대 피해아동, 이주아동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논의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 문제, 고립은둔 아동·청소년 문제 등 논의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동향: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아동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5호[5]

이 절에서는 2021년 3월 2일 발표된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5호(General comment No. 25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의 발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6]

1) 일반논평 제25호 발표 배경[7]

(1) 201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 토론의 날' 논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 권리 관련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년마다 제네바에서 '일반 토론의 날(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한다. 2014년 '일반 토론의 날'의 주제로는 '디지털 미디어와 아동의 권리'가 선정되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소셜 미디어 및 정보통신기술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아동의 온라인 기회를 최대화하고 위험과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기반 전략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아동권리협약이 인터넷 등장 초기에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여전히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변화한 현실에 맞는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일반논평이나 선택의정서의 형식으로 아동권리협약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디지털 미디어와 아동 권리에 관한 새로운 협약 채택의 가능성도 거론되었다(UNCRC, 2014). 2014년 열린 '일반 토론의 날'은 전 세계의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작성의 가능성을 논의한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2) 일반논평의 필요성에 관한 공식 주장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교수이자 유럽연합 차원의 대규모 연구 조사 네트워크인 EU 키즈

5) 이 절은 오연주 책임연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작성하였다.
6) 협약 일반논평 제25호의 UN SYMBOL 표기는 CRC/C/GC/25 이다.
7) 협약 일반논평 제25호의 자세한 내용은 유엔인권이사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홈페이지(https://www.ohchr.org/)의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www.ohchr.org/en/documents/general-comments-and-recommendations/general-comment-no-25-2021-childrens-rights-relation 에서 2023년 11월 30일 인출.

온라인(EU Kids Online)의 총괄을 맡고 있는 소니아 리빙스톤과 동료 연구자들은 2017년 영국 아동위원회에 디지털 미디어 및 아동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가 대부분이 급속한 기술적 전환을 맞아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 권리 보호, 참여 증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일반논평이 일관되며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제시한 일반논평의 구체적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LSE Consulting, 2017).

첫째, 일반논평은 아동 권리 단체가 정부 및 관련 행위자에 주요 이슈에 대한 정의, 원칙, 해석을 제시할 수 있는 권위 있고 효율적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하는 문서는 개인 또는 개별 단체가 발표하는 문서와 달리 국제적 권위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아동 권리 단체들은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반논평을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초국가적인 성격을 가짐을 고려할 때,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확립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둘째, 일반논평은 광범위한 정책 분야에서 아동 권리를 주류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환경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폭넓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관련 정책에서 아동의 권리가 고려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간극은 아동의 권리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도 적용된다는 점과, 성인과는 다른 아동만의 특수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데서 발생한다. 아동은 물론 일반 대중의 보호를 명목으로 이행되는 정책적 조치조차 권리 관점을 따르지 않음에 따라, 아동 권리 관점을 명확히 반영한 지침을 통해 국가의 조치를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일반논평은 복합적이고 상충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를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환경이 아동의 일상생활 대부분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광범위하게 아동의 권리를 다룰 수 있는 지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아동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자칫 디지털 환경이 제공하는 긍정적 기회를 축소하고, 때로는 아동의 권리 일부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일반논평은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포괄적인 아동의 권리를 기반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상충하는 권리 간의 균형 잡힌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권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넷째, 일반논평은 갈수록 권한이 강해지고 글로벌화되는 디지털 산업에 대응해 국가가

아동 권리 보호에 필요한 선제 조치를 마련하고 법·제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만이 디지털 기업의 활동에 개입하고 국제적인 조율과 협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반논평이 국가 법·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반논평 제16호 「아동의 권리에 대한 기업 부문의 영향과 관련한 국가 의무」는 국가가 기업의 영향을 중재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나 디지털 환경과 관련해서는 성적 위험만을 다룬다는 한계도 지적되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존의 법·제도로는 기업 및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며, 일반논평이 새로운 입법 수단과 기준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논평은 인터넷 확산 전에 작성된 아동권리협약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그 중요성과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에 아동 권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전문가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보호의 근거로서 아동권리협약을 제시할 때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염려하였다. 일반논평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3) 일반논평 작성 절차

소니아 리빙스톤과 동료 연구자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8년 열린 제77차 정기회기에서 일반논평의 주제로 아동의 권리와 디지털 미디어를 선정하였다(UNCRC, 2018). 이어 아동권리위원회는 같은 해 열린 제79차 정기회기에서 일반논평 제25호 작성의 자문기관으로 선정된 5Rights Foundation과 만나 초안 작성과 관련한 과정을 논의하였으며, 2019년 열린 제82차 정기회의에서 초안 작성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밝혔다(UNCRC, 2019). 일반논평 작성 작업은 2019년 1월 시작되어, 회원국 및 관련 단체와 27개 국가 아동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1년 3월 공식 채택되었다. 일반논평 작성에는 주 저자인 소니아 리빙스톤을 비롯하여 2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아동 대상 의견수렴은 소니아 리빙스톤과 함께 일반논평의 필요성을 주장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서호주대학교의 아만다 서드와 릴리 무디가 맡았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옹호 단체인 영국의 5Rights Foundation은 일반논평 작성의 전 과정을 조율하였다(Third & Moody, 2021).

일반논평 제25호의 작성 과정에서 가장 주목 받았던 것은 27개국 70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이다. 아동 관련 정책 의사결정에서 아동의 참여를 중시하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회원국 아동 권리 단체의 도움으로 국제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졌다. 의견수렴 시 종종 소외되는 아동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 남반구 아동 및 다양한 필요를 가진 아동의 참여가 우선시되었다. 수렴된 아동의 의견은 일반논평 제25호 작성 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아동 대상 의견수렴 최종보고서인 「디지털 세계에서의 우리의 권리」에 제시된 분야별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Third & Moody, 2021).

표 II-3-1. 아동 의견수렴 워크숍에서 도출된 분야별 주요 의견

분야	내용
접근	아동은 디지털 환경이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음. 이들은 정부와 기술 제공자가 아동의 사회경제적 지위, 젠더, 능력 또는 지역과 관계없이 디지털 기술과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
정보	아동은 정보에 접근할 권리와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실현하는 데 디지털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여김. 아동은 국가와 기타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이 ▲아동의 언어로 된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정보와 ▲디지털 서비스 작동 방식에 대한 투명하고 아동 친화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
표현, 정체성, 집회 및 결사	아동은 부당한 비판, 괴롭힘, 차별 또는 공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디지털 공간에 참여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 옹호하고, ▲아동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함
놀이	아동은 부모와 그 외 중요한 어른이 ▲디지털 놀이 경험에서 얻는 즐거움, 휴식, 학습을 인정하고, ▲아동이 놀 권리와 다른 권리의 균형을 맞추도록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기를 원함
사생활	아동은 ▲자신의 데이터가 수집·저장·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아동의 사생활 보호 강화, ▲상업적 기관과 부모의 감시 완화를 요구
건강	아동은 ▲기밀이 보장된 아동 중심의 증거 기반 서비스와 ▲특히 금기시되거나 민감한 주제와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 요구
가족	아동은 부모와 보호자가 ▲디지털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더 큰 신뢰와 자율성을 부여하고,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이점과 해악에 관해 정보를 더 갖추며, ▲부모 및 보호자 자신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개발하고, ▲아동을 위해 적절한 기술 사용의 롤모델이 되어줄 것을 요구
폭력 및 착취	아동은 ▲범죄자와 학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서비스와, ▲차별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과 경제적 착취에 대한 예방 및 구제 조치를 원함

2) 일반논평 제25호 주요 내용

일반논평 제25호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비추어 해석한 것으로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다룬다. 이는 기존의 일반논평이 아동권리협약의 특정 조항 또는 특수한 필요를 갖는 아동에 대해서 다루던 것과 비교된다. 논평의 범위가 넓은 만큼 문서 전체를 요약할 경우 피상적인 서술에 머무를 수 있어, 본 절은 우리나라 맥락과 최근의 기술적·정책적 맥락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단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일반논평 제25호의 각 문단이 작성된 추가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5Rights Foundation에서 발간한 해설서를 참고하였다(5Righs Foundation, 2021).

(1) 서론

2014 '일반 토론의 날'부터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일반논평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디지털의 범위는 미디어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반논평에서는 디지털의 범위를 환경으로 확장하고, "디지털 네트워크,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기기 및 환경 간 연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보틱스, 자동화 시스템,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 생체인식, 이식 기술 등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정의한다(문단2). 이와 같은 정의는 오늘날 디지털 기술과의 상호작용이 기기의 사용을 매개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든 개인적이고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비가시적이고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장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미래에 일어날 디지털 혁신을 포괄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의 의미를 정의하였다.

서론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디지털 포용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포용은 일반원칙 중 비차별 원칙뿐만 아니라 일반논평 전체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테마이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은 아동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일반논평에서 말하는 접근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단순한 물리적 접근이 아닌 의미 있고 안전한 접근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접근을 통해서 아동의 발달과 참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접근의 방식은 신뢰할 수 있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원칙

일반원칙 부분에서는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된 4대 원칙인 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발달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재해석한다. 우선 비차별 원칙과 관련해서는 아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첫 번째는 접근에서의 차별로 특히 빈곤 및 지역 여건 등으로 인해 물리적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젠더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접근이 제한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차별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혐오 발언, 부당 대우, 괴롭힘 등을 말한다. 마지막은 기술의 적용에 따른 차별로 편향적인 데이터 사용 등으로 인해 아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겪게 되는 불평등을 의미한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환경의 설계, 제공, 사용, 관리, 규제의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함을 역설한다. 또한, 아동과 성인·국가·기업 등 다른 주체의 권리가 상충할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아동 권리 간 상충하는 지점이 있을 경우 종합적이고 맥락적인 사고를 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아동 권리 관점을 보장하는 국가 및 지역 기구 설치, 즉 거버넌스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데 이는 일반논평의 주 저자인 소니아 리빙스톤과 아동 의견수렴 연구책임자인 아만다 서드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사항이기도 하다(Livingstone & Third, 2017). 그들은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모든 사용자가 성인으로 여겨지는 것을 비판하는 한편, 인터넷 거버넌스 조직이 부모와 자녀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인정하고 아동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명·생존·발달 권리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위험은 EU CO:RE 프로젝트의 기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라 네 가지(콘텐츠 contents, 접촉 contact, 행위 conduct, 계약 contract; 4C)로 분류되었다(Livingstone & Stoilova, 2021). 콘텐츠는 콘텐츠 이용 시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위험 상황, 접촉은 온라인에서 타인과 접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또는 아동이 접촉의 대상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위험 상황을 말한다. 행위는 아동이 위험 행동에 가담하거나 위험 행동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말하며, 계약은 미디어 기업과 이용자 사이의 계약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온라인상의 위험은 주로 개별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위 연구는 계약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기업 차원에서 야기할 수 있는 위험까지 논의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 의견 존중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유용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는 물론 디지털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아동을 적극 참여시키고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함으로써, 아동 의견수렴의 책임을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으로도 확대하였다.

(3) 진화하는 능력

일반논평에서 진화하는 능력은 "아동이 역량, 이해력, 주체성을 점진적으로 습득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발달 원칙"으로 정의된다(문단19). 진화하는 능력의 개념에 따라 변화하는 아동의 지위와 주체성, 역량과 이해도, 위험의 다양한 특성, 개인의 경험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연령 제한 또는 등급은 진화하는 능력의 반영을 위해 빈번하게 적용되는 조치이며, 특히 전통 미디어를 중심으로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음주, 흡연 등의 재현을 기준으로 삼는 세분화된 등급 제도가 마련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제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서비스 제공에 유용한 기준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특정 콘텐츠나 상품 추천, 제3자에 의한 데이터 수집·활용, 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늘리는 심리 기반 디자인 등 아동의 행동과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특정 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가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아동의 발달 및 이해 수준의 다양성을 간과한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일반논평의 서론에서 제시한 디지털 환경의 정의에 포함되는 모든 기기, 서비스, 시스템과 관련하여 진화하는 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진화하는 능력에 대한 고려는 아동의 능력에 따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동의 보호와 동시에 "아동의 디지털 환경 접근을 촉진"하는 등의 기회를 확장하는 데도 아동의 역량과 이해도는 중요하다(문단19). 이를 위해 성인의 관점에서 디자인된 제품과 서비스를 어느 시점부터 아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가 아닌, 아동의 발달에 관한 이해가 반영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부모와 보호자의 인식을 증진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와 보호자는 아동의 보호와 기회의 촉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의 자율성, 역량, 사생활에 대한 요구 등을 이해해야 한다.

(4) 당사국의 일반이행조치

일반논평은 당사국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를 증진·존중·보호·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상세하게 다룬다. 이들 조치는 다른 모든 조치의 근간이 되는 입법을 비롯하여 정책 및 전략 수립, 이해관계자 간 조정, 자원 할당, 자료 수집 및 연구, 관리·감독, 인식 제고 및 협력, 사법 체계 및 구제책 마련을 포함한다. 일반이행조치에 관한 서술은 대부분 그 자체로 의미가 자명하지만, 우리나라 맥락에서 재차 강조가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권리와 관련된 법, 정책, 전략을 검토·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제·개정 및 수립·변경해야 한다. 많은 디지털 관련 법, 정책, 전략은 아동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아동 권리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동 관리 관점 기반의 검토·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아동 의견수렴 결과가 보여주듯이 디지털은 아동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 관련 법, 정책, 전략 등이 아동 권리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실제로 그러해서가 아니라 관련 당국이 아동을 중요한 정책 이해관계자로 보는 데 실패하여 아동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논평의 요구에 따라 아동 권리 영향평가는 통상적으로 아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되는 법, 정책, 전략에 대한 검토·평가는 물론, 디지털과 관련한 모든 조치가 아동 권리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보호를 총괄하는 정부 기관을 지정하며, 이 기관은 다른 정부 기관은 물론 학교, 기업, 시민사회, 학계, 각종 단체 간의 역할을 조정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 국가에서 아동 권리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과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다르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관련 조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도전 과제는 총괄을 맡게 될 정부 기관이 다른 정부 기관과의 상충하는 역할을 조율하고, 디지털과 아동 권리 모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총괄 기관이 정부 조직의 위계 중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어떠한 조직적 형식 및 인적 구성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셋째,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자료와 연구를 통해 디지털 환경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영향을 평가하며, 정부 개입의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아동이 디지털 환경과 맺는 관계는 설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가정과 학교를 비롯한 주요 생활환경, 온라인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진화하는 아동의 능력과 디지털의 지속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패널 조사 등 장기적인 추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년간에 걸친 안정적인 연구 프로젝트 지원, 다학제적·다국가적 관점의 포괄적 연구 촉진,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문화 조성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아울러 디지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동의 디지털 활동과 관련한 데이터를 사생활 침해 없이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당사국은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체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특히 글로벌 북반구의) 많은 국가가 인식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동 권리 관점이 아닌 아동 보호 메시지, 또는 아동 역량 강화 메시지가 주류를 이룬다. 당사국은 인식 제고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아동의 기회를 축소하는 보호의 메시지나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아동 또는 보호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역량 강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 업무 종사자 및 디지털 제품·서비스 개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실무·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단발성의 피상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체계화된 프로그램, 교육 효과 평가 등 환류 체계, 전문가 단체 및 기업 연합 등을 통한 교류 강화와 후속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일반이행조치 전반에서 기업의 책무를 언급한 것에 더해 '아동의 권리와 기업' 및 '상업 광고와 마케팅'에 관한 문단에서 기업의 책임 이행을 거듭 강조한다. 이는 일반논평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와 관련하여 디지털 기업의 역할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의 책임 이행과 이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매우 필수적이면서도 도전적인 과제이다. 디지털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국가가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해 자율 규제 내지는 가벼운 규제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 강화는 기업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상충하는 요구의 조정에 있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따르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5) 시민적 권리와 자유

시민적 권리와 자유는 일반논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논의 대부분은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디지털 시민성·시민권 개념이 부상할 때조차도 그 내용은 이용자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것에 국한되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상황을 고려하면, 시민적 권리와 자유가 문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시민적 권리와 자유 중 일반논평에서 가장 강조점을 두는 것은 정보 접근권과 사생활에 대한 권리로, 아동 대상의 의견수렴에서도 중요한 권리로 도출된 바 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정보 접근을 자신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웰빙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아동의 시각과는 무관하게 생성된 무차별적 정보와 이러한 정보의 제공을 정보 접근권으로 틀짓는 기업의 논리를 아동의 정보 접근권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정보 접근권을 위해 아동 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한다. 이러한 정보 접근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여, 당사국은 정보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아동의 시선과 진화하는 능력에 맞춘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책임도 갖는다.

일반논평은 제품 및 서비스 설계, 동의, 접근, 피해에 따른 구제 등 전 과정에서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주지할 점은 이러한 주장이 시민 일반의 사생활에 대한 최근의 권리 요구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는 시민 대부분이 디지털 환경에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감수하거나 경험하고 있으며, 데이터 처리에 대한 이해와 저항할 능력이 낮은 아동의 경우 더 취약한 상황에 있음을 암시한다. 동시에 아동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보호 조치들은 아동뿐만 아니라 시민 일반에게도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교육, 돌봄 환경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 감시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주어진 감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사생활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고민"해야 한다는 당부는 학교와 가정 등 아동의 보호를 담당해야 할 공간이 오히려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문단75). 아동이 교사 및 부모와 맺는 관계로 인하여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더 쉽게 일어나거나 침해에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공간에서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환경이 아동의 생각, 의견, 정치적 견해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의를 요구한다. 첫째, 아동을 위하여 마련한 안전장치 및 필터링 등의 조치가 오히려 아동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권리 제한은 합법성, 필수성,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 근거를 투명하고 아동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해야 한다. 둘째, 자동으로 생성되는 콘텐츠, 상업적 목적을 담은 메시지, 알고리즘 기반의 콘텐츠 추천, 허위 조작 정보 등은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논평 채택 이후 소개된 챗GPT 등의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는 그 우려를 증폭시켰으며, 이탈리아는 아동 및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국에서 챗GPT의 접속 차단 조처를 한 바 있다. 아동이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활용하는 플랫폼은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와 동시에 위험하고 호도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아동의 힘돋우기를 하는 동시에 폭력적 메시지를 노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회와 위험의 공존은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데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6) 아동폭력

아동폭력 부분에서는 신체 또는 정신적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방임, 성착취 및 학대를 포함한 착취와 학대, 인신매매, 젠더 기반 폭력, 사이버 공격 및 폭행, 정보전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자해, 자살 시도, 섭식장애 등의 자학 행위 교사 등도 아동 폭력의 일부로 포함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230조에 따라 대부분의 글로벌 테크 기업은 제3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면책 특권이 있다. 그러나 기업이 작성한 추천 알고리즘의 적용으로 자학 행위 교사 콘텐츠에 노출될 경우, 기업의 책무성을 주장할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아울러, 일반논평은 무력 분쟁 시 디지털을 기반으로 아동이 폭력에 가담하도록 모집되고 착취되는 상황에 주목하고, 당사국이 이러한 모집 행위를 법적으로 막을 것을 요구한다.

(7)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일반논평은 많은 부모와 보호자가 아동의 디지털 환경 참여를 도울 수 있는 이해, 역량, 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당사국이 부모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문해력을 갖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활동에 대한 부모와 보호자의 개입은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발달을 돕는 콘텐츠에 대한 안내와 의미 있는 대화를 이끌기도 하지만, 처벌적이고 제한적인 통제와 사생활 침해 등의 억압적 중재로 귀결되기도 한다. 당사국의 지원은 부모 및 보호자가 상호 공감과 아동 자율성 존중을 바탕으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2023년 4월 미국 상원은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계정 생성을 금지하고, 13세~17세 아동과 그 부모가 정부가 개발한 연령 인증 시스템을 거쳐 계정을 생성하도록 요구하는 초당파적

법안을 제출하였다(Jones, 2023). 소셜 미디어의 사용 금지와 부모 동의 절차는 부모의 요구일 수 있으나 아동의 관점에서 최선의 대응은 아니다. 그러나 통제의 방식으로 아동을 보호하려는 부모의 요구, 아동이 아닌 유권자인 부모를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입법부의 요구가 맞물리며 위와 유사한 법안 통과 시도가 증가해 왔다. 디지털 환경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고조화되고, 설익은 법률의 형식으로 그 대응 방안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비판적 문해력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8) 장애아동

장애아동과 관련하여 일반논평은 디지털이 사회적 관계 형성·유지, 정보 접근, 공공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기회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장애아동에게 보조기기의 이용을 보장하고, 한 걸음 나아가 장애가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사용을 저해하는 조건이 되지 않도록 보편적 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반논평이 다루는 주제 대부분이 다양한 요구를 가진 아동의 권리를 매우 포괄적으로 다룬 것과 비교하여, 장애아동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의 기회와 위험이 충분히 탐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의 관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디지털 접근, 학습, 치료, 놀이 등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하다.

(9) 보건 및 복지

보건 및 복지 부분에서는 디지털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아동이 건강 및 웰빙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필수적인 도구로서 기능함을 강조한다. 특히, 아동이 온라인 검색을 통해 성 및 생식 보건 정보, 정신 건강 정보 등의 민감 정보에 접근함에 따라 비밀 보장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허위 건강정보에 노출되는 위험을 막는 조처의 도입도 요구한다. 보건 및 복지 분야에서의 디지털의 가능성은 기존의 의료 인프라 및 건강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넘어 아동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의 개발까지 포함하며, 이를 위해 기술 진보를 위한 연구를 장려할 것을 촉구한다.

(10)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일반논평은 디지털 기술이 교육에 갖는 긍정적인 측면, 특히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일반논평의 작성 기간 발생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적·전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이 교육 활동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디지털로 전달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곧 교육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비롯한 모든 아동이 온라인상에서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할 책임을 강조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단순한 기능적 역량이 아닌 창조, 협동, 사회화, 시민적 관여, 정보 평가 등의 비판적인 사고 능력 및 능동적인 참여 능력을 포함한다. 디지털 기술이 아동의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면서도, 교육적 기술의 사용이 개인정보 오용을 비롯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근거 기반 정책, 지침, 표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반논평에서는 디지털 환경이 아동의 문화, 여가, 놀이에 관한 권리의 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아동과 관련한 기존의 디지털 정책에서 문화, 여가, 놀이의 권리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의견수렴 워크숍에 참여한 한 아동이 언급하듯 "성인들이 디지털을 활용한 놀이의 중요성 및 이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일정 부분 비롯된다(문단106). 일반논평은 기존 정책에서 간과되어 오던 문화, 여가, 놀이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 권리의 향상을 위해 관련 서비스의 설계부터 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전문가, 부모, 보호자의 협력을 촉구한다. 한편,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기업의 상업적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규제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 및 안전 중심 설계 등 기술적 안전장치의 도입을 제안한다.

3) 일반논평 제25호에 관한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

(1) 일반논평 제25호의 의의

일반논평은 목적한 바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존중·보호·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폭력으로부터의 아동 보호 및 디지털 포용과 같이 아동 권리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 논의되어 왔던 주제부터,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부상하는 주제, 디지털을 활용한 문화·여가·놀이와 같이 논의가 부족했던 주제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환경의 영향이 닿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탐색한다. 아울러, 국가 개입이 필요한 영역도 촘촘하게 다루는데, 관련 법의 제·개정, 정책의 평가 및 개선, 거버넌스, 자원 할당, 모니터링, 인식 제고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전 환류 체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2017년 한국 정부에서 제출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는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를 정보 접근(인터넷 이용), 건강(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교육(인터넷 윤리 교육) 항목에서 지엽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2017년 당시 디지털 환경이 오늘날의 수준으로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디지털 환경을 평가하고 정책적 개입을 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했다는 점이 더 큰 이유로 보인다. 일반논평 제25호는 앞으로 각국 정부와 디지털 기업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증진·존중·보호·실현을 위한 책무를 이해하고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논평은 디지털 환경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아동 관련 디지털 정책은 주로 디지털을 미디어로 한정 짓는 관점, 다시 말해 디지털을 기존 미디어의 확장으로 보거나 여기에 소셜 미디어가 추가된 정도라는 인식하에 추진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는 온라인상 유해매체 모니터링 및 노출 차단,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 예방이 있다. 이보다 관점을 조금 더 확장한 정책은 아동 데이터 보호의 문제, 알고리즘에 기반한 태도 및 행동 조정 등의 문제를 다룬다. 최근 온라인상 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안된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이나 미국의 「아동 온라인 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 및 「소셜 미디어에서의 아동보호법(Protecting Kids on Social Media Act)」은 디지털을 미디어의 테두리 안에서 보는 한계를 드러낸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이 거대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개발하고, 기기를 만들고, 스마트홈·건강·교육 등의 분야로 진출하며 디지털 환경을 더욱 넓혀가고 있을 때, 위의 법들은 여전히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에 방점을 둔다. 일반논평은 이와 같은 관점이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사는 아동의 삶을 고려할 때 매우 제한적임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일반논평은 아동의 보호와 아동의 권리 보호는 동의어가 아님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기기 이용 제한, 콘텐츠 접근 제한, 부모 동의 절차, 부모 모니터링 등 아동 보호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실천되는 정책과 부모의 중재는 오히려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갖는다. 일반논평은 금지, 제한, 감시하는 방식의 아동 보호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보호·보장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아동의 관점과 진화하는 능력을 고려한 콘텐츠 생산, 아동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 접근 확보, 아동의 건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술의 진보, 아동의 자기표현과 창의적 활동을 돕는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설계 등에 대한 요구가 그 예이다. 일반논평에서 제시한 디지털 환경의 긍정적 활용 방식은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일반논평 제25호의 한계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존중·보호·실현할 책무를 가짐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국가에 의한 아동 권리 침해는 디지털 환경에서 더 쉽게 발생한다. 이들 침해는 아동의 정보 접근권을 가로막는 입법과 시스템의 도입에서, 접근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디지털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결정에서, 국가안보·공공질서·공중보건의 위기 등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특수한 국가적 상황을 디지털에 기반하여 해결하는 방식 등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정부 스스로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논평의 주 저자인 소니아 리빙스톤이 지적했던 사안이기도 하다(Livingstone,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의한 아동 권리 침해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주의의무는 일반논평에서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았다.

국가에 의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침해는 국가와 기업 간 협력 또는 공모에 의해서 강화되기도 한다. 2013년에 있었던 미국 국가안보국의 대규모 민간인 사찰에 대한 폭로는 국가가 디지털 기업에 의한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은 주요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들을 지원함으로써 규제 완화를 이끄는 등 기업의 보호를 위한 방어막을 철저히 만드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Zuboff, 2019). 이와 같은 상황은 국가가 디지털 기업이 아동 권리를 보호하는 실천을 하도록 개입하는 데 있어 이해충돌을 야기하며, 아동 이익의 최우선이라는 원칙의 강조만으로는 국가와 기업 간 협력과 공모를 막기에 부족한 환경을 만든다. 일반논평은 국가와 디지털 기업 간에 맞물리는 이해관계를 누가 또는 어떻게 감시, 조정,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촉진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논평의 내용 전반에서 디지털은 긍정적인 기회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평가되며, 일부분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아동이 겪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건 및 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문단 93은 디지털 기술이 "보건 서비스 및 건강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산모, 신생아,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및 영양 상태를 진단하며 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 이와 같은 서술은 기존의 잘못된 인식, 즉 디지털 기술은 오프라인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선의로 만들어진 디지털 기술은 그것이 활용되는 맥락과는 무관하게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인상을 준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서술은 아동 관점이 아닌 기술 관료적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려는 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 교육, 보건, 복지 등 아동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계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반논평은 디지털 활용의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아동 권리 침해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디지털을 환경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기기와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가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인프라와 그 인프라를 가능케 하는 과정까지 탐색하는 것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케이트 크로포드는 「AI 지도책」에서 인공지능을 추출 산업으로 정의하며, 인공지능 시스템의 생산·유통·소비되는 과정에서 추출되는 자원, 데이터, 노동을 상세하게 기술한다(Crawford, 2021). 이 과정에서 아동은 광물 추출 노동의 착취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인프라에 필요한 자원 추출이 남긴 환경 오염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뺏길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 및 그 배경에 있는 자원 추출의 과정들은 일반논평이 다루지 못한 아동 권리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판단된다.

(3) 향후 정책과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거버넌스 구축으로 보인다. 거버넌스 구축은 어떤 정부 기관이 관련 업무를 총괄할 것인가, 그 기관의 법적 위계는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가, 공공과 민간의 어떠한 주체들을 협력과 조정의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 관련 총괄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디지털 포용을 포함한 디지털 정책의 총괄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관련 이행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는 두 부처 사이의 상당한 협력과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디지털 기업, 디지털 권리 단체, 디지털 분야 연구자 등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거버넌스 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해관계자들과 아동 권리 보호라는 목적을 공유하고 상호호혜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협력과 조정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제는 인식 제고이다. 일례로, 2023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보호' 조항을 따로 두어 "아동·청소년은 연령에 적합하게 설계된 디지털 공간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기술로 발생가능한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서술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9. 25). 아동·청소년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둔 것 자체로 고무적인 움직임이지만, 일반논평 제25호의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 조항은 아동의 권리 관점을 주류화하기보다는 부가적인 것으로 다루며, 아동 권리보다는 보호에 강조점을 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디지털 관련 정책 또는 정책과제는 거의 전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범정부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 가정에서의 변화도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이 지지와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인식 제고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의 현황 부분에서 제시한 아동 관련 계획에는 디지털 관련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계획이 수립된 시점이 디지털 환경이 상당히 성장한 2020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계획이 보여준 정책적 시야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평가된다. 일반논평 제25호의 작성 자문기관이기도 한 5Rights Foundation은 EU의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및 「일반데이터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등 통상적으로 아동과 관련이 없거나 적다고 여겨지는 법과 규제를 아동 권리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우리나라의 아동정책평가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와 관련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선정하고 검토함으로써, 아동 권리 주류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연구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후원으로 추진되는 EU 키즈 온라인 프로젝트나, 호주연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디지털 아동 우수연구센터(Centre of Excellence for the Digital Child)는

장기간에 거쳐 대규모의 연구비를 투자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디지털 환경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성장 과정을 지속하여 추적하고, 아동의 생활 영역 전반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발성의 파편화된 투자가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며, 국가의 연구개발 배분에서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4. 시사점: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이 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연구의 동향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5호의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장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연구는 전문적, 세부적 연구들이 출현하며 학문적인 분화도 이루어진 특징이 있으나, 협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는 격차가 발생하는 단점을 개선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초기에는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거나 소개하는 방식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이 가진 의미,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특별한 대상에게 적용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협약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고 있어 우리나라 토대에 맞는 협약의 의의와 방안을 찾아나가는 방식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협약에 대한 학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학제적인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학계의 협약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분석에는 미진하므로 연구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협약의 내용과 국내 법제도에의 적용 과정에 대한 연구로 초점이 옮겨가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의 현상을 예측하고 적용하는 방향에 대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이 2021년(제25호)과 2023년(제26호)에 걸쳐 새롭게 발표된 만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와 기후변화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인권 사각지대의 대상과 함께 새로운 사각지대 대상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입양아동 문제, 아동학대 피해아동, 이주아동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 논의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 문제, 고립은둔 아동·청소년 문제 등 논의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3장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 측정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1. 개요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3.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 문항 구성 및 수정 내용
4. 시사점 및 향후 방향

3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 측정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8)]

1. 개요

이 장의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를 소개하고, 이 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의 조사도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장의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연구 질문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정부의 노력과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변화를 어떻게 지표를 통해 보여줄 것인가"라는 두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이다. 이 잠정적인 답은 이론적 타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모니터링 체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진행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은 일종의 사회지표를 통한 모니터링 방식을 따른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기본틀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기준의 인권영역 구분에 기반한다(김영지 외, 2022).[9)] 이와 함께 유엔최고대표사무소의 인권지표(Human Rights Indicators, 구조, 과정, 성과 지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지표(SDGs) 등 다른 인권 관련 지표를 반영하였다(김영지 외, 2021: 8).

올해 연구에서는 연속과제의 장점을 살리고자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제와 시각을 포괄하고자 하였으나, 이행 모니터링 지표에는 일부만 반영하고 「한국 아동·청소

8) 이 장은 유민상 연구위원,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9)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CRC/C/58/Rev.3)

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지표를 생산하고 후속 과제를 통해 심층분석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실태조사에서 신규 추가된 사회적 고립 지표,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 관련 지표, 기후환경 지표 등은 차년도 심층분석을 통해 지표의 사회지표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 이행 모니터링 체계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시사점에서 설명할 것이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지표 체계는 이 연구의 핵심적인 파트이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연구 질문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정부의 노력과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변화를 어떻게 지표를 통해 보여줄 것인가"라는 연구질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통계지표와 이 연구의 조사통계 지표를 결합하여 보고한다. 이행 모니터링 체계에서 외부 지표들은 주로 행정통계들이며, 직접 조사하는 지표들은 주로 주관적 지표(subjective indicators)이다.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결합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지표는 국가보고서 작성틀에 따라 인권 일반 및 일반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하여 음영은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항목, 이탤릭체(기울임체)와 밑줄은 2023년도 수정·추가 항목을 나타내도록 제시하였다.

표 Ⅲ-2-1. 2023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음영과 * 표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항목, 이탤릭체는 2023년도 수정·추가 항목)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1-1-1-2.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1-1-2. 인권에 대한 인식	1-1-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1-1-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우리나라전체, *온라인공간*)
			1-1-2-3. 인권의식 및 태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1-1-3. 인권교육	1-1-3-1. 인권교육 실시 현황
			1-1-3-2. 인권교육 경험(경험유무, 장소, 도움정도)*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2-1. 차별 경험률	1-2-1-1. 차별받은 경험*
			1-2-1-2. 차별해 본 경험*
			*1-2-1-3. 차별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정도	1-2-2-1.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2-1-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 가정사, 진학, 진로, 학습, *휴식, 여가 시간 존중*)*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2-1-2-1.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2-1-2-2.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2-1-2-3.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2-1-3-1.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2-1-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2-1-3-3.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방해 이유*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2-2-1-1.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정도*
		2-2-2. 종교자유 보장정도	2-2-2-1.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가정, 학교)*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3-1. 결사·집회 경험률	2-3-1-1. 결사·집회 경험률(경험여부, 피해경험)*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1-1. 용모·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2-4-2-1.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정도(가족관계 및 가정형편 등 민감 정보, 징계처분 내용, 개인 성적)*
	2-5. 정보접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5-1-1. 매체 이용률
			2-5-1-2. 유해매체 이용 경험
		2-5-2. 미디어 리터러시	2-5-2-1. 매체이용 교육 경험
			2-5-2-2. 미디어 역량
3. 폭력 및 학대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3-1-1. 청소년폭력 경험률	3-1-1-1. 가정(부모)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3-1-1-2. 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3-1-1-3.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3-1-1-4.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제28조 2항)	3-1-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3-1-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3-1-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3-2-1-1. 아동학대 사례건수
			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3-2-1-3. 가정 내 방임 정도*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3-2-2-1.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보호기관 수
			3-2-2-2.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 (제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1. 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4-1-2-2.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4-2-1. 입양률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4-2-1-2. 입양 사후관리
		4-2-2. 대안양육 비율	4-2-2-1. 보호대상아동 현황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4-2-3. *가정 밖* 청소년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정 밖 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4-2-3-2. 가정 밖 청소년 보호시설 수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기관 및 만족도*
	4-3.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제25조)	4-3-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4-3-1-1. 양육·보호 서비스 모니터링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1. 장애(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5-1-1-1.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5-1-1-2. 장애아동 통합교육*보육*비율
			5-1-1-3.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5-1-1-4. 학대피해 장애아동 수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5-2-1. 사망률	5-2-1-1.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5-2-1-2. 사고 사망률
		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2-2-1. 범죄 피해율
			5-2-2-2.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5-3. 보건서비스 (제24조)	5-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5-3-1-1. 보건교사 배치율
			5-3-1-2.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 설치현황
			5-3-1-3. 정신보건 및 심리상담 기관 현황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1. 흡연율
			5-3-3-2. 음주율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5-4-1. 신체적 건강	5-4-1-1. 주관적 건강평가*
			5-4-1-2. 운동 실천율*
			5-4-1-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5-4-1-4.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5-4-2. 정신적 건강	5-4-2-1. 자살 생각과 그 이유*
			5-4-2-2. 우울감*
			5-4-2-3. *외로움과 고립감**
			5-4-2-4. 자아존중감*
			5-4-2-5. 고민거리 대화상대*
		5-4-3. 주관적 웰빙	5-4-3-1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5-4-3-2. *삶의 만족도**
	5-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5-5-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5-5-1-1.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빈곤율 포함)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6-1-1-2. 교원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6-1-1-3. 학생 1인당 사교육비
		6-1-2. 학교 부적응률	6-1-2-1. 학업중단율
			6-1-2-2. 학업중단 생각과 이유*
	6-2. 교육의 목표 (제29조)	6-2-1.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6-2-1-1. 학교생활 만족도*(친구간 존중, 교사의 존중, 수업의 재미, 학교 즐거움)
		6-2-2. 진로·직업교육	6-2-2-1. 진로교육 현황
			6-2-2-2. 직업교육 현황
	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6-3-1. 여가·문화·활동 인프라 및 이용만족도	6-3-1-1. 청소년 여가·문화·활동시설 수*
			6-3-1-2.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만족도*
		6-3-2.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 정도	6-3-2-1.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
			6-3-2-2.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6-3-2-3. 하루 평균 학습시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7. 특별 보호 조치	7-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7-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구 수	7-1-1-1. 아동·청소년 난민 수
			7-1-1-2. 탈북 난민 아동·청소년 수
			7-1-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수
		7-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
			7-1-2-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구금 현황
		7-1-3.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1-3-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이용률
	7-2. 소년 사법	7-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현황	7-2-1-1.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시설 수용인원수
			7-2-1-2.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수용 현황
		7-2-2. 인권친화적 사법환경	7-2-2-1.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정 수
			7-2-2-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7-2-2-4. 소년보호사건 항고 및 재항고 접수 건
		7-2-3. 회복적 프로그램 (다이버전) 운영	7-2-3-1.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 참여자 수
			7-2-3-2. 사회 내 처우 청소년 수
	7-3. 경제적 착취	7-3-1. 청소년노동조건 수준	7-3-1-1. 청소년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7-3-1-2.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
			7-3-1-3. 청소년 실업률 추이
		7-3-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력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7-3-2-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률
	7-4. 성적 착취	7-4-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수준	7-4-1-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7-4-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
		7-4-2.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도	7-4-2-1.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현황
			7-4-2-2.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 주: 음영과 * 표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항목, 이탤릭체는 2023년도 수정·추가 항목

3.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 문항 구성 및 수정 내용

이 절에서는 2023년에 조사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의 설문 문항의 구성 및 수정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의 설문 문항의 시계열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권 이슈들을 포괄하기 위해 설문 문항 구성의 일부 개편을 시행하였다.

1) 개편의 방향

(1) 인권실태 문항 추가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2009년 통계청 승인통계로 지정되었다. 2009년부터 12년까지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영역을 2개씩 나누어 조사하였다가 2013년부터 매년 인권영역을 통합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조사로 시계열성을 보여주는 것에는 유리하나 이로 인해 현 상황에 맞는 인권실태를 보여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추가되어야 하는 인권실태 문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추가하고자 하였다.

(2) 조사공표범위의 세분화

이 조사 문항들은 하위 집단들 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통계청에서 승인 받은 조사의 공표범위는 성별(남, 여), 학교급(초, 중, 고),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가족유형(양부모, 한부모, 조손, 기타), 학업성적(상, 중, 하), 경제적 수준(상, 중, 하)별 자료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성별을 남, 녀가 아닌 다양한 성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2022년 포함된 장애여부, 다문화가정 여부 등을 공표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 개편 절차

개편 절차는 5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는 연구진의 설문지 검토, 2단계는 외부 전문가들의 설문지 검토, 3단계는 아동·청소년 FGI를 통한 프리테스트 진행, 4단계는 외부 전문가들의 타당도 검토, 5단계는 통계청 승인통계변경 검토 등이다.[10]

10) 이 연구의 설문 검토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가나다순): 강미정 팀장(세이브더칠드런), 김화숙

1단계에서는 현재 설문 문항의 인권 주제 포괄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인권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등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 이슈들을 잘 포괄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설문지는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7개 영역별로 구성되었다. 이들 영역과 문항들을 바탕으로 삭제, 변경, 추가할 문항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문항 추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CRC 일반논평 25호), 기후변화 관련 문항(CRC 일반논평 26호) 추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2단계에서는 외부 전문가 FGI를 대면으로 실시하였다. FGI에서의 초점은 설문문항 업데이트와 ① 발달결과(outcome) 지표 추가, ② 디지털 환경 관련 지표 추가, ③ 기후변화 관련 지표 추가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연구진이 제시한 논의의 초점 이외에도 전반적인 설문 문항의 개편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프리테스트를 진행하였고, FGI 방식으로 중학교 그룹과 고등학교 그룹으로 나누어 온라인으로 면담하였다. FGI는 연구진의 진행 하에 평일 저녁 시간에 75분 이내로 진행되었고, 먼저 설문 문항을 각자 풀어보게 한 후 한 문항씩 해당 문항이 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이해하기 용이하다고 생각하는지, ② 해당 문항에서 묻고 있는 사항이 현재 아동·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를 응답하게 하였다. 연구진은 FGI 결과를 정리하여 문항의 수정에 반영하였다.

4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전문가 FGI와 아동·청소년 프리테스트를 시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한 설문지를 전문가들에게 온라인 서면 자문 형식으로 최종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연구자는 이와 함께 개편방향에서 언급한 공표범위에 성별 다양성을 추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다.

5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앞선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한 내용을 통계청 검토를 거쳐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통계청은 개별 문항 추가에 대해서는 모두 승인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다문화여부, 장애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문항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심수진 사무관(통계청 통계개발원), 오연주 책임연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유조안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민영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조미형 연구위원(협동조합 함께하는 연구), 황세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좋은 검토 의견을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있고 소수를 대상으로 측정하고 있어 통계수치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연구진은 해당 문항이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소수 아동·청소년의 인권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이를 통해 소수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 격차에 대해 드러내는 것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통계청과 연구진은 향후 3년 간 해당 문항을 설문지에 추가하되 이 변수를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3년 후 조사의 안정성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공표범위에 포함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성별을 남자, 여자, 기타의 3가지 범주로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가 의견을 전달하였다. 연구진은 미국 인구 총조사의 경우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을 추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통계청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을 우려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 측정에 대해 인권통계의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11] 이를 통해 본 과제는 통계청 승인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승인 과정을 거쳐 2023년 5월~7월 동안 조사를 완료하였다.[12]

3) 개편 결과

이와 같은 개편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 보완이 이루어졌다. 첫째는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적 환경을 보완한 것이다. 이 연구는 동네 환경, 디지털 환경, 기후환경 관련 문항을 일부 추가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점이 추가된 생태체계적 장에서도 연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되었다. 둘째는 아동·청소년의 발달결과(outcome)와 관계(사회적 자본) 관련 문항을 추가한 것이다. 주관적 삶의 질 측면에서 행복도, 외로움과 고립감을 추가하였고, 관계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을 나타낼 수 있는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피해를 입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있는지에 관한 문항 등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관계 결핍이 사회적 고립뿐만 아니라 지원체계로부터의 배제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주관적 웰빙이나 인권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삶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11) 미국 센서스의 LGBTQ+ 측정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미국 인구조사국의 페이지를 참고: https://www.census.gov/library/stories/2021/11/census-bureau-survey-explores-sexual-orientation-and-gender-identity.html

12)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과제관리번호: NYPI-202304-HR-고유-032-02, 승인번호: 202305-HR-고유-008)

위해 추가되었다. 셋째는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 문항이다. 자신의 인권 수준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인권수준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다차원적으로 측정하였고, 자신의 인권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이 3년 전/현재/3년 후 어떻게 변화되어왔고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측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시계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인권 변화의 추이(trends)를 객관적 지표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식의 변화로도 함께 살펴보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정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최종 문항은 아래와 같다. 수정·추가된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거 문항과의 비교 대조표, 변경 근거 등은 [부록]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변경문항 세부내역(초등학생용·중고등학생용)에 상세히 기재하였다.

표 Ⅲ-3-1.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 항목

※ 밑줄과 기울기 표기는 수정·추가 사항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31(1~3)	39(1~3)
		인권 존중정도(가정, 학교, 사회, *온라인공간*)	32(1~4)	40(1~4)
		인권 의식 및 태도 (결정능력, 사회참여, 자치조직, 표현의 자유, 차별-경제적 이유, 성별, 민족/인종, *성정체성/성적지향*)	33(1~7)	41(1~8)
		인권교육 경험	34	42
		인권교육 받은 기관	34-1	42-1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인식, 태도, 행동)	34-2(1~3)	42-2(1~3)
		장애인 인권 인식 및 태도	37(1~4)	45(1~4)
		일상생활에서의 인권 보장 정도	-	*49(1~9)*
		인권 수준(현재 자신, 현재 청소년, 과거 3년간 권리수준변화, 앞으로 3년 후 권리수준변화예상)	*41-1, 41-2*	*50-1, 50-2, 50-3, 50-4*
	일반원칙	차별 피해 경험 (성별, 학력, 연령, 외모, 경제적 이유, *동네* 지역, 종교, 가족유형, 장애, 인종)	35(1~10)	43(1~10)

※ 밑줄과 기울기 표기는 수정·추가 사항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차별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35-1*	*43-1*
		차별 가해 경험 (성별, 학력, 연령, 외모,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가족유형, 장애, 인종)	36(1~10)	44(1~10)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의견 표명권	의사결정시 보호자의 태도 (가정사, 진학, 진로, 학습, *휴식, 여가시간 존중*)	4(1~3)	4(1~6)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자율성, 자격조건, 활동여건, 의견반영)	-	5(1~4)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6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5(1)	7(1)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6	8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7	9
		참여 장애 이유	8	10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	-	11(2)
		종교의 자유 보장수준(학교)	-	12,12-1
		종교의 자유 보장수준(가정)	-	11(1)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결사·집회 경험률	-	13(1~2)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	13-1
	사생활의 보호	학교에서의 사생활 보호(용모, 복장, 소지품, *수업시간내 핸드폰 사용금지 경험, 수업시간외 핸드폰 압수 경험*)	-	*14(1~5)*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가족관계 및 가정형편 등 민감 정보 공개, 징계처분 내용 공개, 시험성적 공개, *징계시 의견 수렴*)	5(2~3)	7(2~5)
3. 폭력 및 학대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가정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체벌, 모욕적인 말·욕설)	9(1~2)	15(1~2)
		학교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체벌, 모욕적인 말·욕설)	9(3~4)	15(3~4)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욕설, 구타, 따돌림, 금품갈취, 성추행, 강제 심부름)	10(1~6)	16(1~6)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 경험률	11(1~5)	17(1~5)

※ 밑줄과 기울기 표기는 수정·추가 사항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성적 피해 경험률 및 도움 제공자	25,25-1	33, 33-1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가정 내 방임 유형 및 정도 (야간시간 방임, 비위생적 의복·침구사용, 질병 무관심, 결식시 방치, 결석 무관심)	12(1~5)	18(1~5)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가출 경험 여부	13	19
		가출 이유	13-1	19-1
		가출시 서비스 이용 기관 및 이용 만족도	-	19-2, 19-3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생존 및 발달	거주지역의 안전수준 (범죄, 교통사고)	14	20
		거주지역(동네)의 상황(안전, 놀 장소, 도와줄 사람, 지역 의사결정 과정 참여)	*15(1~3)*	*21(1~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16	22
		운동 실천율	17	23
		수면시간	18	24
		수면부족 여부	19	25
		수면부족 이유	19-1	25-1
		자살에 대한 생각	-	26
		자살 생각 이유	-	26-1
		우울감	20(1~3)	27(1~3)
		자아존중감	20(4~6)	27(4~6)
		외로움	*24(1~3)*	*31(1~3)*
		고립감	*24(4)*	*31(4)*
		고립감을 느낀 기간	*24-1*	*31-1*
		고민거리 대화상대	21	28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22*	*29*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3(1~6)*	*30(1~6)*
	주관적 웰빙	행복도	1	1
		행복하지 않은 이유	1-1	1-1
		삶의 만족도	2, 3	2, 3

※ 밑줄과 기울기 표기는 수정·추가 사항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에의 권리	학업중단 생각 여부	26	34
		학업중단 생각 이유	26-1	34-1
	교육의 목표	학교생활 만족도 (친구 간 존중, 교사의 존중, 수업의 재미, 학교 즐거움)	27(1~4)	35(1~4)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	28(1~4)	36(1~4)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만족도	28-1	36-1
		하루평균 여가활동 시간	29	37
		하루평균 학습시간	30	38
7. 특별보호조치	경제적 착취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아르바이트 경험, 부당처우 경험 - 근로계약서)	-	32, 32-1(1~9)
8. 일반논평	*디지털 환경*	*디지털(온라인) 환경 인식*	*39(1~2)*	*47(1~4)*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의 인권침해 생각	*40(1~4)*	*48(1~4)*
	기후환경	*기후변화 인식*	*38(1~5)*	*46(1~5)*
배경문항	출생년도, 가족구성, 부모님 학력, 다문화 가정 여부, 장애 여부,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 출처 : 김영지, 최홍일, 유성렬, 이은주(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pp. 68-70의 표를 수정보완하여 제시하였음.

4. 시사점 및 향후 방향

이 연구의 인권 측정 프레임워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 질문과 연관이 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정부의 노력과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변화를 어떻게 지표를 통해 보여줄 것인가"

이번 연구에서는 연속과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이행 모니터링체계를 유지하되, 인권실태조사 조사문항을 추가하여 연구 주제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① 발달결과(outcome) 지표 추가, ② 디지털 환경 관련 지표 추가, ③ 기후변화 관련 지표 추가 등을 통해 현재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나 협약이행모니터링 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포괄하고자 하였다. 다만, 현재의 지표 체계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기보다는 차년도 심층연구로 진행할 계획이다(해당 지표의 구체적 내용은 별권으로 구성된 기초분석보고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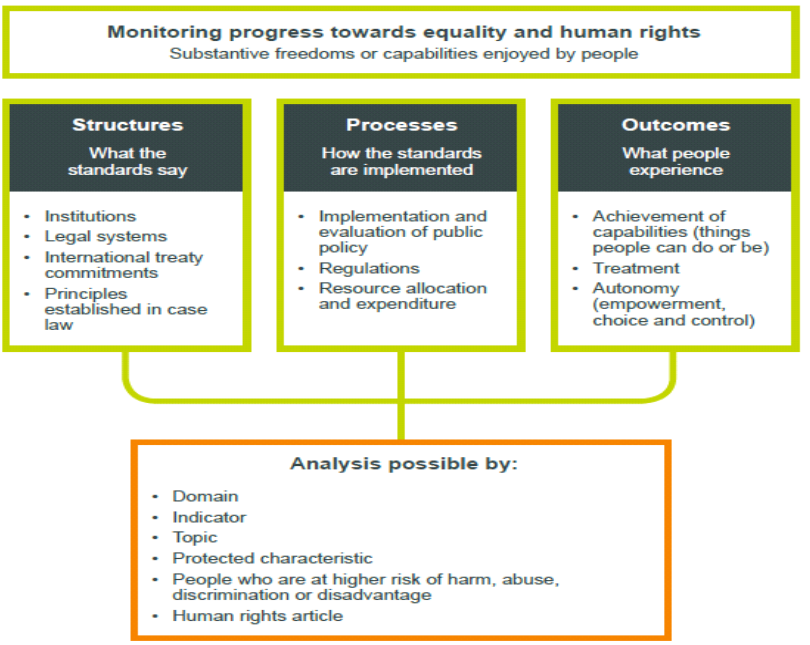
향후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새로운 영역의 반영이다. 기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7개 대분류, 24개 중분류, 51개 소분류, 11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김영지 외, 2021: 76). 이 연구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5호(디지털 환경)와 26호(기후변화)를 포괄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올해 신규로 조사된 문항은 일부의 정보를 나타낼 수는 있으나 사회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는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새로운 영역에 대한 사회지표가 필요하며, 이를 보고함으로써 해당 지표의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프레임의 보완이 필요하다(유민상 외, 2022). 이는 기존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연구 프레임워크와 유사하나, 인권 보장과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로의 발전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프레임 내에 위치시켜 놓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발달 성과(outcome)를 프레임에 추가해야할 필요가 있다. 발달 성과의 결과는 주관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감정, 삶의 의미), 외로움, 고립감 등의 주관적 지표(subjective indicators)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인권보장 수준과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체계는 권리증진이 삶의 질 증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권리지표의 개선이 삶의 질 증진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환경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소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기 위하여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보장체계의 구조(structure), 과정(process), 결과(outcomes)의 체계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단, 이러한 방향을 현재의 이행모니터링 체계 내에 위치시킬 것인지, 별도의 이행모니터링 체계나 별도의 연구로 수행해야 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Measurement Framework for Equality and Human Rights.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p.32.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publication-download/measurement-framework-equality-and-human-rights 에서 2023년 3월 14일 인출.

그림 Ⅲ-4-1. 증거기반 인권 모니터링 과정 개념도(구조, 과정, 결과 활용)

제4장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1. 조사개요
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4. 폭력 및 학대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6.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8. 특별보호조치

4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13), 14)]

1. 조사개요

1) 표본설계

먼저 반복횡단조사 자료인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를 수행하기 위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리서치 회사를 통해 외부 통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표본설계를 기획하였다.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조사모집단은 2022년 4월 기준 한국교육통계DB상의 전국(세종시, 제주도 포함)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청소년들로 설정하였다. 초등학교 4~6학년은 1,384,521명(34.7%), 중학교 1~3학년은 1,348,428명(33.8%), 고등학교 1~3학년은 1,262,348명(31.6%)이며, 전체 조사대상 학생수는 3,995,297명으로 파악되었다(강현철, 2023, p.1).

표본크기인 목표표본수는 조사의 현실적인 여건인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9,000명(초등학교 4~6학년 3,119명, 중학교 1~3학년 3,038명, 고등학교 1~3학년 2,844명)으로 정하였는데, 표본오차는 단순랜덤추출을 가정할 때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1.0%P로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생각된다(강현철, 2023, p.5).

표집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먼저 교급 및 학교유형(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지역(17개 시도)을 기준으로 층화하였다. 이때 자율고, 특성화고는 17개 시도

13) 이 장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성렬 교수(백석대학교, 공동연구원)가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14) 인권실태조사 통계 분석표의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표내 수치의 합계 수치와 전체 수치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그래프의 수치와 표내 수치의 합계 역시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별로 층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5개 권역으로 층화하였고, 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층화가 아예 어려운 상황이라 지역별 층화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때 각 층에 학생수에 단순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특정한 층에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생겨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가 할당되도록 하는 변형비례배분 방식으로 표본을 배분하였다(강현철, 2023, pp.5-9).

표 Ⅳ-1-1.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학생수)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초등학교</th><th rowspan="2">중학교</th><th colspan="3">인문계고</th><th>전문계고</th></tr>
<tr><th>일반고</th><th>자율고</th><th>특수목적고</th><th>특성화고</th></tr>
<tr><td>서울</td><td>450</td><td>405</td><td>225</td><td>75</td><td rowspan="18">150</td><td>150</td></tr>
<tr><td>경기</td><td>825</td><td>729</td><td>450</td><td rowspan="2">75</td><td rowspan="2">150</td></tr>
<tr><td>인천</td><td>150</td><td>162</td><td>150</td></tr>
<tr><td>강원</td><td>75</td><td>81</td><td>75</td><td rowspan="5">75</td><td rowspan="5">150</td></tr>
<tr><td>충북</td><td>75</td><td>81</td><td>75</td></tr>
<tr><td>충남</td><td>150</td><td>162</td><td>75</td></tr>
<tr><td>대전</td><td>75</td><td>81</td><td>75</td></tr>
<tr><td>세종</td><td>75</td><td>81</td><td>75</td></tr>
<tr><td>경북</td><td>150</td><td>162</td><td>75</td><td rowspan="5">75</td><td rowspan="5">150</td></tr>
<tr><td>경남</td><td>225</td><td>243</td><td>150</td></tr>
<tr><td>부산</td><td>150</td><td>162</td><td>75</td></tr>
<tr><td>대구</td><td>150</td><td>162</td><td>75</td></tr>
<tr><td>울산</td><td>75</td><td>81</td><td>75</td></tr>
<tr><td>전북</td><td>75</td><td>81</td><td>75</td><td rowspan="4">75</td><td rowspan="4">150</td></tr>
<tr><td>전남</td><td>75</td><td>81</td><td>75</td></tr>
<tr><td>광주</td><td>75</td><td>81</td><td>75</td></tr>
<tr><td>제주</td><td>75</td><td>81</td><td>75</td></tr>
<tr><td>합계</td><td>2,925</td><td>2,916</td><td>1,950</td><td>375</td><td>150</td><td>750</td></tr>
</table>

* 출처: 강현철(2023).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표본설계보고서. 내부자료. p.8

※ 총계: 9,066명

이후 표본추출은 각 층에서 크기비례(PPS)방식으로 학교를 추출(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인 학교만 추출)한 후, 추출된 학교에서 1개 학년을 추출하고, 추출된 학년에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학급의 청소년 모두를 조사대상

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가 조사협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같은 층 학교리스트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대체하였다. 또한 사전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 학급은 제외하고 지역별로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하도록 하였다(강현철, 2023, pp. 9-10).

2) 통계청 변경 승인 및 기관 IRB 승인

다음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정보완된 설문지에 대해,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청 변경 승인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 IRB 승인 절차를 수행하였다.

통계청 변경승인 신청에 앞서 먼저 4월 중순에 통계청 행정자료 우선활용 판단 검토부터 수행하였다. 통계청 행정자료우선활용시스템에,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여부 판단의뢰서, 통계작성 기획서, 초등학생용 설문지, 중고등학생용 설문지, 항목별 판단결과표를 업로드하여,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는 우선활용할 행정자료가 없음을 최종판단으로 제출하였다.

이어 4월 말~5월 초에 통계청 통계변경승인 절차를 수행하였다. 통계청 담당과에 신청공문과 함께,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통계작성을 위한 기획서, 조사지침서, 표본설계보고서, 문항변경 세부내역_초등학생용, 문항변경 세부내역_중·고등학생용, 조사표_초등학생용, 조사표_중·고등학생용, 통계결과 표 서식, 행정자료우선활용판단 항목별 판단결과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통계변경을 승인받았다.

또한 4월 말~5월 초에 본원 기관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도 수행하였다. 본원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신청서, 연구계획서, 설문지_초등학생용, 설문지_중고등학생용, 조사설명문, 참여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생명윤리 준수서약서, 연구윤리교육이수증 등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IRB 승인(202305-HR-고유-008)을 받았다.

3) 조사준비 및 조사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월에 전문 리서치기관을 선정하여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를 사전 약속을 통해 방문하여 조사대상 학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종이 설문지에 의한 자기 기입식(self-reported) 집단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 방문조사가 힘들 경우 30% 이내에서 우편조사도 병행하였다.

먼저 선정된 리서치 기관에서의 조사원 선발은 학교방문조사 유경험, 조사원 관리 DB 평가기록, 상시 체크리스트 검증 통과 등 3단계에 걸치는 과정을 통해 우수 조사원들을 선발하여 조사에 투입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5월 11일~12일에 걸쳐 리서치 회사의 서울, 대전, 부산 실사사무실에서 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원 지침서와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원 교육에서는 먼저,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크기, 자료수집방법, 실사기간 등 조사개요에 대한 안내가 실시되었다. 둘째, 자료수집 절차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학교 접촉 및 방문 절차, 자료수집의 실제 및 단계, 주요 예상 질문 및 대응 시나리오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셋째,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의 주요 문항별 지침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넷째, 조사진행시 면접원 유의사항으로 면접원의 역할과 의무, 일반적인 주의사항, 면접조사 태도, 면접원이 해서는 안 될 일들, 면접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조사 시 사용하는 멘트, 면접원 지참물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조사를 위한 학교 접촉은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협조공문과 조사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를 통해 조사 허락을 얻은 다음 약속된 일시에 학교를 방문하는 절차로 수행되었다. 학교 접촉과정에서 학교의 조사 거절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정해진 표본대체 방법(같은 층 안에서 무작위로 대체)에 의해 선정된 대체표본 학교를 접촉하였다. 조사를 위한 학교 접촉과정은 학교 컨택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컨택 현황, 접촉횟수, 거절사유, 거절율, 표본대체 결과, 대체율 등의 컨택 para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태로 관리되었다. 학교접촉과정에서 학급방문 집단설문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일부 아직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음을 우려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설문지 밀봉 제출 방식의 우편조사도 병행하였다.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조사 기간은 2023년 5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되었다.

4) 최종 데이터 생성

이후 수집된 설문지는 에디팅, 검증, 더블 펀칭, 가중치 부여 과정을 거쳐 최종 데이터로 생성되었다.

조사 완료된 설문지에 대한 에디팅은 먼저 조사 현장인 학급에서 조사원들이 설문지를 수거한 후 무응답 등에 대해 검토하는 1차 현장 에디팅을 수행하고, 이후 수거된 설문지에 대해 본사 에디팅 담당요원이 무응답 등 오류에 대해 2차 에디팅을 수행하는 형태로 실시되었다. 에디팅 결과 특정 학교의 학급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어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대체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검증은 조사 시작 10% 이상 진행 시 실시하는 현장 방문 검증과 조사 완료 후 조사 대상 전체 표본학교의 협력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 진행 여부, 조사원 규칙 준수, 문제점 등에 대해 실시하는 전화 검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펀칭은 스피드펀칭시스템에 의한 더블 펀칭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프로그램화된 시스템에 의한 더블 펀칭 방식은 입력 오류를 찾아낼 수 있고, 설문 로직을 고려한 펀칭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는 먼저 설계가중치로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어 단위무응답에 대한 조정가중치를 부여하며, 최종적으로 성별에 대한 사후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가중치를 부여하였다(강현철, 2023, p.11).

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15)]

1) 인권일반

(1) 인권 인프라 구축 정도

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제도[16)]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간의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률 제·개정 사항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2-1〉과 같다. 법률별로는 아동복지법 4건, 아동수당법 시행령 1건, 영유아보육법 1건, 초중등교육법 2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건이 개정되었다. 내용별로는 학대 관련 3건, 대안양육 관련 2건, 복지관련 2건, 보육관련 1건, 참여관련 2건, 교육관련 2건이 개정되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보호, 아동수당 지급, 자립지원이 법률적으로 강화되었고, 학교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의무화가 법률적으로 강화되었다.

표 Ⅳ-2-1. 아동·청소년 법령 제·개정 현황

법령명	제·개정일	주요 내용	영역
아동복지법	개정 2023.6.13. 시행 2023.12.14.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③학대
아동복지법	개정 2023.7.18. 시행 2024.1.19.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	③학대

15) Ⅳ장의 이 부분부터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중분류-지표(소분류)-지표항목에 따라 단계별 소제목을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이 과제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횡단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으로도 살펴보는 연속과제이므로, 과거 인용된 행정통계 자료, 타분야 통계 자료,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 등을 누적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많아, 일부는 자료 성격에 따라 출처 표기시 전년도 보고서를 포괄적인 출처로 제시하거나 각 년도 참고자료를 대표로 제시하고 신규 참고자료의 출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였다(김영지, 황세영,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0: 170; 김영지 외, 2021: 93; 김영지 외, 2022: 72). 모든 변수를 포함한 전체 통계결과표와 추이그래프는 202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에서 참고할 수 있다.

16)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률 제·개정 현황자료는 2023년 9월 한 달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제·개정된 법률들을 검색하여 해당법령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법령명	제·개정일	주요 내용	영역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④대안양육
아동복지법	개정 2023.7.18. 시행 2025.7.19.	•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함.	④대안양육
아동복지법	개정 2023.8.8. 시행 2024.2.9.	• 아동의 안전과 보호강화를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의 장도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③학대
		•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을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⑤복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 2023.9.12. 시행 2023.9.14.	• 2024년 1월 1일부터 아동수당으로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10만원 외에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	⑤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 2023.6.13. 시행 2023.12.14.	•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함.	④보육
초·중등교육법	개정 2022.10.18. 시행 2023.4.19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각종학교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	②참여
초·중등교육법	개정 2022.12.27. 시행 2023.6.28.	• 국가와 교육청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온전히 지원하도록 '학습부진아 등' 이라는 용어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개정하고,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⑥교육

법령명	제·개정일	주요 내용	영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23.4.11. 시행 2023.4.19.	•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993호, 2022. 10. 18. 공포, 2023. 4. 19.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법정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각종학교 중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②참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23.6.27. 시행 2023.6.28.	•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를 학생의 성명, 학년, 소속 학교 및 교과목 이수 현황 등으로 정하고, 수집된 정보의 보존기간을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진로, 보건, 인성 등에 관하여 조언, 상담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⑥교육

* 출처: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3년 9월 7일 인출.
「아동수당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3년 9월 17일 인출.
「영유아보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
「초중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

* 주: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한 법령별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여 기재함.
2) 영역 : 이 연구의 인권지표체계 영역인 ①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② 시민적 권리와 자유, ③ 폭력 및 학대, ④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⑤ 장애·기초 보건 및 복지, ⑥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⑦ 특별보호조치를 지칭함.

②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현황은 다음 〈표 Ⅳ-2-2〉와 같다. 이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나라살림 예산' 자료에서 각 부처 아동·청소년 정책사업 관련 예산을 합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을 산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김영지 외, 2021: 99-100; 김영지 외, 2022: 75-76).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비율을 산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비율은 3.7%로 2021년 3.2%에 비해 0.5% 증가하였다.

표 Ⅳ-2-2.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2017~2022년)

(단위 : 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가 전체 예산(A)		275,010,413,607	301,417,202,896	331,777,014,900	356,568,644,000	380,850,870,030	421,416,033,950
아동·청소년 예산	유아·초중등교육	47,149,425,794	53,716,467,248	59,401,432,000	60,324,475,000	58,428,301,000	70,554,438,000
	소년사법	22,371,000	23,967,000	23,864,000	27,043,000	27,407,000	29,268,000
	아동복지	245,178,000	899,377,000	2,385,469,000	2,541,321,000	2,526,208,000	2,857,310,000
	보육	5,373,451,000	5,505,231,000	5,689,214,000	5,872,783,000	5,959,703,000	5,893,110,000
	(아동폭력예방)	11,773,000	12,251,000	99,909,000	122,217,000	126,724,000	156,391,000
	청소년	87,169,000	77,353,000				
	소계(B)	52,889,367,794	60,234,646,248	67,558,216,000	68,888,339,000	67,068,343,000	79,490,517,000
(B)/(A)*100(%)		19.2	20.0	20.3	19.3	17.6	18.9
아동·청소년 인구(명)		8,480,447	8,176,335	7,964,880	7,710,946	7,483,944	7,271,460
1인당 지출비용(천원)		6,237	7,367	8,487	8,945	8,962	10,932
GDP(국내총생산)		1,730.4조원	1,782.3조원	1,919.9조원	1,933.2조원	2,071.6조원	2,161.7조원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 비율(%)		3.1	3.4	3.5	3.6	3.2	3.7

*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2017-2020). 나라살림예산.
  기획재정부(2021-2022).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사이트(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index)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 아동·청소년 예산 산출식: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예산」기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051항 유아 및 초중등교육) + (소년사법 예산: 1632항 소년보호) + (아동복지 예산: 1300항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2539항 아동수당 지원) + (보육 예산: 3100항 보육지원강화) + (청소년 예산: 2200항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 2136항 아동·여성안전정책지원 + 2137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정책지원)
* 전체 국가 예산(A)은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예산」,「나라살림 예산개요」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임.
* 2019년부터 '청소년' 예산에 여성가족부의 '아동폭력예방' 예산을 통합하여 산출함.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예산 일부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아동수당 예산은 2018년도부터 포함됨.
* 인구 출처: 통계청 KOSIS(2023).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중 0세~17세 인구수의 합(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SelectStatsBoxDiv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 2021년 예산 및 아동·청소년 인구는 최종 공지된 예산과 인구수(2021.12. 기준)로 업데이트하여 재산출되었음.
* GDP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 비율(%) 산출식: 아동·청소년 예산(총계)/GDP×100
* 최근 년도 예산자료에 제시된 기준으로 이전년도 예산수치를 수정함.

(2) 인권에 대한 인식

①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를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 〈표 Ⅳ-2-3〉과 같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는 '모른다' 29.1%, '이름만 들어봤다' 48.5%,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는 22.4%였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모른다' 50.5%, '이름만 들어봤다' 41.4%,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는

8.1%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모른다' 22.9%, '이름만 들어봤다' 54.3%,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는 22.9%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 종단적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Ⅳ-2-1),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는 2021년에 약간 낮아지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도 2021년에 약간 낮아지다가 최근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작년까지 낮아지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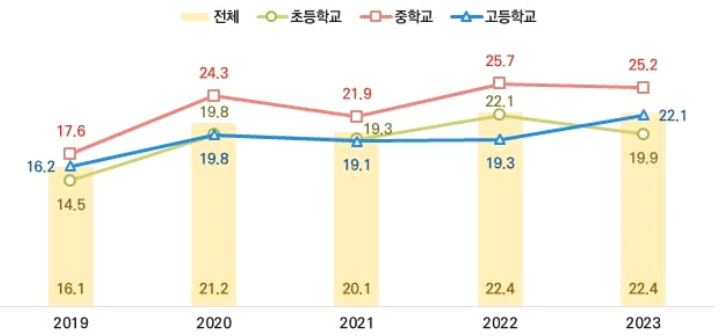
표 Ⅳ-2-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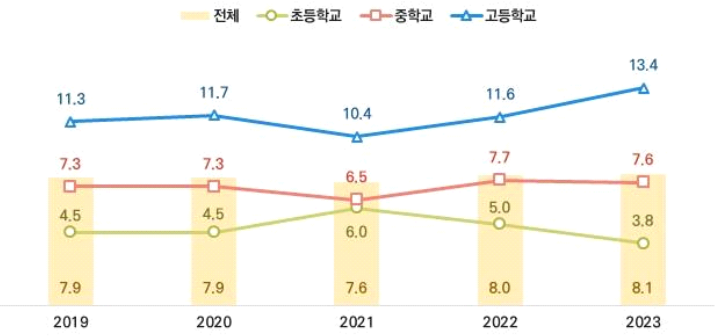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전체		29.1	48.5	22.4	100.0(8,763)	
	성별	남학생	29.8	46.6	23.6	100.0(4,513)	15.504***
		여학생	28.3	50.6	21.1	100.0(4,250)	
	학교급	초등학교	41.0	39.1	19.9	100.0(3,037)	352.023***
		중학교	19.9	54.8	25.2	100.0(2,961)	
		고등학교	25.8	52.2	22.1	100.0(2,766)	
	지역규모	대도시	26.8	48.2	25.0	100.0(3,449)	28.485***
		중소도시	30.4	48.9	20.7	100.0(4,270)	
		읍면지역	31.4	48.1	20.5	100.0(1,045)	
2) 학생인권조례	전체		50.5	41.4	8.1	100.0(8,751)	
	성별	남학생	52.9	39.2	7.9	100.0(4,508)	21.609***
		여학생	48.0	43.7	8.4	100.0(4,243)	
	학교급	초등학교	65.5	30.7	3.8	100.0(3,027)	552.603***
		중학교	48.3	44.2	7.6	100.0(2,960)	
		고등학교	36.4	50.2	13.4	100.0(2,764)	
	지역규모	대도시	52.8	39.9	7.3	100.0(3,446)	17.413**
		중소도시	48.5	42.5	9.0	100.0(4,260)	
		읍면지역	50.8	41.7	7.5	100.0(1,044)	
3) 국가인권위원회	전체		22.9	54.3	22.9	100.0(8,749)	
	성별	남학생	25.0	52.8	22.2	100.0(4,507)	24.704***
		여학생	20.6	55.8	23.6	100.0(4,242)	
	학교급	초등학교	29.7	52.7	17.5	100.0(3,027)	177.096***
		중학교	21.2	55.2	23.6	100.0(2,960)	
		고등학교	17.1	55.0	27.9	100.0(2,762)	
	지역규모	대도시	22.1	53.4	24.5	100.0(3,443)	10.381*
		중소도시	23.0	55.1	21.9	100.0(4,260)	
		읍면지역	24.7	53.9	21.4	100.0(1,045)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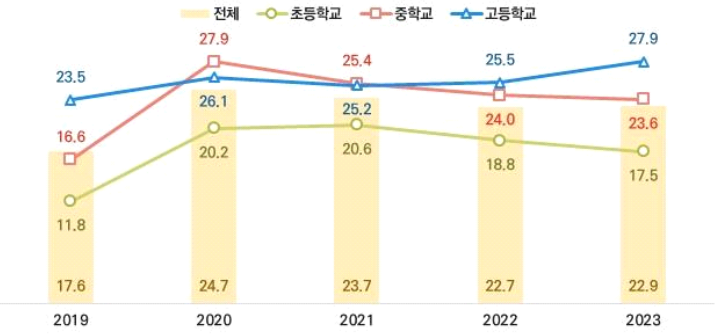
1) 유엔아동권리협약



2) 학생인권조례



3) 국가인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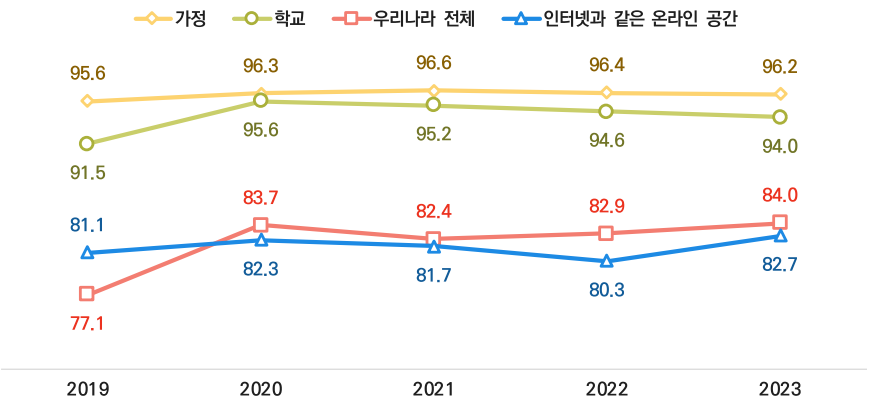


*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연도별 추이)

②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공간)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 정도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 [그림 Ⅳ-2-2]와 같다.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 아동·청소년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정(96.2%), 학교(94.0%), 우리나라 전체(84.0%), 온라인 공간(82.7%) 순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가정, 학교가 약간 낮아지고,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공간이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가정, 학교가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공간에 비해 높다. 최근 5년간의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인권 존중 정도가 상승하다가, 가정, 학교는 최근 수년간 미세하게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공간은 최근 수년간 미세하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_전체 영역(연도별 추이)

가.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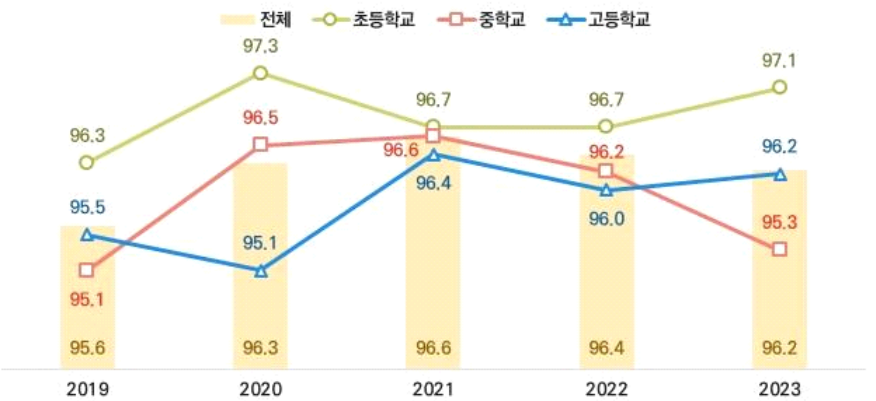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 아동·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96.3%(존중받는 편 36.3%, 매우 존중 60.0%)로 높았다. 매우 존중받는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보면 남학생이,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표 Ⅳ-2-4). 아동·청소년들의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정도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미세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2-3).

표 Ⅳ-2-4.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55(0.59)	0.7	3.0	36.3	60.0	100.0(8,763)	
성별	남학생	3.57(0.60)	1.0	2.9	34.5	61.6	100.0(4,513)	20.456***
	여학생	3.54(0.59)	0.5	3.2	38.1	58.2	100.0(4,250)	
학교급	초등학교	3.63(0.55)	0.3	2.5	30.9	66.2	100.0(3,035)	85.010***
	중학교	3.51(0.62)	1.1	3.6	38.6	56.7	100.0(2,962)	
	고등학교	3.52(0.60)	0.9	3.0	39.6	56.6	100.0(2,766)	
경제적 수준	상	3.64(0.55)	0.5	2.0	30.6	66.9	100.0(5,414)	515.091***
	중	3.47(0.58)	0.5	3.1	45.6	50.8	100.0(2,651)	
	하	3.18(0.78)	3.6	12.2	46.3	37.9	100.0(602)	

*p < .05, **p < .01, ***p < .001.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2-3.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연도별 추이)

나.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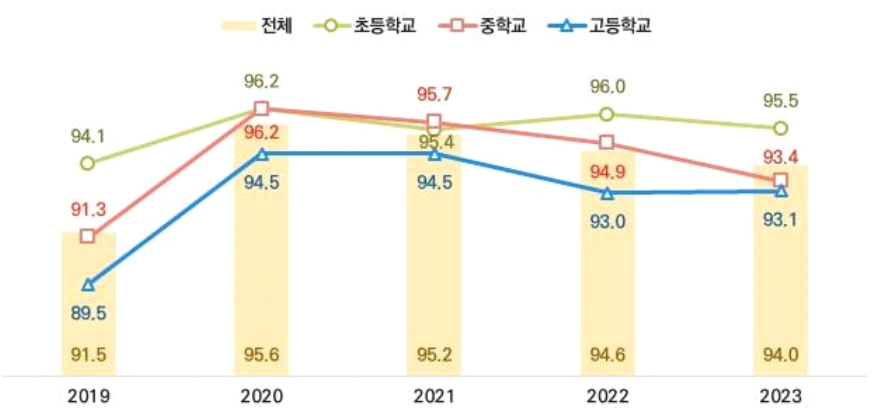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94.0%(존중받는 편 53.8%, 매우 존중 40.2%)로 높았다. 매우 존중받는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표 Ⅳ-2-5).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인권존중 정도는 많이 증가하다가 최근 미세하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2-4).

표 Ⅳ-2-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33(0.62)	1.2	4.8	53.8	40.2	100.0(8,758)	
성별	남학생	3.33(0.65)	1.5	5.5	51.1	41.9	100.0(4,507)	37.729***
	여학생	3.33(0.59)	0.8	4.1	56.7	38.4	100.0(4,251)	
학교급	초등학교	3.41(0.60)	0.6	4.0	49.5	46.0	100.0(3,030)	75.486***
	중학교	3.29(0.63)	1.4	5.1	56.0	37.5	100.0(2,962)	
	고등학교	3.28(0.63)	1.5	5.4	56.3	36.8	100.0(2,766)	
경제적 수준	상	3.39(0.61)	0.9	4.0	49.6	45.4	100.0(5,410)	225.089***
	중	3.26(0.59)	1.0	5.3	61.0	32.8	100.0(2,651)	
	하	3.09(0.69)	3.3	10.1	61.2	25.4	100.0(602)	

*p < .05, **p < .01, ***p < .001.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2-4.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연도별 추이)

다. 우리나라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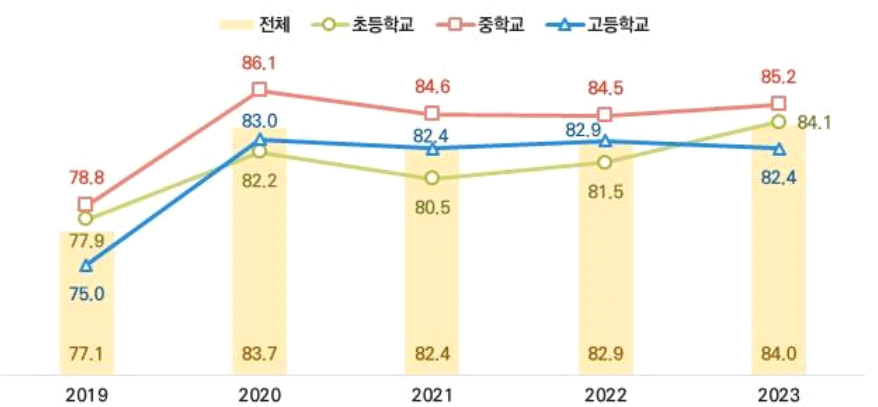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 아동·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84.0%(존중받는 편 58.8%, 매우 존중 25.2%)였다. 매우 존중받는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보면 남학생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표 Ⅳ-2-6). 아동·청소년들의 우리나라 전체에서의 인권존중 정도는 많이 증가하다가 최근 미세하게 감소했는데 다시 미세하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2-5).

표 Ⅳ-2-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06(0.71)	3.3	12.7	58.8	25.2	100.0(8,735)	
성별	남학생	3.06(0.76)	4.3	12.8	55.7	27.2	100.0(4,495)	58.937***
	여학생	3.06(0.67)	2.2	12.7	62.0	23.1	100.0(4,241)	
학교급	초등학교	3.08(0.73)	3.7	12.1	56.7	27.5	100.0(3,013)	25.499***
	중학교	3.07(0.69)	2.9	11.9	60.6	24.6	100.0(2,956)	
	고등학교	3.02(0.71)	3.3	14.3	59.2	23.2	100.0(2,766)	
경제적 수준	상	3.11(0.70)	2.7	11.3	57.7	28.2	100.0(5,395)	140.233***
	중	3.00(0.71)	3.7	13.7	61.3	21.3	100.0(2,649)	
	하	2.80(0.75)	6.4	21.3	58.6	13.8	100.0(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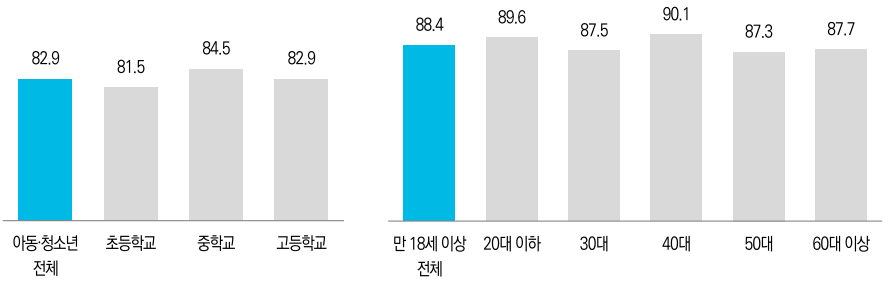
*p<.05, **p<.01, ***p<.001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2-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연도별 추이)

본 아동·청소년 대상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성인대상의 '국가인권실태조사'에 공통문항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은 82.9%가, 성인은 88.4%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하여. 성인이 아동·청소년보



* 출처: 김영지 외(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82.
한준, 정병은, 김종우, 김대훈, 이시림(2022). 2022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 부록2. p.4.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주: 1)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2) 2022 국가인권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에 걸친 표본 추출을 통해 얻은 표본 가구의 **만 18세 이상 국민이며,** 최종적으로 조사된 표본은 9,043가구의 16,148명이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7월 1일에서부터 2022년 9월 16일까지였다. 조사 방법은 일대일 면접조사로 TAPI(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득이한 경우 유치조사와 웹-모바일 방식의 조사가 병행되었다.
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익년 1월 공표,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익년 11월에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당해에 데이터 비교가 어려우므로 전년도인 2022년도 결과로 작성함.

그림 Ⅳ-2-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라. 온라인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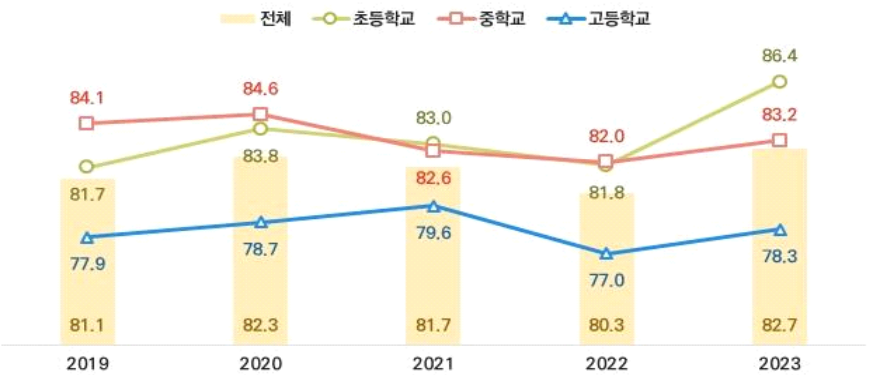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82.8%(존중받는 편 58.1%, 매우 존중 24.7%)였다. 매우 존중받는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표 Ⅳ-2-7). 아동·청소년들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권존중 정도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미세하게 감소했는데 다시 미세하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2-7).

표 Ⅳ-2-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03(0.74)	4.4	12.8	58.1	24.7	100.0(8,711)	
성별	남학생	2.98(0.80)	6.2	14.5	54.3	25.0	100.0(4,488)	105.229***
	여학생	3.08(0.67)	2.6	11.0	62.1	24.3	100.0(4,224)	
학교급	초등학교	3.12(0.72)	3.5	10.1	57.0	29.4	100.0(2,987)	101.656***
	중학교	3.02(0.73)	4.3	12.5	59.7	23.5	100.0(2,960)	
	고등학교	2.94(0.77)	5.7	16.0	57.5	20.9	100.0(2,764)	
경제적 수준	상	3.09(0.73)	3.7	11.2	57.2	28.0	100.0(5,377)	161.610***
	중	2.96(0.73)	4.6	14.7	60.7	20.0	100.0(2,644)	
	하	2.76(0.82)	9.6	19.7	56.2	14.5	100.0(600)	

*p<.05, **p<.01, ***p<.001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2-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연도별 추이)

③ 인권의식 및 태도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 및 태도 중 아동·청소년의 참여관련 인식을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Ⅳ-2-8〉과 같다.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성인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질문에는 67.6%(전혀 그렇지 않다 24.5%, 그렇지 않은 편이다 43.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에는 83.7%(그런 편 55.9%, 매우 27.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질문에는 85.7%(그런 편 59.8%, 매우 25.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주체적 결정 능력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은 70%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수년간 미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은 87%를 유지하다가 최근 수년간 미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치조직의 의의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최근 수년간 미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Ⅳ-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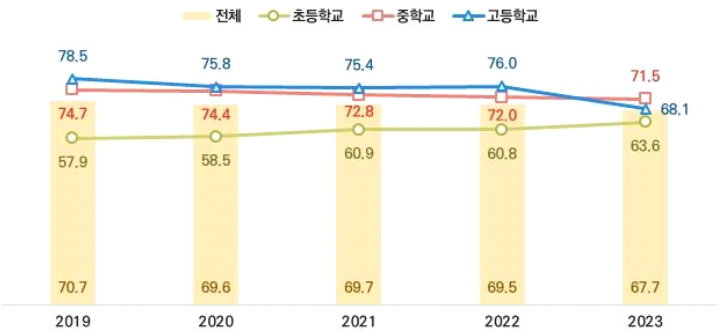
표 Ⅳ-2-8. 인권의식 및 태도_아동·청소년의 참여 관련 인식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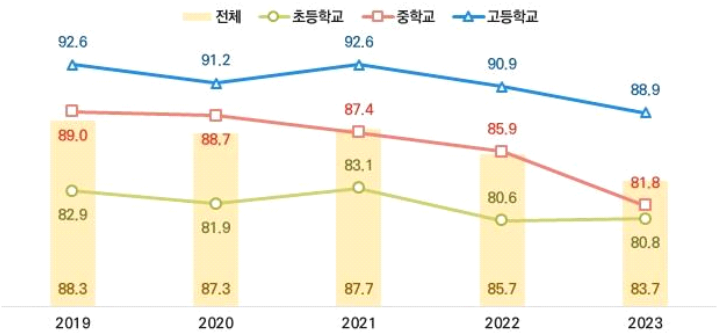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주체적 결정 능력 부족 (*부정적 질문)	전체		2.13(0.84)	24.5	43.1	27.3	5.0	100.0(8,751)	
	성별	남학생	2.20(0.86)	23.0	40.2	30.8	6.0	100.0(4,506)	88.769***
		여학생	2.05(0.81)	26.2	46.3	23.5	4.0	100.0(4,245)	
	학교급	초등학교	2.19(0.89)	24.5	39.0	28.9	7.5	100.0(3,033)	
		중학교	2.07(0.80)	25.2	46.3	24.7	3.8	100.0(2,956)	88.988***
		고등학교	2.12(0.81)	23.9	44.2	28.3	3.6	100.0(2,762)	
2) 사회참여 필요성	전체		3.08(0.74)	3.6	12.7	55.9	27.8	100.0(8,741)	
	성별	남학생	3.03(0.79)	5.1	14.3	53.4	27.1	100.0(4,498)	88.753***
		여학생	3.14(0.68)	2.0	11.0	58.4	28.5	100.0(4,243)	
	학교급	초등학교	3.07(0.79)	4.3	15.0	50.2	30.6	100.0(3,025)	
		중학교	3.01(0.74)	4.3	14.0	58.1	23.7	100.0(2,956)	126.477***
		고등학교	3.16(0.67)	2.2	8.9	59.7	29.2	100.0(2,760)	
3) 자치조직 의의	전체		3.08(0.71)	3.5	10.8	59.8	25.9	100.0(8,724)	
	성별	남학생	3.04(0.75)	4.7	12.0	58.1	25.3	100.0(4,493)	55.515***
		여학생	3.13(0.66)	2.2	9.6	61.6	26.6	100.0(4,232)	
	학교급	초등학교	3.18(0.72)	3.1	9.4	54.0	33.5	100.0(3,016)	
		중학교	3.03(0.70)	4.0	11.1	63.3	21.7	100.0(2,950)	141.789***
		고등학교	3.03(0.69)	3.4	12.1	62.3	22.2	100.0(2,758)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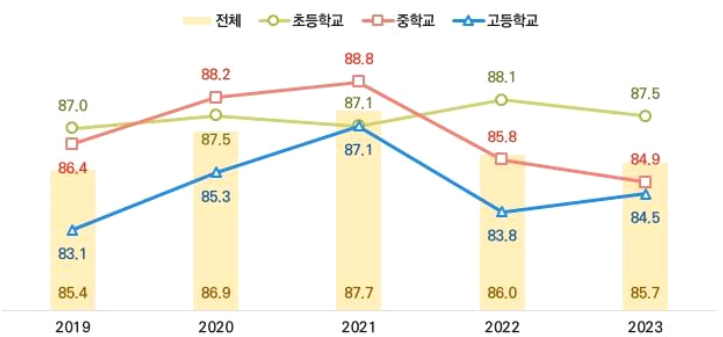
1) 주체적 결정 능력 존중



2) 사회참여 필요성



3) 자치조직 의의



* 주: 1) 첫 번째 문항은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 능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응답률(부정형 질문이므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합계)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문항은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임(단위: %)
2) 자치조직 의의 문항은 초등학교 조사에는 2019년부터 포함됨. 2022년 조사부터 '학교의 문제'에서 '학교나 사회 문제'로 수정함.

그림 Ⅳ-2-8. 인권의식 및 태도_아동·청소년의 참여 관련 인식(연도별 추이)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 및 태도 중 아동·청소년의 차별관련 인식을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Ⅳ-2-9〉와 같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95.7%(그런 편 39.2%, 매우 56.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 안 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97.1%(그런 편 22.9%, 매우 74.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모든 인간은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96.7%(그런 편 25.0%, 매우 71.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94.2%(그런 편 33.5%, 매우 60.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모든 인간은 성정체성과 성적지향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문항에 대해서는 93.0%(그런 편 34.2%, 매우 58.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의견표명권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은 작년에 약간 올랐으나 최근 수년간 미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경제적 이유 차별금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은 최근 수년간 미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은 최근 수년간 미세하게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주배경주민 교육권 평등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은 전년도에 약간 상승했다가 올해 다시 미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Ⅳ-2-9).

표 Ⅳ-2-9. 인권의식 및 태도_차별 관련 인식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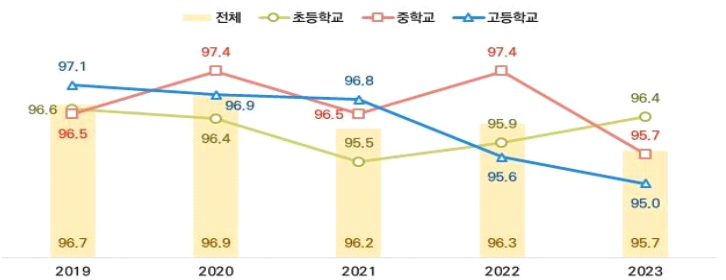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의견표명권	전체		3.51(0.62)	1.3	3.0	39.2	56.5	100.0(8,721)	
	학교급	초등학교	3.63(0.60)	1.3	2.3	28.6	67.8	100.0(3,016)	257.226***
		중학교	3.46(0.63)	1.5	2.9	43.5	52.2	100.0(2,951)	
		고등학교	3.43(0.62)	1.1	3.9	46.2	48.8	100.0(2,755)	
2) 경제적 이유 차별금지	전체		3.70(0.58)	1.6	1.4	22.9	74.2	100.0(8,737)	
	학교급	초등학교	3.81(0.52)	1.7	1.0	11.9	85.4	100.0(3,025)	344.481***
		중학교	3.65(0.60)	1.7	1.8	26.4	70.1	100.0(2,952)	
		고등학교	3.62(0.59)	1.4	1.4	31.0	66.2	100.0(2,760)	
3) 양성평등	전체		3.67(0.59)	1.4	1.9	25.0	71.7	100.0(8,727)	
	성별	남학생	3.60(0.66)	2.3	2.8	28.0	67.0	100.0(4,492)	146.991***
		여학생	3.75(0.49)	0.5	0.9	21.9	76.7	100.0(4,235)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학교급	초등학교	3.79(0.50)	0.9	1.4	15.4	82.3	100.0(3,018)	266.370***
		중학교	3.63(0.61)	1.7	2.0	28.4	67.9	100.0(2,948)	
		고등학교	3.58(0.63)	1.7	2.3	31.9	64.1	100.0(2,760)	
4) 이주배경주민 교육권 평등	전체		3.53(0.66)	1.9	3.9	33.5	60.7	100.0(8,733)	
	학교급	초등학교	3.65(0.64)	1.8	3.7	22.1	72.4	100.0(3,022)	311.791***
		중학교	3.50(0.67)	2.0	3.9	36.3	57.8	100.0(2,951)	
		고등학교	3.43(0.66)	1.9	4.2	42.8	51.1	100.0(2,760)	
5)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 평등	전체		3.49(0.71)	3.0	4.0	34.2	58.8	100.0(5,707)	
	학교급	중학교	3.53(0.68)	2.4	3.8	32.4	61.3	100.0(2,951)	19.742***
		고등학교	3.45(0.74)	3.6	4.2	36.0	56.1	100.0(2,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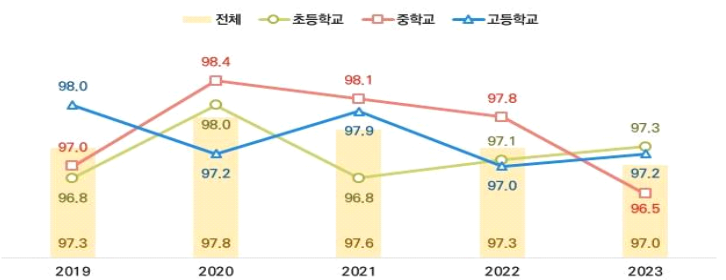
*p<.05, **p<.01, ***p<.001

* 주: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 평등 문항은 2023년부터 중고등학생 조사에 하위문항 추가하여 조사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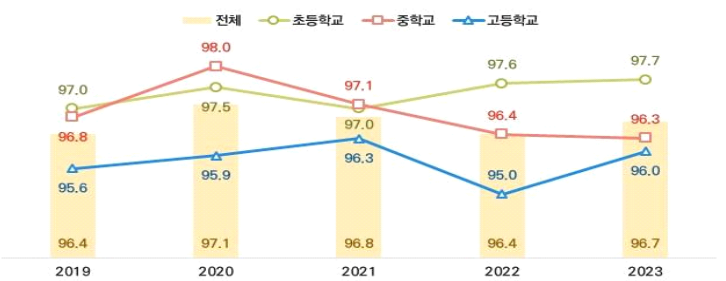
1) 의견표명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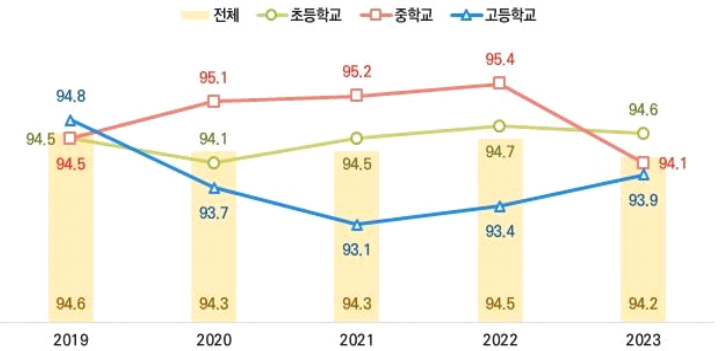
2) 경제적 이유 차별금지



3) 양성평등



4) 이주배경주민 교육권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경제적 이유 차별금지 문항은 초등학교 조사에는 2019년부터 포함됨.

그림 Ⅳ-2-9. 인권의식 및 태도_차별 관련 인식(연도별 추이)

(3) 인권교육

① 인권교육 실시 현황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실시 현황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현황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에 교육과정 운영 214회(5,947명), 방문 프로그램 423회(6,488명), 사이버 인권교육 2,419회(433,244명), 인권특강 1,076회(46,837명), 플랫폼공동 활용교육 1,672회(90,217명)의 여러 형태의 인권교육을 총 5,804회(582,733명)에게 실시하였다(표 Ⅳ-2-10). 2021년보다 횟수나 인원 모두 많이 증가하였다.

표 Ⅳ-2-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구분	계		교육과정 운영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나라배움터) 플랫폼공동 활용교육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8	5,189	344,562	427	19,957	484	8,542	1,133	166,183	2,116	106,189	1,029	43,691
2019	6,282	445,807	330	12,527	556	10,694	1,363	261,505	2,699	107,372	1,334	53,709
2020	3,443	362,459	150	5,011	163	2,700	1,131	220,392	733	29,846	1,266	104,510
2021	4,607	351,463	257	6,279	322	4,332	1,677	205,738	1,012	33,669	1,339	101,445
2022	5,804	582,733	214	5,947	423	6,488	2,419	433,244	1,076	46,837	1,672	90,217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23). 2022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p.276.

② 인권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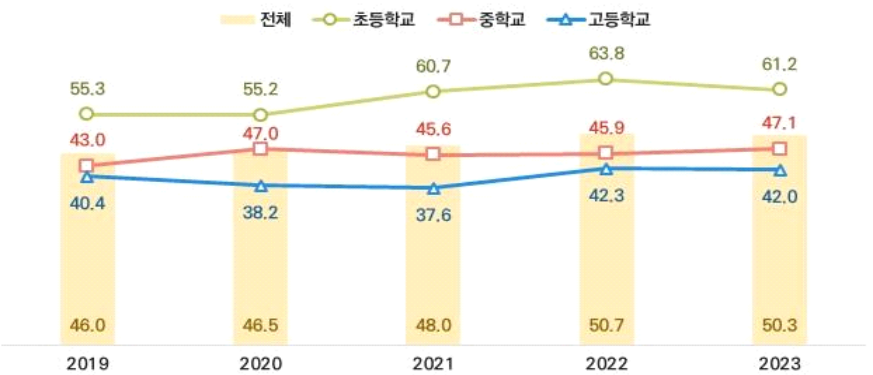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의 인권교육 경험여부를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최근 1년간 인권교육 경험률(학교, 학교 밖 기관 등)은 5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인권교육 경험이 많은 경향이 나타났다(표 Ⅳ-2-11). 인권교육 경험의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차츰 조금씩 증가하다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 미세하게 감소하였다(그림 Ⅳ-2-10).

표 Ⅳ-2-11. 인권교육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50.3	49.7	100.0(8,673)	
성별	남학생	46.6	53.4	100.0(4,453)	50.795***
	여학생	54.2	45.8	100.0(4,220)	
학교급	초등학교	61.2	38.8	100.0(2,978)	229.155***
	중학교	47.1	52.9	100.0(2,948)	
	고등학교	42.0	58.0	100.0(2,746)	
학업성적	상	57.9	42.1	100.0(3,400)	162.513***
	중	48.6	51.4	100.0(3,323)	
	하	39.9	60.1	100.0(1,863)	

*p<.05, **p<.01, ***p<.001



* 주: 1) '있다' 응답값(단위: %)
2) 2019년부터 '횟수' → '경험유무'로 척도 변경됨.

그림 Ⅳ-2-10. 인권교육 경험(연도별 추이)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에 대해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복수응답으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 교과수업시간이 78.5%로 가장 많았고,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이 31.8%,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12.7%, 기타 1.7%의 순이었다. 응답이 가장 많았던 학교 교과수업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특성화계고 학생일수록 높은 경향이었고,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일반계고 학생일수록 높은 경향이었으며,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일반계고 학생일수록 높은 경향이었다(표 Ⅳ-2-12).

표 Ⅳ-2-12.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복수응답)

(단위 : %, 명)

구분		학교 교과 수업시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타	전체(N)
전체		78.5	31.8	12.7	1.7	100.0(4,334)
학교급	초등학교	86.6	23.4	14.0	3.5	100.0(1,811)
	중학교	81.8	27.9	12.5	0.2	100.0(1,380)
	고등학교	61.8	49.7	11.0	0.6	100.0(1,142)
고교 유형	일반계고	60.6	51.7	11.1	0.6	100.0(962)
	특성화계고	68.3	39.1	10.6	0.5	100.0(180)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정도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0.9%(그런 편 61.0%, 매우 29.9%),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1.1%(그런 편 52.7%, 매우 38.4%),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6.3%(그런 편 51.8%, 매우 34.5%)로 나타났다. 매우 도움이 된다는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은 경향이었다(표 Ⅳ-2-13).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는 최근 수년간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도 최근 수년간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인권침해와 차별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도 최근 수년간 미세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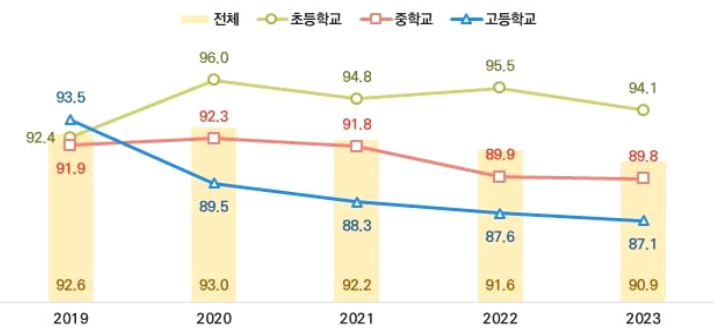
표 Ⅳ-2-13.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교급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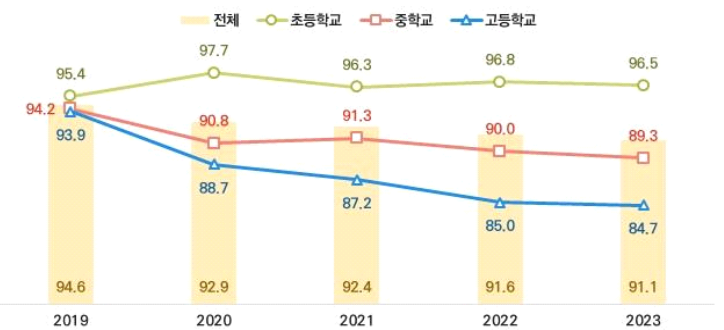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N)	χ^2
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전체	3.19(0.65)	2.1	7.0	61.0	29.9	100.0(4,334)	
	초등학교	3.32(0.61)	0.8	5.1	55.0	39.1	100.0(1,806)	152.705***
	중학교	3.12(0.65)	2.9	7.3	65.0	24.8	100.0(1,381)	
	고등학교	3.06(0.66)	3.1	9.8	65.4	21.7	100.0(1,147)	
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전체	3.27(0.69)	2.4	6.6	52.7	38.4	100.0(4,335)	
	초등학교	3.50(0.59)	0.8	2.8	42.4	54.1	100.0(1,807)	387.012***
	중학교	3.17(0.69)	3.1	7.6	58.7	30.6	100.0(1,381)	
	고등학교	3.04(0.71)	3.9	11.3	61.6	23.1	100.0(1,147)	
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전체	3.18(0.73)	2.9	10.8	51.8	34.5	100.0(4,334)	
	초등학교	3.41(0.65)	1.3	5.5	44.2	49.0	100.0(1,806)	356.355***
	중학교	3.08(0.72)	3.3	12.8	56.9	27.1	100.0(1,381)	
	고등학교	2.94(0.76)	5.2	16.7	57.6	20.5	100.0(1,147)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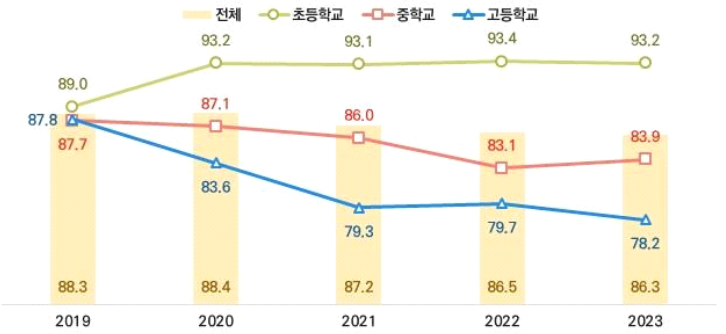
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주: 1) '도움이 되는 편이다'와 '매우 도움이 된다' 응답값의 합계(단위: %)
2) 2019년부터 하위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함.

그림 Ⅳ-2-11.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연도별 추이)

2) 일반원칙

(1) 차별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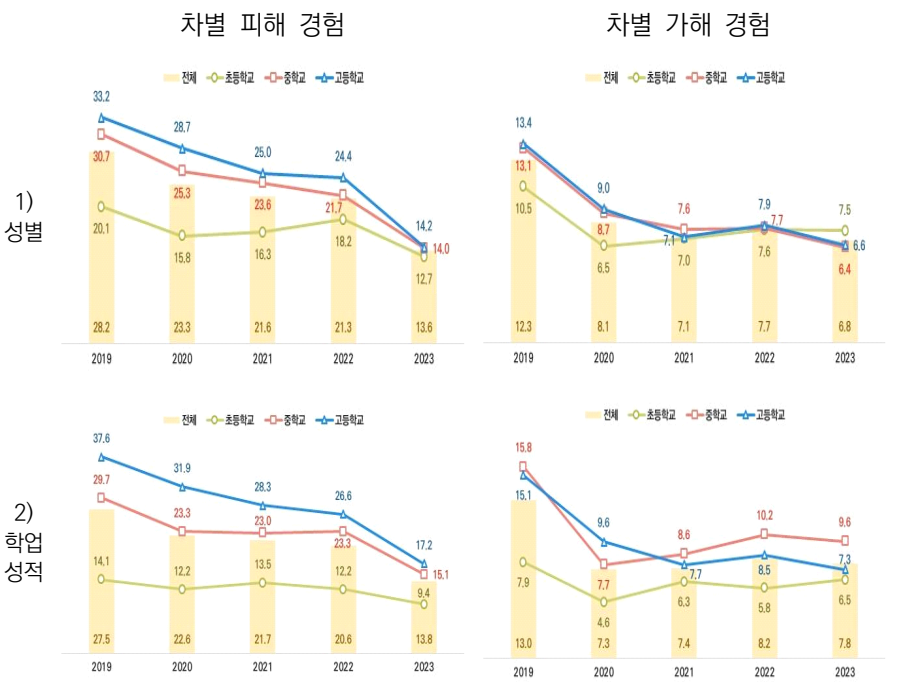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Ⅳ-2-14〉와 같다. 먼저 1년에 한 번 이상 차별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성별 13.6%, 학업성적 13.8%, 나이 13.3%, 외모 및 신체조건 14.8%, 경제적 이유 0.9%, 사는 동네 1.6%, 종교 1.4%, 가족 유형 0.4%, 장애 0.2%, 다문화가정 0.5%의 분포를 보였다. 다음 1년에 한 번 이상 차별한 경험을 살펴보면, 성별 6.8%, 학업성적 7.8%, 나이 6.5%, 외모 및 신체조건 9.4%, 경제적 이유 1.2%, 사는 동네 1.3%, 종교 1.3%, 가족 유형 0.9%, 장애 2.8%, 다문화가정 0.9%의 분포를 보였다. 차별받은 경험은 외모 및 신체조건, 학업성적, 성별, 나이 등이 높았고, 차별한 경험도 외모 및 신체조건, 학업성적, 성별, 나이 등이 높았다.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차별받은 경험은 성별, 학업성적, 나이, 외모·신체조건, 경제적 이유, 사는 동네, 종교, 가족 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모두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차별한 경험은 성별, 학업성적, 나이, 외모·신체조건, 가족 유형은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경제적 이유, 사는 동네, 종교, 장애, 다문화가정은 최근 미세하게 증가하는 경향이었다(그림 Ⅳ-2-12).

표 Ⅳ-2-14.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종합)

(단위 : %)

차별사유	차별 피해 경험					차별 가해 경험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성별	86.4	9.4	2.4	1.3	0.6	93.2	5.0	0.8	0.5	0.6
2) 학업성적	86.2	8.0	3.1	1.6	1.2	92.2	5.2	1.2	0.7	0.7
3) 나이	86.7	9.3	2.4	1.1	0.6	93.5	4.6	1.0	0.6	0.4
4) 외모·신체조건	85.2	8.4	3.1	1.7	1.6	90.6	6.2	1.5	0.8	0.9
5) 경제적 이유	99.1	0.6	0.2	0.1	0.1	98.8	0.6	0.4	0.1	0.1
6) 사는 동네	98.4	1.1	0.2	0.1	0.1	98.7	0.7	0.3	0.2	0.1
7) 종교	98.6	0.9	0.2	0.1	0.1	98.7	0.8	0.2	0.2	0.1
8) 가족유형	99.6	0.2	0.0	0.1	0.1	99.1	0.4	0.2	0.1	0.1
9) 장애	99.8	0.1	0.0	0.1	0.1	97.2	1.8	0.4	0.3	0.3
10) 다문화가정	99.5	0.4	0.1	0.0	0.1	99.1	0.5	0.2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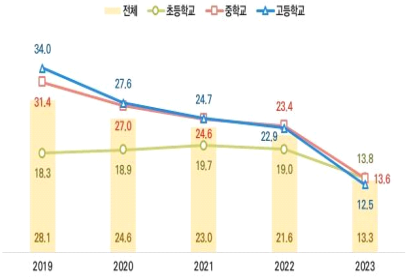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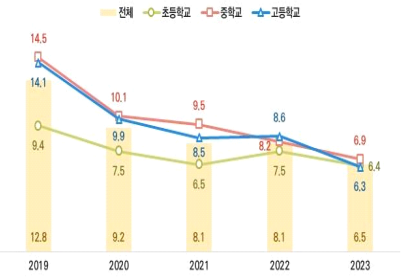
* 주 :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차별 피해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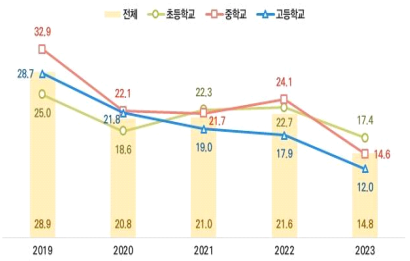
차별 가해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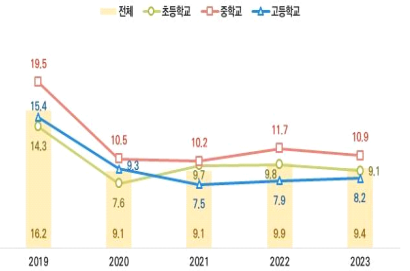
3)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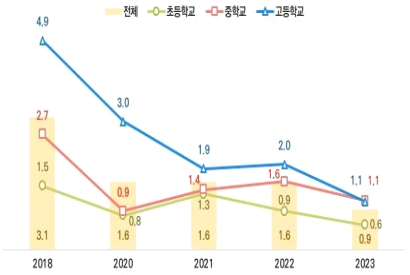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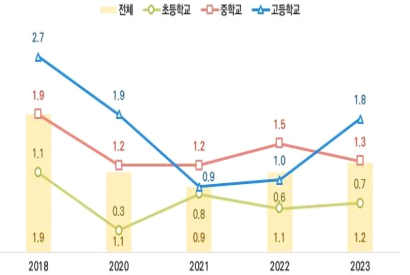
4) 외모·신체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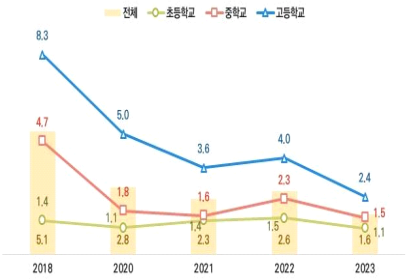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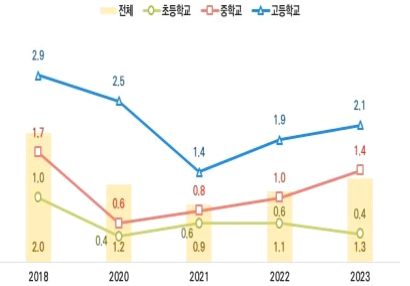
5) 경제적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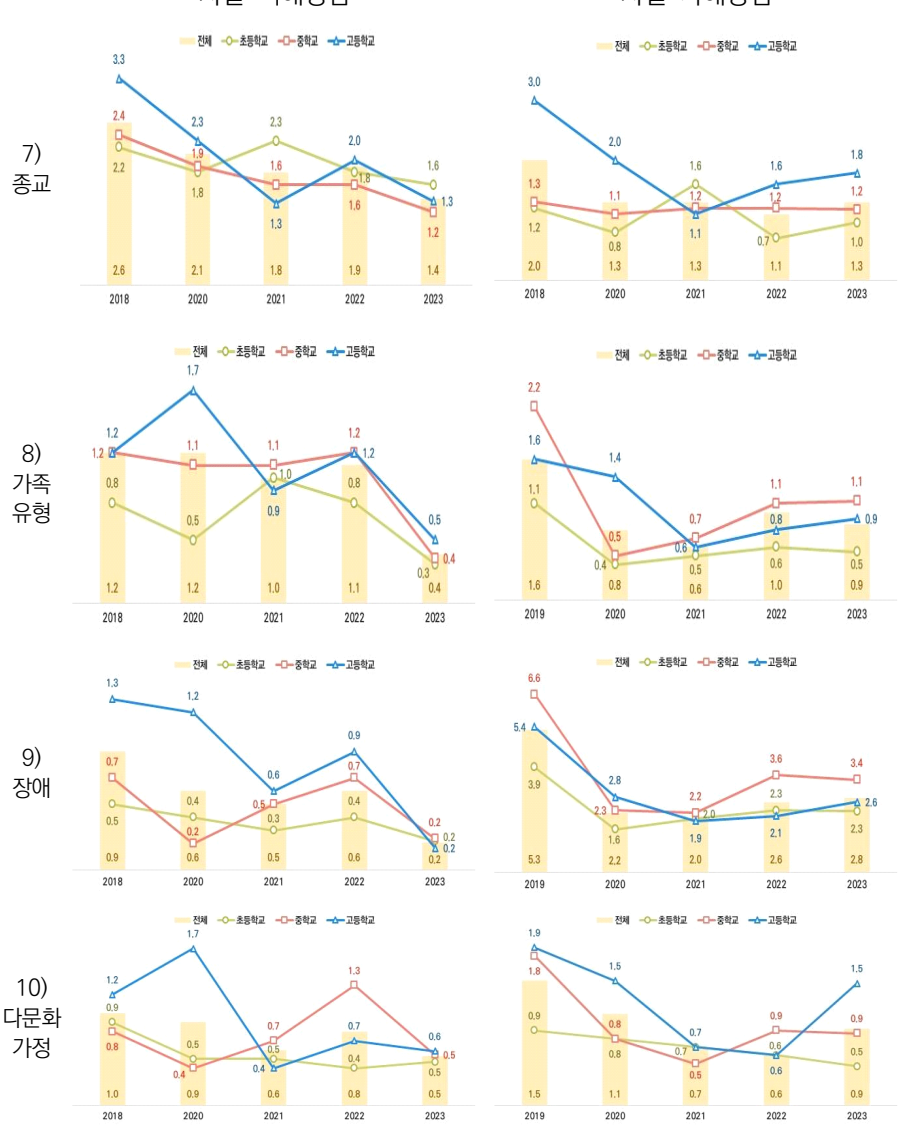


6) 사는 지역





* 주 :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주: 1)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2) 차별 피해 경험 중에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가족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등 6개 문항과 차별 가해 경험 중에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등 3개 문항은 2019년 제외되었다가 2020년부터 다시 포함됨.
3) '고향/지역'은 2023년부터 '사는 동네'로 변경되었음

그림 Ⅳ-2-12. 차별 경험(연도별 추이)

3) 소결

여기에서는 대분류 영역 중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하위 지표에는 인권일반 부분에 인권인프라, 인권인식, 인권교육이, 일반원칙 부분에 차별 경험률이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률 제·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학대관련 3건, 대안양육 2건, 복지 2건, 보육 1건, 참여 2건, 교육 2건의 법률이 개정되었다. 2022년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비율은 3.7%로 전년에 비해 0.5% 증가하였다.

인권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22.4%, 학생인권조례 8.1%, 국가인권위원회 22.9%로 낮았는데, 최근 전반적으로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인권존중정도는 가정(96.2%), 학교(94.0%), 우리나라 전체(84.0%), 온라인 공간(82.7%) 순으로 높았는데, 아동·청소년의 인권 존중 정도가 상승하다가 가정, 학교는 최근 수년간 미세하게 감소하고,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공간은 최근 수년간 미세하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 및 태도 중 아동·청소년의 참여관련 인식은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결정 능력 67.6%, 아동·청소년 사회참여 필요성 83.7%, 자치조직의 의의 85.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차별 관련 인식은 의견표명권 95.7%, 경제적 이유의 차별금지 97.1%, 양성평등 96.7%, 이주배경주민 교육권 94.2%, 성 정체성 및 성적지향 평등 93.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종단적으로는 양성평등만 올해 약간 상승하였고 다른 항목들은 최근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인권교육 경험은 50.3%로 작년에 비해 미세하게 감소하였고, 장소는 학교 교과수업시간 78.5%,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31.8%,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12.7%, 기타 1.7%의 순이었으며,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는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90.9%,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91.1%,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86.3%로 높았는데, 최근 수년간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1년에 한 번 이상 차별받은 경험은 외모 및 신체조건 14.8%, 학업성적 13.8%, 성별 13.6%, 나이 13.3% 순이었고, 1년에 한 번 이상 차별한 경험도 외모 및 신체조건 9.4%, 학업성적 7.8%, 성별 6.8% 순이었다. 종단적 추세로는 차별 피해 경험은 최근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차별 가해 중 성별, 학업성적, 나이, 외모·신체조건, 가족 유형은 최근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장애, 다문화가정은 최근 미세하게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인권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나, 1년에 한 번 이상 차별받은 경험은 외모 및 신체조건 14.8%, 학업성적 13.8%, 성별 13.6%, 나이 13.3% 순으로 높고, 1년에 한 번 이상 차별한 경험도 외모 및 신체조건 9.4%, 학업성적 7.8%, 성별 6.8% 순으로 높았다. 차별 피해 경험이 최근 감소하는 경향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취약 특성을 지닌 청소년의 차별경험과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①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집안 중대사 결정 시 나의 의견 존중 문항에는 90.0%, 상급학교 진학결정시 나의 의사 존중 문항에는 93.6%,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 존중 문항에는 93.6%, 공부시간이나 방법 결정 시 존중 문항에는 90.1%, 쉬는 시간 선택 존중 86.9%, 내가 하고 싶은 것 선택 존중 89.6%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표 Ⅳ-3-1).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모든 문항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의사 존중 정도가 미세하게 낮아지고 있다(그림 Ⅳ-3-1).

표 Ⅳ-3-1.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의견 존중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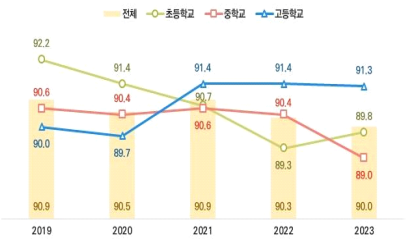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집안의 중대사 결정	전체	3.30(0.68)	1.2	8.8	48.3	41.7	100.0(8,775)	
	초등학교	3.32(0.68)	1.2	9.0	46.4	43.4	100.0(3,041)	20.802**
	중학교	3.27(0.69)	1.4	9.6	49.9	39.0	100.0(2,960)	
	고등학교	3.33(0.66)	1.1	7.6	48.7	42.6	100.0(2,775)	
2) 상급 학교 결정	전체	3.44(0.64)	0.9	5.5	42.2	51.4	100.0(5,727)	
	중학교	3.41(0.66)	1.1	6.3	43.1	49.6	100.0(2,952)	11.770**
	고등학교	3.47(0.63)	0.8	4.8	41.2	53.3	100.0(2,775)	
3) 진로(직업) 결정	전체	3.49(0.64)	0.8	5.7	37.5	56.1	100.0(8,731)	
	초등학교	3.53(0.65)	0.9	5.6	33.2	60.3	100.0(3,025)	54.075***
	중학교	3.44(0.66)	1.0	6.6	40.0	52.4	100.0(2,940)	
	고등학교	3.50(0.61)	0.5	4.7	39.4	55.4	100.0(2,765)	
4) 공부시간·방법 결정	전체	3.33(0.70)	1.9	8.0	45.1	45.0	100.0(5,719)	
	중학교	3.25(0.74)	2.4	10.9	46.1	40.6	100.0(2,947)	101.303***
	고등학교	3.42(0.65)	1.3	4.9	44.0	49.7	100.0(2,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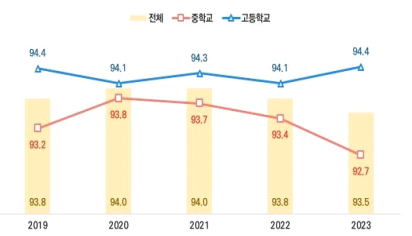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5) 쉬는시간 결정	전체	3.26(0.74)	2.2	10.9	45.6	41.3	100.0(8,734)	
	초등학교	3.20(0.75)	2.5	13.0	46.7	37.8	100.0(3,015)	88.800***
	중학교	3.22(0.75)	2.7	11.6	46.4	39.3	100.0(2,949)	
	고등학교	3.37(0.69)	1.5	7.7	43.6	47.2	100.0(2,770)	
6) 내가 하고 싶은 것 결정	전체	3.34(0.71)	1.7	8.6	44.1	45.5	100.0(5,718)	
	중학교	3.27(0.73)	2.1	10.3	45.9	41.6	100.0(2,946)	50.931***
	고등학교	3.40(0.67)	1.3	6.8	42.2	49.7	100.0(2,772)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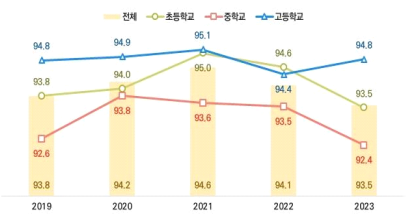
* 주: 1) 2019년 조사부터 상급학교 결정과 공부시간 결정 문항은 초등 설문지에서 제외됨
2) 쉬는시간 결정, 내가 하고 싶은 것 결정 문항은 2023년부터 하위문항을 추가하여 조사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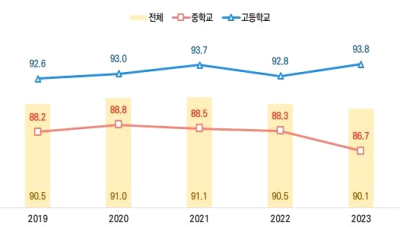
1) 집안의 중대사 결정



2) 상급학교 결정



3) 진로(직업) 결정



4) 공부시간·방법 결정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2019년 조사부터 상급학교 결정과 공부시간 결정 문항은 초등 설문지에서 제외됨.

그림 Ⅳ-3-1.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의견 존중 정도)(연도별 추이)

(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①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선생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 46.8%, 임원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기준 없음 35.4%,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장소, 시간 보장 51.3%,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57.5% 등으로 나타났다. 선생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 임원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기준 없음은 고등학생이,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장소, 시간 보장,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은 중학생이 약간 더 높았다(표 Ⅳ-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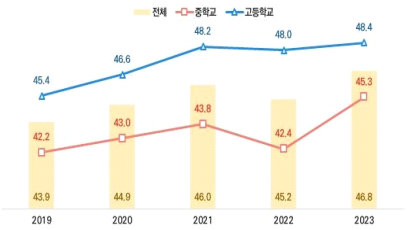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장소, 시간 보장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선생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 임원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기준 없음,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은 작년에 미세하게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Ⅳ-3-2).

표 Ⅳ-3-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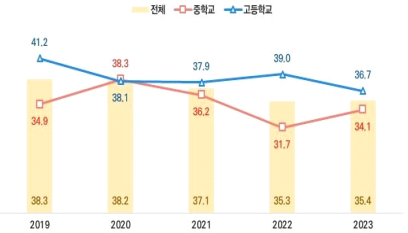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1) 선생님의 간섭없이 활동(자치권)	전체	9.1	46.8	44.1	100.0(5,718)	
	중학교	9.2	45.3	45.5	100.0(2,951)	5.707
	고등학교	9.0	48.4	42.6	100.0(2,767)	
2) 임원후보 성적기준 있음(*역문항)	전체	35.4	27.1	37.5	100.0(5,720)	
	중학교	34.1	28.5	37.4	100.0(2,951)	7.086*
	고등학교	36.7	25.6	37.6	100.0(2,769)	
3) 예산·장소·시간 보장	전체	4.7	51.3	44.0	100.0(5,714)	
	중학교	5.0	52.4	42.6	100.0(2,950)	4.960
	고등학교	4.4	50.2	45.4	100.0(2,764)	
4)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전체	5.3	57.5	37.2	100.0(5,714)	
	중학교	4.2	61.3	34.5	100.0(2,951)	40.964***
	고등학교	6.5	53.5	40.1	100.0(2,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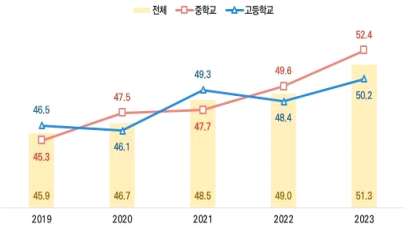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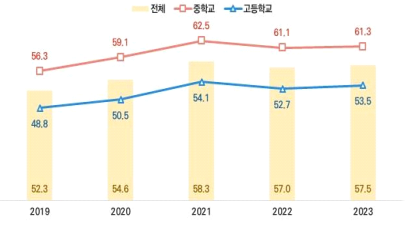
1) 자치권 보장



2) 임원후보 성적제한 없음



3) 예산, 장소, 시간 보장



4)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 주: 1) 1, 3, 4번 그래프는 '그렇다'의 응답값(단위: %)
2) 2번 그래프는 '아니다' 응답값(부정적 질문이므로 '아니다' 값을 반영하여 성적제한이 없음을 나타냄.)

그림 Ⅳ-3-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연도별 추이)

②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참여가능하며 발언권 있음 27.8%, 참여가능하지만 발언권 없음 7.2%, 참여할 수 없음 5.5%였다. 참여가능하며 발언권 있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학생이,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높았다(표 Ⅳ-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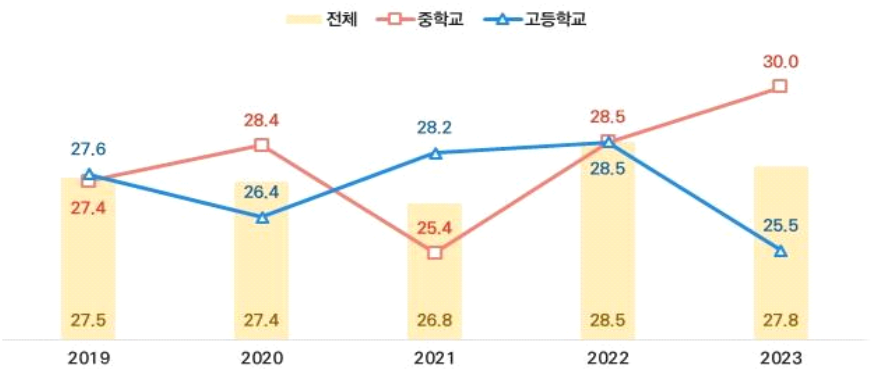
참여가능하며 발언권 있음을 중심으로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미세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그림 Ⅳ-3-3).

표 Ⅳ-3-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단위 : %(명))

구분		참여할 수 없다	참여가능, 발언권 없음	참여가능, 발언권 있음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5.5	7.2	27.8	59.4	100.0(5,596)	
성별	남학생	6.7	7.9	24.0	61.5	100.0(2,868)	54.064***
	여학생	4.3	6.5	31.9	57.3	100.0(2,728)	
학교급	중학교	5.1	8.3	30.0	56.6	100.0(2,902)	29.010***
	고등학교	5.9	6.1	25.5	62.4	100.0(2,694)	

*p<.05, **p<.01, ***p<.001



* 주: '참여가능, 발언권 있음'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3-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연도별 추이)

③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이 82.6%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높았다(표 Ⅳ-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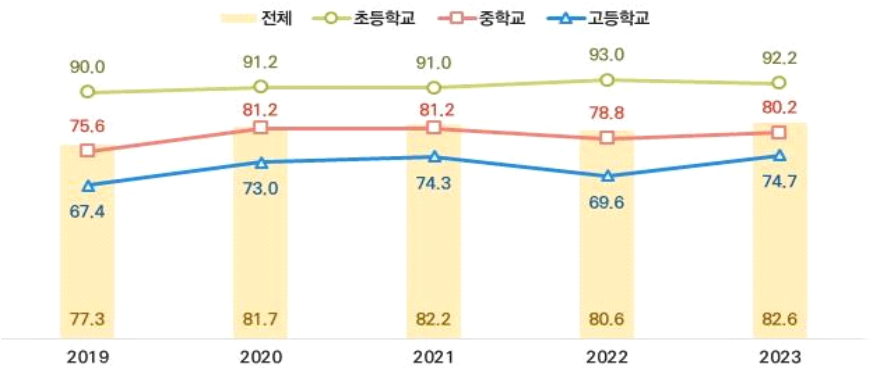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면, 학생 참여정도가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2년에 소폭 감소했는데 올해 다시 소폭 증가했다(그림 Ⅳ-3-4).

표 Ⅳ-3-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6(0.77)	4.8	12.6	54.1	28.5	100.0(8,759)	
성별	남학생	3.06(0.78)	5.3	12.0	54.7	28.1	100.0(4,513)	7.970*
	여학생	3.07(0.77)	4.3	13.2	53.6	28.9	100.0(4,245)	
학교급	초등학교	3.39(0.71)	2.7	5.1	43.0	49.2	100.0(3,036)	1096.820***
	중학교	2.95(0.74)	5.0	14.8	60.3	19.8	100.0(2,950)	
	고등학교	2.83(0.76)	6.9	18.4	59.8	14.9	100.0(2,773)	

*p<.05, **p<.01, ***p<.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3-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연도별 추이)

(3) 사회에서의 참여정도

① 아동·청소년 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 정도

아동·청소년 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정도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관련 행정통계로 살펴보았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아동분야 정책참여기구인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아동이 토론하고 제안한 정책결의문을 각 부처에 전달, 검토하여 국무총리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는데, 2022년 제19회 아동총회 결의문 13건에 대한 각 부처의 검토 결과, 채택된 결의문 13건 모두에 대해 수용(일부수용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5)(보건복지부, 2023.8.8.).

표 Ⅳ-3-5. 2022년 제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2022년 제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1. 장애아동들도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Barrier-Free)가 적용된 장애아동 전용의견 참여창구를 각 지자체와 온라인상에 설치하는 것을 제도화해주세요.
2. 장애 이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 이해 교육프로그램에 장애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주세요.
3. 아동 관련 정책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해주세요.
4. 아동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의 아동총회 실시와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아동총회 등 아동참여기구 홍보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연 2회 이상 시행해주세요.
5. 현재 운영 중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 대표들을 참여하게 해주세요.
6. 아동의 목소리에 답변을 의무적으로 해주고, 그 반영사항을 국회 관계자가 주 2회 이상 공지해주는 아동 전용 청원 사이트를 행정안전부가 만들어 주세요.
7. 교육청과 연계하여 지자체별 아동참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8. 교내 권리 교육을 활성화하고 그와 연계되는 대외적 후속활동들을 의무화 해주세요.
9. 아동들의 일상적인 참여를 위해 커뮤니티적인 아동 청원 플랫폼을 만들어 아동의 눈높이에서 답변해주세요.
10. 아동참여기구에서 특별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도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공모전을 통해 아동들이 직접 제작한 홍보물을 SNS와 공공장소에서 알려주세요.
11. 교육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아동에게 연령대 맞춤형 모의투표 교육을 진행·홍보해주시고, 아동 대상 대선·총선·지선 모의투표를 실시해주세요.
12.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있어 생기는 어려움과 무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국외의 실질적인 정치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교육부에서 실시해주세요.
13. 아동들이 의견을 쉽게 낼 수 있는 청소년 참여 포털 및 아동 참여권을 주제로 UCC와 포스터대회를 진행 후, 당선작을 아동참여권 홍보에 활용하게 해주세요.

* 출처: 보건복지부(2022.8.9.). 보도자료 : 세상을 바꾸는 아동의 목소리 – 2022년 제19회 대한민국 전국 아동총회 개최(8.9-8.11.). 보건복지부(2022.8.12.) 보도자료: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아동의 요구! -제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채택.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72566&SEARCHKEY=DEPT_NM&SEARCHVALUE=%EC%95%84%EB%8F%99%EB%B3%B5%EC%A7%80%EC%A0%95%EC%B1%85%EA%B3%BC에서 2023년 8월 22일 인출.
보건복지부(2023.8.8.) 보도자료: 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세상! 우리가 만들어요!.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7656&SEARCHKEY=DEPT_NM&SEARCHVALUE=%EC%95%84%EB%8F%99%EB%B3%B5%EC%A7%80%EC%A0%95%EC%B1%85%EA%B3%BC에서 2023년 8월 22일 인출.

다음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청소년정책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17개 시·도의 청소년과 전문가가 정책을 발굴, 제안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여성가족부, 2022a), 2022년 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43개가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331개가 운영되고 있다(표 Ⅳ-3-6). 청소년특별회의는 2022년 뉴미디어·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 4개 분야 32개 과제를 제안했는데, 정부에서 29개를 수용하여 정책반영율이 90.6%로 나타났다(표 Ⅳ-3-7).

표 Ⅳ-3-6.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현황(2014~2022년)

(단위 : 개(%))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청소년참여위원회	197 (81.1)	204 (84.0)	216 (88.9)	221 (90.9)	230 (94.7)	239 (98.4)	239 (98.4)	240 (98.8)	243
청소년운영위원회	305	305	305	305	305	305	331	331	331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p.119-120. 재구성.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p.150-152. 재구성.

*주: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율 = 위원회수/전국 기초지자체 수*100

표 Ⅳ-3-7.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2011~2022년)

연도	의제	수용률(%)
2011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3개 영역 30개 과제(89개 세부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2013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 진로체험활동 등 3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4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 청소년 참여로 만드는 안전 등 4개 영역 31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0.3)
2015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 역사교육 질적 강화 및 역사 인재 양성 등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87.0)
2016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등 4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7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3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24개 수용 (80.0)

연도	의제	수용률(%)
2018	•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 – 청소년 참정권 확대 등 3개 분야 22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90.9)
2019	• 인권, 양성평등, 학교밖청소년 지원, 안전, 경제활동 – 청소년 기초 노동 지원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28개 과제 제안	25개 수용 (89.9)
2020	•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 – '자립' 정책영역의 취업, 정보, 보호, 경제 등 5개 분야 33개 과제 제안	32개 수용 (96.9)
2021	• 시작점이 같은 청소년, 각자의 기회에서 빛나다 – 청소년쉼터 지원 강화 등 5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3.3)
2022	• 넘어져도 괜찮아, 걱정 없는 청소년 – 뉴미디어·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 4개 분야 32개 과제 제안	29개 수용 (90.6)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p.121-122.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154.

②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와 같은 아동·청소년 정책참여기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6%(참여해본 경험은 2.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높았고, 지역규모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Ⅳ-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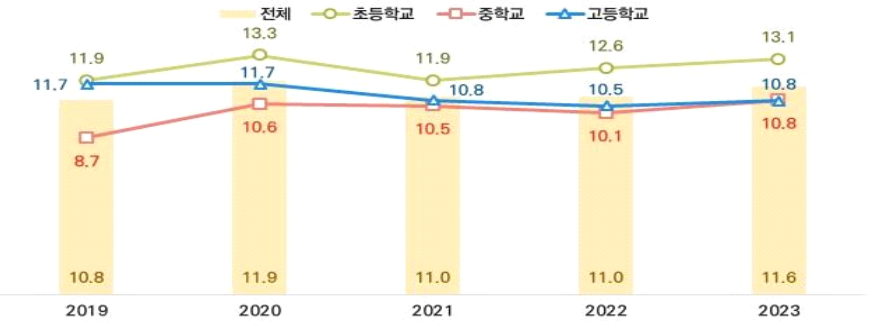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는 최근 수년간 11% 내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3-5).

표 Ⅳ-3-8.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알고 있다 합계	전체(N)	χ^2
전체		49.4	39.0	9.3	2.3	11.6	100.0(8,764)	
성별	남학생	54.0	35.1	8.8	2.1	10.9	100.0(4,517)	80.200***
	여학생	44.6	43.1	9.8	2.5	12.3	100.0(4,248)	
학교급	초등학교	44.9	42.0	11.0	2.1	13.1	100.0(3,035)	55.903***
	중학교	53.6	35.6	8.5	2.3	10.8	100.0(2,957)	
	고등학교	50.0	39.2	8.3	2.5	10.8	100.0(2,771)	
지역 규모	대도시	48.5	39.5	9.6	2.4	12.0	100.0(3,445)	11.505
	중소도시	50.4	38.9	8.7	2.1	10.8	100.0(4,269)	
	읍면지역	48.7	37.4	10.8	3.1	13.9	100.0(1,050)	

*p<.05, **p<.01, ***p<.001



* 주: 1)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 않았다'와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의 합계(단위: %)
2) 2016년부터 전체값에 초등학생 응답이 포함됨.

그림 Ⅳ-3-5.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연도별 추이)

③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방해 이유

가. 참여권 보장 수준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 관련 사안 결정 및 해결 과정에 당사자 의견 및 참여권 보장에 대해 71.9%가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긍정적 응답이 높았다(표 Ⅳ-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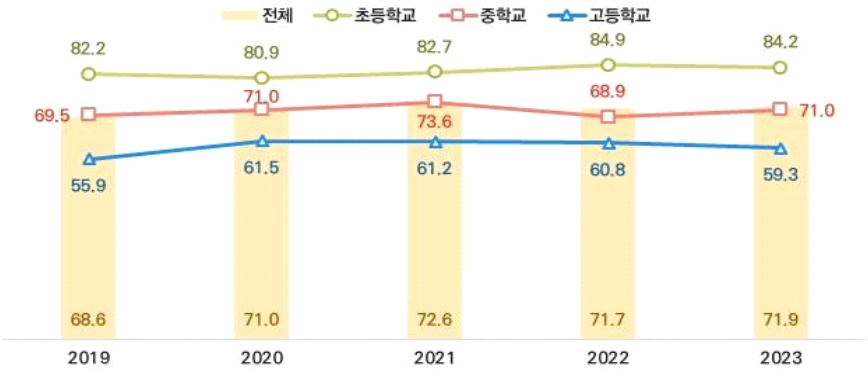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작년에 미세하게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그림 Ⅳ-3-6).

표 Ⅳ-3-9.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85(0.76)	4.8	23.3	54.2	17.7	100.0(8,748)	
성별	남학생	2.83(0.78)	6.2	22.2	54.4	17.3	100.0(4,504)	40.263***
	여학생	2.87(0.74)	3.4	24.4	53.9	18.2	100.0(4,243)	
학교급	초등학교	3.09(0.70)	2.2	13.5	57.5	26.8	100.0(3,028)	579.782***
	중학교	2.82(0.75)	5.0	24.0	55.5	15.5	100.0(2,947)	
	고등학교	2.62(0.77)	7.6	33.1	49.1	10.3	100.0(2,772)	

*p<.05, **p<.01, ***p<.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3-6.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연도별 추이)

나. 참여의 방해요인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간 부족 35.5%,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27.1%, 참여활동정보 부족 21.8%,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 12.2%, 부모님 반대 1.9%,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함 1.4% 순이었다(표 Ⅳ-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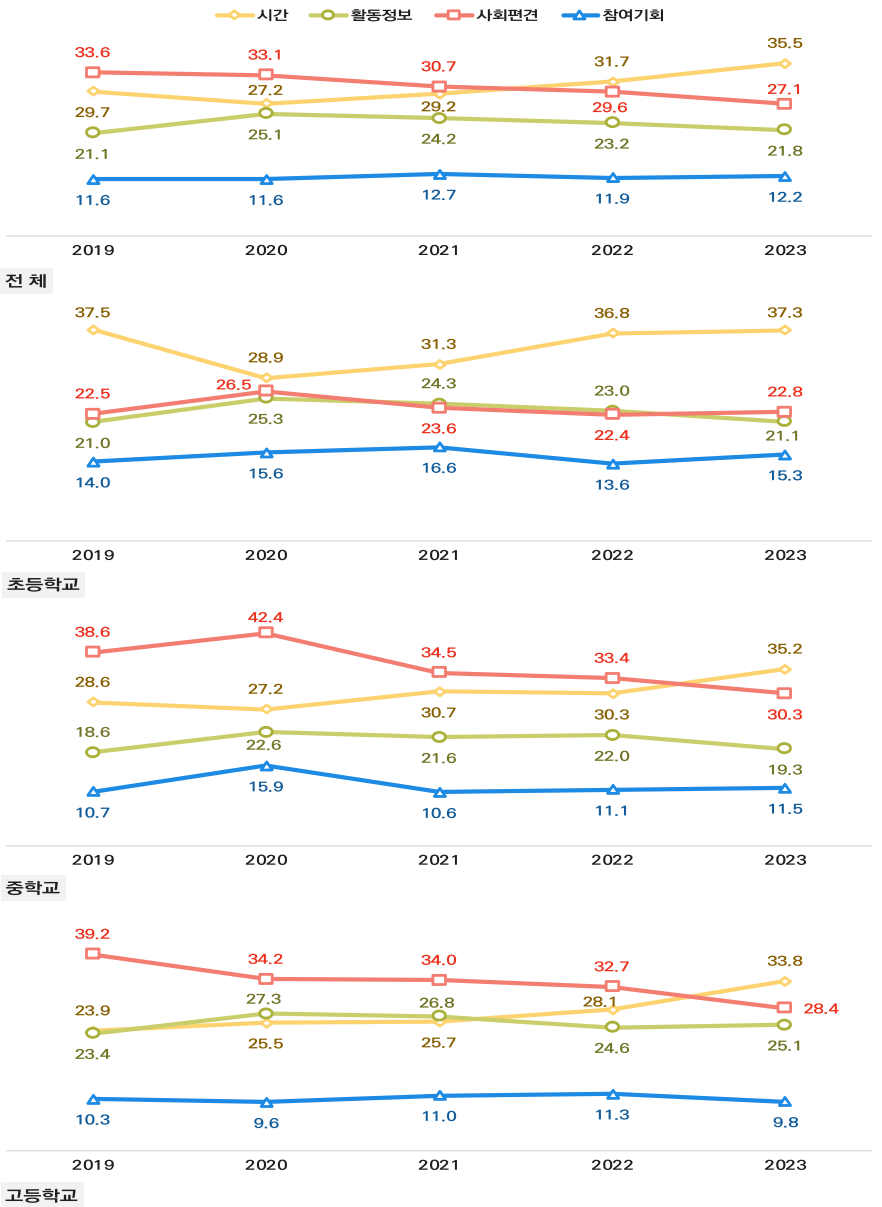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으로 시간 부족이 늘어나는 경향이고,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편견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Ⅳ-3-7).

표 Ⅳ-3-10.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

(단위 : %(명))

구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부족	부모님(보호자) 반대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 부족	전체(N)	χ^2
전체		35.5	21.8	1.9	1.4	27.1	12.2	100.0(8,650)	
성별	남학생	38.2	20.0	2.1	1.9	27.1	10.7	100.0(4,456)	62.391***
	여학생	32.6	23.6	1.8	1.0	27.1	13.9	100.0(4,194)	
학교급	초등학교	37.3	21.1	2.9	0.6	22.8	15.3	100.0(2,976)	152.856***
	중학교	35.2	19.3	2.0	1.7	30.3	11.5	100.0(2,933)	
	고등학교	33.8	25.1	0.9	2.1	28.4	9.8	100.0(2,741)	

*p<.05, **p<.01, ***p<.001



* 주: 단위: %

그림 Ⅳ-3-7.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연도별 추이)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①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92.6%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응답했다(평균=3.34). 성별로는 여학생이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그렇다는 응답이 높았다(표 Ⅳ-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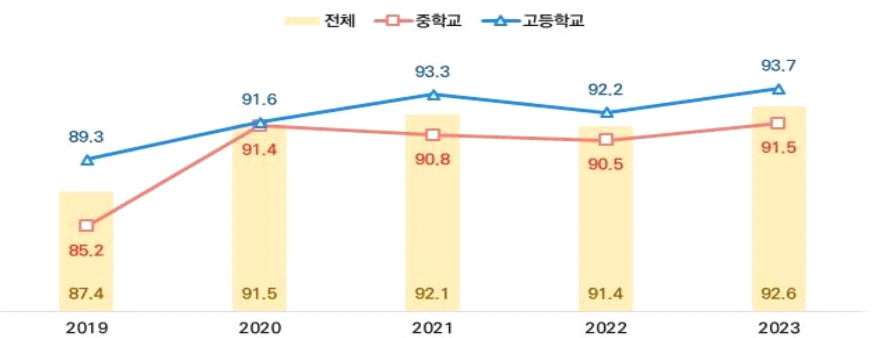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지난 수년간 증가하다가 작년에 소폭 감소했는데 올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Ⅳ-3-8).

표 Ⅳ-3-11.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34(0.65)	1.2	6.2	50.4	42.2	100.0(5,704)	
성별	남학생	3.32(0.67)	1.8	6.3	49.7	42.2	100.0(2,941)	17.541***
	여학생	3.35(0.62)	0.6	6.1	51.1	42.1	100.0(2,763)	
학교급	중학교	3.30(0.66)	1.4	7.0	52.1	39.4	100.0(2,940)	23.879***
	고등학교	3.38(0.63)	1.0	5.4	48.6	45.1	100.0(2,763)	

*p<.05, **p<.01, ***p<.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3-8.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연도별 추이)

(2) 종교 자유 보장 정도

①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가정, 학교)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부모, 형제와 관계없이 종교 선택 문항에는 83.0%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 문항에는 47.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표 Ⅳ-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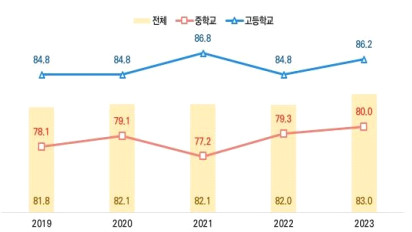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작년에 미세하게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고,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Ⅳ-3-9).

표 Ⅳ-3-12.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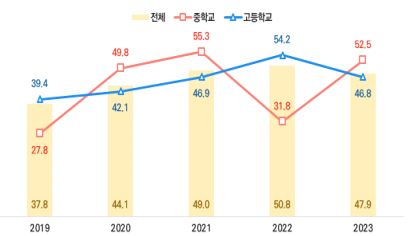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부모·형제와 관계없이 종교선택	전체	3.21(0.85)	5.4	11.5	39.8	43.2	100.0(5,712)	
	중학교	3.11(0.89)	7.1	12.9	41.7	38.3	100.0(2,947)	79.370***
	고등학교	3.31(0.80)	3.7	10.1	37.8	48.4	100.0(2,765)	
2)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 참여	전체	2.43(1.14)	28.6	23.5	24.1	23.8	100.0(409)	
	중학교	2.51(1.06)	21.8	25.7	31.8	20.7	100.0(75)	4.576
	고등학교	2.41(1.16)	30.2	23.0	22.3	24.5	100.0(333)	

* 주: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 참여' 문항은 종교재단 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p < .05, **p < .01, ***p < .001.



1)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2)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2017년부터 전체 값에 중·고등학교 응답값만 포함됨.
3)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 참여' 문항은 종교재단 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그림 Ⅳ-3-9.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연도별 추이)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1) 결사•집회 경험률

① 결사·집회 경험률(경험 여부, 피해 경험)

결사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결사 및 집회 경험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Ⅳ-3-13〉과 같다.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SNS 활동에 가끔 또는 자주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13.9%였다. 또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가끔 또는 자주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5.8%였다. 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사 및 집회 경험에 대한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SNS 활동의 경우,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의 경우 모두 2021년에 소폭 감소했다가 2022년에 소폭 증가한 이후 올해 다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Ⅳ-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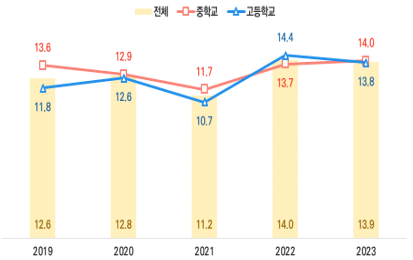
경고 및 훈계, 징계, 상담 등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의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양을 나타내었다(그림 Ⅳ-3-11).

표 Ⅳ-3-13.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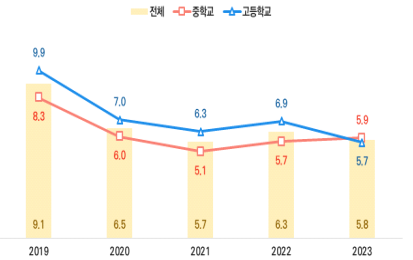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N)	χ^2
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및 SNS 활동	전체	1.64(0.84)	54.4	31.8	9.1	4.8	100.0(5,689)	
	중학교	1.65(0.85)	54.6	31.5	8.8	5.2	100.0(2,941)	2.515
	고등학교	1.64(0.83)	54.1	32.1	9.4	4.4	100.0(2,749)	
2) 거리 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전체	1.42(0.64)	65.4	28.8	4.7	1.1	100.0(5,652)	
	중학교	1.42(0.64)	64.8	29.2	4.6	1.3	100.0(2,923)	1.569
	고등학교	1.41(0.63)	65.9	28.4	4.7	1.0	100.0(2,729)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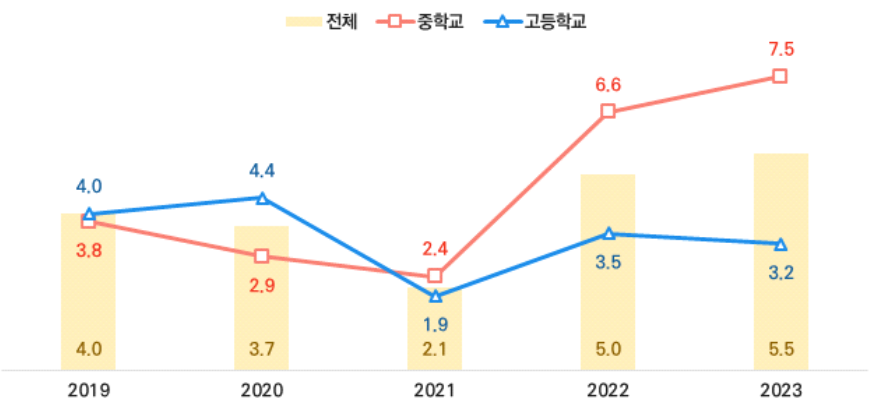
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및 SNS 활동



2)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 주: '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3-10.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연도별 추이)



* 주: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11.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연도별 추이)

4) 사생활의 보호

(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① 용모·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

학교에서의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경험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년에 1회 이상 용모검사를 한 비율이 15.7%, 복장검사 49.8%, 소지품 검사 8.1%, 수업시간이외 핸드폰 사용금지 21.9%, 수업시간이외 핸드폰 압수

1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높았다(표 Ⅳ-3-14).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용모검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복장검사와 소지품 검사는 감소하다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Ⅳ-3-12).

표 Ⅳ-3-14.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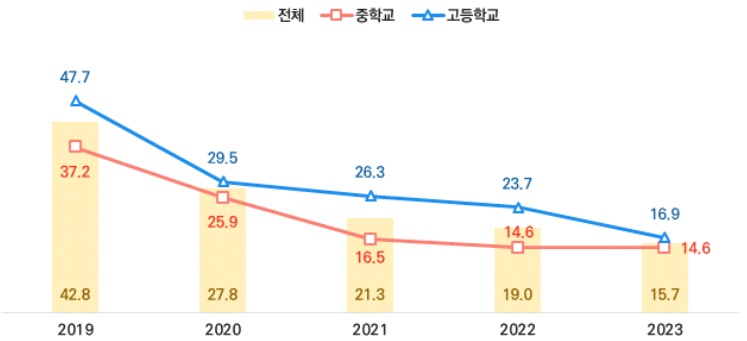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1) 용모 검사	전체	84.3	7.3	2.3	2.6	3.5	15.7	100.0(5,725)	
	중학교	85.4	6.3	2.2	2.7	3.4	14.6	100.0(2,953)	9.634*
	고등학교	83.1	8.3	2.4	2.6	3.5	16.8	100.0(2,772)	
2) 복장 검사	전체	50.2	16.4	6.7	7.2	19.5	49.8	100.0(5,726)	
	중학교	58.8	15.6	6.4	6.9	12.3	41.2	100.0(2,953)	257.144***
	고등학교	41.0	17.3	6.9	7.6	27.2	59.0	100.0(2,773)	
3) 소지품 검사	전체	91.9	5.3	1.4	0.7	0.7	8.1	100.0(5,723)	
	중학교	93.0	4.9	1.2	0.5	0.5	7.1	100.0(2,952)	13.354**
	고등학교	90.8	5.7	1.6	0.9	1.0	9.2	100.0(2,770)	
4) 수업시간이외 핸드폰 사용금지	전체	78.2	4.6	1.7	1.2	14.4	21.9	100.0(5,716)	
	중학교	81.1	3.7	1.2	0.5	13.5	18.9	100.0(2,949)	51.100***
	고등학교	75.1	5.5	2.2	1.9	15.3	24.9	100.0(2,767)	
5) 수업시간이외 핸드폰 압수	전체	85.3	3.9	1.0	0.7	9.1	14.7	100.0(5,717)	
	중학교	86.9	3.0	0.9	0.5	8.7	13.1	100.0(2,949)	22.984***
	고등학교	83.5	4.9	1.2	1.0	9.5	16.6	100.0(2,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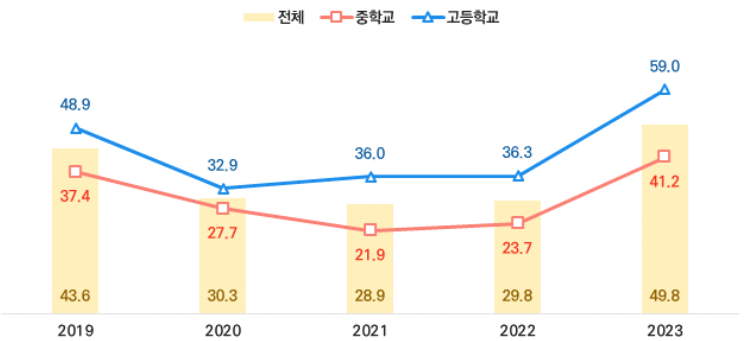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 주: 수업시간외 핸드폰 사용금지, 핸드폰 압수 문항은 2023년부터 하위문항을 추가하여 조사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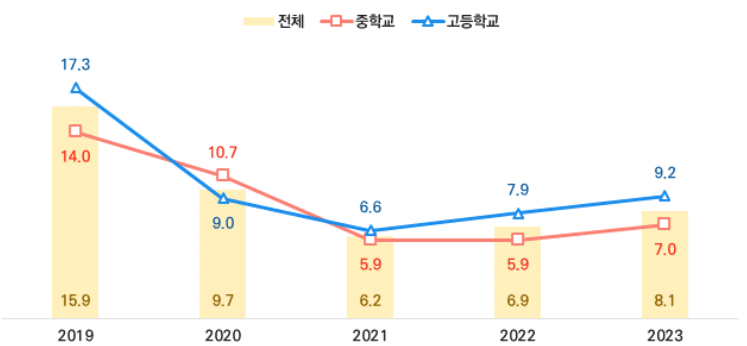
1) 용모 검사



2) 복장 검사



3) 소지품 검사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12.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연도별 추이)

(2) 학생 정보 보호 정도

①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민감정보, 징계처분 내용, 개인 성적)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인(민감)정보에 대한 공개 정도는 9.3%, 징계사항에 대한 공개 정도는 13.1%, 개인시험성적에 대한 공개 정도는 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공개 경험 정도가 높았다(표 Ⅳ-3-15).

종단적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징계사항에 대한 공개 정도는 계속 감소하다가 올해 소폭 증가했고, 개인시험성적에 대한 공개 정도는 2021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소폭 증가하고 있었다(그림 Ⅳ-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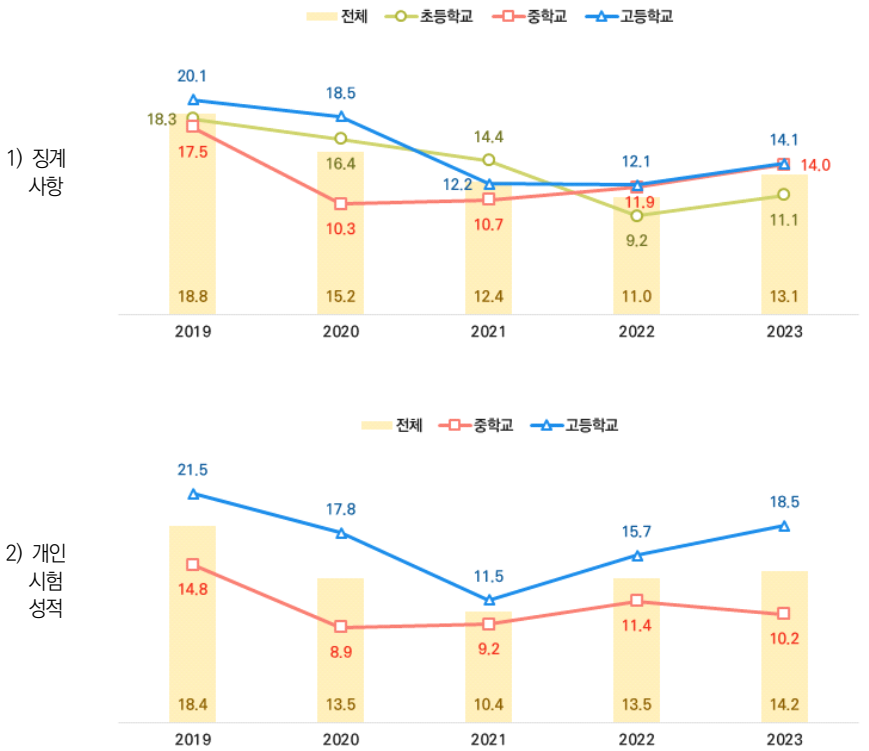
표 Ⅳ-3-15.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개인 (민감) 정보	전체	1.44(0.76)	69.1	21.6	5.8	3.5	100.0(8,745)	
	초등학교	1.31(0.70)	79.2	13.9	3.6	3.4	100.0(3,021)	
	중학교	1.46(0.76)	66.9	23.7	5.8	3.6	100.0(2,953)	270.279***
	고등학교	1.55(0.79)	60.4	27.7	8.3	3.6	100.0(2,771)	
2) 징계 사항	전체	1.68(0.76)	47.6	39.4	10.4	2.7	100.0(8,682)	
	초등학교	1.55(0.74)	57.8	31.1	9.0	2.1	100.0(2,985)	
	중학교	1.75(0.76)	41.2	44.8	11.3	2.7	100.0(2,934)	198.082***
	고등학교	1.74(0.78)	43.3	42.5	10.8	3.3	100.0(2,764)	
3) 개인 시험 성적	전체	1.66(0.81)	52.1	33.7	10.6	3.6	100.0(5,698)	
	중학교	1.56(0.75)	57.0	32.8	7.4	2.8	100.0(2,934)	99.695***
	고등학교	1.76(0.85)	47.0	34.5	14.1	4.4	100.0(2,764)	

*p 〈 .05, **p 〈 .01, ***p 〈 .001.

* 주: 개인(민감) 정보 공개 경험 문항은 2022년부터 신규 추가됨.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시험성적 공개 문항은 2019년부터 초등문항에서 제외됨.
3) 2022년부터 교육비 미납 공개여부는 삭제하고 개인(민감)정보 공개 문항을 신규 추가함.

그림 Ⅳ-3-13.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연도별 추이)

5) 정보접근권

(1) 매체 접근율

① 매체 이용률

2022년 인터넷 이용 빈도 실태를 살펴보면, 하루에 1회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9세의 경우 82.2%, 10대의 경우 96.7%, 20대의 경우 98.2%로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이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주 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3~9세는

12.4시간, 10대 24.3시간, 20대 33.4시간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시간이 많았다(표 Ⅳ-3-16).

표 Ⅳ-3-16.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2017~2022년)

(단위 : %, 시간)

구분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주 평균 이용시간
2017	3~9세	73.1	15.2	11.0	0.7	7.2
	10대	98.1	0.9	1.0	-	16.9
	20대	100.0	-	0.0	-	23.6
2018	3~9세	75.5	16.2	7.6	0.7	8.9
	10대	98.1	1.2	0.7	-	17.8
	20대	99.9	0.1	0.0	-	24.2
2019	3~9세	82.3	15.2	2.5	0.0	9.3
	10대	96.9	2.6	0.5	0.0	17.6
	20대	98.6	0.9	0.4	0.0	24.3
2020	3~9세	85.6	13.2	1.1	0.1	12.5
	10대	98.5	1.5	0.0	0.0	27.6
	20대	99.3	0.6	0.14	0.0	29.5
2021	3~9세	86.2	13.0	0.7	0.0	11.1
	10대	98.8	1.1	0.0	0.0	24.9
	20대	99.8	0.2	0.0	0.0	30.4
2022	3~9세	82.2	16.5	1.3	0.1	12.4
	10대	96.7	3.2	0.1	0.0	24.3
	20대	98.2	1.7	0.0	0.0	33.4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a~2019a). 2017-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20a).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76-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a).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114-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a).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114-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 202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17-118.

2022년 인터넷 이용 목적 실태를 살펴보면, 3~9세의 경우 여가활동 99.1%, 홈페이지 운영 87.6%, 커뮤니케이션 66.8%, 교육 및 학습 63.9%, 자료 및 정보획득 58.5% 등의 순이었다. 10대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자료 및 정보획득, 교육 및 학습이 100.0%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자료 및 정보획득, 홈페이지 운영에서 100.0%로 나타났다(표 Ⅳ-3-17).

표 Ⅳ-3-17. 인터넷 이용 목적(2017~2022년)

(단위 : %)

구분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자료 및 정보획득	홈페이지 등 운영	교육·학습	직업·직장	기타
2017	3~9세	42.2	97.7	31.5	5.6	42.9	-	-
	10대	97.1	98.9	92.6	53.8	73.6	7.8	-
	20대	100.0	99.4	100.0	78.2	64.3	51.3	-
2018	3~9세	46.4	97.0	37.5	12.2	51.6	-	0.4
	10대	98.2	99.5	95.6	70.1	83.8	7.7	30.5
	20대	100.0	99.7	100.0	90.9	65.5	59.8	93.4
2019	3~9세	48.9	96.1	36.0	10.3	50.0	0.0	3.4
	10대	98.6	99.5	96.0	69.9	83.5	8.9	27.3
	20대	100.0	99.7	100.0	91.8	70.2	60.8	91.0
2020	3~9세	53.1	89.3	43.1	18.6	48.5	2.4	3.1
	10대	98.5	99.1	95.2	64.8	99.9	9.4	37.7
	20대	99.9	99.8	100.0	87.4	82.6	51.5	96.2
2021	3~9세	71.5	91.2	54.9	87.0	56.2	1.1	3.8
	10대	99.8	100.0	99.9	47.4	99.9	9.4	71.8
	20대	100.0	100.0	100.0	99.8	77.9	55.2	99.9
2022	3~9세	66.8	99.1	58.5	87.6	63.9	2.6	2.1
	10대	100.0	100.0	100.0	48.9	100.0	11.3	88.2
	20대	100.0	100.0	100.0	100.0	90.7	59.0	100.0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a~2019a). 2017-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20a).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7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a).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a).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 202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21.

* 주: 1) 복수응답 결과.
2) '기타' 항목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추가됨.

2022년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실태를 살펴보면, 3~9세는 7.8시간, 10대는 14.1시간, 20대는 17.2시간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도 높게 나타났다(표 Ⅳ-3-18).

표 Ⅳ-3-18.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2017~2022년)

(단위 : %, 시간)

연도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3시간 미만	3시간~7시간 미만	7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21시간 미만	21시간~35시간 미만	35시간 이상	주평균(시간)
2017	3~9세	9.7	19.1	30.5	31.6	6.7	1.8	0.6	5.7
	10대	1.1	5.2	16.3	42.4	22.4	11.0	1.6	10.9
	20대	0.0	1.1	7.4	38.1	31.1	18.6	3.7	14.3
2018	3~9세	7.9	17.8	22.3	35.8	12.1	3.7	0.4	7.2
	10대	1.2	4.9	14.4	34.6	29.9	13.3	1.8	12.0
	20대	0.3	1.4	7.4	33.3	32.2	21.6	3.8	14.8
2019	3~9세	15.6	17.4	26.1	29.1	8.7	2.6	0.5	5.8
	10대	3.8	6.2	12.8	35.8	25.3	13.9	2.3	11.7
	20대	2.2	3.1	6.7	32.8	30.0	19.8	5.4	14.9
2020	3~9세	9.2	15.6	24.9	33.5	11.8	4.5	0.5	7.1
	10대	1.5	5.3	9.8	35.9	26.5	15.5	5.5	13.6
	20대	0.4	2.9	7.0	32.1	27.0	21.4	9.2	16.2
2021	3~9세	6.0	20.0	22.1	28.2	15.5	4.0	4.2	9.7
	10대	0.8	6.8	9.5	33.6	25.5	19.0	4.8	13.6
	20대	0.2	2.8	5.5	23.7	33.6	29.0	5.2	16.3
2022	3~9세	-	-	-	-	-	-	-	7.8
	10대	-	-	-	-	-	-	-	14.1
	20대	-	-	-	-	-	-	-	17.2
	만3세 이상	2.3	7.0	11.0	34.0	25.2	16.7	3.7	13.0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b~2019b). 2017-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20b).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p.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b).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p.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b).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p.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 202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58, 131

* 주: 2022년 보고서에는 연령별로 구분하여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고 '만 3세 이상'으로 전체 수치만 제시되어 있음.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를 살펴보면, 과의존 위험군(10~19세)은 전체의 40.1%로 고위험군 5.2%, 잠재적 위험군 34.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37.6%, 중학생이 45.4%, 고등학생이 36.6%였다. 위험군의 주 이용 콘텐츠를 살펴보면, 메신저, 영화 및 TV 등 동영상 이용, 학업 및 업무용 검색, 게임, 관심사 검색, 음악 등 모든 항목의 콘텐츠에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Ⅳ-3-19).

표 Ⅳ-3-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및 주이용 콘텐츠(복수응답)

(단위 : %)

	과의존 위험군 (10-19세)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주이용 콘텐츠							
				메신저	영화 TV 동영상	학업 업무용 검색	게임	관심사 (취미) 검색	음악	상품/ 서비스 정보 검색	필수 교육
2019	30.2	3.8	26.4	97.3	97.5	93.9	93.1	91.0	88.5	79.0	-
2020	35.8	5.0	30.8	98.3	98.2	96.6	95.6	95.2	91.1	85.1	84.1
2021	37.0	5.7	31.3	96.5	98.5	96.0	96.7	92.2	91.0	83.5	86.6
2022	40.1	5.2	34.9	96.5	98.4	94.9	94.4	90.3	90.0	81.3	74.2
초등학생	37.6	5.1	32.5	85.8	98.4	82.9	94.6	68.8	77.9	54.7	64.8
중 학 생	45.4	5.8	39.6	98.2	98.6	97.7	95.3	94.3	95.6	84.8	74.4
고등학생	36.6	4.6	32.1	99.2	99.7	98.4	94.2	98.4	96.7	97.2	78.9

* 출처: 여성가족부(2022.05.25.). 보도자료: 2022 청소년 통계. p.34.
여성가족부(2023.05.30.). 보도자료: 2023 청소년 통계. p.3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307에서 2023년 8월 23일 인출.
* 원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c).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c).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71.

* 주: 1) '스마트폰 과의존'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 능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
2)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상위 콘텐츠를 제시함.
3) 필수교육 부분은 2023 청소년 통계에는 수치가 나타나있지 않아 원자료인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 71에서 해당 수치를 찾아 기입하였음. 필수교육 2022년 전체 수치는 청소년(만10~19세) 수치임(원자료 p. 71참조).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를 살펴보면, 2021년 전국에 일반 공공도서관은 1,103개관, 어린이도서관은 105개관이 운영 중에 있다(표 Ⅳ-3-20).

표 Ⅳ-3-20.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2012~2021년)

(단위 : 개관)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 공공도서관	745	780	842	889	918	947	997	1,033	1,068	1,103
어린이도서관	83	85	88	89	92	95	99	101	104	105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b). 2018년도(20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1.
문화체육관광부(2019b). 2019년도(2018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4.
문화체육관광부(2020b). 2020년도('19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4.
문화체육관광부(2021c). 2021년('20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4.
문화체육관광부(2022c). 2022년('21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8.

2021년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등 아동·청소년의 독서량을 살펴보면, 종이책은 초등학생 51.7권, 중학생 14.8권, 고등학생 7.5권으로 나타났고, 전자책은 초등학생 11.8권, 중학생 8.0권, 고등학생 4.9권으로 나타났으며, 오디오북은 초등학생 3.1권, 중학생 0.7권, 고등학생 0.2권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21).

표 Ⅳ-3-21. 학생 독서량(2011~2021년)

(단위 : 권)

종류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구분 \ 연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19	2021
초등학교 4~6학년	45.0	65.1	70.8	67.1	69.8	51.7	3.6	8.6	8.1	8.7	9.1	11.8	7.8	3.1
중학교	14.4	22.0	19.4	18.5	20.1	14.8	5.3	7.8	5.8	5.4	4.5	8.0	0.4	0.7
고등학교	15.4	9.8	8.9	8.8	8.8	7.5	2.5	5.2	4.0	3.7	3.2	4.9	0.3	0.2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b).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pp.76-80.
김영지 외(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126.

* 주: 1) 전체 응답자(비독서자 포함) 기준 지난 1년 간 평균 독서량
2) 오디오북 조사는 2019년 신규 추가
3) 국민 독서실태 조사는 2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23년 조사가 24년 1월에 발표되어 전년도 보고서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였음.

(2) 디지털 리터러시

① 미디어 역량

2022년 아동·청소년(10~19세)의 디지털 사용 역량 실태를 살펴보면,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정보 및 콘텐츠 검색 82.3%(초 75.9%, 중 84.2%, 고 85.1%), 온라인상에서 획득한 정보가 신뢰할만한 정보인지 판단 가능 66.9%(초 54.7%, 중 67.9%, 고 75.5%), 온라인상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 및 참여 가능 55.3%(초 39.1%, 중 58.2%, 고 64.3%),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이슈 파악 53.1%(초 39.5%, 중 52.7%, 고 64.0%),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학업·직업 관련 활동 64.1%(초 55.5%, 중 63.5%, 고 70.7%),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편집 46.9%(초 33.7%, 중 49.9%, 고 53.2%)로 나타났다(표 Ⅳ-3-22).

표 Ⅳ-3-22. 디지털 사용 역량

(단위 : %)

매체 종류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정보 및 콘텐츠를 잘 찾을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획득한 정보가 신뢰할만한지 판단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이슈를 파악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학업·직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2020	전체	20.2	79.8	27.3	72.7	37.0	63.0	40.3	59.7	44.2	55.8	65.5	34.5
	청소년(만 10~19세)	18.3	81.7	30.3	69.7	39.7	60.3	41.4	58.6	33.2	66.8	63.0	37.0
	초등학교	27.9	72.1	45.2	54.8	56.4	43.6	56.3	43.7	40.7	59.3	73.8	26.2
	중학교	17.5	82.5	28.5	71.5	36.7	63.3	39.4	60.6	32.1	67.9	67.0	33.0
	고등학교	11.8	88.2	20.4	79.6	29.7	70.3	32.0	68.0	29.0	71.0	52.8	47.2
2021	전체	21.4	78.6	29.4	70.6	37.5	62.5	46.4	53.6	47.0	53.0	59.0	41.0
	청소년(만 10~19세)	16.3	83.7	29.8	70.2	41.6	58.4	48.8	51.2	34.5	65.5	57.4	42.6
	초등학교	26.6	73.4	49.1	50.9	59.0	41.0	60.2	39.8	42.6	57.4	71.1	28.9
	중학교	15.1	84.9	25.9	74.1	41.0	59.0	50.0	50.0	34.1	65.9	55.6	44.4
	고등학교	8.4	91.6	16.5	83.5	27.0	73.0	38.0	62.0	27.9	72.1	47.1	52.9
2022	전체	22.5	77.5	31.3	68.7	40.2	59.8	47.0	53.0	45.8	54.2	58.5	41.5
	청소년(만 10~19세)	17.7	82.3	33.1	66.9	44.7	55.3	46.9	53.1	35.9	64.1	53.1	46.9
	초등학교	24.1	75.9	45.3	54.7	60.9	39.1	60.5	39.5	44.5	55.5	66.3	33.7
	중학교	15.8	84.2	32.1	67.9	41.8	58.2	47.3	52.7	36.5	63.5	50.1	49.9
	고등학교	14.9	85.1	24.5	75.5	35.7	64.3	36.0	64.0	29.3	70.7	46.8	53.2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c).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c).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86.

* 주: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가구방문조사로 실시되며 통계표의 '전체'값은 성인을 포함한 조사대상 전체 응답값임.

6) 소결

여기에서는 대분류 영역 중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하위 지표에는 의견표명권 및 표현의 자유에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가 있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가 있으며,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결사 집회 경험률이 있고, 사생활의 보호에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경험률, 학생 정보 보호정도가 있으며, 정보접근권에 매체 접근율,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와 관련해서, 집안 중대사 결정 90.0%, 상급학교 진학결정 93.6%, 진로(직업) 93.6%, 공부시간이나 방법 90.1%, 쉬는 시간 선택 86.9%, 내가 하고 싶은 것 선택 89.6%로 존중 정도가 모두 높았다. 학교에서의 참여정도와 관련해서,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는 선생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 46.8%, 임원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기준 없음 35.4%,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장소, 시간 보장 51.3%,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57.5%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는 참여가능하며 발언권 있음 27.8%, 참여가능하지만 발언권 없음 7.2%, 참여할 수 없음 5.5%였다.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는 82.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에서의 참여정도와 관련해서, 2022년 제 19회 아동총회 결의문 13건에 대한 수용률은 100.0%였고,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 제안과제 32개에 대한 수용률은 90.6%였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는 11.6%로 최근 수년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71.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은 시간 부족 35.5%,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27.1%, 참여활동정보 부족 21.8%,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 12.2%, 부모님 반대 1.9%,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함 1.4% 순으로 나타났다.

사상, 양심의 자유 보장정도와 관련해서, 92.6%가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 부모, 형제와 관계없이 종교 선택 문항에는 83.0%가,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 문항에는 47.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결사·집회 경험과 관련해서,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SNS 활동에 가끔 또는 자주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13.9%,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가끔 또는 자주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5.8%였다.

학교에서의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경험과 관련해서, 1년에 1회 이상 용모검사 15.7%, 복장검사 49.8%, 소지품 검사 8.1%, 수업시간이외 핸드폰 사용금지 21.9%, 수업시간이외 핸드폰 압수 14.7%로 나타났다. 학생 정보 보호 정도와 관련해서, 개인(민감)정보에 대한 공개 정도는 9.3%, 징계사항에 대한 공개 정도는 13.1%, 개인시험성적에 대한 공개 정도는 14.2%로 나타났다.

매체 접근율과 관련해서, 2022년 인터넷 이용 빈도 실태를 살펴보면, 하루에 1회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9세의 경우 82.2%, 10대의 경우 96.7%, 20대의 경우 98.2%로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이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평균 이용시간은 3~9세는 12.4시간, 10대 24.3시간, 20대 33.4시간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실태를 살펴보면, 3~9세 7.8시간, 10대 14.1시간, 20대 17.2시간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도 높았다.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를 살펴보면, 과의존 위험군(10~19세)은 전체의 40.1%(고위험군 5.2%, 잠재적 위험군 34.9%)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국 일반 공공도서관은 1,103개관, 어린이도서관은 105개관이었다. 2021년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등 독서량을 보면 종이책은 초등학생 51.7권, 중학생 14.8권, 고등학생 7.5권이었고, 전자책은 초등학생 11.8권, 중학생 8.0권, 고등학생 4.9권이었으며, 오디오북은 초등학생 3.1권, 중학생 0.7권, 고등학생 0.2권이었다. 디지털리터러시와 관련해서, 2022년 아동·청소년(10~19세)의 디지털 사용 역량 실태를 살펴보면,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정보 및 콘텐츠 검색 82.3%, 온라인상에서 획득한 정보가 신뢰할만한 정보인지 판단 가능 66.9%, 온라인상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 및 참여 가능 55.3%,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이슈 파악 53.1%,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학업·직업 관련 활동 64.1%,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편집 46.9%로 나타났다.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들은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하며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동·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폭력 및 학대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1) 청소년폭력 경험률

① 가정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아동·청소년들의 가정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중 부모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비율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년에 1회 이상 부모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비율이 전체의 3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학교급별로는 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별로는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표 Ⅳ-4-1).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20년에 미세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부터 다시 미세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4-1).

표 Ⅳ-4-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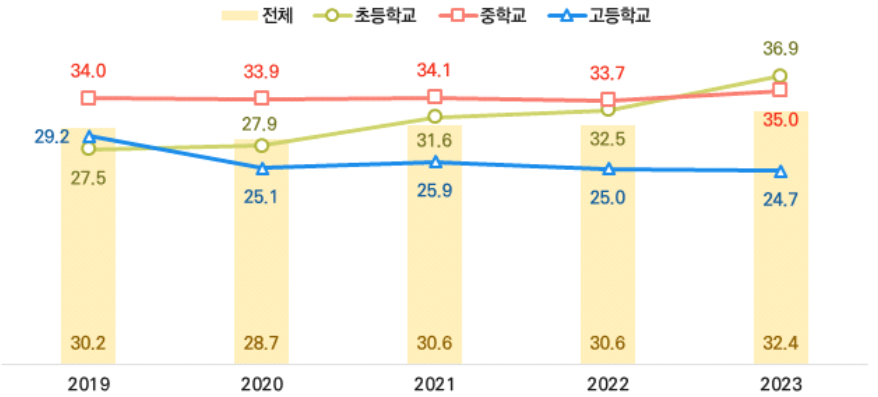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67.6	15.6	7.0	5.5	4.3	100.0(8,753)	
성별	남학생	68.1	15.5	7.1	4.9	4.4	100.0(4,505)	6.859
	여학생	67.1	15.7	6.8	6.1	4.2	100.0(4,249)	
학교급	초등학교	63.1	18.6	7.3	5.9	5.1	100.0(3,029)	117.791***
	중학교	65.0	16.2	8.0	6.2	4.6	100.0(2,954)	
	고등학교	75.3	11.7	5.6	4.4	3.1	100.0(2,770)	
경제적 수준	상	69.3	15.6	6.1	5.1	3.8	100.0(5,405)	125.486***
	중	67.8	15.3	7.7	5.3	3.9	100.0(2,642)	
	하	51.2	17.4	11.0	10.3	10.0	100.0(601)	

*p 〈 .05, **p 〈 .01, ***p 〈 .001.

* 주: 1)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2) 2023년 조사부터는 '모욕적인 말(욕설)'에서 '정서적인 공격(모욕적인 말, 욕설 등)'으로 설문문항 문구 수정되었음.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4-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아동·청소년들의 가정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중 부모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한 비율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년에 1회 이상 부모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한 비율이 전체의 2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학교급별로는 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별로는 경제적 수준이 하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표 Ⅳ-4-2).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증감을 반복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미세하게 증가하였다(그림 Ⅳ-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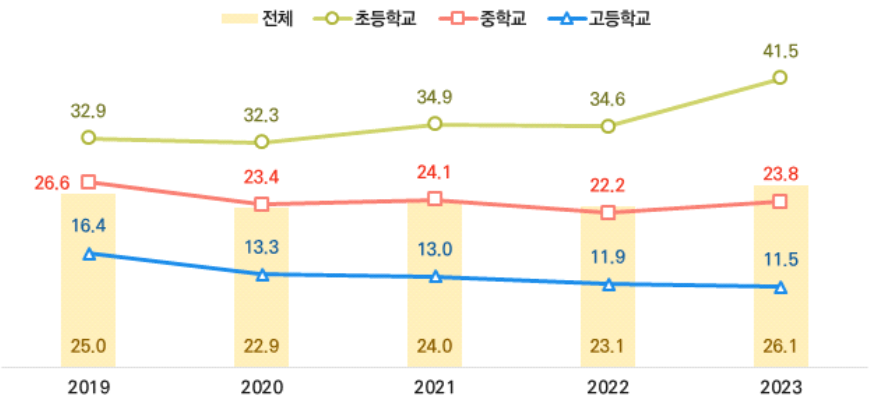
표 Ⅳ-4-2.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73.9	17.0	5.1	2.8	1.2	100.0(8,763)	
성별	남학생	72.3	18.2	5.3	2.9	1.3	100.0(4,513)	12.980*
	여학생	75.6	15.8	4.8	2.6	1.1	100.0(4,250)	
학교급	초등학교	58.5	26.1	8.3	4.9	2.2	100.0(3,040)	697.952***
	중학교	76.2	16.2	4.4	2.4	0.9	100.0(2,954)	
	고등학교	88.5	8.0	2.3	0.9	0.4	100.0(2,770)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경제적 수준	상	73.2	17.8	5.0	2.9	1.1	100.0(5,412)	49.241***
	중	76.9	15.3	4.5	2.3	1.0	100.0(2,645)	
	하	67.4	17.3	8.9	3.9	2.5	100.0(601)	

*p 〈 .05, **p 〈 .01, ***p 〈 .001.
* 주: 1)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2) 2023년 조사부터는 '체벌'에서 '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으로 설문문항 문구 수정되었음.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4-2.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연도별 추이)

② 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중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비율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년에 1회 이상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비율이 전체의 1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높게 나타났다(표 Ⅳ-4-3).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다시 미세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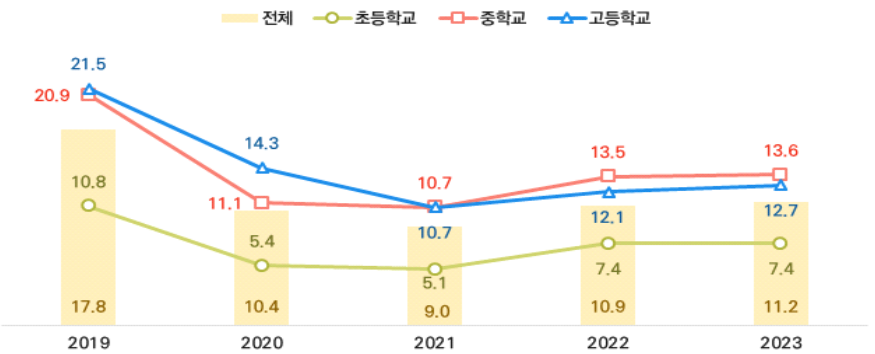
표 Ⅳ-4-3.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88.8	6.5	2.1	1.4	1.2	100.0(8,742)	
성별	남학생	86.9	7.2	2.7	1.5	1.8	100.0(4,501)	49.056***
	여학생	90.9	5.8	1.5	1.2	0.6	100.0(4,241)	
학교급	초등학교	92.6	4.3	1.5	0.9	0.7	100.0(3,027)	71.344***
	중학교	86.4	8.2	2.3	1.7	1.4	100.0(2,949)	
	고등학교	87.3	7.1	2.6	1.5	1.5	100.0(2,766)	

*p 〈 .05, **p 〈 .01, ***p 〈 .001.

* 주: 1)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2) 2023년 조사부터는 '모욕적인 말(욕설)'에서 '정서적인 공격(모욕적인 말, 욕설 등)'으로 설문문항 문구 수정되었음.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4-3.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중 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한 비율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년에 1회 이상 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한 비율이 전체의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Ⅳ-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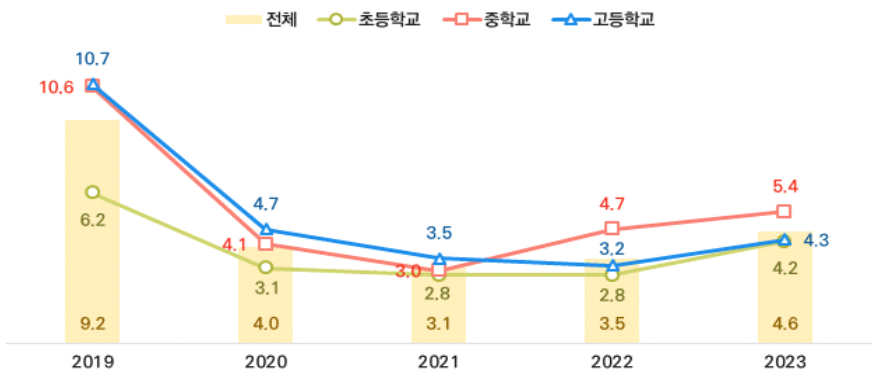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다시 미세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4-4).

표 Ⅳ-4-4. 체벌 경험여부_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5.4	2.5	1.0	0.5	0.6	100.0(8,744)	
성별	남학생	93.1	3.4	1.6	0.8	1.0	100.0(4,500)	111.555***
	여학생	97.7	1.5	0.4	0.2	0.1	100.0(4,243)	
학교급	초등학교	95.8	2.3	0.9	0.4	0.5	100.0(3,026)	12.542
	중학교	94.6	2.9	1.0	0.6	0.9	100.0(2,949)	
	고등학교	95.7	2.2	1.1	0.6	0.4	100.0(2,769)	

*p 〈 .05, **p 〈 .01, ***p 〈 .001.
* 주: 1)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2) 2023년 조사부터는 '체벌'에서 '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으로 설문문항 문구 수정되었음.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4-4. 체벌 경험여부_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연도별 추이)

③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아동·청소년들의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년에 1회 이상 폭력피해를 당한 경험이 욕설 및 모욕 19.4%, 폭행 및 구타 9.1%, 따돌림 6.9%, 돈, 물건 빼앗김 3.1%, 성적인 희롱 및 추행 2.9%, 강제적인 심부름 1.9% 순으로 높았다(표 Ⅳ-4-5).

종단적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욕설 및 모욕은 2020년에 감소하다가 2021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폭행 및 구타의 경우 2020년에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따돌림도 2020년에 감소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강제로 빼앗김도 2020년에 감소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성적인 희롱과 추행은 2020년에 감소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강제적인 심부름은 2021년까지 미세하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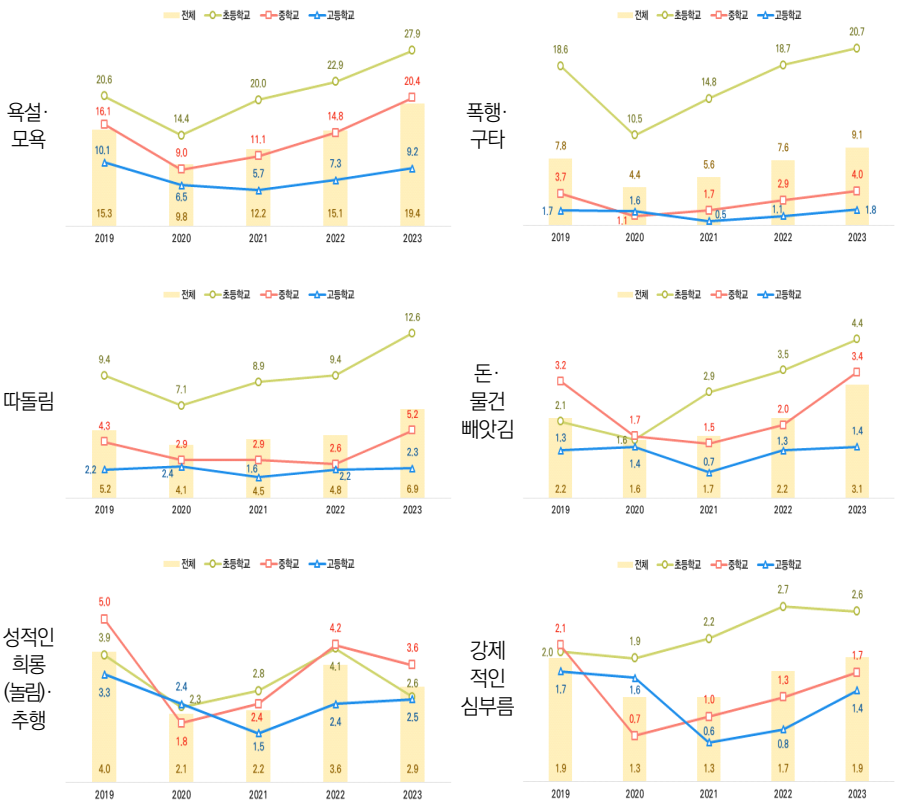
표 Ⅳ-4-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욕설·모욕	전체		80.6	10.3	3.5	2.6	3.0	100.0(8,772)	
	성별	남학생	76.3	11.7	4.6	3.2	4.1	100.0(4,520)	127.114***
		여학생	85.1	8.9	2.2	2.1	1.8	100.0(4,252)	
	학교급	초등학교	72.1	14.8	5.4	3.5	4.1	100.0(3,043)	333.476***
		중학교	79.6	10.9	3.1	3.1	3.2	100.0(2,953)	
		고등학교	90.8	4.8	1.7	1.2	1.5	100.0(2,775)	
폭행·구타	전체		90.9	4.6	1.7	1.2	1.6	100.0(8,773)	
	성별	남학생	87.8	6.2	2.3	1.5	2.1	100.0(4,519)	110.623***
		여학생	94.2	2.9	1.0	0.9	1.0	100.0(4,254)	
	학교급	초등학교	79.3	10.7	3.7	2.9	3.4	100.0(3,040)	768.463***
		중학교	96.0	2.0	0.8	0.3	0.8	100.0(2,956)	
		고등학교	98.2	0.6	0.4	0.3	0.5	100.0(2,776)	
따돌림	전체		93.1	4.4	0.8	0.8	0.8	100.0(8,762)	
	성별	남학생	93.2	4.0	1.0	0.8	1.0	100.0(4,514)	7.148
		여학생	93.0	4.8	0.7	0.7	0.7	100.0(4,248)	
	학교급	초등학교	87.4	8.4	1.5	1.5	1.2	100.0(3,031)	271.198***
		중학교	94.8	3.4	0.6	0.4	0.7	100.0(2,955)	
		고등학교	97.7	1.1	0.4	0.3	0.5	100.0(2,776)	
돈·물건 빼앗김	전체		96.9	1.8	0.7	0.3	0.4	100.0(8,769)	
	성별	남학생	96.1	2.2	1.0	0.4	0.4	100.0(4,519)	23.466***
		여학생	97.7	1.4	0.4	0.1	0.4	100.0(4,250)	
	학교급	초등학교	95.6	3.0	0.7	0.3	0.3	100.0(3,037)	57.461***
		중학교	96.6	1.8	1.0	0.3	0.4	100.0(2,957)	
		고등학교	98.6	0.6	0.3	0.2	0.3	100.0(2,776)	
성적인 희롱(놀림)·추행	전체		97.1	1.5	0.5	0.4	0.5	100.0(8,765)	
	성별	남학생	96.2	1.8	0.7	0.6	0.7	100.0(4,514)	30.686***
		여학생	98.0	1.2	0.3	0.3	0.3	100.0(4,251)	
	학교급	초등학교	97.4	1.6	0.5	0.2	0.3	100.0(3,037)	23.712**
		중학교	96.4	1.8	0.7	0.4	0.7	100.0(2,952)	
		고등학교	97.5	1.0	0.3	0.7	0.5	100.0(2,776)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강제적인 심부름	전체		98.1	1.1	0.3	0.2	0.3	100.0(8,773)	
	성별	남학생	97.7	1.1	0.4	0.3	0.4	100.0(4,521)	10.968*
		여학생	98.5	1.0	0.2	0.1	0.2	100.0(4,252)	
	학교급	초등학교	97.4	1.7	0.3	0.3	0.3	100.0(3,041)	24.451**
		중학교	98.3	0.9	0.3	0.1	0.4	100.0(2,956)	
		고등학교	98.6	0.6	0.2	0.3	0.3	100.0(2,776)	

*p 〈 .05, **p 〈 .01,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4-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④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들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년에 1회 이상 폭력피해를 당한 경험은 욕설 및 모욕 19.4%, 사생활침해 4.3%, 협박 3.3%, 성희롱(놀림) 2.8%, 따돌림 2.7% 순으로 높았다(표 Ⅳ-4-6).

종단적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욕설 및 모욕은 2019년 이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협박은 2020년 이후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성희롱(놀림)은 2020년에 감소하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사생활침해는 2020년에 감소하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따돌림은 2021년까지 미세하게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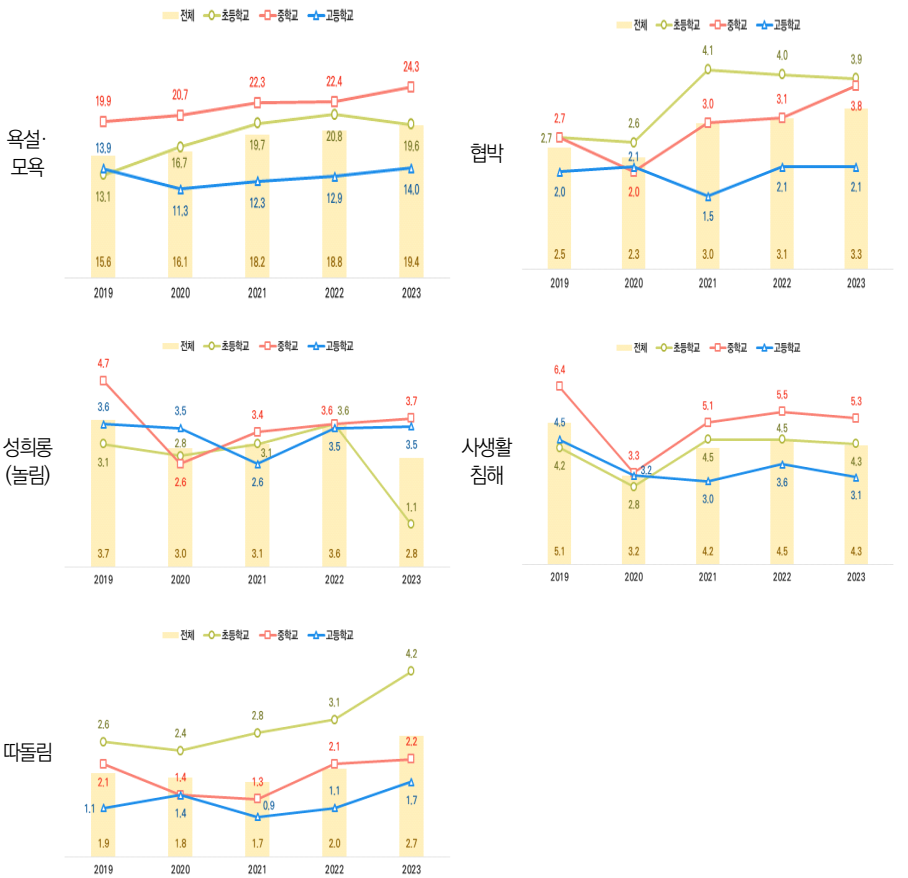
표 Ⅳ-4-6.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욕설·모욕	전체		80.6	10.0	3.4	2.4	3.6	100.0(8,774)	
	성별	남학생	77.5	10.0	4.1	3.1	5.3	100.0(4,521)	116.704***
		여학생	83.9	9.9	2.8	1.7	1.8	100.0(4,253)	
	학교급	초등학교	80.4	11.0	4.0	2.0	2.5	100.0(3,043)	133.754***
		중학교	75.7	12.0	3.7	3.0	5.6	100.0(2,956)	
		고등학교	86.0	6.7	2.5	2.3	2.6	100.0(2,775)	
협박	전체		96.7	1.7	0.6	0.3	0.7	100.0(8,774)	
	성별	남학생	95.4	2.0	0.8	0.5	1.2	100.0(4,521)	64.415***
		여학생	98.1	1.4	0.2	0.1	0.2	100.0(4,253)	
	학교급	초등학교	96.1	2.4	0.7	0.3	0.5	100.0(3,042)	35.030***
		중학교	96.2	1.7	0.5	0.4	1.1	100.0(2,956)	
		고등학교	97.9	0.9	0.4	0.3	0.5	100.0(2,776)	
성희롱(놀림)	전체		97.2	1.2	0.6	0.4	0.6	100.0(8,764)	
	성별	남학생	96.8	1.2	0.7	0.5	0.9	100.0(4,514)	23.589***
		여학생	97.7	1.3	0.4	0.3	0.2	100.0(4,250)	
	학교급	초등학교	98.9	0.5	0.3	0.1	0.1	100.0(3,037)	50.869***
		중학교	96.3	1.6	0.8	0.6	0.8	100.0(2,952)	
		고등학교	96.5	1.6	0.6	0.5	0.8	100.0(2,775)	
사생활침해	전체		95.7	2.8	0.6	0.5	0.4	100.0(8,774)	
	성별	남학생	95.4	2.8	0.7	0.6	0.6	100.0(4,522)	12.030*
		여학생	96.1	2.9	0.5	0.4	0.2	100.0(4,252)	
	학교급	초등학교	95.7	3.2	0.4	0.5	0.2	100.0(3,042)	25.823**
		중학교	94.7	3.4	0.8	0.5	0.5	100.0(2,956)	
		고등학교	96.9	1.7	0.6	0.4	0.4	100.0(2,776)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따돌림	전체		97.3	1.5	0.5	0.3	0.4	100.0(8,773)	
	성별	남학생	97.0	1.6	0.5	0.4	0.5	100.0(4,521)	4.572
		여학생	97.6	1.4	0.4	0.3	0.3	100.0(4,252)	
	학교급	초등학교	95.8	2.6	0.6	0.6	0.4	100.0(3,044)	53.693***
		중학교	97.8	1.3	0.3	0.2	0.5	100.0(2,954)	
		고등학교	98.3	0.7	0.4	0.1	0.4	100.0(2,775)	

*p 〈 .05, **p 〈 .01,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4-6.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2021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00.0%(29,901건) 중 13세 미만이 4.0%(1,210건), 13세 이상이 96.0%(28,691건)으로 매년 유사한 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13세 미만, 13세 이상 모두 피해 건수가 소폭 증가하였다(표 Ⅳ-4-7).

표 Ⅳ-4-7.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2017~2021년)

(단위 : 건(%))

구분 / 연도	계	13세 미만	13세 이상
2017	30,099(100)	1,261(4.2)	28,838(95.8)
2018	29,244(100)	1,278(4.4)	27,966(95.6)
2019	29,676(100)	1,375(4.6)	28,301(95.4)
2020	28,289(100)	1,155(4.1)	27,134(95.9)
2021	29,901(100)	1,210(4.0)	28,691(96.0)

* 출처: 법무연수원(2023). 2022 범죄백서. p.191.

* 주: 1) 대검찰청「범죄분석」, 각년도.
2) 성별, 연령 미상은 제외.

②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3.1%가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교급별로는 교급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표 Ⅳ-4-8).

종단적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까지 미세하게 증가했다가 올해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Ⅳ-4-7).

표 Ⅳ-4-8.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3.1	96.9	100.0(8,689)	
성별	남학생	3.2	96.8	100.0(4,464)	0.825
	여학생	2.9	97.1	100.0(4,225)	
학교급	초등학교	4.0	96.0	100.0(2,969)	19.621***
	중학교	3.2	96.8	100.0(2,957)	
	고등학교	2.0	98.0	100.0(2,763)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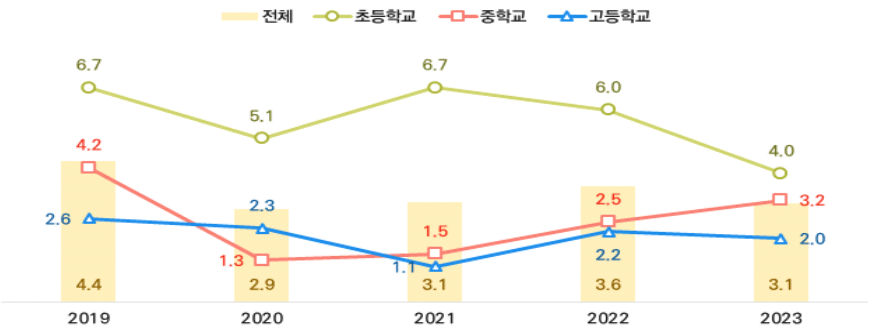


그림 Ⅳ-4-7.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받은 사람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친구 34.3%, 도움받지 않음 30.8%, 부모님 17.4%, 선생님 9.9%, 선후배 3.1%, 형제자매 1.9%, 경찰 0.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움받지 않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이,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 높게 나타났다(표 Ⅳ-4-9).

표 Ⅳ-4-9.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단위 : %(명))

구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친구	선·후배	부모님(보호자)	형제·자매	선생님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경찰	기타	전체(N)
전체		30.8	34.3	3.1	17.4	1.9	9.9	1.1	0.6	0.9	100.0(255)
성별	남학생	37.0	36.1	1.1	10.7	2.6	11.0	1.2	0.3	0.0	100.0(137)
	여학생	23.7	32.3	5.5	25.1	1.2	8.6	0.9	0.9	1.9	100.0(118)
학교급	초등학교	20.2	29.7	3.0	26.1	3.6	15.3	0.0	0.0	1.9	100.0(113)
	중학교	33.1	40.9	4.4	9.7	0.9	7.9	1.9	1.2	0.0	100.0(90)
	고등학교	49.7	33.0	1.2	11.7	0.0	1.6	2.0	0.9	0.0	100.0(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8.8	35.7	1.7	19.2	1.8	10.4	1.2	0.7	0.5	100.0(225)
	한부모가정	47.9	28.4	15.1	0.0	0.0	8.6	0.0	0.0	0.0	100.0(22)
	조손가정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0)
	기타	46.1	0.0	17.0	20.6	16.3	0.0	0.0	0.0	0.0	100.0(5)

* 주: 2017년도 조사부터는 전년도 보기 문항 중 '선배'가 '선·후배'로 수정되었으며, '인터넷'이 제외되었음.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① 아동학대 사례 건수

2022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총 46,103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96.6%(44,531건), 일반상담 1.9%(861건), 동일신고 1.5%(711건), 해외발생사례 0건(0.0%)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4-10).

표 Ⅳ-4-10.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2022년)

(단위 : 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 신고	일반 상담	해외발생 사례	계
44,531 (96.6)	711 (1.5)	861 (1.9)	0 (0.0)	46,103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3b).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p.14.

2022년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접수된 신고 총 44,531건에 대한 사례판단 결과, 62.8%인 27,971건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되었고, 35.4%인 15,746건이 일반사례로 판단되었으며, 1.8%인 814건은 조사 진행 중 사례로 판단되었다(표 Ⅳ-4-11).

표 Ⅳ-4-11.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례판단 결과(2022년)

(단위 : 건(%))

아동학대사례[1)]	일반사례[2)]	조사진행중사례	계
27,971 (62.8)	15,746 (35.4)	814 (1.8)	44,531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3b).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p.20.

* 주: 1)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및 진술로 인해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된 사례
2) 학대 의심사례로 신고접수 되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례

2022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27,971건(21,763명)의 피해아동에 대한 성별 및 연령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아가 49.9%, 여아가 50.1%로 여아가 약간 많았고, 연령별로는 13~15세 24.7%, 10세~12세도 23.3%, 7세~9세가 19.1%, 4세~6세 12.0%, 16세~17세 11.2%, 3세 이하 8.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Ⅳ-4-12).

표 Ⅳ-4-12. 아동학대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2022년)

(단위 : 건, 명(%))

구분		건수(비율)	명수(비율)
성별	남아	13,961(49.9)	10,992(50.5)
	여아	14,010(50.1)	10,771(49.5)
연령별	3세 이하	2,257(8.1)	1,533(7.0)
	4세 ~ 6세	3,346(12.0)	2,331(10.7)
	7세 ~ 9세	5,331(19.1)	4,070(18.7)
	10세 ~ 12세	6,522(23.3)	5,121(23.5)
	13세 ~ 15세	6,903(24.7)	5,675(26.1)
	16세 ~ 17세	3,141(11.2)	2,720(12.5)
계		27,971(100.0)	21,763(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3b).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pp.22~23의 내용을 재구성함.

2018년~2022년까지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8년 10.0%, 2019년 22.0%, 2020년 2.9%, 2021년 21.7% 증가했다가 2022년에는 25.6% 감소하였다(표 Ⅳ-4-13).

표 Ⅳ-4-13.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증가율

(단위 : 건(%))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아동학대사례수 (증가율)	24,604 (10.0)	30,045 (22.0)	30,905 (2.9)	37,605 (21.7)	27,971 (-25.6)

* 출처: 보건복지부(2023b).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p.60.

2022년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포함)가 82.7%로 제일 많고, 대리양육자(부모동거인, 유치원/보육 교직원, 초중고 교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청소년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등)가 10.9%, 친인척(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이 3.1%로 나타났다(표 Ⅳ-4-14).

표 Ⅳ-4-14.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구분	부모				친인척					총계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소계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소계	
명 (%)	22,358 (79.9)	712 (2.5)	49 (0.2)	23,119 (82.7)	329 (1.2)	180 (0.6)	246 (0.9)	124 (0.4)	879 (3.1)	27,971 (100.0)

구분	대리양육자										타인	기타
	부모 동거인	유치원/ 보육 교직원	초중고 교원	학원/ 교습소 종사자	아동복 지시설 종사자	기타 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종사자	위탁 부모	베이비 시터	소계	이웃, 낯선 사람	
명 (%)	193 (0.7)	100 (0.4)	1,602 (5.7)	254 (0.9)	175 (0.6)	69 (0.2)	8 (0.0)	11 (0.0)	35 (0.1)	3,047 (10.9)	573 (2.0)	353 (1.3)

* 출처: 보건복지부(2023b).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pp.27~28.

②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2022년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100.0%(27,971건) 중 정서학대 38.0%, 중복학대 34.9%, 신체학대 17.6%, 방임 7.3%, 성학대 2.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Ⅳ-4-15).

표 Ⅳ-4-15.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계
건수(%)	4,911 (17.6)	10,632 (38.0)	609 (2.2)	2,044 (7.3)	9,775 (34.9)	27,971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3b).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p.30.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100.0% 중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비율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방임, 중복학대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정서학대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 Ⅳ-4-16).

표 Ⅳ-4-16.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계
2018	3,436(14.0)	5,862(23.8)	910(3.7)	2,604(10.6)	11,792(47.9)	24,604(100.0)
2019	4,179(13.9)	7,622(25.4)	883(2.9)	2,885(9.6)	14,476(48.2)	30,045(100.0)
2020	3,807(12.3)	8,732(28.3)	695(2.2)	2,737(8.9)	14,934(48.3)	30,905(100.0)
2021	5,780(15.4)	12,351(32.8)	655(1.7)	2,793(7.4)	16,026(42.6)	37,605(100.0)
2022	4,911(17.6)	10,632(38.0)	609(2.2)	2,044(7.3)	9,775(34.9)	27,971(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26.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3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p.31.
보건복지부(2022b).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23.
보건복지부(2023b).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p.30.

③ 가정 내 방임 정도

가정 내 방임과 관련하여, 야간시간 방임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일년에 1회 이상 경험한 비율이 5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높았으며,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 높았고, 학업성적별로는 하가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별로도 하가 높게 나타났다(표 Ⅳ-4-17).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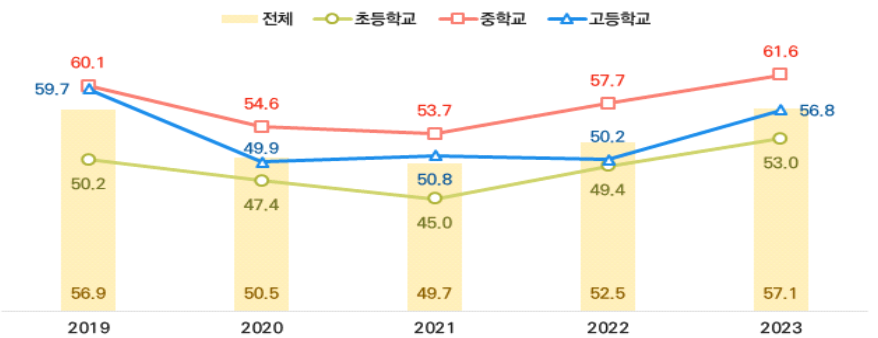
표 Ⅳ-4-17.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42.9	34.5	10.7	6.7	5.3	100.0(8,751)	
성별	남학생	43.1	34.1	10.8	6.4	5.5	100.0(4,509)	2.446
	여학생	42.7	34.8	10.6	6.9	5.0	100.0(4,242)	
학교급	초등학교	47.0	32.0	9.8	5.6	5.6	100.0(3,035)	63.616***
	중학교	38.4	37.5	12.4	6.9	4.7	100.0(2,948)	
	고등학교	43.2	33.9	9.9	7.6	5.5	100.0(2,768)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3.7	35.2	10.6	6.2	4.3	100.0(7,842)	195.027***
	한부모가정	33.8	27.5	12.8	11.2	14.8	100.0(653)	
	조손가정	46.4	44.3	3.8	0.0	5.5	100.0(33)	
	기타	41.6	28.7	10.2	6.5	12.9	100.0(151)	
학업 성적	상	46.2	33.9	9.8	5.8	4.3	100.0(3,418)	70.602***
	중	42.3	35.7	10.7	6.4	4.9	100.0(3,348)	
	하	37.8	33.8	12.3	8.4	7.8	100.0(1,877)	
경제적 수준	상	44.3	34.5	10.5	6.2	4.4	100.0(5,405)	75.314***
	중	41.9	35.2	10.2	6.8	5.8	100.0(2,640)	
	하	34.1	31.4	14.5	9.3	10.7	100.0(598)	

*p 〈 .05, **p 〈 .01,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4-8.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연도별 추이)

가정 내 방임과 관련하여,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 경험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일년에 1회 이상 경험한 비율이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높았으며,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 높았고, 학업성적별로는 하가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별로도 하가 높게 나타났다(표 Ⅳ-4-18).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증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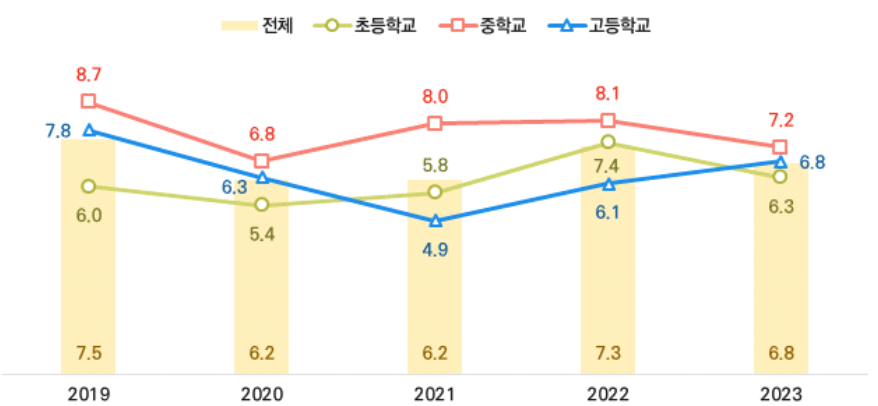
표 Ⅳ-4-18.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3.2	4.4	0.9	0.7	0.8	100.0(8,729)	
성별	남학생	92.3	4.8	1.1	1.0	0.9	100.0(4,494)	16.871**
	여학생	94.2	3.9	0.7	0.5	0.7	100.0(4,236)	
학교급	초등학교	93.7	4.8	0.5	0.3	0.7	100.0(3,020)	25.163**
	중학교	92.8	4.5	1.1	0.9	0.8	100.0(2,942)	
	고등학교	93.2	3.7	1.1	1.0	0.9	100.0(2,76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3.6	4.1	0.8	0.6	0.8	100.0(7,820)	35.008***
	한부모가정	90.3	5.8	1.4	1.4	1.2	100.0(653)	
	조손가정	96.7	0.0	0.0	0.0	3.3	100.0(33)	
	기타	86.1	9.2	1.5	2.7	0.5	100.0(150)	
학업 성적	상	94.3	4.0	0.7	0.5	0.5	100.0(3,411)	38.001***
	중	93.6	4.2	0.9	0.6	0.6	100.0(3,340)	
	하	90.7	5.2	1.3	1.3	1.5	100.0(1,872)	
경제적 수준	상	94.3	3.9	0.6	0.6	0.6	100.0(5,391)	93.868***
	중	92.9	4.1	1.5	0.7	0.9	100.0(2,634)	
	하	85.0	9.4	1.3	2.2	2.1	100.0(597)	

*p < .05, **p < .01,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4-9.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가정 내 방임과 관련하여, 내가 아파도 부모님(보호자)이 그냥 내버려둔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일년에 1회 이상 경험한 비율이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높았고, 학업성적별로는 하가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별로도 하가 높게 나타났다(표 Ⅳ-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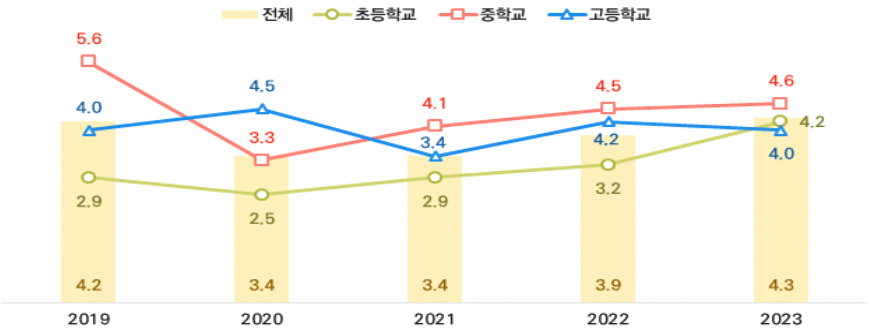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에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4-10).

표 Ⅳ-4-19. 방임_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5.7	2.8	0.8	0.4	0.3	100.0(8,727)	
성별	남학생	95.6	2.9	0.8	0.3	0.4	100.0(4,490)	5.246
	여학생	95.9	2.8	0.7	0.5	0.2	100.0(4,237)	
학교급	초등학교	95.8	3.0	0.6	0.4	0.2	100.0(3,019)	6.309
	중학교	95.4	2.9	1.0	0.4	0.3	100.0(2,941)	
	고등학교	96.0	2.6	0.7	0.3	0.4	100.0(2,76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0	2.7	0.7	0.4	0.2	100.0(7,819)	37.707***
	한부모가정	93.2	3.9	1.7	0.3	0.9	100.0(653)	
	조손가정	92.1	4.6	0.0	0.0	3.3	100.0(33)	
	기타	92.5	5.7	1.2	0.0	0.5	100.0(150)	
학업 성적	상	96.7	2.3	0.6	0.2	0.2	100.0(3,408)	32.804***
	중	95.9	2.7	0.8	0.4	0.2	100.0(3,340)	
	하	93.6	4.1	1.1	0.6	0.6	100.0(1,872)	
경제적 수준	상	96.9	2.2	0.6	0.3	0.1	100.0(5,389)	139.570***
	중	95.0	3.4	0.7	0.5	0.4	100.0(2,634)	
	하	87.9	6.6	2.6	1.2	1.7	100.0(597)	

*p 〈 .05, **p 〈 .01,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4-10. 방임_3)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연도별 추이)

가정 내 방임과 관련하여, 결식방임 경험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일년에 1회 이상 경험한 비율이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학교급별로는 교급이 낮을수록,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 높았고, 학업성적별로는 하가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별로도 하가 높게 나타났다(표 Ⅳ-4-20).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까지 미세하게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미세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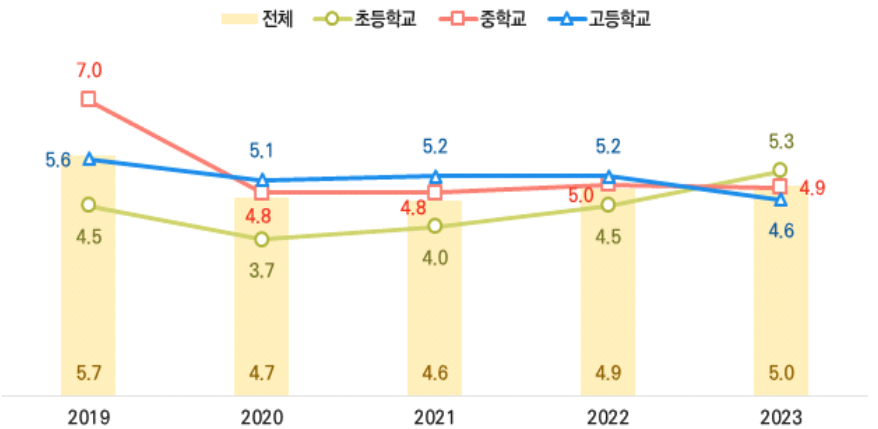
표 Ⅳ-4-20.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5.0	2.8	0.9	0.7	0.6	100.0(8,722)	
성별	남학생	94.7	2.9	1.0	0.7	0.8	100.0(4,487)	5.011
	여학생	95.4	2.6	0.8	0.7	0.5	100.0(4,235)	
학교급	초등학교	94.7	3.6	0.8	0.4	0.5	100.0(3,019)	22.062**
	중학교	95.1	2.3	1.1	0.9	0.6	100.0(2,936)	
	고등학교	95.4	2.3	0.7	0.7	0.9	100.0(2,76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5	2.7	0.8	0.6	0.5	100.0(7,815)	99.024***
	한부모가정	91.2	4.2	0.9	2.0	1.7	100.0(653)	
	조손가정	92.1	2.4	0.0	0.0	5.5	100.0(33)	
	기타	89.3	2.8	4.0	0.0	3.9	100.0(150)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95.7	2.3	0.8	0.7	0.6	100.0(3,408)	33.880***
	중	95.7	2.6	0.7	0.4	0.5	100.0(3,337)	
	하	92.6	3.9	1.4	1.2	0.9	100.0(1,871)	
경제적 수준	상	96.1	2.3	0.9	0.5	0.3	100.0(5,386)	87.408***
	중	94.3	3.1	0.7	0.9	0.9	100.0(2,633)	
	하	88.6	5.6	2.1	1.6	2.1	100.0(597)	

*p < .05, **p < .01,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4-11.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가정 내 방임과 관련하여, 결석방임 경험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일년에 1회 이상 경험한 비율이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높았고,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높았으며, 학업성적별로는 하가 높았고, 경제적 수준별로도 하가 높게 나타났다(표 Ⅳ-4-21).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미세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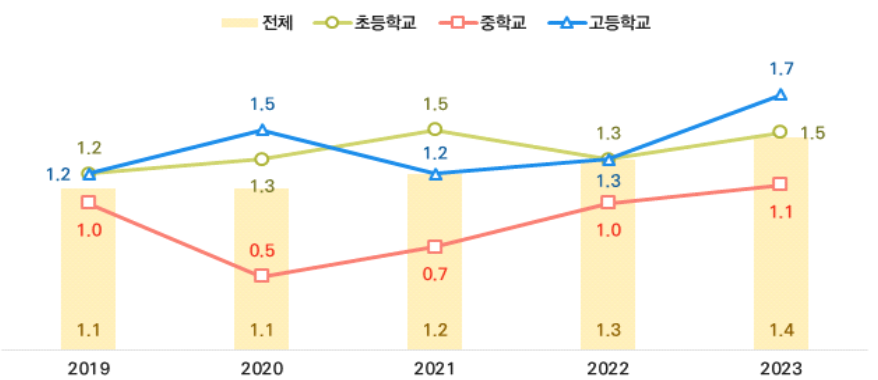
표 Ⅳ-4-21.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8.6	0.8	0.3	0.2	0.2	100.0(8,715)	
성별	남학생	98.3	0.8	0.3	0.1	0.4	100.0(4,483)	7.869
	여학생	98.8	0.7	0.2	0.2	0.1	100.0(4,232)	
학교급	초등학교	98.5	0.9	0.3	0.1	0.3	100.0(3,013)	20.684**
	중학교	98.9	0.5	0.4	0.0	0.2	100.0(2,937)	
	고등학교	98.3	1.0	0.2	0.4	0.2	100.0(2,76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8	0.7	0.2	0.1	0.2	100.0(7,811)	137.446***
	한부모가정	97.5	1.2	0.6	0.5	0.3	100.0(649)	
	조손가정	96.7	0.0	0.0	0.0	3.3	100.0(33)	
	기타	92.6	2.1	0.6	3.1	1.6	100.0(150)	
학업 성적	상	98.7	0.7	0.4	0.1	0.1	100.0(3,401)	19.533*
	중	98.8	0.6	0.2	0.2	0.3	100.0(3,338)	
	하	97.8	1.3	0.2	0.2	0.4	100.0(1,871)	
경제적 수준	상	98.8	0.7	0.3	0.1	0.1	100.0(5,379)	14.119
	중	98.3	0.9	0.3	0.2	0.3	100.0(2,632)	
	하	97.5	1.0	0.2	0.5	0.7	100.0(597)	

*p < .05, **p < .01,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4-12.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2) 학대 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①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보호기관 수

2022년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보호기관수를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수는 85개소이고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수는 329.1건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수는 대폭 증가하였고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수는 감소하였다(표 Ⅳ-4-22).

표 Ⅳ-4-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2007~2022년)

(단위: 건, 개소)

구분	아동학대 사례 건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	구분	아동학대 사례 건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
2007	5,581	43	129.8	2015	11,715	56	209.2
2008	5,578	43	129.7	2016	18,700	59	316.9
2009	5,685	44	129.2	2017	22,367	60	372.8
2010	5,657	44	128.6	2018	24,604	62	396.8
2011	6,058	44	137.7	2019	30,045	67	448.4
2012	6,403	46	139.2	2020	30,905	71	435.3
2013	6,796	50	135.9	2021	37,605	77	488.4
2014	10,027	51	196.6	2022	27,971	85	329.1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21.
보건복지부(2022b).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53.
보건복지부(2023b).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p60.

② 서비스 제공 정도와 조치 결과

2022년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을 살펴보면, 피해 아동에게는 886,989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학대 행위자에게는 536,730건, 부모 또는 가족에게는 244,76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부모 또는 가족 모두 서비스 건수가 증가하였다(표 Ⅳ-4-23).

표 Ⅳ-4-23.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2016~2022년)

(단위: 건)

구분	서비스 건수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피해아동	640,378	501,465	461,891	555,312	651,619	791,587	886,989
학대 행위자	193,633	196,458	206,419	259,967	335,818	437,644	536,730
부모 또는 가족	194,931	186,923	137,127	144,634	165,586	183,756	244,761
계	1,028,942	884,846	805,437	956,913	1,153,023	1,412,987	1,668,48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2018). 2016~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4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48.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p.48.
보건복지부(2022b).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40.
보건복지부(2023b).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p.46.

2022년 대상별 서비스 제공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피해 아동 886,989건, 가해 행위자 536,730건, 부모 및 가족 244,761건 순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피해 아동에게는 상담 69.0%, 가족기능 강화 9.9%, 심리치료지원 7.9%, 사건처리지원 5.5% 순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가해 행위자에게는 상담 73.9%, 사건처리지원 6.7%, 행위자 수탁프로그램 6.3%, 심리치료지원 5.9%, 가족기능 강화 5.2% 순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부모 및 가족에게는 상담 78.1%, 가족기능 강화 11.4%, 심리치료지원 4.9% 순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표 Ⅳ-4-24).

표 Ⅳ-4-24. 대상별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회, %)

구분	아동		행위자		부모 및 가족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상담	612,047	69.0	396,554	73.9	191,192	78.1
의료지원	4,749	0.5	1,399	0.3	472	0.2
심리치료지원	70,190	7.9	31,855	5.9	11,882	4.9
가족기능 강화	87,899	9.9	28,131	5.2	27,866	11.4
학습 및 보호지원	10,672	1.2	1,426	0.3	553	0.2
사건처리지원	48,373	5.5	36,085	6.7	2,666	1.1
행위자 수탁프로그램	1,241	0.1	33,855	6.3	354	0.1
피해아동 수탁프로그램	1,098	0.1	141	0.0	55	0.0
기타	50,720	5.7	7,284	1.4	9,721	4.0
계	886,989	100.0	536,730	100.0	244,761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3b).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p.47.

2022년도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00.0%(27,971건) 중 원가정보호 89.5%, 분리보호 8.2%, 가정복귀 1.8%, 사망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사망은 소폭 늘었고,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는 줄었다(표 Ⅳ-4-25).

표 Ⅳ-4-25.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 피해아동 상황(2016~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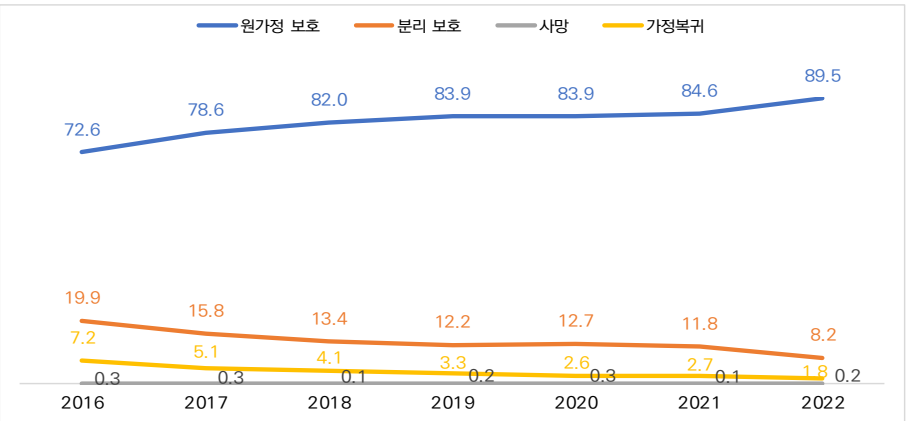
(단위: 건(%))

연도	원가정 보호	분리 보호	사망	기타*	가정복귀**	계
2016	13,573(72.6)	3,730(19.9)	50(0.3)	-	1,347(7.2)	18,700(100.0)
2017	17,589(78.6)	3,527(15.8)	58(0.3)	54(0.2)	1,139(5.1)	22,367(100.0)
2018	20,164(82.0)	3,287(13.4)	32(0.1)	101(0.4)	1,020(4.1)	24,604(100.0)
2019	25,206(83.9)	3,669(12.2)	60(0.2)	121(0.4)	989(3.3)	30,045(100.0)
2020	25,916(83.9)	3,926(12.7)	90(0.3)	175(0.6)	798(2.6)	30,905(100.0)
2021	31,804(84.6)	4,439(11.8)	44(0.1)	320(0.9)	998(2.7)	37,605(100.0)
2022	25,028(89.5)	2,293(8.2)	52(0.2)	104(0.4)	494(1.8)	27,971(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2018). 2016~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35.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p.35.
보건복지부(2022b).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27.
보건복지부(2023b).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p.33~34.

* 주1) 소년원 입소,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아동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주2) 2022년부터 가정복귀 인원은 분리보호에 포함하여 산정

피해아동 보호 현황에 대한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분리보호와 가정복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은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4-13).



* 주: 본 그림은 〈표 Ⅳ-4-25〉에 해당하는 내용을 도식화한 것임(단위: %).

그림 Ⅳ-4-13.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 결과(연도별 추이)

3) 소결

여기에서는 대분류 영역 중 폭력 및 학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하위 지표에는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에 청소년 폭력 경험률,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있고,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에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이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폭력 경험률과 관련해서, 가정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중 부모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비율은 32.4%,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한 비율은 26.1%였다.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중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비율은 11.2%,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한 비율은 4.6%였다.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은 욕설 및 모욕 19.4%, 폭행 및 구타 9.1%, 따돌림 6.9%, 돈, 물건 빼앗김 3.1%, 성적인 희롱 및 추행 2.9%, 강제적인 심부름 1.9% 순이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은 욕설 및 모욕 19.4%, 사생활침해 4.3%, 협박 3.3%, 성희롱(놀림) 2.8%, 따돌림 2.7% 순이었다.

성폭력 피해 경험률과 관련해서, 2021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00.0%(29,901건) 중 13세 미만이 4.0%(1,210건), 13세 이상이 96.0%(28,691건)이었다.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은 전체의 3.1%로 나타났다.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받은 사람에 대한 비율은 친구 34.3%, 도움받지 않음 30.8%, 부모님 17.4%, 선생님 9.9%, 선후배 3.1%, 형제자매 1.9%, 경찰 0.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와 관련해서, 2022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총 46,103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96.6%(44,531건), 일반상담 1.9%(861건), 동일신고 1.5%(711건), 해외발생사례 0건(0.0%) 순이었다. 2022년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사례판단 결과, 62.8%가 아동학대사례로, 35.4%가 일반사례로, 1.8%는 조사 진행 중 사례로 판단되었다. 아동학대 사례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8년 10.0%, 2019년 22.0%, 2020년 2.9%, 2021년 21.7% 증가했다가 2022년에는 25.6% 감소하였다. 2022년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가 82.7%, 대리양육자가 10.9%, 친인척이 3.1%였다. 2022년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보면, 정서학대 38.0%, 중복학대 34.9%, 신체학대 17.6%, 방임 7.3%, 성학대 2.2%의 순이었다. 가정 내 방임과 관련하여, 야간시간 방임에 대한 비율은 57.1%, 깨끗하지 않은 옷과 이부자리 방임은 6.8%, 아플 때 방임은 4.3%, 결식방임은 5.0%, 결석방임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과 관련해서, 2022년 아동보호전문기관수는 85개소,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수는 329.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수는 대폭 증가하였고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수는 감소하였다. 2022년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으로는 피해 아동에게 886,989건, 학대 행위자에게 536,730건, 부모 또는 가족에게 244,76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년도에 비해 모두 서비스 건수가 증가하였다. 2022년 대상별 서비스 제공실적을 살펴보면, 피해 아동에게는 상담 69.0%, 가족기능 강화 9.9%, 심리치료지원 7.9%, 사건처리지원 5.5% 순으로, 가해 행위자에게는 상담 73.9%, 사건처리지원 6.7%, 행위자 수탁프로그램 6.3%, 심리치료지원 5.9%, 가족기능 강화 5.2% 순으로, 부모 및 가족에게는 상담 78.1%, 가족기능 강화 11.4%, 심리치료지원 4.9% 순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2022년도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은 원가정보호 89.5%, 분리보호 8.2%, 가정복귀 1.8%, 사망 0.2%의 순이었다. 원가정보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분리보호와 가정복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망은 증감을 반복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폭력 및 학대 영역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 학교, 친구, 선후배, 사이버 내 폭력피해 경험이 미세하게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학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모, 대리양육자,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야간시간 방임, 질병 방임, 결식 방임, 결석 방임 등 방임도 미세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폭력 및 학대는 건강한 성장 발달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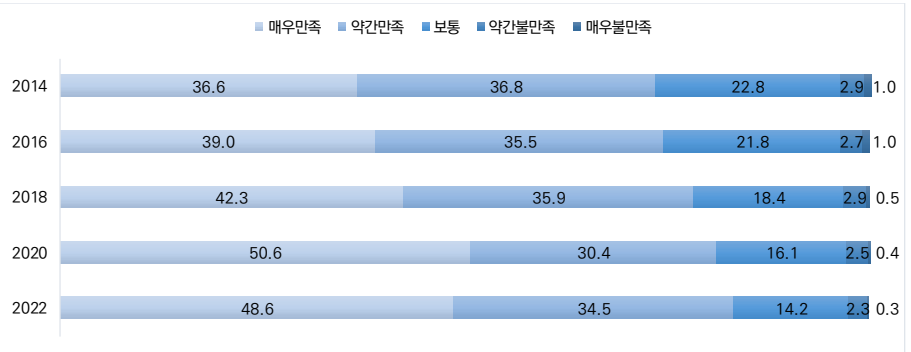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1) 부모와의 관계

①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를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22년 만 13~19세 아동·청소년이 응답한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매우 만족 48.6%, 약간 만족 34.5%로 전체 응답자의 83.1%가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만족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5-1).



* 출처: 통계청(2014, 2016, 2018, 2020, 2022). 2014-2022 사회조사.

* 주: 단위: %

그림 Ⅳ-5-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3~19세) 연도별 추이

(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① 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2022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는 30,923개소이고 보육시설 재원 아동수는 1,095,450명으로 나타났는데, 보육시설과 재원 아동수는 매년 줄어드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육시설은 가정형 어린이집

이 12,109개소로 가장 많고, 민간 어린이집이 9,726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5,801개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254개소, 직장어린이집 1,291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원아동 수는 민간이 477,628명으로 가장 많고, 국·공립이 276,670명, 가정형이 184,05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5-1).

표 Ⅳ-5-1.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2016~2022년)

(단위 : 개소, 명)

구분·연도 \ 설립주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 (개소)	2016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41,084
	2017	3,157	1,392	771	14,045	19,656	164	1,053	40,238
	2018	3,602	1,377	748	13,518	18,651	164	1,111	39,171
	2019	4,324	1,343	707	12,568	17,117	159	1,153	37,371
	2020	4,958	1,316	671	11,510	15,529	152	1,216	35,352
	2021	5,437	1,285	640	10,603	13,891	142	1,248	33,246
	2022	5,801	1,254	610	9,726	12,109	132	1,291	30,923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명)	2016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1,451,215
	2017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4,580	58,454	1,450,243
	2018	200,783	92,787	41,298	711,209	302,674	4,360	62,631	1,415,742
	2019	232,123	86,775	38,538	664,106	273,399	4,121	66,023	1,365,085
	2020	253,251	78,322	34,066	578,196	230,444	3,716	66,401	1,244,396
	2021	268,967	72,085	30,998	535,428	208,842	3,465	64,931	1,184,716
	2022	276,670	64,503	27,743	477,628	184,053	3,203	61,650	1,095,450

* 출처: 보건복지부(2023a). 2022 보육통계. pp.2-3.

2022년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이 81.1%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이 80.6%, 민간 73.0%, 부모협동 7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다(표 Ⅳ-5-2).

표 Ⅳ-5-2.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6~2022년)

(단위 : 명, %)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2016	정원	197,365	134,189	58,511	927,517	374,907	5,052	69,683	1,767,224
	현원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1,451,215
	이용률	89.1	73.9	77.5	80.4	87.6	83.9	75.1	82.1
2017	정원	209,727	131,820	56,514	915,855	360,397	5,506	76,784	1,756,603
	현원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4,580	58,454	1,450,243
	이용률	89.1	73.4	76.8	80.6	89.2	83.2	76.1	82.6
2018	정원	230,508	128,810	54,900	886,818	344,412	5,451	81,425	1,732,324
	현원	200,783	92,787	41,298	711,209	302,674	4,360	62,631	1,415,742
	이용률	87.1	72.0	75.2	80.2	87.9	80.0	76.9	81.7
2019	정원	269,500	124,040	51,736	832,749	318,092	5,297	85,459	1,686,873
	현원	232,123	86,775	38,538	664,106	273,399	4,121	66,023	1,365,085
	이용률	86.1	70.0	74.5	79.7	85.9	77.8	77.3	80.9
2020	정원	302,378	119,289	48,839	772,536	290,123	4,958	90,137	1,628,260
	현원	253,251	78,322	34,066	578,196	230,444	3,716	66,401	1,244,396
	이용률	83.8	65.7	69.8	74.8	79.4	74.9	73.7	76.4
2021	정원	326,210	113,294	46,084	715,671	259,901	4,636	91,700	1,557,496
	현원	268,967	72,085	30,998	535,428	208,842	3,465	64,931	1,184,716
	이용률	82.5	63.6	67.3	74.8	80.4	74.7	70.8	76.1
2022	정원	343,104	108,825	43,619	654,154	226,994	4,401	95,589	1,476,686
	현원	276,670	64,503	27,743	477,628	184,053	3,203	61,650	1,095,450
	이용률	80.6	59.3	63.6	73.0	81.1	72.8	64.5	74.2

* 출처: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7). 2017 보육통계. pp.3-5,
보건복지부(2018). 2018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9). 2019 보육통계. p.17.
보건복지부(2020). 2020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22a). 2021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23a). 2022 보육통계. p.5

②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가. 방과후학교 이용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2022년 방과후학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참여율은 36.2%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7.0%, 중학교 20.2%, 고등학교 30.6%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2022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71,328개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는데 교과가 41.0%, 특기적성이 59.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표 Ⅳ-5-3).

표 Ⅳ-5-3.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1]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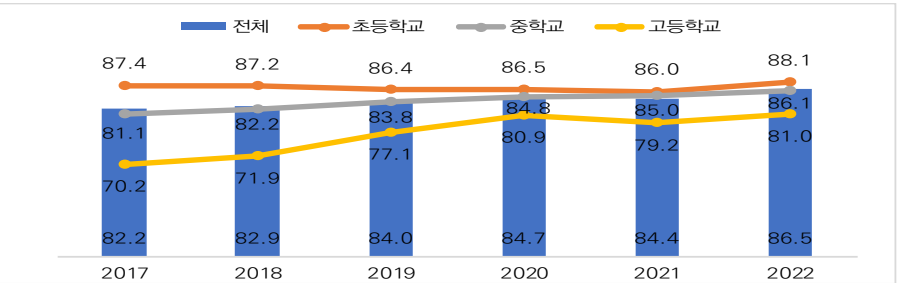
(단위 : %, 만원, 개)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교과(%)	특기적성(%)	계
	참여율[2]	비용[3]	참여율	비용	참여율	비용	참여율	비용			
2018	59.3	2.1	32.1	0.3	52.6	1.1	51.0	1.4	167,907(46.1)	196,192(53.9)	364,099
2019	58.7	2.2	27.4	0.2	47.7	1.0	48.4	1.4	147,416(43.8)	188,971(56.2)	336,387
2020	10.9	0.1	4.2	0.0	12.0	0.2	9.5	0.1	69,656(43.1)	89,068(56.9)	158,725
2021	35.3	1.1	15.3	0.1	29.8	0.5	28.9	0.7	132,101(50.0)	132,321(50.0)	264,422
2022	47.0	1.8	20.2	0.1	30.6	0.6	36.2	1.1[4]	111,321(41.0)	160,007(59.0)	271,328

* 출처: 통계청(2019.3.12). 보도자료: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19.
통계청(2020.3.11). 보도자료: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26.
통계청(2022.3.11). 보도자료: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19.
통계청 KOSIS(2018~2022) 학교급별 방과후 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참여비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501&vw_cd=MT_ZTITLE&list_id=H1_10_00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교육부(2021). 2021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1.
교육부(2023a). 2022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1.

* 주: 1) 방과후 초등 돌봄 프로그램, 특기·적성관련 프로그램, 교과 관련 프로그램 포함
2) 참여율은 무상과 유상 합친 비율
3)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금액
4) 상대표준오차(RSE)가 크면 신뢰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RSE 25%~50% 미만으로, 신뢰도 다소 낮음)

2022년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86.5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교급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초등학교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미세하게 하락하다가 22년 약간 증가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만족도는 지난 수년간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5-2).



* 출처: 교육부(2023a). 2022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2.

* 주: 단위: 점

그림 Ⅳ-5-2. 방과후학교 교급별 만족도(2017~2022년)

나.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2021년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 4,057개소가 운영 중이며, 연 이용인원은 106,746명이었다. 이 중 미취학 아동 2,067명, 초등학생 저학년 38,471명, 고학년 44,260명, 중학생 18,064명, 고등학생 3,800명, 탈학생 84명이었다. 초등학생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표 Ⅳ-5-4).

표 Ⅳ-5-4.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2017~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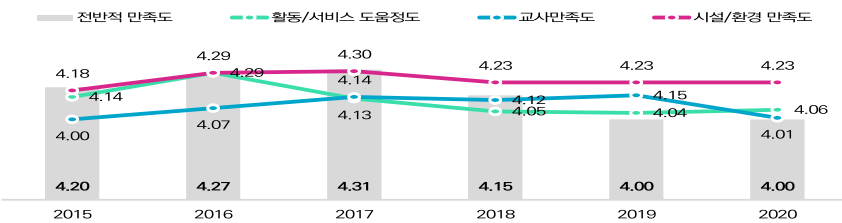
(단위 : 개소, 명)

구분	센터 개소수	연 인원							
		합계	미취학	초등		중학생	고등학생	탈학생	기타주)
				저학년	고학년				
2017	4,189	108,578	1,111	41,970	42,736	17,563	4,185	117	896
2018	4,138	109,610	1,798	43,438	44,063	16,321	3,902	88	-
2019	4,081	108,971	2,146	44,094	43,681	15,531	3,443	76	-
2020	4,008	106,510	1,900	40,199	43,492	17,207	3,578	134	-
2021	4,057	106,746	2,067	38,471	44,260	18,064	3,800	84	-

* 출처: 보건복지부(2023j).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2021년 12월말 기준). pp. 41-42.

* 주: 1) 2004년 탈학교/기타, 2005년 탈학교, 2009년부터 기타는 별도 조사되지 않음.
2) 이용 아동 연 인원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분석 불가능 시설 238개소 제외됨.

2020년 기준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0점으로 나타났는데 수년간 미세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설/환경 만족도가 4.23점으로 가장 높고, 활동/서비스 도움정도가 4.06점, 교사 만족도가 4.0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Ⅳ-5-3).



* 출처: 김희진, 임희진, 정윤미(202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p.206, pp.270-277.
김영지 외(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 166.

* 주: 5점 만점 기준 평균값 수치(단위: 점)
주: 2021년도 만족도 조사는 비공개 자료로 지정되어 공개하지 않음(아동권리보장원)
주: 21년이후 공개된 자료를 찾을수 없어 전년도 보고서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였음.

그림 Ⅳ-5-3.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연도별 추이)

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2022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4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용 인원은 14,0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소수와 이용인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표 Ⅳ-5-5).

표 Ⅳ-5-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2015~2022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개소	인원	구분	개소	인원
2015	244	9,490	2019	280	11,584
2016	250	9,745	2020	304	12,341
2017	250	9,773	2021	332	13,145
2018	260	10,742	2022	342	14,059

* 출처: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224.

2021년 기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만족도는 평균 4.06점이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은 평균 4.02점이었으며, 개인생활지원에 대한 생각은 평균 4.18점으로 가장 높았다(표 Ⅳ-5-6).

표 Ⅳ-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2021년)

(단위 :점)

구분 / 만족도 영역	평균	표준편차	100점 만점 환산점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만족도	4.06	0.66	81.2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4.02	0.68	80.4
개인생활지원에 대한 생각	4.18	0.73	83.6
전체	4.09	0.63	81.8

* 출처: 서정아, 조아미(2021)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김영지 외(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 167.

* 주: 1) 2021년부터 만족도 측정 내용과 구성이 변경되어 2021년 만족도 수치 단독 제시함.
2) 2022년 업데이트 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전년도 보고서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였음.

라. 다함께돌봄 운영 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2023년 8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961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경기가 259개소, 서울이 247개소로 가장 많은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경북 61개소, 부산 55개소, 전북 47개소 등의 순으로 설치, 운영 중에 있다(표 Ⅳ-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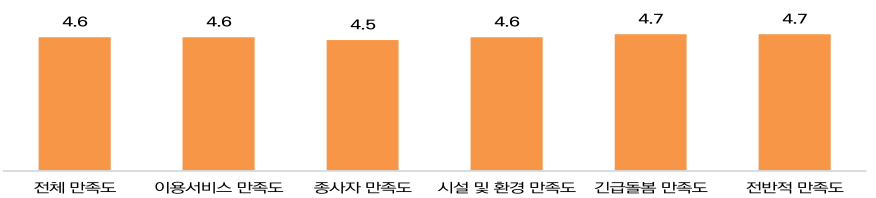
표 Ⅳ-5-7.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현황(2023년 8월 기준)

(단위 : 개소)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소	247	55	8	28	24	24	28	7	259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소	35	33	42	47	31	61	26	6	961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사업' 홈페이지(https://www.dadol.or.kr/board/center)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2021년 11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6점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긴급돌봄 만족도와 전반적인 만족도가 4.7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 및 환경 만족도, 이용서비스 만족도 4.6점, 종사자 만족도는 4.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Ⅳ-5-4).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2021). 2021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 다함께돌봄 소식지. p.21. 그림을 그래프로 재구성
김영지 외(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168.

* 주: 1) 단위: 점
2) 2021년 11월 기준 만족도
3) 기존의 5점 척도 조사와 동일한 후속조사가 없어 전년도 보고서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였음.

그림 Ⅳ-5-4. 다함께돌봄 이용자 만족도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1) 입양률

① 국내·외 입양 현황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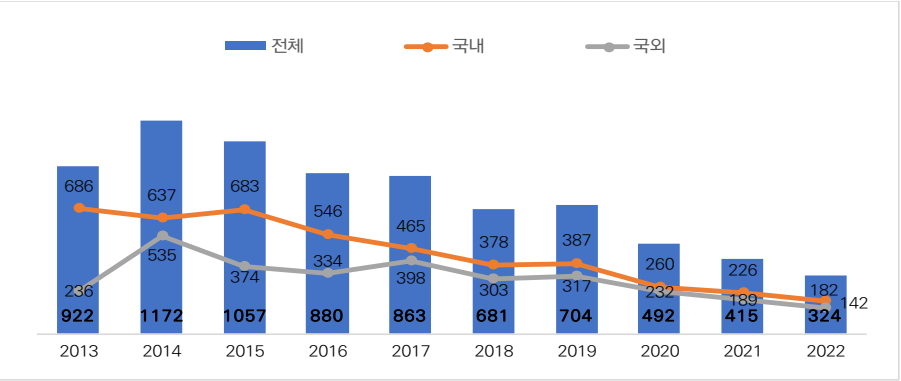
2022년에 입양된 아동의 수는 총 324명으로, 국내 입양이 56.2%(182명), 국외 입양이 43.8%(142명)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볼 때, 입양아동수는 줄었는데, 국내입양 비율은 약간 증가하였고, 국외입양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다(표 Ⅳ-5-8).

표 Ⅳ-5-8.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단위 : 명(%))

연도	계	국내	국외	연도	계	국내	국외
~2010	238,105	74,409 (31.3)	163,696 (68.7)	2019	704	387 (55.0)	317 (45.0)
2016	880	546 (62.0)	334 (38.0)	2020	492	260 (52.8)	232 (47.2)
2017	863	465 (53.9)	398 (46.1)	2021	415	226 (54.5)	189 (45.5)
2018	681	378 (55.5)	303 (44.4)	2022	324	182 (56.2)	142 (43.8)

* 출처: 보건복지부(2010-2022).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2010-202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N001&conn_path=I2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및 재구성.



* 출처: 보건복지부(2013-2022).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2013-202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N001&conn_path=I2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및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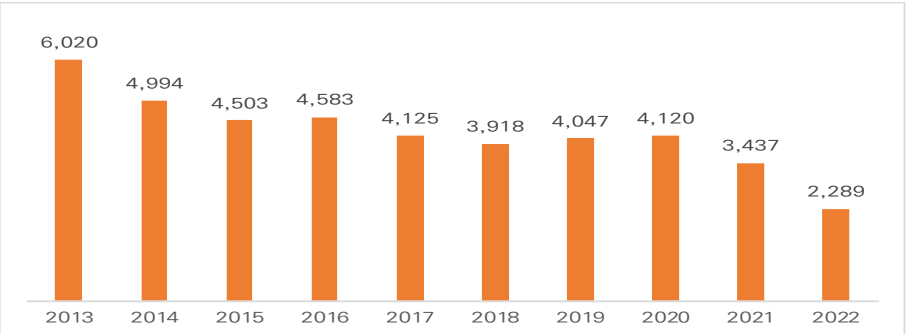
* 주: 단위: 명

그림 Ⅳ-5-5.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

(2) 대안양육 비율

① 보호대상아동 현황

2022년 보호대상아동은 2,289명이었는데,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5-6).



* 출처: 보건복지부(2023c) 2022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연도별)

* 주: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사례는 제외(단위: 명)

그림 Ⅳ-5-6.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추이(2013~2022년)

2022년 보호대상아동을 발생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2,289명 중 빈곤, 실직, 학대로 인한 경우가 85.3%(1,953명)으로 가장 많고, 미혼부모, 혼외자가 11.0%(252명), 유기가 3.2%(73명), 비행, 가출이 0.5%(11명)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5-9).

표 Ⅳ-5-9.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2016~2022년)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4,583	4,125	3,918	4,047	4,120	3,437	2,289
빈곤·실직·학대[1]	3,139 (68.5)	2,778 (67.3)	2,726 (69.6)	2,865 (70.8)	3,006 (73.0)	2,661 (77.4)	1,953 (85.3)
비행·가출[2]	314 (6.9)	227 (5.5)	231 (5.9)	473 (11.7)	468 (11.4)	293 (8.5)	11 (0.5)
미혼부모·혼외자	855 (18.7)	847 (20.5)	623 (15.9)	464 (11.5)	466 (11.3)	366 (10.6)	252 (11.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유기	264 (5.8)	261 (6.3)	320 (8.2)	237 (5.9)	169 (4.1)	117 (3.4)	73 (3.2)
미아	11 (0.2)	12 (0.3)	18 (0.5)	8 (0.2)	11 (0.3)	0 (-)	0 (-)

* 출처: 보건복지부(2023h).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통계청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 주: 1) 학대, 빈곤,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 포함
2) 비행, 가출, 부랑 포함

2022년 보호유형별 보호대상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881명 중 가정위탁이 48.7%(916명), 시설보호가 48.5%(913명), 입양이 2.8%(5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5-10).

표 Ⅳ-5-10.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16~2022년)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4,583	4,125	3,918	4,047	4,120	3,437	1,881
시설보호[1]	2,887 (63.0)	2,421 (58.7)	2,449 (62.5)	2,739 (67.7)	2,739 (66.5)	2,183 (63.5)	913 (48.5)
가정위탁	1,022 (22.3)	994 (24.1)	937 (23.9)	1,003 (24.8)	1,199 (29.1)	1,179 (34.3)	916 (48.7)
입양[2]	243 (5.3)	285 (6.9)	174 (4.4)	104 (2.6)	104 (2.5)	75 (2.2)	52 (2.8)
소년소녀가정	6 (0.1)	2 (0.0)	1 (0.0)	5 (0.1)	5 (0.1)	0 (-)	0 (-)

* 출처: 보건복지부(2023c) 2022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연도별)
* 원출처: 보건복지부「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주: 1) 시설보호는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포함됨.
2)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법상의 입양(사인간의 입양)은 미포함

②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2021년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535명 중, 대리양육 위탁아동이 64.0%(6,107명), 친인척 위탁아동이 24.6%(2,344명), 일반 위탁아동이 11.4%(1,0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위탁아동의 비율이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표 Ⅳ-5-11).

표 Ⅳ-5-11.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2015~2021년)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13,728	12,896	11,983	11,141	10,384	9,923	9,535
대리양육 위탁아동	9,127 (66.5)	8,578 (66.5)	7,950 (66.3)	7,426 (66.7)	6,905 (66.5)	6,542 (65.9)	6,107 (64.0)
친인척 위탁아동	3,556 (25.9)	3,348 (26.0)	3,100 (25.9)	2,801 (25.1)	2,572 (24.8)	2,447 (24.7)	2,344 (24.6)
일반 위탁아동	1,045 (7.6)	970 (7.5)	933 (7.8)	914 (8.2)	907 (8.7)	934 (9.4)	1,084 (11.4)

* 출처: 보건복지부(2015-2021).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2015~202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_N005&conn_path=I2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2022년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시설수는 274개소이고, 현재 입소아동은 10,9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시설은 1개소가 증가했고, 입소아동수는 약간 감소하였다(표 Ⅳ-5-12).

표 Ⅳ-5-12.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1] 현황(2017~2022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설 수	280	279	281	274	273	274
현재 입소아동[2]	12,789	12,193	11,665	11,356	11,356	10,967

* 출처: 보건복지부(2023i).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현황.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117&tblId=TX_117401121&dbUser=NSI_IN_117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원출처: 보건복지부(각연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 주: 1)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전국의 아동복지시설로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아동
2) 현재 입소아동: 기아, 사생아, 미아, 비행·가출·부랑아, 빈곤·실직·가정, 전입 등으로 시설에 입소된 아동으로 퇴소아동을 제외한 연말 현재 수용아동 수

2021년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보호아동 수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수는 전체 617개소이고, 이용인원은 3,105명인데, 남자가 1,676명이고, 여자가 1,4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시설 수는 증가하였고 이용인원은 약간 감소하였다(표 Ⅳ-5-13).

표 Ⅳ-5-13.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보호아동 수(2015~2021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시설 수		480	510	533	558	578	595	617
이용 인원	계	2,636	2,758	2,811	2,872	2,949	3,126	3,105
	남	1,364	1,444	1,477	1,547	1,602	1,686	1,676
	여	1,272	1,314	1,334	1,325	1,347	1,440	1,429

* 출처: 김영지 외(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p.215.
보건복지부(2018).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7.12.31.기준). p.1..
보건복지부(2019a). 2019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8.12.31.기준). p.1..
보건복지부(2020a). 2020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9.12.31.현재). p.1.
보건복지부(2021a). 2021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20.12.31.현재). p.1.
보건복지부(2022c). 2022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21.12.31.현재). p.1.

(3) 가정 밖(가출)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① 가정 밖(가출) 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가정 밖(가출) 청소년 비율과 관련하여, 가출여부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2.7%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양부모가정 순으로 높았다.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높았고, 경제적수준별로는 경제적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표 Ⅳ-5-14).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에 낮아졌다가 2022년까지 높아졌는데, 2023년에 다시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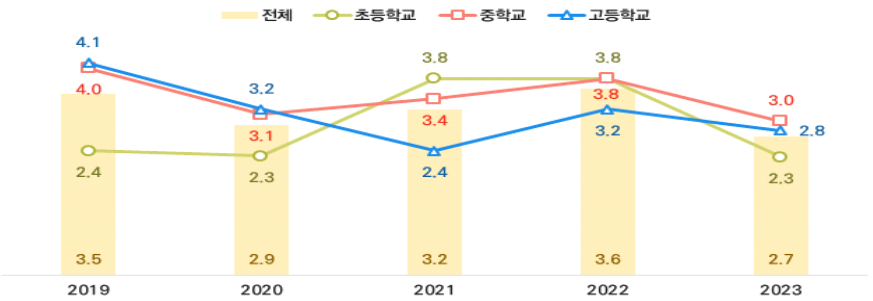
표 Ⅳ-5-14. 가출 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출한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없다	전체(N)	χ^2
전체		2.7	97.3	100.0(8,559)	
성별	남학생	3.0	97.0	100.0(4,393)	4.004*
	여학생	2.3	97.7	100.0(4,166)	
학교급	초등학교	2.3	97.7	100.0(2,884)	2.806
	중학교	3.0	97.0	100.0(2,926)	
	고등학교	2.8	97.2	100.0(2,749)	

구분		가출한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없다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5	97.5	100.0(7,702)	13.583**
	한부모가정	4.7	95.3	100.0(632)	
	조손가정	7.0	93.0	100.0(30)	
	기타	4.6	95.4	100.0(133)	
학업 성적	상	1.8	98.2	100.0(3,333)	50.660***
	중	2.2	97.8	100.0(3,282)	
	하	5.0	95.0	100.0(1,848)	
경제적 수준	상	2.2	97.8	100.0(5,294)	45.641***
	중	2.6	97.4	100.0(2,581)	
	하	7.0	93.0	100.0(589)	

*p 〈 .05, **p 〈 .01, ***p 〈 .001.



* 주: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5-7. 가출 여부: 학교급별(연도별 추이)

가출한 주된 이유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님과의 문제가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업문제때문 21.8%,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10.8%,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2.4%, 학교문제때문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5-15).

표 Ⅳ-5-15. 가출한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문제 때문에	부모님과의 문제	학교 문제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기타	전체(N)	χ^2
전체		21.8	52.0	1.4	2.4	10.8	11.6	100.0(222)	
성별	남학생	26.4	42.9	0.8	3.1	11.3	15.5	100.0(126)	13.430*
	여학생	15.6	64.1	2.3	1.5	10.0	6.5	100.0(96)	
학교급	초등학교	17.6	39.6	2.9	5.8	10.2	23.9	100.0(62)	26.587**

구분		학업문제 때문에	부모님 과의 문제	학교 문제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기타	전체(N)	χ^2
	중학교	27.1	50.9	0.0	1.0	10.3	10.7	100.0(87)	
	고등학교	18.9	63.8	1.9	1.2	11.8	2.4	100.0(7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4.9	50.4	1.7	1.5	10.2	11.2	100.0(186)	23.809
	한부모가정	0.0	69.3	0.0	8.9	7.2	14.5	100.0(29)	
	조손가정	62.4	37.6	0.0	0.0	0.0	0.0	100.0(2)	
	기타	17.6	19.8	0.0	0.0	47.1	15.5	100.0(5)	
학업 성적	상	21.7	47.4	2.4	4.6	10.1	13.8	100.0(58)	16.000
	중	26.0	43.9	2.7	1.8	7.2	18.5	100.0(68)	
	하	19.4	60.4	0.0	1.6	12.9	5.7	100.0(91)	
경제적 수준	상	25.7	49.0	0.9	0.0	10.0	14.4	100.0(114)	19.086*
	중	20.4	54.6	3.4	1.5	13.0	7.0	100.0(65)	
	하	14.8	55.7	0.0	10.7	6.7	12.1	100.0(41)	

*p < .05, **p < .01, ***p < .001.

② 가정 밖(가출) 청소년 보호시설 수

2022년 청소년 쉼터는 24시간 이상~7일 이내 일시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쉼터가 32개소, 3개월 이내 단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쉼터가 67개소, 3년 이내 중장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장기쉼터가 39개소로 총 13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쉼터는 지난 수년간 개소수와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표 Ⅳ-5-16, 표 Ⅳ-5-17).

표 Ⅳ-5-16.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구분	일시쉼터(32개소)	단기쉼터(67개소)	중장기쉼터(39개소)
기 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3년 이내 중장기보호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이용대상	가정 밖·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기 능	• 가정 밖 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연결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 가정 밖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 및 예방활동 •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전문기관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보호 서비스 제공
위 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208.

표 Ⅳ-5-17.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2011~2022년)

(단위 : 개소, 백만 원, 명)

구분 / 연도	쉼터 수				예산	입소 청소년 수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총계		
2011	10	48	25	83	6,262	11,657
2012	13	49	30	92	7,287	11,764
2013	21	50	32	103	8,137	15,242
2014	22	50	37	109	8,710	24,079
2015	26	52	41	119	10,002	25,012
2016	28	51	40	119	12,666	30,329
2017	30	53	40	123	13,565	31,197
2018	30	62	38	130	15,570	32,109
2019	31	63	40	134	18,970	32,402
2020	32	61	40	133	19,385	20,401
2021	32	63	36	134	19,556	21,475
2022	32	67	39	138	22,314	-

*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p.160-162의 내용과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p.190-192의 내용,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p.199-201의 내용,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p.208-209의 내용, 여성가족부(2020b).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p.98.의 내용, 여성가족부(2021).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p.75. 여성가족부(2022d),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p.194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음.(2021년부터 사업명칭 변경 :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③ 가출 시 서비스 이용 기관 및 만족도

가출 후 이용 기관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이용해 본적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94.2%, 청소년쉼터 3.3%, 청소년수련관(센터) 1.2%, 청소년전화 1388 0.8%, 청소년 상담기관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급별, 고교유형별, 지역규모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Ⅳ-5-18).

표 Ⅳ-5-18. 가출 후 이용한 기관

(단위 : %)

구분		이용해 본 적 없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 기관	청소년 수련관 (센터)	청소년 전화 1388	기타	전체(N)	χ^2
전체		94.2	3.3	0.6	1.2	0.8	-	100.0(146)	
성별	남학생	94.5	2.8	1.1	0.0	1.6	-	100.0(77)	4.340
	여학생	93.8	3.7	0.0	2.5	0.0	-	100.0(69)	

구분		이용해 본 적 없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 기관	청소년 수련관 (센터)	청소년 전화 1388	기타	전체(N)	χ^2
학교급	중학교	94.4	4.5	1.1	0.0	0.0	-	100.0(77)	5.041
	고등학교	93.9	1.9	0.0	2.5	1.8	-	100.0(69)	
고교 유형	일반계고	94.0	0.6	0.0	3.1	2.2	-	100.0(55)	4.638
	특성화계고	93.4	6.6	0.0	0.0	0.0	-	100.0(14)	
지역 규모	대도시	92.6	3.9	1.4	0.0	2.0	-	100.0(60)	6.227
	중소도시	93.6	3.8	0.0	2.6	0.0	-	100.0(64)	
	읍면지역	100.0	0.0	0.0	0.0	0.0	-	100.0(22)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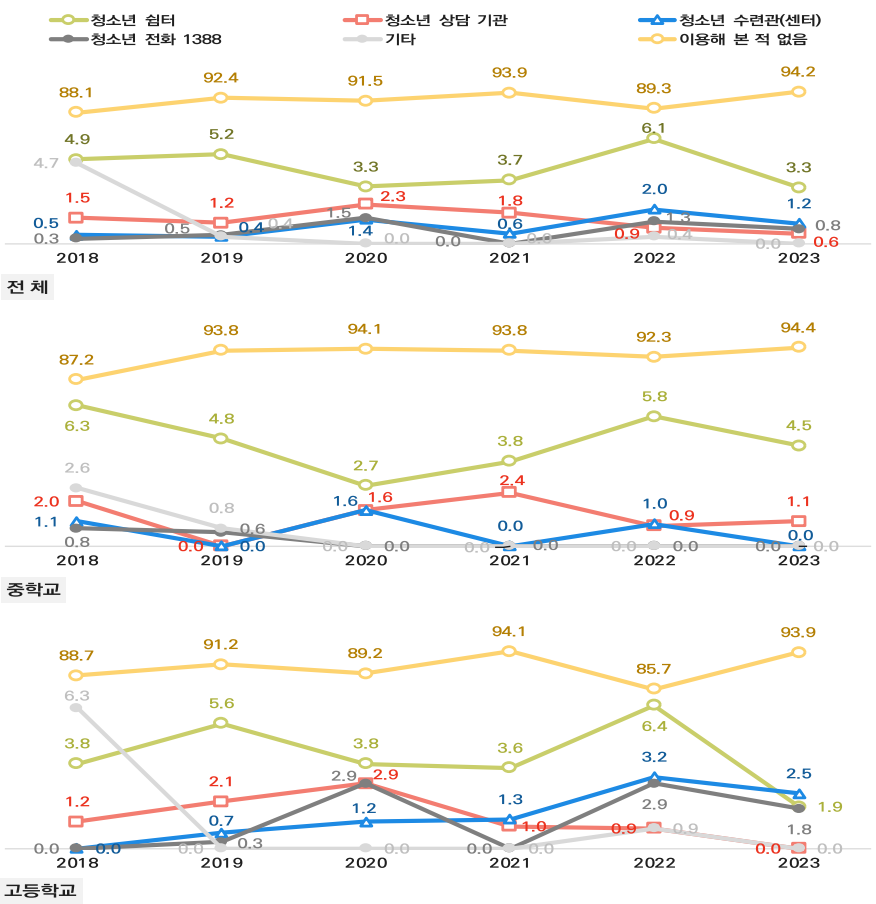


그림 Ⅳ-5-8. 가출 후 이용한 기관: 전체(연도별 추이)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68.8%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급별, 고교유형별, 지역규모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Ⅳ-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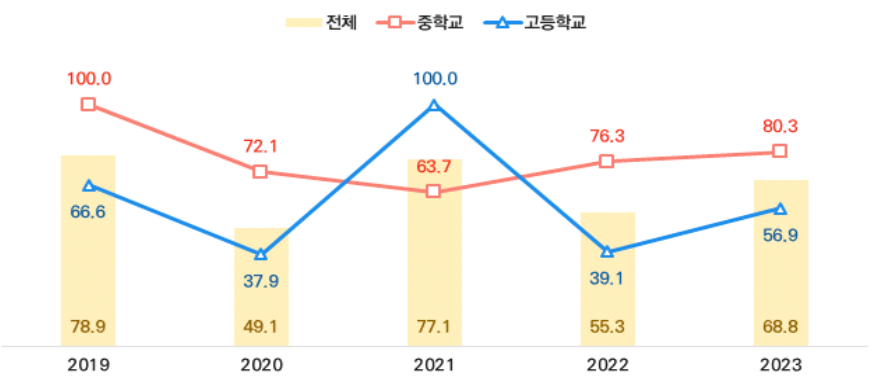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수년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5-9).

표 Ⅳ-5-19.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단위 :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χ^2
전체		2.85(0.71)	0.0	31.2	52.7	16.1	100.0(9)	
성별	남학생	2.83(1.01)	0.0	48.6	19.3	32.1	100.0(4)	3.060
	여학생	2.86(0.39)	0.0	13.8	86.2	0.0	100.0(4)	
학교급	중학교	3.04(0.75)	0.0	19.7	57.1	23.3	100.0(4)	1.333
	고등학교	2.66(0.72)	0.0	43.1	48.3	8.6	100.0(4)	
고교 유형	일반계고	2.62(0.58)	0.0	37.6	62.4	0.0	100.0(3)	1.333
	특성화계고	2.76(0.00)	0.0	61.9	0.0	38.1	100.0(1)	
지역 규모	대도시	2.61(0.72)	0.0	46.9	44.8	8.2	100.0(4)	1.440
	중소도시	3.10(0.71)	0.0	14.3	61.2	24.5	100.0(4)	
	읍면지역	-	-	-	-	-	-	

*p 〈 .05, **p 〈 .01, ***p 〈 .001.



* 주: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5-9.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연도별 추이)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1) 양육·보호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① 양육·보호 서비스 모니터링

가.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에 의거, 3년 주기로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김영지 외, 2022;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2022). 최신 평가지표인 2022년도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전체 평가지표는 A.시설 및 환경, B.재정 및 조직운영 C.프로그램 및 서비스, D.아동의 권리, E.지역사회관계, F.시설 운영 전반의 6개 지표하에 여러 세부지표를 포함하고 있다(표 Ⅳ-5-20)(김영지 외, 2022;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2022).

표 Ⅳ-5-20. 2022년도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2022년도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10점)	A1.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전체공통)안전관리
	A3. (전체공통)응급상황 및 화재예방 안전체계 구축
	A4. 기본시설의 적절성 및 충분성
	A5. 식품보관 위생상태
B. 재정 및 조직 운영 (25점)	B1. (전체공통)사업비
	B2. (전체공통)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B3.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B4. (전체공통)사회적가치 실현기업 구매 금액(배점)
	B5. (전체공통)직원충원율
	B6.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B7. (전체공통)직원교육 활동비 및 내·외부교육 참여시간
	B8.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B9. (전체공통)시설장 및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 부장)의 전문성
	B10. (전체공통)직원교육
	B11. (전체공통)직원복지
	B12. (전체공통)직원의 권리 및 안전보장(배점)

2022년도 평가지표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점)	C1.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C2. 초기적응 프로그램
	C3.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C4. 퇴소지원 프로그램
	C5. 일지 및 입·퇴소 관련 기록
	C6. 개별서비스 사정의 체계성
	C7. 개별서비스 수행의 전문성
	C8.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욕구 및 만족도 조사
	C9. 건강한 식사지원
	C10. 가족·연고자 연계 서비스
	C11. 초등생 이상 아동 멘토-멘티 결연 실적
	C12. 특성화 사업 Ⅰ, Ⅱ
	C13. 자립지원 및 자립준비의 적절성
D. 아동의 권리 (15점)	D1. (전체공통)비밀보장
	D2. (전체공통)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D3. (전체공통)고충처리
	D4. (생활공통)서비스 정보제공
	D5. (생활공통)서비스과정 참여 및 자기 결정권
	D6. 인권진정함 설치·운영
	D7. 아동의 인권보호
	D8.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E. 지역사회 관계 (10점)	E1. (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E2. (전체공통)자원봉사자 관리
	E3. (전체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E4. 지역사회 연계
	E5. 지역사회 연계
F. 시설운영 전반 (5점)	F1. (전체공통)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수준(시설장 인터뷰)
	F2. (전체공통)서비스 질적 수준(직원 인터뷰)
	F3. (전체공통)자체평가의 정확성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2). 2022년도 아동생활시설 평가 지침. pp.28~30.
김영지 외(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p. 182-183.

* 주: 사회복지시설평가는 3년 간격으로 시행되어서 최신자료인 전년도 보고서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였음.

표 Ⅳ-5-21.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배점

2022년도 평가영역별 배점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A. 시설 및 환경	10
B. 재정 및 조직운영	25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
D. 아동의 권리	15
E. 지역사회 관계	10
F. 시설운영전반	5
총계	100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2). 2022년도 아동생활시설 평가 지침. p.27.
김영지 외(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183.

*주: 사회복지시설평가는 3년 간격으로 시행되어서 최신자료인 전년도 보고서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였음.

표 Ⅳ-5-22. 아동생활시설 영역별 평가점수

연도	시설 수	평균 점수	영역별 평가점수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아동권리	지역사회 관계
2010	266	88.4	94.8	83.5	85.6	88.6	94.0	88.8
2013	275	90.0	95.0	88.2	85.1	92.0	95.4	85.0
2016	281	89.6	94.8	86.7	85.1	91.5	92.0	86.2
2019	285	88.8	92.2	81.2	83.7	93.0	90.1	87.6
2019 세부결과	A : 193개소 / B : 61개소 / C : 15개소 / D : 5개소 / F : 11개소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0).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2014.3.6).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보건복지부(2017.2.15). 보도자료: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2020.3.31.). 보도자료: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1,258개소)평가 발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0).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김영지 외(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 184.

* 주: 2022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미간행으로 평가점수 업데이트가 불가하여 간행된 최신자료인 전년도 보고서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였음.

4) 소결

여기에서는 대분류 영역 중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하위 지표에는 부모의 지도와 책임에 부모와의 관계,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가 있고,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에 입양률, 대안양육 비율, 가정 밖 청소년 서비스 이용률이 있으며,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에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이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2022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 상의 2022년 만 13~19세 아동·청소년이 응답한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매우 만족 48.6%, 약간 만족 34.5%로 전체 응답자의 83.1%가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었다. 2014년 이후 만족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와 관련해서, 2022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는 30,923개소이고 보육시설 재원 아동수는 1,095,450명인데,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22년 어린이집 이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이 81.1%, 국공립이 80.6%, 민간 73.0%, 부모협동 7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매년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다. 2022년 방과후학교 이용 현황을 보면, 전체 참여율은 36.2%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86.5점이었다. 2021년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을 보면, 전국 4,057개소가 운영 중이며, 연 이용인원은 106,746명이었는데, 2020년 기준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0점으로 나타났는데 수년간 약간씩 하락하고 있다. 2022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현황을 보면, 전국 34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용 인원은 14,059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 기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만족도는 평균 4.06점이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은 평균 4.02점이었으며, 개인생활 지원에 대한 생각은 평균 4.18점이었다. 2023년 8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961개소가 설치·운영 중인데, 2021년 11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6점으로 나타났다.

입양률과 관련해서, 2022년에 입양된 아동의 수는 총 324명으로, 국내 입양이 56.2%(182명), 국외 입양이 43.8%(142명)이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입양아동수는 줄어들었는데, 국내입양 비율은 약간 증가, 국외입양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다.

대안양육 비율과 관련해서, 2022년 보호대상아동은 2,289명이었는데, 최근 수년간 감소하고 있다. 2022년 보호대상아동을 발생유형별로 살펴보면, 빈곤, 실직, 학대로 인한 경우가 85.3%, 미혼부모, 혼외자가 11.0%, 유기가 3.2%, 비행, 가출이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보호유형별 보호대상 아동 현황으로는 가정위탁이 48.7%, 시설보호가 48.5%, 입양이 2.8%의 순이었다. 2021년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 현황으로는 대리양육 위탁아동이 64.0%, 친인척 위탁아동이 24.6%, 일반 위탁아동이 11.4%였다.

2022년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을 보면, 전체 시설수는 274개소이고, 입소아동은 10,967명이었다. 2021년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보호아동 수 현황을 보면, 시설수는 전체 617개소이고, 이용인원은 3,1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밖 청소년 서비스 이용률과 관련해서,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 전체의 2.7%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한 주된 이유로는 부모님과의 문제 52.0%, 학업문제때문 21.8%,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10.8%,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2.4%, 학교문제때문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청소년 쉼터는 일시쉼터가 32개소, 단기쉼터가 67개소, 중장기쉼터가 39개소였다. 가출후 이용한 기관으로는 이용해 본적 없다 94.2%, 청소년 쉼터 3.3%, 청소년수련관(센터) 1.2%, 청소년전화 1388 0.8%, 청소년 상담기관 0.6%로 나타났다. 가출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의 68.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과 관련해서, 아동복지시설은 3년 주기로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최신 평가지표인 2022년도 평가지표를 보면, A.시설 및 환경, B.재정 및 조직운영 C.프로그램 및 서비스, D.아동의 권리, E.지역사회관계, F.시설운영 전반의 6개 지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호대상 아동은 아동 수의 감소와 함께 수년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유형은 가정위탁과 시설보호가 대부분이고 입양은 2.8%로 매우 낮았다. 우리나라의 입양 아동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국제적 기준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므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6.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1) 장애

(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① 특수교육 현황 및 특수교사 수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을 보면 지난 10년 간 1.2%에서 1.9%로 0.7%p 가량 점진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6-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2013~2023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율(%)	1.2	1.2	1.3	1.3	1.4	1.4	1.5	1.6	1.7	1.8	1.9

* 출처: 교육부(2023b). 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3.

2023년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특수학교 수는 194개교로 전년에 비해 2개교가 증가하였고, 특수학급 수는 13,287개로 575개 학급이 늘어났다. 학생수는 109,703명으로 전년에 비해 6,008명이 늘어났으며 교원수는 25,599명으로 전년에 비해 637명이 늘어났다.

표 Ⅳ-6-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2017~2023년)

(단위: 교, 학급, 명)

연도	특수 학교 수	특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수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2017	173	10,325	549	5,437	35,505	19,218	23,655	4,989	89,353	19,327
2018	175	10,676	582	5,630	38,031	18,788	22,584	5,165	90,780	20,039
2019	177	11,105	532	5,989	41,091	18,462	21,502	5,382	92,958	20,773
2020	182	11,661	439	6,536	43,205	19,140	20,655	5,445	95,420	22,145
2021	187	12,042	369	7,197	44,814	20,212	20,169	5,393	98,154	23,494
2022(A)	192	12,712	359	8,248	48,448	21,462	19,867	5,311	103,695	24,962
2023(B)	194	13,287	407	8,781	51,585	23,005	20,725	5,200	109,703	25,599
B-A	2	575	48	533	3,137	1,543	858	-111	6,008	637

* 출처: 교육부(2023b). 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5.

② 장애아동·청소년 통합보육·교육비율

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지난 10년 간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의 개소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039개였던 것에 비해 2022년 1,570개소로 1.5배 가량 늘어났다.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개소수는 2013년 172개소에서 2022년 177개소로 5개소 늘어나는 것에 그쳤지만,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2013년 867개소에서 2022년 1,393개소로 증가추세를 견인하였다.

표 Ⅳ-6-3.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현황(2013~2022년)

(단위: 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039	1,046	1,074	1,088	1,124	1,177	1,276	1,388	1,495	1,570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72	174	175	177	178	177	176	177	178	177
장애아통합어린이집	867	872	899	911	946	1,000	1,100	1,211	1,317	1,393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장애아전문, 통합 어린이집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5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 원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109,703명 중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는 26.7%였다.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수는 80,467명으로 73.3%였는데 이 중 특수학급에 배치된 수는 61,993명(56.5%), 일반학급에 배치된 수는 18,474명(16.8%)이었다.

표 Ⅳ-6-4.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2019~2023년)

(단위 : 명(%))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학생 수			전체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소계	
2019	26,459(28.4)	50,812(54.7)	15,687(16.9)	66,499(71.5)	92,958(100.0)
2020	26,615(27.9)	52,744(55.3)	16,061(16.8)	68,805(72.1)	95,420(100.0)
2021	27,288(27.8)	54,266(55.3)	16,600(16.9)	70,866(72.2)	98,154(100.0)
2022	28,233(27.2)	57,948(55.9)	17,514(16.9)	75,462(72.8)	103,695(100.0)
2023	29,236(26.7)	61,993(56.5)	18,474(16.8)	80,467(73.3)	109,703(100.0)

* 출처: 교육부(2023b). 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6, p.21.

③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장애 청소년의 자립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진학률과 취업률 추이를 살펴보았다. 2023년 기준 특수학교의 취업률은 5.1%, 진학률은 57.9%였다. 특수학급의 경우 진학률은 56.1%, 취업률은 32.8%, 일반학급의 경우 진학률은 61.6%, 취업률은 13.7%였다. 비진학·미취업은 2019년 39.7%였다가 2020년 25.7%로 감소한 이후, 2021년 34.8%로 상승했다가 다시 2022년 33.9%, 2023년 33.4%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차별 차이는 있으나 202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중 3명 중 1명은 비진학·미취업 상태로 머물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6-5.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2019~2023년)

(단위 : %(명))

연도	구분	졸업자(명)	진학률(명)	취업률(명)	비진학·미취업(명)
2019	특수학교	2,447	55.7 (1,364)	2.6 (64)	41.6 (1,019)
	특수학급	3,952	43.2 (1,707)	18.2 (718)	38.6 (1,527)
	일반학급	1,328	55.8 (741)	5.2 (69)	39.0 (518)
	계	7,727	49.3 (3,812)	11.0 (851)	39.7 (3064)
2020	특수학교	2,386	57.3 (1,366)	6.3 (64)	36.4 (956)
	특수학급	3,796	44.9 (1,705)	34.2 (716)	20.9 (1,375)
	일반학급	1,157	57.4 (664)	13.2 (65)	29.4 (428)
	계	7,339	50.9 (3,735)	23.4 (845)	25.7 (2,759)
2021	특수학교	2,108	58.6 (1,235)	2.9 (61)	38.5 (812)
	특수학급	3,614	49.5 (1,789)	17.0 (617)	33.4 (1,208)
	일반학급	1,105	63.0 (696)	4.9 (54)	32.1 (355)
	계	6,827	54.5 (3,720)	10.7 (732)	34.8 (2,375)
2022	특수학교	2,167	60.3 (1,307)	2.7 (59)	37.0 (801)
	특수학급	3,497	51.3 (1,795)	16.0 (559)	32.7 (1,143)
	일반학급	1,098	63.6 (698)	4.8 (53)	31.6 (347)
	계	6,762	56.2 (3,800)	9.9 (671)	33.9 (2,291)
2023	특수학교	2,076	57.9 (1,202)	5.1 (45)	40.0 (829)
	특수학급	3,354	56.1 (1,883)	32.8 (483)	29.5 (988)
	일반학급	1,098	61.6 (676)	13.7 (58)	33.2 (364)
	계	6,528	57.6 (3,761)	21.2 (586)	33.4 (2,181)

* 출처: 교육부(2019, 2020, 2021, 2022, 2023b). 2019~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9.

2) 생존 및 발달

(1) 사망률

①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2022년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 당 2.3명이었다. 최근 5년 간 우리나라의 영아 사망률은 감소 추세에 있었는데, 2017년 1,000명 당 2.8명에서 2022년 1,000명 당 2.3명으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표 Ⅳ-6-6. 연도별 영아사망률(2017~2022년)

(단위 : 명/1,000명 당)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신생아 사망률	1.7	1.3	1.6	1.8	1.4	1.7	1.6	1.5	1.5	1.4	1.1	1.3	1.3	1.2	1.3	1.3	1.1	1.2
신생아 후기사망률	1.4	1.1	1.3	1.3	1.1	1.2	1.4	1.0	1.2	1.4	1.0	1.2	1.3	1.0	1.2	1.2	0.9	1.1
영아 사망률	3.1	2.5	2.8	3.2	2.5	2.8	3.0	2.4	2.7	2.8	2.2	2.5	2.6	2.2	2.4	2.5	2.0	2.3

* 출처: 통계청 KOSIS(2017~2022). 사망원인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8&vw_cd=MT_ZTITLE&list_id=F_27&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2&path=%252Fcommon%252Fmeta_onedepth.jsp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
* 원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01054호).

* 주: 1) 신생아 사망률: 생후 28일 미만의 영아 사망률 *(당해연도 28일 미만 사망아수/당해연도 연간출생아수)×1,000.*
신생아 후기 사망률: 생후 4주 이상 1년 이내 사망률 *(당해연도 28일 미만 사망아수/당해연도 연간출생아수)×1,000.*
영아사망률: 생후 1년 이내 사망률 *(당해연도 0세 사망아수/당해연도 연간출생아수)×1,000.*
2) 통계청으로 통합된 이후 첫 조사(2012년 실시, 2009~2011년 대상) 이후 매년 작성

다만,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2015~2022년까지 출생미신고 아동이 2,123명 있었고, 이 중 249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공식 영아사망률은 빙하(iceberg)와 같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며, 실제 사망률은 이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출생이 등록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는 사각지대에 머물 수 있으므로 보편적 출생등록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0세~24세 사망률은 10만명당 사망자수로 표기된다. 0세 사망률(영아사망률)은 10만명 당 226.8명이었고, 1~4세 사망률은 10만명 당 16.3명, 5~9세 사망률은 10만명 당 8.4명으로 연령이 올라가며 감소하였다. 10세 이후부터는 다시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어 10~14세 사망률은 10만명 당 10.4명, 15~19세는 10만명 당 23.5명, 20~24세는 10만명 당 35.5명이었다. 연령별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4세, 5~9세, 10~14세, 15~19세의 사망률은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7.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2017~2022년)

(단위: 명/10만 명당 사망자 수)

연령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0세	1,000	270.5	931	280.7	822	268.3	674	240.6	626	241.2	565	226.8
1~4세	261	14.7	220	13.0	233	14.5	185	12.5	151	11.2	201	16.3
5~9세	210	8.9	177	7.6	178	7.7	142	6.2	136	6.0	183	8.4
10~14세	197	8.4	221	9.5	184	8.0	203	8.8	237	10.1	246	10.4
15~19세	626	20.6	620	21.6	610	22.4	563	22.1	536	22.4	550	23.5
20~24세	1,087	31.1	1,144	33.3	1,126	33.6	1,118	34.2	1,138	35.8	1,073	35.5

* 출처: 통계청 KOSIS(2017~2022). 사망원인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

* 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② 사고 사망률

0세~24세 사고 사망률도 10만명당 사망자수로 표기된다. 사고 사망률은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분류로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모든 기타 외인을 포함한다.

0~24세의 연령별 사고 사망률은 1~4세, 5~9세 사망률을 제외하고는 2021년까지 점증하는 추세이다. 0세는 10만명당 21.3명, 10~14세는 10만명 당 4.9명으로 2021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15~19세는 10만명 당 15.2명, 20~24세는 10만명 당 24.7명으로 2021년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 비해서는 모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8. 사고 사망률(2017~2022년)

(단위 : 명/10만 명당)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0세	14.9	12.7	16.6	20.0	21.2	21.3
1~4세	4.7	4.0	4.7	3.5	4.1	3.4
5~9세	3.3	2.4	2.9	2.4	1.8	1.9
10~14세	3.1	3.7	3.4	3.7	4.7	4.9
15~19세	13.1	13.9	14.4	15.6	15.4	15.2
20~24세	20.5	22.6	23.6	24.8	25.9	24.7

* 출처: 통계청 KOSIS(2017~2022).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

*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2) 사망원인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분류

연도별 사망사고의 외인(External causes of mortality)을 나누어 살펴보면 운수사고와 화재사고는 감소추세가 두드러졌다. 15~19세의 경우 자살로 인한 사망이 2018년 10만명 당 8.7명이었던 것에 반해 2022년 10만명 당 11.1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었고, 20~24세는 코로나19 시기 증가되었다 다시 감소하였으나 2022년 10만명 당 18.1명으로 2018년 10만명 당 15.3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타살은 0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영유아에 대한 보호가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Ⅳ-6-9.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2018~2022년)

(단위 : 명/10만 명당)

구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2018	0세	0.3	0.9	0.3	-	-	-	2.7
	1~4세	0.9	1.1	0.4	-	0.1	-	0.9
	5~9세	1.0	0.2	0.2	0.2	0.1	0.0	0.6
	10~14세	0.6	0.1	0.2	0.1	0.0	2.1	0.1
	15~19세	3.6	0.2	0.5	0.1	0.2	8.7	0.1
	20~24세	4.5	0.4	0.4	0.2	0.3	15.3	0.4
2019	0세	1.0	1.0	0.7	-	-	-	4.9
	1~4세	1.2	0.6	0.6	0.1	-	-	1.0
	5~9세	0.9	0.3	0.3	0.0	0.0	0.1	0.9
	10~14세	0.4	0.3	0.3	-	-	2.1	0.4
	15~19세	3.0	0.4	0.6	0.1	0.1	8.5	0.3
	20~24세	3.9	0.3	0.2	0.1	0.2	17.8	0.4
2020	0세	0.4	1.4	0.4	-	-	-	6.1
	1~4세	0.6	0.9	0.5	0.3	0.1	-	0.7

구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5~9세	0.7	0.3	0.2	0.3	-	0.1	0.6
	10~14세	0.2	0.3	0.2	0.2	0.1	2.1	0.3
	15~19세	3.7	0.2	0.5	0.0	0.1	10.4	0.2
	20~24세	3.0	0.3	0.4	-	0.1	19.6	0.6
2021	0세	0.8	1.5	1.5	-	-	-	5.4
	1~4세	0.6	1.0	0.4	0.1	0.1	-	1.3
	5~9세	0.6	0.2	0.2	0.2	-	0.0	0.4
	10~14세	0.5	0.1	0.2	0.1	-	3.2	0.3
	15~19세	3.2	0.2	0.5	-	0.1	11.0	0.1
	20~24세	3.4	0.5	0.4	0.0	0.2	20.4	0.3
2022	0세	0.4	1.2	-	-	-	-	4.0
	1~4세	0.5	0.6	0.7	-	-	-	0.7
	5~9세	0.4	0.3	0.3	0.1	-	-	0.5
	10~14세	0.4	0.1	0.3	0.0	0.0	3.3	0.3
	15~19세	2.6	0.0	0.3	0.0	0.1	11.1	0.3
	20~24세	3.4	0.3	0.5	0.0	0.1	18.1	0.4

* 출처: 통계청 KOSIS(2018~2022).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서 2레벨 선택).

*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2)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사고(논밭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반면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를 의미
3) 추락 사고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2) 안전에 대한 인식률

① 범죄 피해율

2022년 청소년들의 범죄 피해율은 0.7%로 2018년 0.9%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중 20세 이하 인구는 총 8,728,757명이었으며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에서 20세 이하의 강력범죄, 절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교통범죄, 기타범죄 등 피해자는 57,743명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능범죄 피해자 수가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절도 순이었으며, 다른 범죄 유형 피해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 지능범죄 피해가 늘어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31,889명, 여성은 25,854명으로 남성의 범죄피해가 더 많았다. 다만 범죄 피해별로 구분하면 성별 피해 양상이 상이했다. 예를 들어, 강력범죄의 경우

20세 이하 전체 피해건수 중 여성의 피해비율이 92.6%였으나 남성의 피해비율은 7.4%였다. 폭력범죄의 경우 여성의 피해비율은 30.2%였으나 남성은 69.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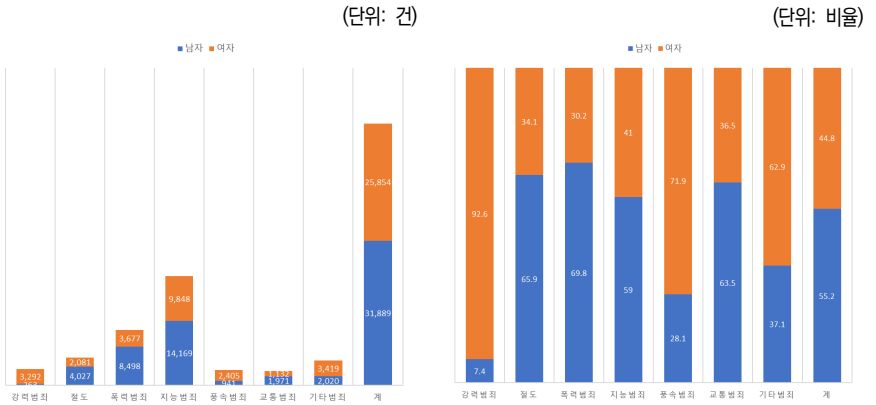


그림 Ⅳ-6-1.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범죄 유형별 건수, 성별 비율)

표 Ⅳ-6-10.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1](2018~2022년)

(단위 : 건, %)

구분		남자 아동·청소년		여자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전체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2018	강력범죄	643	9.1	6,422	90.9	7,065	100.0
	절도	8,772	70.6	3,650	29.4	12,422	100.0
	폭력범죄	17,310	69.4	7,640	30.6	24,950	100.0
	지능범죄	13,996	64.9	7,582	35.1	21,578	100.0
	풍속범죄	121	5.3	2,159	94.7	2,280	100.0
	교통범죄	11,733	66.1	6,016	33.9	17,749	100.0
	기타범죄	4,101	43.2	5,395	56.8	9,496	100.0
	계	56,932	59.3	40,464	40.7	97,365	100.0
	피해율	56,676/5,204,957(1.1)		38,864/4,868,419(0.8)		95,540/10,073,376(0.9)	
2019	강력범죄	607	8.8	6,290	91.2	6,897	100.0
	절도	8,905	70.4	3,749	29.6	12,654	100.0
	폭력범죄	15,902	68.1	7,450	31.9	23,352	100.0
	지능범죄	15,554	63.8	8,828	36.2	24,382	100.0
	풍속범죄	124	5.1	2,299	94.9	2,422	100.0
	교통범죄	10,976	65.2	5,855	34.8	16,801	100.0
	기타범죄	4,864	44.8	5,993	55.2	10,857	100.0
	계	53,491	58.4	40,880	41.6	94,371	100.0
	피해율	56,932/5,029,754(1.1)		40,464/4,715,205(0.9)		97,365/9,744,959(1.0)	

구분		남자 아동·청소년		여자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전체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2020	강력범죄	478	8.1	5,400	91.9	5,878	100.0
	절도	7,060	72.2	2,717	27.8	9,777	100.0
	폭력범죄	13,481	68.3	6,262	31.7	19,743	100.0
	지능범죄	17,428	58.0	12,609	42.0	30,037	100.0
	풍속범죄	141	5.1	2,619	94.9	2,760	100.0
	교통범죄	9,352	66.9	4,628	33.1	13,980	100.0
	기타범죄	5,551	45.5	6,645	54.5	12,196	100.0
	계	53,491	56.7	40,880	43.3	94,371	100.0
	피해율	53,491/4,847,451(1.1)		40,880/4,554,063(0.9)		94,371/9,401,514(1.0)	
2021	강력범죄	437	7.7	5,206	92.3	5,643	100.0
	절도	5,705	71.3	2,302	28.7	8,007	100.0
	폭력범죄	11,152	67.9	5,275	32.1	16,427	100.0
	지능범죄	12,175	54.1	10,341	45.9	22,516	100.0
	풍속범죄	421	11.7	3,168	88.3	3,589	100.0
	교통범죄	7,618	66.8	3,788	33.1	11,406	100.0
	기타범죄	8,116	47.7	8,906	52.3	17,022	100.0
	계	31,889	53.9	25,854	46.1	57,743	100.0
	피해율	45,624/4,649,020(1.0)		38,986/4,378,594(0.9)		84,610/9,027,614(0.9)	
2022	강력범죄	263	7.4	3,292	92.6	3,555	100.0
	절도	4,027	65.9	2,081	34.1	6,108	100.0
	폭력범죄	8,498	69.8	3,677	30.2	12,175	100.0
	지능범죄	14,169	59.0	9,848	41.0	24,017	100.0
	풍속범죄	941	28.1	2,405	71.9	3,346	100.0
	교통범죄	1,971	63.5	1,132	36.5	3,103	100.0
	기타범죄	2,020	37.1	3,419	62.9	5,439	100.0
	계	31,889	55.2	25,854	44.8	57,743	100.0
	피해율	31,889/4,490,755(0.7)		25,854/4,238,002(0.6)		57,743/8,728,757(0.7)	

* 출처: 경찰청(2018~2021). 2018~2021 경찰범죄통계.
경찰청(2022). 2022 경찰범죄통계. pp.474-47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

* 주: 1) 피해율: 전체, 성별에 따른 전체 피해 건수/해당연도 만 20세 이하 인구*100
(피해자 연령: 만 나이를 적용하여 산정)
2) 강력범죄: 살인미·기수, 강도, 강간 등
3) 폭력범죄: 상해, 폭행, 협박 등
4) 지능범죄: 통화, 문서·인장, 사기, 횡령 등
5) 전체인구: 2022년 20세 이하 청소년 총 8,728,757명(남:4,490,755명/여:4,238,002명)

②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2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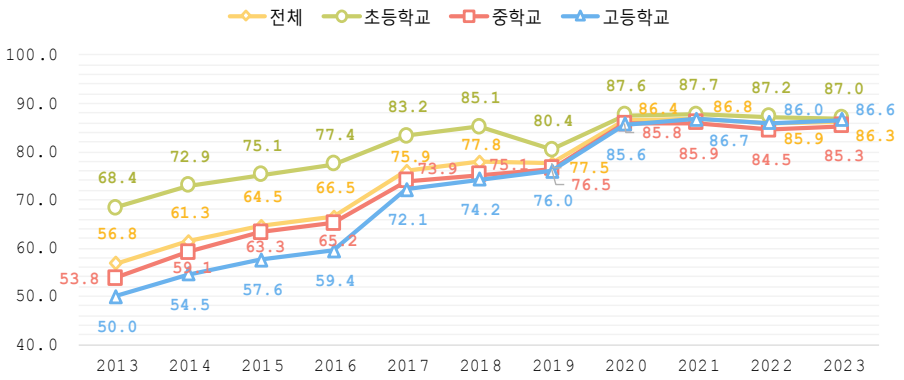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거주지역의 안전수준은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20년대를 기점으로 상승추세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2023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거주지역의 범죄로부터 안전수준은 4점 만점에서 3.16점으로 3점 '그런 편이다'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3.25점, 여학생은 3.07점이었고,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은 3.24점, 중은 3.08점, 하는 2.84점이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인지하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수준이 성별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적 배경 차이로도 발생한다는 것으로, 주거지역 혹은 거주유형에 따른 범죄 안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Ⅳ-6-11.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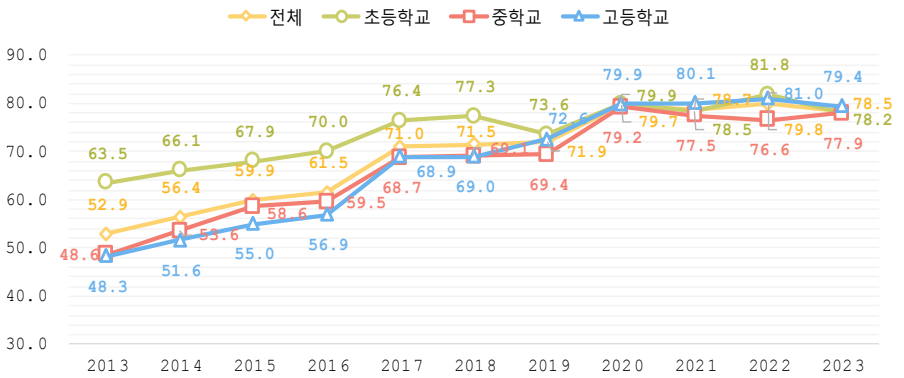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6(0.73)	2.9	10.8	53.2	33.0	100.0(8,769)	
성별	남학생	3.25(0.75)	3.3	8.7	47.8	40.2	100.0(4,516)	237.806***
	여학생	3.07(0.69)	2.5	13.0	59.0	25.5	100.0(4,252)	
학교급	초등학교	3.24(0.75)	3.0	10.1	47.0	40.0	100.0(3,038)	106.793***
	중학교	3.12(0.72)	3.2	11.5	55.9	29.4	100.0(2,957)	
	고등학교	3.13(0.70)	2.6	10.9	57.2	29.3	100.0(2,774)	
지역 규모	대도시	3.18(0.75)	3.2	10.6	50.7	35.5	100.0(3,453)	20.752**
	중소도시	3.14(0.72)	2.8	11.1	55.0	31.1	100.0(4,263)	
	읍면지역	3.18(0.71)	2.5	9.9	54.7	32.9	100.0(1,0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7(0.72)	2.7	10.7	53.2	33.4	100.0(7,859)	43.461***
	한부모가정	3.06(0.75)	4.1	12.7	56.6	26.5	100.0(655)	
	조손가정	2.99(0.79)	6.5	11.1	59.1	23.3	100.0(32)	
	기타	3.09(0.91)	9.2	9.2	44.8	36.7	100.0(152)	
학업 성적	상	3.25(0.74)	2.9	9.3	48.0	39.9	100.0(3,423)	142.821***
	중	3.13(0.70)	2.7	10.7	57.4	29.2	100.0(3,362)	
	하	3.06(0.73)	3.3	14.0	55.8	26.9	100.0(1,878)	
경제적 수준	상	3.24(0.72)	2.6	9.0	50.6	37.8	100.0(5,418)	234.126***
	중	3.08(0.71)	2.9	12.7	57.7	26.8	100.0(2,644)	
	하	2.84(0.74)	5.8	19.2	59.9	15.0	100.0(601)	

**p<.01, ***p<.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6-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2013~2023년)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6-3.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2013~2023년)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거주지역의 교통안전수준 역시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20년대를 기점으로 상승추세가 정체되었고 등락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2023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거주지역의 교통안전수준은 4점 만점에서 2.96점으로 3점 '그런 편이다'를 하회했다. 거주지역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비해 교통 안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역시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2.99점, 여학생은 2.93점이었고,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은 3.01점, 중은 2.90점, 하는 2.73점이었다.

표 Ⅳ-6-1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6(0.74)	4.0	17.5	57.0	21.5	100.0(8,741)	
성별	남학생	2.99(0.78)	4.8	16.5	53.4	25.2	100.0(4,496)	100.674***
	여학생	2.93(0.69)	3.2	18.5	60.9	17.5	100.0(4,245)	
학교급	초등학교	3.00(0.78)	4.5	17.3	52.3	25.9	100.0(3,028)	68.248***
	중학교	2.93(0.71)	3.7	18.4	59.7	18.3	100.0(2,951)	
	고등학교	2.96(0.72)	3.9	16.7	59.5	20.0	100.0(2,762)	
지역 규모	대도시	2.98(0.77)	4.5	17.2	54.4	23.9	100.0(3,441)	26.694***
	중소도시	2.95(0.72)	3.6	17.8	58.8	19.8	100.0(4,251)	
	읍면지역	2.96(0.73)	4.0	17.0	58.5	20.5	100.0(1,04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6(0.73)	3.8	17.3	57.6	21.3	100.0(7,837)	36.716***
	한부모가정	2.91(0.76)	4.7	20.0	55.2	20.1	100.0(650)	
	조손가정	2.90(0.87)	8.7	15.9	51.9	23.6	100.0(33)	
	기타	2.94(0.95)	10.6	15.6	42.5	31.3	100.0(152)	
학업 성적	상	3.02(0.76)	4.0	15.5	55.0	25.5	100.0(3,416)	75.457***
	중	2.94(0.71)	3.6	18.0	59.7	18.8	100.0(3,351)	
	하	2.88(0.74)	4.6	20.5	57.0	17.9	100.0(1,871)	
경제적 수준	상	3.01(0.74)	3.5	16.2	55.8	24.4	100.0(5,400)	126.405***
	중	2.90(0.71)	4.1	18.7	60.7	16.6	100.0(2,638)	
	하	2.73(0.78)	7.8	24.2	55.2	12.9	100.0(598)	

***$p<.001$

3) 보건서비스

(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① 보건교사 배치율

학교 내 보건교사 배치율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다. 2016년에 64.3%였던 보건교사 배치율은 2022년 77.3%로 10개 학교 중 8개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배치율이 81.9%로 가장 높았고, 특수학교 80.7%, 고등학교 76.7%, 중학교 6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중고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2018년 이래로 증가 추세인 것에 반해 특수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표 Ⅳ-6-13. 보건교사 배치현황(2018~2022년)

(단위 : 개교,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2018	학교 수	6,064	3,214	2,358	175	11,811
	교사 수 (배치율)	4,343 (71.6)	1,770 (55.0)	1,683 (71.3)	140 (80.0)	7,936 (67.1)
2019	학교 수	6,087	3,214	2,356	177	11,657
	교사 수 (배치율)	4470 (73.4)	1,859 (57.8)	1,706 (72.4)	143 (80.8)	8,035 (69.1)
2020	학교 수	6,120	3,223	2,367	182	11,892
	교사 수 (배치율)	4,562 (74.5)	1,972 (61.2)	1,701 (71.9)	146 (80.2)	8,381 (70.5)
2021	학교 수	6,157	3,245	2,375	187	11,964
	교사 수 (배치율)	4,814 (78.2)	2,098 (64.7)	1,776 (74.8)	151 (80.7)	8,839 (73.9)
2022	학교 수	6,163	3,258	2,373	192	11,986
	교사 수 (배치율)	5,047 (81.9)	2,243 (68.8)	1,821 (76.7)	155 (80.7)	9,266 (77.3)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c). 2022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2&publSeq=2&menuSeq=0&itemCode=02#에서 8월 18일 인출.(각 학교급별 직위별 교원수(2)에서 발췌).

표 Ⅳ-6-14.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율(2016~2022년)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보건교사 배치율	64.3	64.5	67.1	69.1	70.5	73.9	77.3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c). 2022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2&publSeq=2&menuSeq=0&itemCode=02#에서 8월 18일 인출.

②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 설치 현황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 설치 현황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된 기관으로 중증 어린이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시설 및 장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관이다.[17]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전국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등 4개소, 전북은 전북대학교병원 1개소, 전남(광주)은 전남대학교병원 1개소, 충남(대전/세종)은 충남대학교병원 1개소, 경북(대구)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1개소, 경남(부산/울산)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개소, 강원은 강원대학교병원 1개소이다.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아전담응급실을 운영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보건복지부, 2023.4.7).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소아전문응급센터 전국 10개소, 소아전용 응급실 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2023년에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인천과 세종에 추가로 설치되었다. 2023년 현재 서울, 인천, 대구, 경기, 충남, 경남(부산), 세종 등에만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지정되어 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 일, 공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를 유도하여 응급실 소아경증환자 분산,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2023년 9월 현재 전국 46개 병원이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아직 울산, 강원, 전남, 경북 등의 지자체는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 설치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적인 보상 방식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어린이전문 의료기관 설치에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의료 접근권 보장, 더 나아가 건강권 보장에서의 편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17)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 https://www.ppm.or.kr/contents/contentsView.do?MENUID=A01020401 에서 2023년 9월 28일 인출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표 Ⅳ-6-15.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의료기관 유형	운영 현황	개소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서울(4), 대전(1), 대구(1), 광주(1), 강원(1), 전북(1), 경남(1)	10
소아전문 응급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 서울(3), 인천(2), 경기(1), 충남(1), 세종(1), 대구(1), 부산(1) 소아전용응급실 : 울산(1), 경기(1)	10(2)
달빛 어린이병원	서울(3), 경기(16), 인천(3), 대전(2), 부산(3), 대구(2), 광주(1) 충남(3), 충북(2), 세종(1), 전북(2), 경남(6), 제주(2)	46

*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2022) 2022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보건복지부(2023.4.7.). 보도참고자료: 중증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5752 에서 2023년 9월 28일 인출.
달빛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https://www.e-gen.or.kr/moonlight/main.do에서 2023년 9월 28일 인출.

③ 정신보건 및 심리상담 기관 현황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국 94.7%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모든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17개 시도 중 3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90% 이상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대전(50.0%), 울산(83.3%), 강원(73.7%)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16.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시·군·구	223	25	15	8	10	5	2	5	-	32	13	12	15	14	22	22	21	2
계	240	26	16	9	11	6	3	6	1	33	14	13	16	15	23	23	22	3
설치율	94.7	96.2	94.1	100	90.9	100	50.0	83.3	100	100	73.7	100	100	100	100	95.8	100	100

* 출처: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p.248-249.

나. 위(Wee) 프로젝트 운영 현황

위(Wee) 프로젝트는 「교육부훈령」 제285호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사업으로 2008년 사업이 추진된 이후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위(Wee) 클래스 수는 2018년 6,965개소에서 2022년 8,619개소로 1,654개소 증가하였다. 위(Wee) 프로젝트는 학교에는 위(Wee) 클래스, 교육지원청에는 위(Wee) 센터, 교육청에는 위(Wee) 스쿨, 가정형 위(Wee) 센터, 병원형 위(Wee) 센터 등으로 구분되어 설치되는데 각 유형 역시 최근 5년 사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Ⅳ-6-17. Wee센터 및 Wee클래스, Wee스쿨 설치 현황(2018~2022년)

(단위 : 개소)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Wee클래스		6,965	7,230	7,631	8,059	8,619
Wee센터	일반형	191	190	204	206	206
	가정형	17	17	17	19	19
	병원형	5	9	10	13	13
Wee스쿨		13	14	15	15	16
계		7,191	7,460	7,877	8,312	8,873

* 출처: Wee 웹사이트. 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22에서 2023년 8월 18일 인출.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및 심리상담 기관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위(Wee) 클래스 등이 아동·청소년 특화 기관인 것에 비해 이 기관들은 지역사회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3년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 16개소, 기초 244개소 등 전국 26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자살예방센터는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5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표 Ⅳ-6-18.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신건강	광역	16	1	1	1	1	1	1	1	0	1	1	1	1	1	1	1	1	1
	기초	244	25	16	8	11	5	5	5	1	37	18	14	16	14	22	25	20	2
	계	260	26	17	9	12	6	6	6	1	38	19	15	17	15	23	26	21	3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살 예방센터	6	2	0	0	1	0	0	0	0	3	0	0	0	0	0	0	0	0
중독관리 통합지원	50	3	3	2	5	5	3	2	0	8	3	1	2	2	2	2	5	2

* 출처: 통계청 KOSIS.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920023_A001&conn_path=I2에서 2023년 8월 18일 인출.

(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의료급여법」에 제시된 의료급여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의료급여는 생계가 곤란한 국민들에게 공공부조 성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 다양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2021년 아동·청소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175,516명이었다.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소년의 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출생아 수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Ⅳ-6-19.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소년 현황(2018~2021년)

(단위 : 명)

구분	0세	1~4세	5~9세	10~14세	15~19세	합계
2018	2,886	20,206	43,927	60,811	101,152	228,982
2019	2,458	18,156	41,556	56,468	89,678	208,316
2020	2,133	16,338	38,948	55,629	79,497	192,545
2021	1,640	14,336	34,630	54,257	70,653	175,516

* 출처: 건강보장심사평가원(2019). 2018 의료급여통계. pp.20-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0). 2019 의료급여통계. pp.20-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 2020 의료급여통계. pp.16-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 2021 의료급여통계. pp.20-21.

아동·청소년의 연간 병의원 미충족의료율(unmet healthcare needs)은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비율(치과제외)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로 보고하고 있다.

2021년의 1~18세의 연간 미충족의료율은 2.0%로 2016년 4.0%에 비해 감소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구간에 따른 미충족의료율의 증감추이가 엇갈린다. 2016년 1~5세의

미충족 의료율은 1.5%였으나 2021년은 2.4%로 약간 증가하였다. 반면 2016년 15~18세의 미충족 의료율은 6.3%였으나 2021년에는 3.8%로 감소하였다. 단, 미충족 의료율의 수치는 매우 낮으므로 연령별, 소득별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표 Ⅳ-6-20.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충족의료율(2016~2021년)

(단위 : 명, %)

구분		연령					소득수준			
		전체	1~5세	6~11세	12~14세	15~18세	하	중하	중상	상
2016	*N*	1667	522	593	254	298	402	423	416	420
	분율 (표준오차)	4.0 (0.6)	1.5 (0.6)	2.8 (0.8)	6.4 (1.7)	6.3 (1.6)	5.4 (1.5)	3.9 (1.0)	2.6 (0.9)	4.2 (1.4)
2017	*N*	1,507	429	559	232	287	295	308	305	297
	분율 (표준오차)	2.6 (0.5)	2.7 (1.0)	0.3 (0.1)	3.1 (1.1)	5.0 (1.5)	3.5 (1.3)	2.5 (1.2)	2.6 (1.0)	1.1 (0.8)
2018	*N*	1,371	414	511	206	240	267	289	271	276
	분율 (표준오차)	3.1 (0.6)	1.7 (0.7)	2.3 (0.9)	3.4 (1.4)	5.5 (1.6)	1.4 (0.8)	3.1 (1.1)	3.5 (1.3)	4.5 (1.7)
2019	*N*	1,391	355	566	216	254	270	289	281	266
	분율 (표준오차)	1.8 (0.5)	0.1 (0.1)	0.9 (0.4)	2.1 (0.9)	4.6 (1.8)	1.7 (0.7)	3.2 (1.3)	0.7 (0.5)	0.4 (0.3)
2020	*N*	1,128	292	433	201	202	227	225	225	227
	분율 (표준오차)	2.8 (0.7)	1.4 (0.8)**	1.8 (0.7)*	2.3 (1.6)**	6.0 (2.2)*	5.1 (1.9)*	1.4 (1.1)**	0.7 (0.5)**	2.9 (1.5)**
2021	*N*	1,031	232	412	194	193	207	212	205	199
	분율 (표준오차)	2.0 (0.5)*	2.4 (1.1)*	1.5 (0.8)**	0.3 (0.3)**	3.8 (1.7)*	2.5 (1.0)*	3.1 (1.3)*	0.9 (0.8)*	2.5 (1.3)**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2020). 2017-2019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
질병관리청(2022). 2020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
질병관리청(2023). 2021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는 25-50%, **는 50% 이상.

2021년의 1~18세의 연간 치과 미충족의료율은 11.0%로 2016년 7.7%에 비해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1~5세의 치과 미충족의료율이 2016년 8.3%였으나 2021년에는 13.5%로 증가하였고, 15~18세 역시 2016년에는 9.7%였으나 2021년에는 15.1%로 상승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치과 미충족의료율 역시 2016년에는 '하'그룹이 11.0%, '상'그룹이 5.8%였으나, 2021년에는 '하'그룹이 15.8%, '상'그룹이 11.4%로 함께 상승하였다.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접근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지, 사회경제적 부담과

격차로 인한 문제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표 Ⅳ-6-21.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충족의료율(2016~2021년)

(단위 : 명, %)

구분		연령					소득수준			
		전체	1~5세	6~11세	12~14세	15~18세	하	중하	중상	상
2016	N	1666	522	592	254	298	401	424	415	420
	분율 (표준오차)	7.7 (0.8)	8.3 (1.3)	5.8 (1.2)	6.9 (1.9)	9.7 (1.9)	11.0 (2.1)	6.8 (1.6)	6.9 (1.5)	5.8 (1.2)
2017	N	1,509	430	560	232	287	295	308	305	297
	분율 (표준오차)	7.8 (0.9)	7.8 (1.6)	6.0 (1.2)	5.3 (1.8)	11.1 (2.2)	13.2 (2.6)	6.8 (1.5)	7.3 (1.6)	6.2 (2.2)
2018	N	1,104	291	473	161	179	214	234	214	215
	분율 (표준오차)	9.4 (1.3)	9.4 (2.0)	5.4 (1.4)	11.1 (2.5)	15.0 (3.1)	13.2 (2.3)	10.1 (2.6)	9.2 (2.5)	8.7 (2.5)
2019	N	1,089	259	511	156	163	202	223	237	216
	분율 (표준오차)	9.3 (1.0)	10.8 (2.2)	7.1 (1.5)	7.1 (2.0)	13.7 (2.8)	16.9 (3.3)	8.9 (2.1)	6.2 (1.9)	5.9 (1.8)
2020	N	907	205	397	158	147	177	181	190	181
	분율 (표준오차)	12.4 (1.4)	13.2 (2.9)	10.4 (2.0)	12.7 (2.8)	15.1 (2.9)	17.1 (3.5)	10.9 (2.4)	6.0 (3.1)	7.5 (2.3)
2021	N	792	160	370	137	125	154	160	162	161
	분율 (표준오차)	11.0 (1.3)	13.5 (3.1)	9.2 (1.7)	7.3 (2.4)*	15.1 (3.4)	15.8 (3.3)	10.1 (3.3)*	8.3 (2.3)*	11.4 (3.1)*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2020). 2017-2019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
질병관리청(2022). 2020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
질병관리청(2023). 2021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7-2.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는 25-50%, **는 50% 이상.

(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① 흡연율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흡연율(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 비율)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20년대 들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은 6.7%였으나, 2020년 4.4%로 감소한 이후 2021년과 2022년 모두 4.5%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고등학생의 흡연율의 감소 추세와 달리 중학생의 흡연율의 감소 후 증가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Ⅳ-6-22. 흡연율 추이(2018~2022년)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8	6.7	3.0	9.8	0.8	3.2	4.9	7.7	9.4	12.0
2019	6.7	3.2	9.9	1.0	3.5	5.0	8.3	10.0	11.4
2020	4.4	1.7	7.1	0.7	1.6	3.0	4.8	7.2	9.2
2021	4.5	1.9	7.2	0.8	1.8	3.0	5.4	7.3	8.8
2022	4.5	2.1	7.1	0.8	2.2	3.1	5.1	7.1	9.2

* 출처: 교육부, 질병관리청(2023). 제18차(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37.

* 주: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② 음주율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음주율(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 비율)은 코로나19 시기 잠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래 집단 간 음주 기회가 줄어들었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다시 음주 기회가 생겨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Ⅳ-6-23. 음주율 추이(2018~2022년)

(단위: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8	16.9	8.5	24.2	4.1	8.1	12.8	18.1	24.7	28.6
2019	15.0	7.6	21.8	3.9	7.4	11.2	17.1	22.8	25.3
2020	10.7	5.4	15.9	3.7	4.9	7.8	10.9	15.8	20.9
2021	10.7	5.6	16.0	3.4	5.4	8.2	12.1	16.4	19.3
2022	13.0	7.0	19.5	4.0	7.1	9.6	14.5	20.3	23.7

* 출처: 교육부, 질병관리청(2023). 제18차(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53.

* 주: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4)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1) 신체적 건강

① 주관적 건강평가('2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건강 수준이 어떠한지 물었을 때 전체 8,737명 중 85.8%의 응답자들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건강한 편이다'+'매우 건강하다' 응답 합산). 전체 응답자들의 4점 척도(1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4점 매우 건강하다) 평균은 3.15점이었는데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린 집단이 자신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초등학생(3.29점), 중학생(3.14점), 고등학생(3.02점) 순이었다. 소득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은 3.23점인 것에 반해 소득이 낮은 집단은 2.88점으로 나타나 소득에 따른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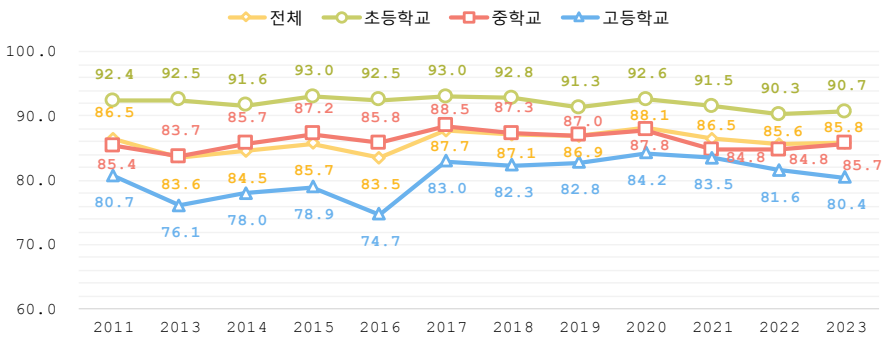
표 Ⅳ-6-24.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체(N)	χ^2
전체		3.15(0.69)	1.4	12.9	54.7	31.1	100.0(8,737)	
성별	남학생	3.17(0.71)	1.7	13.1	52.2	33.0	100.0(4,492)	29.684***
	여학생	3.14(0.66)	1.0	12.6	57.4	29.0	100.0(4,246)	
학교급	초등학교	3.29(0.65)	0.8	8.5	51.7	39.0	100.0(3,008)	223.317***
	중학교	3.14(0.68)	1.3	13.0	56.0	29.7	100.0(2,956)	
	고등학교	3.02(0.71)	2.1	17.5	56.5	23.9	100.0(2,774)	
지역 규모	대도시	3.14(0.69)	1.8	12.9	55.0	30.4	100.0(3,430)	11.368
	중소도시	3.17(0.67)	1.0	12.6	54.5	31.9	100.0(4,261)	
	읍면지역	3.13(0.70)	1.5	14.1	54.3	30.1	100.0(1,04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6(0.68)	1.3	12.7	54.7	31.3	100.0(7,827)	27.405**
	한부모가정	3.08(0.71)	1.8	15.9	55.1	27.2	100.0(655)	
	조손가정	3.03(0.86)	7.9	10.7	52.3	29.1	100.0(33)	
	기타	3.20(0.71)	2.7	9.2	53.7	34.5	100.0(152)	
학업 성적	상	3.27(0.67)	1.1	9.3	50.8	38.8	100.0(3,402)	263.152***
	중	3.13(0.66)	1.1	12.7	58.1	28.1	100.0(3,353)	
	하	2.97(0.72)	2.4	19.7	55.9	22.0	100.0(1,877)	
경제적 수준	상	3.23(0.67)	1.1	10.3	52.9	35.7	100.0(5,391)	244.040***
	중	3.06(0.68)	1.7	15.2	58.9	24.2	100.0(2,641)	
	하	2.88(0.74)	2.8	25.6	52.5	19.2	100.0(599)	

**p<.01, ***p<.001

주관적 건강 인식에 대한 연차별 비교 결과를 보면, 비교적 평탄하게 유지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전까지 전체적인 상승이 나타났으나, 코로나 이후 정체기 혹은 약간의 하락기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주: '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6-4.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2011~2023년)

② 운동 실천율('2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건강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고 있는지 빈도로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4.0%가 '일주일에 3회 이상'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전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1.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초등학생은 8.3%에 불과했으나, 중학생 22.7%, 고등학생 33.6%로 학교급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부담이 높아지면서 운동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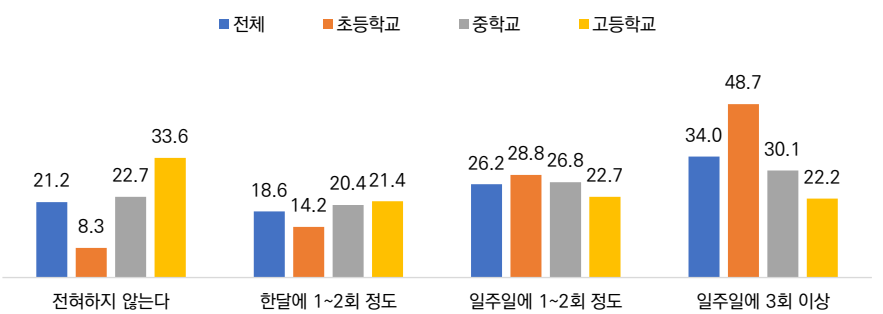


그림 Ⅳ-6-5.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학교급별)

표 Ⅳ-6-25.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21.2	18.6	26.2	34.0	100.0(8,742)	
성별	남학생	16.0	14.2	25.8	44.0	100.0(4,502)	480.714***
	여학생	26.7	23.2	26.7	23.5	100.0(4,240)	
학교급	초등학교	8.3	14.2	28.8	48.7	100.0(3,015)	827.825***
	중학교	22.7	20.4	26.8	30.1	100.0(2,956)	
	고등학교	33.6	21.4	22.7	22.2	100.0(2,770)	
지역 규모	대도시	22.3	17.6	27.9	32.2	100.0(3,436)	22.586***
	중소도시	20.5	18.6	25.4	35.4	100.0(4,257)	
	읍면지역	20.2	21.6	24.1	34.1	100.0(1,04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0.9	18.6	26.6	33.9	100.0(7,834)	17.957*
	한부모가정	25.6	19.3	23.2	31.8	100.0(656)	
	조손가정	29.3	10.5	21.1	39.1	100.0(33)	
	기타	18.9	16.6	22.4	42.1	100.0(147)	
학업 성적	상	15.6	16.7	28.9	38.9	100.0(3,400)	209.148***
	중	22.2	19.1	26.6	32.1	100.0(3,358)	
	하	30.0	21.0	21.0	28.0	100.0(1,877)	
경제적 수준	상	16.8	18.0	27.9	37.2	100.0(5,398)	207.638***
	중	28.0	19.3	23.7	29.0	100.0(2,637)	
	하	32.2	20.2	22.1	25.6	100.0(600)	

*p<.05, **p<.01, ***p<.001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추이를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간의 등락만 있을 뿐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특히 학교급에 따른 격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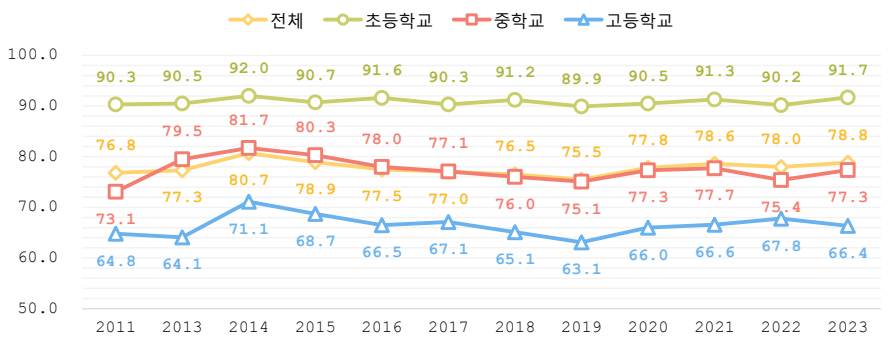


그림 Ⅳ-6-6.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2011~2023년)

③ 수면시간과 수면 부족 이유('2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참여자들의 수면시간을 알아본 결과 평균 7.3시간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기 중 평일 수면시간을 보면 초등학생이 8.6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중학생이 7.2시간, 고등학생이 5.9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단, 이는 측정치가 아닌 자기 기입식 응답이므로 정확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 Ⅳ-6-26. 수면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 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평균 (시간)	전체(N)
전체		7.7	14.0	18.1	20.6	22.0	17.5	7.3	100.0(8,569)
성별	남학생	5.6	12.2	18.3	21.1	23.2	19.6	7.4	100.0(4,413)
	여학생	9.9	16.0	17.9	20.0	20.9	15.3	7.1	100.0(4,156)
학교급	초등학교	0.8	1.3	4.3	14.0	36.9	42.7	8.6	100.0(2,971)
	중학교	4.9	10.8	21.3	32.1	23.7	7.2	7.2	100.0(2,884)
	고등학교	18.2	31.4	29.8	15.6	4.0	0.9	5.9	100.0(2,714)
지역 규모	대도시	8.8	15.7	18.7	21.5	19.9	15.3	7.1	100.0(3,380)
	중소도시	7.1	12.9	17.8	19.3	23.8	19.1	7.4	100.0(4,152)
	읍면지역	6.3	13.2	17.1	22.8	21.9	18.6	7.4	100.0(1,03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5	14.2	17.9	20.5	22.4	17.5	7.3	100.0(7,685)
	한부모가정	11.6	15.3	22.3	22.0	16.3	12.5	6.9	100.0(645)
	조손가정	12.1	4.9	11.1	24.5	29.9	17.4	7.4	100.0(30)
	기타	4.2	5.3	10.0	18.3	24.9	37.2	8.2	100.0(147)
학업 성적	상	5.0	10.7	15.6	18.8	26.9	23.0	7.6	100.0(3,350)
	중	7.4	14.3	17.9	20.9	22.3	17.3	7.3	100.0(3,287)
	하	13.3	20.0	23.3	23.2	13.0	7.2	6.6	100.0(1,830)
경제적 수준	상	6.5	12.6	16.1	20.5	23.7	20.6	7.4	100.0(5,300)
	중	9.1	16.4	20.9	20.8	20.1	12.8	7.0	100.0(2,584)
	하	12.5	17.3	24.7	20.4	16.2	9.0	6.7	100.0(582)

수면시간의 연도별 추이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그 안에서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학업부담과 학업중심의 생활이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수면시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패턴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유민상 외,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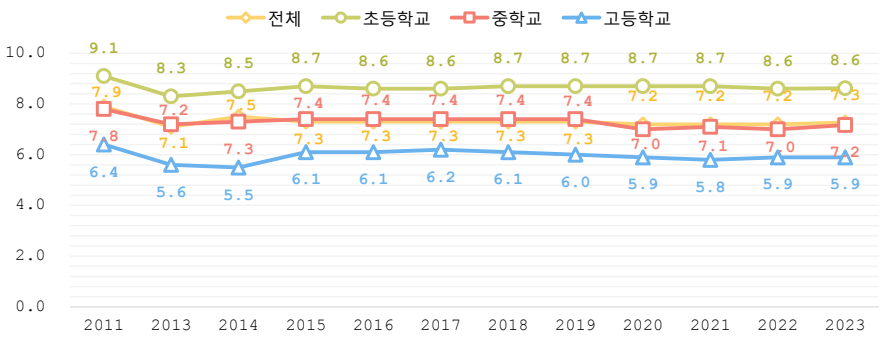


그림 Ⅳ-6-7. 수면 시간(2011~2023년)

아동·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수면 부족 여부를 질문한 결과 47.8%의 참여자들이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별, 경제적 수준별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54.2%)이 남학생(41.7%)에 비해 수면 부족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63.1%), 중학생(47.6%), 초등학생(3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 집단(68.5%), '중' 집단(50.1%), '상' 집단(44.4%) 순으로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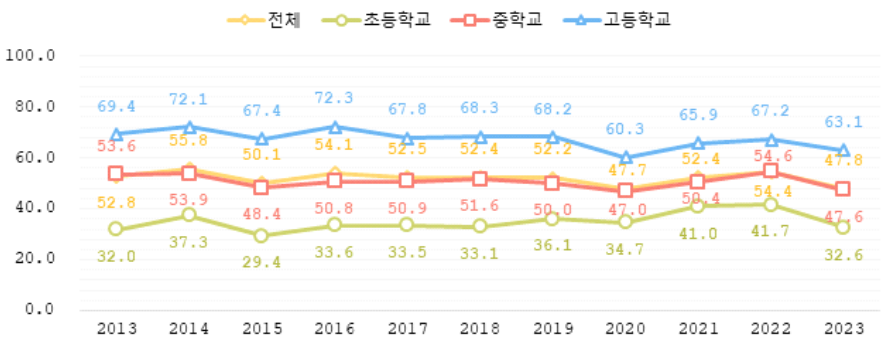
아동·청소년들의 수면 부족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수면 부족 비율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선 수면시간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변화로 어떠한 이유로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Ⅳ-6-27. 수면 부족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χ^2
전체		47.8	52.2	100.0(8,394)	
성별	남학생	41.7	58.3	100.0(4,298)	133.210***
	여학생	54.2	45.8	100.0(4,096)	
학교급	초등학교	32.6	67.4	100.0(2,726)	510.367***
	중학교	47.6	52.4	100.0(2,916)	
	고등학교	63.1	36.9	100.0(2,753)	
지역 규모	대도시	50.0	50.0	100.0(3,317)	10.573**
	중소도시	46.3	53.7	100.0(4,072)	
	읍면지역	46.8	53.2	100.0(1,00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7.4	52.6	100.0(7,556)	17.037***
	한부모가정	54.4	45.6	100.0(623)	
	조손가정	30.2	69.8	100.0(30)	
	기타	41.7	58.3	100.0(126)	
학업 성적	상	44.3	55.7	100.0(3,278)	134.428***
	중	44.6	55.4	100.0(3,204)	
	하	59.8	40.2	100.0(1,822)	
경제적 수준	상	44.4	55.6	100.0(5,168)	129.713***
	중	50.1	49.9	100.0(2,551)	
	하	68.5	31.5	100.0(583)	

*p<.05, **p<.01, ***p<.001



*주: 수면부족에 '예'라고 응답한 값(단위: %)

그림 Ⅳ-6-8. 수면 부족 여부(2013~2023년)

표 Ⅳ-6-28.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게임 (인터넷 게임, 휴대 전화 게임 포함)	채팅 (카톡 등),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χ^2
전체		5.6	19.5	24.1	11.6	8.2	14.5	7.6	8.9	100.0(3,823)	
성별	남학생	6.8	18.5	19.8	18.7	6.4	14.2	6.2	9.5	100.0(1,689)	185.463***
	여학생	4.7	20.4	27.5	5.9	9.6	14.8	8.7	8.5	100.0(2,135)	
학교급	초등학교	0.0	21.4	30.9	16.5	3.2	7.2	6.3	14.5	100.0(881)	
	중학교	3.9	18.0	17.4	13.8	12.2	18.5	9.0	7.2	100.0(1,339)	364.633***
	고등학교	10.2	19.8	25.9	7.0	7.5	15.2	7.1	7.2	100.0(1,604)	
지역 규모	대도시	4.3	21.5	27.2	9.5	7.8	14.5	7.0	8.3	100.0(1,557)	
	중소도시	6.0	18.1	23.3	13.7	8.0	14.6	7.6	8.6	100.0(1,811)	63.279***
	읍면지역	8.8	18.5	16.2	10.3	10.0	14.3	9.6	12.2	100.0(45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6	19.8	25.1	11.4	8.1	14.4	7.2	8.5	100.0(3,433)	
	한부모가정	6.8	14.2	15.6	12.6	8.6	18.3	12.6	11.3	100.0(311)	53.039***
	조손가정	0.0	28.1	0.0	28.0	0.0	0.0	13.7	30.2	100.0(8)	
	기타	3.9	20.3	18.3	18.1	4.4	10.4	5.4	19.3	100.0(46)	
학업 성적	상	4.8	21.4	32.8	8.3	5.6	12.4	6.0	8.6	100.0(1,393)	
	중	6.4	20.4	21.4	12.3	8.7	13.5	8.4	9.0	100.0(1,358)	162.690***
	하	5.7	16.0	15.6	14.9	10.8	19.0	8.8	9.2	100.0(1,031)	
경제적 수준	상	5.5	21.4	26.4	11.5	8.6	11.5	6.1	9.0	100.0(2,194)	
	중	5.5	18.0	21.4	12.0	7.4	17.4	10.1	8.2	100.0(1,211)	88.585***
	하	6.9	14.2	18.0	10.5	7.9	23.1	8.9	10.5	100.0(381)	

비고: 음영 표기는 가장 높은 응답을 의미함, ***α.001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1순위로 질문하였을 때, 가장 높은 응답은 가정학습(24.1%)이었고, 학원/과외(19.5%), 인터넷 사이트(14.5%) 순이었다. 이 비율은 성별,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별, 경제적 수준별로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남학생은 가정학습(19.8%), 게임(18.7%), 학원/과외(18.5%) 순이었으나 여학생은 가정학습(27.5%), 학원/과외(20.4%), 인터넷 사이트(14.8%)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도 차이가 났는데 고등학생은 야간자율학습(10.2%), 학원/과외(19.8%), 가정학습(25.9%) 등 학업과 관련한 사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표 Ⅳ-6-29. 수면이 부족한 이유(복수응답: 1+2순위)

(단위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게임 (인터넷 게임, 휴대 전화 게임 포함)	채팅 (카톡 등),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전체		8.6	33.8	41.2	22.6	20.2	31.2	20.9	12.5	191.0 (3,823)
성별	남학생	10.5	31.7	36.4	34.4	15.3	30.4	17.0	13.3	189.0 (1,689)
	여학생	7.1	35.5	45.0	13.3	24.1	31.8	24.0	11.9	192.7 (2,135)
학교급	초등학교	0.0	38.7	49.6	28.9	12.3	21.4	15.6	22.2	188.7 (881)
	중학교	6.5	29.9	34.1	27.7	27.6	35.9	21.5	9.5	192.7 (1,339)
	고등학교	15.1	34.3	42.6	15.0	18.3	32.7	23.3	9.8	191.1 (1,604)
지역 규모	대도시	7.0	37.7	45.6	20.1	19.8	31.6	17.8	12.0	191.6 (1,557)
	중소도시	8.9	31.2	39.6	24.4	19.7	31.5	22.6	12.3	190.2 (1,811)
	읍면지역	13.2	30.8	32.7	24.0	23.3	28.7	24.5	15.4	192.6 (45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6	34.3	42.7	22.0	19.9	31.3	20.2	12.1	191.1 (3,433)
	한부모가정	9.4	27.7	26.9	27.9	23.5	34.0	27.7	15.7	192.8 (311)
	조손가정	9.5	31.2	43.0	28.0	8.9	16.5	32.8	30.2	200.0 (8)
	기타	7.0	31.4	37.6	37.1	18.3	15.6	18.7	19.3	185.0 (46)
학업 성적	상	8.0	38.9	52.9	18.2	16.1	27.3	16.7	13.0	191.1 (1,393)
	중	9.4	33.4	39.5	23.0	20.2	30.7	21.4	12.1	189.7 (1,358)
	하	8.4	27.2	27.6	28.2	25.7	37.4	26.3	12.3	193.1 (1,031)
경제적 수준	상	8.6	36.8	44.0	22.6	20.6	28.1	17.6	12.5	190.8 (2,194)
	중	8.2	31.5	38.8	22.4	19.0	34.6	26.0	11.8	192.3 (1,211)
	하	10.1	23.2	32.0	23.5	21.1	38.1	24.8	15.2	188.0 (381)

비고: 음영 표기는 가장 높은 응답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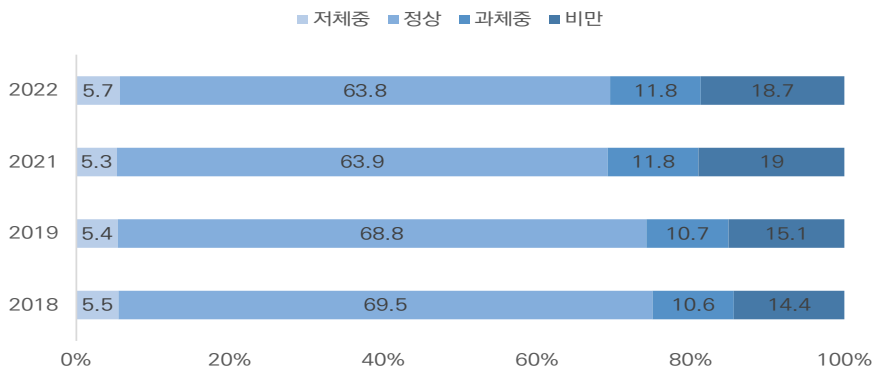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1순위와 2순위의 응답을 합산하여 계산하였을 때 가정학습(41.2%), 학원/과외(33.8%), 인터넷 사이트(31.2%) 순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특성별로 가장 높게 나타난 응답에 음영 표기를 하였을 때 일부 집단에서는 인터넷 사이트 이용이 수면 부족의 주된 이유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수면을 방해하는 것-그것이 학업이던 인터넷 사용이건 무엇이든-을 점차 제거하고 적정한 수면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아동·청소년의 질병 유형

가. 비만율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를 토대로 비만율(obesity)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이후로 전반적인 비만율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을 기준으로 저체중은 5.7%, 정상체중은 63.8%, 과체중은 11.8%, 비만은 18.7%였다. 2018년 이래로 정상체중의 일부가 과체중과 비만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질병 통제 및 예방센터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운동 및 야외활동의 감소가 나타나고 영양 불균형이 일어난 것과 연관이 있다(CDC, 2022).



* 출처: 교육부(2023.4.14.). 보도자료: 2022년 학생 건강검사 주요 결과. pp. 4-5.

* 주: 1) 본 그림은 〈표 Ⅳ-6-30〉의 일부 내용을 도식화한 것임(단위: %).
2) 2020년 검사는 COVID-19로 인하여 표본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결과(가중산술치)를 발표하지 않음.

그림 Ⅳ-6-9. 비만도 현황(2018~2022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기준 비만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만율의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초등학교 남학생의 비만율은 15.5%, 여학생의 비만율은 10.9%였으나 2022년 초등학교 남학생의 비만율은 20.5%, 여학생의 비만율은 14.7%로 각각 증가하였다. 비만율에는 성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러한 격차는 유지되는 추세이다.

표 Ⅳ-6-30.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율(2018~2022년)

(단위 : %)

연도/구분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율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2018	전체		5.5	69.5	10.6	14.4
	초등학생	남학생	4.9	68.3	11.3	15.5
		여학생	6.0	72.9	10.2	10.9
	중학생	남학생	5.7	67.6	10.6	16.0
		여학생	4.8	72.9	9.9	12.4
	고등학생	남학생	6.3	64.6	10.7	18.4
		여학생	5.2	69.7	10.4	14.7
2019	전체		5.4	68.8	10.7	15.1
	초등학생	남학생	5.1	66.8	11.5	16.6
		여학생	5.8	72.9	10.7	10.6
	중학생	남학생	5.3	66.2	11.3	17.2
		여학생	4.9	72.4	10.1	12.5
	고등학생	남학생	6.0	64.3	9.9	19.7
		여학생	5.4	68.6	10.0	16.1
2021	전체		5.3	63.9	11.8	19.0
	초등학생	남학생	3.9	60.2	13.3	22.6
		여학생	5.2	68.2	12.0	14.6
	중학생	남학생	5.0	57.7	13.1	24.2
		여학생	6.1	70.2	10.0	13.7
	고등학생	남학생	6.4	60.9	11.0	21.7
		여학생	6.5	66.7	9.6	17.2
2022	전체		5.7	63.8	11.8	18.7
	초등학생	남학생	5.1	60.6	13.8	20.5
		여학생	6.4	68.6	10.4	14.7
	중학생	남학생	3.8	58.8	12.0	25.3
		여학생	6.8	65.7	10.1	17.5
	고등학생	남학생	7.0	59.9	13.3	19.8
		여학생	6.4	67.1	9.8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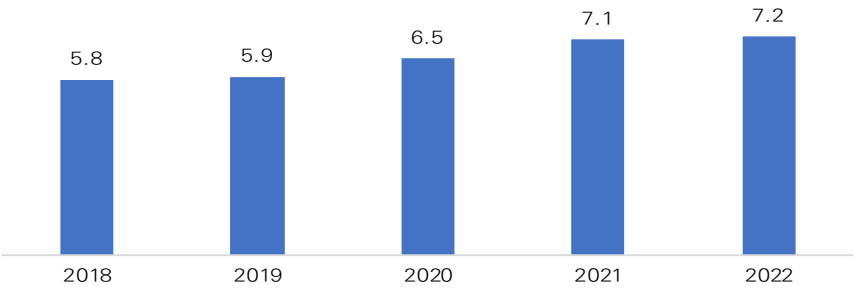
* 출처: 교육부(2023.4.14.). 보도자료: 2022년 학생 건강검사 주요 결과. pp. 4-5.

* 주: 1) 체질량지수(BMI, kg/m2) 기준 비만율 : 저체중군, 5백분위수 미만 / 정상, 5백분위수 이상 85백분위수 미만 / 과체중군,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 / 비만군, 95백분위수 이상
2) 비만도는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의 '연령별 체질량지수, 남자'와 '연령별 체질량지수, 여자'를 사용함
3) 2020년 검사는 COVID-19로 인하여 표본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결과(가중산술치)를 발표하지 않음.

(2) 정신건강

① 자살 생각과 그 이유('2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인구 10만명 당 10~19세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다. 2018년 10만명 당 5.8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 10만명 당 7.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출처: 통계청(2019.9.24). 보도자료: 2018년 사망원인통계 p.18. 통계청(2020.9.22). 보도자료: 2019년 사망원인통계 p.18. 통계청(2021.9.28.). 보도자료: 2020년 사망원인통계 p.18. 통계청(2022.9.27.). 보도자료: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p.18. 통계청(2023.9.21.). 보도자료: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p.16.

* 주: 단위: %

그림 Ⅳ-6-10. 인구 십만명 당 10~19세 자살률(2018~2022년)

'2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의 31.2%가 죽고 싶다는 생각('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의 합산비율)을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학업성적 '하')은 40.1%,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경제적 수준 '하')은 50.1%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죽고 싶다는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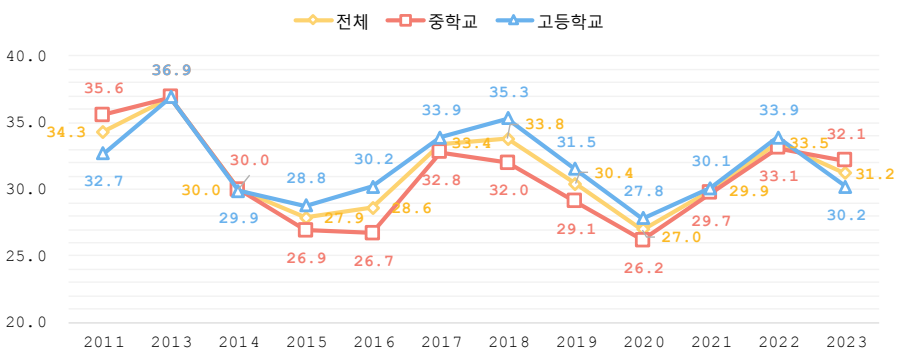
이러한 추세는 연차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는 27%(2020년), 최고는 36.9%(2013년)이었으며 일정한 주기를 두고 출렁이는 양상을 보인다. 2020년은 코로나19가 창궐한 시기로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은 다양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일부 학교가 휴교를 하고 원격수업을 하는 등 학교생활로부터 오는 악영향이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 간의 유대가 높아지는 등 부정적 영향을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

표 Ⅳ-6-31 자살 생각 여부

(단위 : %(명))

구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	전체(N)	χ^2
전체		68.8	26.5	4.7	100.0(5,681)	
성별	남학생	76.7	20.2	3.1	100.0(2,923)	176.816***
	여학생	60.5	33.2	6.3	100.0(2,758)	
학교급	중학교	67.9	27.7	4.4	100.0(2,931)	4.738
	고등학교	69.8	25.3	4.9	100.0(2,750)	
지역 규모	대도시	68.5	26.6	4.9	100.0(2,254)	5.777
	중소도시	68.4	27.3	4.3	100.0(2,747)	
	읍면지역	71.7	23.1	5.2	100.0(68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9.2	26.3	4.5	100.0(5,062)	6.571
	한부모가정	66.0	28.9	5.1	100.0(501)	
	조손가정	53.9	40.4	5.8	100.0(19)	
	기타	63.1	29.0	7.9	100.0(65)	
학업 성적	상	72.6	23.4	4.0	100.0(1,709)	84.714***
	중	72.1	24.0	3.9	100.0(2,253)	
	하	59.9	33.6	6.5	100.0(1,656)	
경제적 수준	상	71.5	25.1	3.4	100.0(3,142)	124.262***
	중	68.7	26.4	4.9	100.0(1,978)	
	하	49.9	38.0	12.1	100.0(495)	

***p<.001



* 주: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6-11. 자살 생각 여부(2011~2023년)

’2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높게 나타난 문제는 ‘학업문제’로 전체의 42.7%가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19.8%, ‘가족 간의 갈등’ 17.9% 순이었다. 중학생은 ‘학업문제’ 〉 ‘가족 간의 갈등’ 〉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순이었으나, 고등학생은 ‘학업문제’ 〉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 ‘가족 간의 갈등’ 순이었다.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직접적인 학업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불안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6-32. 자살 생각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 문제 (학업 부담, 성적 등)	가족 간의 갈등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학교 폭력 등)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기타	전체(N)	χ^2
전체		42.7	17.9	6.5	0.9	19.8	12.1	100.0(1,673)	
성별	남학생	46.0	17.6	4.7	0.9	19.0	11.8	100.0(629)	8.109
	여학생	40.7	18.1	7.6	0.9	20.3	12.3	100.0(1,044)	
학교급	중학교	39.4	24.5	9.0	0.8	15.4	10.9	100.0(897)	92.681***
	고등학교	46.6	10.3	3.6	1.0	25.0	13.5	100.0(776)	
지역 규모	대도시	45.4	17.6	5.7	0.6	18.5	12.1	100.0(673)	23.445**
	중소도시	42.1	19.0	5.7	0.9	20.2	12.1	100.0(820)	
	읍면지역	35.5	14.5	13.5	1.5	23.4	11.6	100.0(18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4.0	17.3	7.1	0.8	19.8	11.2	100.0(1,480)	39.082***
	한부모가정	28.6	26.4	2.8	1.1	20.6	20.4	100.0(158)	
	조손가정	79.4	0.0	0.0	0.0	9.9	10.8	100.0(7)	
	기타	45.2	10.5	2.0	7.1	21.1	14.1	100.0(20)	
학업 성적	상	46.1	18.0	8.3	0.5	15.7	11.4	100.0(445)	23.506**
	중	45.5	17.7	5.9	0.6	17.6	12.6	100.0(600)	
	하	37.9	18.3	6.0	1.4	24.2	12.2	100.0(618)	
경제적 수준	상	46.9	17.1	7.5	0.1	16.1	12.3	100.0(852)	70.574***
	중	41.0	18.0	5.4	0.5	23.3	11.7	100.0(581)	
	하	31.9	21.3	6.1	4.7	23.8	12.2	100.0(232)	

**p<.01, ***p<.001

② 우울감('2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3가지 문항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우울감 수준을 파악하였다. 첫 번째는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두 번째는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세 번째는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이다. 세 가지 질문에서 대략 10명 중 3명의 아동·청소년들은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응답 합산)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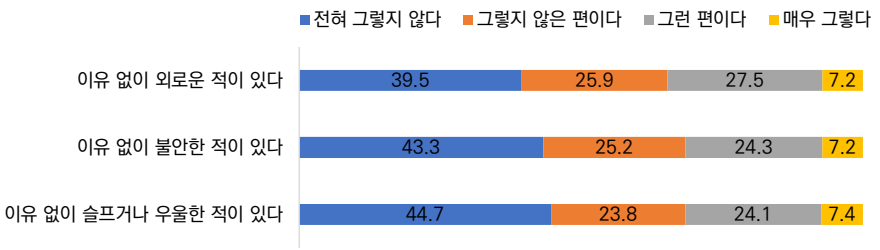


그림 Ⅳ-6-12. 우울정도 항목별 조사결과

이 세 가지 문항의 결과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문항의 경우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평균으로 2.02점이었다. 이 문항은 성별, 학교급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별, 경제적 수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1.87점)에 비해 여학생(2.18점)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 모두 가장 낮은 집단('하' 집단)에서의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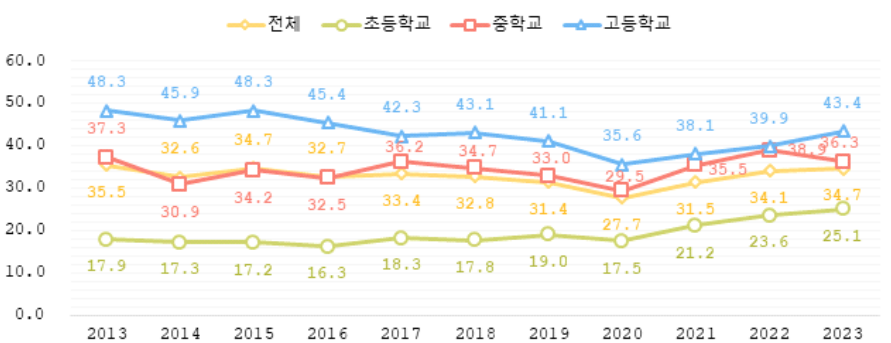
이 문항의 연차별 변화를 보면 코로나19 이전까지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그렇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 비율이 하향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상승세가 눈에 띈다.

표 Ⅳ-6-33.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02(0.98)	39.5	25.9	27.5	7.2	100.0(8,727)	
성별	남학생	1.87(0.95)	46.6	25.0	23.0	5.4	100.0(4,484)	231.043***
	여학생	2.18(0.99)	31.9	26.8	32.2	9.1	100.0(4,243)	
학교급	초등학교	1.82(0.93)	48.2	26.7	19.8	5.3	100.0(3,027)	245.746***
	중학교	2.07(0.98)	37.1	26.6	28.9	7.5	100.0(2,948)	
	고등학교	2.20(0.99)	32.4	24.2	34.6	8.8	100.0(2,752)	
지역 규모	대도시	2.01(0.98)	40.6	24.8	27.4	7.2	100.0(3,435)	6.256
	중소도시	2.04(0.98)	38.6	26.5	27.5	7.4	100.0(4,247)	
	읍면지역	2.01(0.96)	39.3	26.8	27.6	6.2	100.0(1,04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01(0.97)	39.9	26.2	27.0	6.9	100.0(7,818)	46.778***
	한부모가정	2.25(1.00)	30.9	23.6	35.5	10.0	100.0(654)	
	조손가정	1.79(0.97)	52.6	21.7	19.8	5.9	100.0(33)	
	기타	1.95(1.04)	47.0	20.5	23.1	9.4	100.0(151)	
학업 성적	상	1.90(0.96)	44.8	26.1	22.8	6.3	100.0(3,406)	187.942***
	중	2.01(0.96)	39.2	26.6	28.0	6.2	100.0(3,351)	
	하	2.28(1.00)	29.3	24.5	35.5	10.8	100.0(1,864)	
경제적 수준	상	1.93(0.96)	43.7	25.3	24.9	6.0	100.0(5,386)	248.570***
	중	2.10(0.97)	35.0	27.6	29.8	7.6	100.0(2,637)	
	하	2.56(0.96)	18.1	24.2	41.8	15.9	100.0(598)	

***α<.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6-13.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2013~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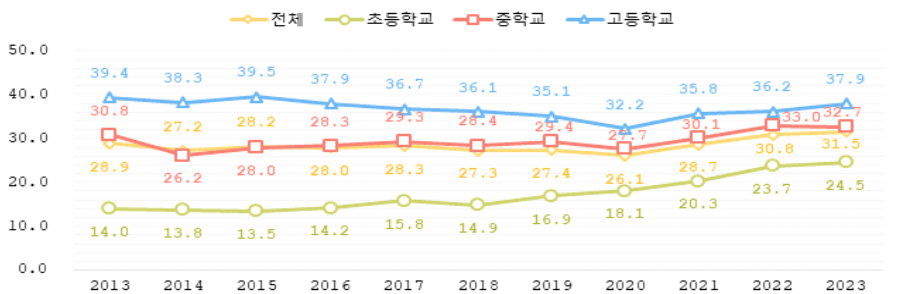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의 평균은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평균 1.95점이었다. 이 역시 성별,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별, 경제적 수준별 차이가 나타났다. 이 문항의 연차별 변화 역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Ⅳ-6-34.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95(0.98)	43.3	25.2	24.3	7.2	100.0(8,721)	
성별	남학생	1.80(0.93)	50.2	24.6	19.9	5.2	100.0(4,483)	227.318***
	여학생	2.12(1.00)	36.0	25.7	29.0	9.3	100.0(4,238)	
학교급	초등학교	1.78(0.94)	51.7	23.7	19.2	5.3	100.0(3,024)	171.266***
	중학교	1.99(0.97)	40.6	26.7	25.5	7.2	100.0(2,947)	
	고등학교	2.10(1.01)	37.0	25.1	28.6	9.3	100.0(2,750)	
지역 규모	대도시	1.95(0.99)	44.4	24.0	23.9	7.7	100.0(3,432)	13.230*
	중소도시	1.96(0.97)	42.5	26.3	24.0	7.1	100.0(4,244)	
	읍면지역	1.96(0.97)	43.1	24.1	26.9	5.9	100.0(1,04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4(0.98)	43.8	25.0	24.2	6.9	100.0(7,814)	32.811***
	한부모가정	2.13(1.00)	34.7	27.7	27.8	9.9	100.0(652)	
	조손가정	1.83(0.95)	50.4	19.4	26.7	3.5	100.0(33)	
	기타	1.84(1.00)	50.2	24.9	15.7	9.2	100.0(151)	
학업 성적	상	1.84(0.96)	49.6	23.4	20.7	6.3	100.0(3,407)	156.270***
	중	1.96(0.97)	42.4	25.9	25.1	6.6	100.0(3,348)	
	하	2.17(1.00)	33.0	27.1	29.7	10.3	100.0(1,861)	
경제적 수준	상	1.87(0.96)	47.9	23.7	22.3	6.1	100.0(5,383)	242.713***
	중	2.03(0.97)	38.4	27.7	26.4	7.4	100.0(2,636)	
	하	2.46(1.01)	21.6	27.5	33.9	17.0	100.0(596)	

*p<.05, **p<.01, ***p<.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6-14.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2013~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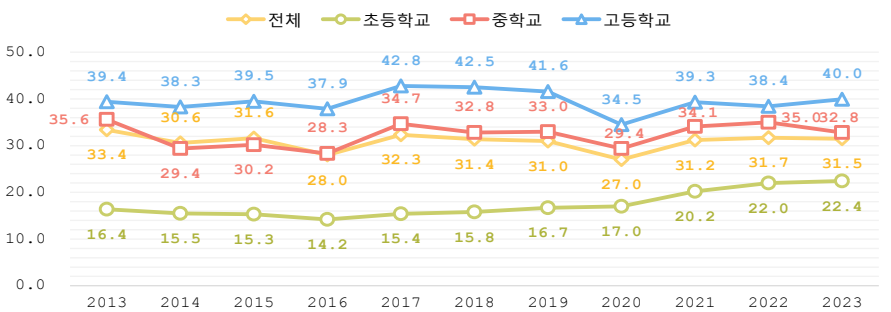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의 평균은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평균 1.94점이었다. 이 역시 성별, 학교급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별, 경제적 수준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Ⅳ-6-35.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94(0.99)	44.7	23.8	24.1	7.4	100.0(8,693)	
성별	남학생	1.73(0.91)	53.9	23.8	17.5	4.8	100.0(4,469)	417.550***
	여학생	2.16(1.02)	35.1	23.8	31.1	10.0	100.0(4,224)	
학교급	초등학교	1.72(0.92)	55.5	22.0	17.4	5.1	100.0(3,011)	278.984***
	중학교	1.99(0.99)	41.4	25.8	25.0	7.8	100.0(2,940)	
	고등학교	2.13(1.01)	36.5	23.6	30.6	9.4	100.0(2,742)	
지역 규모	대도시	1.94(1.00)	45.3	23.3	23.7	7.7	100.0(3,422)	3.108
	중소도시	1.94(0.99)	44.4	24.3	24.1	7.2	100.0(4,231)	
	읍면지역	1.95(0.98)	44.1	23.6	25.4	6.9	100.0(1,04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3(0.98)	45.3	23.9	23.8	7.0	100.0(7,787)	43.184***
	한부모가정	2.15(1.02)	35.3	24.4	30.3	9.9	100.0(652)	
	조손가정	2.03(1.12)	47.1	14.7	26.2	11.9	100.0(32)	
	기타	1.82(1.04)	54.9	18.4	17.0	9.8	100.0(151)	
학업 성적	상	1.81(0.96)	51.4	22.8	19.5	6.2	100.0(3,396)	221.632***
	중	1.93(0.97)	44.2	24.5	25.0	6.3	100.0(3,338)	
	하	2.22(1.03)	32.7	24.5	31.3	11.5	100.0(1,853)	
경제적 수준	상	1.84(0.96)	49.8	22.7	21.5	6.0	100.0(5,359)	275.054***
	중	2.04(0.99)	38.7	26.2	27.1	8.0	100.0(2,632)	
	하	2.47(1.04)	23.8	23.0	35.8	17.4	100.0(597)	

***p<.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6-15.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2013~2023년)

③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2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4점척도(1점: 전혀 행복하지 않다 ~ 4점: 매우 행복하다)로 행복한 정도를 물어본 결과 평균 3.10점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10명 중 8명 이상은 스스로 '행복하다'('행복한 편이다'+'매우 행복하다'의 합산비율)로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복 정도는 성별, 학교급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별, 경제적 수준별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성별로 남학생(3.14점)이 여학생(3.05점)에 비해 높았고, 학교급별로 초등학생(3.21점), 중학생(3.06점), 고등학생(3.01점) 순으로 높았으며, 학업성적별 '상'그룹(3.23점), '중'그룹(3.05점), '하'그룹(2.9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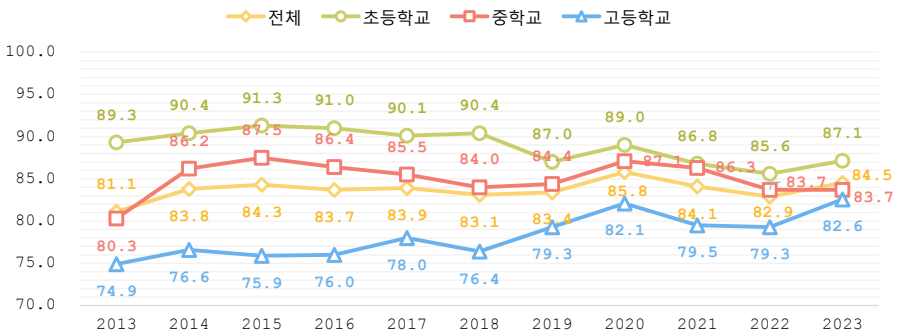
표 Ⅳ-6-36. 행복한 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전체(N)	χ^2
전체		3.10(0.67)	1.4	14.0	58.0	26.5	100.0(8,435)	
성별	남학생	3.14(0.68)	1.6	12.6	55.9	29.9	100.0(4,323)	60.052***
	여학생	3.05(0.66)	1.3	15.5	60.3	22.9	100.0(4,112)	
학교급	초등학교	3.21(0.69)	1.4	11.5	52.0	35.1	100.0(2,905)	181.471***
	중학교	3.06(0.66)	1.2	15.1	60.3	23.4	100.0(2,857)	
	고등학교	3.01(0.66)	1.7	15.7	62.2	20.4	100.0(2,673)	
지역 규모	대도시	3.10(0.67)	1.5	14.0	58.0	26.5	100.0(3,314)	1.237
	중소도시	3.10(0.67)	1.3	14.2	58.1	26.4	100.0(4,099)	
	읍면지역	3.09(0.68)	1.8	13.7	57.8	26.7	100.0(1,02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0(0.67)	1.4	13.8	58.1	26.7	100.0(7,580)	28.148***
	한부모가정	3.01(0.66)	1.8	15.8	61.5	20.9	100.0(623)	
	조손가정	3.03(0.71)	0.0	22.9	50.8	26.2	100.0(29)	
	기타	3.10(0.81)	3.5	17.9	43.9	34.7	100.0(139)	
학업 성적	상	3.23(0.67)	1.3	9.7	53.5	35.5	100.0(3,292)	334.037***
	중	3.05(0.64)	1.1	14.5	62.2	22.2	100.0(3,231)	
	하	2.91(0.69)	2.4	21.3	59.1	17.2	100.0(1,816)	
경제적 수준	상	3.18(0.67)	1.1	11.6	55.3	32.1	100.0(5,211)	368.706***
	중	2.98(0.63)	1.4	16.6	64.5	17.5	100.0(2,553)	
	하	2.76(0.75)	5.5	26.2	54.6	13.6	100.0(575)	

***p<.001

행복한 정도를 '행복하다'('행복한 편이다'와 '매우 행복하다'의 합산 비율)로 나타내어 연차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의 행복정도는 과거에 비해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지만, 초등학생의 행복정도는 그에 비해서는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중학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방향이 단일하지 않아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주: '행복한 편이다'와 '매우 행복하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6-16. 행복한 정도(2013~2023년)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앞선 문항에서 '전혀 행복하지 않다'와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로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에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절반의 응답자가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때문에' 라고 응답했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도 15.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응답은 앞선 '죽고 싶은 이유'와 유사한 패턴이다.

학교급별로 나누어 보면, 초등학교에서도 학업문제가 46.2%로 높게 나타났으나,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가 15.1%,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12.4% 등 관계와 관련한 항목들도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에서는 학업문제(47.8%), 미래(진로)문제(15.7%), 친구관계(12.7%) 순으로 진로 문제가 높게 등장을 한다. 고교에서는 관계에 대한 문제는 가장 후순위로 밀리고 학업문제(55.6%), 미래(진로)문제(21.3%)가 주요한 문제로 나타난다. 학교급별로 학업과 진로 문제가 행복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표 Ⅳ-6-37. 행복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 문제 (학업 부담, 성적 등)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친구 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타	전체(N)	χ^2
전체		50.0	8.4	9.4	1.7	5.5	15.6	9.4	100.0(1,213)	
성별	남학생	54.0	9.5	6.3	1.0	3.2	14.6	11.4	100.0(575)	34.252***
	여학생	46.5	7.4	12.1	2.3	7.5	16.6	7.7	100.0(638)	
학교급	초등학교	46.2	15.1	12.4	3.2	6.6	8.7	7.9	100.0(347)	85.003***
	중학교	47.8	6.4	12.7	1.0	5.6	15.7	10.9	100.0(445)	
	고등학교	55.6	4.9	3.5	1.2	4.4	21.3	9.2	100.0(421)	
지역 규모	대도시	51.3	6.0	9.6	1.6	6.0	16.5	9.0	100.0(471)	12.014
	중소도시	50.4	10.1	8.9	1.3	5.1	15.2	9.1	100.0(594)	
	읍면지역	44.5	9.1	10.7	3.4	5.3	14.7	12.5	100.0(14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2.3	7.4	9.1	1.3	5.2	15.9	8.7	100.0(1,072)	58.292***
	한부모가정	24.9	20.0	12.5	4.3	9.2	12.6	16.5	100.0(100)	
	조손가정	66.3	14.2	0.0	0.0	19.5	0.0	0.0	100.0(5)	
	기타	48.2	6.7	10.5	6.8	0.0	11.0	16.8	100.0(26)	
학업 성적	상	52.3	9.2	9.9	1.2	5.4	12.1	9.9	100.0(342)	13.341
	중	50.9	8.7	9.0	2.5	6.1	14.2	8.7	100.0(473)	
	하	48.0	7.4	9.2	1.2	4.9	19.6	9.7	100.0(391)	
경제적 수준	상	53.4	6.3	10.2	0.6	4.1	15.4	10.1	100.0(624)	68.125***
	중	50.0	9.1	8.6	0.8	7.4	14.9	9.2	100.0(414)	
	하	39.6	14.6	8.0	7.9	6.1	16.9	6.9	100.0(169)	

***α.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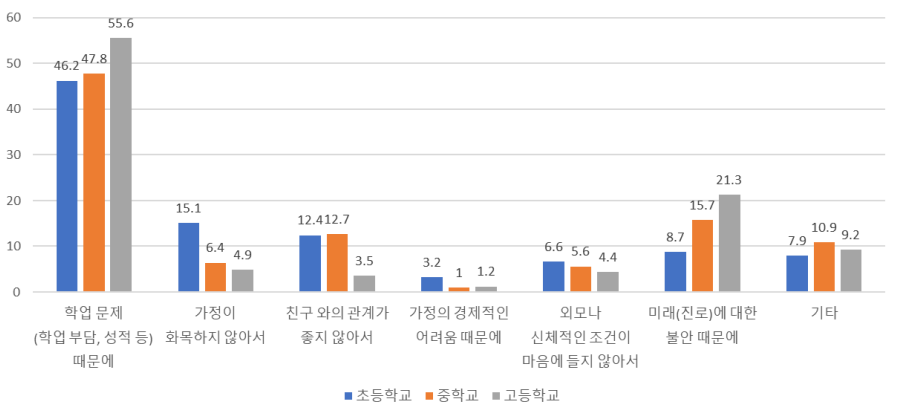


그림 Ⅳ-6-17. 학교급별 행복하지 않은 이유

④ 삶의 만족도('2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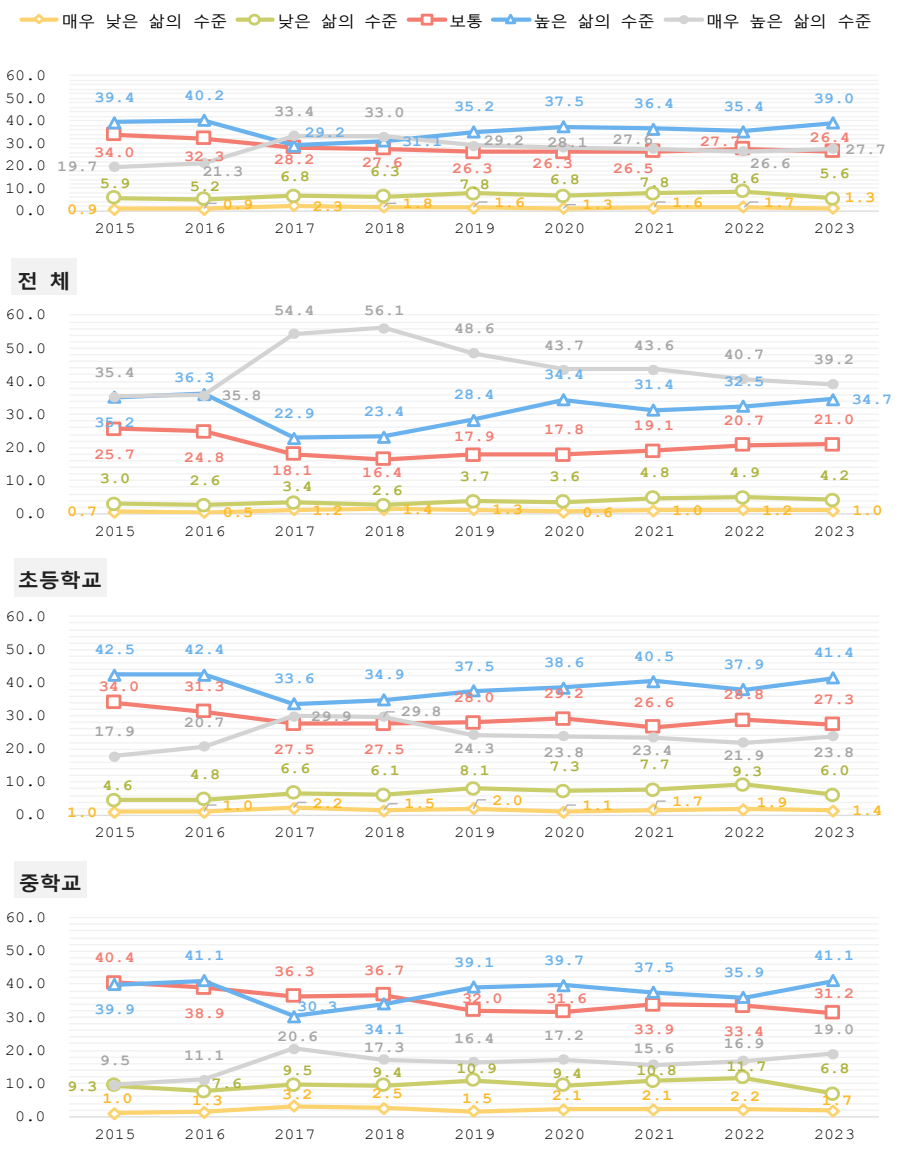
캔트릴의 사다리(Cantril's ladder)를 이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11점 척도(0점: 매우 불만족~10점: 매우 만족)로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7.09점이었다. 삶의 만족도는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생의 만족도는 7.57점, 중학생은 6.94점, 고등학생은 6.71점 등이었다. 아동·청소년기에서 삶의 만족도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생 시기의 높은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불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Ⅳ-6-38. 삶의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N)	χ^2
전체		7.09(2.18)	0.6	0.7	2.0	3.6	6.0	11.1	9.3	17.6	21.4	13.0	14.7	100.0(8,570)	
성별	남학생	7.33(2.14)	0.7	0.4	1.9	3.2	4.5	9.4	8.6	17.0	23.0	13.7	17.6	100.0(4,424)	147.993***
	여학생	6.83(2.20)	0.6	1.0	2.2	4.1	7.6	12.9	10.0	18.3	19.7	12.2	11.6	100.0(4,146)	
학교급	초등학교	7.57(2.15)	0.6	0.4	1.6	2.6	4.7	8.7	7.6	14.2	20.5	17.2	22.0	100.0(2,981)	
	중학교	6.94(2.15)	0.5	0.8	2.4	3.6	6.7	11.0	9.7	19.2	22.2	12.6	11.2	100.0(2,893)	373.793***
	고등학교	6.71(2.16)	0.8	1.0	2.0	4.8	6.6	13.9	10.7	19.6	21.5	8.7	10.4	100.0(2,696)	
지역 규모	대도시	7.10(2.19)	0.9	0.5	2.1	3.8	5.6	10.6	9.3	18.2	21.6	12.8	14.8	100.0(3,372)	
	중소도시	7.07(2.18)	0.4	0.9	1.9	3.7	6.5	11.3	9.0	17.3	21.3	13.3	14.4	100.0(4,162)	23.033
	읍면지역	7.11(2.17)	0.5	0.8	2.0	3.1	5.4	12.2	10.5	16.8	21.1	12.2	15.6	100.0(1,03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11(2.18)	0.6	0.7	2.1	3.5	6.0	10.7	9.2	17.5	21.5	13.4	14.7	100.0(7,696)	
	한부모가정	6.79(2.16)	1.0	1.0	1.1	4.5	6.2	14.1	11.4	19.5	20.5	9.1	11.6	100.0(633)	67.608***
	조손가정	6.94(2.17)	0.0	0.0	0.0	9.6	0.0	19.8	10.7	23.7	9.4	7.5	19.3	100.0(31)	
	기타	7.22(2.39)	1.6	0.5	1.3	4.6	4.9	14.7	4.0	13.5	24.9	6.2	24.0	100.0(145)	
학업 성적	상	7.67(2.01)	0.5	0.3	1.0	2.5	3.7	6.5	8.1	16.3	23.2	17.2	20.7	100.0(3,357)	
	중	6.97(2.10)	0.4	0.7	2.1	3.3	6.0	13.2	9.7	18.8	22.3	11.7	11.8	100.0(3,273)	627.903***
	하	6.21(2.34)	1.3	1.6	3.7	6.5	10.4	15.5	10.4	18.0	16.5	7.4	8.6	100.0(1,838)	
경제적 수준	상	7.49(2.06)	0.4	0.4	1.6	2.6	4.5	7.9	7.9	17.4	23.2	16.0	18.1	100.0(5,304)	
	중	6.57(2.15)	0.7	0.9	2.2	4.4	8.3	17.1	11.1	17.9	19.4	8.6	9.6	100.0(2,584)	706.445***
	하	5.64(2.43)	2.5	3.0	5.4	10.5	10.3	13.4	13.1	18.5	13.5	4.1	5.8	100.0(579)	

***$p<.001$



* 주: 1) 매우 낮은 삶의 수준: ⓪, ①　　낮은 삶의 수준: ②, ③　　보통: ④, ⑤, ⑥
높은 삶의 수준: ⑦, ⑧　　매우 높은 삶의 수준: ⑨, ⑩

그림 Ⅳ-6-18. 삶의 만족도(2015~2023년)

Children's Worlds의 주관적 안녕감 척도(CW-CWBS)를 이용하여 주관적 안녕감 혹은 행복도를 살펴본 결과, 11점 척도(0점: 매우 불만족~10점: 매우 만족)중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7.04점이었다.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는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등에서 나타났다. 6개의 문항 중 가장 점수가 낮았던 문항은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는 문항으로 6.61점(초등 7.26점, 중등 6.41점, 고등 6.11점)이었고, 가장 높았던 문항은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문항으로 7.30점(초등 7.97점, 중등 7.09점, 고등 6.79점)이었다. 점수 격차는 경제적 수준의 '상' 집단(7.45점)과 '하' 집단(5.57점)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Ⅳ-6-39. 주관적 안녕감(CW-CWBS)

		1)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2)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3)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4)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5) 나는 내 인생이 좋다	6) 나는 내 인생에 대한 행복감을 느낀다	전체 평균
전체		7.13	6.61	7.30	6.67	7.25	7.25	7.04
성별	남학생	7.36	6.80	7.52	6.77	7.56	7.51	7.26
	여학생	6.88	6.41	7.07	6.56	6.92	6.97	6.80
학교급	초등학교	7.60	7.26	7.97	7.01	7.91	7.90	7.61
	중학교	6.96	6.41	7.09	6.45	7.01	7.04	6.83
	고등학교	6.79	6.11	6.79	6.53	6.78	6.76	6.63
고교유형	일반계고	6.77	6.08	6.78	6.54	6.77	6.75	6.61
	특성화계고	6.87	6.23	6.84	6.48	6.82	6.83	6.68
지역규모	대도시	7.15	6.64	7.30	6.73	7.27	7.25	7.06
	중소도시	7.11	6.59	7.30	6.64	7.24	7.25	7.02
	읍면지역	7.15	6.60	7.31	6.59	7.23	7.25	7.03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7.14	6.63	7.34	6.70	7.28	7.28	7.06
	한부모가정	6.90	6.28	6.77	6.27	6.80	6.81	6.64
	조손가정	6.86	6.14	6.88	6.05	6.79	6.91	6.60
	기타	7.41	6.78	7.33	6.70	7.57	7.57	7.22
학업성적	상	7.71	7.42	7.99	7.36	7.95	7.94	7.73
	중	6.95	6.42	7.15	6.48	7.10	7.09	6.86
	하	6.37	5.43	6.28	5.75	6.21	6.24	6.05
경제적 수준	상	7.49	7.05	7.76	7.07	7.68	7.68	7.45
	중	6.64	6.03	6.71	6.15	6.68	6.69	6.48
	하	5.94	5.12	5.63	5.30	5.71	5.69	5.57

⑤ 자아존중감('2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즉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등을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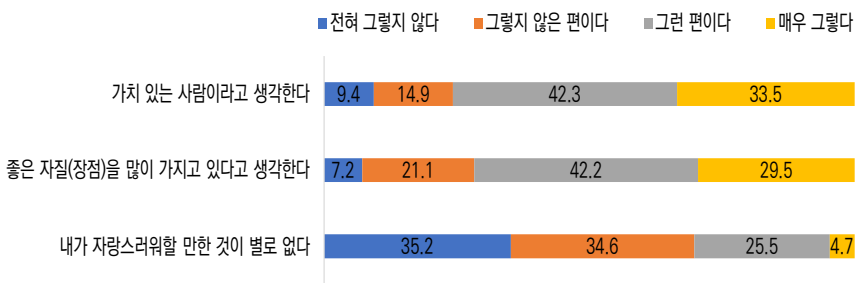


그림 Ⅳ-6-19. 자아존중감 항목별 조사결과

분석 결과를 보면, 세 가지 문항에 대해 10명 중 7명은 긍정적 응답을 하였으나 10명 중 3명은 부정적 응답을 하였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사람('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은 75.8%로 4명 중 3명꼴이었으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합산비율)도 24.3%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반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에 동의하는 사람('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합산비율)은 30.2%로 10명 중에 3명꼴이었으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합산비율)은 69.8%로 10명 중에 7명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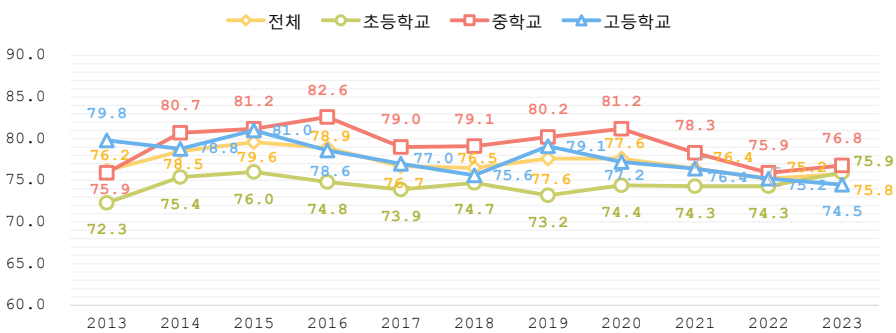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중 가족유형 중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학업성적 낮음, 경제 수준 낮음 집단 등에서의 평균이 낮게 나타나 취약성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연관시킬 가능성이 높다. 연차별로 보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의 변화는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편이다. 대략적으로 4명 중에 3명 정도의 초, 중, 고생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표 Ⅳ-6-40.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0(0.93)	9.4	14.9	42.3	33.5	100.0(8,703)	
성별	남학생	3.00(0.97)	11.4	12.7	40.2	35.6	100.0(4,472)	89.378***
	여학생	3.00(0.88)	7.2	17.1	44.4	31.2	100.0(4,231)	
학교급	초등학교	3.02(1.02)	13.5	10.6	36.1	39.8	100.0(3,011)	238.964***
	중학교	3.01(0.87)	6.7	16.5	45.4	31.4	100.0(2,945)	
	고등학교	2.96(0.88)	7.7	17.8	45.7	28.8	100.0(2,747)	
지역 규모	대도시	3.03(0.92)	8.7	14.8	41.8	34.8	100.0(3,432)	13.839*
	중소도시	2.97(0.93)	10.0	14.7	43.3	32.0	100.0(4,230)	
	읍면지역	3.01(0.94)	9.0	16.0	39.5	35.5	100.0(1,04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1(0.92)	9.0	14.7	42.1	34.2	100.0(7,797)	46.902***
	한부모가정	2.89(0.90)	9.9	17.1	47.2	25.8	100.0(654)	
	조손가정	2.72(1.05)	18.0	17.0	40.1	24.9	100.0(32)	
	기타	2.73(1.09)	20.6	14.7	36.1	28.6	100.0(150)	
학업 성적	상	3.19(0.92)	8.9	8.3	38.0	44.7	100.0(3,400)	527.258***
	중	2.96(0.90)	9.2	15.3	46.2	29.4	100.0(3,342)	
	하	2.74(0.90)	10.1	26.4	42.8	20.6	100.0(1,858)	
경제적 수준	상	3.09(0.93)	9.3	11.3	40.3	39.1	100.0(5,370)	303.762***
	중	2.88(0.89)	8.8	19.4	46.6	25.2	100.0(2,632)	
	하	2.70(0.92)	11.5	27.4	40.9	20.2	100.0(598)	

*p<.05, **p<.01, ***p<.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6-20.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2013~2023년)

자신을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역시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중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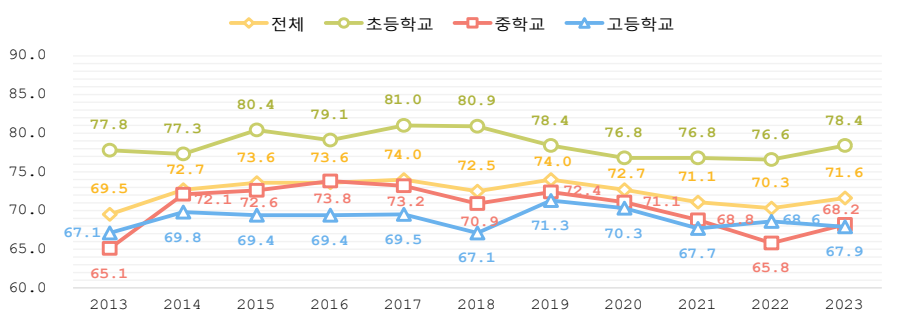
따른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 학교 환경에서 이러한 특성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문항은 연차별로도 변화는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편이다. 초등학생은 10명 중 8명 가량이, 중고등학생은 10명 중 7명 가량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표 Ⅳ-6-41.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4(0.89)	7.2	21.1	42.2	29.5	100.0(8,682)	
성별	남학생	2.96(0.92)	8.5	18.2	41.5	31.7	100.0(4,460)	74.246***
	여학생	2.91(0.86)	5.9	24.2	42.8	27.1	100.0(4,222)	
학교급	초등학교	3.11(0.86)	5.3	16.3	40.5	37.9	100.0(2,991)	189.282***
	중학교	2.86(0.89)	7.9	23.9	42.8	25.4	100.0(2,943)	
	고등학교	2.84(0.89)	8.6	23.4	43.3	24.6	100.0(2,748)	
지역 규모	대도시	2.95(0.89)	7.2	20.9	41.3	30.6	100.0(3,421)	6.853
	중소도시	2.92(0.88)	7.2	21.5	43.0	28.2	100.0(4,222)	
	읍면지역	2.96(0.90)	7.4	20.4	41.4	30.8	100.0(1,03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5(0.88)	6.9	20.8	42.3	30.0	100.0(7,775)	46.141***
	한부모가정	2.78(0.89)	8.8	26.5	42.5	22.2	100.0(654)	
	조손가정	2.90(0.92)	12.7	9.2	54.1	24.1	100.0(32)	
	기타	2.81(1.04)	15.0	19.7	34.7	30.7	100.0(151)	
학업 성적	상	3.20(0.83)	4.7	12.5	40.9	41.9	100.0(3,391)	694.854***
	중	2.87(0.85)	6.9	23.3	46.0	23.8	100.0(3,331)	
	하	2.59(0.91)	12.3	33.3	37.7	16.6	100.0(1,856)	
경제적 수준	상	3.07(0.87)	6.0	16.5	41.8	35.6	100.0(5,353)	401.778***
	중	2.76(0.86)	8.2	27.6	44.3	19.8	100.0(2,629)	
	하	2.54(0.91)	13.3	35.0	35.8	15.9	100.0(595)	

***p<.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6-21.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2013~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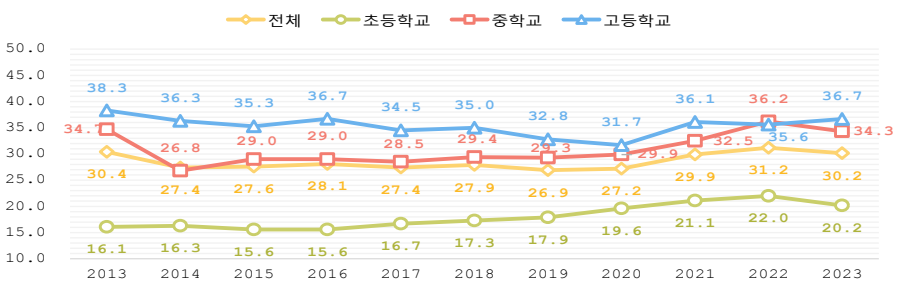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응답에서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중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경향은 유사했다. 이 문항 역시 연차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편이나 초중고에서 코로나19 전후로 완만한 상승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표 Ⅳ-6-42.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00(0.89)	35.2	34.6	25.5	4.7	100.0(8,703)	
성별	남학생	1.91(0.87)	38.8	35.7	21.6	3.9	100.0(4,472)	101.882***
	여학생	2.09(0.91)	31.5	33.5	29.5	5.5	100.0(4,231)	
학교급	초등학교	1.77(0.84)	46.2	33.7	17.2	3.0	100.0(3,010)	314.377***
	중학교	2.09(0.89)	30.3	35.4	29.0	5.3	100.0(2,944)	
	고등학교	2.14(0.90)	28.6	34.8	30.7	6.0	100.0(2,748)	
지역 규모	대도시	1.98(0.90)	36.5	33.4	25.7	4.5	100.0(3,427)	10.733
	중소도시	2.01(0.89)	33.8	35.7	25.7	4.7	100.0(4,231)	
	읍면지역	1.98(0.91)	36.8	34.2	23.6	5.4	100.0(1,04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8(0.89)	35.8	34.8	25.0	4.4	100.0(7,795)	44.788***
	한부모가정	2.20(0.92)	26.2	34.9	31.2	7.7	100.0(654)	
	조손가정	1.99(0.96)	39.7	27.7	26.8	5.9	100.0(32)	
	기타	1.96(0.96)	40.8	29.0	23.5	6.7	100.0(151)	
학업 성적	상	1.73(0.81)	47.6	34.3	15.7	2.4	100.0(3,402)	815.485***
	중	2.04(0.85)	30.8	38.5	26.9	3.8	100.0(3,343)	
	하	2.42(0.93)	19.9	28.4	41.0	10.7	100.0(1,854)	
경제적 수준	상	1.86(0.86)	41.6	34.6	20.4	3.4	100.0(5,371)	474.039***
	중	2.17(0.88)	26.0	36.2	32.4	5.4	100.0(2,632)	
	하	2.51(0.94)	17.5	27.9	40.9	13.7	100.0(595)	

***α<.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6-22.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2013~2023년)

⑥ 고민거리 대화상대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2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아동·청소년의 고민거리 대화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8.5%였다. 가장 높은 비율은 어머니(42%), 친구(36%) 순이었다. 담임 선생님(0.7%), 학교 상담선생님(0.5%),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선생님(0.3%) 등 공적 체계를 통해 고민거리를 나누는 경우는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다(8.5%)'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족유형에서 '조손가정(14.5%)', 학업성적 '하'(12.6%), 경제적 수준 '하'(16.3%) 집단에서 특히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43. 고민거리 대화상대

(단위 : %(명))

구분		없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담임선생님	학교상담선생님	친구	이웃/친척	청소년상담관련기관선생님	기타	전체(N)	χ^2
전체		8.5	5.5	42.0	5.3	0.7	0.5	36.0	0.5	0.3	0.7	100.0(8,296)	
성별	남학생	8.3	7.9	44.3	4.7	0.8	0.5	32.2	0.4	0.2	0.6	100.0(4,223)	150.835***
	여학생	8.7	3.0	39.7	5.9	0.5	0.5	39.9	0.6	0.4	0.9	100.0(4,073)	
학교급	초등학교	6.7	6.9	51.6	5.7	0.9	0.8	25.3	0.6	0.4	1.0	100.0(2,801)	294.068***
	중학교	9.3	4.7	37.8	4.2	0.8	0.6	41.5	0.3	0.3	0.5	100.0(2,843)	
	고등학교	9.5	4.9	36.5	6.1	0.3	0.2	41.2	0.5	0.3	0.6	100.0(2,652)	
지역규모	대도시	8.0	5.2	43.1	4.9	0.6	0.6	35.8	0.5	0.4	0.9	100.0(3,270)	27.382
	중소도시	8.6	5.7	41.8	5.5	0.8	0.4	35.8	0.3	0.4	0.6	100.0(4,040)	
	읍면지역	9.7	5.5	39.4	5.7	0.3	0.7	37.3	0.9	0.0	0.6	100.0(985)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8.1	5.1	43.3	5.4	0.6	0.5	35.7	0.4	0.3	0.7	100.0(7,476)	140.360***
	한부모가정	10.0	10.0	30.2	4.3	1.9	1.2	40.0	0.6	0.4	1.3	100.0(625)	
	조손가정	14.5	10.7	37.3	1.0	0.0	0.0	31.5	5.0	0.0	0.0	100.0(27)	
	기타	15.7	7.7	27.6	6.5	0.0	1.5	34.7	4.0	0.5	1.7	100.0(110)	
학업성적	상	7.1	5.9	47.6	5.2	0.5	0.3	31.8	0.6	0.1	0.8	100.0(3,250)	202.488***
	중	7.5	5.9	42.1	5.4	0.7	0.6	36.4	0.3	0.3	0.7	100.0(3,151)	
	하	12.6	3.9	31.4	5.2	0.8	0.8	43.3	0.5	0.8	0.6	100.0(1,806)	
경제적수준	상	6.8	6.3	45.2	5.3	0.5	0.4	33.8	0.6	0.3	0.7	100.0(5,099)	182.668***
	중	9.9	4.0	38.9	5.3	0.9	0.6	39.1	0.3	0.4	0.5	100.0(2,527)	
	하	16.3	4.5	26.8	4.7	1.1	0.8	42.8	0.4	0.6	1.8	100.0(581)	

***$p<.001$

’2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신규로 ‘어려운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9.5%로 10명 중 1명의 아동·청소년은 어려운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가족 유형 중 양부모 가정은 9.0%가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한부모 가정은 11.7%, 조손가정은 13.5%, 기타 가정은 20.6%로 가구 형태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표 Ⅳ-6-44. 어려운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는 사람

(단위 : %(명))

구분		없다	있다	전체(N)	χ^2
전체		9.5	90.5	100.0(8,748)	
성별	남학생	11.1	88.9	100.0(4,499)	26.395***
	여학생	7.9	92.1	100.0(4,249)	
학교급	초등학교	8.2	91.8	100.0(3,033)	9.499**
	중학교	10.5	89.5	100.0(2,952)	
	고등학교	10.0	90.0	100.0(2,763)	
고교 유형	일반계고	10.0	90.0	100.0(2,234)	0.018
	특성화계고	9.8	90.2	100.0(529)	
지역 규모	대도시	9.0	91.0	100.0(3,442)	2.757
	중소도시	9.8	90.2	100.0(4,256)	
	읍면지역	10.5	89.5	100.0(1,04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0	91.0	100.0(7,842)	28.032***
	한부모가정	11.7	88.3	100.0(654)	
	조손가정	13.5	86.5	100.0(33)	
	기타	20.6	79.4	100.0(149)	
학업 성적	상	7.5	92.5	100.0(3,419)	51.108***
	중	9.3	90.7	100.0(3,352)	
	하	13.5	86.5	100.0(1,874)	
경제적 수준	상	8.5	91.5	100.0(5,405)	23.834***
	중	10.7	89.3	100.0(2,640)	
	하	13.8	86.2	100.0(598)	

**$p<.01$, ***$p<.001$
*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2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신규 문항으로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여기서는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각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이 중 ‘진로나 진학 관련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성별로는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고, 경제적 수준별 차이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들의 지지체계는 가족유형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6-45.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비율(사회적 지지체계)

(단위 : %)

구분		내가 모르는 공부 내용이나 학업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앞으로의 진로나 진학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학교 가기 어려운 경우, 숙제 등 학교 일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파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전체		6.7	11.6	7.7	5.7	10.8	7.0
성별	남학생	7.7	12.0	9.6	6.3	12.9	8.4
	여학생	5.6	11.3	5.6	5.0	8.5	5.5
학교급	초등학교	6.0	13.1	8.6	4.4	14.4	6.7
	중학교	7.0	12.8	7.3	6.3	9.8	7.4
	고등학교	7.1	8.8	7.1	6.5	8.0	6.9
고교 유형	일반계고	6.9	8.8	6.4	6.0	7.2	6.3
	특성화계고	8.0	8.9	10.0	8.7	11.4	9.5
지역 규모	대도시	5.8	10.3	7.0	5.2	10.0	6.7
	중소도시	7.2	12.3	8.0	5.8	11.3	7.1
	읍면지역	7.3	12.9	8.6	6.6	11.6	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4	11.3	7.2	5.3	10.1	6.5
	한부모가정	8.7	13.3	10.0	8.3	15.4	9.1
	조손가정	5.8	15.8	7.9	10.6	10.9	10.7
	기타	12.2	17.9	18.6	11.1	21.7	16.1
학업 성적	상	5.2	9.7	6.0	4.4	9.4	5.9
	중	6.6	11.4	7.3	5.5	10.5	6.6
	하	9.5	15.1	11.2	8.3	13.5	9.6
경제적 수준	상	5.7	10.4	6.4	4.7	9.9	5.9
	중	7.3	12.7	9.0	6.4	10.9	7.6
	하	12.2	16.9	12.8	11.0	18.0	13.1

⑦ 사회적 고립감('2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신규로 UCLA 외로움 척도(loneliness scale) 중 4개 척도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감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에 '그렇다'('드물게 그렇다'+'가끔 그렇다'+'항상 그렇다'의 합산비율)고 느끼는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13.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는 46.6%,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는 36.1%,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42.1%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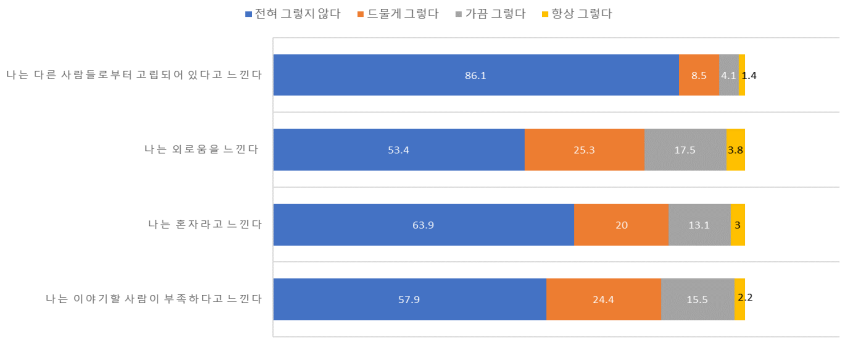


그림 Ⅳ-6-23. 사회적 고립감 4개 문항 결과(UCLA 외로움 척도)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에 '그렇다'('드물게 그렇다'+'가끔 그렇다'+'항상 그렇다'의 합산비율)로 응답한 아동·청소년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 기간'을 묻자 '6개월 미만'이 43.6%,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7.5%, '1년 이상 2년 미만'이 13.6%, '2년 이상 3년 미만'이 9.9%, '3년 이상'이 15.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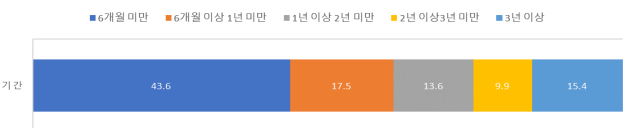


그림 Ⅳ-6-2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고립된 기간 응답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수준

① 취약계층 아동 현황(빈곤율 포함)

가. 아동빈곤율

아동빈곤율(child poverty rate)은 상대 빈곤 방식으로 빈곤율을 산정한 것으로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50%를 기준으로 빈곤 가정 내에 거주하는 아동의 수를 센 것이다. 상대빈곤 방식으로 아동빈곤율을 살펴보았을 때, 2016년 이래로 시장소득 기준 아동빈곤율과 가처분소득 기준 아동빈곤율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가처분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공공부조제도 이외에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이전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공적 이전으로 인한 빈곤감소 효과가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Ⅳ-6-46. 아동빈곤율(2016~2020년)

(단위 : %)

구분	중위소득 50%기준 상대적 아동빈곤율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16	15.5	15.2	15.2
2017	14.5	13.9	14.2
2018	13.1	12.3	12.3
2019	12.1	10.8	10.6
2020	12.9	10.5	9.8

* 출처: 김태완, 한수진, 이주미(2022). 2022 빈곤통계연보 〈표 3-11〉 아동빈곤율(중위소득·지출) p.43.

* 주: 1) 빈곤율을 조사하는 원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2016년 변경되었음.
2) 시장소득은 시장(노동, 금융, 서비스 시장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연금·정부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임.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중 아동·청소년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세부터 4세까지의 수급자 비율은 수급자 전체의 1.1%로 수급자수는 25,829명이었다. 5~9세는 3.2%로 75,178명이었다. 10~19세는 11.7%로 수급자 수는 275,527명이었다. 연령대별로 수급율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로 기준이 매우 낮으나,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선으로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18)]

표 Ⅳ-6-4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017~2022년)

(단위 : 명, %)

연도	0~4세	5~9세	10~19세	수급자 전체
2017	19,886	65,139	301,851	1,491,650
	1.3	4.4	10.1	100.0
2018	21,744	64,948	281,224	1,653,781
	1.3	3.9	8.5	100.0
2019	24,198	68,695	263,138	1,792,012
	1.4	3.8	14.7	100.0
2020	27,383	75,857	273,719	2,046,213
	1.3	3.7	13.4	100.0
2021	27,473	79,313	278,053	2,268,852
	1.2	3.5	12.3	100.0
2022	25,829	75,178	275,527	2,359,228
	1.1	3.2	11.7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3g).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주: 수급자 전체는 시설수급자(2016년도 91,075명)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전체를 말함.

우리나라에서 한부모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대비 감소 추세에 있다. 2016년 전체가구 대비 7.8%에서 2021년 6.9%로 0.9%p 가량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중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은 각각 18만 5천 가구와 3만 1천 가구였다. 연차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규모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으나, 한부모 가족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다.

18)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인 초중고등학생에게 자녀의 교육활동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연1회 지급하는 제도로, 초중고별로 일정 금액(초등 415,000원, 중등 589,000원, 고등 654,000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3).

표 Ⅳ-6-48. 한부모가구 비율(2016~2021년)

(단위 : 천 가구, %)

구분	전체가구	한부모가구[1]		한부모 가족지원 가구	
		계	전체가구 대비(%)	저소득 한부모가족[2]	한부모가족[3]
2016	19,838	1,540	7.8	188	62
2017	20,168	1,533	7.6	181	57
2018	20,500	1,539	7.5	184	56
2019	20,891	1,529	7.3	183	51
2020	21,485	1,533	7.1	184	40
2021	22,023	1,510	6.9	185	31

* 출처: 사회보장위원회(2023).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p.45.

* 주: 1) 한부모가구는 인구총조사 상'미혼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 이혼 및 사별인 모 또는 부(원거리 거주 부부 제외)의 가구'를 의미하므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대상인 한부모 가족과는 상이
2) 저소득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의미함.
3)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 동시 보장받는 가구를 제외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의미함.
4)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과 한부모가족 현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도 말 기준 자료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세부 구성을 보면 모자가족이 전체의 79.2%로 가장 많아 한부모 가족의 10가구 중 8가구는 모자가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017년 78.0%, 2018년 78.2%에서 약간 상승한 수치이다. 부자가족은 20.2%, 조손가족이 0.6%였다.

표 Ⅳ-6-49.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2017~2021년)

(단위 : 세대, 명, %)

구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17	수	181,023	449,469	141,207	350,674	38,880	96,575	936	2,220
	비율	100.0		78.0		21.5		0.5	
2018	수	182,731	452,341	142,830	353,658	38,979	96,522	922	2,161
	비율	100.0		78.2		21.3		0.5	
2019	수	182,606	453,045	143,740	356,895	37,969	94,064	897	2,086
	비율	100.0		78.7		20.8		0.5	
2020	수	184,006	457,236	145,482	361,998	37,660	93,234	864	2,004
	비율	100.0		79.1		20.5		0.4	
2021	수	185,461	463,084	146,973	367,366	37,432	93,260	1,056	2,458
	비율	100.0		79.2		20.2		0.6	

* 출처: 여성가족부(2022c).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4.
여성가족부(2023c).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4.

* 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 포함)

②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가.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지원

여기서는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예산 수준을 살펴보았다. 보호대상아동들을 위한 그룹홈 운영지원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 471억여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아동그룹홈 운영지원과 함께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요보호아동자립지원은 12억여원이었으며, 가정위탁지원은 78억여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가정위탁지원은 2022년 기존 예산이 크게 증액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전문아동보호비 및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후견인 선임·활동 지원 등이다(보건복지부, 2023d).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약 1,892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312억원 증액되었다.

표 Ⅳ-6-50.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예산(2019~2023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연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가정위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019	21,163	3,218	1,500	126,000 (4,135개소, 월 529만원)
2020	22,793	3,028	1,044	142,900 (4,148개소, 월 569만원)
2021	26,746	3,164	940	148,600 (4,169개소, 월 619만원)
2022	39,426	1,276	7,995	158,000 (4,261개소, 월 644만원)
2023	47,131	1,276	7,874	189,198

* 출처: 보건복지부(2019b).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복권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bokgwon.go.kr/fund/02_01.jsp에서 2021년 10월 14일 인출.
보건복지부(2020b).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27.
보건복지부(2020c).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일반회계). p.428.
보건복지부(2021b).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20, 84.
보건복지부(2021c).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p.128, 133.
보건복지부(2022d).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21, 85.
보건복지부(2022e).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p.443. 452.
보건복지부(2023d). 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23, 91.
보건복지부(2023e).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p.157, 165, 172.
보건복지부(2023f).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특별회계). p.12.

나.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2023).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 이래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229개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이용 아동 수도 2008년 9천명에서 2021년 16만 2천명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사업예산은 2018년 이래로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아동 수와 가구는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업예산의 확대가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Ⅳ-6-51.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현황 및 이용 아동 수(2017~2021년)

(단위 : 억원, 명, 가구)

구분	시·군·구 (사업실시 단위)	사업예산(억원)	아동 수(명)	가구 수(가구)
2017	229	668	144,289	93,298
2018	229	668	150,052	97,739
2019	229	677	156,439	102,459
2020	229	551	160,501	105,730
2021	229	533	162,451	108,047

* 출처: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p.241-242.

다.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만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등 초기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 2023e). 아동발달지원계좌의 브랜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2023).

디딤씨앗통장 지원아동수는 인구수의 감소로 인해 2018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고 있다. 월평균 적립금과 월평균 매칭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적립금 역시 2021년 기준 6,195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 중이다.

표 Ⅳ-6-52. 디딤씨앗통장 저축현황(2017~2021년)

구분	지원아동수(명)	월평균 적립금(원)	월평균 매칭금(원)	적립금 누계(억원)
2017	71,457	42,416	31,224	3,257
2018	81,412	46,970	32,538	3,880
2019	80,770	52,515	33,688	4,570
2020	74,685	65,013	39,632	5,397
2021	68,481	66,034	41,379	6,195

* 출처: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232.

* 주: 만기(18세) 후 통장보유 아동 제외.

6) 소결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다섯 번째 대분류인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지표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지표에서는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연도별 특수교육 학생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었다. 장애아동·청소년 통합보육·교육비율을 보면 연도별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었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배치도 늘어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장애학생의 증가, 장애학생 보육·교육 비율의 증가는 나타나고 있었으나 장애학생의 진학률과 취업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육, 교육의 개선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진학과 취업이라는 자립기반의 개선까지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생존 및 발달지표에서는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에서의 일부 개선과 악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동안 영아사망률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미등록 아동의 존재와 사망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이를 감안하면 실제 사망률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과 청년기 자살사망에 대한 관심과 함께 미등록 영유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 등으로의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는지 확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셋째, 보건서비스는 점진적으로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이 확대되는 등 개선이 있었지만, 지역간 편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연간 병의원 미충족의료율, 치과 미충족의료율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의료 접근권 보장, 더 나아가 건강권 보장에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건강수준,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의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코로나19 시기를 전후로 정서적 건강 차원에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확실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신체적 건강 중 과체중과 비만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은 전생애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체적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문항을 조사하였는데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도 성인들과 비교하여 문제가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지표에서는 아동빈곤율의 변화를 볼 수 있었는데, 다행히 시장소득 기준 아동빈곤율과 가처분 소득 기준 아동빈곤율 모두 감소 추세에 있었다. 특히 시장소득에 비해 가처분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이 더 낮게 나타나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드림스타트는 예산의 감소에도 대상 아동의 수와 가족 수를 늘리고 있었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드림스타트 예산 역시 함께 증가될 필요가 있다.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교육에의 권리

(1) 교육기회 보장 정도

①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본 장에서는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교육기회 보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 및 중등교육과정에서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물론 공교육비의 비율도 모두 증가하였는데, 두 지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증가폭도 OECD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과정의 경우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증가하였지만. 실제 규모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공교육비 비율도 OECD 평균의 경우 2000년에는 42%에서 2019년 37% 수준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00년에 40%에서 2019년 26%로 14%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과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공교육비는 OECD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나, 고등교육과정에서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물론 공교육비 비율도 OECD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7-1.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단위 : ppp, %)

구 분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2000 (2003)	한국	3,155	21	4,069	27	6,118	40
	OECD 평균	4,381	19	5,957	25	9,571	42
2005 (2008)	한국	4,691	22	6,645	31	7,606	36
	OECD 평균	6,252	21	7,804	26	11,512	40
2010 (2013)	한국	7,453	26	8,911	31	9,998	35
	OECD 평균	7,974	23	9,014	26	13,528	41
2015 (2018)	한국	11,047	31	12,202	35	10,109	29
	OECD 평균	8,631	22	10,010	25	15,656	38

구 분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2016 (2019)	한국	11,029	30	12,370	33	10,486	28
	OECD 평균	8,470	21	9,968	25	15,556	38
2017 (2020)	한국	11,702	29	13,579	33	10,633	26
	OECD 평균	9,090	21	10,547	24	16,327	36
2018 (2021)	한국	12,535	30	14,978	35	11,290	27
	OECD 평균	9,550	21	11,192	25	17,065	37
2019 (2022)	한국	13,341	31	17,078	40	11,287	26
	OECD 평균	9,923	22	11,400	24	17,559	37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a). 2022 간추린 교육통계. p.54.
김영지 외(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p.257-258.
* 원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각 년도.

* 주: 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산출식: 「OECD 교육지표 2018」부터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산출기준 변경
- 기존 산출식: {(경상지출+자본적 지출)/학생 수}/PPP
- 신규 산출식: {(교육기관 직접 지출)/학생 수}/PPP
2) 과정별 포함 학제는 일러두기 참조
3) 「OECD 교육지표 2019」부터 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이 공교육비에서 제외됨(고등교육단계는 「OECD 교육지표 2018」부터 제외)
4) 「OECD 교육지표 2017」부터 교육단계 구분 없는 프로그램의 지출액을 각 교육단계에 포함하여 공교육비 산출
–'10년(회계연도) 한국 자료는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 KEDI에서 산출한 수치임
5) 한국 1인당 GDP(회계연도 기준)는 '00년 US$ 15,186, '05년 US$ 21,342, '10년 US$ 28,829, '16년 US$ 37,143, '17년 US$ 41,001, '18년 US$ 42,487, '19년 US$43,045
6) 한국 PPP환율(회계연도 기준)은 '00년 $1당 731.19원, '05년 $1당 788.92원, '10년 $1당 823.67원, '16년 $1당 862.55원, '17년 $1당 871.70원, '18년 $1당 865.72원, '19년 $1당 864.63원

②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우선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모두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2011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4.6명에서 2022년에는 10.3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초등학교는 17.3명에서 13.7명으로, 중학교는 17.3명에서 11.7명으로, 고등학교에서는 14.8명에서 9.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는 물론 특목고, 특성화고 및 자율고에서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2. 교원 1인당 학생 수(2011~2022년)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유치원		14.6	14.5	14.3	13.4	13.4	13.3	12.9	12.3	11.9	11.4	10.9	10.3
초등학교		17.3	16.3	15.3	14.9	14.9	14.6	14.5	14.5	14.6	14.2	14.0	13.7
중학교		17.3	16.7	16.0	15.2	14.3	13.3	12.7	12.1	11.7	11.8	11.9	11.7
고등학교	전체	14.8	14.4	14.2	13.7	13.2	12.9	12.4	11.5	10.6	10.1	9.9	9.6
	일반고	15.8	15.4	15.2	14.6	14.1	13.7	13.1	12.1	11.1	10.7	10.5	10.3
	특목고	11.0	10.3	10.0	9.7	9.3	9.1	8.9	8.6	8.3	8.0	7.9	7.6
	특성화고	12.5	12.1	12.0	11.6	11.4	11.0	10.6	9.8	9.1	8.4	8.0	7.5
	자율고	15.2	14.6	14.3	13.9	13.7	13.5	13.2	12.4	11.5	11.1	11.2	11.4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a). 2022 간추린 교육통계. p.16.
김영지 외(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259.

* 주: 1)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생수 / 교원수
2) 유치원~고등학교 교원은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휴직 교원 포함. 퇴직 교원 및 강사는 제외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2011년 20.9명에서 2022년 16.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5.2명에서 21.1명으로, 중학교에서는 33명에서 25명으로, 고등학교에서는 33.1명에서 22.6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저출산 기조가 지속됨에 따른 학생 수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Ⅳ-7-3. 학급당 학생 수(2011~2022년)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유치원		20.9	21.6	21.5	19.7	20.0	19.7	19.0	17.9	17.0	16.7	17.5	16.7
초등학교		25.2	24.3	23.2	22.8	22.6	22.4	22.3	22.3	22.2	21.8	21.5	21.1
중학교		33.0	32.4	31.7	30.5	28.9	27.4	26.4	25.7	25.1	25.2	25.5	25.0
고등학교	전체	33.1	32.5	31.9	30.9	30.3	29.3	28.2	26.2	24.5	23.4	23.1	22.6
	일반고	34.7	34.2	33.6	32.4	31.3	30.6	29.3	27.1	25.2	24.2	24.0	23.7
	특목고	28.4	26.7	25.8	25.0	24.4	24.0	24.7	23.1	22.8	22.3	22.1	21.3
	특성화고	28.5	28.0	27.6	26.9	26.4	25.7	23.7	23.0	21.3	19.8	19.2	18.1
	자율고	33.5	32.3	31.5	30.7	30.3	30.2	29.6	28.1	26.5	25.5	25.9	26.0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a). 2022 간추린 교육통계. p.15.
김영지 외(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259.

* 주: 1) 학급당 학생수=학생수/학급수 (학급수는 인가학급 기준임)
2) 학급수 기준은 인가기준(~2020년)에서 편성기준(2021년~)으로 변경됨.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과 비교해 보면, 우선 초등학교에서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2000년에는 우리나라가 32.1명이고 OECD 평균이 17.7명으로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4.4명 더 많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그 차이가 1.9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중학교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00년에 비해 2020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의 변화도 동일한 양상을 보임으로써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Ⅳ-7-4.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국제비교

(단위 : 명)

구 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2000	한국	32.1	21.5	20.9	36.5	38.5
(2002)	OECD 평균	17.7	15.0	13.9	21.9	23.6
2005	한국	28.0	20.8	16.0	32.6	35.7
(2007)	OECD 평균	16.7	13.7	13.0	21.5	24.1
2010	한국	21.1	19.7	16.5	27.5	34.7
(2012)	OECD 평균	15.9	13.7	13.8	21.2	23.4
2015	한국	16.8	15.7	14.1	23.4	30.0
(2017)	OECD 평균	15.2	13.0	13.1	21.1	23.3
2016	한국	16.5	14.7	13.8	23.2	28.4
(2018)	OECD 평균	15.0	12.7	13.0	21.3	22.9
2017	한국	16.4	14.0	13.2	23.1	27.4
(2019)	OECD 평균	15.2	13.3	13.4	21.2	22.9
2018	한국	16.5	13.5	12.2	23.1	26.7
(2020)	OECD 평균	14.6	13.0	13.0	21.1	23.3
2019	한국	16.6	13.0	11.4	23.0	26.1
(2021)	OECD 평균	14.5	13.1	13.0	21.1	23.3
2020	한국	16.3	13.1	10.9	22.7	26.2
(2022)	OECD 평균	14.4	13.2	12.6	20.3	22.6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a). 2022 간추린 교육통계. p.51.
김영지 외(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260.
* 원자료: OECD(해당 발표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주: 1) 교사는 수업담당교사(교장·교감, 영양·사서·보건·전문상담교사 제외)만 대상
2) 구분 연도는 학년도, ( )안의 연도는 EAG(Education at a Glance)자료 발표년도
3) 2020학년도 자료는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에만 수록됨
4) 과정별 포함 학제는 일러두기 참조

③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사교육은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볼 때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초·중·고 모두 10% 내외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 2021년에 학생 1인당 32만 8천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였으나, 2022년에는 37만 2천원을 지출하여 2021년 대비 1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39만 2천원에서 43만 8천원으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41.9만원에서 46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지출하는 사교육비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계된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Ⅳ-7-5.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

구 분	전체 학생				참여 학생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1	36.7	32.8	39.2	41.9	48.5	40.0	53.5	64.9
2022	41.0	37.2	43.8	46.0	52.4	43.7	57.5	69.7
증감률	11.8	13.4	11.8	9.7	7.9	9.2	7.4	7.3

* 출처: 통계청(2023.3.7). 보도자료: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8.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70100&bid=245&tag=&act=view&list_no=424071&ref_bid=0에서 2023년 8월 16일 인출.

가구 소득 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및 참여율을 살펴보면, 2021년 대비 2022년에 사교육비는 36만 7천원에서 41만원으로, 참여율은 75.5%에서 78.3%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소득구간에서 사교육비와 참여율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의 소득수준과 사교육과는 정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가 2022년 12만 4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교육비는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64만 8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의 경우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참여율이 49.9%인데 비해 8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88.1%가 사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

록 지출하는 사교육비의 규모나 사교육 참여율이 높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Ⅳ-7-6.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 분	사교육비(만원, %)			참여율(%, %p)		
	2021	2022	증감률	2021	2022	증감
전체	36.7	41.0	11.8	75.5	78.3	2.8
300만원 미만	15.8	17.8	12.2	53.8	57.2	3.5
200만원 미만	11.6	12.4	7.0	46.6	49.9	3.3
200~300만원 미만	18.0	20.5	13.7	57.6	61.0	3.5
300~400만원 미만	25.3	27.2	7.5	70.0	70.4	0.4
400~500만원 미만	33.2	35.1	5.7	77.2	78.7	1.6
500~600만원 미만	38.1	39.9	5.0	80.3	81.2	0.9
600~700만원 미만	44.4	46.9	5.6	83.5	84.8	1.4
700~800만원 미만	48.6	51.8	6.5	84.9	86.6	1.6
800만원 이상	59.3	64.8	9.2	86.0	88.1	2.2

* 출처: 통계청(2023.3.7). 보도자료: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15.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70100&bid=245&tag=&act=view&list_no=424071&ref_bid=에서 2023년 8월 16일 인출.

* 주: 1) 가구소득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의 월 평균 소득 포함
2) 결과표 분류지표 추가: 가구의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구간

(2) 학교 부적응률

① 학업중단율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학업중단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업중단율이 1% 미만으로 2012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무교육기간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하던 학업중단율이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1.1%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1.9%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어 감에 따라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7.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12~2022년)

(단위 :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초등학교	0.6	0.6	0.5	0.5	0.6	0.6	0.7	0.7	0.4	0.6	0.7
중학교	0.9	0.8	0.7	0.6	0.6	0.7	0.7	0.8	0.5	0.5	0.7
고등학교	1.8	1.6	1.4	1.3	1.4	1.5	1.6	1.7	1.1	1.5	1.9
계 (학업 중단자)	1.0 (68,188)	0.9 (60,568)	0.8 (51,906)	0.8 (47,070)	0.8 (47,663)	0.9 (50,057)	0.9 (52,539)	1.0 (52,261)	0.6 (32,027)	0.8 (42,755)	1.0 (52,981)

* 출처: 교육부(2023.8.30b.) 보도자료: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별첨] 2023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14.

* 주: 1) 학업 중단율(%) = 학업 중단자 수 / 학생 수 * 100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 중단자로 봄
3)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

② 학업중단 생각과 이유

학교를 그만 두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29.5%가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생 10명 가운데 3명 정도는 학업중단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업중단 생각 경험은 남학생(24.8%)보다는 여학생(34.5%)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중단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31.3%)보다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38.8%)들의 학업중단 생각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일반고 학생들이 학교나 학업과 관련하여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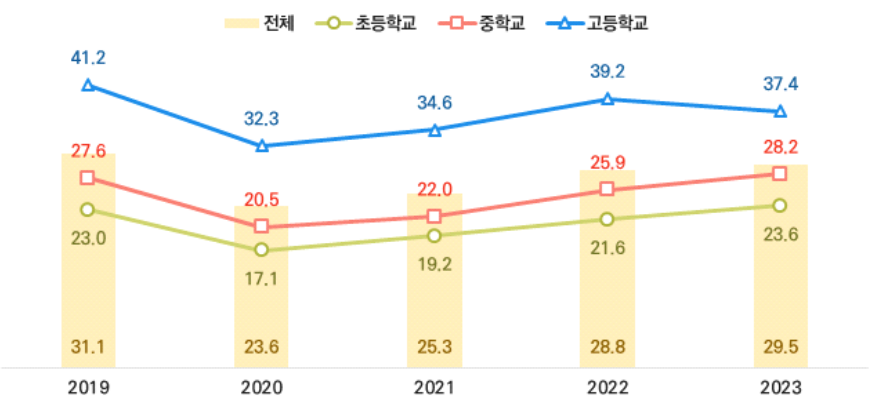
가족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생각 경험이 다른 가족 유형의 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중단 생각 경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신의 학업 성적 뿐 아니라 가족의 구성 유형이나 경제적 형편이 청소년의 학업중단 생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7-8. 학업중단 생각 경험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29.5	70.5	100.0(8,683)	
성별	남학생	24.8	75.2	100.0(4,460)	98.772***
	여학생	34.5	65.5	100.0(4,223)	
학교급	초등학교	23.6	76.4	100.0(2,960)	135.501***
	중학교	28.2	71.8	100.0(2,957)	
	고등학교	37.4	62.6	100.0(2,766)	
고교 유형	일반계고	38.8	61.2	100.0(2,237)	10.292**
	특성화계고	31.3	68.7	100.0(530)	
지역 규모	대도시	28.4	71.6	100.0(3,424)	3.252
	중소도시	30.3	69.7	100.0(4,228)	
	읍면지역	30.2	69.8	100.0(1,03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1	70.9	100.0(7,801)	14.468**
	한부모가정	36.2	63.8	100.0(641)	
	조손가정	26.3	73.7	100.0(32)	
	기타	29.3	70.7	100.0(146)	
학업 성적	상	22.8	77.2	100.0(3,388)	319.209***
	중	27.6	72.4	100.0(3,329)	
	하	45.9	54.1	100.0(1,867)	
경제적 수준	상	26.2	73.8	100.0(5,366)	136.360***
	중	32.6	67.4	100.0(2,620)	
	하	48.0	52.0	100.0(597)	

*p<.05, **p<.01, ***p<.001



* 주 :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7-1. 학업중단 생각 경험(연도별 추이)

표 Ⅳ-7-9. 학업중단 생각 이유

(단위 : %(명))

구분		괴롭힘을 당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기타	전체(N)
전체		5.0	12.8	3.5	0.3	25.8	3.6	7.2	26.0	15.8	100.0(2,472)
성별	남학생	5.6	10.9	5.7	0.5	29.0	4.3	6.7	20.9	16.5	100.0(1,063)
	여학생	4.6	14.2	1.9	0.1	23.4	3.1	7.6	29.8	15.3	100.0(1,409)
학교급	초등학교	12.0	7.5	5.3	0.6	29.2	2.8	3.1	20.9	18.7	100.0(683)
	중학교	3.7	10.3	2.7	0.0	27.0	4.2	7.3	31.2	13.5	100.0(801)
	고등학교	1.2	18.4	2.9	0.3	22.4	3.8	10.0	25.3	15.7	100.0(988)
고교 유형	일반계고	0.9	20.8	2.3	0.4	24.2	3.3	9.5	24.7	13.9	100.0(831)
	특성화계고	2.9	5.9	6.4	0.0	12.8	6.0	12.5	28.4	25.0	100.0(157)
지역 규모	대도시	5.2	12.4	3.3	0.2	23.4	3.5	8.0	26.5	17.5	100.0(934)
	중소도시	4.9	13.6	4.3	0.4	26.2	4.1	6.3	25.8	14.4	100.0(1,234)
	읍면지역	4.8	10.7	1.2	0.0	31.6	2.1	8.6	24.9	16.2	100.0(30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6	12.6	3.3	0.3	26.0	3.5	7.2	26.4	16.0	100.0(2,190)
	한부모가정	6.4	14.6	3.8	0.5	22.4	5.1	9.2	25.3	12.8	100.0(225)
	조손가정	0.0	49.8	0.0	0.0	15.6	9.4	0.0	8.8	16.4	100.0(8)
	기타	15.8	6.1	14.5	0.0	33.3	1.8	0.0	11.2	17.5	100.0(38)
학업 성적	상	7.6	6.2	5.8	0.1	23.3	4.8	6.2	26.3	19.8	100.0(747)
	중	4.7	12.5	2.1	0.4	27.9	3.3	5.5	27.3	16.4	100.0(892)
	하	3.0	19.2	2.7	0.3	25.6	3.0	10.0	24.4	11.8	100.0(818)
경제적 수준	상	6.2	11.9	3.3	0.0	26.3	4.1	6.3	26.1	15.8	100.0(1,358)
	중	3.3	15.7	3.6	0.2	25.8	2.9	8.2	24.9	15.4	100.0(823)
	하	4.1	8.9	3.6	2.2	21.9	3.7	9.2	28.7	17.8	100.0(276)

학업중단을 생각한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공부하기 싫어서'가 25.8%로 유사한 수준이었고, '기타'가 15.8%,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공부하기 싫어서' 학업중단을 생각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성별에 따라 학업중단을 생각하는 이유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중고 모두 '공부하기 싫어서'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게 나타남으로써 고등학생들이 학교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고등학교의 유형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고 학생의 경우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20.8%인 반면,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에는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가 12.5% 수준으로 다소 높았다. 즉 일반고 학생의 경우에는 성적이,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이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다는 것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의 목표

(1)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① 학교생활 만족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친구 간 존중, 교사의 존중, 수업의 재미, 학교생활의 즐거움 정도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다. 우선 친구 간 존중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4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에서 평균값이 3.32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인 평가를 한 청소년의 비율은 94.1%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존중과 배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긍정 응답 비율이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중고등학생들이 적절한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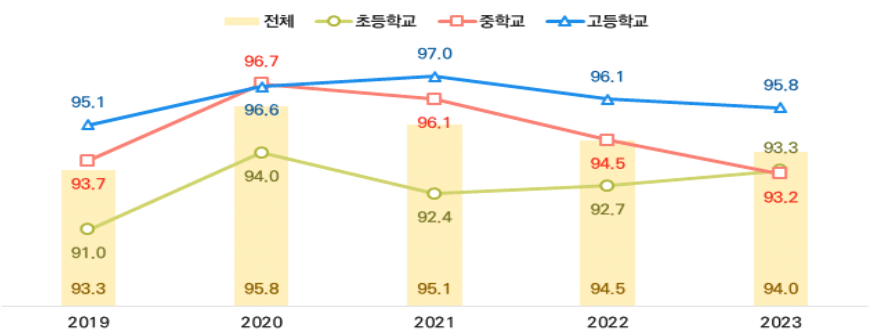
친구로부터 존중과 배려를 받고 있다는 긍정응답 비율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남으로써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문항에 대한 부정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친구로부터 존중과 배려를 받는데 있어 자신의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Ⅳ-7-10.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32(0.62)	1.3	4.6	54.5	39.6	100.0(8,745)	
성별	남학생	3.29(0.65)	1.6	5.7	55.1	37.6	100.0(4,498)	37.942***
	여학생	3.36(0.60)	1.0	3.6	53.8	41.6	100.0(4,247)	
학교급	초등학교	3.35(0.63)	1.0	5.7	51.1	42.2	100.0(3,029)	55.643***
	중학교	3.28(0.64)	1.8	5.0	57.0	36.2	100.0(2,955)	
	고등학교	3.35(0.60)	1.1	3.1	55.5	40.2	100.0(2,761)	
고교 유형	일반계고	3.38(0.59)	1.0	2.8	53.8	42.5	100.0(2,232)	27.909***
	특성화계고	3.23(0.61)	1.9	4.4	63.0	30.7	100.0(529)	
지역 규모	대도시	3.35(0.63)	1.3	4.5	51.8	42.4	100.0(3,440)	23.866***
	중소도시	3.30(0.63)	1.4	5.0	55.8	37.8	100.0(4,262)	
	읍면지역	3.31(0.60)	1.1	3.8	57.9	37.2	100.0(1,04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33(0.62)	1.2	4.6	54.3	39.9	100.0(7,847)	31.525***
	한부모가정	3.26(0.64)	1.8	5.5	57.1	35.5	100.0(649)	
	조손가정	3.08(0.78)	6.0	8.5	57.7	27.9	100.0(32)	
	기타	3.24(0.77)	4.4	7.2	48.9	39.5	100.0(151)	
학업 성적	상	3.41(0.61)	1.1	3.6	48.9	46.5	100.0(3,413)	141.926***
	중	3.29(0.61)	1.0	5.0	57.4	36.5	100.0(3,354)	
	하	3.22(0.65)	2.3	5.8	59.6	32.2	100.0(1,873)	
경제적 수준	상	3.38(0.62)	1.1	4.0	51.0	43.9	100.0(5,399)	152.165***
	중	3.26(0.61)	1.2	5.2	60.4	33.3	100.0(2,641)	
	하	3.13(0.70)	3.7	7.6	61.0	27.7	100.0(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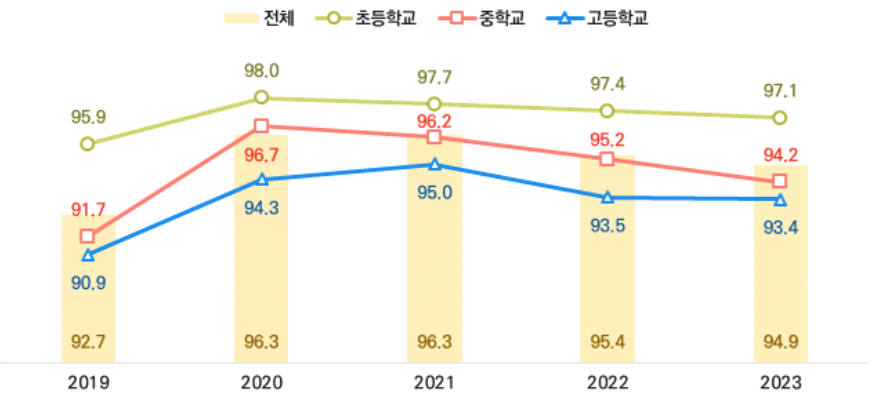
*p<.05, **p<.01, ***p<.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7-2.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하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4점 척도에서 3.46점으로 학교 친구들의 경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긍정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비율은 94.9%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모든 학교급에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사와 직접적인 접촉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등교 정상화 이후 직접적인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7-3.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연도별 추이)

표 Ⅳ-7-11.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46(0.63)	1.3	3.7	42.8	52.1	100.0(8,739)	
성별	남학생	3.44(0.67)	1.9	4.1	41.6	52.4	100.0(4,495)	31.358***
	여학생	3.47(0.60)	0.7	3.3	44.1	51.9	100.0(4,243)	
학교급	초등학교	3.66(0.56)	0.8	2.1	27.6	69.5	100.0(3,029)	576.802***
	중학교	3.38(0.64)	1.5	4.4	48.6	45.5	100.0(2,953)	
	고등학교	3.32(0.65)	1.7	4.9	53.3	40.1	100.0(2,756)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고교 유형	일반계고	3.34(0.63)	1.3	4.7	52.6	41.4	100.0(2,227)	20.469***
	특성화계고	3.22(0.70)	3.5	5.8	56.2	34.5	100.0(529)	
지역 규모	대도시	3.48(0.64)	1.4	3.6	40.5	54.5	100.0(3,440)	16.868**
	중소도시	3.44(0.64)	1.4	4.0	44.3	50.3	100.0(4,256)	
	읍면지역	3.46(0.61)	0.9	3.2	44.4	51.5	100.0(1,04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46(0.63)	1.2	3.7	42.8	52.3	100.0(7,841)	19.934*
	한부모가정	3.38(0.68)	2.4	4.0	46.4	47.2	100.0(648)	
	조손가정	3.39(0.71)	2.9	3.6	44.7	48.8	100.0(32)	
	기타	3.57(0.65)	2.3	1.7	33.2	62.8	100.0(151)	
학업 성적	상	3.57(0.61)	1.1	3.0	34.0	61.9	100.0(3,412)	287.761***
	중	3.44(0.61)	1.0	3.3	46.6	49.1	100.0(3,355)	
	하	3.29(0.67)	2.2	5.7	52.9	39.2	100.0(1,867)	
경제적 수준	상	3.52(0.62)	1.2	3.3	38.2	57.4	100.0(5,394)	195.549***
	중	3.38(0.62)	1.2	4.0	50.4	44.4	100.0(2,640)	
	하	3.24(0.71)	3.2	6.7	53.1	37.0	100.0(599)	

*p<.05, **p<.01, ***p<.001

선생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은 남학생보다는(94.0%) 여학생들에게서(96.0%)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작지만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특목고 학생들보다 선생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친구로부터의 존중에 대한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선생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학업성적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Ⅳ-7-12.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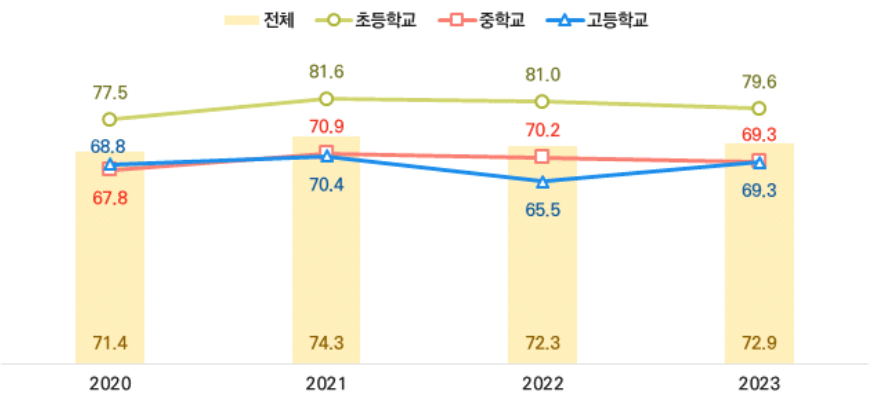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3(0.85)	6.5	20.6	46.0	26.9	100.0(8,736)	
성별	남학생	2.95(0.88)	7.1	19.9	44.1	28.8	100.0(4,492)	28.876***
	여학생	2.92(0.83)	5.8	21.3	48.1	24.8	100.0(4,244)	
학교급	초등학교	3.10(0.84)	5.0	15.4	44.0	35.6	100.0(3,025)	213.857***
	중학교	2.84(0.86)	7.6	23.1	47.0	22.3	100.0(2,952)	
	고등학교	2.84(0.85)	7.0	23.7	47.1	22.2	100.0(2,760)	
고교 유형	일반계고	2.86(0.85)	6.8	23.5	46.4	23.3	100.0(2,231)	8.179*
	특성화계고	2.78(0.83)	7.8	24.4	50.1	17.6	100.0(529)	
지역 규모	대도시	2.95(0.86)	6.5	20.1	44.8	28.6	100.0(3,440)	13.864*
	중소도시	2.93(0.85)	6.4	20.6	46.5	26.4	100.0(4,255)	
	읍면지역	2.87(0.84)	6.7	22.3	48.0	23.0	100.0(1,04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4(0.85)	6.4	20.6	45.9	27.1	100.0(7,838)	23.501**
	한부모가정	2.84(0.86)	8.4	21.2	48.9	21.5	100.0(649)	
	조손가정	2.59(0.90)	10.8	35.8	36.9	16.6	100.0(32)	
	기타	3.08(0.87)	5.6	16.9	41.6	35.9	100.0(151)	
학업 성적	상	3.14(0.81)	4.1	15.0	44.1	36.9	100.0(3,408)	589.033***
	중	2.91(0.80)	5.2	20.9	51.3	22.6	100.0(3,352)	
	하	2.59(0.91)	13.2	30.7	40.3	15.7	100.0(1,871)	
경제적 수준	상	3.03(0.84)	5.3	17.9	45.7	31.2	100.0(5,394)	231.827***
	중	2.81(0.84)	7.5	24.4	47.8	20.4	100.0(2,637)	
	하	2.59(0.89)	13.0	29.8	42.3	14.8	100.0(601)	

*p<.05, **p<.01, ***p<.001

수업시간이 재미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4점 척도에서 2.93점으로 앞의 2개 문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긍정 응답의 비율도 72.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이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수업시간의 흥미 정도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응답 유형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생각한 비율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보다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학교수업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낮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앞서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학교 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에 부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7-4.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연도별 추이)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운데 마지막으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평균 2.96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73.6%로 4명 가운데 약 3명 정도가 학교에 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코로나19로 학교 등교가 전면 중단되었다가 2021년에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그 비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남학생과 여학생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에게서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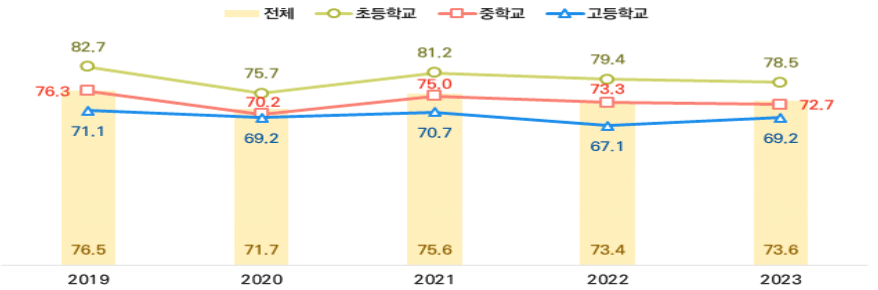
표 Ⅳ-7-1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6(0.88)	7.2	19.1	44.2	29.4	100.0(8,734)	
성별	남학생	2.95(0.90)	8.3	18.2	43.8	29.8	100.0(4,489)	19.005***
	여학생	2.96(0.86)	6.2	20.2	44.7	28.9	100.0(4,245)	
학교급	초등학교	3.11(0.87)	6.0	15.4	40.4	38.1	100.0(3,023)	197.427***
	중학교	2.93(0.87)	7.3	20.0	45.6	27.1	100.0(2,955)	
	고등학교	2.83(0.87)	8.6	22.3	47.0	22.2	100.0(2,757)	
고교 유형	일반계고	2.85(0.86)	7.7	22.7	46.8	22.8	100.0(2,228)	12.836**
	특성화계고	2.75(0.91)	12.2	20.4	47.8	19.6	100.0(529)	
지역 규모	대도시	2.98(0.88)	7.2	18.3	43.6	31.0	100.0(3,442)	14.143*
	중소도시	2.95(0.87)	6.9	19.4	45.0	28.7	100.0(4,258)	
	읍면지역	2.89(0.91)	8.8	20.8	43.3	27.1	100.0(1,03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6(0.87)	7.1	18.9	44.7	29.4	100.0(7,838)	43.778***
	한부모가정	2.82(0.92)	9.7	24.2	40.9	25.3	100.0(647)	
	조손가정	2.73(0.89)	7.7	32.2	39.7	20.5	100.0(32)	
	기타	3.14(0.95)	7.6	15.5	31.8	45.1	100.0(151)	
학업 성적	상	3.16(0.84)	5.0	13.6	42.2	39.2	100.0(3,413)	459.972***
	중	2.92(0.84)	6.4	20.5	47.8	25.3	100.0(3,348)	
	하	2.65(0.92)	12.8	27.3	41.8	18.0	100.0(1,869)	
경제적 수준	상	3.06(0.86)	5.9	16.1	43.9	34.1	100.0(5,391)	266.346***
	중	2.82(0.87)	8.6	23.2	46.2	22.0	100.0(2,639)	
	하	2.60(0.93)	13.6	30.1	39.1	17.3	100.0(599)	

*p<.05, **p<.01, ***p<.001

또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한 비율은 특성화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서 조금 높았으며, 이 문항에서도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의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4개의 문항에서 모두 부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두 요인은 학교에 대한 인식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7-5.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연도별 추이)

(2) 진로·직업교육

① 직업교육 현황

가. 직업교육 경험

2023년 우리나라의 15세부터 29세 청년들 가운데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16.1%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남자는 13.6%, 여자는 18.6%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이래 직업교육 경험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전체 청년들 가운데 18.8%가 직업교육을 받았으나,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23년에는 16.1%로 2018년에 비해 2.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최근 들어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청년이 이전에 비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7-14. 15~29세 청년 직업교육(훈련) 경험(2018~2023년)

(단위 : 천명, %)

구분	청년 인구	경험 비율	남자	여자
2018	9,157	18.8	16.3	21.3
2019	9,073	18.0	15.4	20.6
2020	8,934	18.2	15.8	20.6
2021	8,799	17.9	15.4	20.5
2022	8,595	17.0	14.5	19.5
2023	8,416	16.1	13.6	18.6

* 출처 : 통계청(2023.7.18). 보도자료: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p.10.
통계청(2018~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3S&conn_path=I2에서 2023년 10월 4일 인출.

* 주: 학교 교육 외에 학원이나 훈련 기관 및 시설 등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

나.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

직업계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전체 졸업자 68,585명 가운데 48.3%에 해당하는 33,115명이 전문대학이나 대학 등 상급학교로 진학하였으며, 26.8%에 해당하는 18,355명이 취업하였고, 진학자의 경우 대학보다는 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2017년의 직업계 특성화고 졸업자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2022년의 결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17년의 경우 전체 졸업자 중 진학자의 비율이 32.8%이고 취업자의 비율이 50%로 진학자보다 취업자가 많았으나, 2022년에는 그 반대로 취업자보다 진학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최근에는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취업보다는 진학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Ⅳ-7-15.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2017~2022년)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총계 (A)	진학자(B)							취업자	입대자	기타
		소계	국내진학				국외진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각종학교	전문대학	대학			
2017	96,022	31,466	21,934	6	8,937	400	79	110	48,001	429	16,126
2018	91,886	33,072	23,556	7	9,160	187	65	97	37,995	489	20,330
2019	90,116	38,321	27,139	8	10,845	139	36	154	27,904	701	23,190
2020	81,190	36,412	25,508	14	10,875	4	0	11	20,885	1,189	22,704
2021	70,802	33,859	22,290	0	11,557	0	7	5	18,492	1,295	17,156
2022	68,585	33,115	20,179	0	12,934	0	0	2	18,355	1,433	15,682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b). 2022 교육통계연보(유초중등통계). 연도별 고등학교 유형별 졸업 후 상황.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1&cd=5493&survSeq=2022&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B 2023년 8월 16일 인출.

* 주: 1) 조사 기준일
  - 졸업자: 해당년도 2월 기준 졸업자
  - 진학자: 2010년까지 해당년도 2월 기준, 2011년부터 해당년도 4월 1일 기준
  2) 고등학교 유형은 2011년 변경되었으나, 졸업자는 2014년부터 발생되어 2013년까지는 변경 전 학제로 졸업자를 표기함
  - 2010년까지: 일반계고/전문계고
  - 2011년부터: 일반고/특수목적고/특성화고(대안,특성화고 포함)/자율고
  3) 기타에는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 무직 및 미상, 제외인정자, 미취업자가 포함됨
  4) 진학자 학교 구분
  - 2020년까지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자는 국내(전문대학/교육대학/대학/각종학교), 국외(전문대학/대학)으로 조사함
  · 국내 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포함
  - 2021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자는 국내(전문대학, 대학), 국외(전문대학/대학)으로 조사함.

· 전문대학 : 전문대학(2,3,4년제), 기능대학, 전공대학, 사내대학(전문대학 과정) 포함
· 대학 :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대학과정), 사내대학(대학과정) 포함

5) 2020년부터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교육통계조사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졸업 후 상황은 매년 12월에 업데이트함
6) 2009년~2010년 교육통계연보에는 진학자에 특수학교 전공과가 포함됨. 본 자료에서는 자료의 일관성을 위하여 특수학교 전공과는 진학자에서 제외됨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을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전체 졸업자 가운데 27.8%가 취업을 한 반면, 42.5%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취업자보다는 진학자가 더 많았으나, 2022년에는 진학자의 비율이 45.2%인데 비해 취업자의 비율이 57.8%로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상황이 앞서 직업계 특성화고 졸업자의 상황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7-16. 직업계고 졸업자 졸업 후 상황(2020~2022년)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현황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 취업자	진학자 (진학률)	진학자 현황	
			보험 가입자	해외 취업자	농림 어업 종사자					전문 대학	대학
2020	89,998	24,938 (27.8)	24,858	-	80	1,585	970	24,290	38,215 (42.5)	27,169	11,046
2021	78,994	22,583 (55.4)	22,492	-	91	1,809	862	18,211	35,529 (45.0)	23,751	11,778
2022	76,760	22,709 (57.8)	22,603	21	85	1,873	942	16,550	34,686 (45.2)	21,517	13,169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d). 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p.1~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289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3년 8월 16일 인출.

* 주: 1) 조사기준일 : 2022년 4월 1일
2) 조사학교수 : 2019학년도 입학생 없는 3개교 포함(특성화고 2개교, 일반고직업반 1개교)
3) 졸업자 : 2022년 1월 및 2월 졸업자
4) 취업자 : 보험가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5) 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직장)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6) 보험가입자에는 '21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의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됨
7)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 100
8) 진학률(%) = (진학자 / 졸업자) × 100
※ 해외취업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등록된 해외취업자에 한하여 연계한 값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1) 여가·문화·활동 인프라 및 이용 만족도

①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시설 수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시설들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여가문화활동 인프라 구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총 837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청소년문화의집이 333개소로 가장 많고, 청소년수련관이 198개, 청소년수련원이 154개, 유스호스텔이 106개, 청소년야영장과 청소년특화시설이 각각 32개와 14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Ⅳ-7-17.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2019	전 체	814	188	289	171	38	114	14
2020	전 체	799	191	294	159	32	108	15
	공 공	601	190	290	62	18	27	14
	민 간	198	1	4	97	14	81	1
2021	전 체	813	195	314	154	33	103	14
	공 공	622	193	310	62	19	25	13
	민 간	191	2	4	92	14	78	1
2022	전 체	837	198	333	154	32	106	14
	공 공	647	196	329	64	19	26	13
	민 간	190	2	4	90	13	80	1

* 출처: 여성가족부(2020.3.31.). 20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9.12.31.기준).
여성가족부(2021.3.2.).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20.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91에서 2021년 8월 11일 인출.
여성가족부(2022.3.7.). 2021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21.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2년 8월 25일 인출.
여성가족부(2023.3.13.). 2022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22.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3년 8월 16일 인출.

특히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은 공공기관이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대부분인 반면,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은 814개에서 837개로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수는 증가한 반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 기관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18.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837	198	333	154	32	106	14
서울	72	32	25	3	0	4	8
부산	25	8	11	3	1	2	0
대구	20	5	9	2	0	2	2
인천	23	9	8	2	0	4	0
광주	16	5	9	1	0	0	1
대전	15	4	9	2	0	0	0
울산	13	4	7	1	1	0	0
세종	5	2	3	0	0	0	0
경기	171	38	79	31	8	14	1
강원	76	16	34	13	3	9	1
충북	47	7	16	18	1	5	0
충남	47	11	15	12	2	7	0
전북	57	11	22	13	3	7	1
전남	60	9	24	13	5	9	0
경북	62	16	18	13	2	13	0
경남	78	18	19	23	4	14	0
제주	50	3	25	4	2	16	0

* 출처: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584.

* 주: 국립청소년시설(6개)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도 평창군), 국립청소년우주센터(전라남도 고흥군), 국립청소년해양 센터(경상북도 영덕군),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라북도 김제시),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경상북도 봉화군).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171개로 가장 많은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남, 강원, 서울 지역에 70개 이상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의 경우 자연권 시설보다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등 생활권 시설의 수가 훨씬 많은 반면, 그 외의 광역단체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 시설과 청소년수련원 등의 자연권 시설도 적지 않게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과 더불어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공공도서관은 1,208개소, 박물관은 909개소, 미술관 285개소, 문예회관 267개소 등 총 3,145개의 문화기반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이러한 시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2015년에 930개소에서 2022년에 1,208개소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박물관은 809개소에서 909개소로, 미술관은 202개소에서 285개소로, 문예회관은 232개소에서 267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2015~2022년)

(단위 : 개소)

구분	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 문화센터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2015	2,519	1	930	809	202	-	232	229	116
2016	2,595	1	978	826	219	-	229	228	114
2017	2,657	1	1,010	853	229	-	236	228	100
2018	2,749	1	1,042	873	251	-	251	231	100
2019	2,825	3	1,096	881	258	-	255	231	101
2020	3,017	3	1,134	897	267	129	256	230	101
2021	3,087	4	1,172	900	271	147	262	230	101
2022	3,145	4	1,208	909	285	173	267	231	68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b).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p.19.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683&pDataCD=0417000000&pType=02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 주: 1)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의 집('14~), 생활문화센터('20~)를 통계에 포함
2) 2019년부터 국립도서관(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2개관, 2021년부터 국립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1개관을 통계에 포함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은 총 33,729개소로 이 가운데 간이 운동장이 25,455개소로 가장 많고 체육관이 1,275개소, 축구장이 1,095개소 등이 있으며,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4.64㎡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공공체육시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전체 시설 수가 15,137개소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이운동장의 경우 2010년 11,458개소에서 2021년에 25,455개소로 2.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체육관이나 축구장의 개소 수도 같은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당 체육시설 면적도 2010년의 3.12㎡에서 2021년에 4.64㎡로 약 1.5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개소 수가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체육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상당히 확충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Ⅳ-7-20. 전국 공공체육시설 연도별 현황(2010~2021년)

(단위 : 개소, ㎡)

구분	공공체육시설 수						1인당 체육시설 면적
	계	축구장	체육관	간이운동장	테니스장	기타	
2010	15,137	618	639	11,458	549	1,783	3.12
2011	16,127	649	681	12,194	565	2,038	3.29
2012	17,157	718	738	12,855	598	2,248	3.31
2013	19,398	801	819	14,536	660	2,582	3.57
2014	21,317	852	875	16,046	696	2,848	3.81
2015	22,662	886	905	17,111	718	3,042	3.89
2016	24,303	928	955	18,394	740	3,286	4.05
2017	26,927	984	1,010	20,602	772	3,559	4.28
2018	28,578	1,019	1,066	21,847	797	3,849	4.45
2019	30,185	1,040	1,139	22,866	818	4,322	4.51
2020	31,554	1,064	1,194	23,834	832	4,630	4.59
2021	33,729	1,095	1,275	25,455	856	5,048	4.64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2022).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1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 원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21년말 기준)

여가·문화시설의 인프라 구축에 따른 실제 이용 정도를 살펴보면, 우선 공공도서관의 경우 2023년 일 년에 1회 이상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5.4%가 일 년에 1회 이상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후 2021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이용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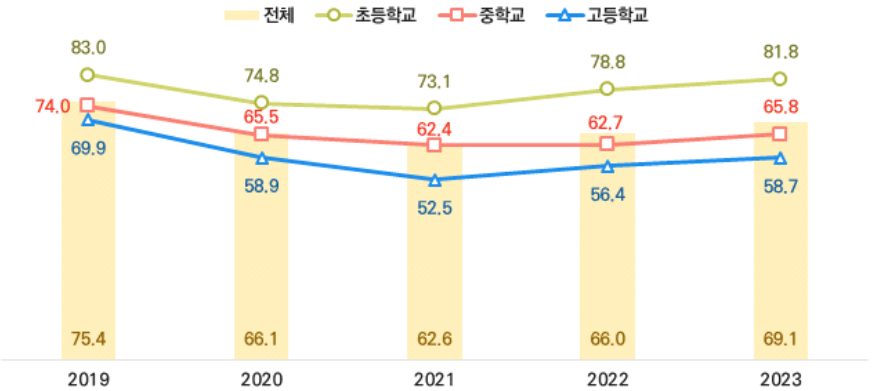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생에 비해 특성화계열 고등학생의 공공도서관 이용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으며, 양부모가정 이외의 가족 유형의 공공도서관 이용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더불어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공공도서관 이용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업성적이 높은 수준이거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공공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공도서관과 같은 공공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Ⅳ-7-21.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1) 공공도서관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30.9	27.5	16.9	14.6	10.1	100.0(8,721)	
성별	남학생	36.4	26.2	15.1	13.2	9.2	100.0(4,486)	133.441***
	여학생	25.1	28.9	18.8	16.0	11.1	100.0(4,235)	
학교급	초등학교	18.2	26.2	18.7	19.6	17.3	100.0(3,012)	597.777***
	중학교	34.2	29.6	16.4	12.4	7.3	100.0(2,944)	
	고등학교	41.3	26.6	15.4	11.4	5.3	100.0(2,765)	
고교 유형	일반계고	37.8	27.3	15.9	13.1	5.8	100.0(2,236)	75.164***
	특성화계고	56.0	23.6	13.0	4.0	3.3	100.0(529)	
지역 규모	대도시	30.6	27.3	16.4	14.8	10.9	100.0(3,430)	8.760
	중소도시	31.0	27.8	16.8	14.7	9.8	100.0(4,250)	
	읍면지역	31.9	27.2	18.7	13.4	8.9	100.0(1,04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1	27.8	17.0	15.1	10.1	100.0(7,827)	46.283***
	한부모가정	38.1	27.6	15.8	9.4	9.1	100.0(654)	
	조손가정	43.8	20.3	14.7	15.8	5.4	100.0(30)	
	기타	42.7	16.3	14.8	12.6	13.6	100.0(148)	
학업 성적	상	22.5	25.9	19.2	18.3	14.1	100.0(3,409)	353.280***
	중	33.0	29.3	15.9	13.6	8.2	100.0(3,344)	
	하	42.5	27.2	14.6	9.6	6.1	100.0(1,868)	
경제적 수준	상	28.2	27.5	16.8	16.0	11.5	100.0(5,385)	82.434***
	중	35.2	27.6	16.9	12.2	8.1	100.0(2,637)	
	하	35.7	26.9	18.8	12.2	6.3	100.0(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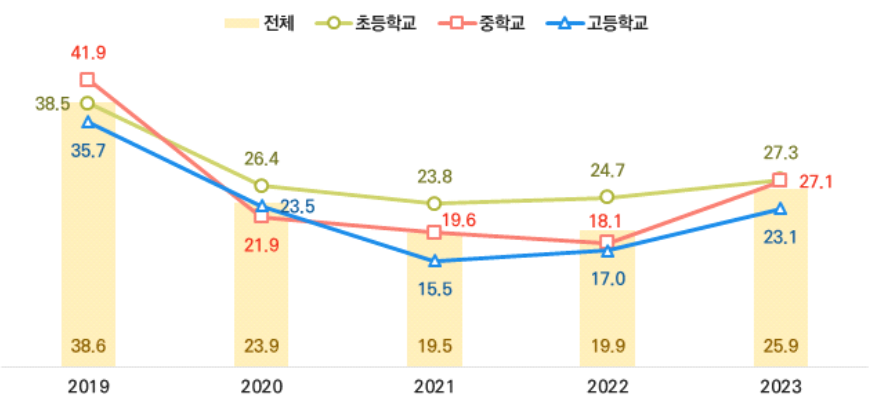
*p<.05, **p<.01, ***p<.001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7-6.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1) 공공도서관(연도별 추이)

공공도서관의 경우와 달리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2023년 일 년에 1회 이상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38.6%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후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경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2021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7-7.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2) 청소년수련시설(연도별 추이)

표 Ⅳ-7-22.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2)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74.1	15.9	3.9	3.2	2.8	100.0(8,676)	
성별	남학생	75.9	14.2	4.1	2.9	3.0	100.0(4,450)	26.053***
	여학생	72.3	17.8	3.7	3.5	2.7	100.0(4,226)	
학교급	초등학교	72.7	14.2	4.8	3.5	4.8	100.0(2,986)	105.441***
	중학교	72.9	17.7	3.5	3.4	2.6	100.0(2,934)	
	고등학교	76.9	16.0	3.4	2.6	0.9	100.0(2,756)	
고교 유형	일반계고	76.1	17.0	3.3	2.7	1.0	100.0(2,229)	8.432
	특성화계고	80.3	12.2	4.2	2.5	0.8	100.0(527)	
지역 규모	대도시	74.9	16.6	3.5	2.4	2.5	100.0(3,412)	35.219***
	중소도시	72.4	16.1	4.3	3.8	3.3	100.0(4,233)	
	읍면지역	78.6	13.0	3.4	3.2	1.8	100.0(1,03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3.9	16.3	3.9	3.2	2.8	100.0(7,789)	10.007
	한부모가정	77.0	13.6	3.8	2.6	2.9	100.0(647)	
	조손가정	73.7	16.3	1.9	8.1	0.0	100.0(30)	
	기타	74.9	12.3	3.8	4.0	4.9	100.0(149)	
학업 성적	상	71.1	17.4	4.3	3.5	3.6	100.0(3,396)	39.103***
	중	75.5	15.1	3.9	3.3	2.3	100.0(3,323)	
	하	77.4	15.0	2.9	2.5	2.3	100.0(1,859)	
경제적 수준	상	73.8	16.0	4.2	3.0	3.1	100.0(5,353)	12.465
	중	74.8	15.7	3.5	3.7	2.3	100.0(2,629)	
	하	74.2	17.5	2.9	2.7	2.8	100.0(596)	

*p<.05, **p<.01, ***p<.001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과 관련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이용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경험이 더 많았으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또한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이용 경험 수준은 비슷하였으나 고등학생들의 이용 경험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보다는 특성화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경험이 낮았으며, 대도시 지역보다는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이용 경험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경험도 낮았으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7-23.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31.6	25.5	13.6	10.3	19.0	100.0(8,692)	
성별	남학생	30.0	20.0	12.4	12.3	25.3	100.0(4,464)	358.332***
	여학생	33.3	31.4	14.9	8.2	12.2	100.0(4,229)	
학교급	초등학교	15.4	25.0	15.7	12.0	31.8	100.0(3,001)	941.894***
	중학교	33.4	27.0	14.4	10.2	14.9	100.0(2,934)	
	고등학교	47.2	24.6	10.5	8.5	9.2	100.0(2,758)	
고교 유형	일반계고	46.0	25.1	11.1	8.7	9.2	100.0(2,230)	9.251
	특성화계고	52.5	22.4	8.2	7.7	9.2	100.0(528)	
지역 규모	대도시	30.3	24.8	14.1	10.4	20.3	100.0(3,420)	26.282***
	중소도시	31.4	25.7	13.9	10.5	18.4	100.0(4,238)	
	읍면지역	36.5	26.9	11.1	9.0	16.4	100.0(1,03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9	25.6	13.8	10.5	19.3	100.0(7,806)	30.657**
	한부모가정	39.2	26.1	12.3	8.1	14.3	100.0(645)	
	조손가정	41.4	22.8	5.2	18.2	12.3	100.0(29)	
	기타	33.2	21.0	15.9	11.1	18.8	100.0(149)	
학업 성적	상	23.6	25.3	14.9	12.0	24.2	100.0(3,405)	282.215***
	중	33.2	26.8	13.3	9.4	17.2	100.0(3,330)	
	하	43.3	23.8	11.6	9.0	12.2	100.0(1,859)	
경제적 수준	상	26.8	25.7	14.1	11.7	21.7	100.0(5,368)	194.612***
	중	38.8	25.8	12.9	8.3	14.1	100.0(2,627)	
	하	42.1	24.2	12.8	6.8	14.1	100.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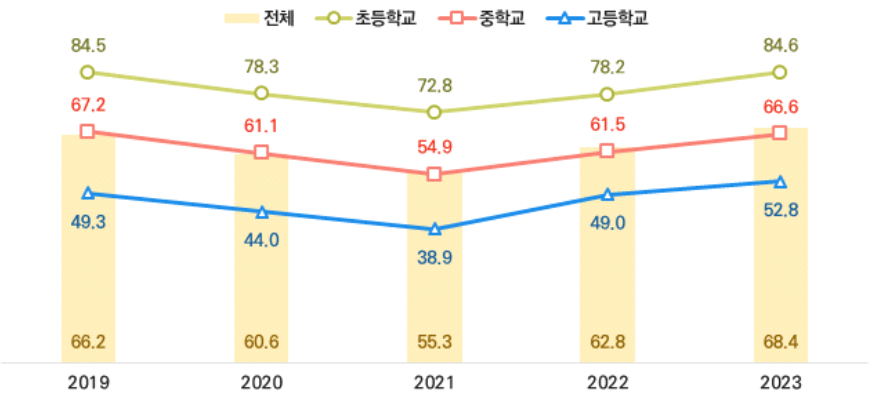
*p<.05, **p<.01, ***p<.001

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이용 경험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68.4%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3명 가운데 2명 정도는 적어도 일 년에 1회 이상 체육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 이용 경험의 경우도 공공도서관 이용에서와 마찬가지로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조사 결과 2019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경험과는 달리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급에 따른 이용 경험은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체육시설 이용 경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보다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체육시설 이용 경험이 낮은 수준이었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도 낮은 경향을 보임으로써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체육시설 이용 경험과도 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7-8.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3) 체육시설(연도별 추이)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과 관련하여 2023년 조사에서 적어도 일 년에 1회 이상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2%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이용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시설 이용 경험은 2019년 이후 감소하다가 2021년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이용 정도가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에 있어서도 다른 시설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문화예술 공간 이용 경험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성화계 고등학생보다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이용 경험이 높았고, 읍면지역보다는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이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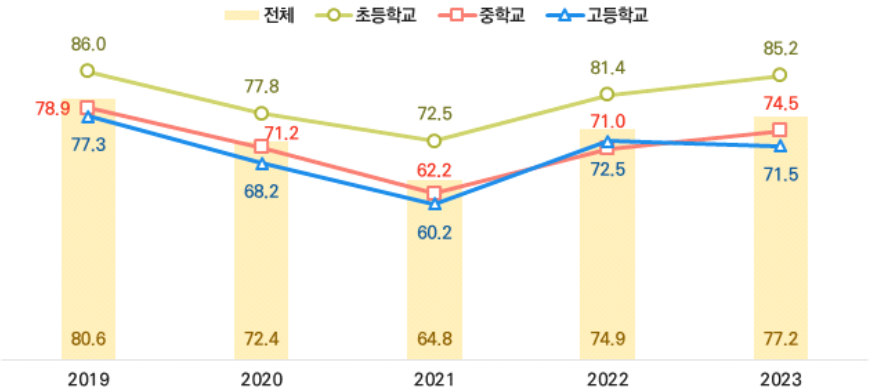
표 Ⅳ-7-24.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22.8	32.8	27.8	14.3	2.3	100.0(8,677)	
성별	남학생	28.0	30.6	25.4	13.7	2.3	100.0(4,455)	142.649***
	여학생	17.3	35.1	30.3	15.0	2.3	100.0(4,222)	
학교급	초등학교	14.8	38.7	28.5	14.8	3.1	100.0(2,985)	238.457***
	중학교	25.5	33.2	27.3	11.9	2.1	100.0(2,935)	
	고등학교	28.5	26.0	27.5	16.4	1.7	100.0(2,757)	
고교 유형	일반계고	27.1	25.8	28.7	16.6	1.8	100.0(2,231)	15.501**
	특성화계고	34.4	26.5	22.5	15.5	1.1	100.0(527)	
지역 규모	대도시	20.6	30.7	30.8	15.4	2.5	100.0(3,415)	45.712***
	중소도시	23.8	34.2	26.2	13.6	2.2	100.0(4,226)	
	읍면지역	25.9	33.7	24.6	13.7	2.1	100.0(1,03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2.0	33.3	28.2	14.2	2.3	100.0(7,783)	30.684**
	한부모가정	29.6	28.4	24.2	16.3	1.5	100.0(651)	
	조손가정	32.5	34.9	21.9	10.7	0.0	100.0(30)	
	기타	26.6	30.5	25.3	14.7	2.9	100.0(149)	
학업 성적	상	16.4	33.6	30.2	16.7	3.1	100.0(3,399)	195.317***
	중	24.0	33.7	27.6	12.8	1.9	100.0(3,320)	
	하	32.1	29.7	23.5	13.1	1.6	100.0(1,859)	
경제적 수준	상	19.9	33.5	28.7	15.1	2.8	100.0(5,362)	86.725***
	중	27.0	32.1	26.1	13.5	1.4	100.0(2,620)	
	하	30.0	29.6	26.9	12.1	1.5	100.0(596)	

*p<.05, **p<.01, ***p<.001

이와 더불어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은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도 문화예술 공간 이용 경험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예술 공간을 자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7-9.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4) 문화 예술 공간(연도별 추이)

②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 만족도

여가·문화·활동 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만족 여부를 살펴보면, 2023년 조사에서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4점 척도에서 평균 3.29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긍정 응답('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비율도 96.0%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 만족도의 연도별 변화 추이는 최근 5년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높은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부정 응답('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와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의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4.8%로 여학생(3.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시설 이용에 따른 만족도도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시설 이용에 따른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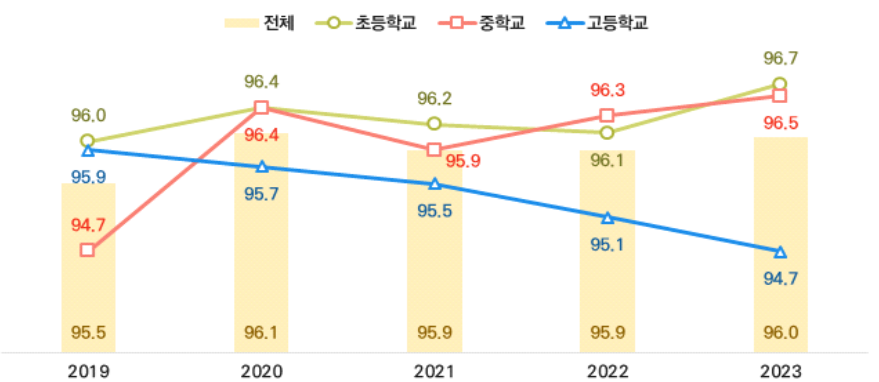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시설 이용에 따른 만족도도 낮은 경향을 보임으로써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 만족도와 학업성적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는 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25.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χ^2
전체		3.29(0.56)	0.7	3.3	62.9	33.2	100.0(7,674)	
성별	남학생	3.29(0.59)	1.1	3.7	60.6	34.6	100.0(3,824)	32.801***
	여학생	3.28(0.53)	0.3	2.9	65.1	31.7	100.0(3,850)	
학교급	초등학교	3.41(0.58)	0.7	2.6	52.2	44.5	100.0(2,840)	285.014***
	중학교	3.24(0.53)	0.6	2.8	68.0	28.5	100.0(2,555)	
	고등학교	3.18(0.53)	0.6	4.7	70.4	24.3	100.0(2,279)	
고교 유형	일반계고	3.19(0.53)	0.6	4.4	70.5	24.5	100.0(1,871)	2.609
	특성화계고	3.15(0.55)	0.8	6.2	70.0	23.0	100.0(408)	
지역 규모	대도시	3.30(0.56)	0.8	2.9	61.5	34.9	100.0(3,052)	14.956*
	중소도시	3.28(0.56)	0.6	3.7	63.0	32.7	100.0(3,741)	
	읍면지역	3.25(0.54)	0.6	3.3	66.9	29.2	100.0(88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9(0.55)	0.6	3.2	63.0	33.3	100.0(6,936)	34.403***
	한부모가정	3.21(0.56)	1.3	3.8	67.5	27.5	100.0(549)	
	조손가정	3.24(0.67)	0.0	12.3	51.6	36.1	100.0(23)	
	기타	3.39(0.66)	1.7	5.0	46.5	46.9	100.0(118)	
학업 성적	상	3.36(0.55)	0.3	2.9	57.2	39.6	100.0(3,149)	134.881***
	중	3.26(0.53)	0.6	2.7	66.7	29.9	100.0(2,914)	
	하	3.18(0.57)	1.2	5.1	67.7	26.0	100.0(1,535)	
경제적 수준	상	3.34(0.55)	0.3	2.9	59.7	37.1	100.0(4,837)	130.727***
	중	3.22(0.54)	0.9	3.5	68.2	27.4	100.0(2,256)	
	하	3.11(0.58)	2.0	6.3	70.9	20.9	100.0(505)	

*p<.05, **p<.01, ***p<.001



* 주: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7-10.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연도별 추이)

(2)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 정도

①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최근 5년간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를 살펴보면, 적극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소 수동적인 형태의 활동 참여도는 유사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5~19세 청소년들 가운데 문화예술 관람이나 참여를 여가활동으로 지속적으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에 각각 13.7%, 9.0%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각각 3.3%, 4.1%로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연령대에 비해서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포츠 관람의 경우 2018년 3.3%에서 2022년에는 4.3%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취미·오락도 38.5%에서 41.9로 소폭 상승하였다. 스포츠 참여는 2018년 30.2%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 30.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15~19세 청소년들의 경우 시간과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는 활동에의 참여보다는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형태의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Ⅳ-7-26.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복수응답)

(단위 : %)

구분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취미·오락	사회 및 기타
2018	전체	5.8	5.9	2.0	44.0	1.6	27.6	13.1
	15-19세	13.7	9.0	3.3	30.2	0.2	38.5	5.1
2019	전체	6.5	4.9	1.8	36.1	2.5	30.8	17.5
	15-19세	13.1	9.6	1.0	30.6	-	35.0	10.9
2020	전체	2.1	4.1	1.4	44.3	2.7	33.4	12.0
	15-19세	2.6	8.0	1.8	33.1	0.2	49.8	4.5
2021	전체	1.5	4.2	1.3	42.6	4.0	35.8	10.5
	15-19세	4.9	6.6	1.2	38.4	0.2	46.1	2.5
2022	전체	2.4	3.1	2.5	36.2	4.2	31.8	19.7
	15-19세	3.3	4.1	4.3	30.8	0.9	41.9	14.7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a).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문화체육관광부(2019a).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문화체육관광부(2020a).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문화체육관광부(2021a).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문화체육관광부(2022a). 2022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 주: 1) 2019년, 2020년 모두 만 15세 이상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는 2019년 10,060명, 2020년 10,088명으로(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 그 가운데 청소년은 2019년 661명, 2020년 619명으로 연령은 15~19세임.

2) 사회 및 기타 활동은 봉사활동, 친구만남 등 사회공헌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함.
3) 지속적 여가활동이란 휴식활동을 제외한 여가활동 중 일/주/월/년 단위로 지속적(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을 의미함.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을 살펴보면, 15~19세 청소년의 경우 최근 5년간 평일과 휴일의 여가활동 시간은 각각 2.8시간에서 3.1시간으로, 5.1시간에서 5.4시간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증가폭은 전체 집단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5~19세 청소년의 여가시간 중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2018년 평일과 주말 사용시간은 각각 1.9시간과 2.8시간이었으나, 2022년에는 각각 1.8시간과 2.6시간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의 경우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이 약간 증가한 것에 비해 15~19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크지는 않지만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27.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단위 : 시간)

년도	구분	평일		휴일	
		여가활동 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여가활동 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2018	전체	3.3	1.3	5.3	1.8
	15-19세	2.8	1.9	5.1	2.8
2019	전체	3.5	1.3	5.4	1.6
	15-19세	3.0	1.9	5.5	2.6
2020	전체	3.7	2.0	5.6	2.3
	15-19세	3.3	2.8	5.8	3.6
2021	전체	3.8	1.9	5.8	2.3
	15-19세	3.4	2.6	5.8	3.4
2022	전체	3.7	1.4	5.5	1.8
	15-19세	3.1	1.8	5.4	2.6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a).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p.44.
문화체육관광부(2019a).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p.44.
문화체육관광부(2020a).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p.45.
문화체육관광부(2021a).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p.45.
문화체육관광부(2022a). 2022 국민여가활동조사. p.45.

* 주: 1) 2019년, 2020년 모두 만 15세 이상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는 2019년 10,060명, 2020년 10,088명으로(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 그 가운데 청소년은 2019년 661명, 2020년 619명으로 연령은 15~19세임.
2) 스마트기기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를 뜻함.

②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2023년 조사에서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42.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특히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의 여가활동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최근 5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증가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20년의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가시간이 갑자기 증가하였다가 등교 정상화에 따라 점차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평일 여가시간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여가시간은 거의 유사한 반면, 이들에 비해 고등학생의 여가시간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보다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여가시간이 더 길었으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여가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의 여가시간이 중간이나 낮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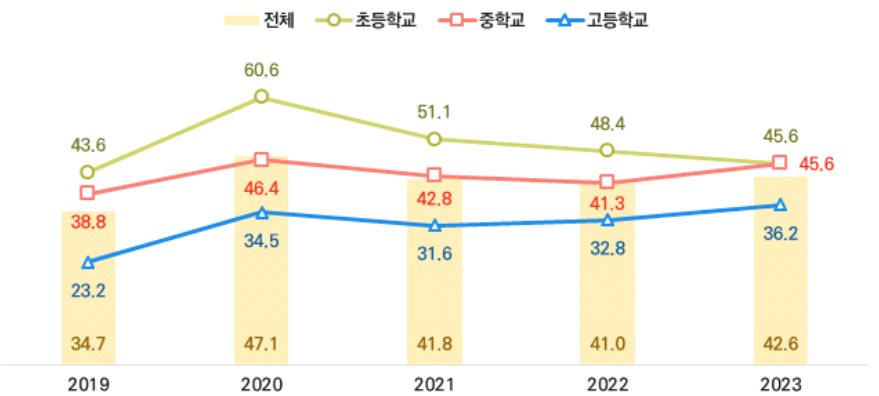
표 Ⅳ-7-28. 평일 여가시간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전체(N)	χ^2
전체		11.0	23.3	23.1	18.4	9.8	14.4	100.0(8,720)	
성별	남학생	10.5	23.4	23.3	18.4	9.3	15.1	100.0(4,482)	7.203
	여학생	11.5	23.2	22.9	18.4	10.3	13.8	100.0(4,237)	
학교급	초등학교	12.4	20.6	21.3	17.5	11.8	16.3	100.0(3,012)	138.495***
	중학교	8.4	21.4	24.6	20.9	10.0	14.7	100.0(2,949)	
	고등학교	12.1	28.3	23.5	16.6	7.4	12.1	100.0(2,758)	
고교 유형	일반계고	12.9	30.5	24.9	16.0	5.7	10.0	100.0(2,229)	126.135***
	특성화계고	8.9	18.8	17.4	19.4	14.4	21.2	100.0(529)	
지역 규모	대도시	11.6	25.1	23.8	17.3	8.9	13.4	100.0(3,430)	32.309***
	중소도시	10.7	22.6	23.1	18.7	10.1	14.9	100.0(4,247)	
	읍면지역	10.1	20.3	21.0	20.8	11.6	16.1	100.0(1,04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1.0	23.9	23.6	18.4	9.3	13.7	100.0(7,824)	100.848***
	한부모가정	8.4	17.1	18.2	18.6	14.8	22.9	100.0(655)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전체(N)	χ^2
	조손가정	9.3	17.7	19.3	2.5	27.4	23.8	100.0(30)	
	기타	17.5	22.5	17.4	19.0	10.4	13.2	100.0(151)	
학업 성적	상	12.3	25.8	24.8	17.1	9.0	11.0	100.0(3,409)	147.413***
	중	10.4	22.8	23.5	18.9	10.4	14.0	100.0(3,344)	
	하	9.2	19.8	19.5	19.8	10.3	21.4	100.0(1,872)	
경제적 수준	상	10.9	24.0	23.5	18.6	9.6	13.4	100.0(5,388)	27.962**
	중	10.5	22.2	23.0	18.8	10.1	15.5	100.0(2,635)	
	하	13.3	22.1	21.0	14.4	10.6	18.6	100.0(602)	

*p<.05, **p<.01, ***p<.001



* 주: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의 합계(단위: %)

그림 Ⅳ-7-11. 평일 여가시간(연도별 추이)

③ 하루 평균 학습 시간

평일 학습시간을 살펴보면, 2023년 조사의 경우 하루 평균 학습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루 3시간 이상 학습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0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중학생의 경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3시간 이상을 학습을 위해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습시간은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계 고등학생보다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습시간이 훨씬 더 많았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이 다른 유형의 가정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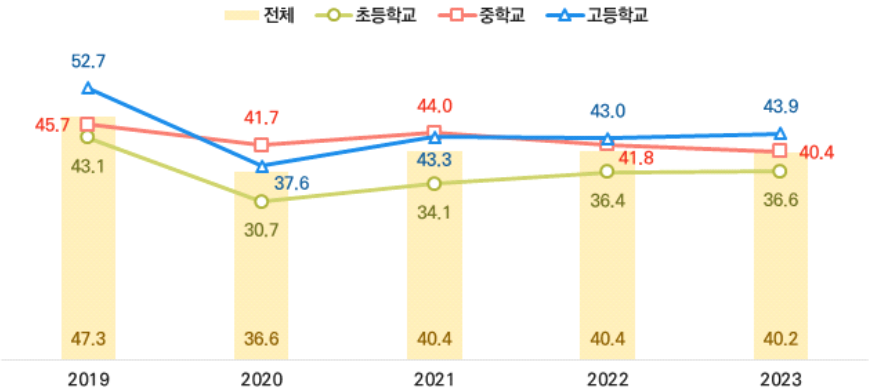
특히 학교성적과 학습시간과의 관계는 예상대로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평일 3시간 이상 학습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29. 평일 학습 시간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전체(N)	χ^2
전체		16.1	21.0	22.7	18.5	11.5	6.3	3.9	100.0(8,737)	
성별	남학생	17.8	21.0	22.9	17.1	10.6	6.6	4.1	100.0(4,497)	34.306***
	여학생	14.4	20.9	22.6	19.9	12.5	6.0	3.7	100.0(4,240)	
학교급	초등학교	14.8	24.8	23.9	16.9	10.1	5.8	3.7	100.0(3,025)	110.725***
	중학교	14.7	20.7	24.2	19.6	11.7	5.9	3.2	100.0(2,955)	
	고등학교	19.2	17.0	19.9	19.0	12.8	7.3	4.8	100.0(2,758)	
고교 유형	일반계고	13.5	15.4	20.6	21.6	14.8	8.4	5.7	100.0(2,228)	333.729***
	특성화계고	43.1	23.9	17.1	7.7	4.2	3.0	1.0	100.0(530)	
지역 규모	대도시	13.5	19.0	21.7	19.3	13.5	8.0	4.9	100.0(3,437)	115.300***
	중소도시	17.6	21.5	23.0	18.6	10.5	5.5	3.4	100.0(4,255)	
	읍면지역	18.8	25.3	24.9	15.2	8.8	4.2	2.7	100.0(1,04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4.9	20.7	23.1	18.8	11.8	6.5	4.1	100.0(7,837)	108.568***
	한부모가정	27.6	22.2	19.7	15.0	9.0	4.5	2.0	100.0(657)	
	조손가정	34.0	27.6	20.7	10.0	4.6	3.1	0.0	100.0(32)	
	기타	23.5	24.5	18.9	17.9	8.5	4.4	2.3	100.0(151)	
학업 성적	상	7.6	18.5	23.6	20.3	15.0	9.0	5.9	100.0(3,419)	709.592***
	중	15.8	22.6	23.8	19.8	10.5	5.1	2.6	100.0(3,347)	
	하	31.7	22.8	19.2	13.2	7.0	3.7	2.4	100.0(1,873)	
경제적 수준	상	12.9	20.5	22.7	19.7	12.8	6.9	4.6	100.0(5,398)	172.327***
	중	19.6	22.1	23.7	17.0	9.6	5.3	2.6	100.0(2,640)	
	하	27.8	20.9	19.3	15.4	8.6	5.2	2.7	100.0(602)	

*p<.05, **p<.01, ***p<.001



* 주: '3~4시간', '4~5시간', '5~6시간', '6시간 이상'의 합계(단위: %)

그림 Ⅳ-7-12. 평일 학습 시간(연도별 추이)

4) 소결

본 장에서는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과 관련한 인권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교육에의 권리, 교육의 목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그 양상을 검토하였다.

우선 교육에의 권리 영역은 교육기회 보장 정도와 학교 부적응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기회 보장과 관련하여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 및 중등교육과정에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물론 공교육비의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증가폭도 OECD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과정의 경우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물론 공교육비 비율도 OECD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모두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저출산 기조가 지속됨에 따른 학생 수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볼 때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초·중·고 모두 10% 내외 정도 증가하였고, 가구 소득 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및 참여율을 살펴보면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지출하는 사교육비의 규모나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초등과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공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사교육비 지출 규모 및 참여율이 가구의 소득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사교육의 경우 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 부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업중단율을 검토하였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업중단율이 1% 미만으로 2012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2022년에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어 감에 따라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학생 10명 가운데 3명 정도는 학업중단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특성화계열 고등학교보다는 일반계열 고등학교 재학생이,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를 그만두는 생각을 한 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학업중단을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와 공부하기 싫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서는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과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한 지표를 검토하였는데, 우선 학교생활 만족도에 있어서 친구 간 존중, 교사의 존중, 수업의 재미, 학교생활의 즐거움 정도 등을 살펴보았다. 친구 간 존중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한 청소년의 비율은 94%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존중과 배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하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은 94.9%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시간이 재미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의 비율이 72.9%로 2021년 이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었고,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지에 대한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73.6%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것은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4개 문항 모두에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 응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학생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하여 2023년 우리나라의 15세부터 29세 청년들 가운데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16.1% 수준이었는데, 최근 들어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청년이 이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취업보다는 진학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자의 비율이 더 높았던 2017년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2022년에는 진학자의 비율이 45.2%인데 비해 취업자의 비율이 57.8%로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교육의 활성화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 영역은 여가문화예술활동 인프라 및 이용만족도와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 정도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여가문화예술활동 시설의 수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총 837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청소년문화의집이 333개소로 가장 많고, 청소년수련관이 198개, 청소년수련원이 154개, 유스호스텔이 106개, 청소년야영장과 청소년특화시설이 각각 32개와 14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9년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은 814개에서 837개로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수는 증가한 반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 기관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경우 2015년에 930개소에서 2022년에 1,208개소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박물관은 809개소에서 909개소로, 미술관은 202개소에서 285개소로, 문예회관은 232개소에서 267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은 총 33,729개소로 이 가운데 간이 운동장이 25,455개소로 가장 많고 체육관이 1,275개소, 축구장이 1,095개소 등이 있으며,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4.64㎡이었으며,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개소 수가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체육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상당히 확충된 것으로 사료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2023년 조사에서 일 년에 1회 이상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5.4%가 일 년에 1회 이상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후 2021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2023년 일년에 1회 이상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9% 수준에 불과한 반면, 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이용 경험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68.4%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3명 가운데 2명 정도는 적어도 일 년에 1회 이상 체육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과 관련하여 2023년 조사에서 적어도 일년에 1회 이상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2%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이용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시설 이용 경험은 2019년 이후 감소하다가 2021년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설 이용에 있어서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3년 조사에서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긍정 응답 비율이 96.0%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변화 추이는 최근 5년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높은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를 살펴보면, 15~19세 청소년들의 경우 시간과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는 활동에의 참여보다는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형태의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기기 활용과 관련하여 15~19세 청소년의 경우 최근 5년간 평일과 휴일의 여가활동 시간은 각각 2.8시간에서 3.1시간으로, 5.1시간에서 5.4시간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증가폭은 전체 집단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3년 조사에서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42.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여가활동 시간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증가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0년의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가시간이 갑자기 증가하였다가 등교 정상화에 따라 점차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평일 학습시간을 살펴보면, 2023년 조사의 경우 하루 평균 학습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2%였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더 높았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습시간은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성적과 학습시간과의 관계는 예상대로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평일 3시간 이상 학습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특별보호조치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구 수

① 아동·청소년 난민 수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난민 신청한 18세 미만 자의 수는 646명으로, 전체 신청자 가운데 5.6% 수준이었다. 같은 해 난민으로 인정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수는 87명으로 전체 인정자 가운데 49.7%였고,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경우는 34.3%에 해당하는 2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 난민 신청자 수는 2019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2년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난민 인정자 수와 인도적 체류 허용자의 수도 마찬가지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표 Ⅳ-8-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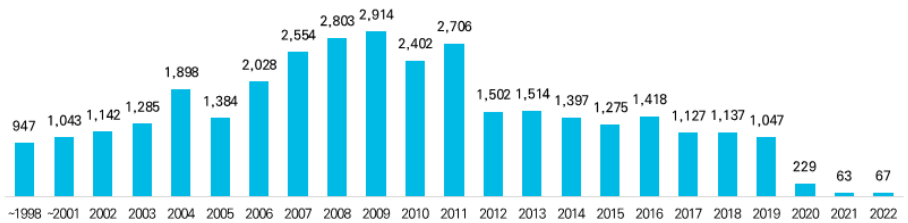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신 청			인 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 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2003 이전	9	3.6	251	0	0.0	14	0	0.0	13	0	0.0	41	3	7.3	41
2005	9	2.2	410	0	0.0	9	3	23.1	13	0	0.0	76	1	3.2	31
2010	30	7.1	423	6	12.8	47	5	14.3	35	4	1.3	310	2	2.8	71
2015	315	5.5	5,711	40	38.1	105	52	26.8	194	-	-	3,976	-	-	280
2016	342	4.5	7,541	47	48	98	114	46.3	246	-	-	4,978	-	-	731
2017	357	3.6	9,942	48	39.7	121	102	32.1	318	-	-	5,582	-	-	1,200
2018	556	3.4	16,173	61	42.4	144	38	7.4	514	-	-	3,221	-	-	2,029
2019	459	3.0	15,451	37	46.8	79	41	17.7	232	-	-	5,287	-	-	4,139
2020	279	4.2	6,684	36	52.2	69	20	12.9	155	-	-	6,542	-	-	5,930
2021	188	8.0	2,341	40	55.6	72	11	24.4	45	-	-	5,920	-	-	3,694
2022	646	5.6	11,539	87	49.7	175	23	34.3	67	-	-	5,277	-	-	639

* 출처: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 p.529.
법무부(2015.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p.33.
법무부(2021).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96-107.
법무부(2022).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104, p.107, p.110.
법무부(2023a).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 98, 102, 103, 105, 106, 107, 109.

② 탈북 난민 아동·청소년 수

탈북 난민 아동·청소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을 보면,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큰 규모로 감소한 이후 다시 2020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3명, 67명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통일부(2022). 2022 통일백서. p.287.
통일부(2023). 2023 통일백서. p.121.

* 주: 단위: 명

그림 Ⅳ-8-1.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023년 6월까지의 전체 탈북자의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3,898명의 입국자 가운데 입국 당시의 연령이 10~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3,814명으로 전체 입국자 가운데 11.3% 수준이었으며, 20~29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8.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51	1,706	2,632	2,168	1,405	591	356	9,509
여	646	2,108	6,978	7,572	4,624	1,463	998	24,389
합계	1,297	3,814	9,610	9,740	6,029	2,054	1,354	33,898

* 출처: 통일부(2023.6). 북한이탈주민정책. 연도별 고등학교 유형별 졸업 후 상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2023년 8월 17일 인출.

* 주: 2023년 6월 기준. 입국당시 연령 기준이며,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있는 일부인원은 제외된 수치로 입국인원과 차이가 있음.

③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수

2021년 기준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 수는 전체 289,529명으로 이 가운데 남자가 147,612명으로 51%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가운데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는 15,807명으로 5.5% 수준이었으며, 국내 출생 자녀는 273,722명으로 94.5%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거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귀화 및 외국 국적자녀는 물론 국내 출생 자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3.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2017~2021년)

(단위 : 명, %)

구분	합계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			국내 출생 자녀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7	222,455	113,686	108,769	10,153	4,825	5,328	212,302	108,861	103,441
2018	237,506	121,278	116,228	11,361	5,441	5,920	226,145	115,837	110,308
2019	264,626	135,110	129,516	12,660	6,026	6,634	251,966	129,084	122,882
2020	275,990	140,750	135,240	14,344	6,846	7,498	261,646	133,904	127,742
2021	289,529	147,612	141,917	15,807	7,513	8,294	273,722	140,099	133,623

* 출처: 행정안전부(2019.11).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18년 11월 1일 기준). p.75.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행정안전부(2020.11).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19년 11월 1일 기준). p.71.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행정안전부(2021.1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20년 11월 1일 기준). p.73.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GrK7W-FqVupq+xriLgQUMwRY.node5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8648에서 2022년 8월 26일 인출.
행정안전부(2022.11).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21년 11월 1일 기준). p. 72.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96092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 주: 1) 외국인주민 자녀는 미성년자만 집계한 것임.
2) 전체 외국인주민 유형에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및 한국국적취득자로 분류

2022년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은 114,555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39.6%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이 37.6%, 중고등학생이 22.8%로 나타남으로써 저연령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10세 아동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청소년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4.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령별		합계		귀화 및 외국 국적		국내 출생	
		N	구성비	N	구성비	N	구성비
계		289,529		15,807		273,722	
소계		114,555	39.6	3,835	24.3	110,720	40.4
미취학 아동	0세	14,525	5.0	27	0.2	14,498	5.3
	1세	16,080	5.6	181	1.1	15,899	5.8
	2세	16,779	5.8	406	2.6	16,373	6.0
	3세	16,169	5.6	619	3.9	15,550	5.7
	4세	16,502	5.7	728	4.6	15,774	5.8
	5세	17,176	5.9	935	5.9	16,241	5.9
	6세	17,324	6.0	939	5.9	16,385	6.0
소계		108,953	37.6	5,980	37.8	102,973	37.6
초등학생	7세	17,332	6.0	1,008	6.4	16,324	6.0
	8세	17,455	6.0	972	6.1	16,483	6.0
	9세	18,618	6.4	1,030	6.5	17,588	6.4
	10세	19,019	6.6	957	6.1	18,062	6.6
	11세	18,769	6.5	951	6.0	17,818	6.5
	12세	17,760	6.1	1,062	6.7	16,698	6.1
소계		66,021	22.8	5,992	37.9	60,029	21.9
중고생	13세	17,051	5.9	1,150	7.3	15,901	5.8
	14세	15,252	5.3	1,104	7.0	14,148	5.2
	15세	11,130	3.8	996	6.3	10,134	3.7
	16세	8,963	3.1	970	6.1	7,993	2.9
	17세	7,445	2.6	939	5.9	6,506	2.4
	18세	6,180	2.1	833	5.3	5,347	2.0

* 출처: 행정안전부(2022.11.).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21년 11월 1일 기준). p. 75.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96092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참가율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를 검토하였다. 우선 2022년 기준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총 168,645명으로 2020년의 147,378명에 비해 21,267명이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국내 출생자는 126,029명으로 74.7% 수준이었으며, 중도입국자는 9,938명, 외국인가정 자녀는 32,6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2022년 기준 초등학생의 비율이 66.2%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이 23.6%, 고등학생이 1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비율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이 소폭 상승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학생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8-5.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2020~2022년)

(단위 : 명, %)

구분	2020				2021				2022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국내 출생	85,101	19,556	9,117	113,774	86,410	25,429	10,254	122,093	84,251	30,081	11,697	126,029
중도 입국	5,088	2,488	1,575	9,151	4,969	2,801	1,657	9,427	5,104	2,907	1,927	9,938
외국인 가정	17,581	4,791	2,081	24,453	20,051	5,817	2,668	28,536	22,349	6,911	3,418	32,678
계	107,770	26,835	12,773	147,378	111,430	34,047	14,579	160,056	111,704	39,899	17,042	168,645
비율	73.1	18.2	8.6	100	69.6	21.2	9.1	100	66.2	23.6	10.1	100

* 출처: 교육부(2023.2).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안). p.26.
* 원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 주: 1) 다문화 학생 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 + 중도입국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2) 국제결혼가정 자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분류됨
2-1) 국내 출생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2-2) 중도입국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3) 외국인 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4)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아버지 국적에 따름

다문화 학생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0.55%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에는 3.19%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6〉을 살펴보면, 다문화학생 수는 2011년에 38,678명에서 2022년에는 168,645명으로 약 4.36배 증가한 반면, 전체 학생 수는 같은 기간 동안 6,986,853명에서 5,284,718명으로 감소함으로써 다문화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전체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Ⅳ-8-6.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2011~2022년)

(단위 :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다문화 학생 수(A)	38,678	46,954	55,780	67,806	82,536	99,186
전체 학생 수(B)	6,986,853	6,732,071	6,489,349	6,294,148	6,097,297	5,890,949
다문화 학생 비율 (A/B*100)	0.55	0.70	0.86	1.08	1.35	1.68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다문화 학생 수(A)	109,387	122,212	137,225	147,378	160,056	168,645
전체 학생 수(B)	5,733,132	5,592,792	5,461,614	5,355,832	5,332,044	5,284,718
다문화 학생 비율 (A/B*100)	1.91	2.19	2.51	2.75	3.00	3.19

* 출처: 김영지 외(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p.298.
교육부(2023.2).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안). p.26.

* 주: 2013년도 이후의 수치는 가장 최근 자료에 제시된 수치를 참고하였음.

다음 탈북학생들의 연도별 재학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4월 기준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의 수는 모두 2,061명으로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25.3%, 중학생이 32%, 고등학생이 35.2%였으며, 그 외 특수학교 등 기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도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탈북학생의 연령대가 다소 높아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초등학생의 비율은 2011년의 60.7%에서 2022년에는 25.3%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중학생의 비율은 17.1%에서 32%로, 고등학생의 비율은 22.2%에서 35.2%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Ⅳ-8-7.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2010~2022년)

(단위 : 명, (%))

구분	학교 유형				합계
	초	중	고	기타학교*	
2010.4	773(54.5)	297(21.0)	347(24.5)	-	1,417
2011.4	1,020(60.7)	288(17.1)	373(22.2)	-	1,681
2012.4	1,204(60.4)	351(17.6)	437(21.9)	-	1,992
2013.4	1,159(57.3)	478(23.6)	385(19.0)	-	2,022
2014.4	1,128(51.7)	684(31.3)	371(17.0)	-	2,183
2015.4	1,224(49.5)	824(33.3)	427(17.3)	-	2,475
2016.4	1,143(45.4)	773(30.7)	601(23.9)	-	2,517
2017.4	1,027(40.5)	726(28.6)	785(30.9)	-	2,538
2018.4	932(36.7)	682(26.9)	751(29.6)	173(6.8)	2,538
2019.4	877(34.6)	738(29.2)	752(29.7)	164(6.5)	2,531
2020.4	741(30.4)	782(32.1)	738(30.3)	176(7.2)	2,437
2021.4	654(28.6)	740(32.4)	739(32.3)	176(6.7)	2,287
2022.4	522(25.3)	659(32.0)	725(35.2)	155(7.5)	2,061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2). 2022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2022년 4월 기준). https://www.hub4u.or.kr/webmdl/sub4uStudentStatus/menuHtmlDetail.do에서 2023년 8월 18일 인출.
* 원자료: 교육부(2022). 2022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22.4 기준).

* 주: 기타학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을 말함.

다문화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2021년 전체 학생들 가운데 학업중단율은 0.8%인데 비해 다문화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0.82%로 거의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이나 유학, 해외출국 등을 제외한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 비율은 전체 학생의 경우 0.5%인데 비해 다문화학생들은 0.34%로 일반 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Ⅳ-8-8.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2013~2021년)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0.93(0.53)	0.83(0.45)	0.77(0.41)	0.81(0.43)	0.87(0.47)	0.94(0.50)	0.96(0.51)	0.60(0.38)	0.80(0.50)
다문화	1.03(0.38)	1.01(0.38)	0.85(0.29)	0.88(0.29)	1.17(0.32)	1.03(0.27)	0.95(0.28)	0.67(0.23)	0.82(0.34)

* 출처: 교육부(2019.2).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2.
교육부(2020.2).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4.
교육부(2021.2).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5.
교육부(2022.2).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5.
교육부(2023.2).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안). p.4.

* 주: 괄호 안은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질병, 유학, 해외출국 제외)

다문화학생들의 학업중단율과 더불어 2022년 탈북청소년들의 중도탈락율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0.3%, 중학생은 1.8%, 고등학생은 2.6%로 일반 학생들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3% 전후의 중도탈락율을 보이던 코로나19 이전 시기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Ⅳ-8-9.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2008~2022년)

(단위 : 명, %)

구 분		초	중	고	계
2008	2007.4. 재학생 수	341	232	114	687
	학업중단자 수	12	30	32	74
	학업중단율	3.5	12.9	28.1	10.8
2017	2016.4. 재학생 수	1,143	773	601	2,517
	학업중단자 수	11	14	26	51
	학업중단율	1.0	1.8	4.3	2.0
2018	2017.4. 재학생 수	1,026	697	661	2,384
	학업중단자 수	7	20	32	59
	학업중단율	0.7	2.9	4.8	2.5
2019	2018.4. 재학생 수	932	682	751	2,365
	학업중단자 수	13	22	35	70
	학업중단율	1.4	3.2	4.7	3.0
2020	2019.4. 재학생 수	877	738	752	2,367
	학업중단자 수	13	20	36	69
	학업중단율	1.5	2.7	4.8	2.9
2021	2020.4. 재학생 수	741	782	738	2,261
	학업중단자 수	4	9	14	27
	학업중단율	0.5	1.2	1.9	1.2
2022	2021.4. 재학생 수	654	740	739	2,061
	학업중단자 수	2	13	19	34
	학업중단율	0.3	1.8	2.6	1.6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2). 2022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2022년 4월 기준). p.4. https://www.hub4u.or.kr/webmdl/sub4uStudentStatus/menuHtmlDetail.do에서 2023년 8월 18일 인출.

* 주: 1) 학업중단율 = (해당연도 학업중단자 총수 /전년 재학생 총수) × 100
2) '17년 이전: 전년도 재학생 수 및 해당연도 학업중단자 수에 기타학교를 포함하여 산출
'18년 이후: 유초중등교육통계 학업중단율 산출 방법* 준용
3) 재학생 및 학업중단자에 기타학교(각종학교, 공민학교 등) 학생 제외

②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차별 경험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15~19세 연령대의 응답자 가운데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인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60대까지는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나이가 어릴수록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래 차별 경험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15~19세 집단의 경우 2017년에 7.9%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2019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대의 경우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 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2019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성은 젊은 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Ⅳ-8-10.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차별 경험(2017~2022년)

(단위 :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차별/무시당한 경험		차별/무시당한 경험		차별/무시당한 경험		차별/무시당한 경험		차별/무시당한 경험		차별/무시당한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5~19세	7.9	92.1	6.0	94.0	8.8	91.2	4.1	95.9	4.9	95.1	2.7	97.3
20대	17.4	82.6	16.6	83.4	15.1	84.9	13.2	86.8	11.8	88.2	11.2	88.8
30대	24.2	75.8	20.4	79.6	16.9	83.1	16.6	83.4	15.3	84.7	17.6	82.4
40대	26.2	73.8	25.0	75.0	19.4	80.6	21.4	78.6	16.8	83.2	21.8	78.2
50대	27.8	72.2	21.2	78.8	18.3	81.7	21.4	78.6	22.1	77.9	26.1	73.9
60대 이상	17.1	82.9	10.9	89.1	14.7	85.3	15.6	84.4	12.3	87.7	15.7	84.3

*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2022). 202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pp.109~110.
통계청 e-나라지표. 지난 1년동안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당한 경험(2017~202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7&tblId=DT_43701N_194&vw_cd=MT_ZTITLE&list_id=D2_437001_00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2023년 8월 19일 인출.

* 주: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년 조사

③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구금 현황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의 구금 현황을 살펴보면, 2개 외국인보호소와 1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의 구금 정도는 2015년 34명에서 2019년 57명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2년에는 3명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이주아동의 구금 정도는 예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Ⅳ-8-11. 이주아동 구금현황(2015~2022년)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화성외국인보호소	25	24	24	24	32	8	5	1
청주외국인보호소	7	13	8	25	19	2	2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2	4	3	4	6	2	1	2

* 출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5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2021.8.26.). 이주아동 구금현황 참고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2022.9.23.). 이주아동 구금현황 참고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2023.9.19.). 이주아동 구금현황 참고자료.

2) 소년 사법

(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현황

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시설 수용 인원수

자유박탈 아동 및 청소년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2011년 이후 새롭게 수용되는 인원은 2012년 10,011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5,68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보호소년은 1,520명이고 위탁소년은 4,1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12년 1,854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그 이후 완만하지만 꾸준히 감소하여 2022년에는 1,028명 수준이었으며, 이 가운데 보호소년은 700명, 위탁소년은 3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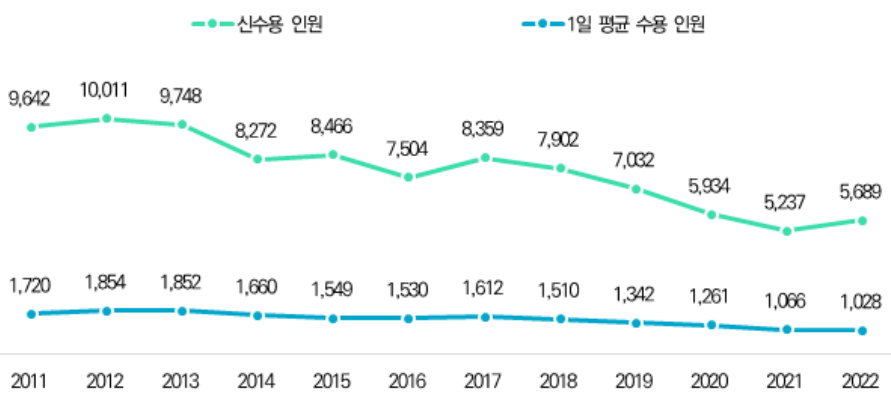
표 Ⅳ-8-12.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2011~2022년)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신수용인원	계	9,642	10,011	9,748	8,272	8,466	7,504	8,359	7,902	7,032	5,934	5,237	5,689
	보호소년	2,960	3,429	3,037	2,363	2,288	2,096	2,450	2,199	2,077	1,637	1,361	1,520
	위탁소년	6,682	6,582	6,711	5,909	6,178	5,408	5,909	5,703	4,955	4,297	3,876	4,169
1일평균 수용인원	계	1,720	1,854	1,852	1,660	1,549	1,530	1,612	1,510	1,342	1,261	1,066	1,028
	보호소년	1,264	1,390	1,380	1,236	1,112	1,132	1,168	1,079	946	927	782	700
	위탁소년	456	464	472	422	437	398	444	431	396	334	284	328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 (2011~2022).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 에서 2023년 8월 19일 인출.
*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 주: 1) 보호소년: 소년부 판사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2) 위탁소년: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거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소년
3) 신수용인원: 당해연도 법원 소년부의 결정에 의해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송치 또는 위탁된 인원과 임시퇴원 취소, 유치 등으로 새로 입원한 인원
4) 일일평균수용인원: 전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보호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의 1일평균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수치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2011~2022).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 에서 2023년 8월 19일 인출.
*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 주: 단위: 명

그림 Ⅳ-8-2.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2011~2022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전체 수용인원 1,524명 가운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43.4%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 미만이 23.3%, 1년 이상이 20.3%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수용기간은 8.42개월이었다.

2012년 이후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3,399명이 수용되어 있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 2,138명이었고 다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8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용기간별 인원의 경우 1개월 미만 수용인원의 경우 2012년에는 49.4%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23.3%로 상당히 감소한 반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수용인원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23.4%에서 43.4%로 증가함으로써 수용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2012년 평균 수용기간이 4.93개월이었으나 2021년 8.42개월로 증가한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소년원의 수용인원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용기간은 증가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표 Ⅳ-8-13.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 현황(2012~2021년)

(단위 : 명, (%), 월)

구분 / 연도	계	1월 미만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6월 미만	6월 이상~12월 미만	12월 이상	평균 수용 기간
2012	3,399 (100.0)	1,680 (49.4)	125 (3.7)	796 (23.4)	209 (6.1)	589 (17.3)	4.93
2013	3,005 (100.0)	1,348 (44.9)	96 (3.2)	894 (29.8)	232 (7.7)	435 (14.5)	5.00
2014	2,531 (100.0)	969 (38.3)	80 (3.2)	769 (30.4)	208 (8.2)	505 (20.0)	5.91
2015	2,171 (100.0)	883 (40.7)	62 (2.9)	670 (30.9)	181 (8.3)	375 (17.3)	5.56
2016	2,138 (100.0)	773 (36.2)	62 (2.9)	676 (31.6)	189 (8.8)	438 (20.5)	6.03
2017	2,275 (100.0)	902 (39.6)	47 (2.1)	777 (34.1)	179 (8.0)	370 (16.2)	5.52
2018	2,328 (100.0)	830 (35.6)	64 (2.7)	773 (33.2)	214 (9.2)	447 (19.3)	5.91
2019	1,944 (100.0)	713 (36.7)	74 (3.8)	680 (35.0)	185 (9.5)	292 (15.0)	6.51
2020	1,546 (100.0)	408 (26.4)	46 (3.0)	600 (38.8)	167 (10.8)	325 (21.0)	7.80
2021	1,524 (100.0)	355 (23.3)	64 (4.2)	662 (43.4)	135 (8.8)	308 (20.3)	8.42

* 출처: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560.
* 원자료: 법무부(2013~2022). 법무연감.

* 주 : 퇴원 및 임시퇴원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임.

②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수용 현황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수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21년 전체 54,017명의 청소년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그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14세는 15%, 15세는 19.1%, 16세는 21.5%, 17세는 20.8%, 18세는 2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14세의 경우 2016년 9.9%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5%로 5.1%p 증가하였으나, 17세와 18세는 2015년 각각 25.7%, 29.2%에서 2021년 20.8%, 23.7%로 각각 4.9%p, 5.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15세와 16세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남으로써 다른 연령대와 달리 저연령 청소년범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8-14.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2015~2021년)

(단위 : 명(%))

구분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2015	71,035 (100.0)	64 (0.1)	7 (0.0)	14,387 (20.3)	17,624 (24.8)	18,231 (25.7)	20,722 (29.2)
2016	76,000 (100.0)	84 (0.1)	7,530 (9.9)	13,789 (18.1)	17,589 (23.1)	17,607 (23.2)	19,401 (25.5)
2017	72,759 (100.0)	93 (0.1)	7,703 (10.6)	12,376 (17.0)	16,391 (22.5)	17,358 (23.9)	18,838 (25.9)
2018	66,142 (100.0)	-	8,321 (12.6)	11,595 (17.5)	13,306 (20.1)	15,513 (23.5)	17,407 (26.3)
2019	66,247 (100.0)	-	9,053 (13.7)	11,730 (17.7)	13,548 (20.5)	14,338 (21.6)	17,578 (26.5)
2020	64,480 (100.0)	-	9,124 (14.1)	11,956 (18.5)	13,578 (21.1)	13,725 (21.3)	16,097 (25.0)
2021	54,017 (100.0)	-	8,091 (15.0)	10,301 (19.1)	11,594 (21.5)	11,211 (20.8)	12,820 (23.7)

* 출처: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526.
* 원자료: 대검찰청(2012~2022). 범죄분석.

* 주: 2008년 6월 개정 「소년법」시행으로 소년범죄 연령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됨.
2018년 이후 14세 미만은 통계에서 제외.

소년 수형자의 죄명별 인원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전체 133명 가운데 기타를 제외하고 강간 등의 성범죄가 27%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가 17.3%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상해와 강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16년 이후의 죄명별 인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강간 등의 성범죄 수형자는 2016년에도 2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폭력·상해, 절도, 강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 등의 성범죄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폭력·상해는 2016년 18%에서 2022년 7.5%로 감소한 반면, 절도는 같은 기간 동안 15.3%에서 17.3%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 수형자의 경우 기타를 제외하고 강간 등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폭력·상해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절도는 증가함으로써 죄명별 인원 구성에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Ⅳ-8-15.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2016~2022년)

(단위 : 명(%))

구분	계	절도	사기·횡령	폭력·상해	강간 등	강도 등	살인	과실범	기타
2016	150(100)	23(15.3)	2(1.3)	27(18.0)	35(23.3)	19(12.7)	5(3.3)	2(1.3)	37(24.7)
2017	130(100)	27(20.8)	9(6.9)	5(3.8)	44(33.8)	11(8.5)	5(3.8)	0(0.0)	29(22.3)
2018	105(100)	17(16.2)	12(11.4)	3(2.9)	24(22.9)	5(4.8)	4(3.8)	1(1.0)	39(37.1)
2019	116(100)	10(8.6)	9(7.8)	11(9.5)	26(22.4)	14(12.1)	3(2.6)	4(3.4)	39(33.6)
2020	115(100)	21(18.3)	8(7.0)	13(11.3)	21(18.3)	13(11.3)	1(0.9)	1(0.9)	37(32.2)
2021	142(100)	26(18.3)	6(4.2)	7(4.9)	31(21.9)	11(7.8)	1(0.7)	2(1.4)	58(40.8)
2022	133(100)	23(17.3)	6(4.5)	10(7.5)	36(27.0)	9(6.8)	1(0.7)	0(0.0)	48(36.1)

* 출처: 법무부(2023b). 2023 교정통계연보. p.76.

* 주: 1) 소년수형자가 수용된 전체 교정기관 통계. 각 년도.
2) 폭력은 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

다음으로 소년수형자 징역형의 형기별 인원을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전체 142명의 수형자 가운데 1년 이상 3년 미만의 형기를 받은 수형자가 45.8%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 5년 미만이 33.1%,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5.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16. 소년수형자 징역형 형기별 인원 현황(2015~2021년)

(단위 : 명(%))

구분	계	6월 미만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무기
2015	130 (100)	1 (0.8)	11 (8.5)	56 (43.1)	48 (37.0)	12 (9.2)	2 (1.4)	-	-
2016	149 (100)	1 (0.7)	8 (5.4)	69 (46.3)	56 (37.6)	13 (8.7)	2 (1.3)	-	-
2017	130 (100)	-	7 (5.4)	67 (51.5)	46 (35.4)	9 (6.9)	-	1 (0.8)	-
2018	105 (100)	1 (1.0)	2 (1.9)	55 (52.3)	33 (31.4)	13 (12.4)	-	1 (1.0)	-
2019	116 (100)	-	4 (3.4)	45 (38.8)	45 (38.8)	21 (18.1)	-	1 (0.9)	-
2020	115 (100)	2 (1.7)	2 (1.7)	55 (47.8)	41 (35.7)	15 (13.1)	-	-	-
2021	142 (100)	2 (1.4)	4 (2.8)	65 (45.8)	47 (33.1)	22 (15.5)	2 (1.4)	-	-

* 출처: 법무연수원(2023). 2022 범죄백서. p.637.

* 주: 1) 소년수형자가 수용된 전체 교정기관 통계, 각 년도.
2) 부정기형은 단기형을 기준(금고형 선고자 제외).

특히 이러한 형기별 인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형기를 받은 수형자는 2015년 43.1%에서 2021년 45.8%로 약간 증가한 반면, 3년 이상 5년 미만의 수형자 비율은 37%에서 33.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년 미만의 수형자가 8.5%에서 2.8%로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수형자는 오히려 9.2%에서 15.5%로 증가함으로써 수형기간이 다소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인권친화적 사법 환경

①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정 수

인권친화적 사업 환경을 보여주는 지표로 소년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는 2011년 3,762건에서 2022년 3,089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국선보조인의 조력 횟수는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Ⅳ-8-17.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2011~2022년)

(단위: 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선보조인	3,762	4,096	4,606	4,101	4,408	4,359	4,756	3,960	3,305	3,174	3,157	3,089

* 출처: 대한민국정부(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p.115. 부록 통계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2.9.2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3.10.6).
* 원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

* 주: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

②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률을 살펴보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2021년 수용 인원은 284명이었으며, 정원 대비 수용률은 167.1% 수준이었다. 2015년 이후 수용률은 매년 100%를 초과하였으며, 평균적으로 122.9%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위탁대행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경우 2021년의 경우 광주소년원과 대전소년원을 제외한 부산소년원, 대구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의 수용인원은 모두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위탁대행 기관들의 2015년 수용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21년에는 광주소년원과 대전소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수용률이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수용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Ⅳ-8-18.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수용 현황(2015~2021년)

(단위 : 명(%))

분류심사원	1일 평균 수용인원(수용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서울소년 분류심사원 / 정원 170명	219 (128.8)	178 (104.7)	207 (121.8)	212 (124.7)	192 (112.9)	170 (100)	284 (167.1)	208.9 (122.9)
부산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70명	95 (135.7)	87 (124.3)	88 (125.7)	82 (117.1)	82 (117.1)	63 (90.0)	137 (195.7)	90.6 (129.4)
대구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50명	33 (66.0)	38 (76.0)	37 (74.0)	31 (62.0)	31 (62.0)	21 (42.0)	61 (122.0)	36.0 (72.0)

분류심사원	1일 평균 수용인원(수용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광주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50명	45 (90.0)	41 (82.0)	53 (106.0)	45 (90.0)	33 (66.0)	29 (58.0)	21 (42.0)	38.1 (76.3)
대전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40명	31 (77.5)	42 (105.0)	39 (97.5)	44 (110.0)	37 (92.5)	36 (90.0)	25 (62.5)	36.3 (90.7)
춘천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20명	10 (33.3)	10 (33.3)	17 (56.7)	14 (46.7)	16 (53.3)	11 (55.0)	24 (120.0)	14.6 (56.9)
제주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10명	4 (40.0)	2 (20.0)	3 (30.0)	3 (30.0)	5 (50.0)	4 (40.0)	11 (110.0)	4.6 (45.7)

* 출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p.33~3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2.9.2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3.10.6.).
* 원자료: 법무부 내부자료(소년보호시설 정원 대비 수용 현황)

* 주: 1) '평균값'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현황에 대한 평균값임.
2) 정원은 2021년 기준임. 2020년부터 춘천소년원 정원이 30명에서 20명으로 변경됨.

전국 소년원의 2021년 수용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고봉중고등학교의 수용률이 100%였으나, 100%를 초과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100% 이상의 수용률을 보였으나, 2021년에 100%를 초과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정원대비 수용인원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시설의 개선으로 인한 것인지 수용인원의 감소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Ⅳ-8-19. 전국 소년원 연도별 수용 현황(2015~2021년)

(단위 : 명(%))

소년원	1일 평균 수용인원(수용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고봉중고등학교 (서울소년원) / 정원 170명	236 (157.3)	234 (156.0)	246 (164.0)	204 (136.0)	172 (101.2)	206 (121.1)	170 (100.0)	209.7 (133.7)
오륜정보산업학교 (부산소년원) / 정원 90명	119 (119.0)	139 (139.0)	125 (125.0)	111 (111.0)	86 (95.6)	86 (95.5)	14 (15.6)	97.1 (100.1)

소년원	1일 평균 수용인원(수용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읍내정보통신학교 (대구소년원) / 정원 90명	130 (144.4)	141 (156.7)	137 (152.2)	114 (126.7)	94 (104.4)	86 (95.5)	89 (98.9)	113.0 (125.5)
고룡정보산업학교 (광주소년원) / 정원 100명	94 (78.3)	104 (86.7)	135 (112.5)	108 (90.0)	95 (79.2)	104 (104.0)	99 (99.0)	105.6 (92.8)
송천중고등학교 (전주소년원 / 정원 130명	108 (77.1)	92 (65.7)	81 (57.9)	91 (65.0)	102 (78.5)	103 (79.2)	97 (74.6)	96.3 (71.1)
대산학교 (대전소년원) / 정원 80명	115 (115.0)	98 (98.0)	122 (122.0)	121 (121.0)	84 (105.0)	69 (86.2)	66 (82.6)	96.4 (104.2)
미평여자학교 (청주소년원) / 정원 80명	45 (50.0)	45 (50.0)	45 (50.0)	85 (94.4)	85 (106.3)	66 (82.5)	58 (72.5)	61.3 (72.2)
정심여자중고등학교 (안양소년원) / 정원 80명	141 (176.3)	147 (183.8)	127 (158.8)	109 (136.3)	103 (128.8)	103 (128.8)	78 (97.5)	115.4 (144.3)
한길정보통신학교 (제주소년원) / 정원 30명	31 (77.5)	43 (107.5)	43 (107.5)	33 (82.5)	33 (82.5)	25 (83.3)	25 (83.3)	33.3 (89.2)
신촌정보통신학교 (춘천소년원) / 정원 90명	93 (93.0)	89 (89.0)	107 (107.0)	103 (103.0)	92 (76.7)	79 (87.8)	86 (95.6)	92.7 (93.2)

* 출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p.34-3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2.9.2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3.10.6.).
* 원자료: 법무부 내부자료(소년보호시설 정원 대비 수용 현황)

* 주: 1) '평균값'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현황에 대한 평균값임.
2) 정원은 2021년 기준임. 2015년~2019년까지 각년도별 정원에 따라 비율 계산되어 있음.(2015~2018년까지 정원: 서울소년원 150명, 부산소년원 100명, 대구소년원 90명, 광주소년원 120명, 전주소년원 140명, 대전소년원 100명, 청주소년원 90명, 안양소년원 80명, 제주소년원 40명, 춘천소년원 100명, 2019년 정원: 서울소년원 170명, 부산소년원 90명, 대구소년원 90명, 광주소년원 120명, 전주소년원 130명, 대전소년원 80명, 청주소년원 80명, 안양소년원 80명, 제주소년원 40명, 춘천소년원 120명)

③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수

소년교도소에서의 처우에 불복 신청한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가 4,1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소·고발, 청원, 행정심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건수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건수와 헌법소원 건수는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청원과 행정심판 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Ⅳ-8-20.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2014~2022년)

(단위 : 건)

구분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2014	903	369	61	614	3,745	27
2015	957	552	74	733	3,790	23
2016	797	347	56	698	3,716	38
2017	744	437	70	783	4,528	70
2018	772	310	86	855	4,322	32
2019	558	509	91	916	4,211	29
2020	593	630	60	867	4,124	54
2021	558	443	61	719	4,522	58
2022	508	382	56	716	4,187	49

* 출처: 법무부(2023b). 2023 교정통계연보. p.124-131.

* 주: 1) 주요 고소·고발 사유: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2) 주요 행정심판 청구 내역: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징벌처분취소 등
3) 주요 행정소송 청구 사유: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징벌처분무효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등
4) 주요 헌법소원 청구 내역: 징벌처분, 작원고소사건 처리 결과(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불복, 보호장비 사용 등

④ 소년보호사건 항고 및 재항고 접수 건

소년보호사건의 항고 및 재항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항고 및 재항고 접수 건수는 239건이었고, 처리된 사건 가운데 기각이 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용된 경우는 33건, 취하된 경우가 2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항고 사건의 경우 처리된 사건의 경우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래 소년보호사건의 항고 및 재항고 사건 수는 284건에서 239건으로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처리된 사건 가운데 기각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인용(집행종료)된 경우는 25~33건 정도로 처리 사건 가운데 10%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21. 소년보호 항고·재항고 사건 수

(단위 : 건)

연도	구분	접수	처리				
			합계	인용(집행종료)	기각	취하	기타
2019	항고	271	232	26	186	18	2
	재항고	13	13	-	12	1	-
2020	항고	221	239	25	189	22	3
	재항고	22	26	1	24	1	-
2021	항고	189	195	26	152	16	1
	재항고	15	16	-	16	-	-
2022	항고	219	221	33	167	21	
	재항고	20	14	-	14	-	

* 출처: 법원행정처(2020). 2020 사법연감. p.1075.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p.1099.
법원행정처(2022). 2022 사법연감. p.1181.
법원행정처(2023). 2023 사법연감. p.779.

(3) 회복적 프로그램(다이버전) 운영

①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 참여자 수

경찰단계에서의 선도프로그램은 사랑의 교실, 치유 선도프로그램 및 경찰 선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2021년 경찰단계의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인원은 20,411명으로 참여율은 37.7% 수준이었으며, 2019년에 비해 5,529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랑의 교실 참여자는 14,1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 선도프로그램 참여자는 6,216명, 치유 선도프로그램 참여자는 21명이었다. 각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2019년 이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치유 선도프로그램은 2019년 196명이 참여하였으나 2021년에는 21명만이 참여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Ⅳ-8-22. 선도프로그램 이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참가 인원	참여율 (%)	사랑의 교실					치유 선도프로그램					경찰 선도프로그램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2019	25,940	39.2	18,929	485	7,389	9,793	1,262	196	6	122	59	9	6,815	330	3,102	3,089	294
2020	23,464	36.3	15,243	337	5,959	7,952	995	56	4	31	21	0	8,165	431	3,144	4,088	502
2021	20,411	37.7	14,174	507	5,670	6,965	1,032	21	1	12	8	0	6,216	227	2,286	3,380	323

* 출처: 경찰청(2022.6).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 p.67.

② 사회 내 처우 청소년 수

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인원

2021년 청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보호관찰 인원 중 청소년은 11,853명으로 2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보호관찰 인원은 2014년 20,378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체 보호관찰 인원 대비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4.2%에서 2021년 26.9%로 17.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 가운데 남자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에 77.5%로 약 3/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이후 남자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17.1%에서 22.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14세 이상 청소년의 비율이 93.2%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촉법소년의 보호관찰 대상이 2017년 3.2%에서 2021년 6.8%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관찰 대상 가운데 학생의 비율이 63.6%로 비학생보다 많았으나,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8-23.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현황(2014~2021년)

(단위 : 명, (%))

구분 / 연도	전체 보호관찰 (A)	청소년 보호관찰		성별		연령별		학생여부별	
		인원(B)	(A)/(B)*100	남자	여자	촉법소년	14세 이상	학생	비학생
2014	46,110	20,378	44.2	16,885 (82.9)	3,493 (17.1)	-	-	-	-
2015	47,991	19,271	40.2	16,330 (84.7)	2,971 (15.4)	-	-	-	-
2016	51,884	18,218	35.1	14,980 (82.2)	3,238 (17.8)	-	-	-	-
2017	53,419	17,799	33.3	14,341 (80.6)	3,458 (19.4)	573 (3.2)	17,226 (96.8)	9,756 (54.8)	8,043 (45.2)
2018	49,073	16,659	33.9	13,111 (78.7)	3,548 (21.3)	714 (4.3)	15,945 (95.7)	9,119) (54.7)	7,540 (45.3)
2019	48,508	14,439	29.8	11,118 (77.0)	3,321 (23.0)	768 (5.3)	13,671 (94.7)	7,620 (52.8)	6,819 (47.2)
2020	45,592	13,489	29.6	10,488 (77.8)	3,001 (22.2)	704 (5.2)	12,785 (94.8)	8,159 (60.5)	5,330 (39.5)
2021	43,992	11,853	26.9	9,181 (77.5)	2,672 (22.5)	811 (6.8)	11,042 (93.2)	7,535 (63.6)	4,318 (36.4)

* 출처: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p.569-570.
* 원자료: 법무부(2015~2022). 범무연감.

주: 2014년~2016년 연령과 학생여부별 인원수와 구성비는 공표된 자료가 없어 제시하지 못함.

청소년 보호관찰의 처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실시사건 기준으로 38,546건의 소년 보호관찰 건수 가운데 소년보호처분이 36,027건으로 93.5%를 차지하였으며, 선도위탁이 3.4%, 형사처분이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보호관찰 건수 가운데 소년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이 차지하는 비율이 75.9%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형사처분 중에는 집행유예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년보호관찰 처분유형의 연도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소년보호처분은 2013년 87.8%에서 2021년에는 93.5%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형사처분도 같은 기간 동안 2.1%에서 3.0%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선도위탁은 2013년 10%에서 2021년 3.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보호관찰 처분 가운데 선도위탁은 감소하였으나,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은 다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Ⅳ-8-24.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 처분유형별 현황(2013~2021년)

(단위 : 명, (%))

구분 / 연도	소년 보호관찰 전체	형사처분				기타 보호 처분	소년보호처분				선도 위탁	기타
		소계	집행 유예	벌금 미납	가석방		소계	보호 관찰	단독 명령	임시 퇴원		
2013	65,815 (100.0)	1,388 (2.1)	1,293 (2.0)	50 (0.1)	45 (0.1)	14 (0.0)	57,815 (87.8)	50,369 (76.5)	5,355 (8.1)	2,091 (3.2)	6,585 (10.0)	13 (0.0)
2014	57,064 (100.0)	1,377 (2.4)	1,264 (2.2)	85 (0.1)	28 (0.0)	33 (0.1)	47,874 (83.9)	41,955 (73.5)	3,876 (6.8)	2,043 (3.6)	7,774 (13.6)	6 (0.0)
2015	51,978 (100.0)	1,172 (2.3)	1,060 (2.0)	91 (0.2)	21 (0.0)	38 (0.1)	44,050 (84.7)	38,864 (74.8)	3,454 (6.6)	1,732 (3.3)	6,714 (12.9)	4 (0.0)
2016	49,687 (100.0)	1,035 (2.1)	956 (1.9)	67 (0.1)	12 (0.0)	73 (0.1)	40,693 (81.9)	35,740 (71.9)	3,227 (6.5)	1,726 (3.5)	7,864 (15.8)	21 (0.0)
2017	47,493 (100.0)	1,026 (2.2)	945 (2.0)	68 (0.1)	13 (0.0)	72 (0.2)	40,482 (85.2)	35,186 (74.1)	3,489 (7.3)	1,807 (3.8)	5,894 (12.4)	13 (0.0)
2018	45,364 (100.0)	1,017 (2.2)	949 (2.1)	56 (0.1)	12 (0.0)	55 (0.1)	40,108 (88.4)	34,460 (76.0)	3,685 (8.1)	1,963 (4.3)	4,173 (9.2)	12 (0.0)
2019	40,587 (100.0)	1,129 (2.8)	1,073 (2.6)	37 (0.1)	19 (0.0)	71 (0.2)	36,629 (90.2)	31,285 (77.1)	3,557 (8.8)	1,787 (4.4)	2,750 (6.8)	19 (0.0)
2020	39,291 (100.0)	1,129 (2.9)	1,086 (2.8)	26 (0.1)	17 (0.0)	53 (0.1)	36,281 (92.3)	30,296 (77.1)	4,403 (11.2)	1,582 (4.0)	1,821 (4.6)	17 (0.0)
2021	38,546 (100.0)	1,148 (3.0)	1,116 (2.9)	22 (0.1)	10 (0.0)	66 (0.2)	36,027 (93.5)	29,264 (75.9)	5,272 (13.7)	1,491 (3.9)	1,294 (3.4)	10 (0.0)

* 출처: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p.570-571.
* 원자료: 법무부(2014~2022). 범무연감.

* 주 : 1) 실시사건 기준임.
2) 기타보호처분은 성매매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를 의미함.
3) 단독명령은 보호관찰없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단독으로 받은 경우를 의미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부과 양상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봉사명령은 2020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1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강명령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8-25.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 형태(2016~2021년)

(단위 : 명)

구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2016	7,616	4,973	2,643	5,587	3,999	1,588
2017	8,321	5,465	2,856	6,139	4,446	1,693
2018	7,845	5,111	2,734	5,952	4,151	1,801
2019	6,787	4,359	2,428	5,182	3,355	1,827
2020	6,292	4,004	2,288	6,724	4,143	2,581
2021	6,763	4,220	2,543	7,488	4,333	3,155

* 출처: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573.
* 원자료: 법무부(2015~2022). 법무연감.

* 주: 실시사건 기준임.

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

청소년 대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전체 소년사건 처리 인원은 55,85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기소유예는 13,420건이었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1,037건으로 전체 기소유예 인원 중 7.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소년사건 처리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소유예도 전체 소년사건 처리인원 대비 2015년에는 31.9%에서 2021년에는 24%로 감소하였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비율도 12%에서 7.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소년사건 처리인원에서 기소유예는 물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8-26.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2015~2021년)

(단위 : 명, %)

구분	소년사건 처리인원 (A)	기소유예 (B)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C)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비율 (C/B×100)
2015	88,733	28,333	3,413	12.0
2016	82,277	26,558	3,409	12.8
2017	84,030	25,416	3,495	13.8
2018	75,150	20,237	3,031	15.0
2019	75,197	19,157	3,000	15.0
2020	72,344	15,952	1,315	8.2
2021	55,854	13,420	1,037	7.7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496.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547.
* 원자료: 대검찰청(2012-2021). 범죄분석.

* 주: 1) 처분인원은 한 해 동안 검찰에서 종국처분을 받은 범죄소년의 수, 기소유예인원은 한 해동안 종국처분 중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범죄소년의 수를 의미함. 따라서, 해당연도에 전산 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상 범죄소년 중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검찰의 종국처분이 완료된 범죄소년 수를 집계한 결과인 검찰의 범죄소년에 대한 처분결과에 제시되어 있는 처분인원 및 기소유예인원수와는 차이가 있음.
  2) 검찰청별로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표에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선도위탁 3가지 유형만 제시함.

보호관찰소에서의 선도위탁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전체 기소유예자는 186,40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선도대상자는 781명, 계속 선도위탁은 495명, 해제는 283명, 취소는 43명 수준이었다. 2015년 이후의 선도위탁 상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선도 대상자는 물론 계속 대상자의 경우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Ⅳ-8-27.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2015~2021년)

(단위 : 명)

구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제	취소
2015	354,370	5,184	4,052	3,098	353
2016	368,001	4,419	2,776	2,087	253
2017	325,215	4,371	2,549	1,679	205
2018	266,032	2,519	2,011	1,162	112
2019	226,842	1,845	1,373	905	100
2020	206,374	998	977	455	73
2021	186,400	781	495	283	43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499.
  대검찰청(2022), 2022 검찰연감. p.489.
* 원자료: 대검찰청(2012-2021), 검찰연감.

3) 경제적 착취

(1) 청소년 노동조건 수준

① 청소년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월평균 근로일 수와 근로시간을 살펴보았다. 2021년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일 수는 20.8일이었으며, 근로시간 수는 164.2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일 수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는 없었으나 근로시간은 여자(155.4시간)보다는 남자(170.4시간)가 15시간 정도 더 많았다.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 15~19세의 경우 월평균 근로일 수는 12.9일이었으며 근로시간 수는 82.8시간이었고, 20~24세의 경우 근로일 수는 이보다 많은 18일이고, 근로시간 수는 132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보다는 남자의 경우 근로일 수 및 근로시간 수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5~19세의 월평균 근로일 수는 18.1일이었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근로시간 수에 있어서도 135.5시간에서 82.8시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세 집단의 경우에도 2010년 월평균 근로일수가 21.4일이고 근로시간 수는 174.5시간이었으나, 2021년에는 각각 18일과 132시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2010년에 비해 최근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참여 정도가 다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Ⅳ-8-28.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2010~2021년)

(단위 : 일, 시간)

구분		전 체		남 자		여 자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2010	전 체	22.2	187.0	22.1	190.6	22.3	181.1
	15-19세	18.1	135.5	18.5	143.8	17.8	129.8
	20-24세	21.4	174.5	20.9	178.0	21.6	172.6
2015	전 체	21.6	173.5	21.7	179.2	21.4	165.0
	15-19세	15.0	102.3	15.4	109.0	14.5	96.4
	20-24세	19.9	152.6	19.8	154.9	20.0	151.2
2016	전 체	21.0	171.1	21.0	176.5	20.9	163.1
	15-19세	15.1	105.4	15.8	114.6	14.5	97.0
	20-24세	19.3	151.5	19.1	153.0	19.5	1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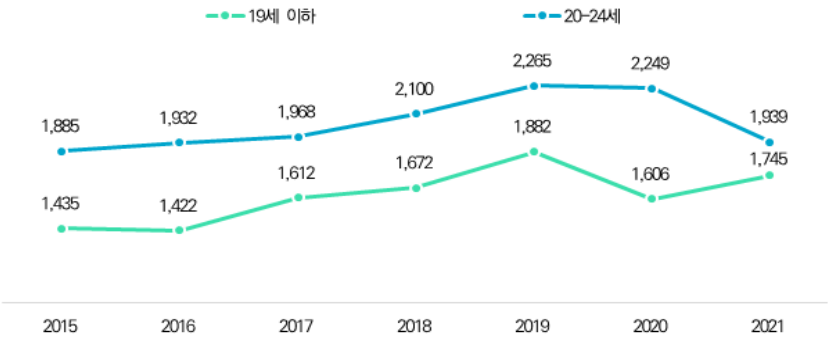
구분		전 체		남 자		여 자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2017	전 체	20.8	168.5	20.9	174.3	20.6	160.1
	15-19세	14.5	103.4	15.1	112.3	14.0	96.4
	20-24세	18.9	146.0	18.8	148.0	18.9	144.6
2018	전 체	19.5	156.4	19.6	161.8	19.4	148.6
	15-19세	13.8	94.9	14.5	102.6	13.2	88.7
	20-24세	17.7	136.6	17.8	141.2	17.7	133.5
2019	전 체	19.2	152.4	19.2	157.9	19.1	144.6
	15-19세	13.3	89.0	13.5	91.9	13.2	86.4
	20-24세	17.3	130.8	17.4	133.5	17.2	129.0
2020	전 체	20.7	163.6	20.7	169.5	20.8	155.0
	15-19세	12.9	81.6	13.1	87.0	12.7	77.5
	20-24세	18.2	135.7	18.5	143.2	18.0	130.7
2021	전 체	20.8	164.2	20.8	170.4	20.8	155.4
	15-19세	12.9	82.8	13.1	91.8	12.7	77.1
	20-24세	18.0	132.0	18.4	139.6	17.8	127.0

* 출처: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484.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주: 1) 근로일수 = 소정실근로일수 + 휴일실근로일수.
2) 근로시간 = 소정실근로시간 + 초과실근로시간.
3) 이전 년도의 수치는 최근 자료의 결과값으로 수정하였음.

②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2021년 19세 이하의 청소년 노동자들은 월 임금 총액으로 1,745천원을 받았으며, 20~24세 집단의 경우 1,939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의 월 임금 총액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에 1,882천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20~24세 청소년 노동자의 월 임금 총액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에는 2,249천원을 받았으나, 2021년에 1,939천원으로 감소하였다. 19세 이하 집단과 20~24세 집단의 월 임금 총액의 차이는 2020년에 643천원이었으나, 2021년 20~24세 집단의 월 임금 총액이 감소한 관계로 그 차이는 194천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XIV.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XIV.
* 원자료: 고용노동부(2021-2022). 2020-202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 주: 임금수준은 월 임금 총액을 의미함(단위: 천원).

그림 Ⅳ-8-3.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연령 계층별 시간당 임금 총액을 살펴보면, 2022년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2,651원이었고, 이 가운데 정규직은 24,409원, 비정규직은 17,233원으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약 70.6%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집단의 시간당 임금이 11,478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시간당 임금도 상승하여 40~49세에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에서 다시 2만원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층에서도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비정규직보다 높았는데, 19세 이하의 집단에서만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이 83.8%로 8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이 집단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가장 작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시간당 임금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2019년에 비해 2020년과 2021년의 시간당 임금이 낮았으나, 2022년에는 2019년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19세 이하 집단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Ⅳ-8-29.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2019~2022년)

(단위 : 원(%))

구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전체	20,573	19,316	19,806	22,651	22,193	20,731	21,230	24,409	15,472 (69.7)	15,015 (72.4)	15,482 (72.9)	17,233 (70.6)
19세 이하	10,506	10,149	10,651	11,478	12,461	11,631	11,746	13,148	9,754 (78.3)	9,808 (84.3)	10,359 (88.2)	11,014 (83.8)
20~29세	15,139	14,078	14,382	16,471	16,353	15,155	15,593	17,794	12,342 (75.5)	11,749 (77.5)	11,907 (76.4)	13,437 (75.5)
30~39세	21,451	19,708	20,185	22,986	22,250	20,343	20,803	23,770	16,834 (75.7)	16,029 (78.8)	16,593 (79.8)	18,427 (77.5)
40~49세	23,750	22,278	22,699	26,272	25,057	23,337	23,674	27,523	17,430 (69.6)	17,079 (73.2)	17,765 (75.0)	19,625 (71.3)
50~59세	22,410	21,312	21,952	25,135	24,069	22,845	23,395	26,923	17,213 (71.5)	16,777 (73.4)	17,425 (74.5)	19,358 (71.9)
60세 이상	16,760	16,419	17,073	18,901	18,421	17,920	18,703	20,905	14,819 (80.4)	14,647 (81.7)	15,105 (80.8)	16,575 (79.3)

* 출처: 고용노동부(2020.4). 2019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고용노동부(2021.5). 2020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고용노동부(2022.5).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고용노동부(2023.5). 2022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 주: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③ 청소년 실업률 추이

청소년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2022년 15~19세 집단의 실업률은 6.5%이고 15~24세 집단의 경우에는 7.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각 연령대별로 6.6%, 7.6%인데 비해 여자는 6.4%, 6.7%로 나타남으로써 청소년의 경우 여자보다 남자의 실업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는 청소년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다소 부침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2000년에 15~19세 집단과 15~24세 집단의 실업률은 각각 14.5%, 10.8%였으나 2022년에는 6.5%, 7.1%로, 각각 8%p, 3.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30. 청소년 실업률 추이(2000~2022년)

(단위 :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계	계	4.4	3.7	3.7	3.6	4.0	3.7	2.9
	15~19세	14.5	12.3	11.9	10.6	8.7	8.7	6.5
	15~24세	10.8	10.2	9.7	10.5	10.5	8.5	7.1
남자	계	5.0	4.0	4.0	3.6	3.9	3.6	2.7
	15~19세	15.2	13.0	15.1	10.4	10.8	9.7	6.6
	15~24세	13.5	12.1	11.1	11.3	11.1	9.6	7.6
여자	계	3.6	3.4	3.3	3.5	4.0	3.8	3.1
	15~19세	13.8	11.7	9.6	10.7	7.1	8.0	6.4
	15~24세	9.1	8.9	8.9	10.0	10.1	7.8	6.7

* 출처: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실업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2S&c에서 2023년 8월 21일 인출.

*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기본 연령급간의 청소년 연령(15~19세)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9~24세)을 고려한 연령급간(15~24세) 두 가지를 제시함.

(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력

①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2023년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8%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의 8.5%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2022년의 아르바이트 참가율보다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학교급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Ⅳ-8-31.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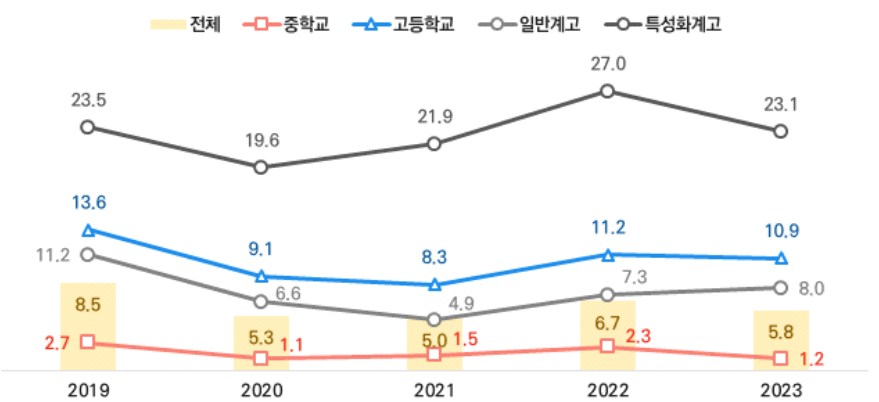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5.8	94.2	100.0(5,682)	
성별	남학생	5.2	94.8	100.0(2,922)	4.480*
	여학생	6.5	93.5	100.0(2,760)	
학교급	중학교	1.2	98.8	100.0(2,933)	241.849***
	고등학교	10.9	89.1	100.0(2,748)	
고교 유형	일반계고	8.0	92.0	100.0(2,225)	100.450***
	특성화계고	23.1	76.9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4.2	95.8	100.0(2,258)	36.786***
	중소도시	6.1	93.9	100.0(2,752)	
	읍면지역	10.4	89.6	100.0(672)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1	94.9	100.0(5,066)	49.081***
	한부모가정	12.6	87.4	100.0(499)	
	조손가정	11.7	88.3	100.0(19)	
	기타	9.7	90.3	100.0(66)	
학업 성적	상	3.1	96.9	100.0(1,709)	82.913***
	중	4.8	95.2	100.0(2,252)	
	하	10.1	89.9	100.0(1,661)	
경제적 수준	상	4.0	96.0	100.0(3,153)	62.645***
	중	7.0	93.0	100.0(1,974)	
	하	12.5	87.5	100.0(491)	

*p<.05, **p<.01, ***p<.001

아르바이트 경험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약간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높았고, 특히 특성화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은 23.1%로 일반계 고등학생들(8.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거주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율이 더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 '있다'의 응답값(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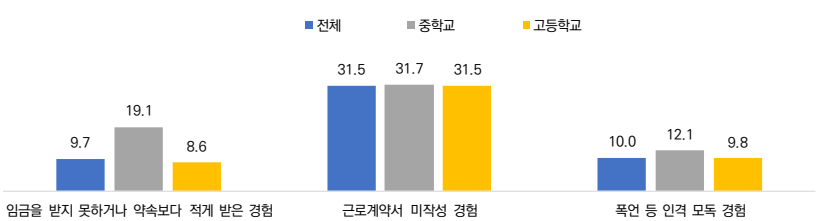
그림 Ⅳ-8-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청소년 근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부당 처우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2023년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가운데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9.7%였으며, 시간을 초과하여 일했거나 하기로 한 일과 다른 일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2%였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폭언 등의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나 폭행을 당하거나 성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1.3%, 2.3%로서 청소년들이 작업장에서 신체적 및 성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32.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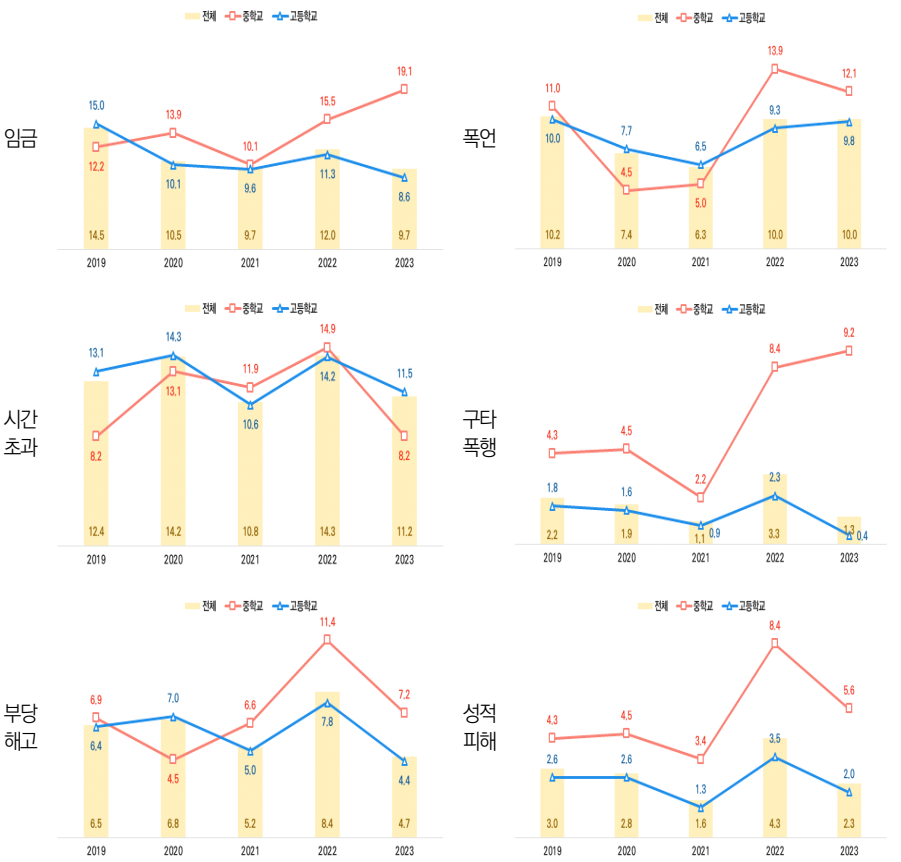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90.3	7.1	2.5	100.0(329)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88.8	7.2	4.0	100.0(328)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68.5	27.5	4.0	100.0(329)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95.3	3.6	1.1	100.0(328)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93.7	5.0	1.3	100.0(327)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90.0	7.3	2.7	100.0(32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98.7	0.4	0.9	100.0(327)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97.7	1.0	1.3	100.0(327)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94.9	3.0	2.1	100.0(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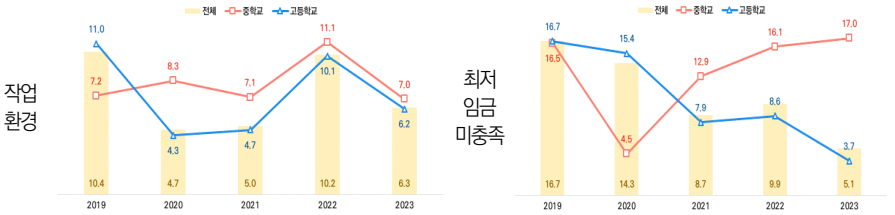


*주 :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8-5. 아르바이트시 청소년의 주요 부당처우 경험률

아래 그림에서는 아르바이트 부당 경험에 있어서의 학교급별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임금과 관련한 부당경험과 구타 및 폭행의 경우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감소하였으나, 중학생 집단에서는 2021년 이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거나 부당해고 경험,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 및 성적 피해 경험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는 거의 2021년 수준으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험의 경우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데 비해 중학생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주: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근로계약서 작성문항은 2021년까지는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로 조사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로 변경 조사하여, 추이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그래프를 제시하지 않음

그림 Ⅳ-8-6.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연도별 추이)

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율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경험하는 부당한 사안들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교육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2022년에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1%로 2018년 이후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곳은 학교가 63.5%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이나 전문교육기관, 청소년시설에서도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61.1%, 고등학생이 67.1%였으며, 특히 직업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77.7%가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3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과 도움정도

(단위 : %)

구분		교육받은 적 있음	교육받은 곳(복수응답)				교육이 도움됨
			학교	공공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나 업체의 본사	
전체	2018	36.1	33.8	8.5	8.1	3.2	71.9
	2020	50.2	49.1	9.4	8.2	4.8	-
	2022	61.1	63.5	15.7	15.0	8.7	-
중학교	2018	28.9	26.0	7.9	9.1	3.0	74.3
	2020	44.5	43.2	8.5	7.9	3.9	-
	2022	61.1	60.2	15.0	14.5	7.1	-
고등학교	2018	42.0	40.3	8.9	7.2	3.4	70.6
	2020	55.5	54.6	10.3	8.4	5.7	-
	2022	67.1	66.9	16.4	15.5	10.4	-

구분		교육받은 적 있음	교육받은 곳(복수응답)				교육이 도움됨
			학교	공공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나 업체의 본사	
ㄴ일반계고	2018	39.1	37.6	7.2	6.2	2.8	69.8
	2020	53.5	52.7	9.3	7.8	5.1	-
	2022	65.0	65.0	14.8	14.4	9.2	-
ㄴ직업계고	2018	55.5	53.6	17.4	11.9	6.5	73.0
	2020	65.1	64.1	15.4	11.7	8.6	-
	2022	77.7	77.6	24.5	21.3	16.2	-

* 출처: 여성가족부(2022b).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343.

* 주: 1) '교육이 도움된다'는 값은 최근 1년 동안 근로권익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 질문한 결과임.
2) 2020년도에는 근로권익교육 도움 정도를 교육장소를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여 전체 값을 기입하지 않음.
3) 교육받은 적 있음은 교육기관 중 하나라도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임.
4)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4) 성적 착취

(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수준

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처벌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검토해 보면, 우선 2021년의 경우 5,715건이 접수되었으며, 처분이 이루어진 건수는 6,071건으로 이 가운데 기소 처리된 경우가 2,487건이고 불기소 처분한 경우는 57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수된 건은 2020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정식 재판을 위해 기소된 경우도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반대로 불기소 처리한 경우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34.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2012~2021년)

(단위 : 명)

구 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2012	4,261	4,186	1,501	390	1,228	1,067
2013	4,526	4,525	1,851	153	1,301	1,220
2014	4,626	4,688	1,882	14	1,430	1,362
2015	4,516	4,505	1,744	0	1,419	1,342
2016	4,615	4,585	1,702	2	1,461	1,420
2017	4,767	4,659	1,720	24	1,460	1,455

구 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2018	4,585	4,513	1,731	19	1,404	1,359
2019	4,468	4,521	1,642	21	1,468	1,390
2020	4,932	4,487	1,799	23	1,174	1,491
2021	5,715	6,071	2,487	49	573	2,962

* 출처: 대검찰청(2018). 2018 검찰연감. p.410.
대검찰청(2019). 2019 검찰연감. p.378.
대검찰청(2020). 2020 검찰연감. p.350.
대검찰청(2021). 2021 검찰연감. p.373.
대검찰청(2022). 2022 검찰연감. p.362.

* 주: 1) 산출죄명: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2) 기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3) 기소인원은 당해기간에 공판기소인원과 약식기소인원을 합한 인원이며, 불기소인원은 당해기간에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인원을 합한 인원임. (기소인원과 불기소인원에 대한 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2)

②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의 구속률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전체 구속률은 9.3%로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 이후의 추세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검별로는 서울북부지검과 창원지검의 구속률이 1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반면,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의 구속률이 5%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Ⅳ-8-35. 주요 지검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2015~2022년)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4.4	12.5	11.9	10.9	9.3	10.5	9.3	9.3
서울중앙지검	11.5	12.5	11.2	10.4	6.0	9.2	5.2	6.5
서울동부지검	9.1	11.6	11.5	9.1	5.2	10.3	2.4	8.3
서울남부지검	9.2	9.3	6.7	9.9	3.8	10.5	4.8	5.4
서울북부지검	11.2	5.6	9.9	8.6	7.5	9.2	9.2	10.2
서울서부지검	3.3	7.7	9.1	6.0	3.6	15.2	6.5	4.2
의정부지검	16.1	7.6	9.2	10.2	6.0	5.6	9.4	6.8
청주지검	21.3	9.8	12.0	10.3	19.8	6.0	13.6	6.4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창원지검	25.5	18.7	12.5	14.8	9.2	8.8	7.8	10.1
부산지검	5.7	10.6	10.7	6.8	5.0	8.9	8.4	8.6

* 출처: 김진애 국회의원(2020.10.19.). 보도자료: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구속률 급감.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kspace406&logNo=222119760258&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2021.8.26.).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2022.9.29.).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2023.9.21.).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 주: 1) 관련 죄명(2021년 이전) :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추행)

2) 관련 죄명(2021년~) :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 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준강간등, 위계등간음·추행, 성착취물제작 배포·소지등),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추행)

3) 2021년 전후 관련 죄명의 차이 및 구속률 차이 산식(구속/처분계*100)에 포함되는 산정기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구속률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변화율은 산정하지 않음.

4) 2021년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 송치사건 포함, 송부사건(불송치, 수사중지) 미포함

(2)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도

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현황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살펴보면, 전국에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시설로 성폭력피해 상담소가 167개소가 있고, 39개소의 해바라기 센터,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의 이용시설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이용시설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이나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생활시설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34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38개소,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 11개소,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이 1개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33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65개소, 폭력피해 주거지원을 위한 354호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초·중·고생은 물론 유아와 학부모 등 전국민을 위한 성교육시설로 전국에 57개소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표 Ⅳ-8-36. 성폭력·성착취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구분	시설별	시설수	대상	보호기간(최대)	비고
1	성폭력피해 상담소	167	성폭력 피해자		이용시설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자립지원 공동생활)	34	성폭력 피해여성	• 일반(1년+1년 6월) • 장애인(2년+회복 시) • 특별지원(19세+2년) • 자립지원(2년+2년)	생활시설
3	해바라기센터	39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이용시설
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일반·청소년)	38	성매매피해자 등	• 일반(1년+1년 6월) • 청소년(19세가 될 때까지+2년)	생활시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1	성매매피해자 등	• 2년+2년	생활시설
6	대안교육 위탁기관	2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	• 1년(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이용시설
7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1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 3개월(수사·소송진행 중인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생활시설
8	자활지원센터	13	성매매피해자 등		이용시설
9	성매매피해상담소	31	성매매피해자 등		이용시설
1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33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 2년 이내	생활시설
11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9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		이용시설
12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211 (56)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성폭력 등 피해자)		이용시설
1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5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정 구성원	• 6월(+3개월 2회 연장) ※ 장기시설: 2년 이내	생활시설
1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8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이용시설
15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354호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	• 2년(+2년)	생활시설
16	청소년성문화센터	57	유아·초·중·고생 부모 등 전국민		이용시설

* 출처: 여성가족부(2023b). 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25.

* 주: 1) 2022년 12월 기준
2) 해바라기센터 1개소 신규 설치('18.하반기),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형 보호시설 1개소 신규 설치('18.하반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20호 추가 지원('19.상반기~), 통합상담소 10개소 추가 지원('19.1월~), 일반상담소 15개소 추가 지원('19.1월~)

가.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현황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전국에 168개의 성폭력 피해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 해 동안의 성폭력 상담건수는 292,945건으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가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22년의 상담건수는 2019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정서적 지원이 86,326건으로 전체 지원 건수의 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 수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시설 입소 연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내용별 지원 건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Ⅳ-8-37.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실적(2013~2022년)

(단위 : 개소수, 건,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성폭력 피해 상담소	개소수		169	154	159	167	167	170	168	169	163	168
	상담건수		145,446	146,750	158,188	158,029	180,572	241,343	276,122	258,410	283,916	292,945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심리, 정서적 지원	건	48,473	46,414	57,469	65,178	68,352	92,293	77,925	75,797	87,157	86,326
		%	54	51	57	57	56	58	53	50	50	49
	수사, 법적 지원	건	15,921	15,944	14,760	16,614	15,736	20,795	22,331	30,387	30,556	31,707
		%	18	18	15	15	13	13	15	20	17	18
	의료 지원	건	5,227	5,652	5,760	6,326	6,304	8,290	8,473	9,904	14,111	13,698
		%	6	6	6	6	5	5	6	7	8	8
	시설 입소 연계	건	2,076	890	1,199	1,747	3,317	4,371	7,063	6,874	8,809	8,222
		%	2	1	1	2	3	3	5	5	5	5
	기타	건	17,569	21,684	21,749	24,114	29,130	34,579	32,519	30,259	35,115	35,698
		%	20	24	22	21	24	22	22	20	20	20
	합계	건	89,208	90,584	100,937	113,979	122,839	160,328	148,311	153,221	175,748	175,65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1에서 2023년 10월 4일 인출.
* 원자료: 여성가족부「여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 주: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함(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 시설입소 연계: 보호시설,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3) 기타: 정보제공,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 전학 지원 등

2022년의 상담 통계를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현황을 성별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우선 남성보다는(6.9%)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90.8%)가 10건 중 9건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64세의 경우가 68.4%로 가장 많았고, 8~13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10.5%, 14~19세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9.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38.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명(%))

구분	고령 (65세 이상)	성인 (20세~64세)	청소년 (14세~19세)	어린이 (8세~13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2 (0.4)	306 (64.0)	39 (8.2)	44 (9.2)	11 (2.3)	32 (6.7)	434 (90.8)
남	0 (0.0)	19 (4.0)	7 (1.5)	4 (0.8)	3 (0.6)	0 (0.0)	33 (6.9)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총계	2 (0.4)	327 (68.4)	47 (9.8)	50 (10.5)	14 (2.9)	38 (7.9)	478 (100.0)

*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2023.3). 202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p2. https://www.sisters.or.kr/consult/stat/6743에서 2023년 8월 21일 인출.

* 주: 1) 성별이 '미상'인 값은 제외함.
2) 2022년 상담통계 기준

나.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상담건수가 89,8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한 인원은 921명이고 자활지원을 받은 인원은 782명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는 2015년 이후 약 5개소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지원시설의 수는 39~40개소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활지원센터는 같은 기간 동안 3개소가 증가하였다. 상담건수는 2019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입소이용인원은 2019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활지원인원은 2020년의 922명에서 2022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Ⅳ-8-39.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황(2015~2022년)

(단위 : 개, 명,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상담소	26	28	29	29	30	30	30	31
지원시설	40	39	39	40	40	40	40	39
자활지원센터	10	11	12	12	12	12	12	13
상담건수	65,607	64,198	60,322	65,241	61,554	88,672	92,742	89,887
입소이용인원	1,284	1,217	1,154	1,173	1,274	1,011	922	921
자활지원인원	829	910	929	883	920	922	832	782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	-	-	-	-	17	-

* 출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내부자료(2022.10.05.). 아동·청소년지원센터 현황.
통계청 e-나라지표.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2 에서 2023년 8월 22일 인출.
* 원자료: 여성가족부 내부행정자료(시설 및 상담소가 위치한 17개 광역지자체의 보고를 통해 취득).

* 주: 1) 누적 개념이 아니라 각 년도의 1년간 실적을 나타냄.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는 성매매피해자들에게 숙식, 의료, 법률지원, 직업훈련지원, 진학지원과 함께 심리치료 및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지원시설"이 있으며 그 중 "청소년 지원시설"은 전국 14개소 운영 중.
3)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 생활시설로 분류되며, 이용시설인 아동·청소년지원센터가 21년부터 개설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②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총 38,481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가운데 99.9%에 해당하는 38,446건에 대해 국선변호사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경찰에서 접수 및 지정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해바라기센터와 검사가 신청한 경우가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현황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접수 건수 대비 93.4%에 대해 국선변호사가 지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99% 이상 국선변호사가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에서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이 이루어진 건수는 201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1만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해바라기센터의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Ⅳ-8-40.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2014~2021년)

(단위 : 건(%))

연도	합계		신청기관										
			경찰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			검사	
	접수	지정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지정
2014	14,310	13,363 (93.4)	6,334	5,959	375	7,149	6,578	571	223	222	1	604	604
2015	16,138	16,106 (99.8)	8,807	8,778	29	6,481	6,479	2	64	63	1	786	786
2016	19,394	19,336 (99.7)	12,170	12,116	54	6,298	6,295	3	37	37	-	889	888
2017	20,048	19,903 (99.2)	12,220	12,077	143	6,872	6,871	1	62	61	1	894	894
2018	22,859	22,755 (99.5)	14,940	14,866	74	7,011	6,981	30	52	52	-	856	856
2019	25,685	25,459 (99.1)	17,702	17,499	203	7,024	7,002	22	39	38	1	920	920
2020	26,102	26,007 (99.6)	19,201	19,107	93	5,723	5,722	1	38	38	-	1,140	1,140
2021	38,481	38,446 (99.9)	30,898	30,863	35	5,912	5,912	-	36	36	-	1,635	1,635

* 출처: 법무연수원(2020). 2019 범죄백서. p.199.
법무연수원(2021). 2020 범죄백서. p.203..
법무연수원(2022). 2021 범죄백서. p.203.
법무연수원(2023). 2022 범죄백서. p.199.
* 원자료: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통계. 각 연도.

* 주: 1) '12. 3. 1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도입.
2) '13. 6. 1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지원 대상이 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
3) '14. 9. 29.「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
4) '20. 11. 2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 선정, 지원 가능.

5) 소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8번째 영역은 특별보호조치와 관련한 것으로서 이 영역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소년 사법, 경제적 착취 및 성적 착취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아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난민 수를 살펴보면, 2022년 난민 신청한 18세 미만 자의 수는 646명으로 전체 신청자 가운데 5.6% 수준이었는데, 2019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2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난민 아동·청소년의 경우 2020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3명, 67명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6월까지의 전체 탈북자의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3,898명의 입국자 가운데 입국 당시의 연령이 10~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3,814명으로 전체 입국자 가운데 11.3% 수준이었으며, 20~29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8.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수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 수는 전체 289,529명 중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는 15,807명으로 5.5% 수준이었으며, 국내 출생 자녀는 273,722명으로 94.5%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거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의 교육 참여율, 차별 경험, 구금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참가율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를 검토하였는데 2022년 기준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총 168,645명으로 2020년의 147,378명에 비해 21,267명이 증가하였다. 초등학생의 비율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이 소폭 상승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0.55%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에는 3.1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다문화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일반 학생들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학교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율은 오히려 일반 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차별경험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15~19세 연령대의 응답자 가운데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 수준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성은 젊은 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구금 현황은 202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2년에는

3명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이주아동의 구금 정도는 예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정도는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소년사법 영역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현황을 검토하였는데, 우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의 경우 새롭게 수용되는 인원은 2012년 10,011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5,689명 수준이었고, 1일 평균 수용인원도 2012년 1,854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그 이후 완만하지만 꾸준히 감소하여 2022년에는 1,028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수용현황과 관련하여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그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최근에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14세 등 저연령 청소년범죄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소년 수형자의 죄명별 인원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기타를 제외하고 강간 등의 성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절도와 폭력·상해와 강도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특히 강간 등의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폭력·상해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절도는 증가하여 죄명별 인원 구성에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법환경의 인권친화적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소년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 선정 현황을 검토하였는데, 소년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 조력횟수는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은 100%를 초과하는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시설의 개선으로 인한 것인지 수용인원의 감소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수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건수와 헌법소원 건수는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청원과 행정심판 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2019년 이래 소년보호사건의 항고 및 재항고 사건 수는 284건에서 239건으로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처리된 사건 가운데 기각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인용(집행종료)된 경우는 25~33건 정도로 처리 사건 가운데 10%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단계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이래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치유 선도프로그램은 2019년 196명이 참여하였으나 2021년에는 21명만이 참여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전체 보호관찰 인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4.2%에서 2021년 26.9%로 17.3%p 감소하였으며, 2021

년 소년 보호관찰 건수 가운데 소년보호처분이 93.5%를 차지하였으며, 선도위탁이 3.4%, 형사처분이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10여년 간 전체 보호관찰 처분 가운데 선도위탁은 감소하였으나,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은 다소 증가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부과 양상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봉사명령은 2020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1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강명령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소년사건 처리인원에서 기소유예는 물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보호관찰소의 선도위탁 사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노동조건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임금수준 및 실업률을 검토하였는데, 우선 노동시간의 경우 2021년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0.8일이었으며, 근로시간 수는 164.2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15~19세 및 20~24세 집단에서 월평균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모두 2010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최근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참여 정도가 다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임금수준의 경우 19세 이하의 월 임금 총액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에 1,882천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다시 감소하였으나, 20~24세 청소년 노동자의 월 임금 총액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에는 2,249천원을 받았다가 2021년에 1,939천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다소 부침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우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을 살펴보면, 2023년 조사에서 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의 8.5%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2022년의 아르바이트 참가율보다 감소하였다. 2023년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가운데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9.7%, 시간을 초과하여 일했거나 하기로 한 일과 다른 일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2%,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5%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경험하는 부당한 사안들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교육 경험 정도를 살펴보

면, 2022년에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1%로 2018년 이후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여전히 부당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관련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접수 현황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성폭력 사범에 대한 기소 건수도 같은 기간 증가하였으며, 불기소한 경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의 구속률은 2015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최근에는 큰 변화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 상담의 경우 2022년 전국에 168개의 성폭력 피해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 해 동안의 성폭력 상담건수는 292,945건으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가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22년의 상담건수는 2019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상담건수는 2019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입소이용인원은 2019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접수 건수 대비 99.9%에 대해 국선변호사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장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층분석

1. 개요
2.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수준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시계열적 관계
3. 아동·청소년의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
4.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 사각지대 발생 원인과 향후 과제
5. 소결

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층분석[19)]

1. 개요

이 장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심층분석을 시행한다. 여기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인권문제의 원인, 현상, 실태,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올해 연구에서 진행하는 심층분석은 3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수준과 아동·청소년의 행복 간의 관계 연구로 양적 연구를 통해 인권보장이 당사자들에게 주는 이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는 일부 인권 지표가 지금까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발달성과(outcome)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집중하게 한다. 또한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불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행복할 권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는 아동·청소년이 가진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이다. 이 연구는 반복횡단 조사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한 개인이 성장 과정에서 다차원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다양한 층위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는 잘 보여주지 못한다. 이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혼합하여 중첩된 취약성을 지닌 아동·청소년의 다차원적인 인권 미보장 현황에 대해 양적 연구와 질적연구의 혼합방법(mixed method)으로 보여준다.

셋째는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 사각지대 발생 원인과 향후 과제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업계고 현장실습에서부터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긱 노동(gig work) 문제까지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제도적 문제와 노동시장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19) 이 장의 1절 개요, 2절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수준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시계열적 관계, 3절 아동·청소년의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절은 이수정 노무사(공동연구원)가 작성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수준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시계열적 관계[20)]

1) 배경 및 연구 문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권리 수준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왔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는 학생인권조례와 아동복지법 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등 다양한 형태로 명문화-제도화되어왔고,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 중앙정부의 노력도 확대되어왔다. 지난 10년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된 권리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실현되어 온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의 질(well-being) 차원에서의 지표들은 권리지표들에 비해 변화가 명확하지 않다. 아동 권리 관련 지표의 개선만큼이나 삶의 질과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간단하게 사회지표(social indicator)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수준과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삶의 질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객관적, 주관적 인권보장수준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권리수준 추이는 어떠한가? 둘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행복) 수준 추이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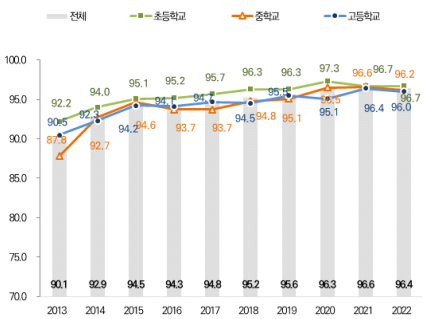
여기서 활용하는 사회지표는 7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클러스터 중 특별보호조치를 제외한 6개 영역의 지표들이며, 각 클러스터에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로 측정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각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사회지표의 변화 추이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11년 간 데이터(2011년~2022년)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대부분의 지표들은 2013년부터 측정되는 것으로 비교하였으나 일부 지표들의 경우 조사 중간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들이 있어 취합 가능한 시기까지만 제시하였다.

20) 이 절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다. 이 절의 내용은 유민상 연구위원이 2023년 5월 26일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권리 수준 변화와 과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원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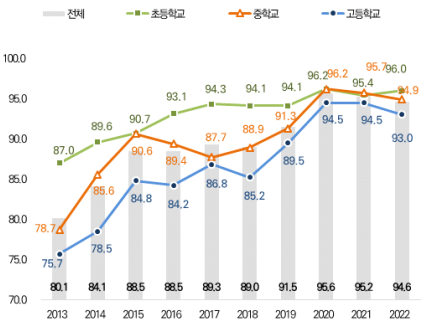
2)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수준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시계열적 관계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지표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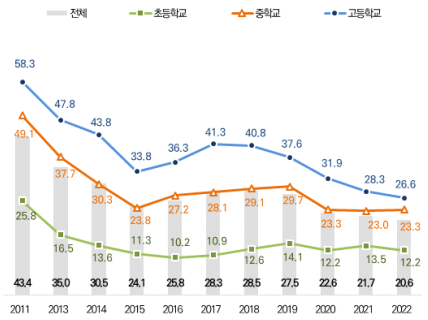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지표 중 자신의 인권존중 정도(가정, 학교) 지표와 차별 경험(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 지표들은 2013년 측정된 이후로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자신의 인권존중 정도는 연차별로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학교에서의 개선도가 급격히 이루어진 것이 특징적이다. 차별경험 역시 부정적 추세가 감소하고 있으며 공부로 인한 차별 등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인권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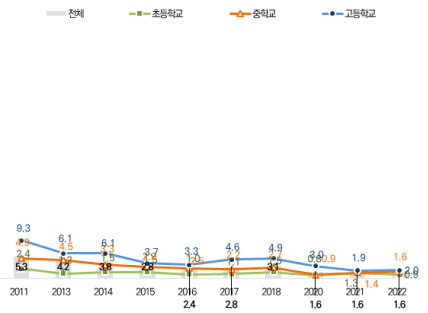
▲자신의 인권존중 정도(가정)



▲자신의 인권존중 정도(학교)



▲차별경험(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



▲차별경험(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

그림 V-2-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지표 변화 추이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지표 변화 추이

시민적 권리와 자유 지표로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을 보면 초중고 모두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에 유일하게 75.6%를 기록했으나 긍정적 응답이 증가하여 2022년 84.9%까지 상승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013년 그렇다의 응답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2022년 중학교는 68.9%, 고등학교는 60.8%로 지난 10년 사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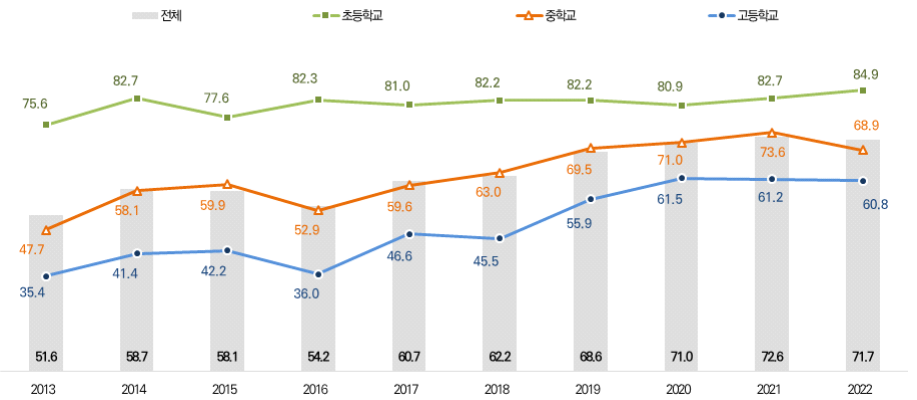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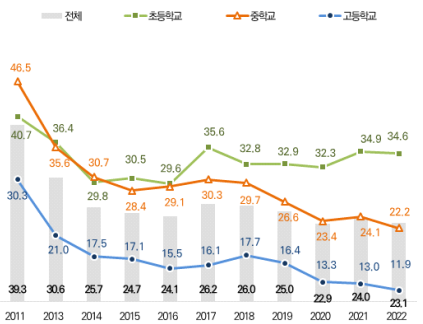
그림 V-2-2.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그렇다' 비율) 추이

(3) 폭력 및 학대 지표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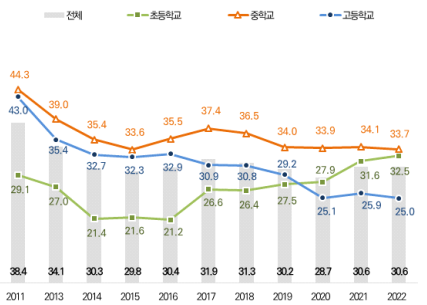
폭력 및 학대 지표는 성인(교사, 부모)으로부터 정서적, 신체적 폭력 경험, 또래로부터의 정서적, 신체적 폭력 경험 지표를 활용하였고,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경험 지표 역시 함께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과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감소하였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체벌 비율이 일부 감소하다가 다시 점증 혹은 유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욕적인 말의 경우에도 초등학생은 2011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등학교에서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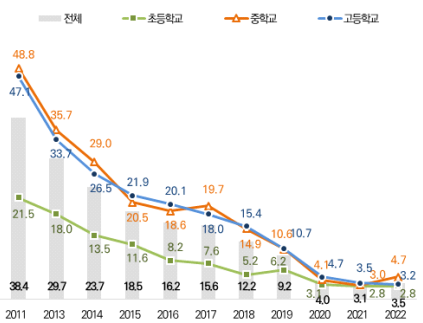
학교 선생님으로부터의 체벌과 모욕적인 말은 더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학교선생님으로부터의 체벌은 2011년 중고등학생 2명 중 1명이 경험하였으나, 2022년에는 100명 중 3-4명 수준으로 획기적인 감소폭을 보였다. 모욕적인 말의 정도는 이보다는 크지 않지만 지난 10년 간 상당 부분 개선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에 대한 모욕적인 말은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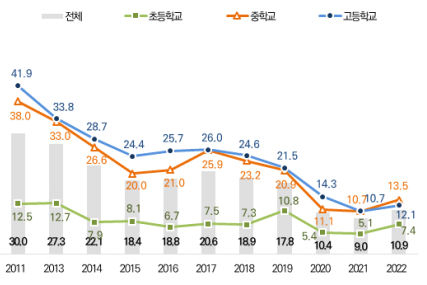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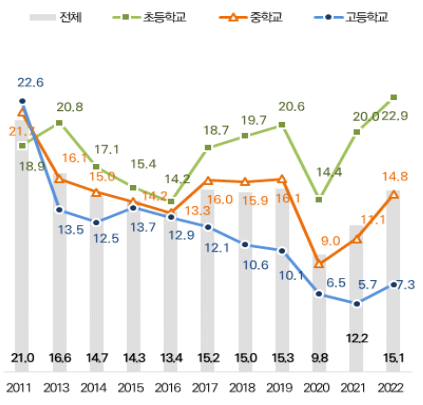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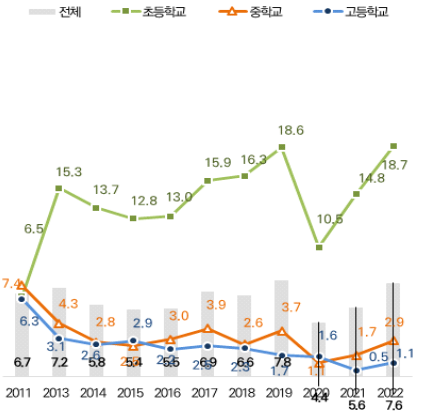
그림 Ⅴ-2-3. 폭력 및 학대 지표 변화 추이(부모, 학교 교사)

성인으로부터의 폭력은 이와 같이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나 또래로부터의 폭력의 변화의 양상은 이처럼 뚜렷하지 않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또래로부터의 정서적인 폭력이나 신체적인 폭력 양상은 과거 10년 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일관되게 폭행이나 구타 경험은 줄어들고 있으나 초등학생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증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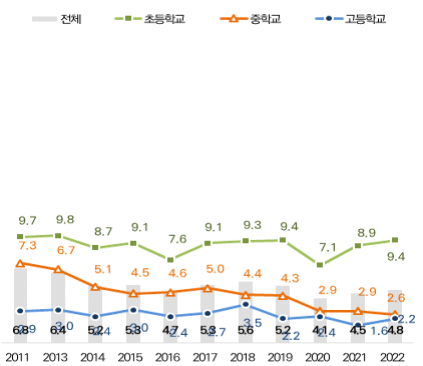
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다시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 그 증가폭이 컸다. 온라인상에서의 폭력(cyber-bulling)은 고등학교에서는 감소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U자형 커브(U-curve)를 그리고 있어 아동·청소년 일상에서의 폭력 경험은 적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제한적으로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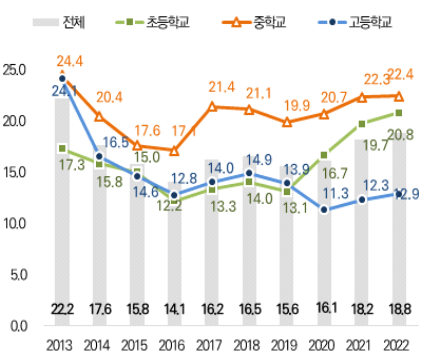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심한 욕설, 모욕)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폭행이나 구타)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따돌림)



▲온라인에서의 피해 경험(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그림 V-2-4. 폭력 및 학대 지표 변화 추이(친구, 선후배, 온라인)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지표 변화 추이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지표로 가출 경험을 조사한 결과 2011년에 비해서는 가출 경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U자형 커브의 양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2011년 3.8%의 학생들이 가출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2015년 2.2%까지 줄어들었으나 2022년에 다시 3.8%로 증가한 양상이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의 폭이 비교적 컸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의 폭이 크지 않고 일부 유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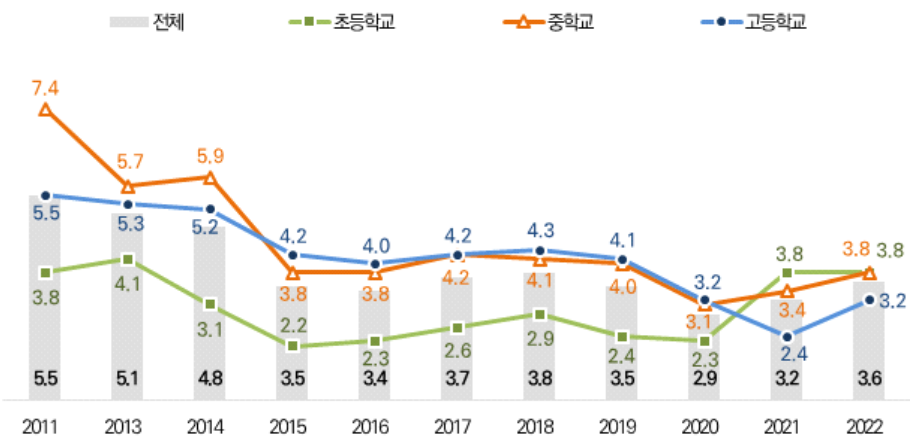


그림 V-2-5. 가출 여부 추이

(5)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지표 변화 추이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지표 변화 추이 지표로서 자살 생각 여부 지표를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 지표에 비해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 시기 자살 생각이 줄어들었으나 2021년과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시기에 맞추어 다시 자살 생각이 증가하고 있다. 2013년을 시작점으로 하면 W자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사회적 부담이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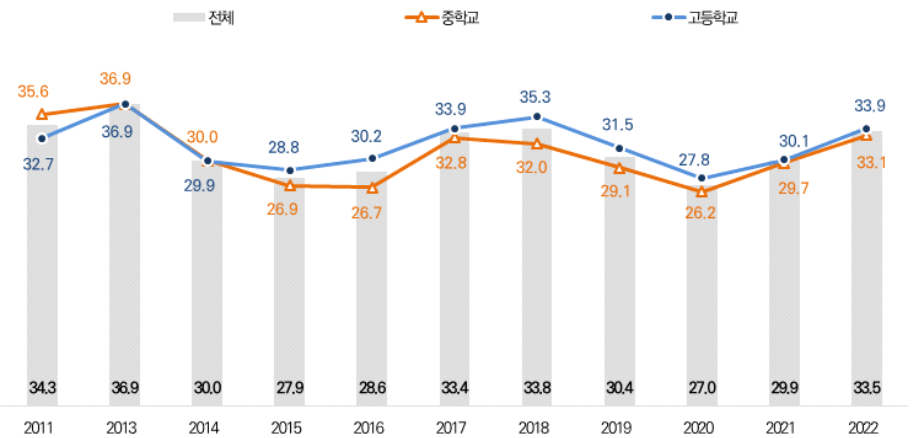


그림 V-2-6. 자살생각 여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지표 변화 추이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지표로 학업중단 생각 추이를 살펴보면, 앞선 자살생각의 패턴과 유사하게 2020년에는 급격한 감소가 있었으나, 2021-2022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모두 나타나는 특징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지표들과 달리 최초 조사가 시작되었던 2012년에 비해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이 모두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은 2014년 14.4%에서 2022년 21.6%로, 중학생은 2012년 15.7%에서 2022년 25.9%로, 고등학생은 2012년 28.5%에서 2022년 39.2%로 증가하였다.

학교에서의 체벌의 감소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나, 자살 생각과 학업중단 지표의 증가는 그런 학교로부터 오는 부정적 영향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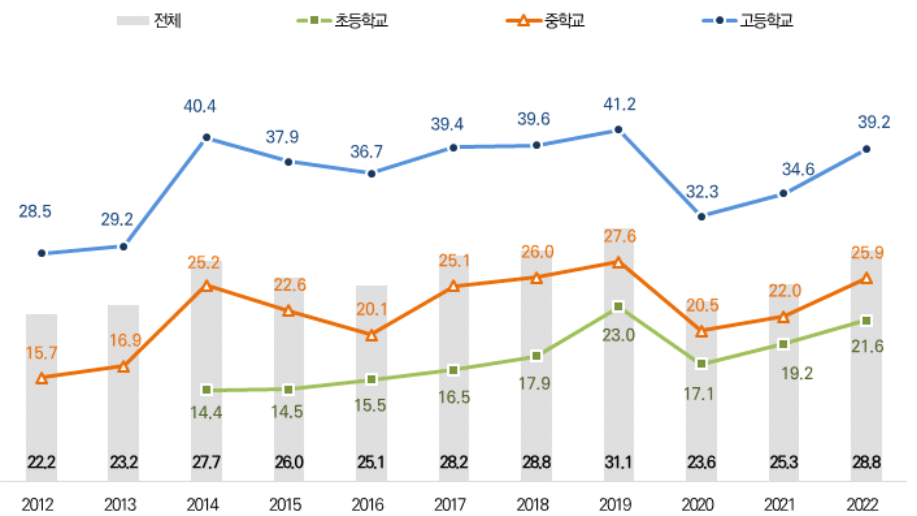


그림 V-2-7. 학업중단 생각 여부 추이

(7) 아동·청소년 주관적 삶의 질 지표 변화 추이

주관적 삶의 질 지표는 삶의 만족도, 외로움, 우울 관련 지표를 살펴보았다. 삶의 만족도 평균점수를 보면, 2015년 조사 시작점 평균 6.8점에 비해 약간 상승한 6.9점으로 나타났다. 2018년 7.1점까지 상승하였으나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온 것이다. 사실상 삶의 만족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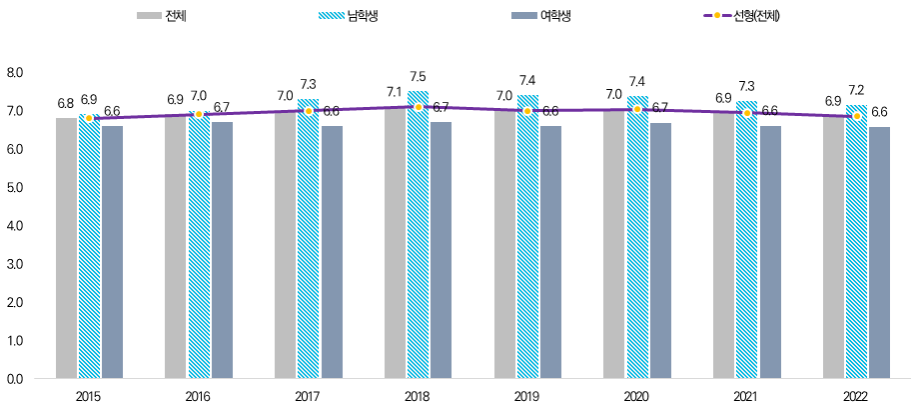


그림 V-2-8. 삶의 만족도(평균점수) 추이

학교급별 만족도 점수를 보면 오히려 '매우 낮은 삶의 수준'과 '낮은 삶의 수준' 집단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10명 중 1명 미만의 비율이기는 하나, 2018년을 기점으로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약간씩 오르고 있다. 삶의 만족도 역시 코로나19 이후 약간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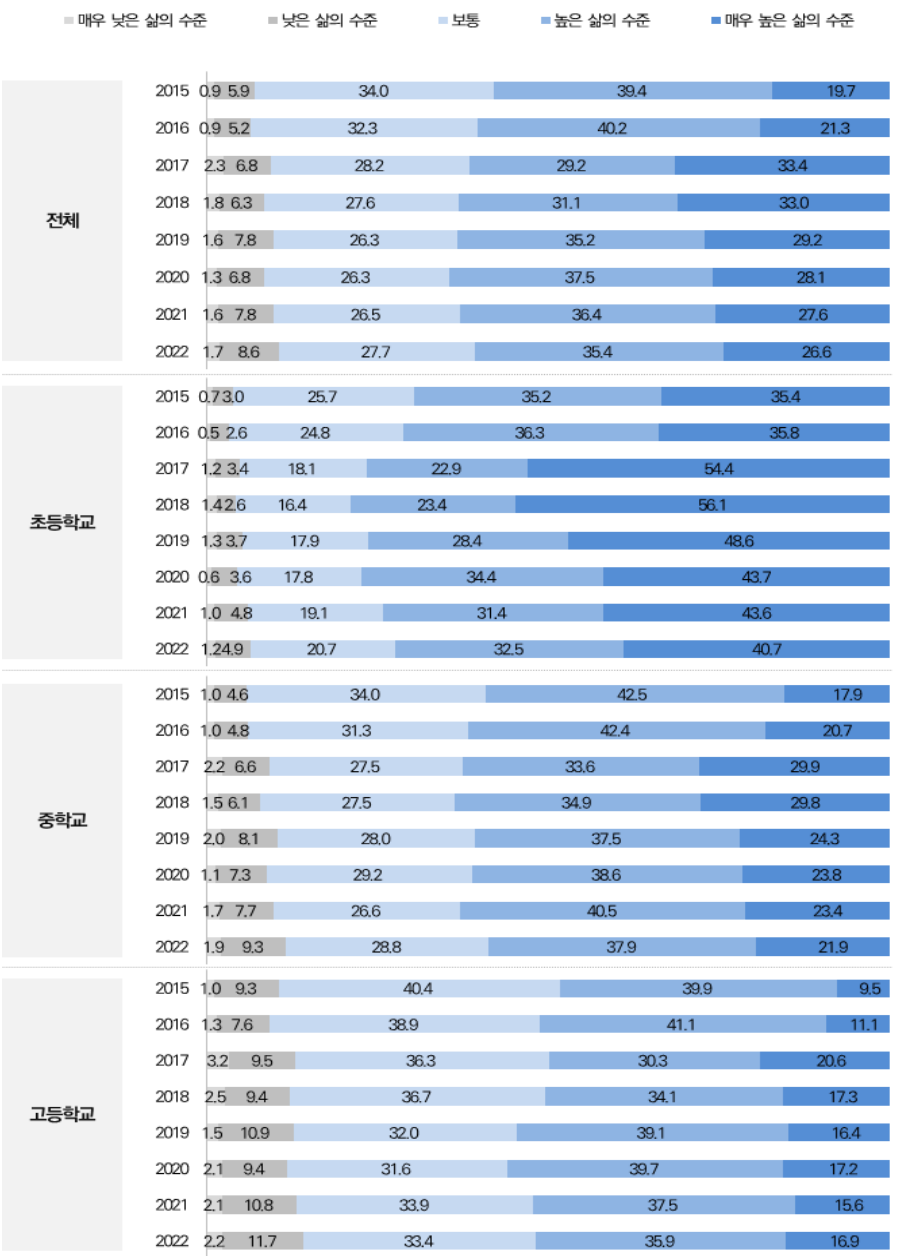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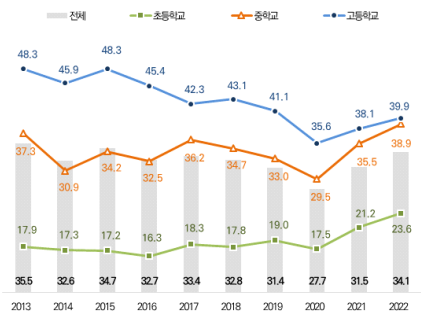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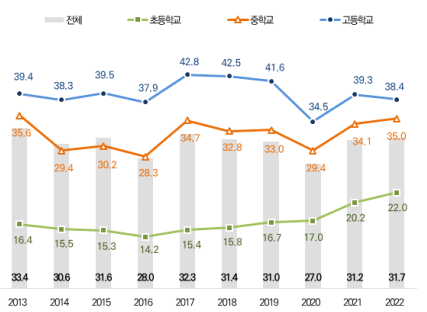


그림 V-2-9. 학교급별 삶의 만족도 추이

외로움과 우울 관련 지표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점차적으로 하강하다가 코로나19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초등학생들은 2013년 조사에 비해 모두 악화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두 지표 모두에서 초등학생은 2013년 첫 조사에 비해 높은 수준의 외로움과 우울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우울 정도는 2016년을 기점으로 점증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그림 V-2-10. 외로움과 우울 관련 지표 변화 추이

요컨대 지난 10년 간 가정과 학교에서의 존중정도는 높아지고, 차별 정도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은 매우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관적 지표들의 변화는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못하다. 오히려 학업중단 생각, 자살 생각, 외로움, 우울은 과거에 비해 증가되는 추세도 보이고 있고, 저연령에서 이러한 변화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인권지표는 개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관적 삶의 질 혹은 주관적 안녕감 지표는 다른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보다 깊이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3) 시사점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수준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시계열적 관계의 결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아동·청소년의 권리지표는 지난 10년간 개선되어 오고 있었다. 특히 일상에서의 폭력(가정, 학교, 지역사회)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온 특징이 있다. 하지만 주관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 정도는 안정적으로 혹은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었다.

규범적 측면에서 아동권리 지표는 개선되어 왔으나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중요한 요인들의 개선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일부 개선이 나타난 영역만큼 다른 영역에서의 위험이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의 폭력은 줄어들었으나 온라인상에서의 폭력이 늘어났을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비교 기제가 일상이 되어 위축이 더 심화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이 과거 중고등학생 시기에 나타났으나, 초등학교 시기로 내려와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 심리, 정서적 문제의 저연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발 달결과 지표가 일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세대적 문제로 고착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 분석은 아동·청소년 권리 연구가 개인의 웰빙이라고 하는 발달성과(outcome)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아동·청소년의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21][22]

1) 연구개요

이 절의 목적은 청년 면접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권 미보장의 요인이나 현황을 특정 시점의 개인의 개별적 특성, 즉 성별, 성적지향, 장애여부, 소득빈곤, 국적 등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실제 개인의 인생에서 이러한 취약성은 중첩되고 교차될 수 있으며 인권 미보장 역시 다차원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취약성이 중첩되고 누적된 채 불안정한 성인 이행기로 진입하여 여러 어려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한 아동은 어린 시절 이러한 취약성을 여럿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고, 이러한 취약성은 다른 취약성과 쉽게 연결되기도 한다.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취약성이 중첩된 상태로 나타나며 이는 여러 영역에서의 인권 미보장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빈곤한 경제적 상태로 한부모의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은 물질적 결핍 측면과 돌봄 측면에서 다른 또래들에 비해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 모습으로 부정적 영향과 연관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관계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교 적응의 문제를 유발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하면서 학업 중단을 하거나 학교 부적응으로 성장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취약성은 다른 취약성과 연결되고, 한 영역의 인권 미보장은 다른 영역의 인권 미보장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고리는 누적적으로 혹은 연속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면접조사를 추가하였다. 실제 아동·청소년기의 취약성이 아동·청소년기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취약성을 지니고 아동·청소년기를 겪은 다섯 명의 청년에 대한 회고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23] 소수 청년 인터뷰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청년 간담회 및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21) 이 절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다.
22) 연구에 참여하여 성장 경험을 나누어주신 청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3) 연구진은 2023년 4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청년들은 이러한 다중적 취약성이 실제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아동·청소년기에서 청년기를 거쳐 성인 이행기까지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진은 주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으나, 간담회 참여한 청년들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면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실제 참여하는 아동·청소년과 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조사할 수

등을 거쳐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통해 도출된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들이 가진 취약성은 어떻게 중첩되어 나타나고, 다차원적 인권침해 경험을 만들어 내는가?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인 이행기로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아동·청소년의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취약성(脆弱性, vulnerability)이란 "무르고 약한 성질이나 특성"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23).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 취약성(vulnerability)이란 "다양한 의미에서 취약한 특성이나 상태(The quality or state of being vulnerable, in various senses)"를 의미한다(Oxford, 2023).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취약성이란 "다양한 의미에서 취약하고 약한 특성이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OECD(2019)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개인의 삶에서 취약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적으로 복합되는 다양한 개인 및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OECD, 2019: p.18). 여기서는 개인과 환경, 그리고 시간의 흐름의 세 가지 축이 반영되어 있다. 사전적 의미와 함께 환경과의 상호작용, 시간의 흐름의 관점을 반영하면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취약성이란 "한순간의 취약한 특성이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개인이 가진 취약성은 중첩(overlap of vulnerabilities)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중첩된 취약성이 학문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으나 개인이 가진 취약성은 한 시점에 교차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종단적으로는 누적적이고 연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ACEs: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은 성인기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다중피해자화(poly-victimization) 관점과도 연관이 있다. 이 연구는 하나의 취약성이 다른 취약성과 중첩되고, 이것이 누적적으로 여러 인권보장에 영향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있을지 고민하였다. 하지만 청년들의 회고조사에서 청년들은 인터뷰 상에서의 여러 심리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아동·청소년에게 어떠한 심리적 부담을 줄지 모르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 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연구진은 이 주제를 연차별 연구주제로 놓고 아동·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연구로 향후 다시 기획할 예정이다.

3) 연구방법

(1) 면접조사의 목적

이 면접조사의 목적은 지표로 확인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기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침해 경험에 대하여 질적연구 방법으로 성장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에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기 중첩된 취약성을 예방하거나 취약성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정책적 개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면접조사의 주요 방법

면접은 온라인 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진행되었고, 90분에서 120분 사이 진행되었다. 모든 면접은 연구자의 진행 하에 개별면접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아동·청소년 당사자에게 취약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과정에서의 심리·정서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회고 조사(retrospective study)를 실시하였다. 청년들이 경험한 아동·청소년기 경험은 시대적, 세대적 상황에 따른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상태에 따라 과거에 대한 기억과 느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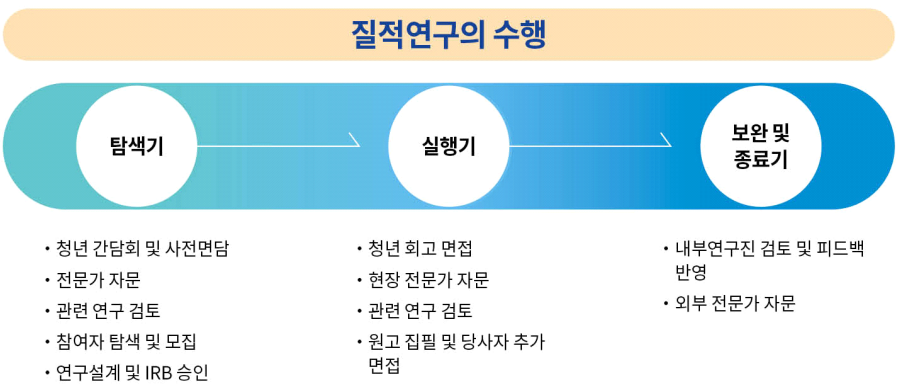


그림 V-3-1. 면접조사 연구수행과정

연구진은 면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청년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여 아동·청소년기의 다중취약성과 다층적 인권 미보장 경험이 실재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청년들은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년기 상태와 아동·청소년기 경험과 연관이 있는 청년들을 모집하였다. 연구진은 공식적, 비공식적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 청년들을 섭외하여 본 면담 이전에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였고, 본 면담에서는 심층적으로 해당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V-3-1. 심층면담 개요

구분	주요내용
면담참여자 수	• 총 5명 면담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을 경험한 청년들의 회고면접
면담참여자 모집방법	• 연구자의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눈덩이 표집
면담방식 (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면접방식 • 개별 심층면담
면담장소	• 온라인 줌(Zoom) 회의실
면담 시간 및 횟수	• 개별면접 1인당 90분 내외 • 본 면담 이전 연구자와 참여자는 면담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어, 본 면담 시 이전의 내용에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였음. 연구자와 참여자들은 2-3회 이상 면담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음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 면접 시 녹음하여 전사 (음성파일을 활용한 전사)
면담자 및 분석	• 연구진 진행 (모집/진행/분석/결과 보고 등)
IRB 승인여부	• 승인 (202305-HR-고유-008)
비고	• 연구 과정에서 청년 4인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진행하여 연구 주제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 및 논의하였음.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분석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쳤음.

(3) 면접조사의 주요 질문 프레임

면접조사의 주요한 질문 프레임은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한 다중 취약성이 무엇인지, 이것의 단기적/장기적 영향은 무엇인지, 이러한 다중 취약성의 부정적 영향에 정책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이다. 이 연구는 특정한 대상이나 청년기 발달 성과를 고정해 놓지 않고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다양한 청년들의 경험을 듣고자 하였다.

표 V-3-2. 심층면접의 면접내용 프레임

주요 요소	내 용
아동·청소년기 중첩된 취약성	•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취약성
중첩된 취약성의 영향	• 중첩된 취약성이 가지고 온 내적, 외적 영향 • 중첩된 취약성의 종단적 영향
중첩된 취약성과 발달성과	• 중첩된 취약성과 인권 미보장의 사례 • 중첩된 취약성의 성인 발달에의 영향
중첩된 취약성의 부정적 영향 개입 방향	•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 예방 방법

(4) 샘플링 및 참여자 정보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제한된 참여자의 경험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연구자는 청년의 생애전반기 고립과 니트(NEET)화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 많은 참여자에게 단편적으로 경험을 듣기보다 소수의 참여자에게 생애과정을 듣는 것이 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현상에 대한 보고뿐만 아니라 이론적, 정책적 배경에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면접 참여자를 5명으로 제한하고 눈덩이 표집 방법을 통해 20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다양하게 모집하였다. 면접 참여자들은 현재 니트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도 있었지만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아동·청소년기에의 경험이 현재 성인이행기에 있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면접 참여자들은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모집되었다. 참여자들은 연구자의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모집이 되었으며, 연구자의 관련 연구 등에서 아동·청소년기 경험과 청년기의 상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경험에 집중하

기 위하여 소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자와 이전 연구들에서 2~3회가량 대면/비대면 면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 청년들로 라포가 형성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아동·청소년기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해주었다.

표 V-3-3. 면담 참여자 주요 정보

ID	연령(만)	성별	학력	현재상태
AY	20대 중반	여	대졸	대학졸업 후 니트 상태
BY	20대 중반	남	대졸	회사 퇴직 후 니트 상태
CY	20대 중반	여	대학 중퇴	대학 중퇴 후 니트 상태
DY	20대 중반	기타*	대학원 재학	대학원 재학 중
EY	20대 후반	남	대졸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참여

*비고: 참여자 DY는 지정성별이 여성인 참여자로서 자신을 성소수자인 퀴어(queer)로 소개하였고, 현재 성별을 남녀로 구분지을 수 없는 넌바이너리(non-binary)로 소개하였음. 이에 따라 DY의 성별을 기타로 표기하였음.

(5) 분석방법

연구진은 모든 면접을 온라인 회의 플랫폼인 줌(Zoom)으로 진행하였고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녹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진은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반복적으로 읽고 코드화하여 분류한 후 항목 분석을 시행하고 비교하였다. 연구진은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참여자들의 아동·청소년기 경험의 양상을 이론적, 정책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장 전문가에게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자문을 받고 학계 전문가에게 질적연구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연구의 질적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였다.

(6) 연구윤리에 대한 고려

연구진은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고 설명서와 참여자 동의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정보를 제공한 후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였다. 이후 조사 시작 시 조사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해 전달한 후 인터뷰 중 불편하거나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에 대해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과 중간에 조사를 중단하여도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을 이야기한 후 심리정서적 타격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 후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구진에게 연락하여 후속 도움을 받거나 심리 상담을 받을 것을 안내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다(IRB 승인 번호: 202305-HR-고유-008).

4) 면접조사 분석 결과

청년 당사자의 회고 면접방식을 통해 인터뷰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가 도출한 주제는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생애경험", "부정적 경험에 대한 도움과 회복 부재", "중첩된 취약성과 부정적 악순환의 결과", "부정적 경험의 완충재와 회복탄력성", "예방과 회복을 위한 방향" 등이다.

먼저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청년들의 회고조사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아동·청소년기의 중요했던 사건이나 경험으로 '부모와 가정의 부적절 양육', '학교폭력과 부적응', '지역사회 불안정과 불평등'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부정적 경험에 대한 도움과 회복 부재"는 그런 사건이나 경험이 발생한 후 외부적 환경으로 '도움 없이 지낸 시간', '지원체계의 부재'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중첩된 취약성과 부정적 악순환의 결과"는 사건과 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으로 '사회적·심리정서적 불안정과 발달 지연', '삶에 대한 회의감', '장기적, 누적적 결과'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부정적 경험의 완충재와 회복탄력성"은 자신에게 일어난 부정적 사건과 경험이 완화되거나 완충된 경험과 과정으로 '강점을 통한 긍정적 성장', '상담과 전문서비스', '공동체와 중요한 타인'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방향과 개선을 위하여 청년들에게 과거의 자신이나 앞으로 자신과 유사한 일을 경험할 아동·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방향을 묻고 정리한 내용으로 "예방과 회복을 위한 방향"은 '학교 환경 개선', '인권 차원의 개선', '지역적·사회적 환경 개선' 등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연구진이 분석한 연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V-3-4. 심층면담 분석 결과

주제	범주	하위범주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생애경험	가정 내에서 부모의 폭력과 부적절한 양육환경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경험
		방치 혹은 무관심
		부모의 이혼 혹은 부재
		부모의 정신질환과 부적절 양육경험
		성학대 및 성폭력
	학교폭력과 부적응	학교부적응 경험
		학교폭력 및 따돌림 경험
	지역사회 불안정과 불평등	잦은 이사와 주거불안정 빈곤 , 경제적 불안정 , 불평등 경험
부정적 경험에 대한 도움과 회복 부재	도움 없이 지낸 시간	도움에 대한 무기력
	지원체계의 부재	관계 및 지지망의 부재
		어른들이 알아도 도움받지 못한 경험
		사회적 비교와 자기 비난
중첩된 취약성과 부정적 악순환의 결과	사회적·심리정서적 불안정과 발달 지연	우울 및 불안감
		위축된 사회성
		자기자신에 대한 혼란
	삶에 대한 회의감	자살생각 및 시도
		자해
	장기적, 누적적 결과	사회적 고립
		취약성의 전이
		관계성과 신뢰 저하
부정적 경험의 완충재와 회복탄력성	강점을 통한 긍정적 성장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 성취하기
		잘하는 것을 통한 인정
	학교와 상담서비스의 도움	선생님의 지지와 관심
		위클래스 선생님과의 상담
	공동체와 중요한 타인이라는 완충재	가족과 공동체 등 지지망
		성인 이행기 형성된 지지망
		좋은 친구
예방과 회복을 위한 방향: 자신의 경험을 통한 현재 세대 보호	학교차원	불리한 상태를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적응지원 학교와 지역의 청소년 지원서비스 개선
	사회차원	어려움과 회복지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
		사회적 격차 해소
	인권보장차원	의견표명권 보장
		회복적 권리 강조

(1)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생애경험

연구자는 사전 안내에서 청년들에게 아동·청소년기의 일들 중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것이라 하였고, 청년들은 이에 대답하기 위하여 사전에 여러 생각을 정리하였다고 하였다. 청년들은 하나둘씩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생애경험이라는 주제로 도출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가정 내에서 부모의 폭력과 부적절한 양육환경, 학교폭력과 부적응, 지역사회 불안정과 불평등의 범주들이 청년들의 현재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범주들로 묶일 수 있다.

표 Ⅴ-3-5.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생애경험 주제의 범주 및 하위범주

주제	범주	하위범주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생애경험	가정 내에서 부모의 폭력과 부적절한 양육환경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경험
		방치 혹은 무관심
		부모의 이혼 혹은 부재
		부모의 정신질환과 부적절 양육경험
		성학대 및 성폭력
	학교폭력과 부적응	학교부적응 경험
		학교폭력 및 따돌림 경험
	지역사회 불안정과 불평등	잦은 이사와 주거불안정
		빈곤 , 경제적 불안정 , 불평등 경험

① 가정 내에서 부모의 폭력과 부적절한 양육환경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부정적 경험들 중 상당수를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일들로 이야기했다. 폭력의 정도가 강했던 참여자들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학대 등을 주로 이야기하였다. 불안정과 혼란을 겪은 참여자들은 부모의 이혼이나 부재 혹은 무관심을 경험하여 완충재나 보호막으로서의 가정환경이 부재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이야기한 청년들은 빈곤, 경제적 불안정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자신이 느꼈던 불평등 경험과 경제적 격차가 자신의 아동·청소년기를 얼마나 주눅들게 했는지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경험

20대 중반 여성인 참여자 CY는 청소년기 자해 경험을 가지고 있다. CY는 현재 니트 상태에 머물고 있는데 단기적 일들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CY는 대학을 중퇴한 후 미래에 대한 뚜렷한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CY는 어릴 적 부모의 가정폭력을 목격했고 자신도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 이는 가정에서의 생활을 매우 불안정하게 했고 위축을 가지고 왔다. 현재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으로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했던 일들이 아직 청년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였다고 이야기했다.

>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거든요."*
> ***(C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 중퇴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20대 후반 남성인 참여자 EY는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다. 가정폭력 목격 경험과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함께 있어 자신이 경험한 불안정한 아동·청소년기를 이야기하였다.

> *"이거는 불합리하게 날 때리는 거다. 저 사람의 감정풀이다. 그리고 제가 제일 화가 났었던 건 그거예요. 저는 이제 고집이 좀 센 편인데 어떠한 이유들을 이제 뭔가 제가 그 사람이 보기에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보기에 잘못했을 수 있어요.....제가 학원을 안 갔어요. 예를 들어서 학원을 안 갔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진짜 아파서 그런 거예요.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꾀를 부린다고 학원을 안 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앞에서 나 진짜 아파서 안 간 거고 어떤 일 때문에 있어서 안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 너 꾀부리는 거잖아 아니면 너가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막 추측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고집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건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 내가 아니고 맞는 건 맞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것들을 강요하니까 그러면서 더 때리는 거예요."* ***(EY, 20대 후반 청년, 남,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참여 중)***

아동·청소년기의 폭력은 반복되고 점차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참여자 EY는 계속되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신과 동생의 불안정했던 아동·청소년기를 이야기했다.

"지금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것들은 이것도 심리 상담을 하면서 얘기했었던 건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동생들을 많이 돌봐야 했거든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6살, 9살 차이가 나는데 초등학교 때 집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집에 컴퓨터도 없고 게임기도 없고 읽는 거는 책이랑 tv밖에 없는데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고 싶잖아요. 나도 나가서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거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들을 부모님은 가게 나갔으니까 어린애들을 제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13살이니까 동생 한 명은 7살, 다른 한 명은 4살이었겠죠. 그러니까 거의 자기 앞가림 못하는 친구들인데 근데 저는 너무 이제 놀러 가고 싶으니까 몰래 나가서 pc방에 한두 시간 있다가 오면 괜찮겠지 하고 나갔는데 그 사이에 아빠가 온 거예요. 그리고 엄청 화를 나서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나는 동생을 형이 어떻게 저렇게 어린애들을 두고 밖에 나가서 이럴 수가 있냐였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건 맞았죠. 어린애들 위험한 데 두고 나갔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좀 무차별적인 폭력이었거든요. 쇠몽둥이를 가지고 계속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수학여행이었었는데 이제 계속 똑바로 서라고 계속 이제 팔뚝들을 때리고 그래서 여기에 멍이 다 들었어요. 그날 진짜 한 50대 100대 정도 맞았던 것 같거든요." ***(EY, 20대 후반 청년, 남,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참여 중)***

방치 혹은 무관심

꼭 학대나 폭력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기에는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 20대 중반 청년 여성인 AY는 교회 전도사였던 부모님을 따라다니며 잦은 이사를 다녔고, 어린 시기부터 성숙하게 동생을 돌보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 AY에게는 이러한 방치 혹은 무관심이 상처로 남아있다. 본인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서울로 대학을 진학해서 올 만큼 노력했지만 그 시기의 빈자리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자신에게 필요했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방어막이 없었기 때문이다. 잦은 이사를 다니느라 친구와 진지한 관계를 갖기가 어려웠던 AY에게는 부모의 관심이 필요했다고 했다.

"부모님은 일단 집에 잘 안 계셨어요. 계속 이제 막 뭐라 하지 교인분들 이제 집에 방문하거나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이런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거의

안 계셨고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은 알아서 잘 해줘서 고맙다. 네 약간 그런 식이어서 약간 칭찬 같은 것도 되게 없었어요. 그냥 그냥 막 나 뭐 해왔어 뭐 100점 맞았어 이러면 그래 그냥 이 정도? 그래서 약간 저는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 그닥 터치나 관심 이런 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어릴 때 좀 아팠어가지고 동생한테 관심이 좀 많이 쏠렸었고..." ***(A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졸업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부모의 이혼 혹은 부재

우리사회에서 결혼한 성인의 이혼은 이제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났고 그에 대한 부정적 낙인도 희미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참여자들의 아동·청소년기에 부모의 이혼이나 부재가 놀림거리가 되거나, 경제적 불안정을 겪게 하거나, 관계나 지지망이 옅어지거나 하는 영향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20대 중반 남성 청년인 BY는 잠시 부모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주하여 친척들과 지낸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낯선 곳에서 친구들의 놀림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

"그런 게 아무래도 초등학교 당시에는 그게 좀 놀림거리기도 했고요. 아버지가 없다는 게. 이제 저도 이유를 모르니까 아버지 그 당시에는 제가 모르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없는지 있는지 설명도 좀 힘들고 그러한 게 있었죠." ***(BY, 20대 중반 청년, 남, 회사 퇴직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가정폭력을 경험했던 EY는 아동기에 그리고 청년기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다. EY는 아동기에 경험은 힘들었지만 청년기에는 그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하지만 청소년이었던 EY의 동생은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 짐작했다.

"일단은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제가 제 나이로 23살, 동생 나이로 이제 동생이 한 중학교 2학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 때 이제 한창 사춘기일 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도 좀 좀 화목하거나 물론 이제 엄청 불행이 많았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끔씩 그런 이제 폭력적인 사건들이 꽤 있었거든요. 부모님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어머니가 아버지를 너무 심하게 폭력적으로 때린다거나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숨죽이고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자는 척을 하고 있어야 된다거나 분명히 시끄러워서 다 깨고 너무나도 두려운데 그런 것들이었고..."

(EY, 20대 후반 청년, 남,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참여 중)

그것은 EY 역시 아동기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 폭력에 대한 두려움, 실존적인 고민들이 이어졌고 자신은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이야기한다. 적어도 EY에게 부모의 이혼이라는 사건이 여러 취약성을 가지고 온 것이다.

>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여섯 살 때 이혼을 겪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재혼을 하셨었고 그러면서 재혼했을 때 이제 그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었어요. 친아버지도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불안감들은 이제 엄마가 저를 또 불안하게 했었고 엄마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너 버리고 간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실존적인 되게 두려움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왜냐하면 이 집에서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난 저 사람이랑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고 그럼 난 버려지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생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는데? 그게 되게 실존적인 고민들이었고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은 이제 나이가 좀 더 돼서 이혼을 한 거고.....(중략)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좀 죽고 싶다." **(EY, 20대 후반 청년, 남,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참여 중)***

부모의 정신질환과 부적절 양육경험

현재 니트 상태에 있는 20대 중반 청년 CY는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아동학대를 당한 기억이 있다고 했다. 특히 아버지가 부모의 성행위를 보여주거나 야동을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녀는 어린이집에서 교사에게 맞은 기억도 있었는데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했다. 집에서 맞으나 어린이집에서 맞으나 똑같다는 이유였다.

> *"신체적인 거는 주로 유치원 유치원생 때인가? 그때 어린이집에서 좀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고 정신적인 거는 뭐 엄마랑 아버지가 싸우는 걸 많이 봤고, 어머니가 정신질환자셔서 그런지 집 안에서 자해하는 걸 좀 많이 보기도 했고, 그리고 어머니랑 아버지가 성관계를 하는 걸 제 눈앞에서도 좀 보여주시기도 했고, 또 또 뭐 있지 또 어디가 주로 야동 같은 걸 저한테 좀 많이 보여줬어요." **(C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 중퇴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성학대 및 성폭력

가정폭력과 성학대가 중첩되어 있는 CY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로 인해 아동·청소년기 어려움을 겪었다. 20대 중반 청년인 DY는 부모의 친한 친구의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그 어머니 친구의 집에서의 경험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근원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뭔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 그것이 저는 현재의 저를 만드는 데는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를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언급되지, 언급되지 않았네가 아니라 아예 언급되지 않았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DY, 20대 중반 청년, 기타, 대학원 재학 중)***

이와 같은 가정 내에서의 부모의 폭력과 부적절한 양육환경은 아동·청소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가정에서의 불안정으로 해당 사건의 경험은 단지 한 번의 부정적 영향이 아닌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② 학교폭력과 부적응

참여자들은 모두 일정 정도의 학교에서의 폭력과 따돌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잠깐의 고통이었으나 누군가에게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는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학교폭력 및 따돌림 경험

공부를 잘했던 AY는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했지만 자신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었다. AY는 잇따른 이사와 전학으로 오랜 친구를 못 사귀는 것이 자신의 아동·청소년기의 아쉬움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학교폭력 발생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하였다.

> *"초등학교 때 제가 부반장을 했었는데 반장이 저를 되게 싫어해 가지고 반장이 저를 왕따를 시켰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반장이 표수가 더 많고 반장이 친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더 많았거든요. 약간 무리의 중심이었어서. 그래서 저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을*

*친구들한테 싹 하고 강당 같은 데로 불러내서 막 심한 말 이렇게 둘러싸서 심한 말하고 그리고 수업시간에 쪽지에다가 잔뜩 제 욕을 다른 글씨체로 그러니까 모두가 한마디씩 적은 것 같은 종이, 욕설이 담긴 종이 그런 거를 저한테 매시간마다 줬어요. 그리고 막 선생님이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여주시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영화 시간은 항상 욕설이 담긴 종이를 받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까지 와가지고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막 퍼뜨렸어요. 교회에 그 반장 친구가…" **(A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졸업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하지만 오래되고 안정적인 친구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막을 수 있다. 잦은 이사와 전학으로 친구 관계에 한계를 느끼던 AY는 친구 관계에서 불안정을 느끼고 소극적이고 상대에게 맞추어주는 수동적 관계에 익숙했다. 이 때문에 친구 관계에서 끌려다녔는데 이것을 '가스라이팅 당했던 것 같다'고 표현하였다.

*"저는 근데 그 왕따 경험보다 오히려 중학교 때 같이 놀던 친구, 그러니까 그게 그 왕따 경험이 그 중학교 때 경험에 영향을 미친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는데 중학교 때 친구들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약간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너는 나랑만 놀아야 돼. 재랑은 놀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었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나랑 못 놀아 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자꾸 그러면 너만 너만 힘든 거지 너만 나랑 못 놀게 되니까 너만 왕따되는 거고 너만 도태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못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A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졸업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온 참여자 BY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심각한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라고 하였다.

*"저는 학교폭력 저는 이제 경험 그러니까 제가 폭력을 당한 사람이죠. 학교폭력 지금 와서는 엄청난 학교폭력을 당했다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저는 조금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BY, 20대 중반 청년, 남, 회사 퇴직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BY는 신체적 폭력보다는 놀림과 헛소문 같은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당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신체적 폭력은 아니었으나 관계에서의 위축이 찾아왔었고 부모와 친구 도움, 그리고 위클래스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회복이 되기도 했다.

> *"그때 좀 타겟팅으로 좀 이렇게 막 신체적 폭력은 안 당했어요 신체적 폭력은 안 당했어도 언어적 폭력을 좀 많이 당했지. 그리고 신체적보다는 약간 좀 멘탈을 좀 건드는게, 예를 들어 등에 있는 교복에 낙서를 한다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현실적으로 못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현실을 그래서 중학교 때 굉장히 조금 아버지랑 어머니도 찾아오시고 그걸 제가 힘들다고 토로를 막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 별거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BY, 20대 중반 청년, 남, 회사 퇴직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경험한 CY는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어 있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웠다.

> *"초등학교 때부터 적응이 안 돼서 그냥 초등학교 때 왕따당했다가 중학교 때도 거의 거의 은따? 친구도 친구도 친구도 거의 한 2명? 2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C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 중퇴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DY와 EY 역시 학교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위축을 경험했다. 다행히 이들에게 이러한 경험이 큰 상처를 남기지는 않았으나 일시적인 관계의 어려움과 사회적 위축이라는 경험을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은 반복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 초등학교 때는 사실 제가 학교폭력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었어서 굉장히 위축된 상태로 학교를 다녔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조금 교우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아이였는데..."* ***(DY, 20대 중반 청년, 기타, 대학원 재학 중)***

> *"제가 3학년 때까지 좀 왕따를 당했었어요. 사실 정확하게는 5학년 때까지 나를 괴롭히는 친구 학교에서 있었었는데 이제 그 친구랑 계속 같은 반이 되는 거예요. 같은 반이 되고 이제 그게 그 친구가 날 괴롭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 엄마도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계속 5년 내내 같은 반이 되는 거예요".* ***(EY, 20대 후반 청년, 남,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참여 중)***

학교부적응 경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경험한 CY는 학교폭력과 교우 간 갈등을 경험하면서 점차 학교부적응 정도가 높아져갔다.

"누구 직접적으로 괴롭힌 건 아닌데 괴롭힌 건 아닌데 학교를 안 나가기도 하고 학교생활 부적응이기도 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관종이었죠." ***(C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 중퇴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놀리거나 불쾌하게 해서 그랬을 때도 있고 그냥 제가 시비 털고 싶어서 그랬을 때도 있고" ***(C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 중퇴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폭력적인 부모와 헤어지고 조부모 집에서 살게된 후부터 고통은 점차 사라졌지만 이 당시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학교라는 공간은 성장의 공간보다는 도피의 공간이었다.

"학교 다니기 너무 싫었어요...(중략) 학교 안 나가면 딱히 갈 데도 없었고,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어거지로 다녔죠." ***(C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 중퇴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그냥 그때그때 생각할 수 있었던 짓은 다 했던 것 같은데 교실에서 잠을 자거나 1교시부터 마지막 교시까지 쭉 잠을 자거나 아니면 뭐 애들하고 싸우거나 자해한 적도 있고, 그리고 교실에서, 교실에서 만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C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 중퇴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CY에게는 그 도피처도 즐거움이나 안식을 주는 곳이 아니라 바깥 세상보다는 조금 나을 뿐 소속감도 연대감도 느끼기 어려운 그저 지겨운 곳이었다.

Q: 학교다니기 싫어졌었던 게 언제서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A: 글쎄요. 아니요. 오히려 질문을 바꾸셔서 학교 다니기가 좋았었던 적이 있으셨냐고 물어봐주세요. ***(C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 중퇴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③ 지역사회 불안정과 불평등

잦은 이사와 주거불안정

AY는 청년기가 된 지금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기 부모를 따라 여러 지역으로 이사를 다니고 전학을 갔던 경험이 자신의 현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 *"제가 전학을 엄청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세 번 정도 전학을 갔고, 중학교도 두 번 정도 전학을 갔고, 고등학교만 한 번에 졸업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인간관계가 계속 계속 중간에 끊기니까 1년 단위로 더 짧게는 6개월 7개월 단위로도 인간관계가 계속 끊기니까 저로서는 약간 이렇게 깊은 인간관계라든지 좀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봐야되는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거가 굉장히 많이 서툴었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쪽으로 좀 많이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학을 많이 다니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초유의 관심사였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봐줄까 아니면 저 친구들 무리에 나를 끼워줄 만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많았어서 뭔가 관계의 주도성이 저한테 없었던 것 같아요."*
> ***(A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졸업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잦은 이사는 단순히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를 형성하기 위한 역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AY의 사례를 보면 생애전반기에 사회적 자본 형성 역량을 쌓는 것이 이후의 관계망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지역 내에서의 안정과 정책은 초연결사회가 된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하다.

> *"뭔가 항상 남한테 관계의 주도성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힘들 때도 뭔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재는 싫어할 거야 혹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또 혼자가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약간 그냥 그런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서투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좀 저는 핵심 코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좀 왕따당한 경우도 있고, 전학을 많이 다니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는 지금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동·청소년기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해) 딱 생각해보면... 하나만 말하라면 그건 것 같긴 해요."* ***(A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졸업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빈곤 , 경제적 불안정 , 불평등 경험

목회자 생활을 하시는 AY 부모님은 전도사로서 박봉에 주거 불안정을 경험하였고, AY는 장녀로서 이러한 가정 내 상황을 이해하고 내면화했다. AY는 부모님이 자리를 잡자마자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났지만 이로 인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 위축된 경험을 털어놓았다.

> *"저는 약간 좀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핍. 그러니까 이게 담임 목사님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굉장히 봉급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4인 가족이 생활해야 되는 급여라고 약간 그렇게 볼 수 없을 정도로 적은데 제가 그게 얼마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빠가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서 약간. 요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나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사줘라든지 그게 심지어 인터넷 강의나 진짜 필요한 거였는데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나중에 진로를 선택할 때도 저는 원래 피아노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잠깐 이제 배우는 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공부해서 가는 게 돈도 안 들고 학교도 더 잘 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것도 약간 포기했었고 그래서 저는 약간 경제적인 지원이 약간 좀 결핍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A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졸업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서울에 거주하는 DY는 다른 구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위축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성소수자인 DY는 자신의 경험에서 성정체성 혼란과 그것을 밖으로 드러낸 경험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체감했던 그 시기가 더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이것은 정도의 차이일뿐 하나의 취약성이 다른 취약성과 결합되어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만들어내게 된다.

> *"그때에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조금 먼 곳으로 가게 됐어요. 이제 같은 관내지만 이제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는 곳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거주하는 곳은 ****였고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게 된 곳은 ****였는데 이제 그런 어떤 소득 격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감각하고 있는 퀴어 정체성에 대한 조금 직접적인 비난도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 공간에서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겠구나를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은 괴로웠던 시기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DY, 20대 중반 청년, 기타, 대학원 재학 중)***

DY는 여러 취약성이 드러난 순간 그러한 고민이 자신을 압도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당장 그리고 앞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이것은 취약성의 발현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닌 연속 사건이며, 사건이 반복되면 하강하는 경험을 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 *"그 당시에 제가 우울감을 너무나 심하게 느꼈던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자살 시도를 한다거나 뭐 자해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물론 저의 성정체성 때문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떠한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빈곤함 때문에 이 갭을 평생 메꿀 수 없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끝내버리자라는 생각도 컸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우울감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야기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DY, 20대 중반 청년, 기타, 대학원 재학 중)***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나타나고 누적되고 반복될 수 있다. 참여자들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연결되고, 학교폭력의 피해가 가해와 연결되는 경험을 했다. 이는 폭력의 연결고리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불안정과 사회적 위축을 가지고 오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관계하기보다는 가만히 위축되어 생활하게 만든다. 이는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한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이후의 선택과 과정에 연달아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준다.

(2) 부정적 경험에 대한 도움과 회복 부재

청년들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덤덤하게 이야기하였고, 연구자는 그 당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지에 대해 물었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항상 혼자 부정적 사건을 감내해야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누군가 자신에게 도움을 준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없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부정적 일들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들도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부정적 경험에 대한 도움과 회복의 부재로 주제화할 수 있고, 도움 없이 지낸 시간과 지원체계의 부재로 범주화할 수 있다.

표 V-3-6. 부정적 경험에 대한 도움과 회복 부재 주제의 범주 및 하위범주

주제	범주	하위범주
부정적 경험에 대한 도움과 회복 부재	도움 없이 지낸 시간	도움에 대한 무기력
	지원체계의 부재	관계 및 지지망의 부재
		어른들이 알아도 도움 받지 못한 경험
		사회적 비교와 자기 비난

① 도움 없이 지낸 시간

도움에 대한 무기력

참여자들은 도움 없이 지낸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누군가는 운 좋게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을 찾았지만, 그러한 사람이 없을 때는 부정적 충격의 큰 영향을 홀로 감내해야했다. 가장 중첩적인 취약성을 많이 지니고 있던 CY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Q: (그렇게 어려웠을 당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나요?)
A: "그게 경찰이나 위클래스 선생님들한테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해봤고, 중학생 때였나 정신과 의사 선생님, 정신과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정신과를 가니까 부모님 허락을 받고 와야 한다고 해서 그때도 뭐"
Q: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가봤어요? 정신과는?"
*A: "아니요. 자해를 하니까 보내더라구요." **(C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 중퇴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CY는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경험했으나 이에 대해 외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다. CY는 아마 자신의 상황을 아는 사람도 있었겠으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누가 딱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진 않았죠." **(C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 중퇴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CY는 막상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할지,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 건 있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리고 막상 그게 막상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도와달라고 하는 방법을 또 모르겠는 거예요. (중략)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야 되나? 막상 막상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C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 중퇴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DY는 학교폭력과 괴롭힘을 알렸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였다. 오히려 선생님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애가 아니다'는 말을 듣고 상처가 심해졌다.

*"개입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특히나 4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조금 양상이 달랐는데 4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울리던 친구들이 저를 괴롭힌 상황이어서 제가 그냥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주변에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지의 감각이 더 컸었는데 이제 6학년 때는 저와 어울린 적도 없었던 저와 접점이라고는 그냥 같은 반에서 짝이 됐다는 거 하나밖에 없었던 아이를 시작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랐었어요. 그래서 6학년 때는 괴롭힘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이제 부모님께는 당연히 알렸고 이제 같은 반에 다른 같은 아이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다른 친구가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을 선생님께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도 함께 했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시더니 갑자기 너는 누구를 괴롭혔으면 괴롭혔지 괴롭힘을 당할 애가 아니다. 너는 기가 너무 세다라고 하고 다시 앉히셨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어른들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DY, 20대 중반 청년, 기타, 대학원 재학 중)***

② 지원체계의 부재

관계 및 지지망의 부재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 어려움의 시간은 길어졌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면 부정적 영향은 크고 깊어진다.

*"있었다고 알고 있긴 한데, 제가 아는 그 위클래스는 약간 도움반?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지체돼 있는 친구들이나 약간 좀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네 그 친구들이 가는 반이라고만 알고 있고 일반 학생한테 상담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A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졸업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그니까 엄마랑 같은 집을 쓰기가 싫다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들었었던 생각은 동생에 대한 생각들을 봤을 때 집이 그래도 좀 괜찮았다면 정상적인 집이었으면 동생이 안 겪었던, 안 겪을 수 있었던 일들도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걔가 얘기했었던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안 겪어도 되는 거고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죠." **(EY, 20대 후반 청년, 남,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참여 중)***

어른들이 알아도 도움받지 못한 경험

부정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 그 일을 아는 어른들이 있었다. 하지만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 참여자 CY는 이런 경험이 누적되어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A: 그 당시에 아는 사람이 글쎄요. 정신과 의사나 선생님들? 알긴 아셨을 거예요.
Q: 자해를 하고 난 다음에 학교생활이 좀 달라지던가요? 학교 친구들하고 관계나 아니면 다른 것도 좀 많이 달라지던가요?
*A: 달라지지 않았어요. **(C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 중퇴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사회적 비교와 자기 비난

청년들은 이러한 경험을 내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회와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회복의 경로보다는 악화의 경로에 들어서는 것에 가깝다. 직업계고를 졸업한 동생은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을 경험하다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다. 그 시기 형제나 친구들과 다른 학교에 진학했고 삶의 궤적이 달라지는 걸 경험한 동생은 힘들어했다고 한다.

*"(직업계고를 졸업한 동생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제가 축제 때 막 놀러 오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회장 이런 것들을 했었으니까 축제 때 놀러 오면 저희 학교가 축제로 유명한 학교여서 이제 동생 오면은 이제 동생 그냥 몰래 들여보내주고 그랬거든요. 앞에서 보라고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동생이 그걸 다녀오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했었어요. 이제 형 이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술에 취해서 자기 친구들이랑 인생이 너무 달라진 것 같대요. 이제 자기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에 갔는데 그럼 대학교만의 또 문화가 있잖아요. **(EY, 20대 후반 청년, 남,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참여 중)***

학업성적이 좋았던 DY는 부촌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여 자신의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해 크게 느끼게 되었다. DY는 자신이 현재 예술을 하며 가지고 있는 사회의식을 이 당시 경험 덕분에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가족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과 비슷한 소득계층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후회를 하기는 해요. 제가 ***로 이제 배정을 받아서 간 것이지만 1순위의 그 학교를 썼던 것을 굉장히 후회하는데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그것 때문에 가족을 미워하게 된 게 제일 싫었어요. 이제 왜 내 부모,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걸 지금은 알고 하지만 그때는 내 부모가 부끄러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싫었고 내 부모가 이제 내 친구들 부모님은 어디 대학 교수고 이런데 우리 엄마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지금 청소 노동자로 계셔 이런 말을 하기가 그런 걸 공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로 간 사람이 네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 상황이었고 심지어 출신 중학교를 가지고도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차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공간에서 조금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예 도태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소셜믹스가 정말 잘 되어서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도 한 30명, 40명씩 가고 이랬으면 조금 생각이 달랐을 것 같아요. 갔더니 생각도 깨지고 했겠더라 했는데 했을 것 같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툭 저 혼자 떨어진 상황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DY, 20대 중반 청년, 기타, 대학원 재학 중)***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개인을 해할 수 있다. 부정적 경험에 대한 도움과 회복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청년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개인이 가진 고민과 괴로움이 커지는 구조에 대해 설명하였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너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게 너무 많다. 많은 것들을. 여전히 그리고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 지금의 환경에서 보면은 이제 대학생들이 같은 대학생한테 자살하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였나 그 에브리타임에서 **여대에서 나 너무 우울해서 죽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댓글에 그럼 죽어라 여기서 징징대지 말고 그래서 진짜로 죽었거든요. 투신자살해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사건들 속에서는 이제 **대에서 거기 이제 학교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데 학교 수업 시간에 갑자기 내려가서 투신자살을 했어요. 이제 따돌림을 겪다가 **대 안에서 그러니까 왜 따돌린다는 학부가 **대가 아니어서 대학원생이" **(EY, 20대 후반 청년, 남,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참여 중)***

사회 분위기 역시 부정적 경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의 '도움 없이 지낸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3) 중첩된 취약성과 부정적 악순환의 결과

중첩된 취약성에 대해 면담하고 연구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강하는 부정적 소용돌이가 나타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문제 혹은 두 곳 모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회·심리·정서적 불안정을 불러오고, 이것이 삶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하며, 관계망의 와해와 사회적 고립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보였다. 이는 중첩된 취약성과 부정적 악순환의 결과로 주제화할 수 있고, 사회·심리·정서적 불안정과 발달 지연, 삶에 대한 회의감, 장기적·누적적 결과로 범주화할 수 있다.

표 V-3-7. 중첩된 취약성과 부정적 악순환의 결과 주제의 범주 및 하위범주

주제	범주	하위범주
중첩된 취약성과 부정적 악순환의 결과	사회심리·정서적 불안정과 발달 지연	우울 및 불안감
		위축된 사회성
		자기자신에 대한 혼란
	삶에 대한 회의감	자살생각 및 시도
		자해
	장기적누적적 결과	사회적 고립
		취약성의 전이
		관계성과 신뢰 저하

① 사회적·심리정서적 불안정과 발달 지연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하강하는 소용돌이는 우울감, 불안감, 위축된 사회성,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온다.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던 가정 내의 취약성이 학교에서의 취약성으로 중첩되고, 발달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차원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발달 결과는 성인 이행기에 영향을 미친다.

우울 및 불안감

비교적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BY는 활동가로서의 모습과 내면의 모습에 여러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과거에, 그리고 현재까지 경험하고 있는 우울감과 불안감이 반복해서 찾아오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지금도 그런 고립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혹은 내가 잘못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세게 잡힐 때 되면은 언제는 한 번 계속 울기도 하고. 그런 모르는 불안감 혹은 뭔가 공황처럼 오는 그런 안 좋은 기분들이 가끔씩은 나와요. 제가 올해 작년이나 올해 좀 그게 좀 부각되다 보니까 직장도 사실 좀 그만두게 된 계기가 사실 그것도 하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갭이 좀 있어요. 제가." ***(BY, 20대 중반 청년, 남, 회사 퇴직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위축된 사회성

사회적 관계망이 협소해지면 사회적 관계를 맺는 역량 역시 줄어든다. 참여자들은 사회성의 결여와 사회적 위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 타인을 신뢰하기 보다는 불신하게 되고, 친밀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불안정하거나 피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생애단계에서 새로운 관계가 계속 형성되기보다는 과거의 관계가 점차적으로 희석되며 사라지는 방식으로 발전한다.

"그게 사실 대학교 와서 티가 나요. 조금. 저 친구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거가 20살 때 대학생들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감이 이제 폭력적인 상황을 겪은 친구들이 실제로도 대학 생활 와서도 적응을 못해서 자퇴하는 경우를 저는 저희 학교에서 꽤 봤어요. 그 친구들이랑 제가 궁금해서도 그렇고 한번 이게 가끔 기회가 돼가지고 몇 번 본 친구도 있었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먼저 얘기하면은 막 봇물터지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안 걸어줘서 주변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친구 얘기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아픔이 있었으니까 저 친구가 저 친구 왠지 학교생활 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따돌림이 심해서 그냥 학교를 도망쳤다. 이런 일들도 좀 있고 대학교는 어떻게 해서 왔냐라고 물어봐도

*그냥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넣었다. 그냥 알아서 가라 그래서 왔다 약간 이런 거. 그 대학교에 대한 흥미 흥미보다는 좀 불편한 게 좀 있고 캠퍼스 라이프가 내가 대학교 가서 이렇게 이미지 변신을 해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잘 된 케이스도 있고, 안 된 케이스도 있고" **(BY, 20대 중반 청년, 남, 회사 퇴직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참여자 CY는 사회적 유대를 바라지 않고 있고 자신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성장 여부와 상관없이 성장 과정에서 누적적으로 쌓여온 경험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일단 사람하고. 그냥 그냥 사람 대하는 게 싫어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뭔가 그 나이 때 배웠어야 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큰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면 뭐 뭐라고 해야 되지? 타인과의 유대감? 유대감이나 아니면 좀 약간 사회적인 그런 상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없이 그대로 컸어요." **(C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 중퇴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참여자 DY는 학교폭력과 따돌림 경험이 자기 자신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경험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받고 다시 괴롭힘을 받을까봐 걱정했다. 사회성의 위축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언젠가 부정적인 관계로 끝맺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사회적 유대를 가로막고 있었다.

*"처음에 문제가 저는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오히려 제가 문제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이 친구들이 내가 초등학교 때 왕따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이렇게 친하게 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스스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조금 어울리지 못하는 편에 가까웠는데 동아리를 열심히 하게 되면서부터 친구들과 급격하게 친해지고 조금 호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DY, 20대 중반 청년, 기타, 대학원 재학 중)***

자기자신에 대한 혼란

참여자 DY는 태어난 성별과 감각하는 성별이 다른 성소수자이다. 그는 어린시기의 지속적인 성폭행 경험이 현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성정체성 혼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어린 시기의 경험은 성인기까지 누적되고, 새로운 궤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직도 사람과 관계 맺는 일에 대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적 지향이라든지 로맨틱 끌림이라든지 성적 끌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떠한 관계들을 맺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 지금 저는 무성애자라고 정체화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무성애자라고 정체화 했기 때문에 이제 제 어떤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에도 영향을 미쳤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제 삶에 좀 산적해 있는 것 같아요." ***(DY, 20대 중반 청년, 기타, 대학원 재학 중)***

② 삶에 대한 회의감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자신이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자살생각 및 시도

아버지의 일시적 부재와 학교폭력 경험이 교차했던 참여자 BY는 불안정한 아동·청소년기를 보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아동·청소년기에도 죽고 싶었던 시기가 있었고, 청년기에도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정신건강의 회복과 하강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보였다.

"근데 그때는 막 학교 가기 싫어서 죽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BY, 20대 중반 청년, 남, 회사 퇴직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사실 자살이라는 게. 저도 그냥 다 터놓고 얘기하면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올해 직장 그만두고 나서 자살에 대한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제가 정신 확 차린 게 제가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근데 이제 식물 키우다

보면은 그런 약들이 있어요. 농약 같은 것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물에 한 40배 희석시켜야 되는 그런 살충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거 먹고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몇 번 했죠. 왜냐하면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아진 상태였고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해서 그런 안 좋은 생각들 그러니까 그게 트리거죠. 트리거가 돼서 정말 답하게 끝까지 들어갔지만 그래도 안 되겠군.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들이 워낙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회복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시고 직장 그만둘 때도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면 그만둬라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저는 정말 다행인 케이스인 거죠.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있고 아까 친구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 거의 없는 것 같다 라고 한 거는 매일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거죠.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정말 내가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죽기 싫기 때문에 얘기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매일같이 뭔가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뭔가 힘들었어 하는 얘기를 안부나 이런 걸 하는 친구는 사실 별로 없는거죠."
(BY, 20대 중반 청년, 남, 회사 퇴직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성정체성과 불평등 경험이 교차했던 DY는 고등학교 진학 이후 갑자기 우울해지고 자살충동이 느껴졌던 시기를 이야기했다. 사회적 불이익의 지속이라는 생각이 희망을 상실하게 만들고 삶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렸던 걸로 보인다.

"그 당시에 제가 우울감을 너무나 심하게 느꼈던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자살 시도를 한다거나 뭐 자해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물론 저의 성정체성 때문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떠한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빈곤함 때문에 이 갭을 평생 메꿀 수 없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끝내버리자라는 생각도 컸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우울감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야기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DY, 20대 중반 청년, 기타, 대학원 재학 중)***

"조금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뛰어내리려고 한 게 마지막 행동의 결과로 이제 그랬던 건데 이제 저에 대한 기록을 조금 모아서 자운다던가 아니면 이제 주변에 어떻게 알릴지에 대해서 계획을 짠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밑에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그만뒀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뭔가 그 자리에 설 만한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단된 형태였어요." ***(DY, 20대 중반 청년, 기타, 대학원 재학 중)***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그리고 부모의 이혼 경험이 교차했던 EY는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던 시기에 이미 성인이 되어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서울로 이주하게 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의 도움이 필요했던 동생에게는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더 강하게 전해졌고, 이러한 부정적 충격을 막아줄 방어막도 옅은 채로 존재했다. EY는 아직 어렸던 동생에게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정적 일을 경험했고, 지지받을 곳이 없었던 동생이 어느 날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일을 이야기해주었다.

*"동생이 이제 워킹 홀리데이에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얼마 안 있다가 자살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기 때 그냥 들었었던 생각들이 좀 뭐였었냐면 동생이 가끔 그 연락을 했었는데 저한테 엄마가 자기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이제 그래서 자기는 너무 엄마한테 엄마한테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렇다. 근데 저도 이제 엄마한테 돈을 좀 많이 빌려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업자를 만들어서 대출을 해줬었고 그게 대출 연체가 되면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신용불량자가 됐었어요. 그런 것들이 되고 나서 저도 엄마랑 거의 연락을 안 했거든요. 동생들이랑 연락은 하는데 엄마랑은 연락을 그냥 보지 말자 서로 하고 엄마한테 화를 내고 그냥 안보겠다라고 선언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동생한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한테 연락했는데 절대 빌려주지 마라 제가 얘기를 하고 빌려줬다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엄마 때문에 되게 내 인생이 망가질까 봐 두렵다. 실제로 두려웠었거든요." **(EY, 20대 후반 청년, 남,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참여 중)***

EY는 동생에게 부정적 충격이 간 것, 그리고 어머니로부터의 채무 부담을 막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자기가 이제 관심을 못 받은 얘기나 차별받았던 얘기들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보기엔 엄마가 그걸 동생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좀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근데 그건 아빠 닮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고 나서 동생이 자살을 했을 때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왜 동생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했었고 그 다음에 동생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고 동생이 결국엔 자살한 이유는 한국에 워킹홀리데이 갔다 돌아오고 나서 애인이랑 헤어지고 한 거였거든요. 애인이랑 헤어지고 그게 트리거가 돼서 그렇게 한 거였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엄마랑 되게 관련이 있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EY,***

20대 후반 청년, 남,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참여 중)

하지만 EY 역시 피해자였다. EY의 경험은 단지 동생의 가슴 아픈 일이 아니라, 현재 다른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을, 그리고 고통받고 있을 일일지도 모른다.

*"그게 되게 실존적인 고민들이었고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은 이제 나이가 좀 더 돼서 이혼을 한 거고, 뭐가 된 건데 그 결정적인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좀 죽고 싶다. 왜 계속 살아야 되지?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거 왜 태어나서 고통받아야 되지?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때 근데 이제 그리고 졸업할 때쯤도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냥 죽고 싶다 그냥 사라지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실행에 안 옮겼단 말이죠. 용기가 없어서죠. 사실은 용기가 없어서인데 근데 뭐가 그래도 어쨌든 좀 비슷한 환경들에 있었었는데 그게 먼저 겪었냐 나중에 겪었냐 전반기였냐 후반기였냐 차이일 뿐이지. 저는 근데 그걸 결정적으로 가른 게 저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EY, 20대 후반 청년, 남,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참여 중)***

자해

성별정체성과 불평등 경험이 교차했던 BY와 가정폭력과 학교부적응 등이 교차했던 CY는 공통적으로 자해 경험이 있었다. CY는 학교에서 자해를 한 후에야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크게 변화된 것은 없었다고 했다. 청소년이 자해를 하는 복합적인 원인에 대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에 대해 임시방편적 처방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꼭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런 거는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주는 목적도 있긴 한데 좀 단순히 보여주려고만 한다기보다 그냥 그냥 충동적으로 했다고 해야 되나 저는... 하루에 하루예요. 하루에 그날 하루. 그날 하루는 그냥 아예 저질렀죠." **(C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 중퇴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그런 게 있죠. 부모님한테 그냥 그 당시에 집을 나가고 되게 집을 나가고 싶었는데 나갈 방법이 없어서 나갈 방법이 없어서 그냥 아예 정신병원에 갇혀볼까 하는 생각으로"**(C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 중퇴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제가 자해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제 보통은 커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다르게 뭔가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끊기 위해서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죽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주먹으로 벽을 친다던가 아니면 머리를 박는다던가, 반복해서 머리를 박는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제 어떤 허벅지나 복부를 때린다든가 이런 행동이 주가 됐었고요. 이러한 어떤 눈에 띄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있을 때에는 펜으로 손을 찌른다던가 하는 형태로 좀 나타났었어요." **(DY, 20대 중반 청년, 기타, 대학원 재학 중)***

③ 장기적, 누적적 결과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의 부정적 결과는 청년기까지 누적적으로 나타난다. 장기적 결과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관계성과 신뢰가 저하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세대 간 전이되면서 또 다른 취약성을 만들어낸다.

관계성과 신뢰 저하

아동·청소년기 폭력적인 경험을 했던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내가 맺고 있는 혹은 앞으로 맺을 관계가 어떻게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 보였다.

*"그때 받은 충격이 좀 아직 좀 있어서 움츠러들거나 어떤 사건이 트리거가 되거나 사실 그런 건 사실 아직도 있긴 합니다." **(BY, 20대 중반 청년, 남, 회사 퇴직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때 경험이 저한테는 조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됐었거든요. 이제 여자인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됐었는데 그때 굉장히 처음에는 즐겁고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항상 뭉쳐 다니고 근데 제가 남자애들로부터 이제 놀림과 괴롭힘이죠 따돌림이 아니죠. 제가 그 집단에 있지 않았으니까 놀림과 괴롭힘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친구들이 저 몰래 하는 행동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동아리도 같이 하자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 친구들은 다 같이 이제 합창부에 들어갔는데 저만 빼고 오디션을 보러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친구들과 제가 원래 어울리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면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에 대한 감각 자체가 조금 사라졌다 라고 아직도 느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는 좋은 말을 해주고 나에게는 어떤 친구로서 이야기를 1대 1로 하지만 다른 상황에 갔을 때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사람이 앞과 뒤가 늘 다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DY, 20대 중반 청년, 기타, 대학원 재학 중)***

*"제가 상담 과정에서도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자주 이야기를 하고 특히 조금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불안하다라는 감정이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되게 관계에서 회피를 하거나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 떠날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형태로 좀 어릴 때의 기억이 발현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DY, 20대 중반 청년, 기타, 대학원 재학 중)***

아동·청소년기 관계망 형성을 어려워했던 참여자들은 관계 역량 형성이 안되었음을 자각한다. 잦은 이사를 다녔던 AY뿐만 아니라 폭력경험이 있는 CY 역시 이에 대해 자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 자포자기하고 있었다.

*Q: 아까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하고 갑자기 커버린 것 같다고 하는 게 유대감이랑 또 다른 게 있어요? **(연구자)***
A: 유대감 그냥 인간관계 전반적인 것들?
*Q: 어떻게 어떻게 조금 더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 **(연구자)***
*A: 음 그냥 이게 옛날에 되게 바꾸고 싶다고 생각은 해봤는데 지금은 그냥 그냥 인정해 보면, 인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C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 중퇴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은 관계망 형성을 어렵게 하고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의지를 저하시키기도 한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을 소실시키고, 사회적 지지체계의 결핍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고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경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니까 엄마랑 같은 집을 쓰기가 싫다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들었었던 생각은 동생에 대한 생각들을 봤을 때 집이 그래도

*좀 괜찮았다면 정상적인 집이었으면 동생이 안 겪었던, 안 겪을 수 있었던 일들도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걔가 얘기했었던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안 겪어도 되는 거고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죠." **(EY, 20대 후반 청년, 남,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참여 중)***

*"그냥 저도 뭐 책 같은 거 읽고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되지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C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 중퇴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이런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 누적된 결과일 수 있다.

*Q: 그러니까 CY님이 바라는 인간관계는 어떤 거예요? **(연구자)***
*A: 인관관계가 없는 걸 가장 선호해요 **(C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 중퇴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취약성의 전이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해 청년들에게 물으면서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부모들은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지에 대해 물었다. 가장 심각한 가정폭력을 경험했던 CY와 EY는 세대간 전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A: 유치원생 때부터에요 제 기억으로는
*Q: 아버지는 아버지의 폭력성이나 약간 좀 그런 거는 왜 나타난 것 같으세요? **(연구자)***
A: 제 생각에는 할아버지 때문 아닐까 싶은데
*Q: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를 대하는 걸 혹시 본 적이 있어요? **(연구자)***
*A: 저도 말해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걸 뭐라 해야 되지 할아버지가 좀 말을 할 때 욕을 좀 되게 많이 쓰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아버지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C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 중퇴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베이비부머 자식들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계속 전이돼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엄마가 문제를 가진 이유들은 그 이전의 문제들이 있어요. 할머니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리고 그게 또 동생한테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엄마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좀 치료나 이런 거 받으러 가라 그랬거든요. 상담이나 이런 거 받으러 가라 그랬어요. 예전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흉본다 이러면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EY, 20대 후반 청년, 남,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참여 중)

우리의 관심이 단지 현재의 아동·청소년과 청년들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험이 전이된다면,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는 미래 세대들도 이러한 경험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첩된 취약성은 누적되어 다차원적 인권침해를 만들어내고, 세대 간 전이를 통해 확대 생산될 수 있다.

(4) 부정적 경험의 완충재와 회복탄력성

그렇다면 중첩된 취약성 문제는 희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청년들은 저마다 자신이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주었다. 한 청년은 자신이 겪은 부정적 경험들은 담담하게 이야기하였으나, 자신의 어린 시기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었던 고마운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면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부정적 경험의 완충재와 회복탄력성으로 주제화할 수 있고, 강점을 통한 긍정적 성장, 학교와 상담서비스의 도움, 공동체와 중요한 타인이라는 완충재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표 V-3-8. 부정적 경험의 완충재와 회복탄력성 주제의 범주 및 하위범주

주제	범주	하위범주
부정적 경험의 완충재와 회복탄력성	강점을 통한 긍정적 성장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 성취하기
		잘하는 것을 통한 인정
	학교와 상담서비스의 도움	선생님의 지지와 관심
		위클래스 선생님과의 상담
	공동체와 중요한 타인이라는 완충재	가족과 공동체 등 지지망
		성인 이행기 형성된 지지망
		좋은 친구

① 강점을 통한 긍정적 성장

청년들은 자신들의 힘들었던 아동·청소년기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이 청년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키워오면서 취약한 지점들을 극복했다고 이야기했다. 비록 자신에게는 그 시기로 인한 상처가 남아있지만 점차적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내가 잘 하는 것을 잘하기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조용히 있고 싶어서 "**(A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졸업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잘하는 것을 통한 인정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생각해 보면 심리 상담하면서도 생각하고 그랬었던 건데 제 존재 가치를 좀 증명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집안에서 이제 두 가지였었는데 내가 뭔가 인정을 그 집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이제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러니까 뭔가들에 대해서 잘 했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존재 가치들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증명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냥 생각했었던 것도 한동안 저를 계속 괴롭혔었던 것들도 지금은 좀 많이 벗어났는데 뭔가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 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된다. 내가 좀 헛되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존재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된다였는데 그게 사실 정상적인 환경이면 그런 것들을 그냥 스스로 그냥 뭐가 아니더라도 그냥 나 존재 자체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들을 다 외부 기준에 뒀었던 것 같아요. 성적 이런 거 근데 다행히도 제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고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몰랐었는데 그러면서 성적들이 되게 잘 받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칭찬해 주더라고요. 주변에 선생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럼 공부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라는 그리고 내가 명문대나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꼭 내 존재 가치를 그런 형태로 증명해야 되겠다 라는 게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EY, 20대 후반 청년, 남,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참여 중)***

② 학교와 상담서비스의 도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난 경험도 들려주었다. 청년들은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말을 듣고 지지받은 경험이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위클래스 선생님일수도, 상담선생님일수도, 그리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다.

위클래스 선생님

"위클래스 선생님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기본적인 상담적 기법을 좀 많이 사용하셔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뭐랄까 안정시켜주는? 얘기를 항상 잘 들어주는 거죠. 그분이 뭔가 막 말해서 뭔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보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주시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문제가 생길 법한 사건들 몇몇 사건들이 있어요." ***(BY, 20대 중반 청년, 남, 회사 퇴직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아까 말한 등에 낙서한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식판을 뒤엎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그런 건 사건이 될 만한 거니까 맡아서 좀 해결해 주려고 했죠. 부모님 오시는 걸 저는 굉장히 반대하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이 있고 부모님 오시고 좀 해결된 부분도 일부 있어서 대신에 애들에 대한 낙인된 그건 좀 있었죠. 엄마 불렀다 아빠 불렀다 그런 당시에 그런 건 있었지만은 그거 이후로 그게 잠깐 한두 달 그러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좀 더 조기에 뭔가 그런 대응을 할 수 있었던 나였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죠." ***(BY, 20대 중반 청년, 남, 회사 퇴직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는 위클래스 선생님밖에 없었고 담임 선생님조차 그걸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클래스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진짜 부정적으로 갔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BY, 20대 중반 청년, 남, 회사 퇴직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상담선생님

"도움이 됐다고 저는 느껴요. 이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느끼고, 다만 이제 아직도 상담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여전히 되게 이성애자 시스 헤테로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고민하는 좋은 시간은 됐으나 그 상담 센터 안에서도 내가 느끼는 것들이 조금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겠군이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은 여전히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무성애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들이 어떤 아동기으로부터의 고민들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조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성적 끌림이나 섹슈얼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로맨틱한 형태더라도 그런 것을 되게 권장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내가 여기서도 또 조금 이상하군이라는 생각을 했던 적은 있어요." ***(DY, 20대 중반 청년, 기타, 대학원 재학 중)***

좋은 선생님

청년 EY는 자신들의 힘들었던 시기를 이야기할 때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 당시 고마웠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하면서는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타인의 친절은 고통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쨌든 혈연관계에서 오는 그 어렸을 때부터 엮여 있다는 그 따뜻함들이 기본적으로 주어질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태도만 좋으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도 되게 잘 될 수 있죠. 생각해 보면 저도. 초등학교 선생님들 때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3학년 때까지 좀 왕따를 당했었어요. 사실 정확하게는 5학년 때까지 나를 괴롭히는 친구 학교에서 있었었는데 이제 그 친구랑 계속 같은 반이 되는 거예요. 같은 반이 되고 이제 그게 그 친구가 날 괴롭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 엄마도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계속 5년 내내 같은 반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학교가 되게 무심하다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1학년 때 선생님도 제가 느끼기에는 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그냥 했었거든요. 좀 그냥 1학년 때 지금 성적을 보면 1학년 1학기 때는 되게 매우 잘함 이런 것들이 많고 1학년 2학기 때는 다 부족 이런 식으로 평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얘기했었던 것들은 너희 1학년 때 선생님이 사실 니 성적 그렇게 하고 나와서 촌지나 이런 것들 나한테 요구했었는데 돈을 달라고 내가 안 줬다. 그거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 성적을 그 따위로 만들어 놨더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소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크고 나서. 근데 그런 것처럼 한 1-2학년, 괴롭히는 사람도 되게 많았었고 그 다음에 그 시기 때 부모님이 이혼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흉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쟤는 이혼을 했고 집에 이런 일이 있고 가십거리가 되어서 제가 되게 그 시기 때 가슴 아팠었던 건 그런 거예요. 친구 엄마가,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해요. 걔도 순수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친구 엄마가, 야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그런 얘기를 제가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시기 때도 진짜 1, 2학년들 때 1, 2, 3 되게 힘들었었는데 3학년 때 다행히 좋은 선생님을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 때 교우 관계도 되게 좋아지고 그 선생님들은 지금도 이름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기 때 좀 절망이나 학교에 대해서 있었던 나에 대해서되게 나를 좀 차별 없이 봐준 사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런 선생님이 있었고 다시 이제 4, 5학년 때는 너무 좀 별로인 선생님들 제가 급식비를 밀린 적이 있었거든요.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 뺨을 때리면서 니가 그지 새끼냐고 몇 개월 동안 밀려 있다고 저를 2천 년도에 지금 생각해 보면 2천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나 싶지만 그런 식으로 애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급식실에서.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밥 먹을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그냥 급식실에 갔다 돌아왔거든요. 근데 또 6학년 때는 되게 또 좋은 선생님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글이나 이런 거 제가 좀 쓰는 것들 일기 쓰는 것들을 되게 싫어했었는데 귀찮아서 나중에 이제 글 쓰는 것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일기 쓰거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컴퓨터로 쓰면 또 금방금방 쓰니까 일기를 써서 낼 때마다 선생님이 되게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막 그런 식으로 좀 자존감이 되게 많이 떨어졌었는데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친구들이랑 친구 엄마가 그런 얘기를 놀지 말라 라고 했던 얘기를 친구들이 저한테 하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운동도 잘 못하고 친구들 동료 축구하는 거에도 못끼고, 그 다음에 소심하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좀 잘하는 게 있구나 그 시기 때 그 선생님 덕분에 좀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와서도 1학년 때 1-2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서 너는 이러 이렇게 좀 인간적인 얘기도 되게 많이 해 주시고 대학교도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 내 아들이랑 너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에 대학을 나왔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하고 이제 집에 놀러 와라. 나중에 소개시켜줄 테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대체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불가능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기 때 선생님의 역할들이." **(EY, 20대 후반 청년, 남,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참여 중)***

③ 공동체와 중요한 타인이라는 완충재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을 했던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완충재는 누군가와의 좋은 관계였다.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친구들은 이들이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준다.

가족과 공동체 등 지지망

"가끔 이모들, 작은 이모가 저를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지금도 그냥 제가 엄마한테 못한 얘기들 작은 이모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작은 이모한테 내가 죽고 싶다 엄마가 나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 가끔 전화해서 하소연해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터졌을 때 엄마 때문에 제가 집이 압류 당한 적이 있었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돈을 엄마 때문에 빚진 것들 때문에 압류당한 게 있었었는데 그걸 찾으려고 하면 거기에 제 소중한 물건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 30~4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했는데 이모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이모가 진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내 여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모가 많이 돈을 빌려줬었죠. 그런 것처럼 엄마한테 말 못할 얘기들 그런 것들을 좀 들어주는 이모 내 사정들을

*알고 그게 있어서 위안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EY, 20대 후반 청년, 남,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참여 중)***

성인 이행기 형성된 지지망

세상을 떠난 동생을 생각하며 EY는 동생에게 완충재 역할을 했을 좋은 관계망이 없었다는 것을 가장 아쉬워했다. 부정적 영향을 막아줄 가족과 동료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여러 안 좋은 충격들이 크게 다가갔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EY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닌 '관계' 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그걸 결정적으로 가른 게 저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조언들을 받았고 대학교 가가지고 저는 그래도 나름의 뭔가 서울에 4년제 대학을 갔으니까 좋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활동하면서도 이제 활동하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가치 중심의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 대한 가치나 좋은 가치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저는 근데 동생은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은 거예요. 엄마,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되게 내밀한 얘기를 못하니까." **(EY, 20대 후반 청년, 남,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참여 중)***

좋은 친구

좋은 관계는 학교폭력의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했다. 참여자 BY는 그것이 다행이라고 이야기했다.

*"정말 정말 다행인 게 저랑 같이 놀아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랑 이제 코드가 맞고 초등학교 때 같이 지내고 이제 저 중학교가 거의 대부분 80% 거의 초등학교 때 있었던 친구들이 80% 이상 그 중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그나마 그 친구들이랑 좀 어울려 지내면서 좀 극복을 했죠. 그렇다고 너 너무 혼자 고립돼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같이 놀 친구가 있고" **(BY, 20대 중반 청년, 남, 회사 퇴직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성소수자로서 여고를 다녔던 DY는 이를 커밍아웃하는 충격이 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친구들이 이를 잘 받아들여줬기 때문이었다. 의도하지 않는 혐오발언과 차별적인 언행을 하는 것으로 상처 받은 기억도 있지만, 자신이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교류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부정적 충격이 크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개인의 속성이 꼭 부정적 경험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란 걸 보여준다. 또한 좋은 관계의 친구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응하는 긍정적 생애경험(positive childhood experiences)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저도 그 당시에 피메일 투 메일(female to male)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내에서 굉장히 장난기 많은 학생 정도로 이제 컨셉이 잡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 친구는 약간 예외적인 친구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조금 제가 특히 여고에 진학을 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득이었거든요. 이제 또 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이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 역할을 하는 아이 정도로 해서 오히려 저는 관계 맺는 데 있어서 되게 수월했었어요. 오히려"* ***(DY, 20대 중반 청년, 기타, 대학원 재학 중)***

> *"그러면서 그냥 오빠라고 그냥 친구들이 저를 오빠라고 부르고 뭐 심지어는 제가 그 당시에는 목소리가 엄청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막 다른 지금은 제가 의도적으로 목소리 톤을 높이기도 하고 이제 크면서 좀 달라지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남자친구랑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제가 남자인 척을 하고 대신 전화 통화를 해준다거나 약간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DY, 20대 중반 청년, 기타, 대학원 재학 중)***

(5) 예방과 회복을 위한 방향: 자신의 경험을 통한 현재 세대 보호

연구자는 청년들에게 과거의 자신에게 어떠한 말을 해줄 것 같은지 물었다. 청년들은 조금은 더 이기적이 되어도 된다고, 표현을 해도 된다고, 이러한 어려움은 지나갈 것이니 힘을 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자는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현재 세대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야하는지 물었다. 청년들의 이야기는 예방과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주제화할 수 있고, 학교 차원, 사회차원, 아동인권보장차원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 내용은 자신의 경험을 통한 현재 세대 보호라는 부제를 달았다.

표 V-3-9. 예방과 회복을 위한 방향 주제의 범주 및 하위범주

주제	범주	하위범주
예방과 회복을 위한 방향: 자신의 경험을 통한 현재 세대 보호	학교차원	불리한 상태를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적응지원 학교와 지역의 청소년 지원서비스 개선
	사회차원	어려움과 회복지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
		사회적 격차 해소
	아동인권보장차원	의견표명권 보장
		회복적 권리 강조

① 학교 환경 개선

불리한 상태를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적응지원

오늘날 학교는 과거에 비해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역할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교사 개인 차원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불리한 상태를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적응이나 회복지원을 잘 하고 있는지를 떠올려보면 쉽게 그 노력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잦은 이사를 했었던 AY는 이러한 적응을 스스로 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한다.

> *"(도움을 받지 못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뭐가 전학 간 당일에 갑자기 교가를 불러야 되는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맨 마지막 번호니까 저보고 가위바위보를 첫 번호랑 시켰는데 제가 1등을 먹어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교가 부르고 막 전학 간 당일이었는데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 건 전혀 도움은 없었던 것 같은데"* ***(A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졸업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물론 AY가 그 당시를 생각해봤을 때 가장 바라는 것은 안정된 곳에서 전학을 다니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 *"저는 그냥 약간 뭐라 하지? 예전부터 알아왔던 친구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계속 끊겼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전학을 안 갈 수 있으면 좀 동네 친구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면 좀 더 길게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도 좀 더 알 수*

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들긴 해요.얕고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좀 더 깊고 뭔가 더 많이 아는 그런 관계를 경험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 ***(A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졸업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학교의 지원 서비스 개선

성소수자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취약성이 교차했던 DY는 그래도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저는 학교가 가장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한 아이 한 아이에 신경 쓸 만큼의 인원 수여야 된다 라는 게 가장 초점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학교는 정말 사람이 많은 학교였고 한 반에 30명이 넘었는데 10반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라고 느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었어요. 심지어 고3 때도 그랬었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지금 힘들어? 라고 물어만 봐도 저는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사실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한국의 고등학교는. 그렇다고 해서 위클래스 같은 게 있었지만 거기에 가는 아이들은 문제아 라는 인식이 있기도 하고 해서 쉽게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들의 상황을 좀 봐줄 수 있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문제시되는 거지만 입시 위주로 흘러가는 것들이 또한 문제겠죠." ***(DY, 20대 중반 청년, 기타, 대학원 재학 중)***

학교에서의 인권교육과 차별금지 인식교육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학교라는 공간은 다양한 취약성들이 만나는 공간이고, 그 안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학교 내에서의 변화 움직임 역시 필요하다.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다기보단 발언 위주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사실 저는 그 친구들이 그런 혐오 발언을 했던 게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는 친한 친구가 친한 친구가 내 정체성은 이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난 이러한 선택들과 행동들을 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렇게 빠르게 자신의 태도를 돌변할 사람은 지금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일 거라고 생각해서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개개인이 조금 더 지금 내가 하는 언행에 대해서 되짚어볼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인권교육에 대한 주제로 해서 소논문을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학교 안에서 인권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1년에 한 차례에서 많으면 두 차례 정도였고, 그 내용도 그 어떤 형식도 그냥 중앙에서 방송을 하면 아이들은 방송을 청취하는 방식이라 대부분 자습을 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천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들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썼던 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아직 유효한 것 같아요." **(DY, 20대 중반 청년, 기타, 대학원 재학 중)***

② 인권 차원의 개선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 보장

다양한 취약성을 경험한 DY는 학교에서의 지원이 단지 학교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교류하고, 역할을 함으로써 악순환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사회참여를 통해 관계망을 형성하고, 의견표명권을 보장하여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실제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청소년 특별회의를 했었는데 사실 그거를 해서 저는 제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제가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했어요.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했는데 거기 가면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그때 제가 반영은 안 됐지만 냈던 정책이 여자 고등학교에 여자를 배주세요 였거든요. 남자 고등학교는 남자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여자 고등학교도 여자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하자면 학생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원 수가 줄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런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도 좀 중요하다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요구하는 것 욕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DY, 20대 중반 청년, 기타, 대학원 재학 중)***

아동·청소년의 회복적 권리 보장

아동·청소년의 회복적 권리 보장 역시 중요하다. 참여자 CY는 유치원 시기부터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부모로부터 회복적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 학교에서 자신을 자해하는 것이었다. 이는 자신의 위기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다. 자신을 정신과에 데려가지 않았던 부모는 자신이 자해를 하고서야 정신과에 보내주었다고 이야기했다. 아동·청소년의 위기 상황에 즉시적인 개입할 뿐만 아니라 회복적인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청소년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A: 그게 경찰이나 위클래스 선생님들한테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해봤고, 중학생 때였나 정신과 의사 선생님, 정신과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정신과를 가니까 부모님 허락을 받고 와야 된다고 해서 그때도 뭐
Q: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가봤어요? 정신과는?
A: 아니요. 자해를 하니까 보내더라구요. ***(CY, 20대 중반 청년, 여, 대학 중퇴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③ 지역적, 사회적 환경 개선

장기적 대응과 새로운 위험 대응

학교 폭력을 경험한 BY는 자신이 경험한 폭력의 경험이 청년기에 있는 자신에게 얼마나 오래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다. 그리고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 불링 피해는 더욱 더 개입하기 어려워지고 은밀해지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입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프라이빗하잖아요. 사이버 공간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알지도 못하고 그 친구가 그런 상황인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 이 친구들이 폭력 당한 이 친구들이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예전에 그냥 내 집이나 집 근처였으면은 사실 그런 피해를 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것도 안 주고 지속적으로 몇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하는 게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런 게 좀 안타깝죠. 발전했다 라는 그런" ***(BY, 20대 중반 청년, 남, 회사 퇴직 후 니트 상태 경험 중)***

사회적 , 지역적 격차의 해소

마지막으로 소득 격차로 인해 고통받았던 DY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여러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해소는 민간 지원을 통해 이룰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그가 느낀 사회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로서의 취약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였다.

> *"이게 민간단체를 지원한다고 해결될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유학생이라는 잡지를 발행한 친구가 있는데 그 잡지가 이제 지역을 떠나와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 퀴어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진짜 지방에서 퀴어로 살기란 무엇일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민간에 맡긴다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 누군가의 삶은 또 지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DY, 20대 중반 청년, 기타, 대학원 재학 중)***

취약성은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고, 그 영향은 중첩되고 다차원적인 피해와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청년들의 경험에 대한 회고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성은 교차되며, 중첩된 취약성은 긴 손(긴 영향)을 가지고 있다. 취약성은 누적적인 영향을 미치며, 하강하는 부정적 소용돌이 속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접근방식으로는 중첩된 취약성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어렵다.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으로 이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학대는 단순한 사건으로서뿐만 아니라 조건으로서도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속적인 폭력 속에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부분에 무관심, 방치로 대응하고, 적절한 회복적 처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학교 부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과도 연결될 수 있다. 건강하고 역량 있는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성인 이행기 역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폭력과 학대는 예방에서부터 즉각적인 개입, 재학대 위험 방지까지의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대에 대한 개입은 피해아동·청소년이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셋째, 가정의 불안정성 역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동·청소년기 경제적 불안정은 주거 불안정으로 나타나며 잦은 이사와 전학으로 인해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축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학교생활을 불안정하게 하여 학교폭력 노출이나 사회적 관계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학교폭력은 또래들과의 관계 차원에서, 그리고 학교 적응과 교육권 차원에서 영향을 미친다.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나타나고 누적되고 반복될 수 있다. 참여자들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연결되고, 학교폭력의 피해가 가해와 연결되는 경험을 했다. 이는 폭력의 연결고리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불안정과 사회적 위축을 가지고 오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관계하기보다는 가만히 위축되어 생활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의 지지망은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사회적 위축으로 지지망이 소실되면 부정적 충격의 영향은 크게, 길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사회적 위축에 대한 지원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예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청소년기에서부터의 정책이 시작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지망이 없으면 회복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정적 경험을 한 청년들은 지지망을 통해 힘을 얻고 회복력을 얻는 패턴을 보았다. 따라서 통합적 아동·청소년 인권 및 삶의 질 증진 전략이 필요하다. OECD(2019)는 "취약한 아동을 위한 확률 변화: 기회와 회복력 구축(Changing the Odds for Vulnerable Children: Building Opportunities and Resilience)" 보고서에서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면서 위험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증진시켜 아동·청소년들이 더 강한 회복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하였다.[24]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CEs: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예방과 아동기 긍정적 생애경험(PCEs: positive childhood experiences) 증진의 복합적 관점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24)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보고서 참고: OECD (2019). Changing the Odds for Vulnerable Children: Building Opportunities and Resilie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2e8796c-en.

4.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 사각지대 발생 원인과 향후 과제[25]

1) 문제의 제기

한국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산업으로 가파른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은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현행법이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관계와 노동 형태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사이 이를 파고들어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법원의 경직된 노동자성 판단과 더불어 노동자 다수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통과해야 모든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구조다. 노동자성을 통과한 경우에도 상시 노동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한다. 일부 사용자는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와 같은 편법으로 법적 의무를 피하기도 한다. 상시 노동자수 기준뿐 아니라 주 15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각종 유급 휴가와 연장·야간·휴일 노동 가산 수당, 4대 보험 등의 적용 여부가 달라져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각종 수당 지급 기준과 유급 휴가 기준을 피하기 위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계약을 맺거나, 사회보장제도 의무 가입 기준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3.3 사업소득 계약을 맺는 사례 등이다.

법이 무력화되는 현실에서 다수의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각지대 혹은 차별지대로 내몰린다. 집단적 협상력을 발휘하기도 어렵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2021년 기준, 고용노동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10명 중 8명 남짓은 개별적으로 노동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아져[26]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괜찮은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노동[27] 역시 이와 같은 노동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단시간, 단기간 행하는 노동으로 대표되는 아르바이트 노동뿐 아니라 크리에이터와

25) 이 절은 이수정 노무사가 작성하였다.

26) 사업장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300명 이상 사업장 46.3%, 100~299명 사업장 10.4%, 30~99명 사업장 1.6%, 30명 미만 사업장 0.2%이다. (지표누리(통계청). https://www.index.go.kr/ 2023년 9월 25일 인출)

27)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 5. 기준 15~19세 청소년 224만 3천여 명 중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21만 9천여 명으로 파악될 정도로 청소년의 노동은 보편화되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2.8.11.)

대중문화예술인, 아이돌 연습생, 직업계고 교육과정인 현장실습 제도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등 여러 영역에서 아동·청소년 노동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의 경우 여성가족부 실태조사[28]에 따르면 2022년 중·고등학생의 7.3%가 경험이 있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13.5%, 고등학생 중 직업계고는 29.3%로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주로 종사하는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뷔페·웨딩홀·연회장'이 17.2%, '패스트푸드점'이 8.9%로 상위 업종을 차지했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배달 노동은 1.8%로 2020년 조사 결과 15.2%와 비교해 급감한 수치다. 그러나 여러 실태조사를 종합하면 전체 플랫폼 종사자 중 청소년 배달 노동 비중은 약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추정[29] 할 수 있다. 부당행위 경험률은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49.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2.6%가 최저 시급 미만을 받으며 일하고, 14.7%가 초과노동을 요구받는 등 기본권 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통계 자료는 파악할 수 없으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유튜버 아동·청소년 활동이 늘면서 놀이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위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발생하고[30],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아동 연기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에 시달리고[31], 10살이 안 된 아동을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한겨울 얼음물에 들어가도록 하거나[32], 13세 아동에 대해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방송 참여를 강제[33]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K-pop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아이돌 육성을 산업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연습생이 '노예 계약'[34]에 묶여 비인격적인 대우뿐 아니라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

28) 여성가족부(2022b).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p.75~82.

29)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한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 추정과 근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도 플랫폼 노동자 중 15세~29세 청년·청소년은 819,000명으로 전체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 37.2%를 차지한다.(한인임, 2021) 2022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근무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체는 12곳이었고, 업체별 배달기사 약 567명 중 청소년 배달기사수는 약 185명으로 32.6%의 비율을 차지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청소년 배달 노동자인 것으로 추정했다.(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22.)

30) 시사IN(2019.10.23.). "'구독'되는 아이의 삶 '구속'되는 아이의 인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62에서 2023년 10월 3일 인출

31) 6~19세 연기자 103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6.89%가 "하루에 12~18시간 촬영을 경험"했고, 21.36%는 "18~24시간까지도 일했다"고 답함.(이종임, 2020)

32) 오마이뉴스(2021.12.6.). "10살 안 된 아역배우 한겨울 얼음물 속에..너무 괴로웠어요". https://omn.kr/1w9yg에서 2023년 10월 3일 인출

33) 연합뉴스(2020.3.13.). "'미스터트롯', 13살 정동원 '자정 넘은 방송참여' 논란".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3127300005?input=1195m에서 2023년 10월3일 인출

34) 스포츠경향(2021.10.1.). "계속되는 아이돌 노예계약과 방송사 갑질…비밀 이면계약으로 가수·연습생 착취". https://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art_id=202110011928003에서 2023년 10월 3일 인출

한편, 특성화고에 다니는 아동·청소년 중에는 22,077명의 현장실습생(2021년 기준, 강문식 외, 2022), 5,920명의 학습근로자(2022년 기준)[35]가 있다. 현장실습생과 학습근로자는 일·경험 제도인 현장실습 제도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아동을 일컫는다. 현장실습생과 학습근로자는 교육과정으로 진행하는 일·경험 제도에 참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업체에 나가 일하는 구조여서 학습권 침해뿐 아니라 노동권 보장 관련 여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장 실습 중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학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재직자에 맞춰 설계한 일학습병행 제도를 특성화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형태로 무리하게 끼워 맞춰 운영하는 구조여서 학습근로자의 학습권과 노동권 침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한국의 아동·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수준에 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노동권과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살피고, 그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표 V-4-1〉과 같이 제32조에서 경제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있다.

아동을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제활동 중 일어나는 노동권 침해뿐 아니라 교육권 침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등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해당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해 아동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5)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주요 직무분야 중심으로 학교에서는 기초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현장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한국형 도제식 교육 모델"이다. 2023년 3월 기준 79개 사업단(공동실습소형 4, 거점형 37, 단일형 31, 산업계주도형 7), 167과정이 운영 중이다.(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교육부). https://www.hifive.go.kr/ 2023년 9월 20일 인출)

표 V-4-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노동권 관련 조항

구 분	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1989)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5호 (2021)	XII. 특별 보호 조치 A. 경제적, 성적, 기타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 112. 아동은 디지털 환경과 관련해 이들의 복지에 어떤 식으로든 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착취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데, 아동 노동 등을 통한 경제적 착취, 성착취와 성학대, 아동 매매, 인신매매, 유괴, 그리고 각종 사이버 범죄처럼 아동을 범죄 활동에 끌어들이는 모집 행위 등이 그 예이다. 콘텐츠 제작과 공유의 방식으로 아동이 디지털 환경의 경제행위자가 되어 착취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113. 당사국은 아동들이 경제적, 성적, 기타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근로에 대한 이들의 권리와 이와 연관된 보수의 기회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114. 당사국은 적절한 집행 기제가 운영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장치에 아동, 부모, 보호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1]. 당사국은 아동을 무기나 마약 같은 위해물품과 도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아동의 소지나 사용이 불법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강력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한 제도는 데이터 보호 및 보장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115. 인신매매, 즉 그 구성 행동과 관련 행위 등을 조사, 기소, 처벌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감안하면, 당사국은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 개정하여 범죄 조직에 의한 기술발달로 촉진된 아동 모집을 금지해야 한다. 116. 당사국은 사기, 신원 도용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 범죄의 수사 및 기소에 충분한 자원을 배정하기 위해 적절한 법률의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범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 기준과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아동이 사용하는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에 적용해야 한다.

* 출처: United Nations(UN)(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A/RES/44/25). 외교통상부 역(1991). 유엔아동권리협약(정부 공식 국문번역본).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21).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5호'. 국가인권위원회(편.), (2021)「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2021년 개정판: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국문번역)」. (pp. 687-688).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주: 1) 일반논평 16호(2013), 37항

또한,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5호(2021)에서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경제활동 중 착취당하는 현실을 고려해 '경제적, 성적, 기타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률과 정책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3)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노동권 관련 최종견해(1차~6차)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에 따른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의 1차~6차 최종견해는 〈표 V-4-2〉와 같다. 유엔아동권리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1차 견해를 표명한 이래 '입법과 관행에 있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2조를 충실히 반영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다. 2차 견해에서는 ILO협약 중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이행을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했다.

3·4차 견해에서는 한국의 역동적인 경제 변화 과정에서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며, 한국의 기업이 강제아동노동과 연루된 국가 기업의 물자를 수입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아동노동의 증가와 함께 노동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 특히 변칙적으로 이뤄지는 노동관행을 규율할 법 조항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관련법 제정을 권고했으며, 노동 감독을 개선하고 일터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성추행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5·6차 견해에서는 그간의 아동 노동 관련 정책적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여전히 일하는 아동의 수가 많고,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에 대한 조치가 실효성이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표 V-4-2.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견해 정리

구 분	관련 견해
1차	D. 주요 우려사항 17. 위원회는 아동의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법적 개혁을 포함해 취한 여러 조치들

구 분	관련 견해
	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무교육연령과 고용최저연령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위원회는 특별히 우려한다. E. 제안과 권고 30. 아동의 노동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본 협약 특히 협약 제32조를 충실히 반영시키기 위해 그 입법과 관행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고용최저연령에 관한 ILO조약 138호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며 이에 관해 ILO와 협의할 것을 권장한다.
2차	B. 당사국이 취한 후속조치와 진전사항 5. 위원회는 1999년 ILO 협약 138호, 2001년 ILO 협약 182호의 비준을 환영하고, 1차 심의시 위원회의 권고대로 취업최저연령을 15세로 높인 것을 환영한다.
3·4차	III. 주요관심분야 및 권고사항 A.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아동권리와 재계 26. 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인 당사국 재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환영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재계는 환경문제에만 집중하는 듯 하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 중 특히 노동기준 및 최저임금을 다루는 부문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나, 당사국 영토 내 혹은 해외에서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및 경감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체제의 부재를 지적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의 우려사항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a)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의회가 강제아동노동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아동권리 위반에 연루된 상황이다. G.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8, 39, 40, 37(b)-(d) 및 32-36조)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70. 위원회는 아동착취방지를 위한 2005년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 수립을 환영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 우려한다. a) 근로아동의 수 증가 b) 아동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이 15세가 넘는 아동을 야간 근무시키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주는 등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관련 기준조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 c)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게시간과 같은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 불충분 d) 노동 감독 불충분 e) 만연한 언어적, 성적 학대 및 폭력 발생으로 인한 근로아동 문제 악화 f) 연예인이나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의 수 증가

구 분	관련 견해
	71.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b) 야간근무금지의 효과적인 시행과 최저임금 지급 등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하라. c)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 조항을 제정하라. d)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하라. e) 근무환경에서 폭력과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를 묻고 재활을 돕는 효과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라.
5·6차	H. 특별보호조치 (협약 제22, 30, 32-33, 35-36, 37(b)-(d), 38, 39-40조)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44. 위원회는 일하는 아동의 근로조건 개선 및 기업 감독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일하는 아동의 수가 여전히 많고, 그들의 노동권 침해 및 언어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그리고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가장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8.7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책무성과 사회복귀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점검과 보고를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출처:
유엔아동권리위원회(199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편.), (2006).「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보고서와 권고문Ⅰ」. (pp. 71-74).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편.), (2006).「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보고서와 권고문Ⅱ」. (pp. 95-105).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정책자료 2011-04) (pp. 467-489).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정부 공식 번역본). 세종: 보건복지부.

1~6차 견해에서 반복해서 권고하는 내용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아동·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입법 보완과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있는 종합대책 마련 및 근로감독 강화 등이다.

아래에서는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을 아동·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와 정부의 조치 및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1) 아동·청소년 노동관련법 체계

한국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노동을 규율하는 단일한 법체계가 없다. 실질적인 노동관계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노동관계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표 V-4-3〉과 같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연습생과 연기자의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우선시되는 관련 법에 따라 주무 부처도 고용노동부, 교육부(직업교육훈련촉진법)와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으로 달라진다. 각각의 법률에 따라 관리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중삼중의 두터운 보호 체계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지만 앞서 살펴 본 실태에 비추어 판단할 때 실효성이 의심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은 노동과 무관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노동자성을 섣부르게 부인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노동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노동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표 V-4-3. 아동·청소년 노동관련법과 주 내용

구분	주로 적용하는 법	주 적용하는 내용	주 담당 부처
아르바이트 노동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청소년보호법 등	- 취업 연령 제한과 강제노동 금지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주 35시간 노동시간 및 야간노동 제한 - 유해위험 업무 고용 제한 - 일터 괴롭힘 및 폭행 금지	고용노동부 (점검 일부, 상담 및 교육 여성가족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훈련 시간 및 야간노동 제한 - 일터 괴롭힘 및 폭행 금지, 강제노동 금지 등 근로기준법 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규정 특례 적용	교육부
배달 노동 등 플랫폼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 배달 노동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 산재 및 고용보험 의무 적용(15세 미만 고용보험 임의 가입)	고용노동부
유튜버, 연습생 등 문화예술 분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고용보험법 등	-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 노동시간 및 야간노동 제한 -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등 보장 내용 계약서에 명시 의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주 : 노동자성 판단은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에 따라 판단하므로 위 분류 중 법적 지위는 개별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함.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그간 아동·청소년 노동관련법 제·개정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대로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과 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관계법 적용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부족했다.

(2) 아동·청소년의 노동관련 법·제도 조치 이행 현황

① 노동관련 법 개정

가. 아동·청소년 노동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개정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법과 헌법 제32조 제5항[36]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노동 보호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보완해 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1996년 1차 권고 이후 1999년 국제노동기구(ILO) 제138호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고, 아동권리협약 제32조를 반영해 의무 교육 연령과 고용 최저연령을 일치시키도록 근로기준법 제64조를 개정했다. 2001년에는 ILO 제182조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협약을 비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정책을 보완해 나갔다.

3·4차 주요 권고 사항(표 V-4-2 참고)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표 V-4-4〉와 같이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강화했다. 일하는 도중 긴 휴게시간("꺾기")을 두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으며, 노동조건을 정하는 기본적인 문서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 교부하도록 바꿨다.

5·6차 권고 이후에는 직급이나 나이 등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터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36)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3일 인출.)

표 V-4-4. 아동·청소년 노동 관련법 주요 개정 내용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	비고
고용최저 연령에 의무교육연령 반영 개정 (2005.3.31.)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999년 ILO 협약 138호(고용최저연령) 비준 -2001 ILO 협약 제182호(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비준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신설 (2007.7.27.)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노동조건 명시 의무 강화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 규정 신설 (2012.2.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휴게시간 상한 규정이 없어 노동시간 도중 지나치게 긴 휴게시간("꺾기")을 두고 임금을 삭감하는 관행 개선
최저임금 감액 규정 개정 (2017.9.19.)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년 이상 일하는 경우 수습기간 감액 규정 제외 업무(예: 편의점 판매, 오토바이 배달, 포장 및 조립, 손님 응대 서비스 등)를 정해 법정 최저임금 미준수 문제 개선
주 35시간제 개정 (2018.3.20.)	근로기준법 제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주5일제 시행에 맞추고,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일터 괴롭힘 금지 신설 (2019.1.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상 지위나 나이 등의 우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금지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의무 신설 (2021.5.18.)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노동조건 명시 의무 강화와 임금체불 문제 발생시 근거 자료 미비 문제 예방

* 출처: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최저임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나. 유해·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한국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유해·위험한 일에 고용되거나 언어 폭력과 성적 학대 등 아동·청소년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했다. 청소년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표 V-4-5〉와 같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를 정하고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표 V-4-5. 아동·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구분	고용 금지 업소	출입·고용 금지 업소
청소년 보호법	숙박업 일부, 식품접객업, 유해화학물질 영업 업소, 유료 만화대여업 등 기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소	사행행위 영업소, 식품접객업, 화상대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영업, 성적 행위 우려가 있는 서비스업, 유해매체 및 유해약물 제조·생산·유통 업소 등 기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소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상 출입·고용 금지 업소, 운전·조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업종,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 업무 제외) 등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업무	

고용을 금지하는 대표적인 업소는 아동·청소년이 성적 학대에 노출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소 등이며, 고용뿐 아니라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는 도박이나 경마 등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업소와 성적 행위 우려가 있는 서비스업 및 유해 약물을 제조·생산·유통하는 업소 등이다.

이와 같은 구분에 대해 숙박업, PC방 등 나이에 따른 사각지대와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일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직업훈련 과정에서 숙박업소에서 실습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18세 미만 금지 기준과 청소년보호법의 19세 기준 미만 금지에 따라 18세~19세 사이 아동·청소년이 숙박업소에서 직업훈련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021.1.26.)[37]해 일부 숙박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직업훈련 필요 발생시 매번 관련법

37)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숙박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은 제외하며,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숙박업의 경우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한 업소에서 해당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외한다.

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생겨날 경우 법 개정 이전까지 권리 제한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한 것은 아니다. PC방의 경우에도 출입은 허용하되 고용은 금지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이 취업 기회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흡연이나 유해한 매체 노출 등의 우려를 들고 있으나 실내 업소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게임 등급의 연령 하향 등 유해성을 해소할만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현실을 반영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중대채해처벌법 제정

한국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배달 노동 중 일어나는 사고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표 V-4-6〉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했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 택배, 대리 기사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했다.

표 V-4-6. 아동·청소년 노동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조항
감정노동자(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 응대 노동자) 보호 규정 신설 (2018.4.17.)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배달노동자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 (2019.1.15.)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다.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휴양펜션업
마.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가목은 제외한다)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조항
현장실습생 특례 규정 신설 (2020.3.31.)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및 설차관리 기준 신설 (2021.8.17.)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배달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 뿐 아니라 일하는 도중 휴식권을 보장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 의무 및 설차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판매직과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가 일하는 도중 위험한 일이 발생할 경우 업무를 중단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실습 중 일어나는 사고와 사망사고가 반복된 문제를 개선하고자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전면 적용이 아닌 특례 규정으로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지만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 규정과 함께 현장실습 중 안전조치와 사후 보상 등 규정을 마련한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 마련 외에도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38]을

38)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 :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시행해 노동자 시민 재해시 기업과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라.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 마련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노동자성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오랫동안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인[39]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 제2절에 〈표 V-4-7〉과 같이 19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표 V-4-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중 청소년 보호 주요 내용

해당 조항	주요 내용
제19조(청소년보호 원칙)	국가, 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 및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
제20조(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위험한 업소 출입 및 고용 금지 및물건과 업소의 광고 종사 금지 등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계약서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 포함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 강요 금지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 초과 금지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용역 제공 제한 등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 초과 금지. 단,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용역 제공 제한. 단,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 적용 등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건강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내용 시정명령 조치
제25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독자적 보수 청구

* 출처: 「대중문화산업발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3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침해 예방 의무와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정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이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15세를 기준으로 용역 제공 시간과 야간 노동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초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임금 독자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과 같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독자적 보수 청구권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적 보수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수익을 보호할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일시, 정산방법, 비용공제 명시 의무를 부과하고, 부속합의를 악용한 불공정 계약 체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자(의안번호 2114608)는 내용과 〈표 V-4-8〉과 같이 일명 '쿠건법'(의안번호 2109966)[40]이 국회에 발의 되어 논의를 앞두고 있다.

표 V-4-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쿠건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안 이유	최근 동영상 공유 플랫폼(유튜브 등)을 통해 월 수억 원 이상의 광고수익을 올리는 아동·청소년 유튜버, 일명 키즈 유튜버들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영역에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아동학대·착취를 당한다 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특히 6세 아동에게 자르지 않은 대왕문어를 먹게 하거나, 자동차로 인형의 다리를 절단하게 하고, 전기 모기채를 들이밀며 춤을 강요하는 등 자극적인 아동학대 영상이 촬영·배포되고 있어 아이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부모와 함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의 입장에서 노동과 놀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촬영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동의여부를 알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적 보호가 필요함.
주요 내용	-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아이의 의사에 반한 촬영 금지 신설 - 만 15세 미만 아이의 수익에 대해서는 만 16세가 될 때까지 인출을 금하는 등 새로운 대중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아동학대 금지 신설

*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2023년 10월 1일 인출.

40) '쿠건법'은 아역배우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아역배우가 번 수입을 신탁관리를 통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할리우드 최초의 유명 아역 스타인 재키 쿠건의 법적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1939년 미국에서 제정됐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쿠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5835508&categoryId=43667에서 2023년 10월 10일 인출.)

② 일·경험제도 관련 법·제도 제·개정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일·경험제도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와 일학습병행제도의 특성화고 단계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대표적이다. 두 제도는 공교육 과정에서 운영되지만 초·중등교육법보다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질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특징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산업 수요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 습득 위주의 직업 훈련 과정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은 학생의 사고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뤄져 왔다. 2011년 12월 현장실습 중 뇌출혈로 쓰러진 학생 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 전 노동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내용을 강화하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사고와 사망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표 Ⅴ-4-9. 현장실습 제도 변화와 관련법 개정 내용(2017~2023년)

연도	법제도 주요 개선방안	관련법 개정 등 주요 내용	주요 사건
2017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안)」 발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운영 근거 명시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 : 실습 중-학생, 취업전환 후-노동자로 신분 구분	전북 통신사 고객센터, 안산 플라스틱 제조업체와 제주 생수 제조업체 현장실습 중 사망
2018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방안」 발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재학생의 경우 현장실습 의무 대상에서 제외.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고시 주체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부로 전환.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규정 및 일부 위반 사항 과태료 규정 신설(2018.3.27.) -교육부 고시 개정(제2018-150호, 2018.4.19.) : 산업체 기반 운영 현장실습의 경우 학생의 선택 사항 명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발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현장실습생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 적용 특례(제166조의2) 신설(2020.3.31.)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제2020-128호, 2020.8.19.) 제정 : 고시 주체-해양수산부	경주 기능대회 준비 중 사망

연도	법제도 주요 개선방안	관련법 개정 등 주요 내용	주요 사건
2021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 방안」 발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 중앙취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취업전담교사와 취업지원인력(취업지원관, 학교전담노무사 등) 배치.운영 신설 (2021.3.2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를 개정하여 현장실습이 가능한 숙박업 기준 마련	-원주 주사기 조립 공정 현장실습 중 사고 -여수 요트업체 현장실습 중 사망
2023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발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 근로기준법 규정 중 강제 근로 금지, 폭행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등 준용 신설(2023.4.18.)	

* 출처:
교육부(2017).「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안)」. 서울: 교육부.
교육부(2018).「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방안」. 서울: 교육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0).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세부 분석 자료. 서울: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관계부처합동(2020).「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서울: 교육부.
관계부처합동(2021).「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 방안」. 서울: 교육부.
관계부처합동(2023).「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서울: 교육부.
직업계고산업체파견형현장실습폐지운동백서편찬위원회(2020). 직업계고 산업체파견형 현장실습 폐지운동 백서(2017~2019).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가장 큰 폭의 변화는 〈표 V-4-9〉와 같이 2017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노동중심'에서 '학습중심 '으로 방향을 설정해 교육과정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학생의 선택에 따라 현장실습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을 완화했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부로 바꿨다. 2020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특례 규정을 신설해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 보장받아야 할 노동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했다.

2021년에는 현장실습 전 기업의 노동안전 점검과 학생의 상담과 노동법 교육 등을 지원하는 학교 전담 노무사 제도와 현장실습과 취업에 필요한 과정을 돕는 취업전담 교사와 취업지원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2023년에는 학생 신분과 나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일터 내 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폭행 금지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했다.

③ 아동·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확산

아동·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표 V-4-10〉과 같이 청소년 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및 각종 조례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동법 제8조의2 제1항)과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동법 제8조의2 제2항)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중앙지원단 및 17개 시도에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설치해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각 시도군구 조례에 근거해 아동·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V-4-10.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 및 조례 현황

구분	내용	시행 기관 등
노동인권 교육 관련 법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2016.3.2.신설)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중앙지원단 및 17개 시도 설치)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6조(사업) 제1항 제3호 청소년, 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2020.3.31.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제1항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2001.5.24.제정)	인권교육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국 6개 인권사무소)
노동인권 교육 관련 조례	- 10개 광역 및 74개 시군구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조례(2023.6.25.기준) - 6개 시도교육청(경기/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 학생인권조례 및 13개 시도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2023.6.25.기준)	- 각 시도군구 노동권익센터 및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 - 각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중 고등학교 교육목표 중에 '일의 가치를 이해하고~' 포함. '성숙한 자아 의식과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일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 고등학교 각 교과과정에 반영 - 직업계고 전문 교과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 보건' 과목 개설(각 학교 선택 과목) 등

* 출처: 교육부(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청소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여성가족부 외에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설치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과 함께 노동인권교육 양성과정과 교직원 및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센터에서 전국 5개 인권사무소(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와 1개 출장소(제주)를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2 초중등교육과정 개정안 총론 중 고등학교 교육 목표에 '일의 가치를 이해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직업계고 전문 공통 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 보건' 과목이 개설되었다. 직업계고 해당 교과의 개설 여부는 각 학교의 선택 사항이다.

④ 청소년종합보호대책과 상담 및 권리 구제 기관 마련

한국 정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1993년부터 5년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제7차(2023~2027)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다. 기본계획에는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인식 확산과 아동·청소년 노동자의 부당처우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노동 관련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해 기존 보호 체계에서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 추진, 둘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권리 보호를 위해 학교와 산업체 대상 정기적 지도점검 실시, 셋째, 예체능 분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와 관계자 교육 실시, 넷째, 아동·청소년 부당처우 예방과 보호를 위한 기관의 지원과 감독 내실화, 다섯째, 아동·청소년과 고용사업자 대상 교육 실시 등이다.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3년마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환경과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노동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2년 주기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노동권 상담과 권리구제 절차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교육부(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부당대우 신고센터가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 침해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실태 파악 및 감독 수준과 법제도 미비와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미비의 원인

(1) 아동·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 부족

① 아동·청소년 노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

아동·청소년의 노동권 침해 현실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아동·청소년 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학생 신분을 강조하며 아르바이트'생'으로 부르는 관행은 아동·청소년의 일차적 본분은 학생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인식은 아동·청소년 노동자를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 일방적으로 훈계하는 태도로 이어지기도 하고, '있어야 할 곳'(학교)에 있지 않고 일터에 있는 비정상적인 존재로 여겨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당연시하기도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이런 인식은 더 심화한다.

또한, 노동관계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동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용돈벌이' 운운하며 사소한 노동으로 치부하고 하찮게 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다년간 아르바이트 노동 경험이 쌓인 경우에도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지나치게 긴 수습기간을 두어 임금을 깎는 등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부당한 대우로 이어진다. 아동·청소년을 노동계약에 따라 일하는 동료 시민, 노동자가 아닌 나이와 사회적 지위의 우월한 관계를 이용해 차별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아동·청소년의 노동환경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률이 전체 29.5%로 2018년 37.5%, 2020년 34.5%에 비해 감소하긴 했지만 아르바이트 노동 중 다양한 영역에서 노동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대응에 대한 대처 방법은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69.2%로 가장 높고,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14.2%로 나타나 대부분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

아동·청소년이 부당한 일을 겪고도 소극적 대응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취약한 상태로 내몰리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아동·청소년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노동관계를 포함해 사회에서 맺는 다양한 관계가 평등해지지 않는다면,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에도 오히려 위축되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권리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일에 나서는 일이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② '노동권 대 학습권'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의 문제

아동·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관련 법·제도와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일례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권과 학습권 침해 문제가 수차례 개선안(〈표 V-4-9〉 참고)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것은 '노동권 대 학습권'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비롯한다. 〈표 V-4-11〉과 같이 산업체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재학 과정 중 이뤄지는 제도 특성상 노동자와 학생이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처한다. 학생이면서 노동자인 특수한 지위를 고려해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현실이지만 권리 침해 발생시 '학생이냐 노동자냐'는 구분에 매몰되어 어떤 권리도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곤 했다.

표 V-4-11. 일·경험제도 참여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

구분	주 적용 법	법적 지위	주 담당 부처	비고
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학생	교육부/고용노동부 (일부 노동관계법 준용 규정에 한해 고용노동부)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학교전담노무사에 의한 현장코칭 지원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 적용
현장실습 중 취업전환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노동자/학생	고용노동부/교육부	-근로계약서 작성 -현장코칭 지원 없음
학습근로자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학습근로자/ 노동자/학생	고용노동부/교육부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반) 중 특성화고 학생 참여 제도

예를 들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는 '학생'이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학생은 '학습근로자'로 노동자다. 현장실습의 경우 '산업체 약정형 현장실습' 유형에 참여하는 학생은 3개월이 지나면 취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취업 전환한 학생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생 신분에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신분으로 전환된다. 여전히 재학 중인 학생이지만 제도에 따라 취업으로 전환해 노동자 신분이 되었다는 이유로 현장실습

생에게 지원하는 현장코칭 등을 누릴 수 없다.

학습근로자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도 제도 운영 특성에 따라 특정 시기(일주일 중 월, 수, 금 또는 한 달 중 첫 주~둘째 주)에 산업체에 나가고 특정 시기(일주일 중 화, 목 또는 한 달 중 셋째 주~마지막 주)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학습근로자와 학생이라는 이중 지위에 있다. 산업체에서 겪는 노동권 침해는 노동관련법에 따라 권리 구제에 나설 수 있지만 산업체와 학교를 오가느라 대응이 쉽지 않고, 학교는 사(私)기업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어 통상적인 노동관계법상 구제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이중적 지위에 처하게 되는 아동·청소년이 노동권 침해를 겪는 경우 권리 회복을 위한 빠른 지원보다는 어떤 신분을 우선 해 판단할지 매달리느라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노동자라는 법적 지위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학생 신분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를 따지느라 관계법을 관할하는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이어져 결국 노동권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경험 제도는 공교육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일·경험 제도 참여시 학습권 보장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할 때는 산업체의 노동안전 예방과 조치 의무 강화가 중심이 되어 왔을 뿐 제도의 교육적 운영과 학습권 보장은 소홀하게 다뤄진 측면이 있다.

(2)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비롯하는 사각지대

① 노동법 적용 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현행 노동관계법은 과거 제조업 공장제 노동을 규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관계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많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대법원은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완화[41]하고 있지만 노동자를 정의하는 규정의 제·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에 의존해 노동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사용종속성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등 한계가 뚜렷하다.

41)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판단할 때 사용종속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1994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에서는 지휘명령성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가'에 따라 판단했다면 2006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에서는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그 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업무 특성과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변화된 판례에 따라 2019년 '요기요' 배달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된 사례가 있다.

아동·청소년 노동자의 경우 사용종속성을 따져 권리를 회복하기까지 대응하기 쉽지 않은 문제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법에서 정의하는 나이 기준이 〈표 V-4-12〉과 같이 차이가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아동복지법의 연령 기준은 18세 미만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나이 기준과 동일한 반면 청소년보호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19세 기준,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 기본법의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다르다. 각각의 법에서 정하는 나이 기준은 정책 대상을 뜻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정책 공백이 생기거나 겹쳤을 경우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 V-4-12. 아동·청소년 법적 정의

구분	아동·청소년 정의	비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년 기본법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은 15세를 기준으로 세부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아동복지법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아동학대, 취업제한)
근로기준법	18세 미만 연소근로자(年少勤勞者)로 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소년)

* 출처: 「청소년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7일 인출.
「청소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7일 인출.
「청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7일 인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7일 인출.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7일 인출.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7일 인출.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을 따져 고용과 야간 노동, 노동시간 등을 제한할 때 근로기준법은 18세 기준,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18세 이상 19세 미만에 속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해위험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청소년

보호법상 기준만 적용되는 식이다. 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경우 15세 이상 청소년은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제한(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주 6시간 연장 가능)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35시간 제한(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주 5시간 연장 가능) 기준과 차이가 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하지만 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청소년의 노동시간 위반 규정에 대한 처벌이 없다.

표 V-4-13.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 주요 사례

구분	적용 제한 내용
상시 노동자 수 4인 이하	주 40시간 노동, 연차 유급 휴가, 연장·야간·휴일 노동 가산 수당 지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등 없음 (18세 미만자의 경우 주35시간제 적용 의무 있음)
상시 노동자 수 20인 미만	휴게시설 설치 의무 없음(일부 사업 제외)
상시 노동자 수 10인 미만	취업 규칙 작성·신고 의무 없음
주 노동시간 15시간 미만	고용보험, 주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 지급 의무 등 없음

* 출처: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7일 인출.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7일 인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7일 인출.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7일 인출.

아동·청소년 노동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사각지대는 〈표 V-4-13〉와 같이 사업장 규모와 일주일 노동시간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문제에서도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노동자 수 5인 이상에 전면 적용되나 4인 이하면 주 40시간 노동 기준과 연차 유급 휴가, 연장·야간·휴일 노동 가산 수당 지급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의무가 없고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설치 의무가 없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1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10인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징계나 해고, 임금, 기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 등 개별 계약서에 의존해야 해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사업장 규모와 함께 일주일 소정 노동시간 1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고용보험도 의무 가입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계약을 맺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와 주 15시간 노동기준에 따른 사각지대가 아동·청소년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일하는 음식점·식당·레스토랑, 마트나 카페·베이커리 등 사업장 규모가 적은 곳에서 단시간 일하는 비율[42]이 높기 때문이다.

② 감독 및 책임 소재 불분명

아동·청소년 노동관련법이 여러 법에 산재함(〈표 V-4-3〉, 〈표 V-4-11〉, 〈표 V-4-12〉 참고)에 따라 주무 부처가 각기 다른 이유로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현장실습 제도는 교육부 주관, 일학습병행제도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다.

아동·청소년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감독과 노동권 침해 발생시 권리 회복절차에 대한 주요한 역할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관련법의 소관 부처별 역할이 중복되거나 법적 권한 문제로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으로 소관부처를 교육부로 명확히하고 현장실습생의 법적 지위를 '학생'으로 정한 후 현장실습 중 일어나는 아동·청소년 노동권 침해에 대한 대응 책임은 일차적으로 교육청과 교육부에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일부 준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중 임금(실습 수당)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생이 학교에 신고하면 교육청에서 취합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과정을 거치는 복잡한 구조가 됐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현장실습 중 겪는 노동권 침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책임과 역할은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노동권 침해 상담과 법적 구제 절차를 지원하는데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감독과 조사 권한이 없어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하게 운영하고 있다. 노동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2022년 기준 청원 10건당 6건이 폐기될 정도[43]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있다.

---

42) 여성가족부(2022b)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 노동 상위 5개 업종으로 음식점·식당·레스토랑에 59.2%가 종사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에 17.2%, 패스트푸드점 8.9%, 편의점/소형마트 7.6%, 카페/베이커리/아이스크림 가게에 7.1%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15.5시간으로 2020년 16.8시간보다 줄었는데,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43) 매일노동뉴스(2023.10.3.). "[근로감독 청원 하루 7건] 감독관 늘어도 10건 중 6건 폐기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63에서 2023년 10월 9일 인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전국으로 설치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해 운영 중인데 아동·청소년 노동 상담과 교육 및 권리 구제 역할이 겹치는 문제와 함께 근로감독 운영 실태를 점검해 부처별 기능전환과 보완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3) 정부의 실태조사 및 정책 이행 상황 점검 부족

① 정부의 실태조사 범위와 조사의 한계

한국 정부는 〈표 V-4-14〉와 같이 청소년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3년 주기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진행 한다. 9세~24세 청소년의 의식, 태도, 생활 등의 실태를 파악해 기본계획과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며, 아르바이트와 현장실습 경험 등 아동·청소년 일·경험과 노동권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5가지 영역 중 '청소년 근로보호 영역'에서 학생인 청소년(초4~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결과는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주로 조사하는 내용은 아르바이트 노동 동기 및 주로 일하는 업종,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및 최저임금 준수 현황, 부당대우 경험 및 대처 방법, 노동인권 교육 경험 등이다.

표 V-4-14. 아동·청소년 노동권 관련 실태조사 목적과 내용

	조사 목적	조사 주기 및 주요 내용	비고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청소년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청소년의 의식 태도 생활 등의 실태를 파악	-3년 주기 -9세~24세 청소년 대상(양육자 포함) -아르바이트와 현장실습 경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및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인권 침해 여부 파악 등	-근거법 : 청소년기본법 제15조의2(실태조사)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청소년 보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조사	-2년 주기 -초4~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근로보호 영역'에서 아르바이트 노동 동기 및 주요 일하는 업종,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및 최저임금 준수 현황, 부당대우 경험 및 대처 방법, 노동인권 교육 경험 파악 등	-근거법 : 청소년보호법 제33조 제4항(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 출처: 여성가족부(2023.7.7.). 보도자료: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22b). 2022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노동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 일부 노동관련법 제도가 개선되어 왔으나 현황 파악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기존 노동관계법의 변화에 비해 노동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영역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와 최저임금법 등 기초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다. 배달노동의 증가로 일부 조사 항목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고는 있지만, 현행 노동관계법 적용이 어려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노동 실태는 파악이 어렵다. 비교와 추적 조사를 위해 동일한 항목을 유지하기 위한 고려로 이해되나, 빠르게 변하는 노동환경과 경험을 반영하지 못한 조사 결과는 정책 지연이나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태조사별 조사 내용과 대상, 시기별 중점 조사 항목, 조사 주기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노동 중 발생하는 학습권 침해 현황을 파악할만한 자료가 없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경우 교육부에서 하이파이브 데이터베이스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지만 동시에 해당 자료의 통계적 신뢰성, 정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강문식 외, 2022)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II[44]에서도 현장실습 관련 문항의 응답은 신뢰성 문제로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 문항의 선택지를 대학진학자를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특성화고 진학과 졸업자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강문식 외, 2022). 이는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 관련 정책에 관한 관심 부재로 이어질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태에 기반한 정책 마련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이 노동 중 경험하는 산재 사고와 사망 관련 통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실태 파악 및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하이파이브 데이터베이스는 신뢰하기 어렵고, 산업재해 승인 등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실습 중 사고와 사망 관련 통계를 분류하는 기준이 없어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사례를 축적해 관리하지 않는 것[45]으로 확인됐다.

② 정책 총괄 및 이행 점검 체계 부족

아동·청소년의 노동권 실태 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조사 결과에 기반해 실시하는 정책을 총괄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는 부족해 보인다.

44) 한국교육고용패널Ⅱ는 2016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은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종단 패널조사다.
45) 경향신문(2021.10.26.). "근로복지공단, 산재 사망 현장실습생 '0건' 통계 구멍".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10261450001에서 2023년 10월 7일 인출.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총괄·조정하고 있다.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015년부터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편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청소년 위원을 위촉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개선해 왔다. 그러나 소관 부처가 많고 다루는 정책 내용이 방대해 아동·청소년 노동 사안은 주요하게 다뤄지기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

〈표 V-4-15〉와 같이 2023년 현재 4차 청소년 종합보호대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각 부처의 아동·청소년 노동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10여 년간 대동소이하다. 상담과 권리 구제 지원처럼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 부처별로 중복·반복되어 관련 정책 총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고, 1차 계획에 포함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운영' 정책은 구체적인 실행 과정없이 폐지됐다. 배달 노동에 대한 대책처럼 2차~4차에 거쳐 변화하는 노동 실태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책은 매우 드물고, 각 차수별 구체적인 이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표 V-4-15. 청소년 종합보호대책 중 아동·청소년 노동 주요 대책

구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1차 (2013년~2015년)	-알바신고센터 운영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운영 -공인노무사 권리구제 무료지원 추진(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위촉) -현장실습생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청소년 문자 상담 통해 현장 도우미 연계 서비스 운영	-직업계고 정규 교과과정에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 및 권리에 대한 교육 강화
2차 (2016년~2018년)	-지역별 노동청 중심으로 '청소년 근로권익협의체'(가칭) 구성·운영 -배달대행 청소년 안전보호 강화 -부당행위 피해 청소년 원스톱 지원	-현장도우미 사업 내실화 -'찾아가는근로권익교육'을 일반고와 중학교, 학교밖 청소년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현장실습생 고용 사업장 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
3차 (2019년~2021년)	-지역별 '청소년 근로권익협의체' 운영 -배달노동자 산재 의무가입 추진	-부당행위 피해 청소년 원스톱 해결 및 종합서비스 연계지원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 및 특성화고 '성공적인 직업생활' 교과에 청소년의 근로권익 및 직업윤리 관련 내용 반영

구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4차 (2022년~2024년)	-플랫폼 종사 청소년 보호 방안 마련	-근로청소년 중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연계체계 구축	-현장실습생 부당처우 방지 및 안전 강화

* 출처: 여성가족부(2012).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
여성가족부(2016.4.21.). 보도자료.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여성가족부(2018).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
여성가족부(2022.6.28.). 보도자료.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4) 노동인권 교육 체계 미흡

① 공교육 과정 노동인권교육 부족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은 노동 현장에서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함양하게 하고, 경제민주주의 등에 대해 학습하게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22.8.11.) 따라서 공교육 과정에 포함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10.2.4.) 이후 수차례 노동인권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고, 교과서를 마련할 때는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13.9.5.)한 바 있다. 2022년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으며, 정부의 4차 NAP(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마련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국가인권위원회, 2022)에도 '초중등학교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마련'과 '학교 밖 청소년과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차례 이어진 권고에도 불구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교육 목표 중에 '일의 가치를 이해하고~'를 포함하는데 그쳤다. 공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② 노동인권 교육의 내용 및 체계의 문제

노동인권 교육은 〈표 V-4-16〉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의 시행 및 주관 부처가 다양하고 이로부터 중복 또는 소홀해지는 문제점(송태수 외, 2021)이 있다. 공교육 과정에

서 노동인권 교육을 담당해야 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나 관련법과 교과목 부재 등의 이유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역할과 사업을 중복해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 또한 재학 중인 학생에 집중되어 있다.

표 V-4-16. 중앙정부와 민간 단체의 노동인권교육 현황

	고용노동부/ 한국 고용노동 교육원	교육부/ 교육청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
교육 대상	-청소년 일반 -직업계고 학생 -교사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	-청소년 대학생 -직업계고 학생 -교원 연수 -대학생(교육부) -학부모	-청소년 일반 -학교밖 청소년	-특정하지 않음	-청소년 일반 -강사양성
교육 주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공인노무사회)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청 미래인재과(현장실습 및 관련 교육)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국 240여 개)	-지역인권교육센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청노넷)
교육 내용	-광의의 노동인권 -권리구제 방안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협의의 노동인권교육 경향	-현장실습관련 근로기준법, 안전 교육 -중학생 자유학년제 -초중등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	-협의의 노동인권교육 -청소년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근로권익 침해 구제 지원 및 관련 교육	-인권의 한 분야로 노동인권 포함 -인권강사 대상으로 노동인권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2018~19년 교재 작업)	-광의의 노동인권 -노동법 -권리구제방안
특징	-사업을 통한 교육 지원 -교육 외에 권리구제 연계 운영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통한 노동인권교육 내용 및 거버넌스 구축에 책임	-교원 대상 연수 -학생 직접 교육 -인성교육 및 진로교육과의 연계 방안 모색	-청소년 기본권 보호 주무 부처 -강사 인증제 통한 강사양성배출 -최근 2년 전부터 중고등학생 대상 직접 교육 대규모 지원 중	-인권감수성의 일환으로 노동인권감수성 강조 -지역교육센터별로 지역별 교육 거버넌스에 참여 중	-민주노총 : 지역별 차별적이나 유사 경향 띰 -한국노총 : 노동법 중심 -청노넷 : 지역별 독립적으로 차별적 조작내용

* 출처: 송태수, 이수정, 이원희, 변섭(2021).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와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pp. 279~280.

송태수 외(2021)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은 노동법 지식을 알려주는 '협의'의 노동인권 교육에 머물러 있다. 노동인권 교육은 노동법 지식뿐 아니라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타인의 노동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 실천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감수성을 기르고 노동하는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등 '광의'의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일부 시행 주체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위주의 노동법 지식 전달과 권리 침해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알려주는데 머물러 있다. 이는 노동인권 교육 목표와 내용 등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학교급별로 필요한 교육 내용을 마련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문제와 함께 민간 주도의 강사 양성 시스템과 모니터링 부재, 1년 1~2시간의 한정된 교육 시간 등과 맞물려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지역별로 조례 유무(〈표 V-4-10〉 참고)와 예산 배정, 시행 주체의 노동인권 인식에 따라 교육 운영에 부침을 겪거나[46]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 과제

(1) 아동·청소년의 총체적 권리 보장 관점에서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

① 아동·청소년 노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가. 공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 실시

평생을 타인의 노동에 기대어 사는 현실에서 노동과 무관한 삶을 사는 이는 없다. 아동·청소년 또한 아르바이트 노동과 현장실습, 대중문화예술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노동의 의미와 가치, 타인의 노동을 존중하는 태도와 실천 활동에 대해 사유하고 성찰할 기회가 적고, 내용 또한 매우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2022 교육 과정 개정안에 일부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초중고 급별 연계성을 높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 총론에 반영하고,

46) 경향신문(2023.7.10.). "'다음 소희' 여전한데…서울 노동교육 예산 '전액 삭감'한 시의원들". https://www.khan.co.kr/print.html?art_id=202307100600011에서 2023년 10월 7일 인출.

중단기적으로는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동인권 교육의 목표, 내용, 대상, 방법 등을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의 중복 사업 점검 및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근로 권리', '근로 권익', '노동권', '노동인권' 등 혼재되어 있는 노동인권 교육 개념을 정립해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교육 내용 또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중심의 권리 침해뿐 아니라 국제인권 규범에서 정하는 내용, 내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노동의 문제를 폭넓게 다뤄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 학부모, 권리구제 조력자로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교원 양성 기관의 교과목에 노동관련 교과목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2 교육과정 중 직업계고 전문 교과목으로 정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나. 아동·청소년 노동권 관련 실태조사와 통계 보완

아동·청소년의 노동에 대해 아르바이트 노동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실태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실태조사 방식 개선과 신뢰할만한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승인통계로 아동·청소년 노동인권 종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노동 영역 항목을 기본 항목과 부가 항목으로 구분해 정책적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대상이 9세~24세로 넓어지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계고 재학생의 현장실습 실태, 대학 비진학자의 노동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산재 통계 등 노동관련 통계에 아동·청소년의 노동 실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 산재 통계 분류 방식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실태가 드러나도록 통계 분류 방식을 보완하고, 매년 5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의 대학진학자 이상 중심의 설계를 바꿔 대학 비진학자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거나 상하반기 실시하는 지역별 고용조사의 '부가 항목'으로 15세~19세 아동·청소년 노동 실태를 파악하는 방식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② 노동관련 법·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가. 아동·청소년의 노동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체계 정비

국제규범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관계의 출현에 따라 종래의 인적 종속을 넘어 다양한 계약 관계를 포괄하도록 확장할 것을 권고한다.(강문식 외, 2022) '학생이냐 노동자냐'는 현장실습생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불필요한 쟁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아동·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개정해 '계약, 노동 형태와 관계없이 경제적, 조직적 관계 아래 일하는 사람'을 모두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현장실습, 현장 견학, 체험활동, 캠프 등 어떤 형태의 활동 중에도 학습권과 안전·생명권, 노동권 등 기본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법제도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에 따른 노동권과 학습권 보장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노동관련법에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 아동·청소년 노동(활동)안전 기준 마련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라 유해·위험한 노동(활동)이 무엇인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과 휴식시간을 생후 15일부터 세분화한 연령에 따라 규정하고 대기시간 중 학업시간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100피트 촉광 이상의 불빛에 30분 이상 노출 금지하는 규정(김여라, 2013)을 마련하는 등 매우 세부적인 기준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연소자노동보호법[47]도 아동·청소년에게 고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노동, 즉 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노동을 금지하고, 이러한 노동을 하는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것도 금지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유해·위험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법개정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기준으로는 ILO 노동입법 가이드라인이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도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작업'(혹은 '위험한 일')에

47) 「연소자노동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
https://www.gesetze-im-internet.de/jarbschg/__23.html 2023년 10월 5일 인출.

관한 삼자간 협의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범주를 〈표 V-4-17〉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민주노총, 2023) 아동·청소년의 노동(활동) 안전 기준을 세울 때 '원칙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노동 환경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유해·위험 기준을 마련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관과 절차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 V-4-17. ILO 노동입법 가이드라인

구분	내용
고용금지 영역 기준을 마련할 때 살펴야 할 것	18세 이하 소년·소녀를 '위험한 일'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금지한다. '위험한 일'이 무엇인가를 삼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넓은 범주로부터 위험한 일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동을 신체적·심리적 또는 성적인 학대에 노출시키는 일, • 지하, 물 속, 위험한 높이에서 도는 폐쇄된 공간에서 하는 일, • 위험한 기계·장비·도구를 사용하는 일, 또는 무거운 짐을 손으로 다루거나 운반하는 일, • 아동을 위험한 물질, 약품, 가공처리, 위험한 온도, 소음에 노출시키는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서 하는 일 또는 그들 건강을 해치는 진동에 노출시키는 일, • 장시간 또는 야간근로 등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 하는 일, 또는 아동을 사용자의 구내에 부당하게 가두어 두고 시키는 일
위험한 노동환경으로 보호하기 위해 살펴야 할 것	• 소년·소녀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 어떤 범주에 속하는 일이든, 또는 어떠한 경제활동 분야이든 원칙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환경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위험한 일 목록을 정기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살펴야 할 것	• (법률에 '위험한 일' 목록을 정해 두기보다는) 무엇이 '위험한 일'인지 결정하는 일을 어떤 기관에 일임할 수 있다. • '위험한 일'을 결정하는 개략적인 절차를 정해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에 남녀 구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인 파트너, 기타 '관계'기관, 직업안전 및 건강에 관한 전문가, 소아과 의사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형사상·민법상 및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규정한다.

* 출처: 민주노총(2023). '최저연령협약(제138호)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협약(제182호)' ILO 보고서. pp.2~3 재구성.

다. 고용노동부의 책무 강화

노동관계법 준수 의무는 타인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 노동관계법은 법 준수 의무자가 지켜야 할 내용뿐 아니라 이를 지도하고 감독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노동관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사업장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책무

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감독관 제도를 강화해 각 지청별 아동·청소년 노동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각 지청별 청소년 전담 근로감도관 지정과 함께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근로감독청원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감독청원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에 노동자에게 신고권, 청원권, 신고 후 불이익 예방을 위한 보호 조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신고 및 청원을 독려하도록(직장갑질 119, 2022) 만든 제도다. 직접 법적 구제 절차에 나서기 힘든 아동·청소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관할 법률로 포함해 아동·청소년 고용 사업장 범주로 현장실습 사업장을 포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청소년 근로권익 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일·경험 제도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방안 마련

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직업교육 정의

일·경험 제도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이 산업체 수요와 정부의 취업률 정책에 따라 수단화 혹은 도구화되지 않도록 직업교육의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유네스코 보고서(2021)에 따르면 취업을 위한 준비는 중요하지만, 교육의 목표를 너무 좁게 정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위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일·경험 제도는 각 부처의 한시적 사업이 아닌 교육과정에 맞춰 충실하게 운영해야 하며, 관련 규정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아닌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정할 필요가 있다.

② 기초학력 보장 방안 마련

아동·청소년은 공교육 과정을 통해 평생학습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지원받아야 한다. 이에 직업교육이 취업에 필요한 기능 훈련에 치우쳐 있는 문제, 일·경험 제도에 참여하느라 교과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개선해 학생의 인문학적 소양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력은 기술 습득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삶을 영위하고 학습을 지속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박선화 외, 2020) 역량으로 일·경험 제도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직업계고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아동·청소년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역량이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보장법 및 기본계획에 직업계고 기초학력 보장과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학교 중심의 일·경험 제도 지원체계 구축

공교육 과정으로 운영하는 일·경험 제도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간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 맡겨 운영하는 제도 특성상 학교도 기업도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즉, 학교에서 마련한 교육과정이 교육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산업체에서 작동할 수 없는 구조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이 교사를 통해 이뤄질 수 없음에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결과가 되는 문제가 반복되었다. 공교육 과정으로 운영하는 일·경험 제도는 학교의 책임하에 운영해야 하며, 일·경험 제도 중 비교육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형을 중단하는 방안을 포함해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지원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3) 정책 총괄 및 이행 체계 확보 방안 마련

아동·청소년 노동에 대한 협소한 인식에 기반한 정책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주의 노동법 지식을 알려주는 노동인권교육에 머물고, 아르바이트 노동 위주의 실태 파악과 상담 및 권리 구제 지원에 그쳤다. 아동·청소년은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지위, 즉 학교 밖, 기초생활수급자, 이주배경, 쉼터 거주, 1인 가구, 장애, 성적 소수자 등 다양한 정체성으로 노동을 경험하지만 아동·청소년 노동 실태 파악은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아동·청소년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는 다양한 지위를 고려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총괄하는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총괄 부처는 부처간 중복되는 사업을 살펴 장단기 계획과 함께 집중 사업을 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행 점검 기구를 설치해 이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하는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간 아동·청소년의 노동 정책은 노동법 위반에 따른 권리 침해 대응과 협소한 범위의 내용을 다루는 노동인권교육이 주였다. 향후 정책 과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제인권규약 및 헌법에서 보장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어떤 지위에 있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착취가 우려되는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에서 나아가 괜찮은 일자리와 사회경제적 지원에 대한 권리 등 적극적인 노동권의 내용과 실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소결

이 장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수준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시계열적 관계의 결과,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아동·청소년의 권리 지표는 지난 10년 간 개선되어 오고 있었다. 특히 일상에서의 폭력(가정, 학교, 지역사회)은 큰 폭으로 감소되어 온 특징이 있다. 하지만 주관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 정도는 안정적으로 혹은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었다. 규범적 측면에서 아동권리 지표는 개선되어 왔으나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중요한 요인들의 개선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일부 개선이 나타난 영역만큼 다른 영역에서의 위험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 분석은 아동·청소년 권리 연구가 개인의 웰빙이라고 하는 발달성과(outcome)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침해 면접조사의 결과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은 단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중첩되어 나타나며, 다차원적인 인권침해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중첩된 취약성은 아동·청소년의 성인기 이행까지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청년기에도 관계적 취약성을 경험했고, 삶의 의미에 대한 도전을 받기도 했다. 아동·청소년기의 다만 부정적 생애경험(ACEs)을 완충할 수 있는 지지체계와 이에 상응하는 긍정적 생애경험(PCEs)은 중첩된 취약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긍정적 성장을 이끄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학교차원, 지역사회 차원, 아동·청소년 인권 차원에서의 개선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셋째,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정책분석 결과 아동·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입법 미흡, 정부의 실태조사 범위와 내용의 한계, 근로감독 미흡과 부처별 사업 중복 및 이행 점검 체계 부족 등 미비한 점이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총체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관

련 법체계 정비 및 정책 이행 체계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와 사회·경제적 지원에 대한 권리 등 적극적인 노동권 실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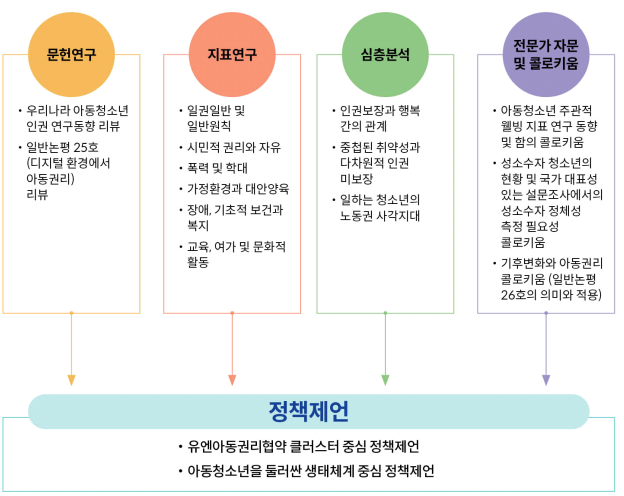
제6장 정책제언

1. 제언 도출과정
2.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및 정책 방향 도출
3.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

6 정책제언[48]

1. 제언 도출과정

이 연구는 연속과제로서 우리나라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 도출과정을 도식화하고, 체계적으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이후 세부적인 정책제언을 정리하였다.



* 출처: 저자작성

그림 Ⅵ-1-1. 제언 도출과정

48) 이 장은 공동연구진과 외부 집필진이 각 장에서 정리한 요약 및 시사점을 토대로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다.

2.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및 정책 방향 도출

이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 지표연구, 심층분석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파트의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도출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거나 콜로키움 개최를 통해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도 함께 정리하였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 주요내용 및 시사점

이 연구의 문헌연구를 세 가지 큰 틀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최종견해)을 영역별로 살펴보고, 그동안 채택된 선택의정서와 발표된 일반논평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언급된 문헌을 찾아 체계적 문헌고찰방식 중 하나인 주제범위검토 연구(스코핑 리뷰)를 진행하여 299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이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연구들이 시기별로 전문성과 세부성에 차이가 있으며, 각 시기별 전공별 기여도 역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일반논평 제25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내용 검토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아직 본격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응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표 Ⅵ-2-1. 문헌연구의 주요내용·시사점 및 정책제언

주요 내용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인권 연구동향 리뷰**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전반적 소개에서 세부화, 전문화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적용과정에서의 인권 사각지대 대상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음.	▶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세분화, 전문화 방향은 긍정적이나, 새로운 환경의 영향과 새로운 취약성에 대한 연구로 확대 필요 •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환경, 기후변화 상황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연구 발전 필요 ➡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사회문화적·디지털 환경', '생태적 환경' 영역 제언으로 추가

• **일반논평 제25호(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리뷰** – 아동·청소년 개인에게는 리터러시 증진, 부모의 감독, 학교의 아동·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지원 필요 – 디지털 플랫폼의 책무성 부여 및 정부 감독 필요	▶ • 디지털 플랫폼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책무성 부여 및 정부 감독 ➡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사회문화적·디지털 환경' 영역 제언으로 추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환경, 기후변화 상황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연구 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책무성 부여 및 정부 감독이 필요하며 이를 담당 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와 거버넌스 구축, 관련 정책 수립과 영향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2)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는 백서 형태 보고서로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나 아직 7명 중 1명 이상은 차별받은 경험이 있었고, 차별을 한 경험은 10명 중 1명 가량이었다. 별 피해와 가해 경험은 시기별로 줄어들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나, 취약특성을 지닌 청소년의 차별 경험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특성을 지닌 청소년의 인권실태에 대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와 본 연구의 콜로키움(성소수자 청소년의 인권실태)과 면접조사(중첩된 취약성)를 연결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에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 제언으로 '소수자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 및 대책마련' 과제를 추가하였다.

둘째,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의 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은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은 사회참여에 대한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에 대한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 연구는 종합적으로 사회경제적 참여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 제언에 '아동·청소년문화·스포츠바우처(청소년문화패스) 도입'과제를 추가하였다.

셋째, 폭력 및 학대 영역의 결과를 보면, 가정 내 폭력 및 학대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가 2022년 약간 감소하고 있음. 부모, 대리양육자,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발생은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폭력 및 학대' 영역,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가정' 영역 제언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차등적 대응(DR) 강화' 과제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예방적 및 회복적 지원' 과제를 추가하였다.

넷째,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의 결과를 보면, 보호대상 아동은 아동 수의 감소와 함께 수년감 감소하고 있음. 보호유형은 가정위탁, 시설보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입양은 2.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입양 비율은 매우 줄어들고 있으나 국제적 기준에 비해 입양에 대한 조처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관련 법제에 대한 보완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영역의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우울, 불안, 외로움), 신체건강(과체중 및 비만) 악화 추세가 나타났으며,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운영의 지역 간 격차로 인한 건강 불평등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신체·정신적 변화 모니터링 및 개입에 개입하고, 지역의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설치 및 지정을 통한 아동·청소년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영역 제언으로 '코로나19 이후 신체·정신적 변화 모니터링 및 개입' 과제를 추가하고,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지역사회 환경' 영역 제언으로 '지역간 의료서비스 및 접근성 격차 해소' 과제를 추가하였다. 또한,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개인의 웰빙' 영역 제언으로 '사회적 고립(외로움)에 대한 대응' 과제를 추가하였다

여섯째,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의 결과를 보면,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시설 이용에 있어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아동·청소년들의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참여 및 활동에서의 소득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 제언으로 '아동·청소년문화·스포츠바우처(청소년문화패스) 도입' 과제를 추가하였다.

일곱째, 특별보호조치 영역의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여전히 부당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일자리가 코로나19 이후 줄어들었고, 시장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취약한 일자리 중심으로 부당경험 비율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일할 권리보장' 영역 제언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일 할 권리보장' 과제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영유아 사망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2023년 감사원에서 산부인과의 출생아 기록과 출생등록 기록을 비교하면서 출생등록이 누락된 영유아 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023년 10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중에 있으나, 그동안 출생등록에 허점이 있어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미흡했던 것이다. 이에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 제언으로 '보편적 출생 등록 시행 및 영유아 삶의 질 모니터링 시행' 과제를 추가하였다. 이는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영역'으로도 볼 수 있으나, 출생등록이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출발선이기 때문에 본 영역의 제언으로 추가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주요 내용, 시사점, 정책제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2-2. 인권지표연구 주요 내용·시사점·정책제언

주요 내용		시사점 및 제언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청소년들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나 아직 7명 중 1명 이상은 차별받은 경험이 있음. 차별을 한 경험은 10명 중 1명 가량이었음.	▶	• 차별 피해와 가해 경험은 시기별로 줄어들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나, 취약 특성을 지닌 청소년의 차별 경험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취약특성을 지닌 청소년의 인권 실태에 대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 제언으로 추가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은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은 사회참여에 대한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에 대한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음.	▶	• 아동·청소년의 사회경제적 활동 증진을 위하여 참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 제언으로 추가

주요 내용		시사점 및 제언
• **폭력 및 학대** – 가정 내 폭력 및 학대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가 2022년 약간 감소하고 있음. 부모, 대리양육자,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부분으로 나타남	▶	• 아동학대의 발생은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폭력 및 학대' 영역,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가정' 영역 제언으로 추가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보호대상 아동은 아동 수의 감소와 함께 수년간 감소하고 있음. 보호유형은 가정위탁, 시설보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입양은 2.8%로 매우 낮게 나타남.	▶	• 우리나라의 입양비율은 매우 줄어들고 있으나 국제적 기준에 비해 입양에 대한 조처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관련 법제에 대한 보완 필요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 제언으로 추가
•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우울, 불안, 외로움), 신체건강(과체중 및 비만) 악화 추세가 나타남 –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운영의 지역 간 격차로 인한 건강 불평등 우려 발생	▶	• 코로나19 이후 신체·정신적 변화 모니터링 및 개입 • 지역의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설치 및 지정을 통한 아동·청소년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영역 제언으로 추가,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지역사회 환경' 영역 제언으로 추가,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개인의 웰빙' 영역 제언으로 추가
•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시설 이용에 있어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관찰됨.	▶	• 아동·청소년들의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참여 및 활동에서의 소득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 제언으로 추가
• **특별보호조치**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여전히 부당한 경험을 하고 있음	▶	• 청소년들의 일자리가 코로나19 이후 줄어들었고, 시장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취약한 일자리 중심으로 부당경험 비율이 지속되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일할 권리보장' 영역 제언으로 추가

3) 심층분석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세 가지 심층분석을 진행하였다. 하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 행복에 대한 시계열적 추이 분석이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인권지표의 상승에도 개인의 주관적 측면의 지표들은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후 정체 혹은 악화가 되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악화되는 등 행복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상대적 격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사회환경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다면 행복도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 불평등과 격차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개인의 웰빙' 영역 제언으로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 과제를 추가하였다.

둘째,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에 대한 분석은 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청년들에 대한 회고조사로 진행된 이 면접조사에서 당사자들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의 경험을 이야기하였고, 큰 도움 없이 지나온 세월들에서 취약성은 다른 취약성을 가지고 오기도 하는 등 누적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동·청소년기부터의 누적된 취약성의 중첩이 나타나고, 인권 미보장은 취약성을 더 크게 노출시켜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 상태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CEs)에 대한 예방적 지원 및 회복 지원이 필요하고, 아동·청소년기부터 성인 이행기까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발선 보장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폭력 및 학대' 영역,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가정' 영역 제언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차등적 대응(DR) 강화' 과제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예방적 및 회복적 지원' 과제를 추가하였다.

셋째,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 사각지대에 대한 분석은 정책분석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에는 당사자를 배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기제가 지속되고 있어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발전이 더딘 상황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근로자성 인정 관련 법적 근거 미비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부처간 중복이 되고 있으나 책임은 분산적이며, 적극적인 노동인권 보장에 대한 노력은 미흡한 특징이 있다. 새로운 노동형태의 등장에 따른 아동·청소년 노동권 보호 현실화 필요가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특별보호조치' 영역 제언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장 및 일 할 권리보장' 과제를 추가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주요 내용, 시사점, 정책제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2-3. 심층분석 주요 내용·시사점·정책제언

주요 내용		시사점 및 제언
• **인권보장과 행복에 대한 시계열 추이** – 지난 10년 간 인권지표의 상승에도 개인의 주관적 측면의 지표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①근본적인 개선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②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코로나19 이후 정체 혹은 악화). ③ 행복도 격차의 지속도 해결해야 할 과제임	▶	• 개인의 인권보장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 필요 •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검토 필요 • 아동·청소년기 행복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 필요 ➡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개인의 웰빙' 영역 제언으로 추가
•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 – 아동·청소년기부터의 누적된 취약성의 중첩이 나타남 – 인권 미보장은 취약성을 더 크게 노출시켜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 상태에 놓이게 할 수 있음	▶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CEs)에 대한 예방적 지원 및 회복 지원 • 아동·청소년기부터 성인 이행기까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발선 보장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폭력 및 학대' 영역 제언으로 추가 ➡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가정' 영역 제언으로 추가
•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 사각지대** – 근로자성 인정 관련 법적 근거 미비 및 사각지대 발생 – 부처간 중복이 되고 있으나 책임은 분산적이며, 적극적으로 노동인권 보장에 대한 노력은 미흡 – 새로운 노동형태의 등장에 따른 아동·청소년 노동권 보호 현실화 필요	▶	• 청소년 노동보호에 대한 다부처 기구의 설립 • 기존의 위험과 새로운 노동형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쿠건법 등 신규 법제 도입(향후 대중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유튜버, 공연예술, 체육인으로 확대)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특별보호조치' 영역 제언으로 추가

4) 그 외 전문가 자문 및 콜로키움 개최 등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5회에 걸쳐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 중 디지털 환경과 아동·청소년의 권리 및 청소년 노동권 보장은 앞선 문헌연구에서 다루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3개의 콜로키움의 내용과 시사점, 제언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지표의 동향 연구에서는 국제 비교 연구에서 한국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웰빙의 낮은 주관적 웰빙 현황과 경제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공부에 대한 압력과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간의 상쇄관계(trade-off)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Rudolf, R., & Bethmann, D., 2023). 국제적 수준과 개별국가 수준에서 행복수준에 사회문화경제적 저해요인에 대한 연구와 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표 Ⅵ-2-4. 그 외 전문가 자문 및 콜로키움 개최 등 연구과정의 주요내용·시사점·정책제언

주요 내용		시사점 및 제언
• **아동·청소년 주관적 웰빙 지표 연구 동향 및 함의 콜로키움** – SWB measurement results and implications of Children's Worlds – The Paradox of Wealthy Nations' Low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	• 국제적 시각에서 한국 아동·청소년의 행복수준은 낮게 지속되고 있음 • 한국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선진국은 높은 경쟁과 학업부담으로 행복이 오히려 낮아지는 역설이 발생함 • 행복수준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회문화경제적 저해요인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지속 필요 ➡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 제언으로 추가
• **성소수자 청소년의 현황 및 국가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에서의 성소수자 정체성 측정 필요성 콜로키움** – 성소수자 청소년의 다중적 인권침해 및 낮은 삶의 질 위험 – 국내 성소수자 청소년 측정 연구의 어려움과 증거기반 연구의 필요성 –	▶	• 미국, 캐나다, OECD 등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삶의 질 파악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성소수자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증거기반의 연구를 시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 제언으로 추가
• **기후변화와 아동권리 콜로키움 (UNCRC 일반논평 26호의 의미와 적용)** – 현재의 아동·청소년과 미래세대의 환경권 논의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침해와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필요	▶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변화가 필요함 • 기후위기 대응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중심적 기술환경 영향평가 등 시행 필요함 ➡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생태적 환경' 영역 제언으로 추가

다음으로 성소수자 청소년의 현황 및 국가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에서의 성소수자 정체성 측정 필요성 콜로키움에서는 미국, 캐나다에서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삶의 질 파악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연구가 시행되지 않는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도 성소수자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증거기반의 연구를 시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아동권리 콜로키움(UNCRC 일반논평 26호의 의미와 적용)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며, 실제 어떠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후위기 대응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중심적 기술환경 영향평가 등의 시행 필요하며 아동·청소년이 정부의 기후변화 위원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본 보고서에서 다루었던 주요 내용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체계적인 세부정책 도출을 위한 정책의 비전, 원칙, 정책영역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한다.

3.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

1) 정책의 비전, 원칙 도출

이 연구에서는 정책제언을 위한 비전을 개인의 상태와 사회의 상태, 그리고 변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동·청소년', '권리를 보장해주고 긍정적 성장을 지원해주는 사회'로 설정하였다.



* 출처: 저자작성

그림 Ⅵ-3-1. 본 과제의 비전과 원칙

협약의 원칙을 살리고자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협약 2조), 비차별 원칙(협약 3조), 생존 발달 원칙(협약 6조), 아동의견 존중 원칙(협약 12조)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다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적인 아동·청소년 권리를 포괄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정책 프레임을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클러스터 중심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환경 중심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비전, 원칙, 정책영역별 세부과제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 및 세부과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 및 세부과제
영역 Ⅰ-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 Ⅰ-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과제 Ⅰ-1. 소수자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과제 Ⅱ-1.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
영역 Ⅰ-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 Ⅱ-2. 가정
과제 Ⅰ-2. 보편적 출생등록 시행 및 위기 영유아 가구 지원	과제 Ⅱ-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예방적 및 회복적 지원
영역 Ⅰ-3. 폭력 및 학대	영역 Ⅱ-3. 학교
과제 Ⅰ-3. 아동학대에 대한 차등적 대응(DR) 강화	과제 Ⅱ-3. 학교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폭력 예방 및 회복적 지원
영역 Ⅰ-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 Ⅱ-4. 지역사회 환경
과제 Ⅰ-4.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	과제 Ⅱ-4. 지역 간 의료서비스 및 접근성 격차 해소
영역 Ⅰ-5. 장애·기초 보건과 복지	영역 Ⅱ-5. 사회문화적·디지털 환경
과제 Ⅴ-5. 코로나19이후 신체·정신적 변화 모니터링 및 개입	과제 Ⅱ-5. 디지털 환경 아동권리 감독·조정 거버넌스 구축
영역 Ⅰ-6.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 Ⅱ-6. 생태적 환경
과제 Ⅰ-6. 아동·청소년 문화·스포츠 바우처(청소년문화패스) 도입	과제 Ⅱ-6. 기후변화 관련 교육 및 활동 개발
영역 Ⅰ-7. 특별보호조치	
과제 Ⅰ-7.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일할 권리 보장	

* 출처: 저자작성

그림 Ⅵ-3-2. 본 과제의 비전, 원칙, 세부과제

2) 세부정책과제 도출

지금까지 문헌연구, 지표연구,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및 콜로키움을 통해 도출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연구진은 이 정책과제를 두 가지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하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클러스터 중심 정리,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의 정리이다.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클러스터 중심 정리는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 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로 구분되어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리는 개인의 웰빙,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 디지털 환경 및 사회문화적 환경, 생태적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정리는 장단점이 분명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리는 전반적인 내용을 조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요 내용들이 나열적으로 구성되는 단점이 있다.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리는 인권과 삶의 질을 중심에 놓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클러스터 안의 내용과 중복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올해 연구에서는 두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두 방식을 활용한 정책제언 정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클러스터 중심의 7가지 영역에서 영역당 1개 세부과제로 7개 과제를 선정하고,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리는 6가지 영역에서 영역당 1개의 세부과제로 6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총 13개의 세부 정책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진은 세부정책과제와 도출 근거를 함께 표기하여 연구내용과의 연관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클러스터 중심의 세부과제는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은 '소수자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과제로 문헌검토, 전문가 자문 및 포럼, CRC최종견해를 통해 도출되었다.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은 '보편적 출생등록 시행 및 영유아 삶의 질 모니터링 시행' 과제로 이행모니터링과 CRC최종견해를 통해 도출되었다, 폭력 및 학대 영역은 '아동학대에 대한 차등적 대응(DR) 강화' 과제로 문헌검토, 이행모니터링, CRC최종견해를 통해 도출되었다,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 과제로 문헌검토, CRC최종견해를 통해 도출되었다, 장애·기초 보건 및 복지 영역은 '코로나19이

후 신체·정신적 변화 모니터링 및 개입' 과제로 이행모니터링과 심층연구를 통해 도출되었다,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은 '아동·청소년 문화스포츠 바우처(청소년문화패스) 도입' 과제로 이행 모니터링과 CRC최종견해를 통해 도출되었다. 특별보호조치 영역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일할 권리보장' 과제로 심층연구와 CRC최종견해를 통해 도출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3-1. 세부 정책 과제-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

정책과제명	도출근거				
	문헌 검토	이행 모니터링	심층 연구	전문가 자문 및 포럼	CRC 최종 견해
영역 Ⅰ-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과제 Ⅰ-1. 소수자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			●	●
영역 Ⅰ-2. 시민적 권리와 자유					
과제 Ⅰ-2. 보편적 출생등록 시행 및 위기 영유아 가구 지원		●			●
영역 Ⅰ-3. 폭력 및 학대					
과제 Ⅰ-3. 아동학대에 대한 차등적 대응(DR) 강화	●	●			●
영역 Ⅰ-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과제 Ⅰ-4.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	●				●
영역 Ⅰ-5. 장애·기초 보건과 복지					
과제 Ⅴ-5. 코로나19이후 신체·정신적 변화 모니터링 및 개입		●	●		
영역 Ⅰ-6.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 Ⅰ-6. 아동·청소년 문화스포츠 바우처(청소년문화패스) 도입		●			●
영역 Ⅰ-7. 특별보호조치					
과제 Ⅰ-7.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일할 권리보장			●		●

둘째,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의 정리는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의 웰빙 영역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 과제로 심층연구와 전문가 자문 및 포럼을 통해 도출되었다. 가정 영역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예방적 및 회복적 지원'

과제로 심층연구와 CRC최종견해를 통해 도출되었다. 학교 영역은 '학교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폭력 예방 및 회복적 지원' 과제로 문헌검토, 이행모니터링, CRC최종견해로 도출되었다. 지역사회 환경 영역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접근성 격차 해소' 과제로 이행모니터링, CRC최종견해를 통해 도출되었다. 사회문화적·디지털 환경 영역은 '디지털 환경 아동권리 감독·조정 거버넌스 구축'과제로 문헌검토, 전문가 자문 및 포럼을 통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생태적 환경 영역은 '기후변화 관련 교육 및 활동 개발'과제로 문헌검토와 전문가 자문 및 포럼을 통해 도출되었다.

표 Ⅵ-3-2. 세부 정책 과제-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

정책과제명	도출근거				
	문헌 검토	이행 모니터링	심층 연구	전문가 자문 및 포럼	CRC 최종 견해
영역 Ⅱ-1. 개인의 웰빙					
과제 Ⅱ-1.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			●	●	
영역 Ⅱ-2. 가정					
과제 Ⅱ-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예방적 및 회복적 지원			●		●
영역 Ⅱ-3. 학교					
과제 Ⅱ-3. 학교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폭력 예방 및 회복적 지원	●	●			●
영역 Ⅱ-4. 지역사회 환경					
과제 Ⅱ-4. 지역 간 의료서비스 및 접근성 격차 해소		●			●
영역 Ⅱ-5. 사회문화적·디지털 환경					
과제 Ⅱ-5. 디지털 환경 아동권리 감독·조정 거버넌스 구축	●			●	
영역 Ⅱ-6. 생태적 환경					
과제 Ⅱ-6. 기후변화 관련 교육 및 활동 개발	●			●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정책영역별 세부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3) 정책영역별 세부 정책과제

Ⅰ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별 정책제언은 7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49] 각 세부 과제들의 추진 일정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었을 때의 추진전략, 관련부처, 신규여부를 표기하였다. 추진일정은 해당 과제의 시급성과 용이성을 나타낸다. 법제도와 관련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할 경우 단기, 장기 사업으로 기재하였다.

표 Ⅵ-3-3.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

정책과제명	추진일정	관련 부처	신규 여부
영역 Ⅰ-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과제 Ⅰ-1. 소수자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중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신규
영역 Ⅰ-2. 시민적 권리와 자유			
과제 Ⅰ-2. 보편적 출생등록 시행 및 위기 영유아 가구 지원	단기, 중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신규
영역 Ⅰ-3. 폭력 및 학대			
과제 Ⅰ-3. 아동학대에 대한 차등적 대응(DR) 강화	단기, 중기	보건복지부	기존
영역 Ⅰ-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과제 Ⅰ-4.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	단기	국회, 보건복지부	신규
영역 Ⅰ-5. 장애·기초 보건과 복지			
과제 Ⅴ-5. 코로나19이후 신체·정신적 변화 모니터링 및 개입	단기, 중기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신규
영역 Ⅰ-6.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 Ⅰ-6. 아동·청소년 문화스포츠 바우처(청소년문화패스) 도입	단기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신규
영역 Ⅰ-7. 특별보호조치			
과제 Ⅰ-7.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일할 권리보장	단기, 중기	고용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신규

49)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연령에 맞추어 아동권리협약의 적용을 만18세 미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국가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존중하고 있어 실제 만18세가 되어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괄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과제 Ⅰ-1 소수자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차 권고문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18세 미만 전체 아동에 관한 항목별 통계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수집된 통계를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수립, 이행점검, 평가에 사용하려는 노력을 지속" 하도록 권고하였음.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삶의 질 지표 체계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일부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일례로 캐나다는 아동·청소년 중 성소수자 청소년(LGBT)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OECD에서도 성소수자 청소년 파악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임.

※ 2019년에 시행된 캐나다의 아동·청소년 건강조사(Canadian Health Survey on Children and Youth, CHSCY)는 12-17세 청소년에게 성별(sex)뿐만 아니라 성적끌림(sexual attraction)과 성정체성(gender identity)에 대해 측정하였음(Wang, C. et al., 2023).

표 Ⅵ-3-4. 캐나다의 2019 아동·청소년 건강조사(CHSCY) 설문 문항(15~17세)

구분	문항
성별 (sex)	Q: 태어날 때의 성별은 무엇이었나요? 성별이란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을 말합니다(What was your sex at birth? Sex refers to sex assigned at birth). R: 남성(male), 여성(female)
성정체성 (gender identity)	Q: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성별이란 태어날 때 지정되어 법적 문서에 표기된 성별과 다를 수 있습니다. (Gender refers to current gender which may be different from sex assigned at birth and may be different from what is indicated on legal documents. What is your gender?) R: 남성(male), 여성(female),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please specify)
성적 끌림 (sexual attraction)	Q: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성적 끌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떤 것이 당신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People are different in their sexual attraction to other people. Which best describes your feelings?) R: 남성에게만 끌림(only attracted to males); 주로 남성에게 끌림(mostly attracted to males);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같이 끌림(equally attracted to females and males); 주로 여성에게 끌림(mostly attracted to females); 여성에게만 끌림(only attracted to females); 확실치 않음(not sure)

* 출처: Wang, C., Butler, G., Wong, S. L., Steensma, C., Jackson, B., Betancourt, M. T., & Roberts, K. C. (2023). Gender identity and sexual attraction among Canadian youth: findings from the 2019 Canadian Health Survey on Children and Youth. Health Promotion and Chronic Disease Prevention in Canada: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43(6), 299.
*비고: 구체적 설문 문항 캐나다 통계청 Statistics Canada의 Canadian Health Survey on Children and Youth - 2019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일부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일상에서의 삶의 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학업중단 및 탈가정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음(정용림 외, 2021). 또한 성인 이행기 자립 과정에서 좌절하여 자살시도를 하는 등 온전한 성인으로의 발달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소수자 청소년(LGBT)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전무했으며, 이들을 삶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승인통계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과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 청소년(LGBT)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세부내용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들의 인권과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시행

○ 국가대표성 있는 설문 조사에서 성소수자 정체성 측정(이호림 외, 2022)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들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심층분석

표 Ⅵ-3-5. 한국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측정 문항(안)

구분		문항
성적지향	성정체성	Q. 다음 주 귀하의 성적지향을 가장 잘 표현하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① 이성애자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아님), ② 동성애자, ③ 양성애자,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_____)
	성적 끌림	Q. 귀하는 누구에게 성적으로 끌림을 느낍니까? ① 남성에게만, ② 주로 남성에게, ③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④ 주로 여성에게, ⑤ 여성에게만, ⑥ 잘 모르겠다
성별정체성	성별정체성	Q. 귀하의 성별정체성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③ 트렌스젠더, ③ 남성, 여성, 트렌스젠더로 규정할 수 없음

* 출처: 이호림, 이혜민, 주승섭, 김란영, 엄윤정, 김승섭(2022). 국가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에서의 성소수자 정체성 측정 필요성: 국내외 현황 검토와 측정 문항 제안. 비판사회정책 제74호. pp.175-208.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법적으로 국가대표성 있는 통계에서 성소수자 측정을 가로막는 조항을 발견할 수 없어 사회문화적 논란을 우려하여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성소수자 측정을 가로 막는 조항이 없더라도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성소수자 청소년의 현황 파악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아동종합실태조사 주무부처), 여성가족부(청소년종합실태조사 주무 부처), 통계청(통계승인기관)

표 VI-3-6. 소수자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과제의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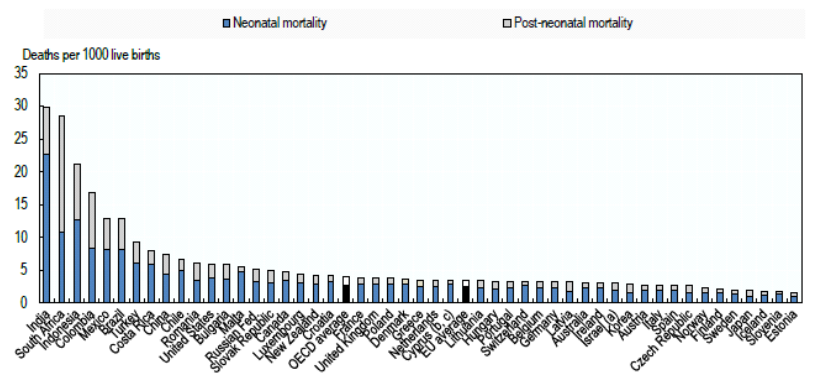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4-'25)	중기('26-'29)	장기('30-'35)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신규

과제 Ⅰ-2 보편적 출생등록 시행 및 위기 영유아 가구 지원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출생 미등록 아동의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그동안 우리나라는 영아사망률이 매우 낮은 나라로 OECD 국가들 내에서도 매우 우수한 영유아 성과를 내는 국가로 알려져 있었음(OECD, 2020)

○ 그러나 출생등록 과정에서의 제도적 공백으로 영유아의 유기 및 사망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등록된 아동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출처: OECD(2020). OECD Family Database – CO1.1. Infant mortality.
https://www.oecd.org/els/family/CO_1_1_Infant_mortality.pdf 에서 2023년 10월 22일 인출

그림 Ⅵ-3-3. OECD 국가들의 영아 사망률(2018년 혹은 가장 최근 자료)

▢ 세부내용

○ 출생통보제 도입 및 위기출산 부모 지원

- 출생 미등록 제도의 개선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정책 변화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 출생통보제의 도입은 바람직하나 보호출산제의 도입은 협약 제7조는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갑작스러운 제도적 변화로 인해 위기출산의 위기에 놓이게 된 부모의 양육 지원을 위한 제도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허민숙, 2023).

표 Ⅵ-3-7.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출생등록 관련 최종견해(권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C. 시민권과 자유 (협약 7, 8, 13-17, 19, 37(a) 조) 출생신고 36. 위원회는 당사국의 현 법률 및 관습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물학적 부모가 보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데 있어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양부모나 정부당국요원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 미혼모 관련 상황을 포함, 적절한 사법감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입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 망명희망자, 또는 비정규 이주 상태의 사람에게는 출생신고가 사실상 또는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C. 시민권과 자유 (협약 제7, 8, 13-17조) 출생등록 22. 위원회는 온라인 출생신고 및 통보제도 도입을 환영한다.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6.9를 감안하여,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b)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미혼부가 그들의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 (c)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d)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검토

-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등록 부모의 자녀는 출생등록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아동기 필요한 사회보장정책 및 교육정책의 혜택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개선의 여지가 있음.
- 현재의 출생통보제는 이러한 아동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통해 아동권리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시도를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표 Ⅵ-3-8.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관련 최종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H. 특별보호조치 (협약 제22, 30, 32-33, 35-36, 37(b)-(d), 38, 39-40조)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43. 위원회는 2012년 「난민법」 제정을 환영한다. 국제이주 맥락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공동의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호와 제4호(2017) /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 및 제23호(2017)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c)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신청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정신적 신체적 보건의료, 건강보험,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여가, 학대 받은 경우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

○ 출생등록 지연 등 취약계층 부모 지원 및 영유아의 삶의 질 모니터링

- 출생등록 이후에는 해당 아동의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유아건강검진 이행을 모니터링 해야할 필요가 있음. 위기가구에서 나타나는 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위주의 접근보다는 예방과 지원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대응에서의 차등적 대응(differential response) 전략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복지법」 개정

- 출산을 고민하는 산모 대상 상담 및 지원 근거 마련 및 관련 서비스 체계도입
-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실시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근거 마련

※ 2023년 감사원-보건복지부의 출생등록에 관한 조사에서 출생 미등록 및 지연으로 뒤늦게 발굴된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모니터링 시행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표 Ⅵ-3-9. 보편적 출생등록 시행 및 위기 영유아 가구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4-'25)	중기('26-'29)	장기('30-'35)		
●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신규

과제 Ⅰ-3 아동학대에 대한 차등적 대응(DR) 강화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법제 및 시스템을 체계화 해왔으나, 여전히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예방과 지원 중심의 접근을 포괄하는 차등적 대응(differential response)으로의 전환과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에서의 차등적 대응(DR)이란 아동학대 신고에 다양한 경로를 확립하는 접근으로 대안적 접근, 가족 사정 대응, 다중 대응 등으로도 불림. 미국의 주마다 아동보호정책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아동학대 위험 가족에 대해 접근하는 것임. 기존의 아동학대 접근방식에 대안적 접근방식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위험도가 낮은 가족은 처벌보다는 지원과 예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심각한 아동학대에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대응하는 것임.[50]

※아동보호서비스의 아동학대 가족에 대한 대응은 처벌 중심과 지원 중심 국가군으로 구분이 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각 국가의 정책이 처벌과 지원 정책이 통합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Gilbert, Parton, Skivenes, 2011). 우리나라 역시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예방과 지원 중심의 접근으로 차등화 필요.

○ 우리나라에서 차등적 대응(DR)은 미진한 상황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제2차, 제3·4차, 제5·6차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회복, 재활, 예방 차원의 접근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실현 가능함.

50) 자세한 내용은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childwelfare.gov) 웹페이지를 참고: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홈페이지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responding/alternative/ 에서 2023년 10월 25일 인출.

표 Ⅵ-3-10.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학대 대응 관련 권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협약 5조, 18조 1,2항, 19-21조, 25조, 27조 4항, 39조)

아동학대와 방임

44. 위원회는 아동학대와 방임사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각지에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아동학대사건 진정을 효과적으로 접수하고 대처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가 없는 점을 우려한다.

45.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a) 신고된 아동학대·방임사건을 접수, 감독,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에게 친근한 방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국가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법령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와 관련 경찰 등 사법집행인원, 사회복지사, 검사들에 대한 훈련 실시

b) 개입이나 처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의 희생자와 가해자 모두를 도울 수 있고 모든 희생자들에게 회복과 재활을 위한 상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국적인 대응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센터 설립 노력 강화

c) 학대·방임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대·방임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성별, 연령별 통계수집체계 마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C. 시민권과 자유 (협약 7, 8, 13-17, 19, 37(a) 조)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44. 위원회는 당사국 내 육체적, 정신적 아동학대 및 방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제한적으로 정의되었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내 괴롭힘의 빈도와 정도가 증가해왔다는 것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을 환영하나, 그 수가 제한적이며 재원과 인력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의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45.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자의 신원 및 안전을 고려하는 적절한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교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 아동학대 및 방임을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하라.

b) 지역 시설을 포함, 더 많은 보호기관을 설립하고,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을 제공하는 등 이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하라.

c)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2011)를 고려하라.

46. 유엔사무총장의 아동폭력보고서(A/61/299)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독려한다.

a)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의 이행을 비롯, 성별에 특히 유념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를 우선시하라.

b) 특히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강조한 다음의 사항을 비롯하여,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다음 정기 보고서에 포함하라.

(i)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의 개발

(ii)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의 도입

(iii) 자료 수집, 분석, 보급 체계 통합 및 아동폭력관련 연구의제 통합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D. 아동에 대한 폭력 (협약 제19, 24(3), 28(2), 34, 37(a), 39조)

체벌을 포함한 폭력

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수 증가, 심리치료사 전문인력 증원은 환영하지만,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한다.

(a) 온라인 폭력 및 학교폭력을 포함한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

(b) 가정 내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 부재로 인한 높은 재학대 발생률

(c)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이라는 점

(d) 아동학대의 과소보고

(e) 아동학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
(f)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 및 전략의 부재
(g)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심리학자, 변호사의 부족
(h) 학대 피해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지원 부족

27.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3호(2011), 신체적 체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8호(2006),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 종식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6.2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할 것
(b)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 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d)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교내 비폭력 의사소통 및 갈등중재를 증진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양육 형태를 촉진할 것, 폭력과 학대신고를 장려할 것
(e)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것, 신고 지침을 수립할 것,
(f)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
(g)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
(h)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

▢ 세부내용

○ 차등적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전달체계 개편(인력강화)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위기도가 낮은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예방적 지원, 모니터링 수행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위기가구 예방적 지원)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표 Ⅵ-3-11. 아동학대에 대한 차등적 대응(DR) 강화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4-'25)	중기('26-'29)	장기('30-'35)		
●	●		보건복지부	기존

과제 Ⅰ-4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제2차, 제3·4차, 제5·6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문(최종견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비준을 요청하였음.

표 Ⅵ-3-1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헤이그 협약 비준 관련 권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협약 5조, 18조 1,2항, 19-21조, 25조, 27조 4항, 39조) 입양 42. 위원회는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문화전통이 압도적이서 국내입양이 당국의 허가나 개입 없이 주선될 수 있으며, 입양 주선에 있어서 해당 아동의 의사나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반드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해외입양이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지난번 권고의견에서와 같이 당사국이 국가간 입양에 관한 1993년 헤이그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D. 가정환경과 대안돌봄(협약 5, 18(1-2), 9-11, 19-21, 25, 27(4) 및 39조) 입양 49. 위원회는 발효되면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도록 한 당사국의 입양특례법 및 민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본안이 발효되기 전 과도기간의 아동입양의 경우에 대해 염려하며, 다음의 사항에 여전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 e) 당사국이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에 여전히 가입하지 않고 있음 50. 위원회는 아동특례법이 발효되기 전 입양의 경우에도 충분하고 동일한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자국의 해외입양제도가 특히 21조를 포함한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합치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해외입양 제도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촉구한다. e)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 비준을 고려하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E.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협약 제5, 9-11, 18(1) 및 18(2), 20-21, 25, 27(4)조) 입양 33. 법원허가제 도입을 포함하여 입양을 규제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다음의 권고를 다시 한 번 당사국에 반복한다. (f)"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비준을 고려하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것

○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2025년 헤이그 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이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책무성을 가지고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부내용

○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비준[51)]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국회비준 (2013년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의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 해당 법률안은 21대(2020~2024) 국회에서 김미애 의원안과 남인순 의원안 등 2개 안이 입안되었으나 모두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음.[52)]

표 VI-3-13.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의원 입안 내용 비교

김미애 의원안 (의안번호 2115361)	남인순 의원안 (의안번호 2113454)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국회의 비준동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국내입양 절차와는 다른 국제입양 별도의 절차를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맞는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국회의 비준동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맞는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51) 헤이그 협약 전문은 The HCCH(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홈페이지 참조: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full-text/?cid=69

52)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에서 2023년 10월 25일 인출.

김미애 의원안 (의안번호 2115361)	남인순 의원안 (의안번호 2113454)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아동이 입양의 결과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되거나 양자 및 양부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제입양은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복리증진 측면에서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위탁하는 것 보다 우선되어야 함(안 제3조).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입양 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숙식,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 중 일부를 국제입양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국제입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안 제31조). 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입양동의 등에 관한 상담, 입양 신청, 아동의 인도, 양부모 될 사람에 대한 조사, 입양 후 사후관리, 사후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국제입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42조).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제입양"은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자가 입양하여 아동이 상거소를 외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외국으로의 입양과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이 입양하여 아동이 상거소를 국내로 이동하게 되는 국내로의 입양으로 구분됨(안 제2조). 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그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국제입양과 관련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한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및 제4조). 라. 협약에 따른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안 제5조). 마. 외국으로의 입양 시 양부모가 될 사람은 수령국 중앙당국등에 입양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령국 중앙당국등은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외국으로의 입양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국 중앙당국등에 송부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국내로의 입양 시 양부모가 될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함(안 제12조). 아. 국내로의 입양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함(안 제13조). 자.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 및 확인하고,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16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관련부처 및 기관

○ 국회, 보건복지부

표 VI-3-14.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4-'25)	중기('26-'29)	장기('30-'35)		
●			국회, 보건복지부	신규

과제 Ⅰ-5 코로나19 이후 신체·정신적 변화 모니터링 및 개입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지표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것이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인지 특정 위기·취약 대상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함.

○ 이 연구의 기초 보건 및 복지 관련 지표 분석 결과 비만율의 상승, 우울 등 정신건강의 변화 등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정신적 측면에서는 2020년 이래로 자살생각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며, 외로움과 불안함의 증가 역시 함께 나타나고 있음. 10만명 당 자살률 역시 2018년 5.8명에서 2022년 7.2명으로 증가하였음.
- 신체적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전후로 정상체중의 비율은 줄고 과체중과 비만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증가가 더 두드러짐.

○ 아동·청소년들의 코로나19 기간 동안 과체중, 비만의 증가는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한 공통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운동 및 야외활동의 감소가 나타나고 영양 불균형이 일어난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음 (Bhattacharya et al., 2021; CDC, 2022). 이는 아동·청소년 발달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세부내용

○ 해외에서도 세대적 영향에 관한 연구(Generation COVID, lost generation 등)가 진행된 바 있으므로 코로나19와 아동 삶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실태파악 및 근거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 학교 및 지역사회 상담 서비스 강화

- 코로나19가 세대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정신건강 서비스의 전문화 및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학교의 위클래스, 지역사회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서비스 전문화 필요 및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과체중 및 비만 감소를 위한 방안: 학교 및 지역사회 체육·문화 활동 활성화

- 과체중 및 비만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도입
- 과체중 및 비만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도입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 개정 혹은 상위법 개정을 통해 위클래스 설치율 및 전문상담인력 배치율 제고

- 2022년 4월 기준 위클래스는 8,619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전국 초중고의 약 73% 가량 설치된 것으로 추정됨[53].
- 현재 위클래스의 전문상담인력 배치율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위클래스의 설치뿐만 아니라 전문상담인력의 배치율 편차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관련부처 및 기관

○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표 Ⅵ-3-15. 코로나19 이후 신체·정신적 변화 모니터링 및 개입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4-'25)	중기('26-'29)	장기('30-'35)		
●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신규

53) 위클래스의 개소수는 위클래스 홈페이지(https://www.wee.go.kr/)의 기관현황을 참고하였고, 학교 수는 교육부(2023.8.30a.)의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의 2022년 초(6,163), 중(3,258), 고(2,373) 개수를 활용하였음.

과제 Ⅰ-6 아동·청소년 문화스포츠 바우처(청소년문화패스) 도입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높은 학업스트레스와 부족한 여가·휴식 시간으로 자신의 삶을 즐길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음. 이는 낮은 삶의 만족도로 나타나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대한민국 정부에 아동·청소년들의 여가 및 문화활동을 증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

표 Ⅵ-3-16.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여가 및 문화활동 관련 권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F.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협약 28, 29, 31조) 62. 위원회는 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려는 당사국의 노력과 아동이 놀이, 오락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교육제도 내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과과정 외의 추가적인 사교육이 일반적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염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사교육비로 인해 심화되고 있고, 사교육이 여가와 문화활동에 대한 아동 권리의 충분한 실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괴롭힘, 특히 외국 출신 아이들에 대한 괴롭힘의 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것과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휴대폰과 인터넷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63.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c) 협약 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G.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 (협약 제28, 29, 30, 31조) 42.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서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4.5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교육과정 다양화,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진로상담 강화 등을 포함하여 경쟁 완화라는 목표 하에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2001)에 부합하게 공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j)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 이러한 시설은 안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포함하여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금연구역이며, 연령에 적합한 시설일 것

○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으

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하며,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54]

○ 곡성군은 ‘청소년 문화바우처카드’를 관내 만13~18세 청소년에게 연20만원 지급하고 있음. 서울시는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을 시행하여 19세~22세의 초기 청년들(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등의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역량 고취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화바우처 사업을 청소년에게 확대하여 여가 및 문화생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꾀할 필요가 있음.

▢ 세부내용

○ (1안) 문화누리카드의 소득계층 확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청소년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 ➡ 단,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지급

○ (2안) 청소년문화패스 사업 시행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문화예술진흥법」, 「청소년기본법」 개정

※추진근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관련부처 및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표 Ⅵ-3-17. 아동·청소년 문화스포츠 바우처 도입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4-'25)	중기('26-'29)	장기('30-'35)		
●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신규

54)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홈페이지(mnuri.kr)의 ‘문화누리카드’ 페이지 참조

과제 Ⅰ-7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일할 권리보장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현행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성' 요건을 통과한 소수의 노동자에게만 작용하고 있어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은 취약한 상황임.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제3·4차, 제5·6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문(최종견해)를 통해 아동·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입법 보완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권고

표 Ⅵ-3-18.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관련 권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G.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8, 39, 40, 37(b)-(d) 및 32-36조)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70. 위원회는 아동착취방지를 위한 2005년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 수립을 환영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 우려한다. a) 근로아동의 수 증가 b) 아동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이 15세가 넘는 아동을 야간 근무시키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주는 등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관련 기준조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 c)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게시간과 같은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 불충분 d) 노동 감독 불충분 e) 만연한 언어적, 성적 학대 및 폭력 발생으로 인한 근로아동 문제 악화 f) 연예인이나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의 수 증가 71.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b) 야간근무금지의 효과적인 시행과 최저임금 지급 등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하라. c)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 조항을 제정하라. d)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하라. e) 근무환경에서 폭력과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를 묻고 재활을 돕는 효과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H. 특별보호조치 (협약 제22, 30, 32-33, 35-36, 37(b)-(d), 38, 39-40조)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44. 위원회는 일하는 아동의 근로조건 개선 및 기업 감독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일하는 아동의 수가 여전히 많고, 그들의 노동권 침해 및 언어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그리고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가장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8.7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책무성과 사회복귀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점검과 보고를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아동·청소년 노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여전하고, 아동·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입법 미흡, 정부의 실태조사 범위와 내용의 한계, 근로감독 미흡과 부처별 사업 중복 및 이행 점검 체계 부족 등 미비한 점이 있음.

▢ 세부내용

○ 민간과 공공에서 청소년에게 안전한 일자리 제공 및 일 할 권리보장

① 천주교 주교회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일하는 학교' 프로그램

②청소년 대상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 프로그램 시행(Atkinson, 2013)

-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맞게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것. 노동시장에서는 쉽게 인정받지 못하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해 취약계층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일부 소득을 보전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노동보호에 대한 다부처 기구의 설립(고용부, 여가부, 교육부 등)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소년정책위원회 등에서 청소년노동 전문분과 설치 및 정책협의

○ 기존의 위험과 새로운 노동형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쿠건법 등 신규 법제 도입(향후 대중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유튜버, 공연예술, 체육인으로 확대) (Masterson, 2020)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대통령직속 청소년 노동권리 위원회 설치

○ 미국의 쿠건법(Coogan Act) 등 새로운 노동형태 보호를 위한 신규법제 도입

▢ 관련부처 및 기관

○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표 Ⅵ-3-19.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일할 권리보장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4-'25)	중기('26-'29)	장기('30-'35)		
●	●		고용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신규

II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은 6가지 구성되어 있다. 이 정책제언 프레임은 아동·청소년 개인의 상태와 미시, 중시, 거시적 환경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가 개입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과 마찬가지로 각 세부 과제들의 추진 일정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었을 때의 추진전략, 관련부처, 신규여부를 표기하였다. 추진일정은 해당 과제의 시급성과 용이성을 나타낸다. 법제도와 관련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할 경우 단기, 장기 사업으로 기재하였다.

표 VI-3-20.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

정책과제명	추진일정	관련 부처	신규 여부
영역 II-1. 개인의 웰빙			
과제 II-1.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	단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신규
영역 II-2. 가정			
과제 II-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예방적 및 회복적 지원	단기, 중기	보건복지부	신규
영역 II-3. 학교			
과제 II-3. 학교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폭력 예방 및 회복적 지원	단기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 교육청	신규
영역 II-4. 지역사회 환경			
과제 II-4. 지역 간 의료서비스 및 접근성 격차 해소	단기, 중기	보건복지부	신규
영역 II-5. 사회문화적·디지털 환경			
과제 II-5. 디지털 환경 아동권리 감독·조정 거버넌스 구축	단기,중기,장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신규
영역 II-6. 생태적 환경			
과제 II-6. 기후변화 관련 교육 및 활동 개발	단기,중기,장기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신규

과제 II-1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통계청 승인통계 최초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측정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청년기 및 성인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음.

- UCLA 외로움 척도(loneliness scale)의 일부 문항으로 측정한 사회적 고립도(외로움)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드물게 그렇다'+'가끔 그렇다'+'항상 그렇다'의 합산비율)고 느끼는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청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을 측정한 것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결과임. 예를 들어, 2021년 조사에서는 13%, 2022년 조사에서는 11% 가량으로 나타났음(유민상, 신동훈, 2021; 유민상, 신동훈, 박미희, 신영규, 2022). 향후 지속적 측정 및 조사를 통해 청소년기 외로움 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는 이유에 대해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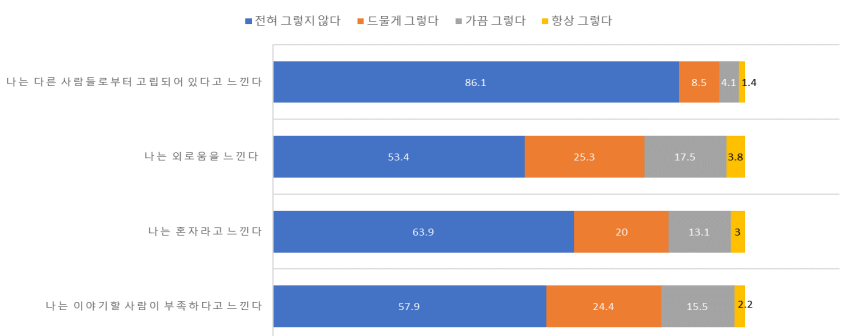


그림 VI-3-4. 사회적 고립감 4개 문항 결과(UCLA 외로움 척도)

○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기의 고립이 청년기와 성인기로 발전하여 고립·은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서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유민상, 서고운, 신동훈, 이지연, 2023; 유민상, 오수미, 2023).

▢ 세부내용

○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 학교 내 지원체계에서의 대응: 위클래스를 통한 지원
- 학교 밖 지원체계에서의 대응: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 지역사회에서의 대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지원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 지원 근거를 마련
- 단, 지원 대상,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전문적 지원인력, 지원인력 보수교육 등에 대해 법률 및 지침에 명시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고립감 완화와 건강한 성인기 이행을 위한 지원 등 명시

▢ 관련부처 및 기관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표 Ⅵ-3-21. 행복 저해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4-'25)	중기('26-'29)	장기('30-'35)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신규

과제 II-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예방적 및 회복적 지원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이 연구에서 진행한 면접조사를 통해 중첩된 취약성과 이를 안고 성장하는 일은 성인 이행기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V장 2절 심층연구).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청소년기 가정에서 가정폭력 목격, 아동학대 경험, 성학대 경험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성장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음을 이야기하였음.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생애경험(ACEs: adverse childhood experience)에 대한 장기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임.

○ 특정한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는 취약성이 단일하게 단기적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중첩되어 장기적으로 나타나며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취약성에 대한 단기적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회복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 가정폭력 목격 및 아동학대 경험이 있음에도 부모(법정대리인)의 회복치료 의사가 없으면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부정적 생애경험은 세대 간 전이될 수 있으므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본적 인권 존중이라는 규범이 작동하도록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음(Narayan, Lieberman, and Masten, 2021). 인권침해가 나타났을 경우 즉시적인 개입과 회복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의 개편이 필요함.

○ 또한 단기적으로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생애경험(ACEs: adverse childhood experience)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 생애경험(Counter-ACEs 혹은 PCEs: positive childhood experiences)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 필요(Crandall et al., 2019).

□ 세부내용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CEs) 예방 및 긍정적 생애경험(PCEs) 증진을 위한 부모 교육 강화

- 부적절한 양육방식의 세대 간 전이를 막기 위한 조치 필요

○ 가정 내 폭력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개입 조치 강화

- 아동학대에 대한 차등적 대응(differential response)을 통해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예방적 대응에서부터 사후적 대응 및 회복적 지원까지 체계화 필요(Kyte, Trocme, and Chamberland, 2013)

○ 가정 내 폭력 및 학대 경험 아동·청소년을 위한 회복적 조치 강화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개정을 통한 회복지원 근거 마련

※ 아동학대 및 방임이 있을 경우 관련 피해에 대한 회복지원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음. 단, 지자체장이나 학교장, 양육시설 및 학교 밖 기관 시설장의 동의하에 회복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개입 및 지원 근거 마련

○ 차등적 대응 시행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체계 개선(Track 1, Track2, Track 3) 및 아동학대(child abuse & neglect)를 포함한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양육(child maltreatment)이 있을 경우 차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표 Ⅵ-3-2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예방적 및 회복적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4-'25)	중기('26-'29)	장기('30-'35)		
●	●		보건복지부	신규

과제 II-3 학교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폭력 예방 및 회복적 지원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폭력의 장(field)은 가정, 학교, 동네, 그리고 디지털 환경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학교에서의 폭력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온라인에서의 괴롭힘(cyber bullying) 경험은 국내외에서 점차로 늘어나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표 VI-3-23.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학교 폭력 및 사이버 괴롭힘 관련 권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H. 특별보호조치 (협약 제22, 30, 32-33, 35-36, 37(b)-(d), 38, 39-40조) 교육 및 교육의 목표 41. 위원회는 선행학습 관행(예 : 진학을 위해 취학 전에 사교육을 받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약계층 아동의 입학 정원 확대, 자유학기제 도입, 학교 밖 아동 지원을 환영한다. 그러나 당사국 아동자살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학업부담, 이로 인한 수면부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과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i) 널리 퍼져있는 학교 내 집단 괴롭힘과 학업성적 등과 관련된 차별 42.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서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4.5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교육과정 다양화,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진로상담 강화 등을 포함하여 경쟁 완화라는 목표 하에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2001)에 부합하게 공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i)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하여 집단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할 것: 예방, 조기 발견 메커니즘, 아동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 중재 절차, 사례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통일된 지침

○ 이 연구의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교폭력과 괴롭힘 경험은 오랫동안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폭력에 대한 예방적 조처, 즉각적 개입뿐만 아니라 회복적 지원의 틀 내에서도 함께 고민이 필요함. 정책적으로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와 지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의 폭력 경험피해에 대한 사후적 조치는 학교의 위클래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등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함. 또한 6회

기~12회기 등 청소년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단기적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다년차 지원이 필요함.

▢ 세부내용

○ 학교폭력, 온라인 괴롭힘에 대한 예방적 조치, 회복적 조치의 도입

○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경험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 시행

※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바우처 도입 및 다년차 지원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학교폭력, 온라인 괴롭힘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보건체계의 재편

※ (가칭)『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위클래스를 통한 예방 및 개입-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한 단기 회복-정신건강지원센터 및 정신건강보건체계를 통한 전문적, 장기적 개입 방안 모색

○ 아동·청소년의 회복적 조치를 위한 접근성 강화 및 치료비 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의 마음건강바우처를 신설하고, 피해경험에 따라 청소년기관 및 민간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지원 실시

▢ 관련부처 및 기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 교육청

표 Ⅵ-3-24. 학교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폭력 예방 및 회복적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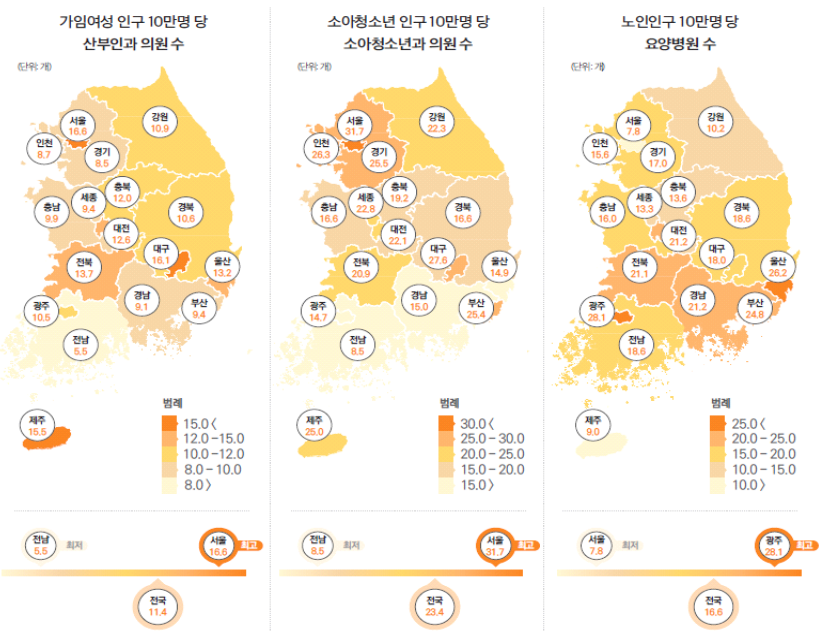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4-'25)	중기('26-'29)	장기('30-'35)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 교육청	신규

과제II-4 지역 간 의료서비스 및 접근성 격차 해소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정부는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 설치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적인 보상 방식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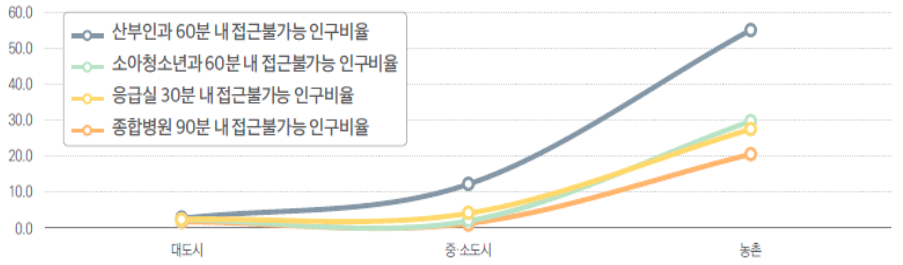
○ 하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어린이전문 의료기관 설치에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함. 아동·청소년의 의료 접근권 보장, 더 나아가 건강권 보장에서의 편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의 노력 필요



*출처: 하수정, 김은란, 이차희, 이종표, 심혜민(2022).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보육

그림 VI-3-5. 인구 10만명 당 생애주기별 의료자원 수(2021년)

○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생애주기별 의료자원 수에는 지역별로 비교적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 접근성 역시 큰 차이가 있어 공공의료 도입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하수정 외, 2022).



*출처: 하수정, 김은란, 이차희, 이종표, 심혜민(2022).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보육

그림 Ⅵ-3-6. 지역유형별 의료접근성(2020년)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제2차, 제3·4차, 제5·6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문(최종견해)를 통해 공공의료의 도입을 통한 의료접근성 격차 문제를 해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표 Ⅵ-3-25.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공공의료 및 의료격차 해소 관련 권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6. 기초보건과 복지(협약 6조, 18조 3항, 23조, 24조, 26조, 27조 1-3항) 48. 위원회는 [당사국의] 높은 수준의 아동 보건 수준을 평가하지만, 보건예산 비율이 1% 미만이며 90%의 보건의료기관이 민영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49.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보건예산을 증대하고 저소득층 가정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E.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조) 건강 및 보건 서비스 53.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건예산을 증액하고 건강보험 제공을 위해 특별예산을 배정한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또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의료수급자 지원사업, 공공 금연캠페인, 그리고 영유아 건강 검진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총예산 대비 보건예산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대형병원과 소규모 지역병원 간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의 가용성과 진료수준에 격차가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54. 위원회는 당사국에 보건예산을 상당수준 늘리고, 저소득 가정이 무상으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시설 체계를 구축하라는 과거 권고안(CRC/C/15/Add.197, para. 49(a))을 반복한다. 또한 전 지역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 지원을 늘리는 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B. 일반원칙 (협약 제2, 3, 6, 12조) 비차별 16. 위원회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조치를 환영하나,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안 채택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려한다. (a) 농어촌지역 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 아동, 이주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탈북 아동이 출생신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이용,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복지, 여가 및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체계 접근에 차별을 경험하는 것

▢ 세부내용

○ 지역별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설치

○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 아동 주치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공백상태로 되어 있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보건의료체계 구축 필요(배건이, 2020)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보건복지부「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023.3.3.)」의 확대 적용 및 적극적 실행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확대 적용 ⇨ 전체 건강영역으로 확대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표 Ⅵ-3-26. 지역 간 의료서비스 및 접근성 격차 해소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4-'25)	중기('26-'29)	장기('30-'35)		
●	●		보건복지부	신규

과제II-5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보장 감독·조정 거버넌스 구축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세계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의 보장은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21년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보장 관련 일반논평 25호를 발표하였음.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는 정부 부처, 플랫폼기업 등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특히 디지털 플랫폼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아동·청소년권리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지 않아 상호 조정을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임.

○ 정부부처, 디지털 플랫폼 기업,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관련 시민단체, 디지털 분야 연구자,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의 명확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수립, 권리보장을 위한 인식제고 활동 역시 병행되어야 함.

▢ 세부내용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디지털 관련 정책 또는 정책과제는 거의 전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범정부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 가정에서의 변화도 필요함.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이 지지와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인식 제고 전략의 마련도 필요함.

○ 아동·청소년 정책에 디지털 환경의 아동·청소년 권리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정책영향 평가 시행

- 디지털 관련 정책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 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의 현황 부분에서 제시한 아동 관련 계획에는 디지털 관련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해외사례)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5호의 작성 자문기관이기도 한 5Rights Foundation은 EU의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및 「일반데이터 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등 통상적으로 아동과 관련이 없거나 적다고 여겨지는 법과 규제를 아동 권리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음.

○ 디지털 환경과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종합적 연구 시행(횡단, 종단)

- 디지털 환경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성장 과정을 지속하여 추적하고, 아동의 생활 영역 전반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단발성의 파편화된 투자가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의 투자가 필요함

※ (해외사례) 유럽 집행위원회의 후원으로 추진되는 EU 키즈 온라인 프로젝트, 호주연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디지털 아동 우수연구센터(Centre of Excellence for the Digital Child) 사례 참고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정책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내 디지털 정책 영향평가 관련 사항 추가

▢ 관련부처 및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표 Ⅵ-3-27.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보장 감독·조정 거버넌스 구축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4-'25)	중기('26-'29)	장기('30-'35)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신규

과제 II-6 기후변화 관련 교육 및 활동 개발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23년 8월 22일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26호 기후변화에 중점을 둔 환경과 아동권리(General comment No. 26 on children's rights and the environment with a special focus on climate change)를 발표했음(CRC/C/GC/26).



* 출처: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홈페이지 "General comment No. 26 (2023) on children's rights and the environment with a special focus on climate change" https://www.ohchr.org/en/documents/general-comments-and-recommendations/general-comment-no-26-2023-childrens-rights-and 에서 2023년 10월 2일 인출.

그림 VI-3-7. 일반논평 26호 관련 아동·청소년 친화적 설명자료(UN인권조약기구)

○ 일반논평 제26호는 협약당사국은 기후변화와 관계된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아동의 권리를 고려해야 하며, 아동과 관련한 모든 결정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

▢ 세부내용

○ 기후변화와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연구 진행: 본 연구의 체계적 문헌리뷰에서 도출된 결과와 같이 기후변화와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연구가 많이 산출되지 않았음. 기후변화에서의 취약한 대상이 누구인지, 어떠한 사회정책적 고려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기후변화와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교육 진행: 최근 기후변화 관련 교육은 늘어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권리 차원에서의 교육의 진행은 미진함.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미래세대 당사자로서 국가에 적극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후변화와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활동 진행: 기후변화와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활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정부의 가칭 「기후변화와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위원회」 설치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등

▢ 관련부처 및 기관

○ 기획재정부,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표 Ⅵ-3-28. 기후변화 관련 교육 및 활동 개발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4-'25)	중기('26-'29)	장기('30-'35)		
●	●	●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신규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경래 (2020). 교정시설내의 유아양육제도의 개선방안. **少年保護硏究, 33**(1), 47-86.

강문식, 김성호, 노현정, 이수정, 임동헌, 조용화, 하인호 (2022).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마련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강현철 (2023).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표본설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2018 의료급여통계**.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2019 의료급여통계**.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2020 의료급여통계**.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2021 의료급여통계**.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2018~2021). **2018~2021 경찰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경찰청 (2022). **2022 경찰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경찰청 (2022.6).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 서울: 경찰청.

경향신문 (2021.10.26.). "근로복지공단, 산재 사망 현장실습생 '0건' 통계 구멍".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10261450001에서 2023년 10월 7일 인출.

경향신문 (2023.7.10.). "'다음 소희' 여전한데…서울 노동교육 예산 '전액 삭감'한 시의원들". https://www.khan.co.kr/print.html?art_id=202307100600011에서 2023년 10월

7일 인출.
고용노동부 (2020.4). **2019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2021.5). **2020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2022.5).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2023.5). **2022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9. 25).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전 세계에 제시합니다!. https://doc.msit.go.kr/SynapDocViewServer/viewer/doc.html?key=fca799c3d9434516ba9ada8ad9117036&convType=html&convLocale=ko_KR&contextPath=/SynapDocViewServe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a).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b).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a).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b).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a).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b).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a).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b).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c).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a).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b).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c).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202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부처합동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서울: 교육부.
관계부처합동 (2021).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 방안**」. 서울: 교육부.
관계부처합동 (2023).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서울: 교육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22). **청소년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교육부 (2017).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안)**」. 서울: 교육부.
교육부 (2018).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방안**」. 서울: 교육부.
교육부 (2019.2).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9~2022). **2019~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0.2).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1.2).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1). **2021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2.2).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3a). **2022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3b). **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3.2).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안)**.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3.4.14.). **보도자료: 2022년 학생 건강검사 주요 결과**.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3.8.30a). **보도자료: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3.8.30b). **보도자료: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별첨] 2023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세종: 교육부.

교육부, 질병관리청 (2023). **제18차(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세종: 교육부, 질병관리청.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0).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세부 분석 자료**. 서울: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2a). **2022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2b). **2022 교육통계연보(유초중등통계). 연도별 고등학교 유형별 졸업 후 상황.**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1&cd=5493&survSeq=2022&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B 2023년 8월 16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2c). **2022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1&publSeq=2&menuSeq=0&itemCode=02#에서 2023년 8월 18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2d). **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289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3년 8월 16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10.2.4.). **결정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13.9.5.). **결정문.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22).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2.8.11.). **결정문.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23). **2022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22). **2022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권순민 (2013). 아동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의 형사절차법적 수용과 합리적 이행방안 -UN 아동권리협약과 아동 피해자,증인사법지침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15**(2), 171-202.

기획재정부 (2017-2020). **나라살림예산**. 세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21-2022). **나라살림 예산개요**. 세종: 기획재정부.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나루 (2022).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39), 217-248.

김미주, 김석향 (2020). 중국 내 탈북여성·아동 인권침해 경험 분석. **젠더와 문화, 13**(2), 191-221.

김송옥 (2022).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과 관련한 영국 판결의 헌법적 함의 — R (Bridges) v. Chief Constable of South Wales Police 사건을 중심으로 —. **世界憲法研究, 28**(3), 65-97.

김여라 (2013). 어린이 및 청소년 방송출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684**, 1-4.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연구보고 17-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유설희,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보고 21-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최홍일, 유성렬, 이은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보고 22-일반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황세영,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보고 20-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인숙 (2000). NGO 역할과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과 권리, 4**(2), 77-93.

김정명 (1999). 청소년 인권의 사각지대 ; 체육특기생. **청소년학연구, 6**(2), 21-40.

김지형, 최수연 (2021). 영유아권리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권리주체와 권리영역을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21**(3), 25-36.

김진애 국회의원 (2020.10.19.). **보도자료: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구속률 급감**.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kspace406&logNo=222119760258&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김철주 (2021). 시청각장애인의 『헬렌켈러법』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社會法研究,**

-(43), 125-167.
김태완, 한수진, 이주미 (2022). **2022 빈곤통계연보**.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천 (1996).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 1**(0), 175-215.
김태환 (2019). 핀란드의 아동복지 법제에 관한 고찰. **社會法硏究**, 0(38), 35-64.
김현옥, 김경호 (2019).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UNCRC의 적용과 한계. **한국영유아보육학**, 0(114), 1-24.
김현옥, 송영지, 김수영 (2019).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권리인정을 위한 UNCRC 22조 분석 및 함의. **아동과 권리, 23**(2), 279-299.
김현용 (1995).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새로운 방향. **한국아동복지학**, -(3), 11-32.
김희진, 임희진, 정윤미 (202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연구보고 20-R5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혜련 (1995). 아동권리 국제협약 및 세계정상 행동계획의 국내 이행상황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 17-32.
대검찰청 (2018). **2018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9). **2019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20). **2020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21). **2021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22). **2022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 (2021.8.26.).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 (2022.9.29.).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 (2023.9.21.).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매일노동뉴스 (2023.10.3.). "[근로감독 청원 하루 7건] 감독관 늘어도 10건 중 6건 폐기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63에서 2023년 10월 9일 인출.
문선화 (1998). 아동복지법과 소년·소녀가장세대. **한국아동복지학**, -(7), 191-226.

문화체육관광부 (2018a).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8b). **2018년도(20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9a).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9b). **2019년도(2018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0a).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0b). **2020년도('19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1a).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1b).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1c). **2021년('20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2a). **2022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2b).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683&pDataCD=0417000000&pType=02 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문화체육관광부 (2022c). **2022년('21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민은경 (2021).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와 애도할 권리 : 해외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읽기. **여성문학연구, 53**(-), 10-41.
민주노총 (2023). '**최저연령협약(제138호)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협약(제182호)' ILO 보고서**.
박균성 (199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아동복지법제. **법학논총, 19**(1), 83-117.
박선화, 이명애, 오상철, 이영태, 오택근, 이경남 (2020).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문해력, 수리력 진단 도구 개발(Ⅰ): 문해력, 수리력의 수준별 성취기준 개발을 중심으로**. 진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소영 (2022). 북한과 베트남의 가정 외 보호 아동 권리에 관한 법제 연구. **統一과 法律,** -(50), 32-58.

박주영 (2009). 아동의 의견표명권에 관한 검토. **가족법연구, 23**(2), 157-192.
배건이 (2020). 아동 주치의제도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32**, 153-196.
법무부 (2015.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 (2021).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 (2022).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 (2023a).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 (2023b). **2023 교정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 (2022.9.26.). **소년보호사건 국선 보조인 조력 횟수 참고자료,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수용 현황 참고자료, 전국 소년원 연도별 수용 현황 참고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 (2023.10.6.). **소년보호사건 국선 보조인 조력 횟수 참고자료,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수용 현황 참고자료, 전국 소년원 연도별 수용 현황 참고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 (2021.8.26.). **이주아동 구금현황 참고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 (2022.9.23.). **이주아동 구금현황 참고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 (2023.9.19.). **이주아동 구금현황 참고자료.**
법무연수원 (2020). **2019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21). **2020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22). **2021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23). **2022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법원행정처 (2020). **2020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1). **2021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2). **2022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3). **2023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2010-2022).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2010-202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

do?orgId=117&tblId=DT_11770N001&conn_path=I2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및 재구성.

보건복지부 (2013-2022).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2013-202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N001&conn_path=I2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및 재구성.

보건복지부 (2014.3.6).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5-2021).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2015~202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_N005&conn_path=I2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6~2020). **2016~2020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7.2.15.). **보도자료: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 (2018).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7.12.31.기준)**.

보건복지부 (2019a). **2019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8.12.31.기준)**.

보건복지부 (2019b).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0.3.31.). **보도자료: 2019년도 사회복지지설(1,258개소)평가 발표**.

보건복지부 (2020a). **2020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9.12.31.현재)**.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2020c).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2021a). **2021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20.12.31.현재)**.

보건복지부 (2021b).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2021c).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보건복지부 (2022a). **2021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2b).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2c). **2022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21.12.31.현재)**.

보건복지부 (2022d).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2022e).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보건복지부 (2022.8.9.). **보도자료: 세상을 바꾸는 아동의 목소리- 2022년 제19회 대한민국 전국 아동총회 개최(8.9-8.1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

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2539&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에서 2022년 9월 30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2.8.12.) **보도자료: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아동의 요구! -제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채택**.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72566&SEARCHKEY=DEPT_NM&SEARCHVALUE=%EC%95%84%EB%8F%99%EB%B3%B5%EC%A7%80%EC%A0%95%EC%B1%85%EA%B3%BC에서 2023년 8월 22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3a). **2022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3b).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3c) **2022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연도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3d). **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2023e).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보건복지부 (2023f).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특별회계).**

보건복지부 (2023g).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2023h).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통계청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3i).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현황**.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117&tblId=TX_117401121&dbUser=NSI_IN_117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3j).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2021년 12월말 기준).**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23.4.7.). **보도참고자료: 중증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5752 에서 2023년 9월 28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3.8.8.) **보도자료: 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세상! 우리가 만들어요!.**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7656&SEARCHKEY=DEPT_NM&SEARCHVALUE

=%EC%95%84%EB%8F%99%EB%B3%B5%EC%A7%80%EC%A0%95%EC%B1%85%EA%B3%BC에서 2023년 8월 22일 인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2021). **2021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 다함께돌봄 소식지**.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2022).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생활시설 평가지침**.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2016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2020). **2017-2019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2). **2022년도 아동생활시설 평가 지침**.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0).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2022). **202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사회보장위원회 (2023).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세종: 사회보장위원회.

서정아, 조아미 (2021).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석광현 (2009). 1993년 헤이그국제입양협약.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國際私法硏究,** -(15), 421-492.

송영민 (2017).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의 평가방법. **圓光法學, 33**(3), 47-60.

송영민 (2019). 일본 장기이식법상의 아동학대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의생명과학과 법, 22**(-), 39-64.

송인호, 강보선 (2020). 북한의 아동 관련 법제와 실태에 대한 고찰 –북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5차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江原法學, 59**(-), 81-113.

송인호, 임진실 (2020). 북한의 유아보육법제에 대한 고찰. **法學論叢, 46**(-), 237-255.

송태수, 이수정, 이원희, 변섭 (2021).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와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스포츠경향 (2021.10.1.). "계속되는 아이돌 노예계약과 방송사 갑질…비밀 이면계약으로 가수·연습생 착취". https://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art_id=202110011928003에서 2023년 10월 3일 인출.

시사IN (2019.10.23.). "'구독'되는 아이의 삶 '구속'되는 아이의 인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62에서 2023년 10월 3일 인출.

안문희 (2013). 프랑스법상 미성년자의 의견개진권. **법학연구, 54**(4), 289-314.

안문희 (2014). 이혼이 허용하는 친권선택의 자유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55**(3), 107-130.

여성가족부 (2012).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

여성가족부 (2016.4.21.). **보도자료.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여성가족부 (2017). **2017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8).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

여성가족부 (2020a). **2020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0b).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여성가족부 (2020.3.31.). **20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9.12.31.기준).**

여성가족부 (2021).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여성가족부 (2021.3.2.).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20.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91에서 2021년 8월 11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2a). **202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2b).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2c).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2d).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여성가족부 (2022.3.7.). **2021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21.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2년 8월 25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2.05.25.). **보도자료: 2022 청소년 통계**.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72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2.6.28.). **보도자료: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여성가족부 (2023a). **2022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3b). **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3c).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3.3.13.). **2022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22.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3년 8월 16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3.05.30.). **보도자료: 2023 청소년 통계**. p.3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307에서 2023년 8월 23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3.7.7.). **보도자료: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내부자료 (2022.10.05.). **아동·청소년지원센터 현황**.
연합뉴스 (2020.3.13.). "'미스터트롯', 13살 정동원 '자정 넘은 방송참여' 논란".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3127300005?input=1195m에서 2023년 10월 3일 인출.
오마이뉴스 (2021.12.6.). "10살 안 된 아역배우 한겨울 얼음물 속에..너무 괴로웠어요". https://omn.kr/1w9yg에서 2023년 10월 3일 인출.
유민상 (2023).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권리 수준 변화와 과제: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유민상, 서고운, 신동훈, 이지연 (202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신동훈, 박미희, 신영규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Ⅱ**.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오수미 (2023). 청소년복지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와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대응 in 홍경준, 강동욱, 백학영, 김은하, 이태인, 이하나, 유민상, 오수미, 전용호, 이민홍, 정종화, 김진우, 엄경남, 오경옥, 권지현(2023). **사회보장정책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학

회.
유민상, 유성렬, 심수진, 류정희, 김혜자, 도남희, 박진아, 구자연, 김대훈, 최창용(2021).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Ⅱ**.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유성렬, 심수진, 류정희, 도남희, 김혜자, 박미선, 박미진, 최창용, 이창호, 김은아(2022).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Ⅲ.**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199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편.), (2006).「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보고서와 권고문Ⅰ」. (pp. 71-74).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편.), (2006).「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보고서와 권고문Ⅱ」. (pp. 95-105).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정책자료 2011-04) (pp. 467-489).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정부 공식 번역본)**. 세종: 보건복지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21).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5호'**. 국가인권위원회(편.), (2021)「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2021년 개정판: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국문번역)」. (pp. 687-688).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이경은 (2016). UN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법리와 한국의 아동보호 법제. **입법과 정책, 8**(2), 193-219.
이규창 (2017). 북한 장애인법제 분석 및 평가와 향후 과제.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465), 109-128.
이노홍 (2015a). 아동의 권리와 가정내 아동체벌금지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홍익법학, 16**(1), 123-157.
이노홍 (2015b). UN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상 개인청원제도와 아동의 재판청구권.

世界憲法研究, 21(2), 113-144.
이배근 (1997).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아동과 권리, 1**(1), 35-46.
이보연 (2021).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 **法學硏究, 29**(3), 217-245.
이윤구 (1990).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국제법 발효에 즈음하여. **한국청소년연구**, -(2), 120-124.
이은주 (2011). 다문화 가정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아동과 권리, 15**(4), 521-539.
이재연, 황옥경 (2004).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 **아동과 권리, 8**(4), 593-610.
이종임 (2020).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을 만나다":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 국회 토론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Pop-Up).
이충은 (2019). 강제퇴거로 인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침해. **법학연구, 75**(-), 531-558.
이한주 (2021). 장애인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憲法學硏究, 27**(4), 357-401.
이호림, 이혜민, 주승섭, 김란영, 엄윤정, 김승섭 (2022). 국가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에서의 성소수자 정체성 측정 필요성: 국내외 현황 검토와 측정 문항 제안. **비판사회정책** 제74호. 175-208.
이호행 (2019). 일본의 성년연령 개정과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比較私法, 26**(3), 207-244.
임세와, 양옥경 (2022). 북한이탈주민의 아동권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6**(1), 83-114.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 (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장민영 (2019). 아동권리협약상 학생의 의견청문권 실현을 위한 교육법제 개선방안. **敎育法學 硏究, 31**(2), 73-93.
장영인 (2020). 보호대상아동 보호의 국가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령과 지침의 분석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8), 143-172.
정용림, 정민석, 유승희, 송지은, 박에디, 박상훈, 민지희 (2021).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정현숙 (1997). 아동의 놀 권리와 멀티미디어. **아동과 권리, 1**(2), 51-64.
제철웅 (2020).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37(1), 339-371.

조은희 (2022). 혼인외 자녀의 출생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35**(2), 151-188.

조정현 (2021).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법제 및 남북 교류협력방안: 북한인권 개선의 관점에서. **法學硏究, 29**(3), 299-324.

조흥식 (1998). 아동권리와 가족지원. **한국아동복지학**, -(7), 9-33.

조흥식 (2000). 국가정책 측면에서의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과 권리, 4**(2), 7-24.

직업계고산업체파견형현장실습폐지운동백서편찬위원회. (2020). **직업계고 산업체파견형 현장실습 폐지운동 백서(2017~2019)**.

직장갑질119 (2022). **근로감독관 갑질 보고서**.

질병관리청 (2022). **2020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청주: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2023). **2021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청주: 질병관리청.

최경옥 (2012).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권. **公法學硏究, 13**(1), 307-339.

최경옥, 이경림 (2019). 수용자 자녀 권리보장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0(3), 23-53.

최용성, 곽대훈 (2022). 디지털정보의 원격지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7. 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1**(3), 289-316.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22). **2022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2022년 4월 기준). https://www.hub4u.or.kr/webmdl/sub4uStudentStatus/menuHtmlDetail.do에서 2023년 8월 18일 인출.

통계청 (2014, 2016, 2018, 2020, 2022). **2014-2022 사회조사**.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통계청 (2018~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3S&conn_path=I2에서 2023년 10월 4일 인출.

통계청 (2019.3.12). **보도자료: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통계청 (2019.9.24). **보도자료: 2018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2020.3.11). **보도자료: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통계청 (2020.9.22). **보도자료: 2019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2021.9.28.). **보도자료: 2020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2022.3.11). **보도자료: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통계청 (2022.9.27.). **보도자료: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통계청 (2023.3.7). **보도자료: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70100&bid=245&tag=&act=view&list_no=424071&ref_bid=에서 2023년 8월 16일 인출.
통계청 (2023.7.18). **보도자료: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2023.9.21.). **보도자료: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통계청 e-나라지표 (2022).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1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 (2011~2022).**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 에서 2023년 8월 19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2 에서 2023년 8월 22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1에서 2023년 10월 4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장애아전문, 통합 어린이집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5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지난 1년동안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당한 경험(2017~202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7&tblId=DT_43701N_194&vw_cd=MT_ZTITLE&list_id=D2_437001_00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2023년 8월 19일 인출.
통계청 KOSIS (2018~2022) **학교급별 방과후 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참여비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501&vw_cd=MT_ZTITLE&list_id=H1_10_00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통계청 KOSIS (2017~2022).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

통계청 KOSIS (2017~2022). **사망원인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

통계청 KOSIS (2017~2022). **사망원인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8&vw_cd=MT_ZTITLE&list_id=F_27&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2&path=%252Fcommon%252Fmeta_onedepth.jsp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

통계청 KOSIS (2018~2022).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서 2레벨 선택).

통계청 KOSIS (2023).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중 0세~17세 인구수의 합**(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SelectStatsBoxDiv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실업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2S&c에서 2023년 8월 21일 인출.

통계청 KOSIS.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920023_A001&conn_path=I2에서 2023년 8월 18일 인출.

통계청, 한국통계진흥원 (2023). **2023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작성기관 담당자 교육자료**. 내부자료.

통일부 (2022). **2022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통일부 (2023). **202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통일부 (2023.6). **북한이탈주민정책. 연도별 고등학교 유형별 졸업 후 상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2023년 8월 17일 인출.

하수정, 김은란, 이차희, 이종표, 심혜민 (2022).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보육.**
하승수, 이혜원 (2007).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친권상실관련 판례분석. **아동과 권리, 11**(2), 149-166.
한국성폭력상담소 (2023.3). **202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https://www.sisters.or.kr/consult/stat/6743에서 2023년 8월 21일 인출.
한인임 (2021).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 추정과 근무 실태조사**',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한준, 정병은, 김종우, 김대훈, 이시림 (2022). **2022 인권의식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2019.11).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18년 11월 1일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0.11).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19년 11월 1일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1.1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20년 11월 1일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GrK7W-FqVupq+xriLgQUMwRY.node5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8648에서 2022년 8월 26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2.11).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21년 11월 1일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96092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
허남순, 이혜원 (2006).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국내 가정위탁보호의 현황분석. 한국**아동복지학**, -(22), 95-126.
허민숙 (2023).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 **이슈와 논점** 제2112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황옥경 (2004). 아동권리 보호와 위탁가정 지원정책 활성화 방안. **아동복지연구, 2**(1), 131-147.

Atkinson, A. B. (2013). Participation income. Basic Income: An Anthology of Contemporary Research, Blackwell Publishing, 435-438.

Bhattacharya, S., Aggarwal, P., Bera, O. P., Saleem, S. M., Shikha, D., Vallabh, V., ... & Singh, A. (2021). COVID-19 and childhood obesity (CO-BESITY) in the era of new normal life: a need for a policy research. Journal of public health research, 10(2_suppl), jphr-2021.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2). Children, Obesity, and COVID-19. https://www.cdc.gov/obesity/data/children-obesity-COVID-19.html#obesity에서 2023년 9월 29일 인출.

Crandall, A., Miller, J. R., Cheung, A., Novilla, L. K., Glade, R., Novilla, M. L. B., ... & Hanson, C. L. (2019). ACEs and counter-ACEs: How positive and negative childhood experiences influence adult health. Child abuse & neglect, 96, 104089.

Crawford, K. (2021). Atlas of AI: Power, politics, and the planetary cos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Gilbert, N., Parton, N., & Skivenes, M. (Eds.). (2011). Child protection systems: International trends and orient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Jones, D. (2023). Kids under 13 would be barred from social media under bipartisan Senate bill. NPR. https://www.npr.org/2023/04/28/1172098173/social-media-kids-senate-bill

Kyte, A., Trocme, N., & Chamberland, C. (2013). Evaluating where we're at with differential response. Child Abuse & Neglect, 37(2-3), 125-132.

Livingstone, S. (2019). Implementing children's rights in a digital world. Media @LSE. https://blogs.lse.ac.uk/medialse/2019/11/20/implementing-childrens-rights-in-a-digital-world/

Livingstone, S., & Stoilova, M. (2021). The 4Cs: Classifying online risk to children. CO:RE Short Report Series on Key Topics. https://core-evidence.eu/posts/4-cs-of-online-risk

Livingstone, S., & Third, A. (2017). Why children are not the exception that

proves the rule in internet governance. Media@LSE. https://blogs.lse.ac.uk/medialse/2017/06/15/why-children-are-not-the-exception-that-proves-the-rule-in-internet-governance/

LSE Consulting. (2017). The case for a UNCRC General Comment on Children's Rights and Digital media. Children's Commissioner for England. https://www.childrenscommissioner.gov.uk/resource/the-case-for-a-uncrc-general-comment-on-childrens-rights-and-digital-media/

Masterson, M. A. (2020). When play becomes work: Child labor laws in the era of" kidfluencers". U. Pa. L. Rev., 169, 577.

Munn, Z., Peters, M. D., Stern, C., Tufanaru, C., McArthur, A., & Aromataris, E. (2018). Systematic review or scoping review? Guidance for authors when choosing between a systematic or scoping review approach.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18, 1-7.

Narayan, A. J., Lieberman, A. F., & Masten, A. S. (2021). Intergenerational trans mission and prevention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85, 101997.

OECD (2019). Changing the Odds for Vulnerable Children: Building Opportunities and Resilie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2e8796c-en. 에서 2023년 10월 1일 인출.

OECD (2020). OECD Family Database – CO1.1. Infant mortality. https://www.oecd.org/els/family/CO_1_1_Infant_mortality.pdf 에서 2023년 10월 22일 인출.

Rudolf, R., & Bethmann, D. (2023). The Paradox of Wealthy Nations' Low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4(1), 79-105.

Statistics Canada "Canadian Health Survey on Children and Youth – 2019" https://www23.statcan.gc.ca/imdb/p3Instr.pl?Function=assembleInstr&a=1&&lang=en&Item_Id=1209093#qb1225196에서 2023년 10월 1일 인출.

Third, A., & Moody, L. (2021). Our rights in the digital world: A report on the children's consultations to inform UNCRC General Comment 25. London & Sydney, UK & Australia: 5Rights Foundation and Western Sydney University.

UNESCO (2021). 교육의 미래 2050보고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4). Report of the 2014 Day of General Discussion: "Digital media and children's rights". https://www.ohchr.org/en/events/days-general-discussion-dgd/2014/2014-day-general-discussion-digital-media-and-childrens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8).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640449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9).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884413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홈페이지. "General comment No. 26 (2023) on children's rights and the environment with a special focus on climate change" https://www.ohchr.org/en/documents/general-comments-and-recommendations/general-comment-no-26-2023-childrens-rights-and 에서 2023년 10월 2일 인출.

United Nations(UN)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A/RES/44/25). 외교통상부 역(1991). 유엔아동권리협약(정부 공식 국문번역본).

Wang, C., Butler, G., Wong, S. L., Steensma, C., Jackson, B., Betancourt, M. T., & Roberts, K. C. (2023). Gender identity and sexual attraction among Canadian youth: findings from the 2019 Canadian Health Survey on Children and Youth. Health Promotion and Chronic Disease Prevention in Canada: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43(6), 299.

Zuboff, S. (2019).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The fight for a human future at the new frontier of power. New York, NY: PublicAffairs.

5Righs Foundation. (2021). Explanatory notes: General comment no. 25 (2021)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https://5rightsfoundation.com/uploads/ExplanatoryNotes_UNCRCGC25.pdf

[참고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에서 2023년 10월 17일 인출.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 https://www.ppm.or.kr/contents/contentsView.do?MENUID=A01020401에서 2023년 9월 28일 인출.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사이트(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index)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네이버 지식백과, '쿠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5835508&categoryId=43667에서 2023년 10월 10일 인출.

달빛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https://www.e-gen.or.kr/moonlight/main.do에서 2023년 9월 28일 인출.

문화누리 홈페이지. www.mnuri.kr.

미국 인구조사국 홈페이지. https://www.census.gov/library/stories/2021/11/census-bureau-survey-explores-sexual-orientation-and-gender-identity.html 에서 2023년 6월 1일 인출.

복권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bokgwon.go.kr/fund/02_01.jsp에서 2021년 10월 14일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www.dreamstart.go.kr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5&cntntsId=1142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사업' 홈페이지(https://www.dadol.or.kr/board/center)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연소자노동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 https://www.gesetze-im-internet.de/jarbschg/__23.html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유엔인권이사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홈페이지. https://www.ohchr.org/en/documents/general-comments-and-recommendations

/general-comment-no-25-2021-childrens-rights-relation 에서 2023년 11월 30일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에서 2023년 10월 1일 인출.
지표누리(통계청). https://www.index.go.kr/에서 2023년 9월 25일 인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4&search_put= 에서 2023년 9월 29일 인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교육부). https://www.hifive.go.kr/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홈페이지.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responding/alternative/에서 2023년 10월 25일 인출.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홈페이지.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publication-download/measurement-framework-equality-and-human-rights 에서 2023년 3월 14일 인출.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s://www.oed.com/search/advanced/Entries?q=vulnerability&sortOption=Frequency.
The HCCH(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홈페이지 참조: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full-text/?cid=69.
Wee 웹사이트. 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22에서 2023년 8월 18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7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7일 인출.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10월 7일 인출.

「대중문화산업발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7일 인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7일 인출.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3년 9월 7일, 10월 7일 인출.
「아동수당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3년 9월 17일 인출.
「영유아보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청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7일 인출.
「청소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10월 7일 인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청소년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7일 인출.
「초중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
「최저임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 3일 인출.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법률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115361)」. https://likms.assembly.go.kr/에서 2023년 10월 25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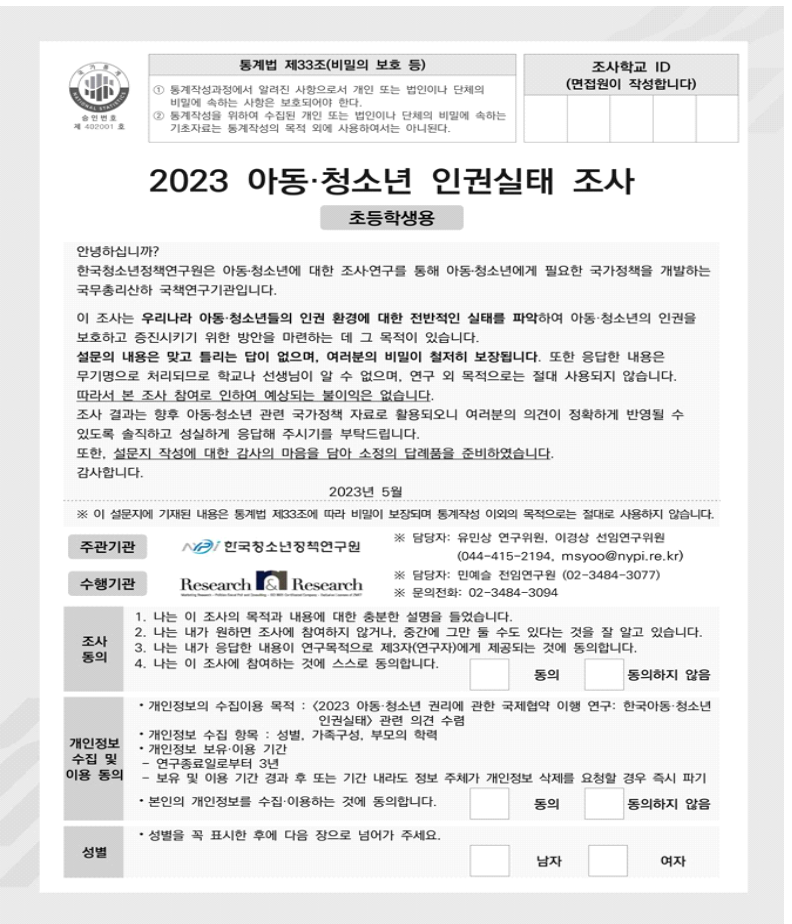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113454)」. https://likms.assembly.go.kr/에서 2023년 10월 25일 인출.

부 록

1.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설문지(초등용·중등용)
2.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변경문항 세부내역(초등용·중등용)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문 및 최종견해(1~6차)

부 록

1.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설문지(초등용·중등용)



승인번호 제 402001 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학교 ID (면접원이 작성합니다)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초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학교나 선생님이 알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 참여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문지 작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유민상 연구위원, 이경상 선임연구위원 (044-415-2194, msyoo@nypi.re.kr)

수행기관 Research & Research
※ 담당자: 민예슬 전임연구원 (02-3484-3077)
※ 문의전화: 02-3484-3094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가족구성, 부모의 학력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 보유 및 이용 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성별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 남자 ☐ 여자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아래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	②	③	④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13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나요?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14번 문항으로

13-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 때문에(불화, 폭행, 간섭 등)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19-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2 2순위 5

① 학원, 과외
②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③ 게임(인터넷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④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⑤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⑥ 드라마,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등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Ⅰ 내 삶에 관한 질문들

1 현재 얼마나 행복하나요?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 2번 문항으로

1-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매우 불만족 ←					중간					→ 매우 만족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전체적인 본인의 인생과 관련된 아래의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0=전혀 찬성하지 않음										매우 찬성=10
1)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나는 내 인생이 좋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나는 내 인생에 대해 행복감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I 아동·청소년의 참여·활동

4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보호자)은 평소 내가 편안히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다음은 학교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나 가정형편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이 잘못한 일로 벌(징계)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6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란, 아동정책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시청,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예: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아동·청소년의회, 청소년구정참여단, 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7 우리 사회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8 학교나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u>가장 큰 이유</u>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u>하나만</u> 선택해주세요.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아동을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Ⅲ 아동·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환경

9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이나 무시하거나 욕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1) 신체적 벌 (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①	②	③	④	⑤
	2) 정서적인 공격 (모욕적인 말, 욕설 등)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3) 신체적 벌 (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①	②	③	④	⑤
	4) 정서적인 공격 (모욕적인 말, 욕설 등)	①	②	③	④	⑤

10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맞아 본 경험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11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12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이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불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나요?**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14번 문항으로

13-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 때문에(불화, 폭행, 간섭 등)
③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Ⅳ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 및 보호

14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5 각 항목을 잘 읽고 우리 동네 상황에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동네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에는 즐겁게 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많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동네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16 자신의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17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나요?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나요?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18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각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예 : 21시 30분, 22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인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예 : 9시 0분, 22시 0분 등)

① 일어나는 시각 (기상 시간) 보통 [ ][ ] 시 [ ][ ]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각 (취침 시간) 보통 [ ][ ] 시 [ ][ ] 분

19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예 → **19-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학원, 과외
②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③ 게임(인터넷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④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⑤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⑥ 드라마,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등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② 아니오 → 20번 문항으로

20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가치(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나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1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는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2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 명)

23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다른 사람)이 있나요?

	없다	있다
1) 내가 모르는 공부 내용이나 학업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2) 앞으로의 진로나 진학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3) 학교 가기 어려운 경우, 숙제 등 학교 일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4) 몸이 아파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5)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6) 내가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①	②

24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4-1 **(위 문항에서 4)*번의 ②, ③, ④인 경우만 응답)**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라는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25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희롱, 특정 신체부위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26번 문항으로

25-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V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여가·문화

26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26-1**

② 없다 → 27번 문항으로

26-1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7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수업시간이 재밌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28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해 보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①	②	③	④	⑤

28-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나요?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29 학교에 가는 날(평일)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인가요?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30 평일 학교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나요?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Ⅵ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31 다음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32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①	②	③	④

33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아동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아동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전교학생회 등)은 학교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모든 인간은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4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입니다.

① 있다 ② 없다 → 35번 문항으로

34-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도덕 등)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4-2 **인권교육이 각각의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인권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①	②	③	④
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①	②	③	④

35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5-1 **(위 문항에서 ②, ③, ④, ⑤로 응답한 것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차별을 당한 후 주로 누구에게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주세요.**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6 **(차별 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7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장애를 가진 친구가 일반학교 학급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3) 장애를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 함께 수업을 듣고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38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2)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9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40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부모님, 선생님, 학교가 나의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개인정보 유출, 불쾌한 메시지 또는 영상 노출, 성범죄, 사기 등)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Ⅶ 인권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41-1 현재 본인이 지닌 권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음	약간 낮은 편임	보통임	약간 높은 편임	매우 높은 편임
내가 지닌 권리 수준	①	②	③	④	⑤

41-2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음	약간 낮은 편임	보통임	약간 높은 편임	매우 높은 편임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학생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 년

배문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세요
(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⑩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중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4 여러분과 부모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대한민국	북한	그 외 다른나라
1) 나	①	②	③
2) 아버지	①	②	③
3) 어머니	①	②	③

배문5 학생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배문6 학생의 학업 성적(2023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7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인번호
제 402001 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학교 ID (면접원이 작성합니다)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학교나 선생님이 알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 참여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문지 작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유민상 연구위원, 이경상 선임연구위원 (044-415-2194, msyoo@nypi.re.kr)
수행기관	Research & Research	※ 담당자: 민예슬 전임연구원 (02-3484-3077) ※ 문의전화: 02-3484-3094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가족구성, 부모의 학력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 보유 및 이용 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성별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 남자 ☐ 여자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아래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	②	③	④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12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① 예 → 12-1

② 아니오 → 13번 문항으로

12-1 학교의 종교행사에서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25-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5 2순위 3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Ⅰ 내 삶에 관한 질문들

1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 2번 문항으로

1-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					중간					→ 매우 만족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전체적인 본인의 인생과 관련된 아래의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0=전혀 찬성하지 않음										매우 찬성=10
1)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나는 내 인생이 좋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나는 내 인생에 대해 행복감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I 아동·청소년의 참여·활동

4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보호자)은 평소 내가 편안히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보호자)은 평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다음은 학교의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선생님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3)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①	②	③
4) 선생님은 학생회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한다	①	②	③

6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학교운영위원회'란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학교의 운영방침(학교예산, 학교규칙, 현장학습, 급식 등)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① 참여할 수 없다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

7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나 가정형편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이 잘못한 일로 벌(징계)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4)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5)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내릴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8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청소년 참여기구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예: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아동·청소년의회, 청소년구정참여단, 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9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0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11 **다음은 양심·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부당한 간섭 없이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12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① 예 → 12-1

② 아니오 → 13번 문항으로

12-1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3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및 SNS 활동	①	②	③	④
(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①	②	③	④

13-1 (위 문항에서 ③번과 ④번에 응답한 학생만 답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② 경고 및 훈계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14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교복 착용, 외투나 운동복 착용)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업시간 이외에도 핸드폰 사용을 금지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수업시간 이외에도 핸드폰을 압수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아동·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환경

15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1) 신체적 벌 (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①	②	③	④	⑤
	2) 정서적인 공격 (모욕적인 말, 욕설 등)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3) 신체적 벌 (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①	②	③	④	⑤
	4) 정서적인 공격 (모욕적인 말, 욕설 등)	①	②	③	④	⑤

16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17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18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20번 문항으로

19-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③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9-2 **가출했을 당시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이용해 본 적 없다 → 20번 문항으로
② 청소년 쉼터
③ 청소년 상담 기관
④ 청소년수련관(센터)
⑤ 청소년 전화 1388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9-3 **가출했을 당시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② 만족하지 않았던 편이다
③ 만족했던 편이다 ④ 매우 만족했다

Ⅳ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 및 보호

20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1 각 항목을 잘 읽고 우리 동네 상황에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동네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에는 즐겁게 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많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동네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우리 지역은 아이들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22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23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24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각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예 : 22시 30분, 23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인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예 : 9시 0분, 22시 0분 등)

① 일어나는 시각 (기상 시간) 보통 [ ][ ] 시 [ ][ ]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각 (취침 시간) 보통 [ ][ ] 시 [ ][ ] 분

25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 25-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26번 문항으로

25-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6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27번 문항으로
② 가끔 생각한다 → 26-1번 문항으로
③ 자주 생각한다 → 26-1번 문항으로

26-1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족 간의 갈등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7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나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8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에는 <u>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u> 선택해 주십시오.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9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 명)

30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다른 사람)이 있나요?**

	없다	있다
1) 내가 모르는 공부 내용이나 학업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2) 앞으로의 진로나 진학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3) 학교 가기 어려운 경우, 숙제 등 학교 일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4) 몸이 아파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5)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6) 내가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①	②

31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1-1 **(위 문항에서 4)*번의 ②, ③, ④인 경우만 응답)**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라는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32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33번 문항으로

32-1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없다	1-2번	3번 이상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①	②	③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①	②	③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①	②	③
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①	②	③
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①	②	③
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①	②	③
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①	②	③
8)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①	②	③
9) 최저임금(2022년 기준 시간 당 9,160원, 2023년 기준 시간 당 9,62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①	②	③

33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희롱, 특정 신체부위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33-1**

② 없다 → 34번 문항으로

33-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V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여가·문화

34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34-1**

② 없다 → 35번 문항으로

34-1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5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수업시간이 재밌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36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①	②	③	④	⑤

36-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37 **학교에 가는 날(평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38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Ⅵ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39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40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①	②	③	④

41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모든 인간은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8) 모든 인간은 성정체성과 성적지향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2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입니다.

① 있다 ② 없다 → 43번 문항으로

42-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도덕 등)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42-2 **인권교육이 각각의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①	②	③	④
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①	②	③	④

43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3-1 **(위 문항에서 ②, ③, ④, ⑤로 응답한 것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차별을 당한 후 주로 누구에게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44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장애를 가진 친구가 일반학교 학급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3) 장애를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 함께 수업을 듣고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46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2)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47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인터넷 업체들(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온라인 게임 업체들(닌텐도, 넥슨 등)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48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부모님, 선생님, 학교가 나의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개인정보 유출, 불쾌한 메시지 또는 영상 노출, 성범죄, 사기 등)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Ⅶ 인권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49 다음은 다양한 형태의 아동·청소년 권리 목록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다음의 권리들을 얼마나 보장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보장 받지 못했다	보장 받지 못한 편이다	보통 이다	보장 받은 편이다	충분히 보장 받고 있다
1)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예. 소지품 검사, 개인신상 노출, 개인정보 유출, 휴대폰 위치추적 등)	①	②	③	④	⑤
2)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예.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①	②	③	④	⑤
3) **교육에 대한 권리** (예. 교육받을 기회, 삶에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 원하는 역량 개발 등)	①	②	③	④	⑤
4) **놀이·휴식·여가에 대한 권리** (예. 놀거나 휴식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 등)	①	②	③	④	⑤
5) **건강에 대한 권리** (예. 신체 건강 및 마음 건강의 유지와 치료 기회 등)	①	②	③	④	⑤
6)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예. 적절한 영양, 의복, 주거 환경 보장, 빈곤으로부터의 보호 등)	①	②	③	④	⑤
7) **사회참여에 대한 권리** (예. 정치적 참여, 집회 참여, 경제적 참여, 사회활동 참여 등)	①	②	③	④	⑤
8) **차별받지 않을 권리** (예. 성별, 나이, 경제적 수준, 장애,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 보호 등)	①	②	③	④	⑤
9) **의견 표현 및 의견 존중에 대한 권리** (예. 나와 관련된 결정에 의견을 표현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 등)	①	②	③	④	⑤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50-1 현재 본인이 지닌 권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음	약간 낮은 편임	보통임	약간 높은 편임	매우 높은 편임
내가 지닌 권리 수준	①	②	③	④	⑤

50-2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음	약간 낮은 편임	보통임	약간 높은 편임	매우 높은 편임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	①	②	③	④	⑤

50-3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은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함	약간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함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함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변화 (3년간)	①	②	③	④	⑤

50-4 앞으로 3년 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임	약간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임	변화 없을 것임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임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예측 (3년 후)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학생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 ][ ][ ][ ] 년

배문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세요
(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⑩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중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4 여러분과 부모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대한민국	북한	그 외 다른나라
1) 나	①	②	③
2) 아버지	①	②	③
3) 어머니	①	②	③

배문5 학생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배문6 학생의 학업 성적(2023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7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변경문항 세부내역(초등용·중등용)

<table>
<tr><th>2022(초등학생용)</th><th>2023(초등학생용)</th><th>비 고</th></tr>
<tr><td colspan="3">〈추 가〉</td></tr>
<tr><td>신규</td><td>문3. 전체적인 본인의 인생과 관련된 아래의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table><tr><th></th><th>0 = 전혀 찬성하지 않음 ~ 10 = 매우 찬성</th></tr><tr><td>(1)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td><td>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td></tr><tr><td>(2)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td><td>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td></tr><tr><td>(3)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td><td>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td></tr><tr><td>(4)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td><td>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td></tr><tr><td>(5) 나는 내 인생이 좋다</td><td>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td></tr><tr><td>(6) 나는 내 인생에 대해 행복감을 느낀다</td><td>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td></tr></table></td><td>문3.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측정의 다양성을 위해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삶의만족도척도(student life satisfaction scale) 활용</td></tr>
<tr><td>문1. 다음은 의사결정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table><tr><th></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d>문4. 다음은 의사결정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table><tr><th></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부모님(보호자)은 평소 내가 편안히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d>문4.
청소년 대상 프리테스트에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상에서의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을 자체 설계하였음</td></tr>
<tr><td>문2. 다음은 학교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td><td>문5.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td><td>문5.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학교’ 혹은 ‘선생님’ 이라는 표현을 ‘우리 학교나</td></tr>
</table>

2022(초등학생용)	2023(초등학생용)	비 고
<table><tr><th></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학교는 학교의 규칙(학생생활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우리 학교에서 학생의 동의없이 가족관계나 가정형편에 대한 개인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학교는 학생이 잘못한 일로 벌(징계)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	<table><tr><th></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나 가정형편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이 잘못한 일로 벌(징계)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	선생님'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음. (3)은 표현을 명확히 하여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이 잘못한 일로' 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음.
신규	문15. 각 항목을 잘 읽고 우리 동네 상황에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table><tr><th></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나는 우리 동네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우리 동네에는 즐겁게 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많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동네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	문15. 아동·청소년의 주변 환경이 중요하므로 동네에서의 안전, 여가, 사회적 자본 등 동네 환경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음.
신규	문22.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문22.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였음.
신규	문23.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다른 사람)이 있나요? <table><tr><th>문 항</th><th>없다</th><th>있다</th></tr><tr><td>(1) 내가 모르는 공부 내용이나 학업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td><td>①</td><td>②</td></tr><tr><td>(2) 앞으로의 진로나 진학에 관한</td><td>①</td><td>②</td></tr></table>	문2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였음.

<table>
<tr><th>2022(초등학생용)</th><th>2023(초등학생용)</th><th>비 고</th></tr>
<tr><td></td><td>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3) 학교 가기 어려운 경우, 숙제 등 학교 일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4) 몸이 아파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5)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6) 내가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① ②</td><td></td></tr>
<tr><td>신규</td><td>문24.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tr><th>문 항</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드물게 그렇다</th><th>가끔 그렇다</th><th>항상 그렇다</th></tr><tr><td>(1)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d>문24.
아동·청소년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였음.</td></tr>
<tr><td>신규</td><td>문24-1. (위 문항(4)*번의 ②, ③, ④인 경우만 응답)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라는 감정을 느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td><td>문24-1.
아동·청소년의 고립 기간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였음.</td></tr>
<tr><td>문28.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tr><th></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아동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아동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d>문33.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tr><th></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아동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아동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d>문33.
(6)은 남녀의 권리로 한정하지 않고 성별과 상관없이라는 표현으로 변경</td></tr>
</table>

2022(초등학생용)	2023(초등학생용)	비 고
할 필요가 있다 (3) 아동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전교학생회 등)은 학교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아동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전교학생회 등)은 학교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모든 인간은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신규	문35-1. (위 문항에서 ②, ③, ④, ⑤로 응답한 것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차별을 당한 후 주로 누구에게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주세요.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35-1.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차별 경험뿐만 아니라 대처 방안에 대해 함께 조사하였음.
신규	문38.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2)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38.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6호(기후변화 상황에서의 아동권리)의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였음.

<table>
<tr><th>2022(초등학생용)</th><th>2023(초등학생용)</th><th>비 고</th></tr>
<tr><td>신규</td><td>문39.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tr><th>문 항</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3) 우리나라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4)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d>문39.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5호(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따라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문항 설계가 필요하여 자체 개발하여 추가하였음.</td></tr>
<tr><td>신규</td><td>문40.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tr><th>문 항</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나는 부모님, 선생님, 학교가 나의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걱정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4) 나는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개인정보 유출, 불쾌한 메시지 또는 영상 노출, 성범죄, 사기 등)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d>문40.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5호(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따라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문항 설계가 필요하여 자체 개발하여 추가하였음.</td></tr>
<tr><td>신규</td><td>문41.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1) 현재 본인이 지닌 권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table><tr><th>문 항</th><th>매우 낮음</th><th>약간 낮은 편임</th><th>보통임</th><th>약간 높은 편임</th><th>매우 높은 편임</th></tr><tr><td>내가 지닌 권리 수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table>
(2)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table><tr><th>문 항</th><th>매우 낮음</th><th>약간 낮은 편임</th><th>보통임</th><th>약간 높은 편임</th><th>매우 높은 편임</th></tr><tr><td>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table></td><td>문41.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권리 인식 측정이 필요함에 따라 주관적 권리 인식 부분을 추가하였음.</td></tr>
</table>

〈수 정〉

문18 / 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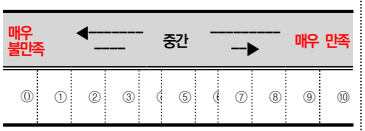
2022(초등학생용)

문18.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2023(초등학생용)

문2.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비 고

문2.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불만족' 수준인지 '만족' 수준인지 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범주명을 변경하였음.

문6 / 문9

2022(초등학생용)

문6.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이나 무시하거나 욕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에 1~2회 이상
부모님 (보호자)으로부터	(1)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2)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3)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4)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2023(초등학생용)

문9.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이나 무시하거나 욕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에 1~2회 이상
부모님 (보호자)으로부터	(1) 신체적 벌(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①	②	③	④	⑤
	(2) 정서적인 공격(모욕적인 말, 욕설 등)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3) 신체적 벌(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①	②	③	④	⑤
	(4) 정서적인 공격(모욕적인 말, 욕설 등)	①	②	③	④	⑤

비 고

문9.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구분이 더 포괄적으로 정의될 수 있도록 신체적인 벌의 예시를 수정 보완하고, 정서적 학대를 정서적 공격(psychological aggression)으로 수정하였음.

문7 / 문10

2022(초등학생용)

문7.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2023(초등학생용)

문10.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맞아 본 경험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비 고

문10.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직관적인 용어로 수정하였음.

2022(초등학생용)	2023(초등학생용)	비 고
문8.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놀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문11.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문11.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직관적인 용어로 수정하였음.
문14.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각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예 : 22시 30분, 23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인 경우'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예 : 9시 0분, 22시 0분 등) ① 일어나는 시각 보통 ☐☐시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각 보통 ☐☐시 ☐☐분	문18.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각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예 : 21시 30분, 22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인 경우'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예 : 9시 0분, 22시 0분 등) ① 일어나는 시각 (기상 시간) 보통 ☐☐시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각 (취침 시간) 보통 ☐☐시 ☐☐분	문18.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추가하였음.
문16.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문20.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가치(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나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문20.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직관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였음.
문20.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문25.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희롱, 특정 신체부위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문25.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직관적인 용어로 수정하였음.

2022(초등학생용)	2023(초등학생용)	비 고
①있다 → 「문20-1」로 가십시오 ②없다 → 「문21」로 가십시오	①있다 → 「문25-1」로 가십시오 ②없다 → 「문26」로 가십시오	
문24.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인가요?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문29. **학교에 가는 날(평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인가요?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문29.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하여 직관성을 높였음.
문27.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32.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32. 최근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사이버)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온라인)로 수정하였음.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① ② ③ ④	
문30.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사람들로부터… / 한번도 없음 / 일 년에 1-2번 정도 / 2-3번 정도 / 한 달에 1-2번 정도 / 1주일에 1-2번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35.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사람들로부터… / 한번도 없음 / 일 년에 1-2번 정도 / 2-3번 정도 / 한 달에 1-2번 정도 / 1주일에 1-2번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35.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아동·청소년들에게 (6) 고향과 지역이라는 용어가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사는 동네라는 용어로 변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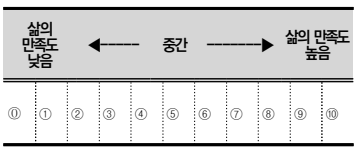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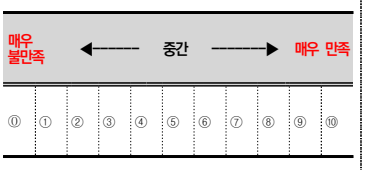
2022(초등학생용)	2023(초등학생용)	비 고
문31. (차별 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36. (차별 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36.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아동·청소년들에게 (6) 고향과 지역이라는 용어가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사는 동네라는 용어로 변경하였음.

나는 주위사람들을…	한번 없음	일 년 1~2번 정도	2~3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 1~2번 정도	1주일에 1~2번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주위사람들을…	한번 없음	일 년 1~2번 정도	2~3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 1~2번 정도	1주일에 1~2번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삭 제〉

문32. **최근 1년 동안** 장애이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장애이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편견과 차별없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인식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입니다. ① 있다 → **문32-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33로 가십시오**	삭제	2022 문32. 문항 수 조정을 위하여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항을 삭제하였음.

2022(초등학생용)	2023(초등학생용)	비 고
문32-1. (문32의 '① 있다'에 응답한 경우) 장애이해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삭제	2022 문32-1 문항 수 조정을 위하여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항을 삭제하였음.
〈순서 변경〉		
문17. 현재 얼마나 행복하나요?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문17-1」로 가세요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문17-1」로 가세요 ③ 행복한 편이다 → 「문18」로 가세요 ④ 매우 행복하다 → 「문18」로 가세요	문1. 현재 얼마나 행복하나요?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문1-1」로 가세요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문1-1」로 가세요 ③ 행복한 편이다 → 「문2」로 가세요 ④ 매우 행복하다 → 「문2」로 가세요	문1.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행복도 문항을 앞쪽으로 순서 변경하였음.
문17-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1-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1-1.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불행한 이유 문항을 앞쪽으로 순서 변경하였음.
문18.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2.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2.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삶의 만족도 문항을 일부 수정 후 앞쪽으로 순서 변경하였음.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변경문항 세부내역(중등용)

<table>
<tr><th>2022(중·고등학생용)</th><th>2023(중·고등학생용)</th><th>비 고</th></tr>
<tr><td colspan="3">〈추 가〉</td></tr>
<tr><td>신규</td><td>문3. 전체적인 본인의 인생과 관련된 아래의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table><tr><th></th><th>0 = 전혀 만족하지 않음 ~ 매우 만족 = 10</th></tr><tr><td>(1)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td><td>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td></tr><tr><td>(2)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td><td>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td></tr><tr><td>(3)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td><td>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td></tr><tr><td>(4)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td><td>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td></tr><tr><td>(5) 나는 내 인생이 좋다</td><td>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td></tr><tr><td>(6) 나는 내 인생에 대해 행복감을 느낀다</td><td>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td></tr></table></td><td>문3.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측정의 다양성을 위해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삶의만족도척도(student life satisfaction scale) 활용</td></tr>
<tr><td>문1. 다음은 의사결정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table><tr><th></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 (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d>문4. 다음은 의사결정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table><tr><th></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5) 부모님(보호자)은 평소 내가 편안히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6) 부모님(보호자)은 평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d>문4.
청소년 대상 프리테스트에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상에서의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을 자체 설계하였음</td></tr>
</table>

2022(중·고등학생용)	2023(중·고등학생용)	비 고
문4.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7.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7.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학교' 혹은 '선생님' 이라는 표현을 '우리 학교나 선생님' 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음. (3)은 표현을 명확히 하여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이 잘못한 일로' 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고, (5)는 학교 내 인권 문제가 징계 시 의견표명권이 있는지로 변화함에 따라 문항을 자체 개발하여 신규로 추가하였음.
문11.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14.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 14. 청소년 당사자 프리테스트 결과 복장검사에는 교복을 잘 착용하였는지, 교복 이외 외투나 운동복 착용을 하였는지에 대해 검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예시를 보완하였음. (4)와 (5)는 최근 학내 소지품 검사 및 제한 이슈가 핸드폰으로 넘어감에 따라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하였음. 핸드폰을 금지당하는 경우와 압수당하는 경우 등이 있어 현황 파악을 위해 이를 구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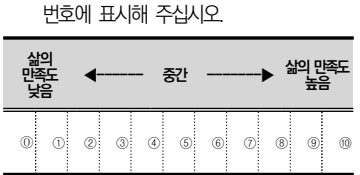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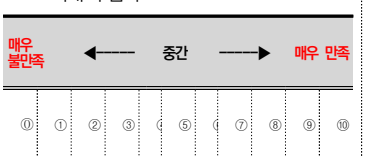
2022(중·고등학생용)	2023(중·고등학생용)	비 고
신규	문21. 각 항목을 잘 읽고 우리 동네 상황에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1) 나는 우리 동네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 우리 동네에는 즐겁게 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많이 있다 — ① ② ③ ④ (3)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동네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 ① ② ③ ④ (4) 우리 지역은 아이들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① ② ③ ④	문.21. 아동·청소년의 주변 환경이 중요하므로 동네에서의 안전, 여가, 사회적 자본, 참여기회 등 동네 환경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음.
신규	문29.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문2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였음.
신규	문30.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다른 사람)이 있나요? (1) 내가 모르는 공부 내용이나 학업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① 없다 ② 있다 (2) 앞으로의 진로나 진학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① ② (3) 학교 가기 어려운 경우, 숙제 등 학교 일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① ② (4) 몸이 아파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① ② (5)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 ① ② (6) 내가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 ① ②	문30.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였음.

<table>
<tr><th>2022(중·고등학생용)</th><th>2023(중·고등학생용)</th><th>비 고</th></tr>
<tr><td>신규</td><td>문31.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tr><th>문 항</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드물게 그렇다</th><th>가끔 그렇다</th><th>항상 그렇다</th></tr><tr><td>(1)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4)*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d>문31.
아동·청소년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였음.</td></tr>
<tr><td>신규</td><td>문31-1. (문31의 (4)*번의 ②, ③, ④인 경우만 응답)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라는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td><td>문31-1.
아동·청소년의 고립 기간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였음.</td></tr>
<tr><td>문36.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tr><th></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d>문41.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tr><th></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6) 모든 인간은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8) 모든 인간은 성정체성과 성적지향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d>문41.
(6)은 남녀의 권리로 한정하지 않고 성별과 상관없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고,
(8)은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음.</td></tr>
</table>

<table>
<tr><th>2022(중·고등학생용)</th><th>2023(중·고등학생용)</th><th>비 고</th></tr>
<tr><td>신규</td><td>문43-1. (위 문항에서 ②, ③, ④, ⑤로 응답한 것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차별을 당한 후 주로 누구에게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u>한 사람만</u> 선택해 주십시오.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_____)</td><td>문43-1.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차별 경험뿐만 아니라 대처 방안에 대해 함께 조사하였음.</td></tr>
<tr><td>신규</td><td>문46.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tr><th>문 항</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나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4)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5)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d>문4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6호 (기후변화 상황에서의 아동권리)의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였음.</td></tr>
<tr><td>신규</td><td>문47.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tr><th>문 항</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인터넷 업체들(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온라인 게임 업체들(닌텐도, 넥슨 등)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우리나라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4)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d>문47.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5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따라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문항 설계가 필요하여 자체 개발하여 추가하였음.</td></tr>
</table>

2022(중·고등학생용)	2023(중·고등학생용)	비 고
신규	문48.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부모님, 선생님, 학교가 나의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개인정보 유출, 불쾌한 메시지 또는 영상 노출, 성범죄, 사기 등)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48.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5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따라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문항 설계가 필요하여 자체 개발하여 추가하였음.
신규	문49. 다음은 다양한 형태의 아동·청소년 권리 목록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다음의 권리들을 얼마나 보장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 보장받지 못한 편이다 / 보통이다 / 보장받은 편이다 /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1)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예. 소지품 검사, 개인신상 노출, 개인정보 유출, 휴대폰 위치추적 등) ① ② ③ ④ ⑤ (2)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예.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① ② ③ ④ ⑤ (3) 교육에 대한 권리 (예. 교육받을 기회, 삶에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 원하는 역량 개발 등) ① ② ③ ④ ⑤ (4) 놀이·휴식·여가에 대한 권리 (예. 놀거나 휴식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 등) ① ② ③ ④ ⑤ (5) 건강에 대한 권리 (예. 신체 건강 및 마음 건강의 유지와 치료 기회 등) ① ② ③ ④ ⑤ (6)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예. 적절한 영양, 의복, 주거 환경 보장, 빈곤으로부터의 보호 등) ① ② ③ ④ ⑤ (7) 사회참여에 대한 권리 (예. 정치적 참여, 집회 참여, 경제적 참여, 사회활동 참여 등) ① ② ③ ④ ⑤ (8) 차별받지 않을 권리 (예. 성별, 나이, 경제적 수준, 장애, 성적 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 보호 등) ① ② ③ ④ ⑤ (9) 의견 표현 및 의견 존중에 대한 권리 (예. 나와 관련된 결정에 의견을 표현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등) ① ② ③ ④ ⑤	문49.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권리 인식 측정이 필요함에 따라 주관적 권리 인식 부분을 추가하였음.

<table>
<tr><th>2022(중·고등학생용)</th><th>2023(중·고등학생용)</th><th>비 고</th></tr>
<tr><td>신규</td><td>문50.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1) 현재 본인이 지닌 권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table><tr><th>문 항</th><th>매우 낮음</th><th>약간 낮은 편임</th><th>보통임</th><th>약간 높은 편임</th><th>매우 높은 편임</th></tr><tr><td>내가 지닌 권리 수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table>(2)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table><tr><th>문 항</th><th>매우 낮음</th><th>약간 낮은 편임</th><th>보통임</th><th>약간 높은 편임</th><th>매우 높은 편임</th></tr><tr><td>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table>(3)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은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tr><th>문 항</th><th>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함</th><th>약간 부정적으로 변화함</th><th>변화 없음</th><th>약간 긍정적으로 변화함</th><th>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함</th></tr><tr><td>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변화 (3년간)</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table>(4) 앞으로 3년 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table><tr><th>문 항</th><th>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임</th><th>약간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임</th><th>변화 없을 것임</th><th>약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임</th><th>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임</th></tr><tr><td>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예측 (3년 후)</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table></td><td>문50.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권리 인식 측정이 필요함에 따라 주관적 권리 인식 부분을 추가하였음.</td></tr>
<tr><td colspan="3">〈수 정〉</td></tr>
<tr><td>문25.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d><td>문2.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d><td>문2.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불만족' 수준인지 '만족' 수준인지 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범주명을 변경하였음.</td></tr>
</table>

2022(중·고등학생용)	2023(중·고등학생용)	비 고
문12.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15.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이나 무시하거나 욕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15.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구분이 더 포괄적으로 정의될 수 있도록 신체적인 벌의 예시를 수정 보완하고, 정서적 학대를 정서적 공격(psychological aggression)으로 수정하였음.
문13.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16.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16.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직관적인 용어로 수정하였음.
문14.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17.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17.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직관적인 용어로 수정하였음.

<table>
<tr><th>2022(중·고등학생용)</th><th>2023(중·고등학생용)</th><th>비 고</th></tr>
<tr><td>문16-3. 가출했을 당시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td><td>문19-3. 가출했을 당시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② 만족하지 않았던 편이다
③ 만족했던 편이다
④ 매우 만족했다</td><td>문19-3.
질문의 시제에 맞추어 과거형으로 수정하였음.</td></tr>
<tr><td>문20. <u>학교에 가는 날(평일)</u> 일어나는 시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각은 모두 <u>24시간 기준</u>으로 기록해 주세요(예 : 22시 30분, 23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인 경우'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예 : 9시 0분, 22시 0분 등)

① 일어나는 시각 보통 □□시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각 보통 □□시 □□분</td><td>문24. <u>학교에 가는 날(평일)</u> 일어나는 시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각은 모두 <u>24시간 기준</u>으로 기록해 주세요(예 : 21시 30분, 22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인 경우'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예 : 9시 0분, 22시 0분 등)

① 일어나는 시각 (가상 시간) 보통 □□시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각 (취침 시간) 보통 □□시 □□분</td><td>문24.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추가하였음.</td></tr>
<tr><td>문23.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u>최근 1년 동안</u>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나는…</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6)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d>문27.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u>최근 1년 동안</u>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나는…</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가치(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6) 나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d>문27.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직관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였음.</td></tr>
<tr><td>문27-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u>최근 1년 동안</u>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u>얼마나 자주</u> 경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td><td>문32-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u>최근 1년 동안</u>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u>얼마나 자주</u> 경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td><td>문32-1.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예시를 수정하였음.</td></tr>
</table>

2022(중·고등학생용)	2023(중·고등학생용)	비 고

	없다	1~2번	3번 이상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①	②	③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①	②	③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①	②	③
(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①	②	③
(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①	②	③
(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①	②	③
(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①	②	③
(8)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①	②	③
(9) 최저임금(2021년 기준 시간 당 8,720원, 2022년 기준 시간 당 9,16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①	②	③

	없다	1~2번	3번 이상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①	②	③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①	②	③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①	②	③
(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①	②	③
(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①	②	③
(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①	②	③
(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①	②	③
(8)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①	②	③
(9) 최저임금(2022년 기준 시간 당 9,160원, 2023년 기준 시간 당 9,62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①	②	③

문28.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 「문28-1」로 가십시오 ②없다 → 「문29」로 가십시오	문33.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희롱, 특정 신체부위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 「문24-1」로 가십시오 ②없다 → 「문25」로 가십시오	문33.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직관적인 용어로 수정하였음.
문32.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문37. **학교에 가는 날(평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문37.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하여 직관성을 높였음.
문35.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문40.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문40. 최근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사이버)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온라인)로 수정하였음.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①	②	③	④

2022(중·고등학생용)	2023(중·고등학생용)	비 고
문38.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43.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43.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아동·청소년들에게 고향과 지역이라는 용어가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사는 동네라는 용어로 변경하였음.
문39.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44. **(차별 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44.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아동·청소년들에게 고향과 지역이라는 용어가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사는 동네라는 용어로 변경하였음.

나는 주위사람들로부터…	한번 없다	일 년에 1~2번 정도	2~3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1주일에 1~2번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주위사람들로부터…	한번 없다	일 년에 1~2번 정도	2~3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1주일에 1~2번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022(중·고등학생용)	2023(중·고등학생용)	비 고

나는 주위사람들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주위사람들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 주 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삭 제〉

문40. **최근 1년 동안** 장애이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장애이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편견과 차별없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인식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입니다.

① 있다 → **「문40-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41」로 가십시오**

삭제

2022 문40. 문항 수 조정을 위하여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항을 삭제하였음.

2022(중·고등학생용)	2023(중·고등학생용)	비 고
문40-1. (문40의 '① 있다'에 응답한 경우) 장애이해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삭제	2022 문40-1. 문항 수 조정을 위하여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항을 삭제하였음.
〈순서 변경〉		
문24. 현재 얼마나 행복하나요?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문24-1」로 가세요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 「문25」로 가세요 ④ 매우 행복하다	문1. 현재 얼마나 행복하나요?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문1-1」로 가세요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 「문2」로 가세요 ④ 매우 행복하다	문1.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행복도 문항을 앞쪽으로 순서 변경하였음.
문24-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1-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1-1.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불행한 이유 문항을 앞쪽으로 순서 변경하였음.
문25.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삶의 만족도 낮음 ← 중간 → 삶의 만족도 높음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 중간 → 매우 만족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삶의 만족도 문항을 일부 수정 후 앞쪽으로 순서 변경하였음.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문 및 최종견해(1~6차)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영역 Ⅰ-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일반이행조치(협약 4조, 42조, 44조 6항)** 1차보고서 심의시 권고사항 이행 미비 분야 7. 위원회는 최초보고서(CRC/C/8/Add.21) 심의 후에 채택된 권고의견의 권고사항(CRC/C/15/Add.51, 1996.2.13), 특히 아래와 같은 문제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a) 유보철회 (19항) b) 여자아동, 장애아동, 혼외출생아동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공공교육캠페인의 개발 (20항) c)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 대한 아동의 참여촉진 (26항) d)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22항) e) 협약 29조에 규정된 교육의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책의 검토 (29항) 8. 위원회는 기존의 우려를 반복하며, 최초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에 포함된 권고사항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이번 2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에 포함된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A. 일반이행조치(협약 4, 42, 44(6)조)** 위원회의 기존 권고사항 6. 위원회는 당사국의 2차 보고서(CRC/C/70/Add.14, 2002년 6월 26일),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1차 보고서(CRC/C/OPSC/KOR/CO/1, 2008),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1차 보고서(CRC/C/OPAC/KOR/CO/1, 2008)를 심의하여 작성한 위원회의 우려 및 권고사항(CRC/C/15/Add.197, 2003년 3월 18일)의 일부를 해결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우려 및 권고사항의 일부가 불충분하게 다뤄지거나 전혀 다뤄지지 않았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7.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권고사항,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의 설립, 체벌의 전면적인 금지, 그리고 아동이 겪는 고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 검	**A. 일반이행조치(협약 제4, 42, 44(6)조)** 유보 6.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21조 (a)항의 유보를 철회한 것을 환영하며, 제40조 (2)항(b)(v)조의 유보철회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법 제정 7. 낙태 금지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을 선언하며 2020년까지 낙태 관련 법률 검토를 정부에 요청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위원회는 해당 법률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사법부,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의 협약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그들이 재판절차에 협약을 인용하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유보철회 9. 위원회는 제9조 제3항, 제21조 가항, 제40조 제2항 나호 (5)에 대한 당사국의 유보를 매우 우려한다. 10. 위원회는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소년들이 상소권을 갖고 있음을 주목해 당사국이 가능한 빨리 제40조 제2항 나호 (5)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에 일치해 제21조 가항과 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면접권을 보장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입양에 대한 일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입 법 11. 위원회는 국내법령 개정 실적에 주목하면서도 국내법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12.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내법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합하도	토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유보 8.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9조 3항에 대한 유보를 2008년 10월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입양은 주무당국의 소관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을 최대로 고려하도록 보장한다는 21조 (a)항에 대한 유보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이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법에 따라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40조 2항 (b)(v)에 대한 유보를 유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9. 위원회는 협약의 완전한 적용에 장애가 되는 21조 (a)항과 40조 2항 (b)(v)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입법 10. 위원회는 당사국 헌법이 협약을 국내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의	8.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채택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이러한 아동 관련 정책 및 전략이 협약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계획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할당을 보장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조정 9. 위원회는 당사국이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의 할당, 영구적 사무국 설치 및 아동권리 조정기구로서 위원회의 인지도 증진을 통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조정에 관한 이전 권고(CRC/C/KOR/CO/3-4, para. 13)를 상기하며, 아동권리 사안을 다루는 모든 관계 기관들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자원의 할당 10. 교육, 영유아기 및 아동복지 사업 영역의 예산 증가와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당사국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조 정 13. 위원회는 아동국가행동계획이 제8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1998-2002)에 포함된 점을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아동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정부 내 다양한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총괄 조정하는 상설중앙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14.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2002년 5월 유엔아동특총 및 아동특총결과문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 약속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2001년 마련된 어린이보호육성계획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는 중앙상설기구를 마련하고, 이 기구가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재정적,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공공기관에 의한 협약이행 점검	전반적인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법규가 불충분하고 당사국 법원이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한정된 예외상황 이외의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임신한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을 안전하지 않은 불법낙태 및/또는 학업중단 강요 및/또는 아이 입양 강요 등의 위험에 노출시켜 임신한 청소년이 처한 난국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한다. 11. 위원회는 추가적인 관련 법 제정을 포함,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낙태관련 법률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전면적으로 합치하도록 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여기에는 청소년 미혼모가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고, 불법낙태의 위험과 아이를 입양시키라는 강요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조정 12. 본 위원회는 당사국 내 협약이행 업무의 조정이 저하되었음을 우려하며, 이	의 아동 관련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 수립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9호(2016)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a)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입법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정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고, 그렇게 할당된 자원의 활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실행할 것 (b) 아동을 위한 예산 및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을 GDP에 비례하여 증가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 (c)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예산 할당을 도입할 것 (d) 현존하는 아동·청소년 의회 및 참여 위원회를 포함하여, 예산수립 과정에서 아동참여를 강화할 것 (e) 아동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는 부문의 재화 및 용역(상품과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고, 뇌물수수나 특혜, 불규칙한 지급 등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15. 위원회는 대표단이 아동권리협약 이행 평가를 위해 정부 내에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 16.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평가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협약 이행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독립적인 점검 17. 위원회는 5항에서 언급한 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하지만, 이 위원회가 아동권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18.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유엔총회 결의 48/134) 및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국가인권위원회에 최소한 1인의 아동권리전문가로 위원을 두거나 아동권리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한다. b) 아동에게 친근한 태도로 아동이 제기하는 청원을 접수, 조사, 대처하는 국가인권위의 기능을 널리 알림으로써 아동이 국가인권위에 쉽게 접근할 수	는 무엇보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2008년 이래 운영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각기 다른 정부부처에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이 이행되어 정책분절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위원회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발족에 주목하나, 청소년 정책조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여전히 우려한다. 1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하여 강화하고, 오히려 가급적이면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적절한 관련기구를 수립하라. b)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간, 그리고 관계 국가 및 지역 단체간 아동권리 관련 기능 및 관계를 명확히 하라. 이 과정에서 협약의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이 취하는 모든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라. 국가행동계획 14. 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7-2011이 2007년 5월에 채택된 것을	며, 공공조달 절차에서 책무성을 제고할 것 자료 수집 11.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2003)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협약 전 분야에 걸쳐 연령, 성별, 장애(disability status), 지리적 위치, 출신민족 및 출신국적,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주 배경 등에 따라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중앙화된 시스템(centralized system) 구축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독립 모니터링 12.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적 국가 인권 기구의 역할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2002년)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아동권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할 것 (b) 아동권리위원회의 진정 접수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할 것 (c) 정부 당국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있도록 보장한다. 재원배분 19. 위원회는 특히 보건과 교육분야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아동 관련 중앙예산이 최근 2년간의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후 점점 줄어들어 왔음을 우려한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지출은 전국 및 지방차원에서 아동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우선적으로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예산배분정도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20.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협약 4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a) 어린이, 특히 소외계층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가용자원 내에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b) 사용된 예산의 효과와 비용을 감안한 각 분야의 아동 대상 서비스의 접근성, 질,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공/민간/비정부부문에서 아동을 위해 쓰인 국가 예산의 규모와 비율을 확인한다.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포괄적이고 권리기반의 아동관련 국가행동계획의 결여를 계속하여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 계획 만료 후를 위한 후속 국가행동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15. 위원회는 당사국이 관련 파트너들과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협약의 전 부문을 다루는 아동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할 것과, 이를 위해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및 감시체제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덧붙여, 위원회는 시민사회 및 아동과 투명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2011년 이후 후속 국가행동계획 준비를 신속히 시작하도록 촉구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 명명된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 문서 및 중간평가 보고서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독립 모니터링 16. 위원회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설립 및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위촉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 제도가 국가적 수준에서 협약의 이	도를 제고할 것 (d) 정책권고의 이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할 것 (e)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것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13.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협약에 대한 인식도가 특히 아동들에게 낮다는 점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인권교육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절한 자원 할당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아동권리교육 및 인권교육을 보장하고,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무적 훈련을 제공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국제협력 14. 위원회와 당사국간 대화에서 제공된 정보로서, 당사국이 향후 10년간 공적개발원조(ODA)를 증액할 계획이라는 점을 환영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17.2를 감안하여 위원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통계수집 21. 위원회는 당사국이 서면답변서를 통해 기존 통계수집체계가 18세 미만 아동에 관한 통계를 협약의 전분야에 걸쳐 수집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 데 대해 공감하며, 아동권리지표 개발계획에 주목한다.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18세 미만 전체 아동에 관한 항목별 통계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수집된 통계를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수립, 이행점검, 평가에 사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협약 이행 진전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지표 개발을 가능한 빨리 완료할 것을 권고한다. 민간부문과의 협력 23. 위원회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당사국[정부]와 시민사회간 협력을 주목하지만, 필요한 기준설정이 부족한 점과 정책결정 및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행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제대로 작동하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a)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법적 지위를 갖추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 받음. b)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이 적극적으로 아동권리위반을 감시 및 조사하고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없음. c)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임무권한은 당사국이 시행하는 연례성과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위원회는 또한 2009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21% 축소된 것과 이전의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 전문화를 이루지 못한 것에 우려한다. 17.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명확한 임무권한을 갖도록 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과 센터와 옴부즈퍼슨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협약위반을 감시 및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독립적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회는 당사국이 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한다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그러한 원조가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아동권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당사국 및 해당 개발 협력 상대국에 대한 본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국제개발원조 정책과 사업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 평가에 적절히 통합할 것을 권장한다. 아동권리와 기업부문 15. 위원회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국내외 경영활동으로 인해 아동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 영역의 영향 관련 국가 의무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6호(2013),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및 이전의 권고(CRC/C/KOR/ CO/3-4, para. 27)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child protection framework)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아동권리 침해를 보고하고 해결할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우려한다. 24. 위원회는 협약이행을 위한 협력자로서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당사국이 전국 및 지방차원에서의 정책 수립, 협약 이행에 관한 향후 국가보고서 초안 작성 등 협약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2002년 '아동 권리 이행에 있어서 민간서비스제공자의 역할에 관한 일반토의의 날'(CRC/C/121 참조)에 제기되었던 권고의견을 고려하고 특히 아동관련 민간사업단체의 등록과 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한다. 협약홍보 25. 위원회는 아동, 일반국민, 아동관련 전문가들이 협약과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잘 알고 있지 못한 점을 우려한다. 26. 위원회는 아동 권리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의 활동에 주목하지만, 협약 42조 및 44조에 따라 당사국이 협약 및 협약이행보고서	더 나아가,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호(2002)를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지속성 및 아동권리 관련 전문성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자원의 할당 18. 위원회는 사회분야 이행에 배정된 재원이 2008년 대비 16.5% 증가했음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이용가능한 재원 대비 현재 배정된 재원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라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2009년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 부분에서 26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재원의 수준에 있어 지역 당국간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19.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정도 및 OECD 수준에 좀더 걸맞도록 협약이행을 위해 배정된 재원 수준을 검토하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아동권리 실현과 보호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B. 일반원칙 (협약 제2, 3, 6, 12조)** 비차별 16. 위원회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조치를 환영하나,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안 채택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려한다. (a) 농어촌지역 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 아동, 이주 아동, 다문화 가정 아동, 탈북 아동이 출생신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이용,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복지, 여가 및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체계 접근에 차별을 경험하는 것 (b)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이 학교에 만연해 있는 것 (c) 한부모 가정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 (d)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홍보 의무를 갖고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일반국민,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b) 아동관련 전문가(특히 교사, 판사, 의원, 경찰 등 사법집행관련 공무원, 일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아동수용시설 종사자, 정신과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종사자,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2. 아동의 정의 (협약 1조)** 27. 위원회는 혼인가능최소연령의 남녀차이(여자 16세, 남자 18세)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28. 위원회는 여자아동의 혼인가능연령을 남자아동의 혼인가능연령까지 높이라는 기존 권고의견을 반복한다. **3. 일반 원칙(협약 2조, 3조, 6조, 12조)** 29. 위원회는 협약의 일반원칙[무차별(2조), 아동의 최상의 이익 존중(3조), 생명발달권(6조),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증가시켜라. b) 아동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고 지역당국 및 지리적 위치에 따른 아동간의 격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의 관점으로 재원배정을 평가하라. 이를 위해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필요 정도를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아동권리관련 항목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분야에 대해 재정배분을 설정하라. c) 국가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 아동권리접근법을 활용하라. 즉 예산 내 아동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및 사용을 추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아동을 위한 투자의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 위원회는 또한 분야별 투자가 어떻게 "아동의 최상의 이익원칙"에 부합하는 지를 가늠하는 영향평가에 이 추적체계를 활용하여, 투자효과에 있어 여아 및 남아 간의 차이를 측정하도록 촉구한다. d) 가능하다면, 재원배정의 효과를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기반 예산수립을 도입하라는 유엔권고안을 따르라. e) 특히 아동을 포함하는 공개대화를 통	거한 차별 사례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과 당사국이 성소수자(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persons) 관련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를 인정한 상황인 것 (CRC/C/KOR/5-6, para. 36). 17.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0.3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 법이 출신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전략을 시행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중 캠페인을 시행할 것 (b)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출생시 등록되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아동의 견해 존중(12조)]이 국가 및 지방차원에서의 입법, 정책,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점을 우려한다. 30.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아동 관련 법령에 이들 일반원칙을 적절히 통합한다. b)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치적, 사법적, 행정적 결정과 사업에 이 원칙을 적용한다. c) 모든 수준에서의 정책 입안·결정과정 및 사회복지, 보건, 교육당국, 법원, 행정당국에 의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에 이 원칙을 적용한다. 무차별원칙 31. 위원회는 정부보고서에 인종차별에 관한 정보가 없고, 한부모가정자녀,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여자아동, 이주가정자녀 차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협약이 규정한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견해, 민족, 장애, 출생 등에 기반한 차별금지를 당사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 32. 위원회는 협약 2조에 규정된 모든 종류	해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제도를 보장하라. f) 사회적 약자 우대 조치를 필요로 하는 빈곤 혹은 취약계층 아동, 예를 들어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위한 전략적인 예산 방안을 수립하고, 경제위기, 자연재해 또는 다른 긴급상황에서도 이 예산이 지켜지도록 하라. g) "아동권리를 위한 재원 – 국가의 책임"에 관한 2007년 일반논의의 날에서 도출된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하라. 자료수집 20. 위원회는 당사국의 자료수집방법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협약의 범주에 포함되는 분야별로 자료가 나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의 상대적 빈곤과 극심한 빈곤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당사국에 존재하나, 빈곤아동에 대한 자료가 없고 빈곤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 및 예산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한다. 21. 위원회는 협약의 전 분야를 아우르며, 무엇보다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	(c) 학교에서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고 근절할 것 (d) 양육비 접근 등에 있어 모든 가정에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 및 관행을 점검할 것 아동의 최선의 이익 18.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제도 수립을 환영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2013)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모든 관련된 재판 절차, 의사결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반영하며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이전의 권고들을 당사국에 상기시킨다. 또한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폭넓은 아동 참여와 함께 아동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확장할 것 (b)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고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는 절차 및 기준을 개발할 것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의 차별금지를 명시하는 입법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특히 한부모가정자녀, 혼외출생자녀, 장애아동, 이주자 자녀, 여자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교육, 문제인식 캠페인 등 행동지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3. 위원회는 협약 제29조 제1항에 관한 일반논평 1호를 고려하여, 차기 보고서에 2001년 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및 행동계획의 이행노력 중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조치와 사업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아동의 견해 존중 34.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가 가정, 학교, 기타 기관 및 사회 일반에서 아동의 견해 존중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35. 위원회는 협약 12조에 따라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법원, 행정기관, 학교,	회경제적 배경 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설립할 것을 대한민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자료에서 포착될 수 있는 경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과과정에 인권 내용을 부분적으로 포함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아동, 일반 대중, 그리고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 사이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23. 위원회는 인식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의 방안을 취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a)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시켜라. b)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하라. c)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하라. 국제협력	19. 위원회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수립에 주목하는 한편, 대한민국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인 높은 아동 자살률, 특히 가정 문제, 우울증, 학업 부담, 집단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현상 및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예산이 부재하다는 점과 함께,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우려한다. (a) 가습기 살균제가 초래한 건강상 피해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 (b) 학교 및 보육환경(childcare settings)의 미세먼지 및 석면에 대한 불충분한 모니터링 (c)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수많은 건강 피해 및 피해자들에 대한 불충분한 구제와 배상. 20. 위원회는 앞서 권고했듯, 포괄적 정책, 심리적·교육적·사회적 조치, 아동 및 가족, 나아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통해 아동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다음을 권고한다. (a) 가습기 살균제가 초래하는 건강상 피해를 조사할 것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교육제도내 징계절차에서 아동의 의견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필요조치를 취한다. b)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존중받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교육적인 정보를 부모, 교육자, 공무원, 판사, 일반시민들에게 제공한다. c) 정기적으로 아동 의견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의견 존중이 정책, 사업,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	24. 대한민국이 점진적으로 국제원조에 대한 기여를 증가시켜 왔음을 인식하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민총생산(GNP) 대비 국제원조 기여가 약 0.13%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당사국이 2015년까지 도달하기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국민총생산 대비 0.7%라는 목표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조 목표인 국민총생산 대비 0.7%에 2015년까지 도달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넘어서도록 독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과 체결하는 국제협력협약에서 아동권리의 실현을 중요 우선순위가 되도록 할 것을 권장하며, 이 과정에서 협약 상대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권리와 재계 26. 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인 당사국 재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환영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재계는	(b) 모든 보육환경(childcare settins) 및 교육환경의 실내 공기 질 및 유해물질 노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 (c)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동에게 충분한 구제와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화학물질 관리 및 유해물질 관련 사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아동의 견해 존중 21. 위원회는 현재 발의된 가사소송법안(2017)이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도 의견진술권을 확대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아동의 참여는 여전히 선택적이고, 특정 주제에 제한되며, 학업 성적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동이 의견을 진술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2호(2009)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아동의 견해가 그들과 관련된 가정, 학교, 법원 및 관련 행정 절차와 기타 절차에서 정당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하며, 이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학업 성적과 상관없이 학교 내 모든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환경문제에만 집중하는 듯 하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 중 특히 노동기준 및 최저임금을 다루는 부문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나, 당사국 영토 내 혹은 해외에서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및 경감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체제의 부재를 지적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의 우려사항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a)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의회가 강제아동노동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아동권리 위반에 연루된 상황이다. b) 당사국 기업들은 여러 국가에서 무엇보다 주거의 권리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지임대계약을 체결 중이거나 체결할 계획이라고 보고되었다. c) 당사국이 이미 체결했거나 체결을 고려중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 전에 인권영향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 "보호, 존중, 구제" 체계 보고서를 채택한 유엔인권이사회의 2008년 결의안 8/7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설 실무그룹에 지시한 2011년 6월 16일 결의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 (b) 이전에 권고했듯이(CRC/C/KOR/3-4, para. 35(a))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도록 보장할 것 (c) 발의된 가사소송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안 14/7은 기업과 인권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모두 아동의 권리가 포함될 것을 언급하며, 이에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대한민국 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외 운영활동 중 공급망이나 계열사에 의해 발생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법 체제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기업사회책임 모델의 도입을 더욱 촉진하라. 여기에 보고를 위해 아동권리 지표와 매개변수가 포함되도록 장려해야 하며, 기업이 아동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b) 상품 유입을 감시하여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고 무역협정 및 국내법을 활용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라. c) 기업이 해외 사업에 참여시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업이 토착민이나 인권 및 아동권리에 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 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행하는 해외 정부와 협력하라.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d)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 전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인권평가를 실시하고 인권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하라. **B.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 비차별 28.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안이 2007년 12월 국회에서 검토되지 않고 폐기된 것과 차별의 법률적 정의가 성적지향 및 국적에 기반한 차별 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유감을 표시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에 다양한 형태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러한 차별의 대상에는 다문화 또는 이주노동자 가정, 탈북자가정, 난민가정 출신 아동 및 장애 아동과 미혼모, 특히 청소년 미혼모가 포함되며, 이들은 국가지원 조치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 2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a) 협약 2조에 완전히 합치되는 법률의 채택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b) 인식제고 및 대중교육 캠페인을 비롯,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c)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 미혼모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라.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30.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4년 자살예방 기본계획 등을 통해 청소년과 아동 자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심각하게 높은 자살률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31.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아동의 가정 내에서 그리고 교육제도 하에서 아동의 자살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당사국에 촉구하며,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적, 행정적 방안 이행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정책과 방안에 충분한 예방조치와 후속절차가 포함되고, 모든 관련 아동에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의 사회복지요원이 지원되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아동관련 법령 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고, 아동 관련 사법, 행정결정 및 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 본 원칙이 드물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한다. 33. 위원회는 당사국 내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행정, 사법절차 및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모든 사법, 행정 결정의 법적 추론도 이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아동견해의 존중 34. 아동 및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회의를 개최한 것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상의 절차나 사회적 태도 모두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그들 자신의 견해,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계속하여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우려를 표명한다. 35. 위원회는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12조에 합치하도록 다음의 사항을 제시한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a)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라.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구와 법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아동의 청문권이 촉진되고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도록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b)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사회에 아동의 청문권과 아동의 의사가 고려될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라.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d) 아동의 청문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2009년)를 고려하라.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영역 Ⅰ-2. 시민적 권리와 자유		**4. 시민적 권리와 자유(협약 7조, 8조, 13-17조, 37조 (a)항)** 표현과 결사의 자유 36.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교외 정치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초중등학교 운영규칙 때문에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10대 청소년이 만든 인터넷게시판이 당국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폐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한다. 37. 협약 제 12조~제17조에 비추어, 위원회는 아동들이 학교 내외에서 정책결정 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법령과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학교운영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체 벌 38. 위원회는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점에서 체벌이 아동권리협	**C. 시민권과 자유 (협약 7, 8, 13-17, 19, 37(a) 조)** 출생신고 36. 위원회는 당사국의 현 법률 및 관습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물학적 부모가 보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데 있어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양부모나 정부당국요원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 미혼모 관련 상황을 포함, 적절한 사법감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입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 망명희망자, 또는 비정규 이주 상태의 사람에게는 출생신고가 사실상 또는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한다. 37. 협약 7조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모의 법적 지위 및/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이러한 과정에서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정확히 명시되도록 보장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촉구한다.	**C. 시민권과 자유 (협약 제7, 8, 13-17조)** 출생등록 22. 위원회는 온라인 출생신고 및 통보제도 도입을 환영한다.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6.9를 감안하여,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b)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미혼부가 그들의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 (c)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d)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정체성에 대한 권리 23.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약의 원칙과 조항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의견 참조, E/C/12/1/Add.79, 36항). 교육부가 학교에서의 체벌사용 여부를 개별학교의 재량에 맡긴다는 사실은 일정한 형태의 체벌이 허용되고 있으며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의 징벌을 장려하기 교육적 조치들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의미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관련 법령과 학교운영규칙을 개정, 가정·학교·기타 시설에서의 체벌금지를 명시하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b) 체벌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해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의 해악에 관한 공공교육캠페인 실시 c)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을 대신하는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내 의무종교교육을 금지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보나, 실제로는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계속하여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러한 학교에 자발적으로 입학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학생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현 계획안이 종교의 다양성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충분히 촉진하지 않고, 식단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비롯, 특정 종교를 가진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더 나아가 협약 14조 3항에 따라 실제로 그리고 모든 경우에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전적으로 존중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또한 종교적 다양성의 존중을 촉진하고 식단조건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특정 종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약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분위기의 형성을 이러한 조치의 목적으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24. 위원회는 모든 아동이 학업성적과 상관없이,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당사국에 재차 권고한다. 또한 아동참여를 증진하고, 현재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 25. 위원회는 학교가 학업성적, 징계조치와 같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에 주목한다. 이에 위원회는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협약 제16조에 따라 법과 실제에서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40. 위원회는 과거 권고사항(CRC/C/15/Add.197, para.37)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여전히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도시 및 농촌지역 아동들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41.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반복하며, 협약 12조부터 17조에 비추어 당사국이 법률, 교육부 발행 지침 및 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아동이 교내 등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촉구한다. 체벌 42.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돌봄 환경에서 체벌이 여전히 성행한다는 과거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우려사항(CRC/C/15/Add.197, para. 38)을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라. 그리고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라. c)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44. 위원회는 당사국 내 육체적, 정신적 아동학대 및 방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내 괴롭힘의 빈도와 정도가 증가해왔다는 것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위원회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을 환영하나, 그 수가 제한적이며 재원과 인력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의 와상 후 지원 및 재활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45.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자의 신원 및 안전을 고려하는 적절한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교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 아동학대 및 방임을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하라. b) 지역 시설을 포함, 더 많은 보호기관을 설립하고,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와상 후 지원 및 재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이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하라. c)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2011)를 고려하라. 46. 유엔사무총장의 아동폭력보고서(A/61/299)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독려한다.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a)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의 이행을 비롯, 성별에 특히 유념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를 우선시하라. b) 특히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강조한 다음의 사항을 비롯하여,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다음 정기 보고서에 포함하라. (i)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국가 전략의 개발 (ii)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의 도입 (iii) 자료 수집, 분석, 보급 체계 통합 및 아동폭력관련 연구의제 통합 c)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세계보건기구(WHO) 및 기타 관련 기구,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비정부기관 파트너와 협력하고 이들 기구의 기술적 지원을 구하라.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영역 I -3. 폭력 및 학대				**D. 아동에 대한 폭력 (협약 제19, 24(3), 28(2), 34, 37(a), 39조)** 체벌을 포함한 폭력 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수 증가, 심리치료사 전문인력 증원은 환영하지만,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한다. (a) 온라인 폭력 및 학교폭력을 포함한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 (b) 가정 내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 부재로 인한 높은 재학대 발생률 (c)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이라는 점 (d) 아동학대의 과소보고 (e) 아동학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 (f)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 및 전략의 부재 (g)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상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담사, 심리학자, 변호사의 부족 (h) 학대 피해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지원 부족 27.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3호(2011), 신체적 체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8호(2006),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 종식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6.2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할 것 (b)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 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d)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교내 비폭력 의사소통 및 갈등중재를 증진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양육 형태를 촉진할 것, 폭력과 학대신고를 장려할 것 (e)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것, 신고 지침을 수립할 것, (f)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 (g)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 (h)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28.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성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적 조치, 그리고 재범 감소를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a) 성폭력 및 학대가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온라인 아동 성매매 및 그루밍과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급증하였다는 점 (b) 만 13세 이상인 아동은 동의능력 있다고 간주되어,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점 (c)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고려되는 아동("대상아동")이 범죄자로 취급되며, 법적 조력 및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금과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성적 착취를 당해도 신고를 단념하게 된다는 점 (d)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범죄자에게 보호관찰을 포함한 관대한 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a)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b)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 (c)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 (d) 성매매 및 성적학대에 연관된("대상아동") 모든 아동, 다시 말해 만 18세 미만의 모든 개인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 "보호처분" 폐지, 지원서비스 및 법적 조력 제공,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여,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할 것 (e) 학교를 포함하여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한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 (f) 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범죄자들이 강요의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되고,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유해한 관행 30. 위원회는 이민자 공동체 내에서 아동의 결혼이 부모 동의만으로 승인될 수 있고, 그러한 이주 여아 및 외국인 여아의 결혼사례가 보고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예외 없이 조혼(child marriage)을 금지하고, 출신국과의 협력, 이민자 및 난민을 위한 공적 등록 절차(civil registration procedures) 개설 등 이러한 관행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영역 I-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협약 5조, 18조 1, 2항, 19-21조, 25조, 27조 4항, 39조)** 대안양육 40.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족과 분리된 아동을 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그룹홈을 설립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룹홈과 위탁양육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사설양육기관이 정부 규제나 정기적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41.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D. 가정환경과 대안돌봄(협약 5, 18(1-2), 9-11, 19-21, 25, 27(4) 및 39조)** 가정환경상실아동 47. 위원회는 요보호아동에게 가족과 같은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과 이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건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대안돌봄시설에 대한 평가는 오직 행정운영만을 평가하며, 보육, 보육담당자의 기술과 이들에 대한 훈련, 그리고 아동에 대한 처우의 질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하며 지적한다. 나	**E.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협약 제5, 9-11, 18(1) 및 18(2), 20-21, 25, 27(4)조)** 가정환경 31. 위원회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더불어 무상보육, 맞벌이 부모의 유연근무제, 부(父)의 육아휴직 및 한부모가족 지원이 확대된 것을 환영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하여, 돌봄 서비스의 범위와 적절한 유연성을 늘리고,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a) 특히 위탁양육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상담·지원제도를 증대함으로써 그룹홈과 위탁양육 확장 b) 아동의 의견 존중 및 최상의 이익보호를 염두에 두고, 가능한 경우 가정환경으로 재통합할 수 있도록 아동의 공공·민간 시설수용을 정기적으로 조사 c) 사회복지사의 수를 늘리고 대안양육이 되고 있거나 취약가정에 있는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입 양 42. 위원회는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문화전통이 압도적이서 국내입양이 당국의 허가나 개입없이 주선될 수 있으며, 입양 주선에 있어서 해당 아동의 의사나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반드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해외입양이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지난번 권고의견에서와 같이 당사국이 국가간입양에 관한 1993년 헤이그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 43. 위원회는 지난번 권고의견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반복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	아가, 위원회는 이러한 시설 내 학대 및 방임사건을 다루기 위한 진정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하며, 부모와 연락이 끊긴 아동을 위한 추적제도의 부재에도 우려를 표한다. 4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서비스의 질,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권리 등에 대해 받는 정기적인 교육, 공립 및 사립 대안돌봄기관 내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유형을 협약 25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b)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진정접수, 조사 및 기소제도를 보장하고, 학대 피해자들이 진정절차, 상담, 진료 및 필요한 다른 회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c) 대안돌봄 환경 내 아동이 부모를 찾거나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한다. d) 2009년 11월 20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 대안 돌봄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하라. 입양	이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및 재정적 지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부(父)의 육아휴직 접근성 및 이용을 보다 촉진할 것 (c) "면접교섭센터" 설치 확대 및 기타 대안적인 해결책 마련을 포함하여, 이혼 가정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할 것 (d) 양육비에 대한 접근 및 양육비 이행을 촉진 및 보장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 (e)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양육비 지원 자격도 그에 따라 개정할 것 가정환경 상실 아동 32. 당사국이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유엔총회 결의안 64/142, 부록)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가능한 한 모든 아동들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a)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 특히 21조에 완전히 부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국내/해외입양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b) 1993년 헤이그협약 비준 아동학대와 방임 44. 위원회는 아동학대와 방임사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각지에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아동학대사건 진정을 효과적으로 접수하고 대처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가 없는 점을 우려한다. 45.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a) 신고된 아동학대·방임사건을 접수, 감독,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에게 친근한 방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국가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법령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와 관련 경찰 등 사법집행인원, 사회복지사, 검사들에 대한 훈련 실시 b) 개입이나 처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의 희생자와 가해자 모	49. 위원회는 발효되면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도록 한 당사국의 입양특례법 및 민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본안이 발효되기 전 과도기간의 아동입양의 경우에 대해 염려하며, 다음의 사항에 여전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 a) 명시적으로 임무권한이 부여된 입양 관련 규제감독 중앙기구 및 주무당국이 해외입양절차에 개입할 의무를 성문화한 법률의 부재 b) 13세 미만 아동의 입양 시 아동 의사 청취의 부재 c) 압도적 대다수의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가 입양되며, 청소년 미혼모의 동의 없이 이들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d) 입양 후 서비스의 부족, 특히 해외 입양아동과 생물학적 출신에 대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언어문제 해결을 포함. e) 당사국이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에 여전히 가입하지 않고 있음 50. 위원회는 아동특례법이 발효되기 전 입양의 경우에도 충분하고 동일한 보호가	탁의 질을 향상 및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b)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아동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고 이러한 현상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비징벌적인 조치를 취하며, 가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 (c) 아동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안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대안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가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d) 보호자 보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강화할 것 입양 33. 법원허가제 도입을 포함하여 입양을 규제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다음의 권고를 다시 한 번 당사국에 반복한다.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두를 도울 수 있고 모든 희생자들에게 회복과 재활을 위한 상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국적인 대응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센터 설립 노력 강화 c) 학대·방임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대·방임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성별, 연령별 통계수집체계 마련 양육비 46. 위원회는 법적으로 보장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혼한 한부모가정, 특히 모자가정 수가 많은 점을 우려한다. 47. 위원회는 협약 27조와 아동의 최상의 이익 보호라는 원칙에 비추어, 아동이나 그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법원명령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기반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 강제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밀린 양육비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기금 설립이나 양육비지급 의무자의 봉급에서 양육비를 자동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이 있을 수 있다.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자국의 해외입양제도가 특히 21조를 포함한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합치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해외입양제도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촉구한다. a) 한국 중앙입양정보원이 헤이그 협약 6조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임무권한을 규정하고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하라. 여기에는 입양 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을 수 있는 해외 입양된 이들이 이러한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중요성을 부과하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도록 하라. c) 청소년 미혼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들의 자녀를 입양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동의가 사실상 또는 실질	(a)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모든 연령대에 있는 아동을 위한 입양절차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입양에 있어 미혼모의 자발적인 동의가 의무적일 것 (b)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고 입양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할 것 (c) 절차상 불필요한 지연 방지 및 입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들의 활동이 적절히 규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d) 파양된 사례를 포함하여,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를 강화할 것 (e) 입양아동이 그들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도록 보장할 것 (f)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것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34. 위원회는 "부모책임 및 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관할, 준거법,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및 "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 부양의 국제적 청구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적으로 강요에 인한 것이 아니도록 하라. d) 해외입양을 포함 모든 입양이 명확한 임무권한을 가지고 사법적 감독과 규제를 담당할 역량을 가진 중앙기구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라. e)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 비준을 고려하라.	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을 권고한다. 수용자 자녀 35. 위원회는 수용자 자녀 및 이들 아동의 접견권 보호를 위한 정책 도입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은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
영역 I -5.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6. 기초보건과 복지(협약 6조, 18조 3항, 23조, 24조, 26조, 27조 1-3항)** 48. 위원회는 [당사국의] 높은 수준의 아동 보건 수준을 평가하지만, 보건예산 비율이 1% 미만이며 90%의 보건의료기관이 민영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1990년대에 모유수유율이 상당히 하락한 점과 흡연, 필로폰 등 불법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49.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보건예산을 증대하고 저소득층 가정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b) 생후 6개월간 완전모유수유의 중요성	**E.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조)** 장애아동 51. 위원회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이 저소득층 가정에만 제공되고, 물리치료 및 직업훈련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장애아동, 특히 여성장애아동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 특수교육 교사와 감독관의 부족, 그리고 장애아동의 대부분이 장애가 없는 아동들과 분리되어 특수학교 나 학급에서 교육받	**F.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협약 제6, 18(3), 23, 24, 26, 27(1)-(3), 33조)** 장애아동 36. 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교육, 훈련영역에서 전문 인력과 예산이 증가하였음에 주목한다.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9호(2006)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장애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을 채택하도록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모든 장애아동을 포용하도록 보장할 것 (b) 난민신청 아동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하여 재활 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모유수유에 관한 국가규범 채택 c) 수유여성이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d) 특히 HIV/AIDS, 성병, 10대의 흡연과 약물사용에 관한 교육 등 종합적인 청소년건강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청소년보건에 관한 연구 실시 장애아동 50. 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러한 편견이 "아동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고취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조건이 되는 충만하고 고귀한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매년 상당한 수의 장애아동이 버려지고 있으며, 많은 수의 장애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 다닐 경우 다른 아동들과 분리교육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51. 위원회는 1997년 위원회의 '장애아동에 관한 토론의 날'에서의 권고사항 및 '장애인 기회균등에 관한 기준원칙(유엔총회 결의 48/96)'에 따라,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는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5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006년 채택된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9호(CRC/C/GC/9)를 고려하고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a) 모든 장애아동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라. b) 장애아동의 교육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애아동이 교육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며 교사와 감독관에 적절한 교육연수를 제공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하라. c) 장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을 좀더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충분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라. d) 가능한 경우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건강 및 보건 서비스 53.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건예산을 증액하고 건강보험 제공을 위해 특별예산을 배정한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또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의료수급자 지원사업, 공공 금연캠페인, 그리고 영유아 건강 검진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려는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 (c) 학교 기반시설 및 체육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공, 통학 지원과 개별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및 역량 강화 연수를 포함하여 모든 장애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할 것 (d) 장애아동이 사회적 낙인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할 것 건강 및 보건 서비스 37. 위원회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확대를 환영한다.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5호(2013) 및 재정위험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 등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험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8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보건예산을 늘리고 지역병원을 강화하라는 이전의 권고를 상기시키며, 다음의 사항을 당사국에 권고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한다. a) 부모·어린이·교사·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제고 및 교육 캠페인 등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문화 근절을 위한 조치 b)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의 숫자에 대한 종합적인 실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장애아동의 교육수요, 교육과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 평가 c) 학교, 수련시설 등 공공건물과 장소들을 장애아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유치원·초중등·대학교육에서 통합교육프로그램 확대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총예산 대비 보건예산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대형병원과 소규모 지역병원 간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의 가용성과 진료수준에 격차가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54. 위원회는 당사국에 보건예산을 상당수준 늘리고, 저소득 가정이 무상으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시설 체계를 구축하라는 과거 권고안(CRC/C/15/Add.197, para. 49(a))을 반복한다. 또한 전 지역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 지원을 늘리는 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정신건강 55. 위원회는 특히 전국에 걸쳐 32개의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 전반적인 아동정신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아동, 특히 여아의 우울증 비율과 자살률이 증가해왔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	한다. (a)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 및 이주아동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것 (b) 이주 아동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개선할 것 (c) 당뇨 및 비만 아동 등을 위한 어린이집 및 학교의 보건의료 지원을 강화할 것 정신 건강 38. 당사국이 아동 자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정신 건강과 웰빙(well-being) 증진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4를 감안하여 자살예방과 그것의 근본원인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정신적 웰빙(well-being)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반복하여 권고한다. 청소년 보건 39.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2003) 및 청소년기 아동권리 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자살위험자 조기발견과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도입한 것에 주목하나, 이러한 진단검사가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56.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 우울증 및 자살 근본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기반하여 아동정신건강관리 정책을 개발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자살행동, 특히 여아의 자살행동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활동과 외래 및 입원환자 정신보건 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하며,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시설수용은 최대한 피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자살위험감지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및 충분히 상의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보장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정신건강접근법에 추가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이를 대체하여 자살관련 사회적, 가정적 요소를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제20호(2016), 모든 형태의 영양결핍 근절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2.2, 마약류와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5, 성과 생식보건, 생식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5.6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알코올 광고 규제 강화, 금연 공간 확대, 스포츠 및 신체활동 촉진, 약물 남용 예방에 대한 생활기술 교육에 아동참여 독려 등 비만, 흡연, 음주 예방과 관련한 이전의 권고들을 상기시킨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 지원 및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의 역량을 구축하여 문제적이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 (b) 학교 내 성교육, 임신 중 및 출산 지원 서비스, 산후 관리 강화와 육아지원 보장 및 부모의 동등한 육아 촉진을 포함하여, 청소년 임신을 효과적으로 다룰 것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청소년 보건 57. 위원회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 광고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이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에서 비롯된 비만 및 여타 건강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에 우려를 표시한다. 58.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의무 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안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 및 생식 보건에 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내 교육이 여전히 부족함을 우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계획되지 않은 청소년 임신율이 높고 이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의 낙태율 역시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한다. 59. 위원회는 담배, 알코올 및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에 대	생활수준 40.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도입을 환영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빈곤층 아동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빈곤층 아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알리고 채택하며 시행할 것 (c) 아동의 주거 빈곤 및 아동의 시간제 고용률을 사정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것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언론 등을 통해 정보 및 교육캠페인을 늘릴 것을 대한민국에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캠페인이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 양식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소비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돕도록 하며, 아동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식품의 판매를 규제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60. 위원회는 헌법 제34조 3, 4, 5항에 따라 여성, 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당사국의 계획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아동복지증진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한다. 61. 위원회는 적절한 수준에서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아동복지재원 배정관련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도록 당사국이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당사국은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영역 I -6.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7. 교육(협약 28조, 29조, 31조)** 52. 위원회는 당사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개발수준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이 초등교육에서만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지만, 당사국이 중학교 무상교육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환영한다. 또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녀비율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잠재력 개발이 고등교육의 혜택은 남자아동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의 여자아동이 받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경쟁이 심한 교육제도가 아동의 충분한 잠재력 개발이 저해될 위험성이 있음을 우려한다. 53.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a) 학교에 제공하는 재원을 늘리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서, 사교육에 비하여 낮은 공교육 수준 향상 b) 취학전 교육과 중등교육을 위한 비용 감소와 궁극적인 무상교육실시를 위해 기한이 설정된 계획 수립	**F.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협약 28, 29, 31조)** 직업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하는 교육 62. 위원회는 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려는 당사국의 노력과 아동이 놀이, 오락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교육제도 내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과과정 외의 추가적인 사교육이 일반적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염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사교육비로 인해 심화되고 있고, 사교육이 여가와 문화활동에 대한 아동 권리의 충분한 실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괴롭힘, 특히 외국 출신 아이들에 대한 괴롭힘의 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G.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 (협약 제28, 29, 30, 31조)** 교육 및 교육의 목표 41. 위원회는 선행학습 관행(예 : 진학을 위해 취학 전에 사교육을 받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약계층 아동의 입학 정원 확대, 자유학기제 도입, 학교 밖 아동 지원을 환영한다. 그러나 당사국 아동자살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학업부담, 이로 인한 수면부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과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a)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치원에서 시작되는 사교육 의존의 지속적인 증가 (b)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제한된 접근, 낮은 수준의 학교통합(school integration), 높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c) 여학생의 고등교육기회를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림으로써 고등교육기회가 능력에 따라 모두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이행 d) 경쟁을 감소시키고, 아동권리협약 29조 1항에 언급된 교육의 목표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정책 검토	것과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휴대폰과 인터넷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63.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협약 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1(2001)을 고려하여, 현 교육 및 관련 시험 제도를 평가하라. b)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의 근본 원인과 사교육에서 비롯되는 대학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하라. c) 협약 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d) 당사국의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평등을 이룩하는 데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라. e) 학생간 괴롭힘을 방지하고 외국출신 아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시도에 아동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휴대폰이나 온라인 공간과 같이 교실과 학교 운동장 밖에서 일어나	은 학교 중퇴율 (c) 한국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반면, 난민아동, 이주아동 및 미등록아동의 학교 입학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등록아동의 제한적인 교육서비스 접근성 (d)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가 지배적인 점을 비롯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기회 및 편의제공 부족과 장애아동이 직면한 사회적 낙인 (e) 학교 밖 아동 및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f) 농촌과 도시 지역 간 교육 격차 (g) 청소년 임신과 HIV 발생률 증가와 관련하여 적절하고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의 부족 (h)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은 불충분한 진로상담으로 중퇴에 대한 취약성 증대 (i) 널리 퍼져있는 학교 내 집단 괴롭힘과 학업성적 등과 관련된 차별 (j) 학업으로 뛰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함께, 아동의 여가, 놀이 및 운동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안전한 무료 시설 충분하지 않아 여가 시간에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기여한다는 것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는 새로운 형태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다루어야 한다.	42.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서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4.5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교육과정 다양화,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진로상담 강화 등을 포함하여 경쟁 완화라는 목표 하에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2001)에 부합하게 공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것, 공립 및 사립학교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가할 것 (b) 모든 아동이 출신, 주거지, 사회경제적 및 이주 지위, 이주민으로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보장받도록 「교육기본법」을 검토할 것, 부정부패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에 따른 입학 정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학교 밖 아동, 장애아동,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 다문화아동 및 탈북 아동을 포함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한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 접근성과 통합을 보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촉진할 것 (c)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및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하고,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강화할 것 (d) 학교를 중퇴하는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이러한 현상의 규모를 평가할 것,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고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에 머무를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 대안교실 및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모든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 (e) 훈련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포함한 교사의 훈련 강화, 학교 기반시설 개선과 예산 증액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 (f) 청소년임신 및 HIV/AIDS 예방에 특별히 유의하고,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 그리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 (g) 특히 학교 밖 아동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진로상담과 자유학기제를 강화 및 다양화하고, 아동의 견해가 진로 선택의 기초가 되도록 보장할 것 (h)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할 것, 차별혐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다룰 것,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안정과 관련된 훈련을 제공할 것 (i)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하여 집단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할 것: 예방, 조기 발견 메커니즘, 아동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 중재 절차, 사례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통일된 지침 (j)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 이러한 시설은 안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포함하여 접근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금연구역이며, 연령에 적합한 시설일 것
영역 I-7. 특별보호조치		**8. 특별보호조치(협약 22조, 38조, 39조, 40조, 37조 (b)-(d)항, 32-36조)** 성착취 54. 위원회는 아동으로부터의 성매수자를 처벌하도록 한 2000년 청소년[성]보호법 입법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는 점과 아동성착취의 확산에 대한 통계가 제한되어 있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원조교제'가 널리 퍼져 있다는 보고들을 우려한다. 55.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a) 1996년 1차 및 2001년 2차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한 세계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효율적인 통계수집을 포함하여,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개발 b) (아동 성착취에 관한) 아동에게 친근한 방법의 사건 접수, 감시, 조사, 기소 방법에 대해 경찰 등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사, 검사들을 훈련 c) 성학대·성착취의 피해자들에게 적절	**G.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8, 39, 40, 37(b)-(d) 및 32-36조)**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64. 위원회는 당사국 법률이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난민아동과 망명희망아동에게 시민 지위 증명서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망명희망자와 인도적 지위자의 노동시장 접근 제약과 생계보조금 부족으로 이들 자녀의 취약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의 학교입학이 부모의 체류상태에 따라 결정되어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의 교육접근이 제한돼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난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이나 망명희망자와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난민의 권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한다. 65. 위원회는 난민 및 망명희망자의 자녀를 포함,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등록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	**H. 특별보호조치 (협약 제22, 30, 32-33, 35-36, 37(b)-(d), 38, 39-40조)**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43. 위원회는 2012년 「난민법」 제정을 환영한다. 국제이주 맥락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공동의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호와 제4호(2017) /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 및 제23호(2017)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할 것, 비구금형 대안을 보장할 것, 난민과 가족 재결합 문제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b) 난민 및 무국적 아동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발할 것, 장기거주 이주아동의 지위를 규정할 것,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난민신청아동, 난민아동 및 이주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것 (c)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신청아동과 난민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한 치료, 재통합 프로그램과 서비스보장 d) 미성년자 성학대 및 성착취에 관한 법률정보, 건강한 생활양식에 관한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등 성매매 권유자, 성매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조치 개발 소년사법 56. 위원회는 법을 위반하여 보호처분에 처해진 소년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률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신체의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한다. 57.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1995년 토론의 날'에 비추어, 특히 아동권리협약 37·39·40조,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 규칙)',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유엔지침(리야드 지침)' 등 소년사법기준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소년사법제도 종사인력에 대한 전문훈련 실시 b) 신체자유박탈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한 망명희망자와 인도적 지위자의 가족에 충분한 재정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공무원, 특히 난민 및 망명희망자와 접촉하는 이들에게 난민의 권리에 대한 특별교육연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66. 또한, 위원회는 난민아동, 망명희망아동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당사국 이민법에 따라 구금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이 경우 아동에게 부적절한 시설에 구금되며, 본국송환 명령 집행이 미정인 경우 구금일수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구금에 대한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조사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67. 위원회는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을 대한민국에 촉구한다.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이러한 아동이 가능한 한 그들의 권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설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며, 최대구금일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설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정신적 신체적 보건의료, 건강보험,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여가, 학대 받은 경우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 (d)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권리협약과 부합하는 「이주아동권리법」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e) 난민신청자 및 난민 중 특히 아동에 대한 혐오발언 근절 캠페인을 전개할 것 (f)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것 (g) 난민아동, 난민신청아동 및 이주아동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것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44. 위원회는 일하는 아동의 근로조건 개선 및 기업 감독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일하는 아동의 수가 여전히 많고, 그들의 노동권 침해 및 언어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그리고 인신매매를 근절하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사용하고 신체자유박탈에 이를 수 있는 보호처분에 처해진 모든 소년들이 조기에 변호인과 접촉할 수 있도록 보장 c) 미성년자의 형사절차/보호처분 여부 결정에 관한 검사의 재량권을 없애도록 법률 개정 이주자 자녀 58. 위원회는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법령 등이 외국아동, 특히 불법이주노동자 자녀의 복지와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 59.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a) 불법이주노동자 자녀를 포함한 모든 외국아동들이 [국민인 아동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도록 특히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국내법 개정 b)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1990년 협약 비준 고려 **9.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및 아동권리협약 43조 2항 개정**	할 것을 촉구한다. 이주 상황의 아동 68. 위원회는 당사국이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도록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채택하고 불법체류자 자녀의 학교 입학과 전학을 허용하도록 2008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주아동의 등교율이 여전히 낮고, 자녀가 초, 중학교를 다니도록 해야 하는 부모의 법적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부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한다. 69. 위원회는 불법체류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교육에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이 협약 조항에 합치되도록 할 것을 독려한다.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70. 위원회는 아동착취방지를 위한 2005년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 수립을 환	고, 가장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8.7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책무성과 사회복귀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점검과 보고를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매매, 거래, 약취유인 45.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을 매우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온라인 모집을 통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 인신매매의 발생지이자 경유지 그리고 도착지로 여전히 보고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시 한 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8.7를 상기시키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법에 맞게 정비하여, 강요, 대가, 피해자의 초국가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60.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협약의 2개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아동매춘 및 포르노그라피, 아동의 무력분쟁 개입)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이를 비준하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61.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협약 2개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영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 우려한다. a) 근로아동의 수 증가 b) 아동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이 15세가 넘는 아동을 야간 근무시키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주는 등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관련 기준조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 c)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게시간과 같은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 불충분 d) 노동 감독 불충분 e) 만연한 언어적, 성적 학대 및 폭력 발생으로 인한 근로아동 문제 악화 f) 연예인이나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의 수 증가 71.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b) 야간근무금지의 효과적인 시행과 최저임금 지급 등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하라. c)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 조항을 제정하라. d)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적 이동 요건을 삭제할 것 (b) 경찰, 출입국관리, 노동 및 사회복지 공무원의 훈련을 포함하여, 특히 취약계층 피해아동의 식별 및 위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이행할 것 (c) 아동의 인신매매, 불법거래 및 탈취가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형량이 부과되도록 하며, 인신매매 방지 전담조직과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를 위한 팀을 구성할 것 (d) 인신매매 또는 불법거래의 아동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형사적 제재,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삼거나, 폐쇄된 시설에 절대로 구금하지 말 것 (e) 남자아동, 외국인 아동, 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인신매매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 소년사법 운영 46. 위원회는 소년원 송치기간을 최종 결정의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소년법」 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다음을 우려한다. (a) 법에 저촉된 아동 사건에 대한 처리절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하라. e) 근무환경에서 폭력과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를 묻고 재활을 돕는 효과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라. 성적착취 72. 위원회는 아동 성 착취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에 임시 및 긴급 생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직업훈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2008년 개정안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또한 성범죄 피해아동의 상담, 보호, 치료 및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의 설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명한다. a) 아동 성폭력 급증과 높은 음란물 소비율 b) 아동 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c) 남아 또는 남성 대상 및 외국어로 진행되는 피해자 재활 서비스 부족 d) 아동학대 범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의 삭감	차와 처우의 두 가지 병렬 시스템의 존재 (b)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과 만 10세 이상부터 「소년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는 것 (c)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의 구금을 규정하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d) 조사단계부터 보조인 개입을 보장받지 못 하거나, 자백을 강요당하거나, 증거 및 항소에 대한 접근성이 부재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이 지켜지지 않거나, 재판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법률구조(法律救助)를 조건부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고들 (e) 성인에 비해 높은 아동 구금율 (f) 과밀 수용, 불충분한 의료 지원, 교육, 훈련, 여가, 식사 제공, 특히 여아에게 적게 제공되는 식사량을 포함한 부적절한 구금 환경, 접견, 진정 및 야외활동 제한, 소수자 아동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부재, 구금된 성소수자 아동(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children)에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73.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내법이 협약 35조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2조 및 3조에 합치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a)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b) 어떠한 수단에 의하든 성적착취를 위해 아동을 제공, 전달 또는 인수하는데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라. c)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수준의 처벌이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라. d) 형사책임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교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 e) 여아뿐 아니라 남아에게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신매매 및 성 착취 피해자의 주요 출신국을 고려하며 이러한 지원활동이 다국어로 이루어지도록 하라. 인신매매 74. 위원회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채택	대한 차별, (g) 성인과 아동을 혼거수용하는 사례 (h) 구금된 아동에 대한 불필요한 DNA 및 HIV 의무검사, HIV 아동 구금자의 격리, 구금된 아동에게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그리고 지속적인 위생시설 촬영, (i) 독방 감금, 가족방문 제한 및 원거리 징계이송과 같은 재량에 따른 징계조치 남용, (j) 수갑, 포승, 기타 보호장치의 사용 및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것 (k)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형 조치의 부족. 47.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적절한 자원을 지원받아, 법에 저촉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아동사법전문법원을 설립할 것, 아동 전담 법관 및 법 위반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b)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c) 협약 제40조에 따라 공정한 재판 보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 법이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으나, 다수의 여성 및 아동이 성 착취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한국을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인신매매범의 기소율 및 유죄율이 낮다는 사실에 특히 우려를 표시한다. 7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76.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이 의정서 2조와 3조에 명시된 범죄 모두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반복한다(CRC/C/OPSC/KOR/CO/1, para. 30). 또한, 위원회는 앞서(para. 35)	장을 준수할 것, 아동 관련 사건의 공판에서 일반 청중을 배제하고, 재판 시작단계부터 아동의 법정 후견인 참여를 보장할 것, 침해(violations)를 보고함에 있어 비밀이 보장되는 경로를 제공·증진하고, 아동 관련 사건을 위한 언론보도 지침을 수립할 것 (d) 법적·관행적으로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에게 조사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 구조 제도를 수립할 것 (e) "우범소년"에 관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폐지할 것 (f) 다이버전 제도(diversion programmes)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구금형을 촉진할 것 (g) 「소년법」에 구금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할 것, 구금은 중단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보호처분" 기간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이 최종 형기에 산입되도록 보장할 것, 구금에 항소할 권리 및 부당한 구금에 대한 배상권을 보장할 것 (h) 일시구금을 포함하여, 구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개인 공간, 남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언급된 제3자에 의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방지할 조치의 부재가 아동 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선택의정서 3조 1항과 관련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외국에서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의 확립을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대한민국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CRC/C/OPSC/KOR/CO/1, para. 38). 77. 위원회는 다음의 권고를 반복한다. a) 당사국의 국내법이 선택의정서 2조와 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b) 선택의정서 4조 2항에 의거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라(CRC/C/OPSC/KOR/CO/1, para. 39).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녀 모두에게 동등한 음식, 교육, 신체적·심리적 건강 서비스, 운동, 여가, 가족과의 접견 및 진정 제도 등 제공),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것,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구금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i)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j) 근신실 및 이송을 징계적 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회복적 조치로 대체하고 촉진할 것 (k) 아동에 관한 무력 및 보호장비 사용을 규제할 것 및 그러한 사용이 특정한 상황에 제한되고, 비례적(proportional)일 것 (l) 구금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구금된 아동의 DNA 수집 및 HIV 검사를 금지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할 것, HIV 정보는 비밀을 보장할 것, HIV에 감염된 아동 구금자를 격리하지 않을 것,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그리고 계속적인 위생시설 촬영을 금지할 것 (m)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 조치를 강화할 것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78. 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의 적대행위 참여 혹은 강제 징집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CRC/C/OPAC/KOR/CO/1, para.12). 7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권고 사항을 반복한다. a)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한 선택의정서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하라. b) 모든 법률이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라(CRC/C/OPAC/KOR/CO/1). c) 모든 군사법, 메뉴얼 및 여타 군사 지침서들이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과 일치되도록 하라(CRC/C/OPAC/KOR/CO/1, para.13). 소년사법운영 80. 위원회는 당사국 내 청소년 비행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재범률 등 청소년 범죄율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비행아동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을 다루기보다 성인 구금시설에 비행아동을 구금하는 등, 아동 범죄자를 사	(n)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을 국적, 장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48. 위원회는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2008년 최종견해(CRC/C/OPSC/KOR/CO/1) 이행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한다., 이에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하며 다음을 권고한다. (a) 여행 및 관광에서의 아동 매매 및 아동 성착취를 포함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모든 행위 및 활동을 국내 형사법 하에서 완전히 포괄할 것 (b) 선택의정서에 따라 범죄자 인도가 이루어질 경우 쌍방가벌성 및 최소심각성(minimum gravity) 요건이 제외되어야 하며, 이는 범죄자 인도의 법적 근거로 간주되어야 할 것 (c) 유죄를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이 여권법에 의해 체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회가 효과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조치 대신 징계조치를 늘리는 식으로만 청소년 범죄 대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청소년전담검사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들이 실제 소년사법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받지 않아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81. 위원회는 청소년 범죄 및 높은 수준의 재범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소년사법제도를 특히 37조, 39조 및 40조를 비롯한 협약과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 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리야드 가이드라인), 피구금소년보호규칙(하바나규칙), 형사사법제도 하에서의 아동을 위한 비엔나 행동지침, 청소년 사법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호(2007) 등을 포함한 여타 관련 기준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a)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49. 위원회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2008년 최종견해(CRC/C/OPAC/KOR/CO/1) 이행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한다. 이에, 위원회 이전 권고를 상기시키며 특히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만 18세 미만 아동을 군대나 비국가 무력단체에 징집하는 것 및 적대행위에 가담시키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 (b) 분쟁지역 출신 난민신청아동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해당 아동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할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것 (c) 선택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선택의정서 조항을 반영할 것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설립하라. b) 형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동에게 충분한 법률 및 기타 지원을 법적 절차 초반과 전반에 걸쳐 제공하라. c)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교화시설 혹은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이 절대로 성인과 함께 구금되지 않고, 안전하고 아동을 배려하는 환경을 제공받고,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음식, 교육, 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라. d)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e)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자유박탈 대신 다이버전(diversion),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집행유예 등 다른 대안을 장려하라. f) 유엔 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기구간 패널과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및 비정부기구 등 패널 회원기구들이 개발한 기술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패널 회원기구로부터 소년사법 분야의 기술적 지원을 구하라.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8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6세 이하 아동 피해자와 목격자가 영상물 녹화로 진술을 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심문 및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부적절하다. a) 관계자들이 영상물 녹화에 능숙하지 않아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b) 법원이 영상 진술자료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c) 피해자와 목격자가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환경에서 반대심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d)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의 합의가 요구된다. e) 피해자 프라이버시를 위한 보호장치가 불충분하다. f) 경찰관과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g) 의료진 및 법집행관이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83. 위원회는 아동친화적인 절차규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피해아동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이 더 존중 받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적절한 법 조항과 규정을 통해 모든 피해아동과 범죄목격자 아동, 즉, 학대, 가정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유괴, 인신매매 등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와 목격자 아동이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를 받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이 아동범죄피해자와 증인 관련문제에서의 유엔 사법지침(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5/20의 부록)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 출처:

유엔아동권리위원회(199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편.), (2006).「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보고서와 권고문 I 」. (pp. 71-74).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편.), (2006).「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보고서와 권고문 II 」. (pp. 95-105).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정책자료 2011-04) (pp. 467-489).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정부 공식 번역본). 세종: 보건복지부.

Abstract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행 실태를 양적·질적 방법을 통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선행연구들과 정책변화를 분석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후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권 지표 프레임워크 중 직접 조사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 국가승인통계인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를 시행하여 직접 실증 데이터를 제공하며, 심층 연구를 통하여 양적·질적 방법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연구들은 확대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으나 새로운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한 반영은 미흡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25호와 26호는 디지털 환경과 기후환경 변화라는 거시적인 변화가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변화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서 우리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은 점차적으로 증진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하락하거나 변동되는 특성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심층분석에서 시계열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이것이 행복 증진과 연관되지는 않았다. 인권지표가 삶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만 반영하고 있거나, 행복에 중요한 부분까지는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이 가진 취약성과 인권침해는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취약성은 다른 취약성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이 가진 취약성이 만들어내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적시에 개선을 하지 않으면 취약성은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쳐 성장의 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은 우리사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영역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정책적 대응은 미진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노동인권에 대응하는 프레임을 시장 중심의 아동·청소년 일자리 제공이라는 규제 중심-소극적·부정적 영향 최소화의 접근에서 공공 중심의 아동·청소년 일자리 및 일경험 제공이라는 기회제공 중심-적극적·긍정적 영향 최대화의 접근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중심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들의 권리 침해와 이에 대한 보장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하며, 아동·청소년들을 둘러싼 생태체계에서의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삶의 질 증진이라는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하여 13개의 정책영역과 20개의 세부정책과제를 설정하였다.

키워드: 유엔아동권리협약, UNCRC,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인권과 삶의 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nd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previous studies and policy changes related to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establishes a framework for human rights indicator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spects the implementation status through administrative data and survey data, and establishes a framework for child rights indicators. For indicators that require direct investigation, we provide direct empirical data by conducting the National Survey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National Approved Statistics No. 402001), which i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tatistics, and provide in-depth analysis us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s a result of this study, research on children and adolescent rights is expanding and diversifying, but the reflection of new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is insufficient. General Comments No. 25 and No. 26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all for national response to the impact of macro changes such as digital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Researches on these issues need to be conducted and

policy changes also need to follow based on the results.

In an in-depth analysis of children's and adolescents' rights, the rights leve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s improving over time, but this is not associated with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Consideration is needed as human rights indicators may reflect only part of the impact on life or may not reflect aspects that are important for happiness.

It has been shown that the vulnerabiliti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an lead to lines rather than dots, and that vulnerabilities create other vulnerabilities. If human rights violations resulting from the vulnerabiliti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not prevented and corrected in a timely manner, vulnerabilities can have a cumulative effect an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trajectory of growth.

The labor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been raised as a problem area that appears repeatedly in our society, but legal and policy responses to this issue have been insufficient. To this end, the framework for responding to child and youth labor rights changes from a market-oriented and regulation-oriented approach of providing jobs for children and youth - a passive/minimizing negative impact approach - to a public-oriented approach of providing opportunities for children and youth by providing jobs and work experience - centered on providing opportunities for children and youth. There is a need to move to an approach of maximizing positive impac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necessary not only to guarante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enter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ut also to guarante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entered on the ecological

system surrounding children and adolescents. To achieve this, we must continue to consider violations of the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ir guarantee in new environments, and set higher goals of guaranteeing basic human rights and improving well-being in the ecological system surrounding children and adolescen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stablished 13 policy areas and 20 detailed policy tasks.

Keyword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children's rights, human rights, well-being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서정아·송현주

연구보고23-기본02 청소년활동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문호영·서고운·김진호

연구보고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 이윤주·최용환·길정아·황현정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임희진·황여정

연구보고23-기본05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 배상률·김영한·황현정

연구보고23-기본06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 오해섭·최홍일·송원일

연구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최정원·이인영·박지숙·이호준

연구보고23-기본08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인재·임지연·김민·강영배

연구보고23-기본09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 박지수·이지연·한윤선·김혁

연구보고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조혜영·한지형

연구보고23-기본11 청소년 디지털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 이창호·모상현·최항섭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유성렬·이수정

연구보고23-일반01-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

연구보고23-일반02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 양계민·권오영·이영신·장윤선·장인숙

연구보고23-일반07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황진구·김윤희·정윤미

연구보고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윤희·정윤미

연구보고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임선아·김지혜

연구보고23-일반08-01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연구보고23-일반08-02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3)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Ⅲ / 김형주·김정숙·김문길·변금선·배정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Ⅲ: 시민권과 참여-총괄보고서 / 김기헌·장근영·신인철·임성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2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Ⅲ: 시민권과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 김기헌·장근영·신인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1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 청년종합연구Ⅱ: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백혜정·김지연·김승경·김이배·노혜진·김성아·박광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2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1)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 백혜정·김지연·김승경·노혜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3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2)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 김성아·김문길·나원희·한영섭·강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4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3)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 박광옥·김용득·이복실·이은영·이동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9-01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6)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 김경준·김영지·윤철경·이은주·이은주·임성은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3-수시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내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진구·김윤희

연구보고23-수시02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 배상률

연구보고23-수시0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연구보고23-수시05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헌·김나영

수 탁 과 제

일반

연구보고23-수탁01 디지털시대, 디지털 문해력 개념의 확장 / 황용석·이현주·황현정

연구보고23-수탁0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강진숙·김지연·류숙

연구보고23-수탁03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사업 성과 연구 / 이윤주·최정원·최홍일·이수진

연구보고23-수탁04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연구보고23-수탁05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3-수탁05-01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3-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플랫폼 개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연구보고23-수탁07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교실 – 교사용 수업활용 안내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연구보고23-수탁08 학교-지역사회-민간연계를 통한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이창호·주예찬·이슬기

연구보고23-수탁09 인성교육 프로그램 비인증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봉제·신현우·곽현석

연구보고23-수탁10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이정민·최홍일

연구보고23-수탁10-0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이미숙·양소현·고혜정·최진혁·한송이·문미혜·윤애영·김주이·조성윤·박유정

연구보고23-수탁11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용역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연구보고23-수탁12-01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초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2-02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중고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3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최용환·김동일·박윤수·김보경·장혜윤·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4 2023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 서기희, 김성혜

연구보고23-수탁15 2022년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김보경·장혜윤·김수진, 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6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서기희·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박소영

연구보고23-수탁18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황진구·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3-수탁19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0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1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황 연구 / 서정아·김정율·김지수

연구보고23-수탁22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체계 연구 / 양계민·권오영

연구보고23-수탁23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양계민·이영신

연구보고23-수탁24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장근영·김기헌·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연구보고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3-수탁26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 김윤희·황진구·이상현·김태성·정윤미

연구보고23-수탁27 2023년 청년정책 성과자료 제작 / 김기헌·김형주·김지민

연구보고23-수탁28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 김기헌·이윤주·조양진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연구보고23-학폭0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저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고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3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4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5 2022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발간 모음집 / 모상현·김예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모상현·김창겸·김예원

연구보고23-학폭07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이경상·남지영·송채원·장원빈

연구보고23-학폭0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 모상현·남지영·장원빈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연구보고23-대안01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실태조사 / 최홍일·김세광·오해섭

연구보고23-대안0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연구 / 최인재·송원일

자 료 집

세미나

세미나23-01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23.7.19.)

세미나23-0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설명회 및 방법론 특강 (23.8.24.)

세미나23-03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역사와 전망」(23.9.12.)

워크숍

워크숍23-01 2022년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23.2.8.)

워크숍23-02 2022 하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23.1.16.)

워크숍23-03 2023 꿈지락 운영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3.5.2.)

워크숍23-04 2023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3.5.3.)

워크숍23-05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기본과정 (23.7.27.~7.28.)

워크숍23-06 2023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23.7.19.)

워크숍23-07 2023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집필진 워크숍 참고자료 (23.8.5.)

워크숍23-08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심화과정 (23.11.2.~23.11.3.)

포럼

포럼23-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 (23.4.25.)

포럼23-02 챗GPT 알고리즘 이해와 청소년 시민성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23.7.4.)

포럼23-03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3.8.24.)

포럼23-04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제도 개선 방향 모색 (23.8.25.)

포럼23-05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3.9.20.)

포럼23-0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3.9.21.)

포럼23-07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 (23.10.25.)

포럼23-08 청년종합연구 포럼: 협동연구 연구성과 보고 (23.11.14.)

포럼23-0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 (23.11.21.)

포럼23-10 청소년정책포럼 '도시를 만드는 아이들' (23.12.7.)

콜로키움

콜로키움23-01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23.4.19.)

콜로키움23-02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1차 콜로키움 "SDGs 시대의 청소년정책" (23.6.19.)

콜로키움23-03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2차 콜로키움 "학습 회복(Learning Recovery)에서 교육 혁신(Education Transformation)으로:코로나 이후 해외 교육 사업의 변화" (23.7.20.)

콜로키움23-04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3차 콜로키움 "청소년 사이버범죄 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 ATLAS.ti 23을 이용한 주제 분석(원제: Using Thematic Review with ATLAS.ti 23 to Identify Patterns of Cybercrime among Youths from Literature)" (23.8.18.)

콜로키움23-05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4차 콜로키움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 월드비전의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23.8.28.)

콜로키움23-06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과 현황 (23.9.18.)

콜로키움23-07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5차 콜로키움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 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23.11.13.)

콜로키움23-08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6차 콜로키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23.12.01.)

기타자료집

자료23-01 2022 공교육 안팎 대안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연수 보고서

자료23-0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자료23-03 인성교육 재정립 및 학교인성교육 추진방향

자료23-04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성 개념의 재구조화

자료23-05 민주적 학교 운영 길잡이

자료2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자료23-07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위촉식 및 연수

자료23-08 2023년 학생참여교육 실천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자료집

자료23-09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3-10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

자료23-11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3-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 적용평가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0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0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1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11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4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46호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147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Ⅰ

148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Ⅱ

149호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 연구

150호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NYPI Bluenote 통계

74호 후기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결과

75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76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인 쇄 2023년 12월 22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02-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979-11-5654-401-2 94330
979-11-5654-400-5 (세트)

연구보고 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94330
9 791156 544012

ISBN 979-11-5654-401-2
ISBN 979-11-5654-400-5(세트)